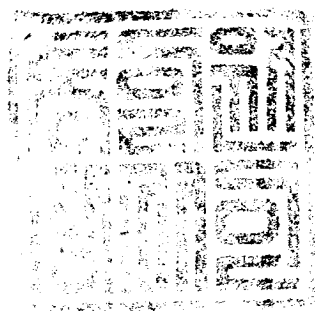


# 北韓·統一研究論文集 (V)

—軍事 및 行政·法制 分野—

1991



統 一 院



이 論文集은 當院이 年例事業으로 推進하고 있는 北韓 및 統一問題에 관한 新進學者들의 '91年度 研究 結果를 綜合한 것입니다.

금년에는 45個의 課題를 設定하여 研究委囑을 하였는바 便宜上 報告書를 ①南北韓 統合 및 統一政策 ②南北 交流協力 ③北韓의 體制變化 ④北韓의 政策 및 社會 變化 趨勢 ⑤韓半島 軍事問題 및 北韓의 行政·法制 ⑥北韓의 經濟·社會·人權實態 分野 등 6卷으로 나누어 發刊하였습니다.

여기에 收錄된 論文들은 嶄新한 아이디어와 銳利한 論證등 力作들이 많았다고 評價되나 그 內容들이 모두 當院의 見解와 一致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冊子가 北韓 및 統一問題를 理解하고 研究하거나 政策을 樹立하는데 參考資料로 널리 活用되기를 바랍니다.

1991年 12月

統 一 院 情 報 分 析 室



V 5.

目 次

◆ 軍縮과 關聯한 協商戰略研究

金 哉 翰

〈要約文〉 ..... 1  
I. 머리 말 ..... 9  
II. 一方的 減縮 ..... 12  
III. 默示的 相互主義 軍縮戰略 ..... 14  
IV. 公式的 軍縮協商 ..... 17  
V. 檢證과 軍縮의 成功 ..... 19  
VI. 不確實性과 軍縮의 成功 ..... 24  
VII. 맺 는 말 ..... 27

◆ 韓半島 軍事爭點의 解決方案 研究

朴 洪 潤

〈要約文〉 ..... 30  
I. 머리 말 ..... 34  
1. 研究目的 ..... 34  
2. 研究分析틀 ..... 35  
II. 韓半島 軍事現況과 環境 ..... 37  
1. 東北亞 軍事體制와 韓半島 ..... 37  
2. 韓半島의 軍事現況 ..... 39  
3. 南北韓 軍備競爭의 要因 ..... 50  
III. 韓半島 軍事爭點問題의 實體 ..... 57  
1. 南北韓 軍事問題의 背景 ..... 57  
2. 國際體制的 軍事問題 ..... 62  
3. 南北韓 國家對立體制的 軍事問題 ..... 72

4. 南北韓 國內體制的 軍事問題 .....	78
IV. 韓半島 軍事爭點問題의 解決方案 摸索 .....	82
1. 問題解決의 視角과 前提 .....	82
2. 國際體制的 軍事問題의 解決方案 .....	84
3. 南北韓 對立體制的 軍事問題의 解決方案 .....	89
4. 南北韓 國內體制的 軍事問題의 解決方案 .....	95
V. 맺 음 말 .....	97

## ◆ 北韓의 軍事力現況에 관한 研究

崔 秉 鶴

〈要約文〉 .....	106
I. 序 論 .....	110
1. 研究의 目的 .....	110
2. 研究의 範圍 및 制限點 .....	111
3. 研究의 方法 .....	112
II. 北韓의 軍事力 增強過程 및 變化要因 .....	113
1. 戰爭政策의 基調論理 .....	113
2. 軍事戰略·戰術의 構造 .....	116
3. 軍事力 增強變化 推移 .....	119
4. 軍事同盟의 力學關係 .....	125
III. 北韓의 核武器 開發問題와 ‘非核地帶化論’의 論理分析 .....	126
1. 核開發의 推進過程 .....	126
2. 核保有能力의 可視化 .....	128
3. ‘非核地帶化論’의 論理 .....	133
4. 北韓의 核査察 拒否論理 .....	140
5. 核威脅戰略의 周邊反應 .....	143

IV. 北韓의 核武裝이 韓半島 平和構造에 미치는 影響分析 .....	144
1. 世界體制的 次元 .....	144
2. 地域體制的 次元 .....	145
3. 南北體制的 次元 .....	153
V. 結論：韓國의 政策的 對應課題 .....	158
1. 北韓의 核威脅에 대한 立場定立 .....	158
2. 韓國의 政策的 對應方向 .....	159

#### ◆ 北韓人民軍의 組織管理方式과 實戰能力 評價研究

安 燦 一

〈要約文〉 .....	169
-------------	-----

(本文은 別冊으로 發刊)

#### ◆ 北韓의 體制類型과 官僚腐敗에 관한 研究 —體制類型, 體制管理, 腐敗類型을 中心으로—

尹 泰 範

〈要約文〉 .....	173
I. 序 論 .....	176
1. 研究目的 .....	176
2. 研究範圍 및 方法 .....	177
II. 官僚腐敗의 概念과 接近方法 .....	178
1. 官僚腐敗의 概念定義와 限界 .....	178
2. 官僚腐敗에 대한 既存의 論議 및 限界 .....	180
3. 官僚腐敗에 대한 體制論的 接近의 有用性 .....	185
III. 體制理論, 體制類型, 그리고 體制病理(體制腐敗) .....	187
1. 體制的 概念 .....	187

2. 體制的 環境과 體制類型, 그리고 對應樣式 .....	190
3. 體制病理(System Pathology) 혹은 腐敗 .....	198
IV. 北韓體制的 類型과 體制病理 .....	202
1. 北韓體制的 類型 및 性格 .....	202
2. 北韓의 體制管理樣式과 不整合性 .....	209
3. 北韓의 體制腐敗 .....	210
V. 北韓 官僚體制的 腐敗의 類型과 性格 .....	213
1. 北韓 官僚體制的 性格 .....	213
2. 北韓의 體制腐敗와 官僚體制的 關係 .....	215
3. 北韓 官僚體制腐敗의 類型과 性格 .....	216
4. 北韓 官僚體制腐敗의 原因과 메카니즘 .....	218
5. 官僚體制的 腐敗에 대한 北韓 政府의 對應樣式 .....	220
VI. 結論－體制類型과 體制管理의 統合 .....	222

## ◆ 主體思想 形成原因論 研究

－北韓政治體制內에서의 傳統政治文化的 變容過程－

金 英 秀

〈要約文〉 .....	226
I. 序 論 .....	229
1. 研究目的 .....	229
2. 研究方法 .....	230
II. 政治體制作動原理로서의 政治文化 .....	233
1. 理論的 背景 .....	233
2. 機 能 .....	238
III. 傳統政治文化와 레닌주의 體制 .....	242
1. 特 性 .....	242



2. 相互關係：葛藤과 調和	246
IV. 適應努力의 類型	250
1. 承 繼	252
2. 變 容	256
3. 改 造	261
V. 適應努力의 時期的 區分	265
1. 第1期(1945—1958)	265
2. 第2期(1958—1972)	266
3. 第3期(1972—1980)	268
4. 第4期(1980 以後)	270
VI. 主體思想에 基礎한 新政治文化의 創造	271
1. 特 性	271
2. 機 能	277
VII. 結論—南北韓 文化統合에 미칠 影響	279
1. 文化傳統과 統一	279
2. 文化統合에 미칠 北韓政治文化	281
3. 文化統合을 위한 方案	283

#### ◆ 主體思想에 대한 現象學的 批判

李 宗 勳

〈要約文〉	296
I. 序 論	299
1. 研究目的	299
2. 研究方向	300
II. 主體思想	302
1. 主體思想의 形成過程	302
2. 主體思想의 體系	304

3. 主體思想의 意義와 限界 .....	305
III. 마르크스 레닌主義 .....	309
1. 辯證法的 唯物論 .....	309
2. 史的 唯物論 .....	311
3. Marx以後 마르크스 레닌主義의 展開 .....	315
IV. 마르크스 主義와 現象學 .....	318
1. 마르크스 主義와 現象學의 關係 .....	318
2. 現象學的 마르크스主義 .....	320
3. Husserl의 生活世界 .....	321
4. Lukasc의 歷史와 階級意識 .....	328
V. 마르크스主義 批判 .....	331
1. 客觀主義的 傾向 .....	331
2. 主觀主義的 傾向 .....	332
3. 主觀·客觀의 對立을 克服하려는 傾向 .....	334
VI. 主體思想에 대한 現象學的 批判 .....	336
VII. 結 論 .....	339

## ◆ 北韓의 地方行政體制에 관한 研究

金 英 美

〈要約文〉 .....	344
I. 序 論 .....	346
1. 研究의 目的 .....	346
2. 研究의 範圍 및 方法 .....	347
II. 行政體制分析을 위한 理論的 背景 .....	348
1. 美의 官僚制 .....	348
2. 體制의 意義 및 接近方法 .....	349

Ⅲ. 北韓의 政治·行政體制 .....	354
1. 政治體制的 構造와 機能 .....	354
2. 行政體制的 構造와 機能 .....	358
Ⅳ. 北韓의 地方行政組織體系 .....	368
1. 地方行政體制的 構造와 機能 .....	368
2. 地方行政區域 .....	375
Ⅴ. 北韓의 地方行政의 役割 및 性格 .....	382
1. 地方의 行政業務 .....	382
2. 北韓의 地方行政과 기타 組織과의 關係 .....	386
3. 北韓 地方行政의 特徵 .....	389
Ⅵ. 結 論 .....	392

## ◆ 北韓 刑事法體系에 관한 研究

白 源 基

〈要約文〉 .....	398
I. 머리말 .....	402
Ⅱ. 北韓 刑法의 分析 .....	404
1. 刑法의 法源과 本質 .....	404
2. 刑法典의 構成 .....	405
3. 新·舊刑法의 比較 .....	408
4. 刑法의 基本原則 .....	412
5. 犯 罪 論 .....	415
6. 刑 罰 論 .....	422
7. 刑法各則의 構成 .....	427
Ⅲ. 北韓 刑事訴訟節次의 分析 .....	431
1. 搜查와 豫審 .....	431

2. 公訴制度 .....	432
3. 公判制度 .....	433
4. 證據法上 制度 .....	434
5. 上訴審節次 .....	435
IV. 北韓 刑事政策의 分析 .....	437
1. 刑事政策의 基礎와 根據 .....	437
2. 刑事政策의 基本的 特徵 .....	438
3. 刑事政策의 犯罪學的 考察 .....	440
4. 行刑制度 .....	447
5. 刑事政策의 性格 .....	450
V. 맺 는 말 .....	454

## ◆ 軍縮과 關聯한 協商戰略 研究

金哉翰(翰林大)

### 要 約 文

현재 한국 국방정책 또는 안보정책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아마 군비통제일 것이다. 많은 연구가 군축의 필요성을 역설하여 왔다. 그러나 군축의 필요성이 군축의 方法論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軍備競爭의 내부적 요인에 대한 기왕의 연구는 사회경제적인 구조적 측면에만 치중해 왔는데, 이러한 사회경제적 구조는 군비경쟁의 직접 원인 또는 動因이라기 보다 狀況的 條件에 해당되는 事後的 說明을 위한 것이다. 그것들의 중요성은 당연하나, 남북한처럼 당장 군축시행을 검토하고자 하는 국가에게는 실용성이 적다. 군비경쟁의 외부적 요인으로서 군비경쟁을 세계체제적 차원에서 보는 것도 타당성은 있으나 군축의 방법론적 고려에서는 의미가 적다. 왜냐하면 남한이 국제체제 자체를 바꾼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短期的인 실용성을 위해서는 좀 더 微視的으로 協商戰略的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군축의 실패를 살펴본다면 意圖的인 군축전략에 의해 군축이 실현된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다. 역사가들은 군축을 어떤 특정한 군축 방법론보다는 事件에 귀속시켜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경제적 환경의 변화와 같은 사건은 사후적인 설명일 뿐이지 사전적으로 그러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군축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또 사건은 원인으로 볼 수도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인위적이지 못하다. 의도적이라면 이미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반도 군축도 군축에 유리한 사건이 일어나기만을 무작정 기다릴 수 없으며 나름대로의 방법론을 모색해야 한다. 군축의 성사는 대체로 시간에 비례하는데, 군축 방법론에 대한 이해는 그러한 시간을 단축해 주며, 군축이론에 대한 무지는 사건이 아닌 순수한 방법론이 결정하는 군축 성공의 폭도 얻지 못한다.

군축전략은 크게 일방적, 묵시적, 공식적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일방적 군축전략에는 세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防衛同盟 형성이다. 동북아

평화체제나 새로운 동북아 정치협력체형성이 남북한 균축의 한 전략이 될 수 있다.

두번째의 일방적 전략은 情報의 습득과 제공이다. 상대방에게 자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상대방의 오관을 박음으로써 또 다른 군비증가를 가져오지 않고 안보수준을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남한이 군비감소를 하면서 북한에게 이를 확신시킬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오히려 북한으로 하여금 군비감소와 도발억제를 하게 하는 면이 있다.

세번째로 들 수 있는 일방적 균축전략은 공격용 무기가 아닌 防禦用무기에 전념하는 것이다. 그러나 안보수준은 억지력에 크게 의존하며, 그 억지력은 이차공격력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공격력을 상쇄하는 방어력이 상대방의 안보수준을 감소시키지 않는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더구나 공격무기와 방어무기의 구분이 어렵다는 점에서 그 적실성이 적다. 상대방의 대 군사시설 공격 또는 방어에도 남을 수 있는 최소한의 대민간용 공격무기가 불신관계에 있는 국가 간의 전쟁억지에는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報復공격의 신빙성을 증진시키고 상대방의 先制공격 동기를 줄이고 誤判을 줄이는 것이 일방적 방어의 핵심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들 수 있는 일방적 전략은 명령통제기능의 강화와 목표물 수의 감소, 그리고 선제공격 포기의 선언 등이다. 남북한도 전투사령부가 덜 취약하도록 좀 더 기동성이 있는 예컨대 이동사령부화될 필요도 있다. 이러한 일방적 방안은 경제적 비용이 드는 단점이 있으나 쌍방이 동시에 합의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은 공식적 협상보다 크다.

묵시적 흥정은 협상 또는 합의없이 군비통제를 하는 것인데, 報償報復的 전략으로 일컬어진다. 공식적 협상과 달리 정상회담, 조약체결, 비준 등이 필요없다. GRIT와 TFT의 두 가지로 발전되어 왔다. GRIT는 먼저 일방적으로 군비감소를 하되 핵보복력과 제레식 방어력을 유지해야 하며,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보복보답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긴장완화를 위한 일방적 감축은 긴장완화를 위한 의도적인 정책이라고 미리 공표되고 그에 상응하는 상대방에 대한 요구를 분명히 해야 하며, 그 일방적 시행은 검증이 가능한 분명한 것이어야 하고, 상대방의 즉각적인 반응이 없더라도 일정 기간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TFT전략은 상대방이 군비감소를 하면 다음에 자국도 감소를 하고 상대방이 군비증가를 하면 다음에 자국도 증가를 하는 전략이다.

7.4 남북한공동성명과 같은 남북한간의 공식적 합의가 있었던 적도 있지만, 기왕의 남북한 관계는 묵시적 흥정 관계로 일관했다. 예를 들어 한 쪽이 휴전협정을 위반하는 도발을 하면 상대방도 그에 준하는 보복을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남북한 군축 문제는 묵시적 흥정으로만 하기에는 너무 변했다.

묵시적 전략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군축에 대한 남북한의 공동이익이 존재해야 한다. 반복 게임은 남북한협조를 위해서는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 정권과 독립된 군축추진기관이 필요하다. 단기적 임기는 건수 위주의 전시행정이 되기가 쉽기 때문이다.

공식적 協商은 남북한 간의 직접적인 군축협상 뿐만 아니라 한반도 군축에 관한 다자간 협의체도 이 범주에 속한다. 과거의 군비통제 협상은 하찮고 질질 끄는 인상을 주어 왔으며, 합의에 대한 관리 또는 감독의 문제로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못했다.

공식적 협상의 효과를 위해 몇 가지를 유의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 먼저 協商의 主體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이다. 군축협상에서 제한된 책임과 권한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최고통수권자 직속의 전권기관에 의해 추진되어야 한다. 남한 행정부 내에서도 군비통제는 통일원, 외무부, 국방부, 청와대, 안기부 등에 분산되어 있다. 기본적인 계획은 전권기관에 의해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협상이 이미 시작된 후에는 고위급이 아닌 하위급 수준에서 집행되어야 여론이나 정치적 목적에 영향받지 않는다.

군비통제 문헌에서는 檢證(verification)과 監視(monitoring)는 구별되는데, 정보기관과 군사기관은 자료수집에 해당하는 감시는 수행할 수 있으나 자료를 해석하거나 조약위반을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한다. 사찰에 필요한 예산과 인원이 엄청나게 늘고 있는데, 바로 감축의 대상인 국방부에서 군축관리의 많은 부분을 주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되기도 한다.

다음으로는 어떠한 군축조약이 실현 용이한가 하는 문제이다. 단위가 분명한 조약은 타결이 비교적 용이할 것이다. 군비통제조약이 타결되기 위해서는 아주 簡單해야 하며, 檢證도 용이해야 하며, 합의로 예상되는 특히 상대방의 違反으로 인한 損失이 적어야 하며, 그 조약으로 인해 당사자 모두 利得이 있어야 한다. 그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군비통제조약은 하트라인 협정, 선제공격 포기 조약,

철폐허용 조약, 화생방무기 금지 조약 등을 들 수 있는데, 남북한 군비통제도 먼저 이러한 조약을 협상할 필요가 있다.

이슈간의 연계는 협조를 위해선 필수적인데, 이러한 점에서 남북한 일방이 상대방을 군축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비군사적 수단이 중요하다. 남한이 군축협상에서 북한을 통제하기 위해서 미리 경제적 교류 등을 가질 필요가 있다, 경제원조도 주다가 안 주면 하나의 제재가 될 수 있다. 남북한 접촉이 많은 것이 없는 것보다 훨씬 군축을 가져오기가 용이하다. 즉 민간인을 포함한 많은 남북교류가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조건부적 군축은 군축의 이득과 군비경쟁의 비용, 그리고 검증능력이 크면 클수록 가능해진다.

檢證은 군축의 성공에 큰 영향을 준다. 정찰이 정확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군비감소를 할 동기가 감소한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의 정보체제가 제안될 수 있다. 남한의 합의 위반에 대한 北韓의 探知능력 향상은 북한으로 하여금 합의를 지킬 자신을 주기 때문에 南韓의 利益에 도움이 된다. 마찬가지로 남한의 정찰능력 향상은 북한에게 유리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남한의 國防資料公開도 남한의 안보에도 도움이 된다. 정보의 미공개는 모험주의자로 하여금 모험을 걸 동기를 부여한다. 더구나 民主主義를 추구하는 남한으로서는 국내적인 면과 대북적인 면 어느 면에서도 국방자료의 공개를 서둘 필요가 있다.

군축의 이득보다 軍備競爭의 費用이 조건부 군축을 할 가능성에 더 중요하다. 군축의 이득과 군비경쟁의 비용은 동전의 양면이나, 그 비중은 다르다. 남북한의 군축도 군비경쟁의 비용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일 때 가능하다. 어찌면 남한은 군비경쟁의 비용에 대한 부담을 군축을 하기에는 너무 적게 느끼고 있을지도 모른다. 북한으로 하여금 군비경쟁의 비용을 더 느끼게 하는 것은 남한의 연구개발이다. 그러나 남한이 연구개발투자 등에 과감한 투자를 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보나 군축에 적극적으로 나오게 하는 것도 확실한 억지체제를 유지해야 하며, 북한으로 하여금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하여 예방전쟁을 일으키게 해서는 안된다.

국제정치 특히 군사정책에 있어 국가는 평화를 사랑한다는 도덕적 이유보다는 피부로 느끼는 費用의 부담 때문에 군축에 임한다. 세계사에 있었던 군축의 대부분도 비용 때문에 군축에 임했지 적대국을 목전에 두고 평화에 대한 갈망이 군축합의를 가져온 것은 아니었다. 현재 남북한 군축을 안보 목적상으로만 논의하



고 있는데, 남북한 군축도 안보 차원보다 비용절감적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성공 가능성이 크다.

不確實性 또한 군축의 성공에 영향을 준다. 군축이 실현될 수 있는 것도 정보 수준이 완전하지 않을 때 군비경쟁을 가져올 수가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대상은 상대방 選好度, 상대방의 軍備增減, 軍縮決定의 施行與否 등이 있다. 예를 들어 남북한 쌍방이 자국이 군사적으로 유리한 것보다 군축이 되는 것을 선호하여도 이를 알지 못하면 군축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며, 남북한이 서로의 군사력을 몰라서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자국의 군사력을 준비하는 것이 남북한의 군비경쟁을 가속화시킬 수 있으며, 군축을 하기로 정책결정자가 결정해도 정확하게 시행되지 않아서 군축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경험과 이념대립에서 오는 先入觀은 불확실성의 한 요인이다. 남한이 군비통제적 목적으로 무기체계를 바꾸는 경우에도 정부가 많은 군사체도의 변화를 꾀하고 있는데, 북한이 ‘最惡의 경우’ 시나리오에 따라 이를 군비경쟁으로 받아 들일 가능성은 크다.

남북한 군축에 대해 비관적으로 보는 많은 사람들은 북한은 신뢰할 수 없으며 협정을 맺는다 해도 그 준수는 기대할 수 없으며 결국 남한만이 손해볼 것으로 본다. 실지로 남북한의 군축정책 담당자는 상대방 국가에 대해 극심한 不信感을 갖고 있는데 이의 변화없이는 군축도 어렵다. 설혹 일방이 진정으로 군비감축의 신호를 보내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다. 정책담당자가 아닌 일반 국민도 북한이 남한보다 우위에 설려고 하는지 아니면 상호 군축을 진정 원하는지 전혀 모른다. 남북한의 국가목표 뿐만 아니라 남북한 군사력 비교에 대한 불확실성도 존재한다.

물론 서로 상대방이 군축을 원하고 있다고 아는 사실이 군축을 저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협상 또는 흥정에서 상대방의 양보를 얻을려고 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상대방의 군축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확실성은 군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직관적인 생각이다. 상대방은 군비감소를 했는데 군비증가를 한 것으로 여기면 자국도 군비증가를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유럽에서 信賴構築이 언급될 때 억지의 개념과 자주 대비되었었다. 억지는 상대방이 헛점만 있으며 공격하겠다는 의도를 전제하나, 신뢰구축은 그러한 의도가 없으니 이러한 오해를 풀자는 것이다. 군축에서 말하는 신뢰구축의 근본 취지도

여기에 있다. 이 신뢰에는 스스로 방어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자기신뢰와, 상대방이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상호신뢰의 두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신뢰구축조치로 자신은 방어능력이 없으며 상대방의 의도는 침략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반도 군축의 논의에서 신뢰구축이 종종 강조되어 왔다. 정치적 신뢰구축이 긴장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되나, 현재의 상황에서 군사적 신뢰구축의 중요성은 오히려 오도되고 있다. 본래 군사행동의 제한, 사전예고, 초청, 현장조사등의 軍事的 信賴構築의 목적은 상호 진정한 의도가 평화적일 때 상호오관되지 않도록 장치하자는 것인데, 작금의 남북한 관계처럼 상대방에 대한 진정한 의도가 호의적이라고 보기가 힘든 경우는 불확실성과 오인을 줄여보겠다는 군사적 신뢰구축은 평화에 전혀 도움이 안될 수 있다. 만일 그러한 평화적 의도가 비대칭적일 때 확실성은 군비경쟁 또는 무력개입을 불가피하게 하기도 한다.

이상에서 군축의 방법론을 논의했는데, 몇 가지 부연할 것이 있다. 군축의 방법론으로서의 非公式的 방법론을 언급한 이유는 그것이 가장 좋다는 의미는 아니다. 현재 남북한 군축의 방법론으로 공식적 협상만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반론으로 묵시적 총정과 일방적 정책도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남북한처럼 아직 불신감이 해소되지 않고 공식협상이 진전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억지적인 면을 고려한 일방적 정책이 필요하다.

남북한 군비통제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긴장완화이다. 그러한 점에서 정치적 신뢰구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런데 남북한의 군비통제가 남북한간의 긴장완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어도, 남북한의 의도 또는 국가선호도에 영향을 준다는 증거는 없다. 더구나 군축조약의 역사를 볼 때 긴장을 줄인 군비통제 조약은 그리 많지 않다. 군비경쟁이 의도와 선호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단지 군비증강과 긴장의 상호작용의 가설로 제시되었을 뿐이지 어떠한 경험적이거나 체계적인 연구는 없다.

실지 안보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군비축소 또는 군사적 신뢰구축이라기 보다 진정한 政治的 葛藤의 유무이다. 남한이 계속 군비증강을 하면 북한이 더 늦기 전에 전쟁을 시작하는 예방전쟁의 가능성도 남북한의 정치적 갈등상황에 영향을 받지 단순한 군사력 균형의 역전은 부분적인 의미만을 진다. 한반도 군축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왜 군축이 안 되느냐 라는 문제에 골몰해 있지만 남북한 쌍

방이 아직까지 군축을 아주 갈망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고 있다. 만일 아직 남북한이 진정으로 군축을 원하지 않는다면 왜 군축이 안 되는지에 대해 풀물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남북한의 어느 일국은 협상에서 자신이라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군비경쟁의 위협 때문에 군비통제 협상을 주저할지도 모른다.

또 군축의 조건으로 抑止와 均衡은 중요하다. 유럽과 미소 간의 군축으로 인해 한반도에도 군축의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지만 한 가지 간과하기 쉬운 사실은 미소 또는 유럽에서의 군축이 억지력 보존 위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1970년대부터 미소간의 군축이 시작되었는데,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미소 군사력의 전략적 균형의 성취와 억지력의 보존이었다.

지금의 남북한은 군비경쟁에서 자국이 열세라고 주장하는데, 만일 하나의 선전으로서가 아니라 정책담당자가 진정으로 그렇게 믿고 있다면, 이의 해결없이 군축은 어렵다. 당연히 자국이 열세라고 생각하는 어느 국가도 군비감소를 할려고 하지 않는다. 남북한이 서로의 군사력을 '최악의 경우'로 상정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 객관적인 평가가 된 후에는 열세인 국가가 급히 균형을 추구하기 때문에 잠시 군비경쟁을 가져올 수 있지만, 이미 균형되어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군축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軍備統制의 목적은 軍備를 制限하기 보다 무기로 인한 분쟁과 긴장을 줄여보자는 것이다. 즉 辭典的 의미는 武器가 使用되지 않도록 統制하는 것이다. 협상시 군비통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군비통제 協商의 목적도 군비통제조약 妥結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협상은 비록 합의가 없더라도 相互 理解에 기여를 한다. 미소 군축도 실패한 협상에서의 상호 이해가 오늘날의 협상타결을 가져온 면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남북한의 군축협상은 비록 타결되지 않더라도 남북한 여러 차원의 접촉을 지속하게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군비경쟁의 내부적 요인은 생략했지만, 군축전략의 하나로 언급할 수 있는 것은 民主主義이다. 특히 북한의 대남전략을 고려할 때 내부결속과 안정을 갖추고 있는 것이 안보에 더 없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에 준하는 군사력을 줄일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언급하면, 남북한 무기의 상당부분이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일부 미국학자들은 남한의 적극적 군비감소를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정부는 남한에게 주한미군 유지비 뿐만 아니라 남한의 국방비를 대폭 올려 지역안보를 담당하는 이른바 역할분담까지 요구하고 있다. 설사 남한이 갑자기 군축을 시행하거나 주한미군철수를 원하고 있다고 해도, 남한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닐 것이다. 남북한 군축에서는 武器移轉을 고려해야 하는데, 남북한에 무기를 공급하는 국가들 간의 협상도 중요하다. 한미방위조약으로 인해 즉 미국의 우산 속에 안주함으로써 남북한간의 군비경쟁은 지향할 수 있었던 면이 있으나, 미국이 남한에게 역할 분담을 요구하는 이 시점에서는 한미방위조약은 남북한 군비경쟁을 가속화하는 면이 있다. 새로운 防衛體制 구상도 군축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므로 한반도의 군축은 남북한 간의 公式協商 뿐만 아니라 非公式的인 정책과 國內정치와 周邊강대국의 고려 등이 필요하다. 이론적인 바탕을 두지 않은 군축정책 추진은 성공할 가능성이 적을 뿐만 아니라 없었던 게 나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 I. 머리말

현재 한국 국방정책 또는 안보정책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아마 군비통제일 것이다. 많은 연구가 군축의 필요성을 역설하여 왔다. 그러나 군축의 필요성이 군축의 方法論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군비경쟁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軍備競爭요인은 대체로 내부적인 것과 외부적인 것으로 나눈다. 후자는 국가 밖의 요인 예를 들어 타국의 군비증가 등이 자국의 군비증가를 가져온다는 것이며, 전자는 군비증감 정책이 전략적 고려 외에 사회경제적이거나 관료정치적이고 조직과정적인 요소가 개재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차대전 이전에 여러 나라의 해군력 가운데 두번째와 세번째로 큰 해군력을 합한 것만큼 영국해군력을 유지하려 했던 것이나, 미국이 한 대전과 한 지역전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전력을 유지하려 했던 것도 그러한 경우다.

내부적 요인에 대한 대표적인 가설은 軍產複合體 가설이다.<sup>1)</sup> 주지하다시피 이 가설은 국방정책 특히 군비증강정책은 이 집단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는 것이다. 내부적 요인에 대한 기왕의 연구는 사회경제적인 구조적 측면에만 치중해 왔는데, 이러한 사회경제적 구조는 군비경쟁의 직접 원인 또는 동인이라기 보다 狀況的 條件에 해당되는 事後的 說明을 위한 것이다. 그것들의 중요성은 당연하나, 남북한처럼 당장 군축시행을 검토하고자 하는 국가에게는 실용성이 적다. 군비경쟁의 외부적 요인으로서 군비경쟁을 세계체제적 차원에서 보는 것도 타당성은 있으나 군축의 방법론적 고려에서는 의미가 적다. 왜냐하면 남한이 국제체제 자체를 바꾼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短期的인 실용성을 위해서는 좀 더 미시적으로 協商戰略的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 내부적 요인으로 흔히 베노이트 가설과 총 對 버터의 논쟁 등을 드는

---

1) Carroll W. Pursell, Jr., ed., The Military-Industrial Complex(New York : Harper and Row, 1972) ; Sam C. Sarkesian, ed., The Military-Industrial Complex : A Reassessment(Beverly Hills, CA : Sage, 1972) ; Steven Rosen, ed., Testing the Theories of the Military-Industrial Complex(Lexington, MA : Heath, 1973) ; Miroslav Nincic, The Arms Race : The Political Economy of Military Growth(New York : Praeger, 1982).

경향이 있는데, 본래의 논의는 군비경쟁의 결과로서 시작된 것이지 군비경쟁의 원인으로 언급된 것은 아니다.

군축의 실패를 살펴본다면 意圖的인 군축전략에 의해 군축이 실현된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다. 역사가들은 군축을 어떤 특정한 군축 방법론보다는 事件에 귀속시켜 왔다. 예컨대 폴 케네디는 영국과 프랑스의 해군력 경쟁은 1850년대 초반에 크리미아 전쟁에서의 대 러시아 공동전선으로, 1860년대 전후에는 멕시코와 프러시아 문제로, 1890년 전후에는 독일문제 등으로 해결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sup>2)</sup> 최근의 미소 군축도 소련의 고르바초프 등장 또는 소련 내의 경제적 문제 등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경제적 환경의 변화와 같은 사건은 사후적인 설명일 뿐이지 사전적으로 그러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군축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또 사건은 원인으로 볼 수도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인위적이지 못하다. 의도적이라면 이미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반도 군축도 군축에 유리한 사건이 일어나기만을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으며 나름대로의 방법론을 모색해야 한다. 더구나 1950년대 미소 군축협상처럼 쌍방이 군축의 일반원칙에 합의하는 경우에도 군축조약이 체결되지 않을 수 있다. 남북한은 조만간에 군축의 필요성을 공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축의 성사는 대체로 시간에 비례하는데, 군축 방법론에 대한 이해는 그러한 시간을 단축해 주며, 군축이론에 대한 무지는 사건이 아닌 순수한 방법론이 결정하는 군축 성공의 폭도 얻지 못한다.

이러한 협상전략적인 측면에서 군축의 방법론을 제안한 것도 적지 않다. 라이트는 군축의 조건으로 전쟁의 종결, 무기의 기술적 폐용, 정치적 적대감의 전환, 새로운 안보관계등을 제시하였다.<sup>3)</sup> 위이트는 군축의 세 가지 전략으로, 최소한의 억지력을 보유한 채 일방적으로 군비감소를 하는 것, 상대방의 상응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급속히 군축을 하는 것, 상대방의 상응을 위해 다른 국가나 기구를 통해 다자적 군축을 하는 것 등을 들고 있다. 억지력을 보유한 채 일방적 군축의

2) Paul Kennedy, "Arms-Races and the Causes of War, 1850-1945," in Paul Kennedy, ed., Strategy and Diplomacy, 1870-1945(London : Allen & Unwin, 1983), pp. 163-177.

3) Quincy Wright, "Conditions for Successful disarmament,"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7(September 1963).

대상으로는 군구조 변경, 전략군 감축, 비핵화, 공격용 무기의 방어용으로의 대체 등이 있으나, 그 효능에 있어서 협상을 통한 군축이 불가능할 때 말고는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sup>4)</sup>

다운스, 록과 시버슨도 군비축소의 전략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 공격용 무기를 방어용 무기로 대체하는 등의 일방적(unilateral) 전략과, 호혜주의와 같은 묵시적 흥정(tacit bargaining), 공식적 군축회담과 같은 협상(negotiation) 등이다.<sup>5)</sup> 남북한 군축을 위한 전략도 이와 비슷하게 나눌 수 있다. 물론 군축을 하고자 하는 국가는 하나의 전략만을 고집하지도 않으며 그럴 필요도 없다.

---

4) Robert S. Woito, To End War : A New Approach to International conflict, (New York : Pilgrim Press, 1982), rev. ed. of : To End War by Robert Pickus, 3rd ed., 1970.

5) George W. Downs, David M. Rocke, and Randolph M. Siverson, "Arms Races and Cooperation," World Politics, vol. 38(October 1985), pp. 118-146.

## II. 一方的 減縮

일방적 군축전략에는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防衛同盟 형성이다. 이는 군사비 지출의 증가없이 안보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남북한의 군축도 동맹형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능할 수 있다. 동북아 평화체제나 새로운 동북아 정치협력체 형성이 남북한 군축의 한 전략이 될 수 있다.

두번째의 일방적 전략은 情報의 습득과 제공이다. 상대방에게 자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상대방의 오판을 막음으로써 또 다른 군비증가를 가져오지 않고 안보수준을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남한이 군비감소를 하면서 북한에게 이를 확신시킬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오히려 북한으로 하여금 군비감소와 도발억제를 하게 하는 면이 있다.

세번째로 들 수 있는 일방적 군축전략은 공격용 무기가 아닌 防禦用 무기에 전념하는 것이다. 공격력을 방어력으로 대체하는 것은 저비스에 의해 자주 언급되어 왔는데,<sup>6)</sup> 이는 상대방의 안보수준을 감소시키지 않고 자국의 안보수준을 증가시키려는 것이다. 공격용 무기의 방어용 무기로의 대체는 상대방 공격용 무기의 한계효용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이는 상대방 공격용 무기의 감축을 가져온다는 말이다.

그러나 일방적 군축이 전쟁이 아닌 군비경쟁 자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이와 상반된 가설이 존재한다. 즉 서로 정복하고 싶은 의도가 내재해 있는 경우처럼 상대방의 공격력이 감축되었을 때야말로 상대방에게 어떤 요구를 해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군비증가를 더 한다는 것이다. 안보수준은 억지력에 크게 의존하며, 그 억지력은 2차공격력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공격력을 상쇄하는 방어력이 상대방의 안보수준을 감소시키지 않는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더구나 공격무기와 방어무기의 구분이 어렵다는 점에서 그 적실성이 적다. 상대방의 대 군사시설 공격 또는 방어에도 남을 수 있는 최소한의 대민간용 공격무기가 불신관계에 있는 국가 간의 전쟁억지에는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報復공격의 신빙성을 증진시키고 상대방의 先制공격 동기를 줄이고 誤判을

6) Robert Jervis, "Cooperation under the Security Dilemma," *World Politics*, vol. 30 (January 1978), pp. 167-214.



줄이는 것이 일방적 방안의 핵심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들 수 있는 일방적 전략은 명령통제기능의 강화와 목표물 수의 감소, 그리고 선제공격 포기의 선언 등이다.<sup>7)</sup> 남북한도 전투사령부가 덜 취약하도록 좀 더 기동성이 있는 예컨대 이동사령부화될 필요도 있다. 이러한 일방적 방안은 경제적 비용이 드는 단점이 있으나 쌍방이 동시에 합의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은 공식적 협상보다 크다.

---

7) Bruce D. Berkowitz, Calculated Risks : A Century of Arms Control, Why It Has Failed, and How It Can Be Made to Work(New York : Simon and Schuster, 1987).

### Ⅲ. 默示的 相互主義 軍縮戰略

묵시적 흥정은 협상 또는 합의없이 군비통제를 하는 것인데, 報償報復의 전략으로 일컬어진다. 공식적 협상과 달리 정상회담, 조약체결, 비준 등이 필요없다. 이 방법론은 군축의 필요조건이 자비가 아니라 利己心으로 본다. 여기에는 GRIT (graduated and reciprocated initiatives in tension-reduction)와 TFT(tit-for-tat)의 두 가지로 발전되어 왔다. GRIT의 구체적 방법론은 오스굿<sup>8)</sup>에 의해 상세히 언급되고 있다. 먼저 일방적으로 군비감소를 하되 핵보복력과 재래식 방어력을 유지해야 하며,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보복보답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긴장완화를 위한 일방적 감축도 긴장완화를 위한 의도적인 정책이라고 미리 공표되고 그에 상응하는 상대방에 대한 요구를 분명히 해야 하며, 그 일방적 시행은 검증이 가능한 분명한 것이어야 하고, 상대방의 즉각적인 반응이 없더라도 일정기간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티포테전략은 액셀로드<sup>9)</sup>에 의해 강조되어 왔다. 이는 상대방이 군비감소를 하면 다음에 자국도 감소를 하고 상대방이 군비증가를 하면 다음에 자국도 증가를 하는 전략이다. 셀링과 령은 묵시적 흥정으로 성공한 미소간의 군비축소의 여러 예를 보여준 바 있다.<sup>10)</sup> 영국이 19세기에 프랑스와 해군력 경쟁을 할 때와 20세기 초에 독일과 군비경쟁을 할 때에도 보복적 군축전략을 사용했다. 묵시적 흥정은 일방적 전략과 달리 상대방의 행위에 따라 자국의 행동도 결정되며, 일반적

8) Charles E. Osgood, An Alternative to War or Surrender(Urbana, IL :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62) ; Alan Newcomb, ed., GRIT, I and II (Peace Research Reviews, 1979).

9) Robert Axelrod, The Evolution of Cooperation(New York : Basic Books, 1984) ; Kenneth A. Oye, ed., Cooperation Under Anarchy(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6).

10) Thomas Schelling, "Reciprocal Measures for Arms Stabilization," in Donald Brennan, ed., Arms Control, Disarmaments, and National Security(New York : George Braziller, 1961) ; Russell Leng, "Reagan and the Russinans : Crisis Bargaining Beliefs and the Historical Record,"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78(June 1984), pp. 338-355 ; Kenneth Adelman, "Arms Control with and without Agreements," Foreign Affairs, vol. 63(Winter 1984/85), pp. 240-262 ; George Bunn and Rodger A. Payne, "Tit-for-Tat and Negotiation of Nuclear Arms Control," Arms Control, vol. 9(December 1988), pp. 207-233.

협상과 달리 대화가 별 필요없으며 어떠한 공식적 합의라는 것이 없다. 공식 협상이 다른 이슈와의 연계를 강조한다면, 묵시적 흥정은 현재를 미래와 연계시킨다. 물론 제3자나 국제기구를 통해서 보상보복을 할 수도 있다. 군축조약을 목표로 한 공식적 협상은 질질 오래 끌 가능성이 크고 전제조건이 문제가 있으며 변화수용이 느린 단점이 있으나, 묵시적 흥정은 이를 극복한다.

7.4 남북한공동성명과 같은 남북한간의 공식적 합의가 있었던 적도 있지만, 기왕의 남북한 관계는 묵시적 흥정 관계로 일관했다. 예를 들어 한 쪽이 휴전협정을 위반하는 도발을 하면 상대방도 그에 준하는 보복을 하는 것이 관례로 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남북한 군축 문제는 묵시적 흥정으로만 하기에는 너무 변했다.

상호주의적 방법론에 대한 비판도 많다. 먼저 군축에 대한 共同利益이라는 것이 없을 때 묵시적 흥정에 대한 동기는 없다. 군축에 대한 남북한의 공동이익이 존재해야 보상보복 전략이 군축을 가져올 수 있다. 또 메아리효과처럼 티포태 전략은 군비경쟁을 가속화시킬 수도 있다. 그리고 액셀로드의 실험은 협조나 비협조나라는 양자택일적 선택을 강요받지만, 실제 군축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전략의 선택이 양자택일적이지 않을 때 이는 배신당하는 위험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군축이슈에서의 티포태 전략의 적실성을 줄인다. 액셀로드가 말한 미래에 대한 고려 비중(shadow of future)도 쌍방이 같은 것은 아니다. 남북한 최고책임자나 군축정책담당자의 실질적 임기는 체제가 다르고 정치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같지 않다. 북한의 임기가 남한에 비해 훨씬 긴 것은 남북한 협조를 위해서는 바람직한데, 남한도 이에 준하기 위해 정권과 독립된 군축추진기관이 필요하다. 단기적 임기는 건수 위주의 전시행정이 되기가 쉽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비판은 不確實한 상황에서는 티포태 전략이 먹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묵시적 흥정에는 정보 수준이 중요하다. 정보의 정확성은 군비경쟁 또는 군축에서 군축을 혼자 시행한 국가가 군비경쟁에 다시 뒤떨어지지 않도록 하는데, 이는 게임을 일회가 아닌 반복된 것으로 만든다. 액셀로드가 행한 컴퓨터 실험은 상대방에 대해 선입관없이 대하지만, 남북한은 오랜 불신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느 일방이 먼저 협조 즉 군비감소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또 군비감소를 상대방이 군축의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읽는 보장은 없다. 만약 군비감소의 이유를 쇠약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더 많은 요구를 할 수도

있다. 다운스와 록<sup>11)</sup>은 상대방의 동기, 전략, 해석 등에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큰 군비감소에 대해 상대방이 반응할 것을 어느 국가도 확신하지 않으며, 상대방도 소규모의 군비감소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묵시적 흥정은 깨지기 쉬운 군축전략이며, 이는 좌절과 군비경쟁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굿비<sup>12)</sup> 같은 이는 묵시적 흥정이 이론적으로 안정된 군사력 균형을 가져오지만, 실제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주장한다. 묵시적 흥정만이 군축의 유일한 방법론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묵시적 흥정은 공식적 협상이 갖는 대부분의 문제점을 내포한다는 것이다. 체결되어 명분화된 조약만이 효과를 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방적이거나 묵시적인 감축만으로 군축의 목적을 이루기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묵시적 흥정은 공식 조약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

11) George W. Downs and David M. Roache, "Tacit Bargaining and Arms Control," World Politics, vol. 39, no. 3(April 1987), pp. 297-325; Matthew Evangelista, "Cooperation Theory and Disarmament Negotiations in the 1950s," World Politics, vol. 42, no. 4(July 1990), pp. 502-528.

12) James E. Goodby, "Can Arms Control Survive Peace?," Manuscript(1990).

#### IV. 公式的 軍縮協商

공식적 協商은 라이파<sup>13)</sup>가 언급해 왔는데, 남북한 간의 직접적인 군축협상 뿐만 아니라 한반도 군축에 관한 다자간 협의체도 이 범주에 속한다. 과거의 군비통제 협상은 하찮고 질질 끄는 인상을 주어 왔으며, 합의에 대한 관리 또는 감독의 문제로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못했다.

공식적 협상의 효과를 위해 몇가지를 유의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 먼저 協商의 主體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이다. 군축협상에서 제한된 책임과 권한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최고통수권자 직속의 전권기관에 의해 추진되어야 한다. 남한 행정부 내에서도 군비통제는 통일원, 외무부, 국방부, 청와대, 안기부 등에 분산되어 있다, 국회 역시 군비통제에 대해 발언하는 의원들이 있다. 국방위원회 뿐만 아니라 여타 여러 위원회들도 관련되어 있다, 기본적인 계획은 전권기관에 의해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협상이 이미 시작된 후에는 고위급이 아닌 하위급 수준에서 집행되어야 여론이나 정치적 목적에 영향받지 않는다.

군비통제 문헌에서는 檢證(verification)과 監視(monitoring)는 구별되는데, 감시란 정보수집의 기술적 과정을 말하며 검증이란 군비통제 합의의 위반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검증은 상대방의 의도적 위반을 판단하거나 감내할 결정을 하는 정치적 감시이다. 정보기관과 군사기관은 자료수집에 해당하는 감시는 수행할 수 있으나 자료를 해석하거나 조약위반을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한다. 굿비<sup>14)</sup>와 같은 학자는 사찰에 필요한 예산과 인원이 엄청나게 늘고 있는데, 바로 감축의 대상인 국방부에서 군축관리의 많은 부분을 주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다음으로는 어떠한 군축조약이 실현 용이한가 하는 문제이다. 군축협상의 첫 단계는 그 군축조약이 제한할 대상의 單位에 합의해야 하는 것이다. 예컨대 워싱턴 군축조약의 단위는 선박의 톤수였으며 2차대전 이후의 주요 군축조약의 단위는 발사 대수였다. 단위가 분명한 조약은 타결이 비교적 용이할 것이다. 버코비

13) Howard Raiffa, The Art and Science of Negotiation(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1982).

14) James E. Goodby, op. cit.

츠<sup>15)</sup>는 군비통제조약이 타결되기 위해서는 아주 簡單해야 하며, 檢證도 용이해야 하며, 합의로 예상되는 특히 상대방의 違反으로 인한 損失이 적어야 하며, 그 조약으로 인해 당사자 모두 利得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군비 통제조약은 하트라인 협정, 선제공격 포기 조약, 첩보허용 조약, 화생방무기 금지 조약 등을 들 수 있는데, 남북한 군비통제도 먼저 이러한 조약을 협상할 필요가 있다.

공식적인 군축협상은 최근의 동서간의 군축 실현으로 그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데, 이 또한 군축에 대한 共同的 利益이 없으면 그 의미가 준다. 그러나 다운스, 룩, 시버슨은 군축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경우에도 공식적 협상만이 다른 이슈와의 연계로 군축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나, 묵시적 흥정은 전혀 역할을 못하고, 일방적 전략은 부분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 종종 군비경쟁 중인 국가에게 경제제재를 통해 군축을 끌어들이고 있다. 최근 소련에게 군축의 댓가로 경제원조를 제공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이다. 즉 공식협상은 군축 이슈를 다른 이슈와 연계함으로써 게임을 더욱 협조유발적으로 만들 수 있다.

무기체제간 또는 이슈간의 連繫는 합목적적 선택 이론학과에서 누차 강조되고 있는데, 다운스, 룩, 시버슨은 협상으로 인해 군축이 실현된 예로 1922년의 워싱턴해군조약과 SALT를 들고, 이슈의 연계 부족으로 실패한 예로 1899년의 1차 헤이그 회의를 든다. 헤이그 회의에서 무기제한 협상은 다른 이슈와 철저히 분리되었으며, 각국의 대표는 정치, 경제 또는 영토적 이슈에 아무런 권한도 없는 군사전문가였다. 각국 대표의 제한된 위임은 협상진전을 불가능하게 했다. 이러한 점에서 남북한 일방이 상대방을 군축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비군사적 수단이 중요하다. 남한이 군축협상에서 북한을 통제하기 위해서 미리 경제적 교류 등을 가질 필요가 있다. 경제원조도 주다가 안 주면 하나의 제재가 될 수 있다. 남북한 접촉이 많은 것이 없는 것보다 훨씬 군축을 가져오기가 용이하다. 즉 민간인을 포함한 많은 남북교류가 있어야 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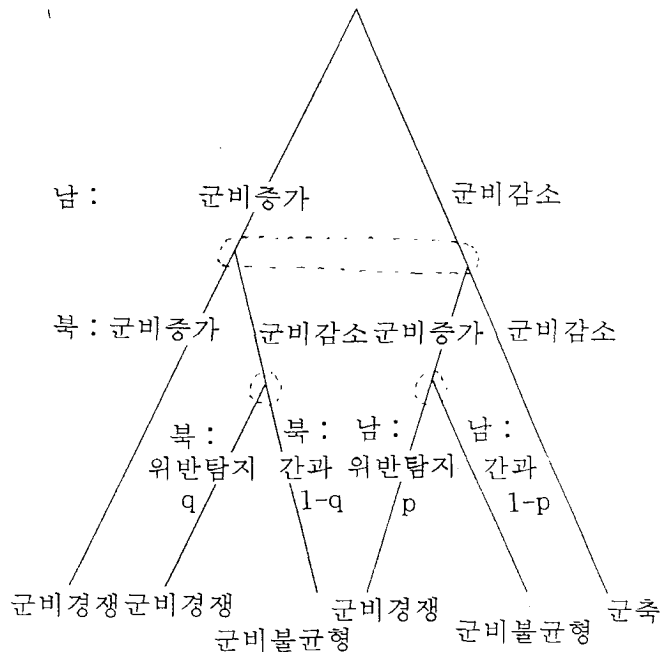
15) Bruce Berkowitz, *op. cit.*

### V. 檢證과 軍縮의 成功

군비경쟁은 일방적인 감축보다 군비경쟁을 선호한다는 조건만 있으면 군비경쟁은 성립된다. 이러한 가정을 내포한 군비경쟁 모델을 만든 많은 학자들은 군비축소는 군축합의의 違反을 探知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고 한다. 물론 감시에만 그쳐서는 안된다. 위반에 대한 적절한 對應이 없다면 감시 능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sup>16)</sup> 위반 탐지시 보복 또는 합의번복을 확신시켜야 군비통제의 합의가 잘 지켜질 수 있다.

근래에 와서는 군비증감의 선택을 단순히 증가나 감소나 라는 양자택일적 선택을 강요하지 않고 순차적인 여러 결정들을 수많은 대안 가운데 선택하는 복잡한 모델을 이용하고 있다. 군비증가나 군비감소나 라는 두 가지 선택만을 가지고 있는 모델은 현실을 너무 단순화시키는 약점을 갖고 있으나, 설명의 간편성은 이 글의 목적과 부합하므로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글에서 원용하기로 한다.

그림1. 검증과 군축



16) Fred Charles Ikle, "After Detection, What?" Foreign Affairs (January 1961).

전형적인 군비경쟁 모델은 죄수의 딜레마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 게임에서는 각국이 상대방이 군비축소를 할수록, 자국이 군비증가를 할수록 선호하며, 쌍방이 군비경쟁을 하는 것보다 쌍방이 합의하여 군축을 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 아래의 전개형게임에서 각국은 군비증감여부를 결정한 후 각기 상대방의 협정위반을 발견할 가능성  $p, q$ 를 가진다.<sup>17)</sup>

설명의 편의상, 군비경쟁의 효용은 각자  $-15$ , 군축의 효용은  $+5$ , 일방적 군사력 우위는  $+10$ , 군사적 열세는  $-20$ 이라고 가정하자. 위 그림은 아래의 정상형 게임으로 표시될 수 있다.

표1. 군비증감과 득실

		북 한	
		군비증가	군비감소
남한	군비증가	$-15, -15$	$10 - 25q, 5q - 20$
	군비감소	$5p - 20, 10 - 25p$	$5, 5$

17) Steven J. Brams, Morton D. Davis, and Philip D. Straffin, Jr., "The Geometry of the Arms Race,"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23, no.4(December 1979), pp. 567-588 ; Raymond Dacey, "Detection and Disarmament : A Comment on The Geometry of the Arms Race,"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23, no.4(December 1979), pp. 589-598 ; Steven J. Brams, Morton D, Davis, and Philip D. Straffin, Jr., "A Reply to 'Detection and Disarmament,'"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23, no.4(December 1979), pp. 599-600 ; Raymond Dacey, "Detection, Inference and the Arms Race," in Michael Bradie and Kenneth Sayre, eds., Reason and Decision, Bowling Green Studies in Applied Philosophy, vol. III-1981(Bowling Green, OH : Applied Philosophy Program, Bowling Green State University, 1982), pp. 87-100 ; Steven J. Brams, Superpower Games : Applying Game Theory to Superpower Conflict(New Haver : Yale University Press, 1985) ; R. Harrison Wagner, "The Theory of Games and the Problem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77, no.2 (June 1983), pp. 330-346 ; Steven J, Brams, Morton D. Davis, and Philip D. Straffin, Jr., "Comment on Wagner, The Theory of Games and the Problem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78, no. 2 (June 1984), p. 495.



위의 가정에서는 상대방의 군축합의 위반을 완벽하게 탐지하지 못하면 군비경쟁은 늘 가능하다. 위의 예에서 상호 군축이 되기 위해서는 위반을 탐지할 가능성이 양쪽 다 2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만일 한 쪽만 거의 완벽한 탐지체제를 보유하고 다른 한 쪽은 그러한 능력이 거의 전무한 경우는 군비경쟁을 가져온다. 즉 군비축소는 쌍방이 모두 일정 규모의 검증 능력을 가져야 한다. 과거 미소간의 SALT협정시 미국 정부관리는 소련에 대한 정찰이 정확하기 때문에 소련과 군축협정을 맺는다고 한 바 있다. 지금도 잠수함 정찰 등은 군축의 중요한 부분이다.

브람스는 정찰 결과 상대방이 군비감소를 하는 것으로 나오면 군비감소를 하고 군비증가를 하는 것으로 나오면 자국도 군비증가를 하기 때문에 쌍방이 군비감소를 할 확률은 각각  $p$ 와  $q$ 라고 가정한다.<sup>18)</sup> 남한의 기대득실은  $pq(5)+p(1-q)(-20)+(1-p)q(10)+(1-p)(1-q)(-15)$ 이며, 북한은 기대득실은  $pq(5)+p(1-q)(10)+(1-p)q(-20)+(1-p)(1-q)(-15)$ 이다. 남한의 기대이익은  $q$  즉 북한의 탐지능력이 증가함에 따라 커지며, 북한의 기대이익은  $p$  즉 남한의 정찰능력이 증가함에 따라 커진다. 그러므로 남한의 합의 위반에 대한 北韓의 探知능력향상은 북한으로 하여금 합의를 지키게끔 하기 때문에 南韓의 利益에 도움이 된다. 마찬가지로 남한의 정찰능력향상은 북한에게 유리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남한의 國防資料公開도 남한의 안보에도 도움이 된다. 정보의 미공개는 모험주의자로 하여금 모험을 걸 동기를 부여한다. 더구나 民主主義를 추구하는 남한으로서는 국내적인 면과 대북적인 면 어느 면에서도 국방자료의 공개를 서둘 필요가 있다.

또 남북한의 기대이익은 자국의 정찰능력 각각  $p$ 와  $q$ 에 반비례한다. 이는 상대방이 군비감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잘못 탐지하여 자국이 군비증가를 하는 데에서 오는 이득 때문이다. 정찰이 정확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군비감소를 할 동기가 감소한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미소군축협상에서 공동의 정보체제가 제안된 바 있다. 즉  $p$ 와  $q$ 를 동일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는 군축용어로 '技術的

18) 이 가정에 대한 논쟁은 바로 앞의 주에 인용된 문헌을 참조할 것. 엄밀하게 말하자면 상대방이 군비감소를 했는데 이를 잘못 탐지한 착오와, 군비증가를 군비감소로 판단한 착오의 두 가지가 구분되어야 한다.

檢證手段'으로 불리운다. 이 경우에는 검증이 정확할수록 기대이익은 증가하기 때문에 군축의 가능성은 커진다.

군축의 역사에서 隱蔽와 探知간의 기술 경쟁은 역전에 역전을 거듭해 왔다. 군축조약은 체결 당시에는 조약 하나로 많은 종류의 무기와 화력을 통제할 수 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조약의 제한을 받지 않는 새로운 무기의 발달을 가져온다. 그래서 군비통제조약을 농부가 농약치는데 비유하여, 군비통제조약이 장기적으로는 실질 군축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sup>19)</sup>

그렇지만 현재까지의 技術 發達은 세상을 더욱 공개적으로 만드는데, 기술과 더불어 발달하는 검증능력이 실제 미소군축협상에서 효과를 발휘한 예는 허다하다. 미소 간의 군축협상에서 자국의 검증능력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검증능력의 향상도 배려하고 있다. 물론 자국의 정보를 적국에게 제공하는 것은 기습공격 또는 예방전쟁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내에서이다. 확실한 2차공격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등의 사실은 알려주는 것이 전쟁을 억지한다.

앞의 예에서 효용치를 -20, -15, 5, 10으로 가정했는데, 이 치수에 따라 군축의 가능성도 달라진다. 상대방에 속는 부담이 아주 큰 경우는 군비경쟁을 해서라도 그러한 위협을 피하려고 하지 조건부 군축이니 하는 것은 시도하지 않을 것이다. 탐지능력이 커질수록 기대득실도 무조건 커지는 것이 아니라 기대득실은 정확한 검증능력과 포물선의 관계를 갖는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조건부적 군축은 군축의 이득과 군비경쟁의 비용, 그리고 검증능력이 크면 클수록 가능해진다.

그런데 브람스가 주장한 또 다른 결론은 군축의 이득보다 軍備競爭의 費用이 조건부 군축을 할 가능성에 더 중요하다는 점이다. 군축의 이득과 군비경쟁의 비용은 동전의 양면이나, 그 비중은 다르다는 것이다. 남북한의 군축도 군비경쟁의 비용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일 때 가능하다. 어찌면 남한은 군비경쟁의 비용에 대한 부담을 군축을 하기에는 너무 적게 느끼고 있을지도 모른다. 아마 미국의 대한 통상압력 등은 남한으로 하여금 안보에 대한 비용 즉 군비경쟁의 비용을 상대적으로 더 느끼게 할 것이다.

브람스는 군비경쟁의 비용을 증대시키는 아주 좋은 방법은 研究開發에 대한 투자라고 한다. 연구개발투자는 기술의 약진을 가져와, 현 무기체제를 구식으로

19) Bruce Berkowitz, *op. cit.*

만들며 무기체제비용을 비싸게 한다. 현재의 미소간의 군축도 ‘별들의 전쟁(SDI)’이라고 불리는 첨단기술로 인한 비용의 상승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sup>20)</sup> 미소군축이 어느 정도 실현을 본 부시행정부에 와서는 SDI계획이 중단되었는데, 대소 관계의 변화에 따라 재추진할 가능성은 크다. 남한이 연구개발투자 등에 과감한 투자를 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보다 군축에 적극적으로 나오게 하는 것도 확실한 억지체제를 유지해야 하며, 북한으로 하여금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하여 예방전쟁을 일으키게 해서는 안된다.

국제정치 특히 군사정책에 있어 국가는 평화를 사랑한다는 도덕적 이유보다는 피부로 느끼는 費用의 부담 때문에 군축에 임한다. 세계사에 있었던 군축의 대부분도 비용 때문에 군축에 임했지 적대국을 목전에 두고 평화에 대한 갈망이 군축합의를 가져온 것은 아니었다. 현재 남북한 군축을 안보 목적상으로만 논의하고 있는데, 남북한 군축도 안보 차원보다 비용절감적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성공 가능성이 크다. 남북한의 군축은 도덕적 또는 이상적 접근보다 더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

20) SDI(Strategic Defense Initiative)는 선제공격을 실시한 후 반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1972년의 ABM협정에 위반된다고 소련은 주장하고 있다. 이는 부시행정부에 와서 GPALS(Global Protection Against Limited Strikes) 개념으로 대체되었다.

## VI. 不確實性과 軍縮의 成功

군비경쟁에 관한 과거의 게임이론 모델은 모든 행위자가 모든 것을 다 아는 즉 完全한 情報水準(perfect and complete information)을 가정했다. 최근의 모델은 이 가정을 무시하고 발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오인과 군비경쟁과의 관계가 종종 언급되고 있다. 정보수준이 완전할 때 당연히 군축이 실현되는 것도 정보수준이 완전하지 않을 때 군비경쟁을 가져올 수가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대상은 상대방 選好度, 상대방의 軍備增減, 軍縮決定의 施行與否 등이 있다. 예를 들어 남북한 쌍방이 자국이 군사적으로 유리한 것보다 군축이 되는 것을 선호하여도 이를 알지 못하면 군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며, 남북한이 서로의 군사력을 몰라서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자국의 군사력을 준비하는 것이 남북한의 군비경쟁을 가속화시킬 수 있으며, 군축을하기로 정책결정자가 결정해도 정확하게 시행되지 않아서 군축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경험과 이념대립에서 오는 先入觀은 불확실성의 한 요인이다. 1950년대 미소간의 군축이 실패한 것도 텔레스 장관의 대소 선임관으로 인해 미국이 소련의 의도를 정확하게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남한이 군비통제적 목적으로 무기체계를 바꾸는 경우에도 북한이 오히려 이를 군비증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현재 남한정부가 많은 군사제도의 변화를 꾀하고 있는데, 북한이 ‘最惡의 경우’ 시나리오에 따라 이를 군비경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다.

남북한 군축에 대해 비관적으로 보는 많은 사람들은 북한은 신뢰할 수 없으며 협정을 맺는다 해도 그 준수는 기대할 수 없으며 결국 남한만이 손해볼 것으로 본다. 실지로 남북한의 군축정책 담당자는 상대방 국가에 대해 극심한 不信感을 갖고 있는데 이의 변화 없이는 군축도 어렵다. 설혹 일방이 진정으로 군비감축의 신뢰를 보내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다. 정책담당자가 아닌 일반 국민도 북한이 남한보다 우위에 설려고 하는지 아니면 상호군축을 진정 원하는지 전혀 모른다. 일반개인과 마찬가지로 정책결정자도 자국의 공격적 행위는 할 수 없이 하는 것인데 반해 상대방의 공격적 행위는 본래 원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남북한의 국가목표 뿐만 아니라 남북한 군사력 비교에 대한 불확실성도 존재한다.

다운스, 록, 시버슨<sup>21)</sup>은 이러한 不確實性이 일방적 전략을 불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묵시적 흥정의 성공 가능성도 줄인다고 한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또는 계산에 의하면, 완전한 정보하의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의 군비축소로 시작한 티포태 전략은 군축을 100% 가져오나, 상대방의 행위를 잘못 해석할 확률이 1%만 되어도 군축의 가능성은 25%밖에 안된다. 물론 여전히 티포태 전략이 가장 큰 군축가능성을 보였다. 공식적 협상도 쌍방이 상대방으로부터의 양보를 위해 강한 입장을 제시하면 그 협상이 없었으면 없었을 더 과도한 군비경쟁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불확실성 또는 誤認이 軍備競争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는 것은 국제정치이론에서 밝혀진 사실인데, 부에노 드 머스퀴타 교수와 롤만은 敵對的 의도가 군비경쟁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sup>22)</sup> 오히려 서로 상대방이 군축을 원하고 있다고 아는 사실이 군축을 저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협상 또는 흥정에서 상대방의 양보를 얻을려고 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상대방의 군축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확실성은 군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직관적인 생각이다. 상대방은 군비감소를 했는데 군비증가를 한 것으로 여기면 자국도 군비증가를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행위자의 선호도가 비슷한 대칭적인 게임에서는 불확실성이 군비경쟁을 조장하는 경향이 있으나, 서로 다른 선호도 또는 국가목표를 갖고 있는 경우는 불확실성 또는 오인이 오히려 군비경쟁을 막을 수 있다.

유럽에서 信賴構築이 언급될 때 억지의 개념과 자주 대비되었었다. 억지는 상대방이 헛점만 있으면 공격하겠다는 의도를 전제하나, 신뢰구축은 그러한 의도가 없으니 이러한 오해를 풀자는 것이다. 군축에서 말하는 신뢰구축의 근본 취지도 여기에 있다. 이 신뢰에는 스스로 방어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자기신뢰와 상대방이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상호신뢰의 두 가지가 있는데,<sup>23)</sup> 어설픈 신뢰구축

21) George W. Downs, David, M. Rocke, and Randolph M. Siverson, *op. cit.*

22) Bruce Bueno de Mesquita and David Lalman, "Arms Races and the Opportunity for Peace," *Synthese*, vol. 76(1988), pp. 263-283.

23) Jonathan Alford, ed., *The Future of Arms Control III : Confidence-building Measures*. Adelphi Paper, no. 149(London : IISS, 1979).

조치로 자신도 방어능력이 없으며 상대방의 의도는 침략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반도 군축의 논의에서 신뢰구축이 종종 강조되어 왔다. 정치적 신뢰구축이 긴장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되나, 현재의 상황에서 군사적 신뢰구축의 중요성은 오히려 오도되고 있다. 본래 군사행동의 제한, 사전예고, 초청, 현장조사 등의 軍事的 信賴構築의 목적은 상호 진정한 의도가 평화적일 때 상호 오판되지 않도록 장치하자는 것인데, 작금의 남북한 관계처럼 상대방에 대한 진정한 의도가 호의적이라고 보기가 힘든 경우는 불확실성과 오인을 줄여 보겠다는 군사적 신뢰구축은 평화에 별로 도움이 안될 수도 있다.

## VII. 맺 는 말

이상에서 군축의 방법론을 논의했는데, 몇 가지 부연할 것이 있다. 군축의 방법론으로서의 非公式的 방법론을 언급한 이유는 그것이 가장 좋다는 의미는 아니다. 현재 남북한 군축의 방법론으로 공식적 협상만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반론으로 묵시적 흥정과 일방적 정책도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버코비츠와 같은 학자는 공식협상보다 일방적 방안이 더 나은 전략이라고 주장하는데, 남북한처럼 아직 불신감이 해소되지 않고 공식협상이 진전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억지적인 면을 고려한 일방적 정책이 필요하다.

남북한 군비통제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긴장완화이다. 그러한 점에서 정치적 신뢰구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런데 남북한의 군비통제가 남북한간의 긴장완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어도, 남북한의 의도 또는 국가선호도에 영향을 준다는 증거는 없다. 더구나 군축조약의 역사를 볼 때 긴장을 줄인 군비통제 조약은 그리 많지 않다. 군비경쟁이 의도와 선호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단지 군비증강과 긴장의 상호작용의 가설로 제시되었을 뿐이지 어떠한 경험적이거나 체계적인 연구는 없다.

실지 안보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군비축소 또는 군사적 신뢰구축이라기 보다 진정한 政治的 葛藤의 유무이다. 이는 대부분의 정치현상은 행위주체의 선호도에 의해 설명된다는 합목적 선택이론과 일맥 상통하는 것이다. 세력전이 이론의 논의에서 언급되듯이, 남한이 계속 군비증강을 하면 북한이 더 늦기 전에 전쟁을 시작하는 예방전쟁의 가능성도 남북한의 정치적 갈등상황에 영향을 받지 단순한 군사력 균형의 역전은 부분적인 의미만을 가진다. 한반도 군축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의 왜 군축이 안되냐 라는 문제에 골몰해 있지만 남북한 쌍방이 아직까지 군축을 아주 갈망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고 있다. 만일 아직 남북한이 진정으로 군축을 원하지 않는다면 왜 군축이 안되는지에 대해 골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최수딜레마 게임으로 군축을 설명하는 이론의 문제점도 각국의 선호도에 대한 가정이 틀릴 수 있다는 점이다. 군비통제협상 당사자의 회고록 등에는 많은 국가들이 군비경쟁을 우려하여 군축협상에 참가하기를 꺼려한다는 것이 드러난다. 남북한의 어느 일국도 자국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군비경쟁의 위협 때문에 군

비통제협상을 주지할지도 모른다.

또 군축의 조건으로 抑止와 均衡은 중요하다. 유럽과 미소간의 군축으로 인해 한반도에도 군축의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지만 한 가지 간과하기 쉬운 사실은 미소간의 군축이 시작되었는데,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미소 군사력의 전략적 균형의 성취와 억지력의 보존이었다.

지금의 남북한의 군비경쟁에서 자국이 열세라고 주장하는데, 만일 하나의 선전으로서가 아니라 정책담당자가 진정으로 그렇게 믿고 있다면, 이의 해결없이 군축은 어렵다. 당연히 자국이 열세라고 생각하는 어느 국가도 군비감소를 할려고 하지 않는다. 남북한이 서로의 군사력을 '최악의 경우'로 상정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 객관적인 평가가 된 후에는 열세인 국가가 급히 균형을 추구하기 때문에 잠시 군비경쟁을 가져올 수 있지만, 이미 균형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군축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軍備統制의 목적은 軍備를 制限하기 보다 무기로 인한 분쟁과 긴장을 줄여보자는 것이다. 즉 辭典的 의미는 武器가 使用되지 않도록 統制하는 것이다. 협상시 군비통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군비통제協商의 목적도 군비통제조약 妥結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협상은 비록 합의가 없더라도 相互 理解에 기여를 한다. 미소군축도 실패한 협상에서의 상호 이해가 오늘날의 협상 타결을 가져온 면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남북한의 군축협상은 비록 타결되지 않더라도 남북한 여러 차원의 접촉을 지속하게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군비경쟁의 내부적 요인은 생략했지만, 군축전략의 하나로 언급할 수 있는 것은 民主主義이다. 특히 북한의 대남전략을 고려할 때 내부결속과 안정을 갖추고 있는 것이 안보에 더없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에 준하는 군사력을 줄일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언급하면, 남북한 무기의 상당부분이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일부 미국학자들은 남한의 적극적 군비감소를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정부는 남한에게 주한미군 유지비 뿐만 아니라 남한의 국방비를 대폭 올려 지역안보를 담당하는 이른바 역할분담까지 요구하고 있다. 설사 남한이 갑자기 군축을 시행하거나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고 있다고 해도, 남한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닐 것이다. 남북한 군축에서는 武器移轉을 고려



해야 하는데, 남북한에 무기를 공급하는 국가들간의 협상도 중요하다. 한미방위 조약으로 인해 즉 미국의 우산 속에 안주함으로써 남북한간의 군비경쟁은 치양할 수 있었던 면이 있으나, 미국이 남한에게 역할 분담을 요구하는 시점에서는 남북한 군비경쟁이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다. 새로운 防衛體制 구상도 군축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므로 한반도의 군축은 남북한 간의 公式協商 뿐만 아니라 非公式的인 정책과 國內정치와 周邊 강대국의 고려 등이 필요하다. 이론적인 바탕을 두지 않은 군축정책 추진은 성공할 가능성이 적을 뿐만 아니라 없었던 게 나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 ◆ 韓半島 軍事爭點의 解決方案 研究

朴洪潤(江陵大)

### 〈要 約 文〉

#### 1. 머리말

南北韓間의 韓半島 葛藤은 多次元的인 갈등으로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는 體制的인 接近方法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研究에서는 남북한의 軍事問題를 세가지 下位體制로 즉 國際體制, 南北韓 國家對立體制, 南北韓 國內體制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로 國際體制에서는 주로 한반도 周邊의 4強의 力學關係속에서의 軍事問題를, 둘째로 南北韓 國家對立體制에서는 남북한간의 對北·對南政策에 의한 作用-反作用의 力學關係를, 셋째로 남북한 國內체제에서는 남북한체제에서 軍部の 역할과 政治·經濟·社會心理的인 要因들이 남북한 軍事문제의 形成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 2. 韓半島 軍事現況과 環境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周邊 4強에 있어 東北亞 및 한반도는 國家利益의 관점에서 중요한 지역으로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地域이라고 하겠다. 이들은 기존의 이익을 옹호하거나 自國의 利益을 極大化하는 방향의 기본적인 정책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고 있으므로 동구와 같은 변화를 기대하지는 않고 있다.

남북한간의 軍事力의 對立을 보면 한국동란 이후 지속적인 正規兵力, 豫備兵力, 武器體制의 競爭을 가져와서 오늘날 한반도의 軍事力은 恐怖의 均衡狀態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軍備競爭을 남북한간의 國防費의 지출이라는 면에서 간접적으로 살펴 볼 수 있다는 면에서 이를 개괄적으로 살펴 보았다.

이와 같은 軍備競爭을 가져온 要因을 보면, 첫째로 國際體制的 要因으로 남한의 미국에 대한 군사적 의존과 北韓의 中國과 蘇聯에의 의존적인 군사체제의 변화가 가져온 남북한간의 군사적인 空白을 채워야 한다는 論理와 北韓으로 하여금 주한미군을 적으로 규정하여 군사력의 증강을 꾀하였고 이것이 南韓으로 하

여금 준비증강을 요구하는 再生産的인 惡循環의 論理 등이 南北韓의 軍備競爭을 자극시켰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南北韓 國家對立體制的인 요인으로는 북한의 호전적인 對南政策, 테러 사건 등, 남한측의 월남파병 및 일련의 한국군 현대화계획 등에 의한 戰力增強計劃이 남북한의 軍事力 增強을 자극했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 남북한 무기체제의 기술적인 작용-반작용 등이 남북한의 軍備競爭을 가속시켰다고 할 수 있다.

셋째로 南北韓 國內體制的인 要因으로는 남북한의 權威主義的인 政治體制,北韓의 무력혁명 이데올로기, 남북한의 經濟成長, 6.25 이후의 單細胞的인 남북한의 反共과 反帝國主義 이데올로기에 의한 社會心理的인 要因이 한반도의 軍備競爭을 強化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 3. 韓半島 軍事爭點問題의 實體

오늘날 한반도의 軍事問題가 종래와는 다른 次元에서 논의되고 낙관적인 관심을 가지게 한 배경으로는 國際體制的인 관점에서 蘇聯의 변혁에서 시작된 東西獨의 統一, 미소의 戰略核武器 減縮協商, 동구유럽의 이데올로기에서의 해방 등의 일련의 체제적인 변화의 영향이 동북아에 까지 미칠 것이라는 희망과, 둘째로 남북한 國家對立體制的인 관점에서 남북한의 유엔 同時加入, 非政治的인 交流의 확대 등의 요인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로 國內體制的인 要因으로는 남한의 民主化, 북한의 世代交替와 경제적인 어려움, 국민의 自覺 등의 요인이 한반도 군사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군사문제 가운데 國際體制的인 성격의 문제로는 오늘날 동북아에서의 군축의 징후보다는 일본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軍事力 增強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한의 軍縮이나 軍備減縮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그 성격이 한반도에 한하지 않고 있는 駐韓美軍과 駐韓美軍의 核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의 비핵지대화의 문제, 남북한의 현상유지적인 군사력을 維持, 保存시키는 데 필요한 남북한 군사력 체제의 국제적인 軍產複合體的인 從屬으로부터의 自律性 확보의 문제 등이 있다.

南北韓 國家對立體制的인 性格이 강한 軍事問題로는 運營的인 차원에서의 軍縮이나 軍備統制의 문제와 信賴構築의 문제가 가장 대립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남한은 선진퇴구축 후군축을, 북한은 先軍縮, 後政治的인 문제의 타결을 요

구하는 등 過程과 結果에 대한 강한 대립을 보여 주고 있다.

한반도의 軍事問題의 해결에 있어서 논의되어야 할 국내체제의 문제는 군축을 부정적으로 보는 軍部の 問題, 軍事力을 체제의 形成과 維持의 基本勢力으로 삼은 정권의 정통성문제, 군축에 대한 불안을 보이는 사회의 保守勢力등의 문제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軍縮이나 軍備統制에 대해 제안을 행한 정책결정자가 이를 군사문제의 해결을 위해서가 아니라 군사문제의 해결을 회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북한 양측의 政策決定者들이 軍事問題를 해결하겠다는 강한 意志가 先行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 4. 韓半島 軍事爭點問題의 解決方案 摸索

본 研究에서는 기존의 南北韓의 軍事問題에 대한 提案이 軍事問題의 해결을 회피하기 위한 성격도 있었기 때문에 解決方案의 摸索은 근본에서부터 다시 언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면에서 微視的인 運營方案을 모색하기 보다는 巨視的인 解決方案 摸索의 定向을 제시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자 하였다.

남북한 군사문제는 단순한 남북한의 문제가 아닌 韓民族과 周邊國과의 문제라는 視角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외에 時觀을 長期的 段階的으로, 남북한의 정치체제의 변화의 틀 속에서 軍事力을 國家의 國力이 될 수도 있음을, 그리고 한반도의 군사문제의 해결에 대한 자주적인 해결의 방안을 위한 틀 속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前提하에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기본 方案을 살펴 보았다.

먼저 國際體制上의 方案으로 동북아의 군사환경 하에서 남북한의 군축이나 군비통제가 韓民族에게 善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시기상으로 東北亞의 環境상 한반도의 軍縮은 이르지 않은가 하는 것도 다시 고려해야 할 代案이다. 또한 군사력은 한 국가의 국력을 상징하게 되고 軍事力은 단순한 적의 침공에 대한 防禦의 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역할을 한다는 면에서 남북한의 군축 보다는 現狀維持의 차원에서 軍事協商은 軍備統制 가운데 적대적인 위협의 감소방안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南北韓 國家對立體制的인 軍事問題의 解決方案은 군사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인 남북한의 통일 이후의 共同防衛體制를 前提로 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협상의 가장 큰 장애물인 상호 對立的인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하여 신뢰구축을 위한 신뢰구축 활동이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는 南北韓은 서로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러므로 모험적인 요인이 내포된 제안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協商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남한측에서는 지금까지 先信賴構築의 方案을 중심으로 한 선언적인 군사문제의 제안에 軍縮의 運營方案에 대한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할 때 문제는 南北韓의 協商問題는 실천시기의 문제로 축소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국내체제적인 軍事問題의 解決方案으로는 무엇보다도 남북한 국민간에 잔존해 있는 대립적인 이미지 해소를 위한 社會教育의 役割이 요구된다. 그리고 군축을 기득이익의 침해로 볼 수도 있는 職業軍人들의 반발을 肯定的인 시관으로 바꾸는 노력이 없이는 이들에 의한 정치적인 불안요인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외에 북한의 體制開放과 남한의 지속적인 民主化의 노력이 軍備協商의 성공의 기본적인 礎石이 된다.

## 5. 맺 음 말

韓半島를 둘러싸고 있는 環境의 變化가 南北韓 군사문제 해결에 다양한 형태의 낙관적인 견해를 제공하고는 있으나 힘과 세력의 場인 國際政治의 場에 있어서 軍縮과 軍備統制가 언제나 좋은 아니며 이것이 없어도 南北韓의 共同의 基本的인 理念인 統一은 達成될 수도 있음을 잊어서는 아니된다.

## I. 머리말

### 1. 研究目的

오늘날 國際秩序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고 있으며 그 변화는 소련 쿠데타의 실패로 극에 달하였다. 이제 世界體制는 政治的 이데올로기적 冷戰의 틀에서 經濟的인 實用主義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세계체제의 변화가 韓半島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체제에 희망만을 가져다 주고 있을 뿐 아직은 급격한 變化의 징후가 보이고 있지 않다. 오히려 中國을 중심으로 새로운 이데올로기 전쟁의 可能性마저 배제할 수는 없다.

세계에서 마지막 이데올로기 對立의 場으로 남아 있는 한반도는 그 對立의 外的인 표현인 南北韓의 軍備競爭으로 긴장은 지속되고 있으며 葛藤의 폭을 넓히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 지속되어 온 남북한의 軍備競爭은 그 存在의 필요 이상으로 확대되어 恐怖의 均衡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南北韓이 當爲的인 국가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統一에 逆行하는 활동으로 명백한 目標의 전치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남북은 지난 45년 이상 동안 이러한 矛盾을 타개하여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위한 기본적인 합의점도 찾지 못하고 지금까지 協商에 공전만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國際體制의 變化는 이러한 남북한의 冷戰 構造에 새로운 희망의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고, 南北韓의 유엔 동시가입으로 變化의 可能性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지금까지 軍備競爭에 의해 安定을 추진한 남북 양측에게 군비경쟁이 한반도의 문제 解決에 善이 아니며 오히려 그 逆이 善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남한측에 있어서 軍事問題는 南北韓 對話의 장에서 소극적이었던 면도 있었던 점은 군사적인 열세라는 측면이 중요한 要因이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軍備增強의 노력으로 軍事協商의 前提인 軍事力均衡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는 면에서 앞으로 남북협상은 보다 實質的인 協商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본질상 군사문제는 政治問題의 표현이며 政治的인 解決을 전제로 완전한 타결을 도출해 낼 수 있는 성격의 문제이다. 고로 本 研究는 軍事問題를 단순한 군사 문제가 아닌 보다 廣義의 政治經濟的인 體制의 틀 속에서 한반도의 군사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시관 속에서 본 연구는 韓半島의 軍事問題를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하여 軍備競爭의 現況과 軍備競爭의 要因을 살펴보고 한반도의 군사문제를 도출하려고 할 것이며, 이어서 한반도의 軍事爭點問題를 보다 具體的으로 규명하여 그 실체를 명확히 하고자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方案을 微視的인 運營管理次元의 解決 方案이 아닌 巨視的인 次元에서 政策定向의 代案을 제시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이는 지금까지의 南北協商이 協商을 실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 宣言的이며 純술적인 것으로 진정한 협상 또는 실현을 위한 협상을 위하여는 기본정향에서부터 새롭게 認識할 필요가 있다는 前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 2. 研究 分析들

한반도의 軍事問題는 남북한 갈등의 外的 表現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남북한 갈등은 “複合的 葛藤”, “多元的 葛藤”,<sup>1)</sup> “長期不規則 葛藤”<sup>2)</sup> 등으로 定義되고 있다. 이러한 多次元的인 葛藤을 보다 體系的으로 인식할 수 있는 分析틀로는 체계적인 접근을 필요로 한다고 하겠다. 이에 본 研究에서는 南北韓의 軍事的인 葛藤을 다음과 같은 세가지 次元에서 分析하고자 한다.<sup>3)</sup>

첫째는 國際體制的 次元이다. 남북한 갈등의 국제체제적인 성격은 韓半島의 分斷과 分斷의 固着化 그리고 葛藤의 심화가 冷戰의 產物이며 그 뒤 多元化된 한반도 주변 4강의 力學關係 속에서 그리고 동북아에서의 勢力均衡의 論理속에 전개되어 왔다는 면에서 南北韓의 軍事問題를 정확히 규명하기 위하여는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체제적인 環境속에서 南北韓의 軍事問題를 살펴 볼 필요가

- 
- 1) Baek Chong-Chun, “The Conflict Interaction on the Korea Peninsula 1948-1978”, *The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Vol. 2 No.2(Fall/Winter 1982)
  - 2) 문정인, “남북한 분쟁연구 총점검 및 새 연구방향 모색”, 양성철 「남북통일 이론의 새로운 전개」(서울: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89), 245-248쪽.
  - 3) 李相禹 교수는 한반도의 갈등을 민족내부의 갈등, 이념적 갈등, 국제갈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상우 「한국의 안보환경 제2집」(서울:서강대학교 출판부, 1987); 한편 Moll and Luebert는 군비경쟁의 분석 모형으로서 군비형성모델(Arms-Building Models)을 다음과 같이 네가지 차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①국제체제수준 ②국가수준 ③정치-관료수준 ④사회심리적 수준; Kendell D.Moll and Geogory M. Lueert, “Arms Race and Military Expenditures Model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24, No. 1(Mar. 1980), pp. 153-185.

있다.

國際政治經濟體制에서 周邊國의 軍事環境과 갈등은 廣義로 강대국간의 관계를 再生産하는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 이 次元에서 중요한 變數로는 남북한의 世界權力의 블럭속에서의 위치와 그 속에서의 軍事同盟, 軍事援助, 武器移轉, 軍事介入, 核擴散, 國際的 성격의 軍産複合體의 영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國家對立體制的 次元으로서 民族主義的 我執이나 當爲論의 측면에서 남북한 양측은 서로를 國家로서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현실적으로 南北은 國家對 國家의 政治, 外交, 軍事的인 대결을 하여 왔다.

이 次元에서 고려되어야 할 요인으로는 대립에 의한 주요 무기체계의 作用—反作用의 모습이 핵심이 될 것이다. 이외에 對南, 對北政策의 변화와 기본적으로 상대에 대한 이미지 등에 대한 分析이 남북한의 군사대결과 對決의 근본적인 요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는 國內體制的 次元이다. 남북한의 갈등은 남북한의 國內 政治, 軍事, 經濟, 社會에 영향을 주었고 이는 다시 남북한의 대립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차원에서 논의될 요인으로는 정치체제 특히 官僚政治的인 要因과 軍産複合的인 요인<sup>4)</sup>, 經濟成長<sup>5)</sup>, 豫算政治의 行態<sup>6)</sup> 등이 있을 수 있고 이외에 社會心理的인 요인도 중요한 요인으로 논의될 수 있으며, 指導者의 퍼스널리티도 그 중요성이 언급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세가지 次元을 중심으로 問題를 규명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나 문제의 성격이 이 세가지 次元이 혼합된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이 세가지 차원으로 問題와 해결 방안을 구분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본 분석틀의 限界로 언급될 수 있다.

그리고 문제해결의 定向으로는 巨視的인 時觀을 가지고 代案을 모색하려고 하였다. 이는 군사문제의 解決이 단시일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해결의 근본적인 方向을 統一韓國에 까지 연결시켜야 한다는 前提下에서 代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4) Bruce Russett, *The Prisoners of Insecurity* (San Francisco : W. H. Freeman, 1983), Ch. 4.

5) Emile Benoit "Growth and Defence in Developing Countries",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Vol. 26. No. 2 (January 1978).

6) Aaron Wildavsky, *The Politics of Budgetary Process* (Boston : Little Brown, 1964).



## II. 韓半島의 軍事現況과 環境

### 1. 東北亞 軍事體制와 韓半島

韓半島의 軍事環境은 周邊 4強의 東北亞에 대한 軍事戰略의 力學關係속에서 형성되어 왔고 앞으로 이의 틀을 벗어나서 南北韓이 韓半島의 독자적인 軍事環境을 구축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은 한반도 군사 문제의 認識과 解決에 중요한 관건이 된다고 하겠다.

먼저 동북아가 주변 4강의 國家利益의 측면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백종천교수는 뉴처라인(Donald E. Neuchterlein)의 國家利益의 分析모델<sup>7)</sup>을 이용하여 (표: 2-1)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도표 2-1) 周邊 4強의 東北亞에 대한 國家利益의 重要度

國家利益	國家			
	美 國	蘇 聯	中 國	日 本
국 가 방 위	주 변	핵 심	핵 심	핵 심
경 제 이 익	핵 심	주 변	핵 심	주 요
국 제 질 서	핵 심	핵 심	주 요	핵 심
이 데 을 로 기	핵 심	핵 심	핵 심	주 변

(참고: 백종천 “한반도 주변 군사환경의 전략적 연구방법”, 김을권 「한반도 주변의 군사환경」 (서울: 세종연구소, 1988), 62쪽.

이 도표에서 보듯 동북아가 한반도 周邊 4強의 國家利益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북아가 한반도에서의 勢力均衡이 무너지는 것은 이들 國家의 國家防衛, 經濟利益 및 國際秩序를 위협하여 새로운 형태의 國際的 葛藤을 야기시키게 될 것이다.

7) Donald E. Neuchterlein, “National Interests and National strategy : The Need for Priority”, in Terry L. Henyns(ed), understanding U.S. Strategy : A Reader(Washington. D. C. : )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ress, 1983), pp. 38-4.

1980년대말 이후 유럽은 신테탕트의 기류에 의하여 낙관적인 형태로 戰略的인 安定이 추구되고 있으나, 東北亞의 경우에는 기존의 秩序에 대한 변화의 징조가 상대적으로 적은 상태에 있다고 하겠다. 즉 韓半島 주변의 4강은 급격한 변화보다는 現狀維持政策의 次元에서 긴장을 완화하면서 實用主義 노선에 의하여 自國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여 나아가리라 생각된다.

美國의 동북아정책은 지금까지 西유럽에 대하여 항상 二次的인 위치에서 政策을 결정하여 왔으나 經濟的 衰退의 시대에 커다란 市場의 잠재력을 가진 동북아는 經濟利益의 次元에서 국가이익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地域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自由民主資本主義의 체제를 바탕으로 한 國際秩序에 대한 헤게모니 장악에 있어서도 이 地域은 핵심적인 對象의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 지역에서의 지금까지의 독자적인 역할보다는 동맹국과의 共同防衛分擔을 추진하여 소련팽창의 억지 및 이 지역에서의 安定과 現狀維持를 지향할 것이다.

오늘날 소련의 極東政策은 유럽에서의 정책과는 달리 커다란 변화가 없이 지금까지의 전략적 우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는 이른바 ‘本質的 繼承과 狀況의 變用’으로 均衡을 취해 나가고 있다.<sup>8)</sup> 소련도 그들의 제일차적인 對外政策의 지역이 미국과 유럽지역이나 중국과의 분쟁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동북아지역은 그들의 국방에 있어서 核心的인 지역으로 남아 있다고 하겠다. 한편 소련이 국가정책의 優先順位를 國防에서 經濟로 관심을 집중하는 상황에서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지역은 새로운 經濟協力과 시장으로서의 위치가 증대하고 있다고 하겠다.

중국은 국내적 發展政策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對外的으로는 戰略的인 安定과 현상유지를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미·일·소와 지속적인 관계의 개선을 꾀하고 있다.

한편 국방상 소련으로부터 領土를 보존하는 것을 주요과제로 삼으면서 국내의 경제발전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압력은 동북아와 한반도에서의 安定과 現狀維持를 기본적인 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다고 하겠다. 이는 최근 소련과 동구 社會主義 진영의 역량 퇴조와 함께 이데올로기적인 고립을 막기 위하여 북한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제국의 변화보다는 現狀維持를 지지하고 옹호하리라는 예측에 의

8)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백서, 1989」, 국방부, 1989, 40쪽.

하여 기존의 정책은 더욱 견고하게 유지할 것이다. 이러한 政策基調에 의할 때, 중국에 있어서 동북아와 한반도는 국방, 경제 및 이데올로기적으로 核心的인 지역이다.

일본의 대한반도 전략은 한반도에서의 平和와 安全의 유지가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基本認識하에 다음과 같은 기본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①남북한 當事者의 실질적인 對話 추진, ②남북한간의 均衡이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중요하며, ③駐韓美軍의 철수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진, ④한국과의 友好關係를 기본으로 북한과는 무역·인사·문화 등 제반분야에 있어서의 교류를 점차 확대시켜 상호 이해의 증진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일본에 있어 對韓半島 政策은 安全보다는 安定이라는 관점을 강조한다고 하겠다.<sup>9)</sup> 한편 동북아에서 일본의 군사적인 위치는 지금까지의 보조적인 지위에서 주체적 지위로의 변화에 대한 압력을 미국으로부터 더욱 거세게 받을 것이며 이는 이 지역에서의 일본의 군사적인 역할을 계속 증대시키게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일본은 미국의 묵인하에 군사력의 증강을 계속할 것이다. 또한 일본은 남한과 동북아 지역에서 닦아놓은 경제적인 既得權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한반도 안정과 동북아에서의 勢力均衡을 지향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 주변 4강에 있어서 동북아 특히 한반도는 그들의 정치·군사·경제 그리고 이데올로기의 측면에서 國家利益과 밀접한 연결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나, 남북한에 있어서는 직접적으로 生存과 관계가 있는 지역이라고 하겠다. 특히 남한에 있어서 이 지역은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모두 직접적인 競爭의 대상국으로서 다른 어느 나라 보다도 많은 부담을 안고 있다.

## 2. 韓半島의 軍事現況

### 1) 南北韓의 兵力現況

한 국가의 군사력 現況을 기존의 國際機關의 資料를 중심으로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데 특히 강대국이 아닌 第3世界의 지위에 있는 나라의

9) 伊豆見元, “日本の 對韓半島 政策”, 이갑운 외, 「現代 日本의 政治」(서울: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86), 227-228쪽.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제약점을 전제로 하여 개괄적으로 남북한의 군사현황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남한은 1945년 11월 미군정에 의하여 朝鮮國防司令部가 창설된 뒤 1950년 한국전쟁까지 약10만명(육군 : 8개사단, 9만5천명, 해군 : 7,715명, 공군 : 1,900명)<sup>10)</sup>의兵力으로 6.25전쟁에 대응하였다. 그후 휴전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하여 휴전시 약 59만명으로 증가하였으나 1957년 이후 오늘날까지 남한의 병력은 60-65만명 사이에서 안정적인 正規兵力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표 : 2-2참고)<sup>11)</sup>

한편 북한은 약19만명(육군 : 10개사단, 18만 2천명, 해군 : 4,700명, 공군 : 2,000명)<sup>12)</sup>의 병력으로 한국전쟁을 감행하여 전쟁말기에는 27만 5천명, 휴전시에는 41만명으로 증가한 뒤 1958년에는 38만 2천명으로 감소하기도 하였으나 IISS와 WMEAT 두 자료 다 같이 오늘날까지 지속적인 증가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표 : 2-2참고). 특히 이러한 변화는 60년대 중반의 4대군사노선을 택한 시기와, 1970년대말과 80년대 중반이후에 가속적인 증가를 가져와서 최근에는 60년대초의 약3배에 이르는 100만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까지 추측하고 있다.

예비병력에서는 (표 : 2-3)에서 보듯 전체 동원능력에서는 남한이 북한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질적인 면에서 남북한은 커다란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남한의 민방위대와 북한의 노동적위대는 그 성격이 상이하고, 북한의 경우 예비병력의 100%가 무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남한의 경우 동원예비군을 제외한 일반예비군은 60%, 학도호국단은 20%의 무장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10) 조선일보, 1984. 6. 24일자.

11) 91년판 일본 방위백서는 밀리터리메런스(1990-1991)를 인용하여 남한의 육군병력 수를 21개사단 55만명으로 언급. 조선일보 1991. 7. 27.

12) 조선일보, 1984. 6. 24.

(표 2-2) 南北韓 兵力 比較

연 도	남 한			북 한		
	병 력 총 수		병력수/인구천명	병 력 총 수		병력수/인구천명
	IISS	WMEAT	WMEAT	IISS	WMEAT	WMEAT
1962	602			338		
1963	627	627	23.14	280	352	30.61
1964	600	600	21.58	325	362	30.68
1965	604	604	21.19	353	378	31.24
1966	571	572	19.59	368	383	30.89
1967	612	612	20.47	368	383	29.46
1968	620	620	20.33	384	410	30.60
1969	620	620	19.87	413	410	29.71
1970	645	645	20.28	401	438	30.85
1971	634	638	19.69	402	450	30.82
1972	634	635	19.18	470	460	30.46
1973	633	634	18.76	467	470	30.32
1974	625	630	17.60	495	470	30.30
1975	625	610	17.20	500	500	29.60
1976	595	600	17.00	512	520	30.80
1977	635	638	16.50	632	632	31.20
1978	642	600	16.20	678	692	37.00
1979	619	606	17.00	782	700	39.60
1980	600	601	15.70	784	768	39.10
1981	601	602	15.60	785	782	41.90
1982	602	602	15.30	782	784	41.70
1983	622	600	15.10	838	784	40.90
1984	622		14.90	840	784	39.90
1985	598		14.60	838		38.50
1986	601			840		
1987	629			838		
1988	629			842		
1989	650			980		

IISS : The International Institute of Strategic Studies

WMEAT : World Military Expenditures and Arms Transfer

출처 : 양성철, “남북한 군사력과 동맹체제”, 「사상과 정책」 (1989, 여름호) 재인용

(표 : 2-3) 南北韓 豫備兵力 比較

남 한 ①				북 한 ②			
병력구분	연령	동원능력	비고	병력구분	연령	동원능력	비고
학도호국단	16-18	173	80년초	붉은청년 근 위 대	14-16	81만	1970.9월창설
	19-22		173만				80년 : 76만
동원예비군	23-30	240만	132만	교 도 대	17-40	124만	1962년창설
일반예비군	31-35	240만	206만				80년 : 25만
민방위대	17-50	424만		노농적위대	41-60	380만	1959년창설 80년 : 150만
계		1,077만		계		585만	

자료 : ①김을권, 앞의 책 1584쪽

②국방부, 앞의 책, 86쪽

## 2) 南北韓 武器體制 現況

남북한의 군비경쟁은 앞에서 살펴본 병력 뿐만 아니라 무기체계에서도 극심한 경쟁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남한은 한국전쟁 발발 당시 1949년 미군의 철수 때 한국군에게 인계한 10만정의 소총, 5천만발의 소화기 탄약, 2천문의 로켓트포 등 제한된 방위능력을 견지할 장비를 가지고 있었으나, 북한은 1950년 6월까지 소련으로부터 공급받은 242대의 전차와, 211대의 각종 비행기 등(표 : 2-4)에서 보듯 압도적인 무력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무기체계는 전후복구기를 거치면서 급격한 증가현상을 가져왔는데, 특히 북한의 경우 1958년에는 전차가 585대, 비행기 870대, 제트기 622대, 화포(75미터 이상)가 53년에 1,050문에서 1,712문으로 증가하였다.<sup>13)</sup>

13) 戰略問題研究會, 「戰後世界軍事史」(東京: 原書房, 昭和45年), 202쪽.

(표 : 2-4) 南北韓 주요부대 무기체계의 변화

구 분	한국전(1950)①		1970②		1980②		1989③	
	남 한	북 한	남 한	북 한	남 한	북 한	남 한	북 한
보병사(여)단	8(22)	10(30)	19	20(5)	20	47	48	55
기계화 사단			1(77년)	3(75년)	1	3	2	4군단
기갑사(여)단			2	(2)	2	(6)	2	1군단
포병 부대			30대대 (1977)	20연대 (1977)	2여단	3사단	2여단	1군단
전 차(대)		242	750 (73년)	900	860	2,650	1,500	3,500
장 갑 차(대)		54	400 (74년)	950 (71년)	570	1,000	1,550	1,960
박격포(야포)	960	1,727	(1,000)	6,200	7,404 (2,100)	13,000 (4,000)	4,000	9,000
전술기(대)	전체 22	전체 21	200	580	362	615	480	830
지원기(대) (훈련기)			49 (49)	120 (70)	302	480	690	770
경비정(척)	28	30	17	20	38	95	②12 (87)	②65 (87)
전투함(척)							17	460
잠수함(척)								24

자료 : ①한국홍보협회, 「한국동란」, 210쪽.

북한연구소, 「북한군사료」, 1978, 418쪽 재인용.

②IISS, The Military Balance, 1970-1971, 1979-80.

③국방부, 「국방백서」 1989, 176-80쪽 참조.

(표 : 2-4)에 의하면 남북한은 60년대를 거치면서 육상과 공군무기체계를 중심으로 급격한 군비경쟁이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다.

북한의 경우 전차는 한국전쟁시와 비교하여 3.7배, 장갑차는 18배, 비행기는 2.7배 정도 증가하였고, 남한의 경우도 공군의 비행기가 약 10배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970년대에도 남북한은 지속적인 무기체계의 경쟁을 지속하였는데 공군에 있어서 남북은 공히 2배의 증가를, 육상무기체계에 있어서는 북한은 자체 군수무기 생산체제의 확립으로 전차와 야포의 급격한 증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980년대에는 해군무기체계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남북한의 육군 및 공군무기 체계가 전반적으로 약 2배 증가하였다.

1989년 국방백서를 중심으로 남북한으로 주요 무기체계를 살펴보면 북한은 T-34/54/55/59/62형 중심으로 약 3,500대를, 남한은 M-47, M48A2C 및 자체 생산한 88전차등 약 1,500여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남한의 약 2배에 달하는 자주화 및 機動性이 높은 火炮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80년대에 들어와서 잠수함, 경비함, 유도탄정, 어뢰정 등 주로 고속함정을 중심으로 480여척으로 증강했고, 남한은 구축함을 주축으로 초계전투함, 유도탄정 등 170여척의 함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공군장비로는 북한의 각종 MIG기 및 SU-7, IL-28 등을, 남한은 F-4D, F-4E, F-5E/F, F-5A/B, A-37 등의 전술기 약 480여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다.

남북한의 軍事力을 총괄적으로 비교하면, (표: 2-5)에서 보듯 북한은 남한보다 모든 군사력에 있어서 월등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sup>14)</sup>

다음으로 한반도 武器體系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은 한반도의 核武器에 대한 문제이다. 아직까지 남북한 당사자들은 核武器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남북한의 핵무기 生産能力은 상당수준에 이른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남한의 경우 1975년 프랑스와 核燃料 處理施設 계약이 미국의 압력에 의하여 저지되는 등 1976년 이후 핵무기 개발계획이 멈춘 것 같으나<sup>15)</sup> 핵무기 생산에 기초가 되는 핵발전소가 가동되고 있으며, 이론상으로 본다면 수많은 핵탄두를 생산할 수 있는 핵연료를 갖게 된다고 하고 있다.<sup>16)</sup> 한편 북한은 90년대 중반에

14) 오관치, 「한반도의 군사적 안정을 위한 기본조치」(서울: 21세기위원회, 1991), 16-30쪽 참조. 이러한 협의의 군사력 비교와는 달리 전쟁 수행능력이라는 면에서 남북한의 군사력의 격차를 과소 평가하는 입장으로는 다음이 있다. 이영희, “남북한 군사력 비교”, 「월간조선」, 1989, 4. “남북한 전쟁능력 비교연구” 「사회와 사상」창간호 1989. 9.

15) 양성철, “남북한 군사력과 군사동맹체계”, 「계간 사상과 정책」(1989, 여름호), 100쪽

16) 하영선 편, 「한반도 군비경쟁의 제인식」(인간사랑, 1988), 183-184쪽



(표: 2-5) 南北韓 軍事力 比較(기준부대환산)

군사력 구분	기준부대	북한	한국	군사력비(북한/남한)
지상전투부대				
보병부대	보병사단	56개	46개	1.2
기계화부대	기계화보병사단	22	4.5	4.8
비사단포병	포병대대(155mm)	160	40	4.0
해상전투부대		74척	57척	1.3
수상전력	구축함	23	—	—
수중전력	잠수함	23	12	2.0
상륙전력	LST			
공군부대				
항공전력	F-16	345대	219대	1.6

\* 전력지수에 의거 환산하였음.

자료: 오관치, “남북한 군사력 지표 비교”, 이호재,  
「한반도 군축론」(법문사, 1989), 44쪽

核生産能力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측이며<sup>17)</sup>, 최근의 일련의 보도에 의하면 영변의 핵발전소는 核武器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미국의 CIA는 발표하고 있고, 영변을 중심으로 있는 핵시설이 핵탄용이며 이 시설이 92년경부터는 가동하리라는 것이 영국 군사전문지 「제인스 리뷰」의 예측이다.<sup>18)</sup>

### 3) 南北韓 國防費 支出 現況

남북한의 軍事力 現況 및 軍備競爭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살펴 볼 수 있는 것으로는 남북한의 國防費 支出을 살펴 보는 방법이 있다. 남한의 國防豫算은 정부 수립 해인 1948회계년도(6개월)에는 一般會計의 20%인 6백만원, 1949년에는 일반회계의 26.4%인 2천4백만원이던 것이 1989년에는 6조 2천억원이 넘는 액수로

17) 최근에 커손찬 북한외교관 高英煥은 앞으로 1-3년내에 핵무기개발에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말하고 있다. 동아일보, 1991. 9. 14.

18) 조선일보 1991. 8. 29.

증가하여 經常價格으로는 전후 1953년에 비하여 약 2,000배의 증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남한의 경우 1950년대와 60년대에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현상유지적인 증가율을 보여주나,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國防費의 經常과 實質增加率은 GNP의 성장과 실질 증가율을 훨씬 앞서는 기간이었다.(부록: 표-1 참고). 그러나 남한의 國防費의 GNP비율은 상대적으로 그리 높지 않았다. 한편 1970년대 중반까지 국방비의 機能別 配分을 보면(표: 2-6 참고) 강한 外部依存型<sup>19)</sup>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부록: 표-1)에서 보듯 국방비 財源이 높은 미국에의 依存으로 남한의 國防體系가 미국의 물적 裝備負擔과 남한의 人的 負擔이라는 分業體系를 형성하였음을 보여준다.

(표: 2-6) 南韓國防費의 機能別 支出構造의 變化

(국방비전체의 %)

년 도	개 인 유 지 비	부대·장비유지비	투 자 · 연 구 비
1955	70.0	27.5	
1960	71.8	25.7	
1965	82.5	13.1	4.4
1970	67.5	22.4	10.1
1975	47.2	31.9	20.9
1979	38.8	29.6	31.7
83-88	32.7		

자료: 고려대학교 사회경제연구소, 「국민소득과 관련에서 본 국방비」, 고려대학교 사회경제연구소(1965), 9쪽

나용수, “세제의 국방예산과 자주국방”, 한국국방과학회, 「국방」제11권 3호(1979).

이정현, “국방과 국방예산”, 한국개발연구원, 「82년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한국개발연구원, (1982), 168쪽.

재무부, 「세입 세출 결산보고서」, 1983-1988에 의거 제작성.

19) 외부의존형의 경우 지출구조는 병력 및 부대유지비가 60-80%, 투자비가 10%이내, 자기관료형의 경우는 병력과 부대유지비가 국방비의 30-40%인 형태를 의미한다.

남한의 국방비 支出構造가 自己完了型으로 변하기 시작한 것은 닉슨독트린 이후 미군의 철수와 미국의 國防豫算 재원의 지원 종료로 1975년 군사력 증강을 위한 目的稅인 防衛稅의 신설(표: 2-7 참조)과 함께 이루어졌다고 하겠다. 한편 미군의 철수를 보완하기 위한 1970년대의 제 1 차 5개년 軍現代化計劃(FIP: Force Improvement Plan 1976-80)은 1971-77년까지 실시된 미국의 韓國軍 現代化計劃(Grant: 988(백만 \$), FMS: 528(백만 \$)<sup>20)</sup>과 함께 70년대의 군사력 증강을 주도한 주요 요인이었다.

(표: 2-7) 年度別 防衛費 對比 戰力增強 投資費

(단위: 억원)

연도	방위세	전력증가 투자비	비율 (%)
1976	2,338	2,338	100.0
77	3,092	3,092	100.0
78	3,958	3,958	100.0
79	6,259	4,654	74.4
80	8,428	6,730	79.9
81	1조 296	7,500	72.9
82	1조1,793	8,500	72.1
83	1조2,729	9,168	72.0
84	1조3,740	1조 577	77.0
85	1조6,363	1조2,357	75.5
86	1조8,577	1조4,979	80.6
87	2조 432	1조8,433	90.2
88	2조4,376	2조1,540	88.4
89			
계	15조2,381	12조3,817	81.3

주: 차액은 국방일반투자사업(시설공사, 장비 및 물자취득)에 투입.

자료: 국방부, 「국방백서」, 1988. 174쪽.

20) Hubert H, Humphrey & John Gleen, U.S. Troop Withdrawal from the Republic of Korea, p.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國防費의 증가가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의 모습을 보였으나 제한적인 GNP대비의 국방예산의 支出은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과 함께 國防支出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고 하겠다.

북한의 국방비를 정확하게 추측한다는 것은 다른 군사문제를 추측하는 것과 같이 매우 어려운 일인데 오늘날 이를 추측하는데 사용되는 자료로는 북한이 불연속적으로 발표하는 자료에 의한 推計와 國外資料로서 英國戰略問題研究所(ISS)의 Military Balance, 스톡홀름 國際平和研究所(SIPRI)의 World Armaments and Disarmament 및 美軍縮局(ACDA)의 World Military Expenditure and Arms Transfers의 자료 등인데 이들 모두가 계산방법이 상이한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豫測의 혼란성을 가중시키고 있다.<sup>21)</sup> 이에 本稿에서는 주로 북한국방비의 전체적 변화의 性向을 위에서 언급한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부록: 표-2 참고)

북한은 남한과 비슷하게 전후 1950년대 후반에는 중국과의 국방의 分業體系를 형성하여 外部依存型이었으며 남한과 비슷하게 마이너스의 국방비의 성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부터는 4대군사노선의 채택과 自己完了型 國防體制의 형성의 필요성에 의하여 급격한 국방비의 증가현상을 가져왔다. 이는 (표: 2-8)에서 보듯 남한보다는 약 10여년 앞서서 自己完了型 國防體制를 형성하였음을 보여준다.

(표2-8) 北韓 軍事費 機能別 分類

구 분	1971①	1981②
개 인 유 지 비	21.6(%)	17.3(%)
부 대 유 지 비	2.7	4.6
장 비 유 지 비	9.3	17.6
투 자 개 발 비	61.6	48.6
신 에 장 비 구 입	(12.1)	(8.2)
군 사 시 설 구 축	(4.0)	(4.6)
군 수 산 업 · 연 구	(45.5)	(35.8)
기 타	2.8	

자료: ①북한연구소, 「북한군사론」 446쪽.  
 ②\_\_\_\_\_ , 「북한총람」 1,583쪽.

21) 李達熙, “북한경제와 국방비”, 정상훈 외, 「북한경제의 전개과정」(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0), 170-20쪽 참고. 이외에 북한경제분석의 통계적 분제는 다음을 참고. 延河滿, 「북한의 경제정책과 운용」(한국개발연구원, 1986).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60년대의 후반보다는 國防費의 증가율이 비교적 안정적인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국방비의 歲出構成比는 다른 기간보다도 높았던 기간이었다. 이어서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증가율이 점차 둔화되어서 북한은 공식발표에 의하면 1986-1988년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다고 한다.

남한의 국방비를 비교한다는 것은 經濟構造의 차이에 의하여 종종 무의미한 비교가 되는 경우가 있으나 (표: 2-9)에 의하면 북한의 국방비는 앞서 언급한 대로 60년대에 급증하기 시작하여 89년대에 상당히 둔화되고 있음을 살펴 볼 수 있다. 반면에 남한의 경우에는 79년대 이후 국방비에 의한 投資費의 급격한 증가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1990년대 초에 남한이 북한의 投資費 누계를 능가할 것으로 일반적으로 예측하고 있다.<sup>22)</sup>

한편 달러로 환산한 남북한의 군사비에 대한 比較資料를 보면 IISS자료에 의하면 남한은 1975년에 북한을 앞선 것으로, 그리고 RAND자료에 의하면 1976년부터 남한의 국방비가 북한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의하여 1980년에 와서는 IISS에 의하면 남한의 國防費는 북한의 약 2.5배, RAND자료에 의하면 약 1.25배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표2-9) 南北韓 軍事 投資費 累計植(1950-85)

(단위: 해당년도 미화 백만불)

년	도	북	한	남	한
1950		4		2	
1955		42		31	
1960		143		67	
1965		807		93	
1970		2,557		186	
1975		5,966		810	
1980		12,538		5,941	
1985		15,895		12,580	

자료: 李相禹, 「한국의 안보환경 제 2 집」(서강대학교 출판부, 1987).

22) 朴在夏, “한국의 군사환경과 군사정책”, 김을권 「앞의 책」, 543쪽 참조.

### 3. 南北韓 軍備競爭의 要因

#### 1) 國際體制的 要因

南北韓의 軍事的인 緊張과 對決은 世界政治軍事體制的 變化(냉전—데탕트—신냉전—신데탕트)<sup>23)</sup>와는 무관하게 지속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즉 冷戰과 新冷戰은 韓半島의 대립을 國際的인 葛藤과 어울려 가속되었고, 데탕트의 國際秩序는 오히려 南北의 內的인 대립으로 전환되어 緊張을 가중시켰다. 세계정치군사체제에의 영향은 북한보다 미국에의 의존과 예측성이 강한 軍事體制를 가지고 있는 남한의 경우 더 큰 영향을 받았다. 국방의 對美依存은 駐韓美軍의 주둔과 軍事援助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한반도의 駐韓美軍의 주둔은 戰爭의 억제와 平和에 영향을 주었고 단기적으로는 남한의 國防費와 軍備의 증가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였으나 장기적으로는 한반도의 軍備 경쟁을 지속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즉 미군의 주둔은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을 직접적인 적으로 규정하게 하여 북한의 軍備增加를 자극하였고 이는 다시 남한 당국에 軍비 증가의 필요성을 가중시켰다. 특히 닉슨 독트린 이후 駐韓美軍의 철수는 남북한의 군사적인 불균형을 가지고 와서 남한의 전력을 증가시키는 心理的·戰力的인 요인이 되었다. 즉 미군의 주둔은 북한의 軍事力 증강을 자극했고 이는 이어서 남한의 軍비 증가를 유도하였고, 미군의 철수는 남한의 軍備 증가의 필요성을 높였고 이는 다시 북한의 軍事力 증가의 요인이 되는 妥善환적인 作用과 反作用의 動因이 되었다고 하겠다.

한편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軍事援助를 보면 해방이후 1971년까지 총 68억달러에 달하였다.<sup>24)</sup> 6. 25이후 남한 國防費財源의 대부분을 미국의 對充資金 및 派越支援費등에 의존하였고, 1970년까지 남한의 總國防費에의 50%이상이 무장군원(MAP)에 의하여 조달되었다. 이러한 미국의 費用 및 物的 負擔과 남한의 인적 부담이라는 分業的 國防體系는 武器體系를 비롯한

23) 각 구분별 국제정치의 구조와 특성은 다음을 참고. 국제문제연구소, 「방위연감, 1945—1989」(국제문제연구소, 1990), 23—32쪽, 金正煥, “한반도 분단 40년 : 국제상황의 비교분석”, “국방연구, 제28권 제 2호”(안보문제연구소, 1985), 189—197쪽 참고.

24) 김수근, “한국의 경제발전과 미국의 역할”, 「한·미관계의 제조명」(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88), 189쪽.

국방체계의 對美 隸屬性을 강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이어 1970년대의 越南의 派兵과 撤收, 駐韓美軍의 철수에 의한 장비의 이전과 전력의 증강은 북한의 戰力增加를 유도하였다. 특히 미국이 71년부터 실시한 「한국군현대화계획, 그리고 남한이 76년부터 85년까지 실시한 제2차에 걸친 軍現代化計劃(FMP)의 총투자비의 약 16%를 미국의 對外軍事借款(FMS) 약 23억불<sup>25)</sup>로 충당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지원은 防衛産業의 지원과 함께 남한군사력 증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한편 신냉전으로 규정지워지는 레이건의 “강력한 미국의 재건”은 닉슨의 軍事均衡主義가 대신 “軍事絶對主義”로 변화<sup>26)</sup>시켜 주한미군의 철수를 전면적으로 백지화하고 태평양의 미군을 강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팀스피리트 등의 합동훈련을 강화하는 등의 남북한의 군사적인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다. 그리고 남한에 대한 미국이외의 주변 관련국의 정책의 변화는 남한의 직접적인 대응보다는 미국의 政策變化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세계 및 國際體制的인 요인이 북한의 군사체제에 미친 영향을 보면 북한은 해방 이후 1960년대 4대 군사노선을 실시할 때까지는 외부의존형의 국방체제로서 소련과 중국에 의존하는 체제였다. 1958년까지 주둔한 중공군의 防衛分擔은 일시적으로 북한군의 감축을 가져오기도 했으나, 1958-59년의 중·소의 對北援助의 급격한 감소와 1958년의 중공군의 철수는 병력증가와 노동적위대 등의 예비병력의 창설, 소련으로 부터의 火力과 空軍力の 증가등 防衛의 공백을 메우려는 노력을 야기시켰다.

북한이 외부의존형에서 자기완성형으로 국방체제를 변화시키게 한 4대군사노선을 채택한 배경에는 國際體制的인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였다. 그 첫째는 1962년 쿠바사태에서 소련이 수동적인 자세를 보여 북한으로 하여금 소련에의 의존을 회의적이게 했고 둘째, 1950년대말에 잉태된 중·소의 國境紛爭의 결과 자주적인 외교정책을 필요로 하였으며, 셋째, 1950년대 말부터 제기된 미국의 한반도에서의 核使用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남한에의 軍事政權의 탄생 등을 들 수 있다.

25) 황동준, “미국의 대한 안보지원정책과 한국의 방위산업”, 「한·미관계의 재조명」(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88), 189쪽.

26) 이기택, “한반도의 새로운 군사환경”, 「북한 학보, 제5집」(1981), 203-216쪽.

소련의 대한반도 基本政策은 다른 제3세계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과는 달리 전통적으로 防禦的·守勢的·現狀維持的으로<sup>27)</sup> 미국이 남한에 대하여 적극적인 짓과는 대조적이어서 항상 불만을 가지게 하였다. 이는 소련과 북한의 갈등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sup>28)</sup> 그러나 소련에 있어서 한반도는 미국 뿐만 아니라 중공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요충지로서 소련은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될 때마다 북한에 武器와 軍事援助의 지원을 강화시켰다. 특히 미·중의 修交와 1970년대의 소련의 樞東軍事力의 강화라는 국제체제의 변화과정 기간, 80년대 초의 新冷戰體制의 시작과 더불어 나타난 소련의 공군력 지원, 화력보강, 신무기 판매의 체계 등은 북한 軍事力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신형무기의 조달이 주로 소련에 제한되어 있고, 소련이 북한의 급격한 군사력의 증가를 우려하였다는 것, 한반도의 갈등의 증대 보다는 現狀維持的인 정책을 꾀하였다는 것, 그리고 중국의 견제라는 입장에서 소련이 북한 軍備增加에 부분적이거나 억제적인 역할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 2) 南北韓 國家對立體制的 要因

남북한 兵力競爭을 가져온 국가 대립체제적인 요인을 보면 남한의 경우 정규 병력은 거의 변화가 없으나 豫備兵力의 경우 豫備軍 제도가 신설되면서 급격한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북한의 4대 군사노선에 대한 대응으로, 그리고 북한의 경우 70년대말 이후의 급격한 正規兵力의 증가는 남한의 급격한 投資費의 증가에 의한 전력 증가에 대한 대응의 모습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武器體制的 경쟁은 남북한 간에 명백한 作用—反作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SIPRI의 자료<sup>29)</sup>를 바탕으로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장갑차에 경우 북한의 K-61/63, M-1967/73형의 자체 생산에 대응한 1970년대 말 이후 남한의 이테리 FIAT와의 합작에 의한 장갑차의 생산, 남한의 대전차화기 TOW미사일의 보유에 대한 북한의 85-7년 사이의 BTR류의 장갑차의 보유를 볼 수 있다. 화기류에 있어 60년대의 북한의 무반동포(82mm), 박격포, 방사포, 로켓트포 등의 생산에

27) Helen Louise Hunter, “북한과 동거리외교의 신화”, 구영복 외, 「남북한 정치통합과 국제관계」(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86), 195쪽.

28) Helen Louise Hunter, “앞의 글”,

29) SIPRI Yearbook, 1973-87. 참고.



대응한 73년 이후의 남한의 화기류의 생산<sup>30)</sup> 및 HAWK 미사일의 수입, 북한의 85년 Scud B의 도입에 대응한 남한의 Lance미사일 대대의 배치에 대한 보도<sup>31)</sup>등에서 陸上武器體系의 作用-反作用의 모습을 볼 수 있다.

空軍武器體系에서는 한국전쟁에서의 공군기의 열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북한은 50년대말부터 공군력을 강화하여, 70년대에는 MIG17/21을 중심으로 수적인 우세를 지켰으나, 이에 대응하여 남한은 72년 F-5E 72대, 75년 F-5E 54대, 75년 F-4D/E 36대, 76-79년의 Hgyes 500MD를 수입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북한은 72년 Su-7의 보유, 80년대 들어와서 남한의 F-5E/F 100대, 81년의 F-16, 36에 대한 북한의 MIG-21/23의 증강 및 소련의 영공통과권의 부여와 북한 비행장의 이용권리의 부여, 남한의 A-10과 북한의 M-24, 이에 대응한 남한의 AH-1S의 86년배치 등의 작용-반작용은 남북한 군사력 경쟁의 대표적인 모습이다.

海軍武器體系에서는 70년대초에 도입된 북한의 OSA급 및 KOMAR급의 고속정에 대응한 남한 Asheville급의 유도탄 고속정 3척 도입, 80년대에 북한의 소형 고속정의 증강에 대응한 남한의 중형 Corvette함의 증강, 북한의 잠수함에 대응하기 위한 남한측의 직접적인 노력 등에서 심한 군비경쟁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武器體系 競爭의 直接的인 要因은 무기체계의 技術의 발달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남북한의 군비경쟁의 動因을 누가 먼저 자극했는가를 규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이의 논의는 종종 價値判斷的인 평가가 수반하게 된다. 어쨌든 남북한 대립체제적인 요인으로 남북의 軍備競爭을 야기시키고 이를 정당화한 직접적인 요인은 韓國戰爭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 남한측의 군사력 증가를 정당화시키고 자극하게 한 북한의 作用內容으로 중요한 사건을 살펴 보면 ① 4대군사노선의 채택, ② 50년대 말부터의 수적인 우위의 무기체제 정책, ③ 1968년 1. 21사태와 대남도발, ④ 70년대초반의 땅굴사건, ⑤ 각종 테러 및 암살기도 사건 등이 남한의 군비증강에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북한측의 군비증강을 자극한 남한측의 作用의 要因을 보면 ① 50년대 후

30) 경향신문, 1978. 9. 30 참조.

31) 동아일보, 1986. 11. 14.

반의 미국의 핵 전략, ② 월남 파병, ③ 닉슨독트린 이후의 한국군 현대화계획, ④ 70년대전반의 수세적 방어전략에서 공세적 방어전략으로의 변화, ⑤ 방위세를 중심으로 한 2차에 걸친 전력증강 계획, ⑥ 80년 이후의 강화된 한미합동군사훈련(팀스피리트) 등이 북한의 군비증강을 상승시킨 요인으로 작용했으리라 생각할 수 있다.

### 3) 南北韓 國內體制的 要因

한 國家의 정치이데올로기는 그대로 國防 및 軍事體制에 반영되다고 볼 수 있다. 남북한은 공히 統一을 國家의 目標로 삼고 있으나 명분상 그 수단에 있어서 북한은 혁명의 논리를, 남한은 타협과 協商에 의한 平和의 논리를 취하고 있다. 즉 북한은 남조선의 해방을 위하여 전쟁을 준비했고 남한은 平和統一을 위하여 전쟁에 대비하였으나<sup>32)</sup> 그 결과는 軍備競爭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하여 군대의 성격도 북한은 남조선 해방군, 남한의 자기의 生存을 위한 守勢的 防禦的인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북한의 軍事第一主義는 적극적 군사전략으로 속전속결, 선제와 기습의 전략을, 남한의 安保優先政策은 방어적 전략을 형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평화가 군사적인 均衡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는 전략의 변화는 남한으로 하여금 守勢的 防禦戰略에서 攻勢的 防禦戰略으로의 변화를 야기시켰으나 이는 오히려 한반도의 군비경쟁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군의 역할은 정치체계에 의해서 규정되게 되는데, 정치체계가 民主化되어 있을수록 군은 정치적으로 中立되고 政治的 目的에 귀속되나<sup>33)</sup> 정부의 형태가 權威主義적이고 군의 정부에의 개입이 클수록 국방 및 군사력의 중요성은 높이 평가되게 된다.<sup>34)</sup> 이와 관련하여 남북한 最高政策決定者의 權威主義的

32) 南柱洪, “남북한 국방정책의 비교”, 이호재, 「한반도 군축론」(법문사, 1989), 67쪽.

33) Julian Lider, *Military Theory* (England Aldershot : Grower Pub., 1983), pp. 26-28.

34) Bruce Russett, *The Prisoners of Insecurity*(San Francisco : W.H Freeman, 1983) 및

Emile Bendit, “Growth and Defence in Developing Countries,”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Vol. 26, No. 2(Jan. 1978), p. 273. 이의 상관성을 배제하는 주장으로는 Barry Ames and Ed Goff “Education and Expenditures in Latin America : 1948-1968,” in Craig Lishe, W Loehr and John McCamant eds. *Comparative Public Policy*(New York : John Wiley and Sons, 1975), p. 194.

속성과 김일성 崇拜主義에 의한 單一支配體制<sup>35)</sup> 및 政權維持의 수단으로의 군에 의 의존은 국방 및 군사력을 중시하는 정치체제로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남북 양측의 軍備競爭을 가능하게 한 중요한 요인으로는 군비경쟁을 위한 가용재원이 있었다는 것이다. 남한의 경우 1970년 이후 經濟成長에 의한 국가 부의 성장은 70년 중반이후 자기완료형의 自主國防體制를 확립하게 했고, 북한의 경우 전후의 급격한 경제성장은 64년 이후의 4대군사노선을 실천에 옮기게 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의 중공업우선정책<sup>36)</sup>과 남한의 중화학공업중심의 경제성장은 양측의 군수산업에 의한 군사력 증가를 가능하게 했다고 할 수 있다.

국방비의 지출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남한은 70년대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經常國防費가 예산 및 GNP實質增加率과 높은 상관관계 하에서 국방비의 지출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sup>37)</sup> 이에 1983년 이후 한·미 국방장관회의에서 한국의 방위비 부담을 GNP의 6%수준으로 한다는 동의안도 크게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북한은 통계의 불확실성에 의하여 정확히 분석할 수는 없지만 재정 및 경제 상황보다는 남한의 국방비의 변화에 더욱 민감한 변화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는 면<sup>38)</sup>에서 必要第一主義的인 국방비의 지출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70년대말 이후 GNP와 국방비의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경제악화에 의한 영향을 심하게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다음으로 남북한의 軍備競爭을 정당화하고 이를 가속화하는데 영향을 준 요인으로는 사회심리적인 요인을 들 수 있다. 특히 한반도의 분단과 한국전쟁은 남북

35) 그레고리원, “남북한 외교정책: 신념, 인식 및 갈등 정향의 비교”, “구영복외, 「앞의 책」 152-168쪽. 이경숙, “한국통일외교정책-결정요인 분석을 중심으로-” 「통일논총」(숙명여자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1984), 17-42쪽.

36) 秋再鎬, “북한의 산업구조”, 정상훈외 「북한경제의 전개과정」(경남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1990), 82쪽.

37) 拙稿, “남북한 국방비 결정요인에 대한 체제적 비교분석”, 「북한·통일문제 논문집-군사분야」(국토통일원 1990), 262쪽.

38) 위의 글.

한 국민에게 多元主義 가치관이나 자유의식보다는 단세포적 의식으로 귀일하게 하였다.<sup>39)</sup> 이는 남한국민에게는 피해의식과 반공의식을, 북한 국민에게는 敗北意識과 反帝國主義 및 民族主義 의식을 강화시켜서 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려는 심리 요인을 가지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

39) 김성국, “세계체제와 한국의 정치·경제”, 박헌채 외, 『한국사회의 재인식 I』(한울, 1986), 60쪽.

### Ⅲ. 韓半島 軍事爭點問題의 實體

#### 1. 南北韓 軍事問題의 擡頭 背景

모든 軍事問題는 그의 反對 概念인 平和의 維持 및 安全을 확보하고, 전쟁 발생의 가능성을 줄이며 그리고 軍事力에 의한 공포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한 문제로 귀결된다고 하겠다. 한반도의 군사문제는 남북이 분단된 이후로 常存한 문제로서 지금까지는 군사문제를 남북한 양측이 군사력의 증강이라는 수단으로 해결하려고 하였다. 즉 무기를 통한 안전과 평화를 추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남북한 양측의 政策은 囚人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sup>1)</sup>에 빠져 오히려 軍備競爭을 자극하였고 평화와 자유에의 가능성을 더욱 줄이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인간이 武器로부터 안전을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으나 그 모든 노력이 결실이 없었던 것이 인류의 역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韓半島에서 武器로부터의 자유를 위한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되게 된데는 다음과 같은 믿음에서 연유한다고 하겠다.

첫째, 한반도에서의 군사문제의 해결은 韓民族을 戰爭의 恐怖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라는 믿음이다.

둘째, 武器로부터의 安全인 軍縮은 한반도의 平和統一에 기여할 것이라는 믿음이다.

셋째, 南北韓의 軍備競爭이 진정한 안전과 평화의 保障策이 되지 못한다는 믿음이다.

넷째, 남북한의 軍縮은 남북한의 발전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믿음이다.

다섯째, 군비경쟁은 帝國主義에 의해 민족의 自主性和 自衛性이 제한될 것이라는 믿음이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은 國際政治에서 종종 허구적인 것임이 드러난 것이지만, 오늘날의 國際政治의 환경과 남북한의 體制環境은 과거와는 다르다는 새로운 믿음에 의하여 이러한 믿음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더욱 강하게 가

1) Merton D. Davis, Game Theory(New York : Basic Books, Inc., Publishers, 1970) 참고.

지게 하고 있다. 이러한 믿음을 증대시키는 여러가지 要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2)</sup>

### 1) 國際體制的 要人

1980년대 후반의 世界政治軍事體制는 신데탕트의 물결에 의해 미·소간의 균축의 노력은 1991년 7월 31일 역사적인 戰略武器減縮協定(START)에 조인하게 하였고, 유럽에서도 동서 양진영간의 在來式 무기감축협상의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소련의 개혁과 개방정책, EC통합, 미국의 世界資本主義 체제에서의 위치의 저하 및 재정 및 무역적자 등의 국내체제의 변화가 力學的으로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세계체제의 변화는 종래의 軍事安保에서 經濟安保를 중시하는 결과로도 이해될 수 있다. 이는 1986년 9월 27일 소련 외장 세바르드나제가 “國際社會에서 이데올로기가 더 이상 국제관계의 基本原理가 될 수 없다”<sup>3)</sup>는 脫理念化의 주장에서 볼 수 있듯이 오늘날의 데탕트는 정치적인 데탕트인 것이다. 동서관계에 있어서의 軍縮의 분위기는 걸프전쟁으로 다소 위축된 모습을 보이기는 하였지만 미소의 戰略武器減縮協定을 계기로 하여 다시 고조되어 전세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북아와 한반도도 이의 예외지역이 될 수 없으리라는 것이 일반적이다.<sup>4)</sup>

특히 고르바초프의 1986년 7월의 「블라디보스토크선언」과 1988년 9월 16일의 「크라스노야르스크」에서 제기된 「아시아 태평양지역 7개평화안」<sup>5)</sup>의 제기<sup>6)</sup> 및 최근의 소련체제의 변화는 국내경제체제의 해결을 體制危機의 최대의 과제로 삼을

2) Yoo Jong Youl, “The Feasibility of Disarmament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Presented at the Thi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eace and Unification of Korea(Seoul : July 21-23, 1987), pp. 250-257에서는 ① 경제면에서의 과중한 부담, ② 전쟁의 무용론, ③ 군병력과 장비의 과잉보유, ④ 한반도에서의 데탕트를 추구하고 있는 4장을 들고 있다.

3) 국토통일원 「고르바초프의 대외정책 자료집」, (국토통일원 1988. 11), 66-81쪽 참고.

4) 최근의 주변정세의 개황에 대하여는 다음을 참조. 柳仁澤 “한반도 周邊情勢와 統一環境”, 「民主統一論」(서울 : 국토통일원 통일연수원, 1990), 126-173.

5) 「위의 책」 5-57쪽 참고.

6)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 金富起, “소련의 減軍과 南北韓 平和共存 및 軍備統制”, 「統一問題研究 第1卷第4號」(1989 겨울), 9-30쪽.

것이며 이는 극동의 군사력의 減縮을 필요로 할 것이고 이는 이 지역의 緊張緩和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어쨌든 소련 체제의 변화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平和的 국제관계의 필요성을, 그리고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을 더욱 강하게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남북이 고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世界政治經濟體制에의 변화와 같이 하여야 한다는 상황논리가 한반도의 군사문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높인다고 하겠다.

한편 남북한의 UN가입은 이 기구가 軍備縮小 및 軍備減縮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기구로서, 그리고 한국전쟁의 휴전의 상대자가 UN군 사령관이라는 상징적인 모습은 한반도에서의 군사문제에 대한 논의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 2) 南北國家對立體制的 要因

世界體制的 변화는 남북한 관계의 개선에 좋은 환경을 제공하여 주어 남북한 관계개선에 큰 영향을 주었다. 3차에 걸친 남북한 고위급회담, 체육교류, 물자교류 및 비정치적인 일련의 교류는 南北韓 國家對立體制를 완화시키고 공존과 평화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변화는 軍事問題, 특히 군축에 관하여 先信賴構築 後軍縮의 政策으로 일관하여 온 남한측에게 信賴構築의 의미로 이해될 수 있으며, 1954년부터 감군 및 軍備縮小에 대한 구체적 제안을 해 놓고 이를 남북대화의 중요 이슈로 내세우고 있는 북한에 대하여 더 이상 남한이 종래의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한다는 것이 대립의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 이를 지속할 경우 남북한의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증대되고 있다는 것이 군사문제에 대한 논의를 實體化시키는데 영향을 주고 있다.

남한측에 있어서 남북한의 군사문제에 대하여 消極的인 입장을 견지하도록 하게 한 가장 중요한 요인인 對北 軍事力의 열세가 70년대 이후의 전력증강노력의 영향으로 많이 완화되었으며, 수년내로 남북은 戰爭能力에서 비슷한 상황에까지 이르르게 될 것이라는 추정<sup>7)</sup>이 남한으로 하여금 군사문제에 대한 남북논의에 관심

7) 국방부 「국방백서 1989」, 185쪽. 이영희, “남북한 전쟁능력 비교연구”, 「사회와 사상」창간호 (1989. 9), 140-166면에서는 전쟁수행능력에 있어서는 남한이 우세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오늘날 남한의 군사력이 북한의 65% 수준으로 발표하고 있다. 조갑제, “주한 미 8군 사령부”, 「월간조선」(1988. 8) 230-251면 참조. Oh Kwan-chi, “The Military Balance on the Korea Peninsula”,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II, No. 1(Summer, 1990)에서는 2005년에 이르면 남북한 군사력이 비슷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 2. 國際體制的 軍事問題

### 1) 4強의 力學構造 속에서의 軍縮問題

韓半島의 軍事問題는 다양한 차원으로 논의될 수 있으나, 이를 통합하면 군축 또는 군비통제라는 문제로 언급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軍縮이나 軍備統制의 문제는 국방정책의 대안이 아니라 國防政策의 보완으로 논의되어야 하며, 외교등의 국가 정책과 상호연관 속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즉 軍縮이나 군비통제는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것이다. 따라서 군축은 그것을 추구하는 나라나 그것을 추진하려는 지역이 안고 있는 대립과 갈등의 정치적 타결없이 성공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sup>12)</sup>

오늘날 미·소를 중심으로 한 세계체제의 민화의 물결이 아직은 동북아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겠다.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군사적인 갈등이 더욱 높아질 징후마저 보여주고 있다. 즉 미국의 경우 최근의 軍縮이 포괄적인 수준에서 소련과 논의하고 대상을 주로 유럽에 한정하고 있을 뿐 지역을 태평양이나 동북아에 까지 확대하고 있지는 않다. 소련의 경우도 樞東軍事力의 감축을 주장하고는 있으나 아직은 선언의 의미를 넘어서고 있지 않으며, 중국의 경우 軍備縮小나 통제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미국의 방위비 분담의 요구와 樞東에서의 美國과의 역할 분담의 요구에 의하여, 그리고 80년대 초반까지의 소련의 樞東軍의 증가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총래의 GNP의 1%수준의 國防費가 와해되고 1%정도론으로 변하였고 이는 2%까지 확대될 수 있는 것<sup>13)</sup>으로서 아시아에서 중국과 대등한 군사강국으로의 부상은 언제나 시간의 문제로만 남아 있다고 하겠다. 최근 영국군사전문지 「디펜스 위클리」는 일본자위대는 장비의 근대화 따라 극동아시아지역의 주요 군사대국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자위대의 유엔 평화활동 참가까지 이루어지면 세계적인 군사국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특히 일본항공자위대와 일본해상자위대가 앞으로 계속 군사력을 증강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있다.<sup>14)</sup>

12) Hans J.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New York : Alfred Knopf, 1976), pp. 436-584 참고.

13) 강한구, “戰後 日本防衛費의 構造分析과 展望”, 韓國國防研究院, 「國防論集 第5號」(1987. 12), 31-32쪽.

14) 동아일보 1991. 8. 15.



역사적으로 동북아 4국, 즉 韓國·中國·日本 그리고 蘇聯간의 세력불균형의 결과는 언제나 한국의 피해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周邊強國의 군축이 없이 남북한 독자적인 군축이나 軍備統制는 남북한의 긴장의 완화에는 도움이 될지언정 장기적으로는 한민족에게 긍정적인 영향만을 제공한다는 보장은 없다. 고로 국제체제와 관련하여 해결하여야 할 한반도의 군사문제는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군축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변 4강과 한반도 군사문제의 해결과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15)</sup>

- ① 奇襲攻擊 抑制措置 造成(미국)
- ② 軍備減縮에의 참여(미국)
- ③ 外國兵力 및 裝備의 주둔에 대한 제한과 관련된 南北韓間 협약에의 참여 (남북각각의 동맹국)
- ④ 韓半島 주변의 上空 및 公海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한 協力(미국, 소련, 중국, 일본)
- ⑤ 南北基本關係合意書 또는 武力 不使用協定(또는 不可侵宣言)과 같은 안보적 의미를 지닌 남북한간 政治的 協定과 條約에 대한 支持(미국 및 가능하면 소련, 중국, 일본)
- ⑥ 특정한 裝備를 반입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시한 남북한간 協定의 존중(미·소를 포함한 주요 무기생산국)
- ⑦ 核武器를 생산하거나 획득하지 않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檢證義務에 대한 認識共有(모든 IAEA 회원국)
- ⑧ 檢證過程 參與(남북합의에 의해 초청되는 국가)
- ⑨ 休戰協定 終結(미국 및 가능하면 UN)
- ⑩ 統一節次에 대한 支持(남북한 합의에 의해 초청되는 국가)

## 2) 駐韓美軍의 問題

### (1) 周邊 4強의 視角

駐韓美軍의 문제는 韓半島의 다른 군사적인 문제보다도 국제체제적인 성향이

15) James Goodby, "Security and Cooperation in Korea : A Framework for Analysis"(Stanford University, 1989).

강한 문제이다. 국제법상 주한미군은 유엔측을 대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측에 있어서 駐韓美軍은 國際法上 주권의 정당성을 가지면서 동북아에서 한국전쟁이후 정치·경제·군사등 다양한 차원의 國益을 획득하는 주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특히 軍事的으로 동북아의 勢力均衡의 가장 중요한 힘이 되고 있으며 소련의 남하정책에의 주요한 방어수단이 되고 이데올로기적으로 자유민주자본주의의 最一線의 침범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이외에 정치와 군사적으로 남한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변수로서의 역할을 하는 등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하겠다. 한반도내에 있어서 力學關係를 보면 지금까지는 미국에게 유리하게 전개 되어 왔다. 그러나 한반도에서의 군사문제의 해결은 미국의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므로 미국으로서는 既得權의 상실이라는 측면에서 한반도의 군축문제와 駐韓美軍의 문제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中·蘇의 대결과 북한의 자주적인 노선에 의하여 한반도에 대한 지배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소련에 있어서 한반도의 군축은 미국의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줄여 동북아에서의 실질적인 勢力均衡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된다.<sup>16)</sup> 그러나 지금까지의 소련의 정책은 공식적인 표명없이 북한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하는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여 왔다. 오늘날 소련의 국가적인 과제가 이데올로기나 정치적인 문제보다는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駐韓美軍의 철수에 의한 동북아의 勢力均衡이 깨어짐으로서 나타나는 중국과 북한 그리고 日本 세력의 확대에 의한 새로운 갈등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하다.

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고립을 벗어나기 위하여 北韓의 노선을 자신들의 노선과 일치시키려고 노력하면서 북한의 軍事政策을 지지하는 중국은 한반도의 군축은 주한미군의 철수 등에 의한 미국의 영향력의 약화 대신 소련의 영향력의 확대와 일본의 군사대국화의 위협을 기저로서 전체적으로 중국에 불리한 상황을 야기할 위협을 내포하고 있어서 한반도에 있어서의 군사적 문제의 민화보다는

16) 그러나 蘇聯이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駐韓美軍의 駐屯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Ralph N. Clough, *Deterrence and defense in Korea: The Forces* (Washington, D. C. Brookings Institution, 1976), pp. 57-61.

現狀維持를 다른 4강 보다도 강력하게 바라고 있다.

한편 자국국방에 있어서 한반도가 중요한 變數임을 역사적으로 인식하여 온 일본은 주한미군의 철수는 어떤 면에서는 국방의 安全壁을 상실하는 것이 되고, 미국에 의한 동북아 안보에 대한 요구의 증대를 가져와 國防費의 증대와 군사력 증강의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이 韓半島의 군사문제를 民族自決主義 입장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國際體制와 관련하여 남북이 해결하여야 할 과제이다. 오늘날 주변 4강의 공식적인 표현은 남북문제에 대한 民族自決主義的인 해결을 지지하고는 있으나 주한미군의 문제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입장을 표현하고는 있지 않다.

## (2) 南韓의 視角

1954년 韓·美相互防衛條約에 의거하여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은 한국군과 함께 남한의 국방목표<sup>17)</sup>를 공동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남한측은 이해하고 있다. 남한측에서 보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보면<sup>18)</sup> 첫째, 유엔을 대표하는 정전협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 둘째, 북한의 재침억제, 셋째, 남북한의 사소한 충돌이 대규모의 무력충돌로 확산되는 것을 제어하는 완충의 역할, 넷째, 소련의 南進政策 및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지역의 안전을 지키는 勢力均衡의 역할 그리고 방위전략 및 기술적인 역할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주한미군의 역할은 남한의 防衛와 安보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으로 이해하여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계속 주둔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駐韓美軍이 철수하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前提條件이 확립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sup>19)</sup> 첫째, 북한이 대남무력적화전략을 포기하고 韓半島 평화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 둘째, 미군의 부분 또는 전면 철수에 상응한 대체전력을 확보하여 軍事均衡이 존재할 것, 셋째, 한·미간의 충분한 사전협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

17) 대한민국의 국방목표는 “적의 무력침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적인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공표하고 있다(국방부 정책회의 의결, 1981. 11. 28), 국방백서, 1989, 18-19쪽.

18) 국토통일원, 「남북한간 주요쟁점 해의」(1987), 21쪽. 「국방백서」, 163-164쪽 참고.

19) 「국방백서」, 166-167쪽.

등이다.

남한의 안보적인 요구와 미국의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의 지속이라는 동북아전략의 일환으로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은 남한의 의존적인 방위체제의 핵심을 구성한다. 남한측은 과거와는 달리 共同防衛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부담을 분담할 것을 더욱 거세게 미국으로부터 요구받게 될 것이다. 특히 미국의 유상원조인 FMS차관이 중단된 1986년부터 본격화된 防衛費分擔(Cost-Sharing)액을 높일 것을 앞으로 더욱 강하게 요구할 것이다.<sup>20)</sup>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와서 駐韓美軍의 減縮과 位相의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고 이를 위하여 미국은 미군의 減縮이나 철수 후에도 그들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한국의 防衛의 역할을 한반도에 한하지 않고 동북아와 태평양으로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주한미군의 철수는 한국군 역할의 증대와 그에 따른 國防費와 軍事力의 증대를 요구하게 되는데 이는 韓半島의 軍縮과 緊張緩和에 역행되는 것이 된다. 즉 미국의 군축을 남한에 진가할 때 남한이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한반도의 군사문제와 관련하여 남한이 해결하여야 할 국제체제적인 과제라 하겠다. 현실적으로 오늘날 한국과 미국의 군사문제는 聯合防衛戰略概念의 재정립이나 주한미군의 역할변경 또는 作戰統制權 문제등과 같은 문제보다도 防衛費 분담 증대가 주요한 의제가 되고 있는데<sup>21)</sup> 이는 駐韓美軍의 한반도 주둔이 한반도의 안전과 자국의 이익을 위한 미국의 實用主義的 정책으로 이해될 수 있다.

### (3) 北韓의 視角

북한의 주한미군에 대한 視角은 국가사상인 주체사상과 어긋나는 것으로 이해하며, 社會主義 논리상 약소국에 대한 帝國主義의 침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까지 북한에 있어서 군사문제는 협상의 상대로서 미국을 지칭하였는데 이의 논리의 기본은 다음과 같은 허담의 발언에서 살펴 볼 수 있다.

20) 미국은 1990년대 말에 가서는 NATO수준의 防衛費 분담을 의도하고 있다고 함. 서울신문, 1988. 5. 28. 기타 防衛費分擔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 참조. 국방부, 「국방백서 1989」, 169-171, 335-338쪽.

21) 국방부 「국방백서 1989」, 52쪽.

“남조선에서 군사통제권을 포함하여 모든 실권을 가지고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은 미국인데 군사통수권도 가지고 있지 못한 남조선 당국자와만 마주 앉아서 어떻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나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논의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미국과의 문제, 미국의 내정간섭을 배제하는 근본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의 회담을 하여야 한다.”(최고인민회의 제 7기 제 3차회의 보고, 1984. 1. 25.)

즉 북한의 입장에서 주한미군은 실질적인 敵對國이며, 가장 두려운 적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주한 미 2사단이 首都圈 防衛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주한미군의 전략이 공세적이며, 남한의 作戰指揮權이 韓·美 聯合司令部(CFC : ROK/US Combined Forecs Command)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駐韓美軍이 核을 보유하고 있다는 북한의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선 駐韓美軍의 주둔을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전쟁의 위험을 안고 있는 항시적인 위험의 근원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북한은 한반도의 군사문제와 기타의 政治的인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先決條件으로서 남한에서의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고 있다. 이외에 북한이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는 論理로 제시하고 있는 주장을 살펴보면<sup>22)</sup> 주한미군의 주둔은 ① 國際法의 違反이며, ② 7. 4共同聲明의 위반이며, ③ 유엔현장 결의 사항을 유린하는 행위이며, ④ 休戰協定の 違反이고, ⑤ 駐韓美軍의 주둔의 근거가 되는 韓·美相互防衛條約은 불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으로서는 대응해야 할 존재로서 주한미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한반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불가능하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남북한간의 군사문제에 대한 해결 또한 어려운 문제일 것이다. 즉 주한미군의 문제는 南北韓間의 군사문제에 대한 協商과 妥協이 실효성있는 것이 되기 위하여는 미국과 북한간의 대립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 또한 한반도 軍事爭點問題의 국제체제적인 문제로 남아 있다.

22) 국토통일원, 「남북한간 주요쟁점해의」, 6-8쪽.

### 3) 韓半島 非核地帶化 問題

#### (1) 周邊4強의 視角

한반도의 핵問題는 다른 주한미군의 문제 보다도 더욱 國際體制的인 문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自國의 戰略的인 必要와 이해관계에서 다루고 있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핵政策은 「核確認拒否」(NCND)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확인되지 않은 자료에 의거 일부 사람들이 주한미군의 핵 보유를 주장하고 있는데, 피터 헤이즈는 한반도에는 핵포탄 60개, 8인치 대포용 핵탄두 40개, 155mm 대포용 핵탄두 20개, 핵지뢰 21개 등이 있으며 1987년 4월 8일자의 뉴욕타임즈는 주한미군이 戰術 核武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했고, 1988년 7월 그레고리 헨더슨도 수백개의 핵武器가 비축되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sup>23)</sup>

미국의 동북아의 핵戰略은 기본적으로 對蘇 前哨基地로서의 北韓의 남침에 대한 억제력이라는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다. 또한 미국의 핵은 남한의 핵무장을 억제하고 이에 의하여 일본의 대응적인 핵武裝을 억제하면서 일본과 남한을 미국의 핵우산 속에 포용하여 동북아에서의 핵擴散에 의한 갈등의 소지를 줄이려는 내용도 포함된다고 하겠다.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서 非核 3原則 政策을 베풀고 있는 일본은 미국의 한반도에서의 핵전략에 대하여 부정적인 주장은 하지 않았으나 미국의 핵이 북한 핵개발을 자극하여 궁극적으로 일본에 위협요인이 될 위험성이 존재하는 한 이를 억제하기 위하여 앞으로 미국의 한반도의 핵戰略에 대한 수정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소련은 고르바초프 이후 한반도의 非核化 문제에 관하여 계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확인하고 있는데, 고르바초프는 1986년 블라디보스톡에서의 “아시아 태평양 양 독트린”을 선언하면서 “북한의 韓半島 非核平和地帶 창설제의를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한다”면서 북한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는데, 이는 韓半島에서 駐韓美軍을 철수시켜 이 지역에서 미국의 역할을 약화시켜 軍事的으로 뿐만 아니라 外交的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에 의한 것이다. 이에 소련은 북한과 함께 이 지역에서의 非核化의 문제에 대하여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

23) 김권철 편저, 「한반도내 군사력」(천산산맥, 1989), 194-196쪽.

라 하겠다.<sup>24)</sup>

중국은 1964년 核實驗을 한 후 아시아에서 인도와 함께 핵을 보유한 국가가 되었다. 중국에 있어 주한미군의 핵은 자국에 대한 위협보다는 對蘇 抑制力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북한과의 外交上 중국은 주한미군의 핵에 대하여 북한의 입장을 지지한다고는 公式적으로 언급하고는 있으나 자신들이 핵을 가지고 있고, 대소억제력이 있다는 면에서 積極적으로 한반도의 非核化에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는 않다.

이상과 같이 한반도내의 주한미군의 핵이 단순한 남북한간의 군사문제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남북이 民族自決主義的인 입장에서 해결하기란 어려운 문제이며 한반도의 군사문제의 국제체제적인 해결과제라 하겠다.

## (2) 南韓의 視角

남한의 경우 지금까지는 독자적인 核戰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서 미국의 정책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남한의 경우 1975년 프랑스와의 핵연료 처리시설 계약이 미국의 압력으로 저지되는 등 1976년 이후 핵무기의 개발이 멈춘 것 같으나<sup>25)</sup> 核武器 생산에 기초가 되는 核發電所가 가동되고 있고 이에 의한 프로토늄의 축적량을 보유했다면 이론상으로 수많은 핵탄두를 생산할 수 있는 핵연료를 갖게 된다고 한다.<sup>26)</sup> 만일 미국이 한반도에 대한 핵우산을 거두어 들인다면 核武器를 개발할 수 밖에 없을지도 모르나 군사적인 목적의 핵개발은 周邊 強大國 모두가 바라지 않는 것이며 그러한 경우 周邊國과의 관계는 크게 악화될 것이다.

남한의 경우 주한미군의 핵은 무엇보다도 북한의 재질을 억제하는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남한은 미국의 한반도에서의 NCND정책을 지지하나 최근에 들어와서는 북한의 核開發을 저지한다는 기본노선에 따라 주한미군의 戰術核의 철수가능성도 문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주한미군의 핵은 미중소의 核保有國間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하겠다. 최근 들어와서 冷戰體制의 緩和, 한반도의 戰爭可能性의 감소, 핵에 대한 한미의 정치적인 부담의 가중, 북한의

24) 이호재, "한반도의 핵전쟁과 비핵지대안", 이호재 편, 「한반도 군비론」, 303-304쪽.

25) 양성철, "남북한 군사력과 동맹체계", 「사상과 정책」(1989, 여름호), 100쪽.

26) 하영선 편, 「韓半島 軍備競争의 再認識」(서울:인간사탕, 1988), 183-184쪽.

駐韓美軍의 핵 문제를 남북한의 긴장완화와 연결, 기술적으로 미국의 핵우산이 주한미군의 핵철수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등에 의하여 주한미군의 핵 문제를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남한에 있어서 독자적으로 행할 수 없는 國際體制的인 문제이다.

오늘날 남한의 韓半島의 「非核化」問題는 미국의 NCND정책을 수용하면서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政策을 모색하는 것으로 이의 代案으로 일본식의 「非核 3原則」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기도 하였다.<sup>27)</sup> 그러나 이 정책이 주한미군의 핵철수 가능성 및 논리와 연결될 위험으로 인하여 남한으로서 독자적으로 논의될 수 없는 것임은 명백한 사실이다.

한편 남한은 북한의 한반도 「非核地帶化」의 주장에 대하여 주한 미군의 철수와 동일한 맥락에서 보고 있다. 즉 북한이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를 주장하는 의도를 주한미군의 철수를 의도하는 전략이며, 南韓의 핵개발을 억제하고, 自國의 핵開發을 은폐하며, 그들의 대남 기본전략인 武力統一을 보다 유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 (3) 北韓의 視角

駐韓美軍의 핵이 남북한간에 軍備競爭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주장도 있으나<sup>28)</sup> 이는 남한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라 하겠다. 북한의 입장에서 주한미군의 핵은 그들에 있어서 직접적인 위협의 요인으로서 북한 軍事力의 증가를 부채질하였고 이를 정당화하는 구실을 제공하였다. 특히 4대군사노선의 “전국토의 요새화”는 주한미군의 핵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의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1956년 제 1기 12차 최고인민회의에서 反核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이후에 1978년 이후 부터는 카터의 주한미군의 撤軍計劃 수정을 계기로 한반도의 非核地帶化를 본격적으로 주장하였는데 이의 본의는 한반도에서의 그들에게 위협의 대상이 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철수와 남한의 핵開發의 沮止라는 實體的인 목적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한반도 특히 주한미군의 핵에 관한 한 북한은 이 문제가 國際體制的인 문제임을 인식하여 핵문제에 대한 초기의 논의부터 협상의 상대를 美國에 한정하면서

27) 동아일보, 1991년 8월 7일.

28) 국토통일원, 「남북한간 主要爭點 解義」, 1987, 42쪽.



한편으로는 남북대화의 전략적인 수단으로 다루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南韓 內의 反核의 분위기를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手段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남한과의 協商도 주제로 다루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최근에 더욱 可視化되고 있는 북한의 核武器의 開發 可能性에 대한 국제 체제적인 논의는 한반도의 非核地帶化에 대한 관심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으며 북한은 이를 그들의 정책과 연결시켜서 韓半島의 非核地帶化를 달성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은 동북아에서 核을 가지고 있지 않은 日本과 南韓의 核武器 開發을 자극할 수 있고 이는 이 지역의 새로운 國際體制的인 갈등을 極大化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측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오늘날 북한의 核武器 開發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으나 많은 경우 이에 대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현실적으로는 다분히 戰略的인 차원에서의 핵공갈 정책적인 요소도 있다고 할 수 있다.<sup>29)</sup> 그러나 북한은 韓半島에 핵이 있는 한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國際體制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억제하느냐 하는 것이 한반도의 軍事問題에 커다란 과제라 하겠다.

#### 4) 國際的인 武器體系의 從屬問題

오늘날 남북의 주요한 武器體系는 強大國에 강한 從屬狀態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발전하는 武器體系를 무시하고 南北이 현상유지적인 군사력을 유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남북이 軍縮을 한다고 하여도 새로운 장비의 도입이나, 既存裝備의 유지를 위하여서는 強大國에 의존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무기수출국의 대부분이 武器輸出을 국가적인 戰略產業으로 하여 國家富의 蓄積의 手段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들 產業이 政治와 밀접하게 연결된 軍產複合體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거대한 힘을 배제한 상태에서 남북한이 독자적인 군사체계를 형성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다. 또한 강대국간이 軍縮

29) 최근 일본의 방위백서는 북한핵개발 상황을 단순히 「의문이 생긴다」고 판단하면서 개발에 확신을 주고 있지 않다. 조선일보, 1991. 7. 27.

30) 이를 Mirror Image에 의하여 강대국의 軍備縮小가 軍需產業에 대한 통제도 병행되어 군축대상 무기의 제3세계에의 반출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호재, “한반도 군비축소 문제의 한계와 가능성”, 「국제정치논총」제26집 제2호(1986), 110쪽.

의 論議와 實踐으로 나타나게 될 軍需産業의 不況을 제 3 세계에 전가하려는 論理도 주요한 武器體系를 강대국에 의존성이 높은 남북한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國際體制的인 과제이다.<sup>30)</sup>

한편 남북한은 武器産業을 輸出産業化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많은 투자를 해 놓고 있다. 이에 따른 埋沒費用을 남북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도 중요한 앞으로의 과제라 하겠다. 또한 군축의 運營目的과 관련하여 軍事科學技術과 民間産業技術의 구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들 기술의 도입을 억제한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과 불합리성을 내포하고 있는데<sup>31)</sup> 이것이 효율적으로 통제되지 않는다면 기본적인 軍縮이나 軍備統制의 효과성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 3. 南北韓 國家對立體制的 軍事問題

#### 1) 軍縮 및 軍備統制의 問題

##### ① 南北韓 軍縮 및 軍備統制의 目的

일반적으로 軍縮(Disarmament or Arms Reduction)은 廣의의 軍備統制(Arms Control)의 下位構成 概念이다.<sup>32)</sup> 軍備統制는 軍備를 制限·減縮·管理·規制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전쟁의 發生可能性을 줄이고 戰爭勃發時 파괴적인 效果나 範圍를 제한하고 국방비를 줄이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대하여 軍縮은 軍事力과 國防費의 감축을 전제로 최소한의 국가 방어 능력만을 가질 것을 요구하게 된다. 즉 軍備統制는 무기를 통한 안전을 추구하나 군축은 武器로부터의 安全을 추구하는 것이다.<sup>33)</sup>

남북한 군축의 근본적인 이념형의 목적은 軍縮에 의한 남북한 갈등의 완화와 이를 통한 南北韓의 統一에 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군축이 한반도의 평화통일의 先決條件이기는 하나 充分條件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31) 21世紀委員會, 「韓半島의 軍事的 安定을 위한 基本措置」(1991. 4), 47-48쪽.

32) 두 개념에 대하여는 다음을 참조. Emile Benoit, "The Disarmament Model", in Emile Benoit and Kenneth E. Boulding, Disarmament and the Economy(New York: Harper & Row Publishes, 1963), pp. 28-49.

33) A. Etzioni, The Hard Way to Peace(N. Y: Collier Books, 1962), p. 126.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 두 용어를 통합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軍縮이나 軍備統制는 國防政策의 代案이 아니라 이의 보완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남북한간에 직접적인 군사문제로서 한반도 軍縮의 運營目的을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sup>34)</sup>

- ① 南北韓 兵力水準(豫備兵力 包含)의 凍結과 減縮
- ② 南北韓 軍費(무기체계)의 凍結 및 減縮
- ③ 南北韓 新武器 開發, 生産, 導入의 禁止
- ④ 南北韓의 軍事力配置 統制
- ⑤ 南北韓 非核化
- ⑥ 南北韓에서의 外國軍 철수 및 活動의 制限
- ⑦ 南北韓 實質 國防費 支出의 抑制 및 減少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運營上의 目的이 언제나 좋은 아니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이다. 이는 軍縮이나 軍備統制가 장기적으로 韓民族의 統一과 生存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때 남북한의 군비통제나 군축은 韓民族의 防衛能力을 위축시키는 위협을 내포하게 된다는 것도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즉 군사문제를 단순히 남북의 대립과 갈등을 완화하는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통일 이후의 한민족의 생존까지를 고려하는 것으로 생각하여야 할 때, 단기적인 運營目標와 長期的인 目標의 적절한 調和가 南北韓 軍事爭點問題에서 先決되어야 할 과제라 하겠다.

## ② 南韓의 視角

지금까지 남한은 다음과 같은 남북한간의 이미지<sup>35)</sup>를 가지고 있어서 軍縮이나 軍備統制에 대하여 消極的인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 즉 南韓側은 첫째, 자기 이미지에서 남한은 전쟁을 싫어하고, 韓國戰爭의 피해자이며 軍事的으로 언제나 防

34) 민병천, “한반도 군축의 제약성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논집 제13집」(1933), 132쪽.

35) Stoessinger는 국가간의 이미지(Image) 분석틀로 다음의 네가지를 들고 있다. ① 각 나라의 자기 이미지 ② 각 나라의 적의 성격에 대한 이미지 ③ 각 나라의 적의 의도에 대한 이미지 ④ 각 나라의 다른 나라의 힘과 능력에 대한 이미지. John G. Stoessinger, Nations in Darkness(N. Y. : Random House, 1971), pp. 184—197.

禦的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적의 이미지에 대하여 남한은 북한의 성격에 대하여 일반국민들은 잔인, 약탈, 죽음, 비인간성, 호전성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남한의 지도자들도 공산주의=전쟁=김일성·김정일의 호전성=군사사회의 공식을 가지고 있다. 셋째, 북한의 의도에 대한 이미지에 대하여 남한의 지도자나 국민들은 북한의 目標은 오직 하나 즉 김일성의 주도하에 韓半島를 共產化하는데 있다고 본다. 끝으로 南韓은 北韓의 힘과 능력에 대하여 북한은 戰爭準備를 完了했고 계속적으로 軍事力을 증강하여 攻擊態勢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미지는 南北對話에서 先平和·後統一의 視角을 가지게 하였고 이는 군축 및 군비통제에 대한 지금까지의 기본적인 시각을 消極的이게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미지는 한반도의 軍縮 및 軍備統制의 基本政策과 北韓의 政策에 대한 다음과 같은 반응을 택하게 되었다.

첫째, 先信賴構築·後軍備減縮

둘째, 軍事力의 均衡을 前提로 한 양자간의 軍縮<sup>36)</sup>

셋째, 軍縮을 平和共存 및 北韓의 戰略에 대한 억지로

넷째, 북한의 軍縮提議를 南韓의 防衛力을 약화시키려는 전략으로 보고 있다.

이에 의하여 남한은 지금까지 협의의 軍備減縮 보다는 광의의 군비통제의 선결조건으로서 南北韓 相互不可侵協定 締結, 武力使用 拋棄, 緊張緩和 등의 信賴構築을 중심으로 北韓과 軍事問題의 협의를 추구하였다.

### ③ 北韓의 視角

한편 북한은 지금까지 다음과 같은 國家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첫째, 자기 이미지에서 자신들은 韓國戰爭의 敗北者이며 진정한 民族主義者이고 군사적으로 방어적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북한은 남한의 성격에 대하여 서울의 獨裁政權은 민족의식도 없이 美帝國主義者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셋째, 북한은 남한의 의도에 대하여 미국과 협력하여 南韓 추종자들에게 북한을 공격하라고 명령할지도 모른다.<sup>37)</sup> 또한 남한은 북한을 개방시켜 南韓의 資本主義

36) 尹正錫, “남북한의 군축에 대한 기본입장과 군축안 비교”, 이호재, 『앞의 책』, 184-195쪽 참조.

37) Man-Woo Lee, “How North Korea Sees Itself”, Eugene Kim and B. C. Koh, Journey to North Korea (Berkeley :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1983), p. 137.

體制에 흡수하려고 하고 있다. 넷째, 북한은 남한의 능력에 대하여 무엇보다도 駐韓美軍이 50년대 후반부터 核武器를 가지고 있고, 또한 남한에 미군이 상주하는 한 자신들이 언제나 열세에 있다고 믿고 있다. 이와 같은 남한과의 대립적인 국가의 이미지는 軍縮 및 軍備統制에 대하여도 대립적인 전략을 추구하게 하였다고 하겠다.

북한의 軍縮 및 軍備統制에 대한 기본전략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先軍縮·後信賴構築

둘째, 현시점에서의 일방적인 減縮

셋째, 軍縮을 統一 및 남조선 解放의 수단으로 인식

넷째, 남한의 軍縮에 대한 戰略은 軍事的인 우위를 차지할 때까지 시간을 벌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sup>38)</sup>

이에 의하여 북한의 軍縮 및 軍備縮小에 대한 對南提議는 주로 운영적인 차원에서 감축을 주장하고 있다.

## 2) 信賴構築의 問題

### ① 信賴構築과 軍事問題

광의의 信賴構築이란 國家 및 국가가 창조하는 사실들에 대한 信賴性, 즉 마음의 保障을 의미한다.<sup>39)</sup> 軍事的인 信賴構築이란 武裝葛藤의 가능성을 감소하고 특히 심각한 군사적 대립지역에서 공격적 軍事力의 균형된 축소를 위한 길을 여는 활동으로, 광의로는 남북한관계의 모든 면이 군사적인 信賴構築의 기반이 되나 이곳에서는 보다 협의의 개념으로 군사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활동만을 대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는 軍縮에의 합의를 도출해 낼 수도 없고, 군축에 합의하더라도 실천에 옮길 수 없으며 實踐이 된다고 하더라도 효과를 가져올 수 없다고 하겠다.

군사문제 해결의 전제로서 信賴構築에 포함되어야 할 중요한 내용을 보면 다

38) 민병천, “북한의 군축 및 비핵주장”, 대학 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통일논의의 제문제」(서울: 대왕사, 1988), 192-193쪽.

39) John J. Holst,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A Conceptual Framework”, Survival Vol. XXV No. 1 (Jan./Feb, 1983), p.

음과 같다.<sup>40)</sup>

첫째는 相互 情報의 交換 및 開放이다. 그러나 現代戰이 情報의 戰爭이라 할 만큼 정보의 필요성이 중요한 상황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交換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둘째는 군사활동에 대한 상호 監視體制의 구축이다. 이는 서로가 비밀리에 전쟁을 준비하거나 軍備增強을 꾀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

셋째는 作戰의 制限 및 전략의 轉換을 들 수 있다. 특히 대규모 攻勢作戰의 制限은 警戒時間의 확보에 의한 安定維持를 그 목적으로 한다.

넷째는 相互 領土내에서의 外國軍 活動의 제한과 통제이다.

## ② 南韓의 視角

남한의 韓半島 군사문제에 대한 基本 視角은 70년대 이후 先信賴構築, 後統一의 원리에 기초를 두고 전개되었으며 이는 주로 비군사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한 국가간의 信賴構築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음을 民族和合民主統一方案과 1989년 한민족공동체 統一方案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이에서는 休戰體制의 平和體制로의 轉換, 平和區域의 設定, 信賴構築 및 軍備統制등의 宣言的인 次元의 것들이 제시되었다.

지금까지 공식화된 한반도 信賴構築의 남한측의 주장은 1984년 레이건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술츠 국무장관이 중국의 外相을 통하여 제안한 다음 4가지의 제안의 맥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하겠다.

첫째, 비무장지대로부터 兵力을 후진시키고 重裝備武器를 제거함으로써 비무장지대의 비군사적 성격을 부활시킨다.

둘째, 비무장지대의 非軍事的 성격을 보장하기 위해서 中立國들로 구성되는 탐에 의한 정기적인 조사를 한다.

셋째, 남북한 軍事訓練의 사전통보

넷째, 군사훈련에 參觀人들의 相互派遣<sup>41)</sup>

40) John Broawski, "The World of CBMs", in John Borawski(ed.), Avoiding War in the Nuclear Age : Confidence-Building Measures for Crisis Stability (Boulder, Colorado : Westview Press, 1986).

41) Korea Herald, June 7, 1984.

또한 최근에 중단된 남북고위급회담에서 1988년 강영훈 국무총리는 군사적 신뢰구축방안을 주의제로 포함시켰으며 그 주요내용은 ①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② 군사훈련 및 대규모 병력이동, 훈련 사전통보 및 참관단 교환 ③ 쌍방 고위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 ④ 군 인사 상호방문 등이다. 이러한 내용은 헬싱키 조약의 기본정신에 입각한 것이라고 하겠다. 한편 그동안 남한측이 신뢰구축의 방안으로 계속 주장하여 온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은 실현되어 信賴構築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였다.

### ③ 北韓의 視角

북한의 信賴構築에 대한 基本 路線은 先軍縮·後政治的 解決의 論理<sup>42)</sup>로서 헬싱키 주장과는 달리 軍縮에 의한 信賴의 構築을 주장하다가 1988년 11월 7일 중앙인민위원회, 최고인민위원회의 상설회의, 정무원 연합회의에서 제시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포괄적인 평화보장 대책에 대하여」에서 제시된 다음과 같은 정치 군사적 대결완화 방안이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신뢰구축안의 기본노선이라고 할 수 있다.<sup>43)</sup>

#### 南北間 당면한 政治·軍事的 對決狀態 緩和 方案

##### 가. 정치적 대결상태 완화

- ① 상호비방·중상 중지
  - 상대방 지명공격
  - 사상과 제도 비방·중상
  - 뼈라 살포 및 휴전선 방송 등
- ② 상대방을 비방하고 대결을 고취하는 정치행사 중지 및 상대방 체제를 부정하는 법규 철폐
- ③ 다방면적 합작·교류 실현
  - 정당·단체 및 개별인사들의 쌍무적·다투적 접촉과 자유로운 인

42) 로동신문. 1989. 9. 14의 논평에 의하면, “북과 남 사이에 신뢰를 도로하는데 나서는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남조선에서 1,000여개의 핵부기를 배치하고 있는 비핵 침략군을 제거시키고 남조선에 대한 간섭과 침략을 배제하는 데 있다.”

43) 국토통일원 「북한의 군사문제 제의 관련자료」(서울: 국토통일원, 1989), 129-132쪽 참조.

### 사왕대

- 자원의 공동개발·이용 및 상품교류
- 교육·과학기술·문화예술·보건·체육의 협력과 교류
- 국제무대에서의 대결·정쟁지양과 공동협력

### 나. 군사적 대결상태 완화

- ① 비부장지대의 평화지대화
  - 중립국 감독위원회 성원국 군사인원으로 조직된 중립국 감시군 배치
- ② 대규모 군사연습 중지
  - 연합부대 이상 군사훈련 및 외국군과의 합동군사연습 중지
- ③ 군사분계선 일대 육해공에서의 일체의 군사행동 중지
- ④ 우발적 충돌사건의 확대방지를 위한 고위 군사당국자간의 직통전화 가설

이상에서 보면 군사적인 대결상태의 완화를 위한 信賴構築方案으로 제시한 내용이 종래의 노선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宣言的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선언 이후 남북한 대화의 전제로 내세웠던 駐韓美軍의 철수 문제에 대하여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南北韓이 대화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남한이 주장하는 政治軍事問題보다 非政治軍事問題에 대한 교류의 선행에 의한 相互信賴構築보다는 北韓은 헬싱키 정신과는 달리 軍縮 및 군사문제에 의한 신뢰구축 또는 兩者의 同時接近을 주장하고 있다.

## 4. 南北韓 國內體制的 軍事問題

우리는 종종 전쟁이 국가간의 현상이라는 면에서 그 원인도 국가간의 葛藤처럼 인식하거나 이를 묵시적인 전제로 논의하곤 한다.<sup>44)</sup> 그러나 우리는 戰爭史에

44) 전쟁의 원인으로 직접적인 것으로는 영토의 확장, 정치적 통제의 확대, 권력균형의 유지, 경제적인 요인, 전략상의 요인 등을 들 수 있고 간접적인 요인으로는 민족주의, 언어·종교·인종의 차이, 인구적인 압력, 부의 불평등 등을 들 수 있다. Norman Z. Alcock, *The War Disease*(Datqrio : CPRI Press, 1972), Ch, 2., Anatol Rapoport, *Conflict in Man-Made Environment*(Harmondsworth : Penguin Books, 1974), p. 55.



서 戰爭의 原因이 체제내부의 動力에 의하여 형성되어 국가간의 갈등으로 정당화되었음을 볼 수 있다.<sup>45)</sup> 똑같이 軍備競爭도 체제내의 矛盾이 國家間的 경쟁으로 정당화됨을 볼 수 있는데 이를 가장 잘 설명하는 모델로는 軍產複合體의 논리라는 政治經濟學的인 접근이 있으나 한반도의 경우 남한의 國家獨占的인 성격과 북한의 社會主義 經濟體制에는 이 모델의 적실성은 줄어들었다고 하겠다. 대신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와 政治體制의 형태라는 차원에서 설명력이 높아질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즉 韓半島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갈등의 현상은 國際經濟秩序에 대하여 比較的 自律性<sup>46)</sup>을 지니고 전개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남북한의 직접적인 대결의 구조는 각기 국내적으로 權威主義的이고 獨裁的인 政治體系와 軍部政治를 탄생시켰고 외적으로는 強大國에의 예속적인 體制를 형성하게 하였다. 이들은 상호연관속에서 그 속성을 강화하는 惡循環의 고리에 싸여 체제의 왜곡을 가중시켰다.

남북한의 대결구조는 남한에서 軍部政治의 推進要因이자 誘引要因이 되었고, 군사부문을 확장·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官僚政治와 權威主義 政治 體制에서 軍事力은 군부의 정치적인 자산이며 그 자산은 다시 軍事力을 강화시키는 고리를 형성하게 되며 체제의 形成과 維持를 군에 의존하는 正當性이 결여된 정치구조에서 급격한 軍의 位相의 약화를 가져올 수도 있는 軍縮이나 軍備統制는 軍의 반발을 야기시켜 정치적인 불안을 가중시킬 위험도 있다.<sup>47)</sup> 이는 최근의 蘇聯 사태의 原因이 되기도 하였다.

한편 남북한의 對決 構造는 북한에 있어서도 이데올로기 요소와 결합하여 김일성 중심의 軍事獨裁體制를 구축하였고 黨에 의한 軍의 支配는 軍의 一體化 現象을 가져왔고 또한 북한의 군이 김일성의 軍隊라 할 만큼 政權의 유지에 지배적 세력이 되어 왔다는 면에서 정치적인 변화가 선행되지 않는 狀況에서 군의 급격한 변화는 체제의 위협요소가 될 것이다.

45) Julian Lider, *Military Theory*(England Aldershort : Gower Pub., 1983), pp. 162--165.

46) Michael Mann, "Capitalism and Militarism", in M. Shaw(ed.), *War, State & Society*(London : Macmillan Press, 1965), pp. 25-46. 이를 주장하는 이론을 정리하고 있다.

47) 국내체제의 정치·사회적 불안이 안보위협에 중요한 요인임은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 이동훈, 황진환 "한반도 군사환경의 특징과 전망", 김을권, 「앞의 책」, 621면.

남북한 동일하게 軍의 位相이 현상과는 상이하게 정립되지 않는 상황에서 급격한 군비통제나 군축은 軍의 정치적인 位相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軍部의 강한 반발에 의하여 軍備統制나 軍縮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南北韓이 어떻게 자체의 軍의 위상을 세우는가가 韓半島 軍事問題의 발전적인 해결의 과제라 할 수 있다. 즉 지금까지 體制維持의 最尖兵의 역할을 하여 온 軍의 공적을 부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군축이 軍의 위상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 주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職業軍人이 軍縮이 자신들의 직업적인 견해와 맞지 않는다는 인식<sup>48)</sup>을 불식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남북한의 실질적인 軍縮은 南北韓 양측의 經濟體制의 變化를 요구한다. 특히 군비경쟁에의 기반이 되는 軍需産業의 縮小, 廢止가 없는 한 실질적인 군축은 달성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군축의 논의에 있어서 이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많은 나라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이것이 自國의 경제체제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UN총회는 軍需産業의 民間으로의 전환을 제시하였으나 이를 존중하는 국가는 스웨덴을 제외하고는 없었다.<sup>49)</sup> 또한 軍縮에 대한 주요문서인 스톡홀름안에서도 軍需産業에 대한 條項이 없다는 것도 이 문제가 국가간의 이해가 첨예한 문제임을 간접적으로 나타내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軍需産業은 그의 특성상 민간부문에서 활용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國內經濟體制의 어려움으로 나타난다고 하겠다.<sup>50)</sup>

남한의 경우 70년대 이후 막대한 投資를 防衛産業體에 행하였다. 이의 稼動率이 미국의 라이선스에 의하여 많은 제한을 받고 있으나 이는 한국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輸出의 戰略的인 産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언제나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48) 페트릭 모간, “군비통제: 그 이론적 고찰”, 최명갑 외, 「현대군사작전 대강 IV 핵시대의 전략」(울지서적: 1988), 274-280쪽 참조.

49) 朴漢植, “주체사상과 북한의 외교정책”, 朴在圭編, 「북한의 외교정책」(서울: 경남대학교 국동문제연구소, 1986), 91-92쪽.

50) Inga Thorson, “In Pursuit of Disarmament”, in Ramesh Thakur, International Conflict Resolution(London: Westview Press, 1988), p. 149.

한편 북한은 산업이 重工業爲主의 體制로 軍需産業은 국가의 전략적인 산업일 뿐만 아니라 중동, 남미, 아프리카 등의 武器支援과 武器販賣는 중요한 外交의 手段이 되고 있다.<sup>51)</sup> 이러한 경제체제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軍需産業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도 한반도의 실질적인 軍縮의 주요 과제라 하겠다.

다음으로 社會心理體制的인 과제로서 分斷과 6.25戰爭은 지난 40여년간 동일한 민족을 서로의 존재를 부정하고 붕괴시켜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는 認知的·感情的 性向을 형성하여 相互間의 共存이나 和解를 곤란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는데<sup>52)</sup> 남한의 국민에게는 單細胞的인 反共意識을, 북한의 주민에게는 敗北的인 反帝國主義 意識을 심어 주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정당시하는 남한의 極右主義 集團과 北韓의 주체사상과 같은 편협한 이데올로기가 존재하는 한 남북한은 軍備競爭에 의한 평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社會心理體制를 軍縮이나 軍費統制를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게 하느냐 하는 것도 양체제가 어떠한 합의에 이르기 전에 해결하여야 할 과제라 하겠다.

51) 문정인, “북한의 대중동 외교정책”, 박재규 편, 「앞의 책」(1986), 464-470쪽. 이만우, “북한과 중남미”, 「위의 책」, 478-497쪽.

52) 申正鉉, “민족 동질성 회복에 부쳐”, 「국제문제 214호」(1988. 6), 8-10쪽 참고.

## IV. 韓半島 軍事爭點問題의 解決方案 摸索

### 1. 解決方案 摸索의 視角과 前提

韓半島의 군사문제는 기본적으로 國際體制에 의하여 형성되었고 南北韓 대립 체제에 의하여 지속되어 왔으며 남북한의 國內體制에 의하여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국가 및 체제의 自己保存의 原理에 의하여 이루어진 남북한의 軍事力의 증강과 이에 따른 한반도에 군사적인 恐怖의 均衡은 한민족의 生存과 繁榮을 위하여 새로운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군사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이들에서 몇가지 공통적인 定向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는 軍縮과 軍備統制는 한반도의 軍事問題 해결에 있어서 최선의 대안이라는 주장이다.

둘째는 軍縮이나 軍備統制등의 軍事問題 해결에 民族의 統一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려는 논리이다.

셋째는 남한의 先信賴構築, 後軍縮의 代案만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는 생각이다.

넷째는 군축이나 軍備統制 등이 兩側의 軍事費를 직접적으로 감소시킬 것이라는 생각이다.

다섯째 한반도의 軍縮은 남북한의 自律的인 決定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논리가 국제정치의 場에서 종종 하나의 幻像이 되곤 하는 것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먼저 남북한의 문제해결을 위한 軍縮이나 군비통제는 남북한의 軍事力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남북한이 周邊 強大國으로부터의 위협을 유발시키는 행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한민족의 生存을 위한 군사문제의 해결이 오히려 韓民族의 生存을 위협하는 것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리고 남북한의 統一을 저해하는 것으로 南北韓이 軍事力이 강하고, 그 위협

의 도가 크기 때문은 아니다. 그것은 부가적인 요소일 뿐이며 보다 중요한 것은 政治的, 이데올로기적인 요인들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군사문제가 해결된다고 그것이 南北韓의 統一을 가져 올 수 있다는 생각보다는 군사문제를 統一의 對話를 위한 手段으로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군축이 한반도의 군사문제의 解決의 方案이라고 할 때 추상적인 信賴構築보다는 가시적인 先軍縮이 오히려 남북한의 信賴構築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음을 배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음으로 남북한 양측이 군축의 國內體制的인 필요성으로 제시하고 있는 국방비의 삭감과 이의 經濟 및 社會開發費로의 轉用이라는 생각은 예산의 漸增主義的인 속성과 예산 결정의 官僚體制的인 속성상 그리 용이한 현상은 아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국방비는 전쟁에 의한 증가분이 전쟁뒤에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증가의 길을 가고 있다는 데에서 開發費와 軍事費와의 相殺效果를 역으로 돌려 놓는다는 것은 매우어려운 것이다.

지금까지 남한의 군사문제 및 군축과 관련한 신뢰구축의 방안은 대체로 미국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軍縮 및 軍備統制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이것이 주변 강대국에 미칠 영향력과 이를 위한 周邊 強大國에 대한 전략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한의 직접적인 協商을 강조하는 것은 현실성이 부족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반도의 군사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상의 해결방안 보다는 거시적인 問題解決 定向을 모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前提하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첫째는 韓半島의 軍縮이나 軍備統制는 단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해결될 문제이다. 이는 지금까지의 國際體制에 있어서의 강대국의 군사문제의 해결과정을 볼 때 그러하였으며, 현실적으로 남북한의 協商能力이 아직은 성숙한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서 妥協點을 찾는다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또한 남북한의 군사문제는 段階的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는 한반도의 군사문제는 남북한 정치체제의 變化라는 틀 속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서 보다 중요한 變數는 북한 정치체제의 변화이다. 현재의 북한의 상황에서는 군사문제에 대한 信賴構築이나 軍備統制의 可能性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며 이는 급격한 북한의 開放과 體制的 變化를 필요로 하며, 이러

한 변화는 1990년대에는 이루어지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豫測이라고 할 때에 南北韓 군사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상도 북한의 변화를 전제로 하며 그 변화의 성격도 豫測하는 틀 속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남북한 國內體制的인 요소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는 한반도의 군사문제는 남북한의 當事者 問題 이외에 한민족과 주변국과의 관계라는 문제의 틀 속에서도 보아야 한다.

넷째는 군사문제는 협의의 문제로 보다는 국가의 國力이라는 차원에서도 논의되어야 한다. 어떤 면에서 오늘날 남북한이 동북아와 世界體制에서 지금과 같은 외교적 위치를 가지게 된 데에는 강력한 軍事力이 뒷받침하였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다섯째는 남한의 安保觀은 自主的 安保觀을 전제로 논의되어야 한다. 남한의 국방체계를 담당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철수는 한시적이며 미국과 세계체제의 變化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이루어질 수 있는 可變的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自主國防體制를 확립하지 않는 한 韓國國防의 딜레마는 헤어날 수 없을지도 모르며 남북한간 군사문제의 협상도 모든 것이 中斷될지도 모른다. 남북한 군사문제의 해결은 미국과의 공동방위체제를 넘어서 韓國防衛의 韓國化라는 틀 속에서 논의되고 해결의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 2. 國際體制的 軍事問題의 解決方案

### 1) 軍縮問題

오늘날 韓半島 周邊國의 軍縮이나 軍備統制의 논의는 소련의 극동 군사력의 감축에 대한 주장<sup>1)</sup> 이외에 미국의 太平洋이나 아시아에서의 實質的인 軍事力의 감축에 대한 논의가 없고, 中國의 경우 兵力을 감축하는 대신 군사력의 現代化<sup>2)</sup>를 위한 노력이 가속되고 있는데, 中國의 現代化는 軍作戰 範圍의 擴大를 가져올 것이며 이에 따라서 中國의 작전범위에 한반도가 그 核心으로 위치할 수도

1) 최근 소련군 참모총장은 소련은 극동주둔 병력 약 23만명을 감축했으며 극동군의 감군작업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겨레신문, 1991. 9. 13.

2) 김달중 편 「中國의 改革政治」(법문사, 1988), 91쪽, 현대화란 농업, 공업, 국방 및 과학기술의 현대화를 끝까지 말까지 선진국의 수준으로 까지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특히 군의 현대화와 관련하여 4化정책으로 연소화, 지식화, 전문화, 혁명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 「국방백서 1989」, 56쪽.

있을 것이다. 이는 남한에 있어서 새로운 防衛體制의 構築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도 하다. 일본의 경우에는 오히려 군사대국화의 징후가 증대되고 있는 狀況<sup>3)</sup>에서 남북한의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군축의 논의는 아직 시기 상조라 하겠다. 특히 日本은 91년 中期防衛力 整備計劃이 시작되어 95년까지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4기를 도입하고, 패트리엇 미사일을 최신형으로 바꾸며, 펜텀15전투기 42대를 늘리고 전차, 장갑차, 잠수함 등에 5년간 22조 7천 5백억엔을 투입할 예정이다.<sup>4)</sup>

특히 오늘날 蘇聯體制의 붕괴로 社會主義의 마지막 보루가 되고 있는 중국의 경우 그들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군사력에의 依存度를 줄일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일본의 軍事大國化는 미국의 아시아에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수단의 의미를 가지는 한 지속될 전망이다. 역사적으로 동북아에서의 勢力均衡이 깨어질 경우 언제나 그 피해는 한민족에게 돌아왔다는 敎訓을 버려서는 아니될 것이다.

또한 오늘날 제3세계의 軍縮이나 軍備統制에 대한 요구는 많은 경우 자국의 요구보다는 강대국이나 利害當事者의 요구에 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직은 한반도에 대한 군축이나 군비통제에 대한 國際體制的인 要求가 없는 狀況에서 독자적인 군축이나 군비통제에 의한 戰力の 弱化는 國力の 弱화를 의미하고, 이는 국제체제에서 남북한의 지위를 약하게 할 위험도 내포한다. 軍事力이 단순히 戰爭抑制나 外部의 威脅으로부터의 自國의 보호라는 狹義의 기능 이외에 外交政策的인 기능, 국가명예의 유지, 국가영토 밖에서의 國益의 保護 등의 機能을 가진다<sup>5)</sup>고 할 때 오늘날의 남북한의 군축이나 군비통제를 단순히 남북한의 緊張緩和, 戰爭의 威脅의 감소라는 차원에서만 논의하는 입장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北韓의 경우 그들의 강력한 군사력 특히 자주적인 자위능력은 중·소에 대한 자주적인 外交의 수단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에의 종속

3) 정광하, 「일본 방위정책의 이상과 현실」(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89), 16-200쪽 참조, 최근 일본은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위대법의 개정 등 일본의 군사활동을 해외에 까지 미치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하고 있다. 동아일보. 1991. 7. 31.

4) 일본방위백서. 조선일보. 1991. 7. 27. 인용.

5) Gray C., "The Urge to Compete : Rationale for Arms Racing," World Politics, vol. 261(1972), pp. 207-233. Ken Booth, "The Military Instrument in Soviet Foreign," 1917-1972, "The United Service Institute for Defence Studies(Aberswyth, 1973), p. 5 Lider Julian, op. cit.

적인 위치를 相殺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제 3 세계에 대한 외교에서 군사외교는 중요한 外交政策의 手段이 되고 있다.

軍備競爭이 戰爭의 중요한 원인이 되나 보다 근본적인 戰爭의 原因은 많은 경우 정치 경제 및 사회 문화적인 요인에 의하여 일어나는 것이 많다는 면에서 韓半島의 군축의 논의를 戰爭抑制라는 단일의 論理로 正當化시킨다는 것은 잘 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국제정치군사체제는 때로는 倫理가 지배하는 체제가 아니라 아직도 힘과 術策이 지배하는 세계라는 면에서 한반도의 군축이 언제나 한민족과 통일한국에 옳은 될 수 없다는 논리를 오늘날 軍縮의 논의에 대한 代案으로 생각하여야 할 하나의 대안이다.

또한 한반도에 있어서 4대강국이 南北韓과 軍事同盟體制를 강화하든지 남북한에 대한 군사력 지원을 계속한다면 한반도의 군축이나 군비통제의 可能性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sup>6)</sup> 고로 軍事問題의 해결을 원한다면 남북한은 현재의 軍事同盟體制에 대한 논의도 함께 하여야 하며 이후 새로운 同盟體制의 형성에는 相對國의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2) 駐韓美軍의 問題

東北亞 국제체제에 있어서 駐韓美軍의 位相은 友邦國家에 대한 미국 安保公約의 信賴性을 제고시키는 상징적인 存在이며 현실적으로 한반도의 平和와 地域의 安定維持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에 주한미군의 減縮과 그의 位相의 변화는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으며 단지 그 時期만이 문제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서 주한미군은 중대한 戰略的 利益을 가지는 존재로서 남한이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미군의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撤收란 앞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최근의 소련 사태로 소련이 더 이상 社會主義 圈의 尖兵의 역할이 의문시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철수에 의한 동북아 지역에서의 힘의 不均衡에 의한 불안을 주변 4강은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南韓에 있어서 駐韓美軍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는 미국으로부터의 국방체계의 자율성 확보와 駐韓美軍의 駐屯費 分擔의 要求를 어떻게 해결하고, 대북한 협상에서 주한미군의 위상을 어떻게 定立시키느냐 하는 문제일 것이다. 또한

6) 송대성, “한반도 군축 타당성에 관한 검토”, 「국제정치논총 제29집 1호」(1989), 99-100쪽.



미국은 주한미군의 철수에 대비하여 다양한 형태로 자신들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측에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다. 즉 최근에 가조인된 “한미 전시접수국지원(WHNS)협정”과 같은 형태의 다양한 부담을 우리측이 어떻게 자율성을 확보하면서 대처해 나아갈 것이냐가 주요한 한·미간의 현안 문제로 등장할 것이다.

먼저 주한미군으로부터 國防運營體系의 自律性의 확보는 최근에 매우 긍정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으나 그 방향이 완전한 自律性 보다는 예측적인 자율성의 차원을 벗어나고 있지 못한 상태로서 이를 보다 積極的인 狀態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위한 戰略이 요구된다. 또한 駐屯費 分擔의 요구에 대한 협상에서도 지금까지 주한미군이 우리의 필요에 의하여 韓半島에 주둔한다는 認識에서 한반도가 미국에게도 중요한 戰略的 지역이라는 인식하에서 積極的인 자세로 협상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駐韓美軍의 위상을 남한을 북한의 侵略으로부터 保護한다는 것 보다는 地域防衛와 미국의 국익이라는 차원으로 재정립함으로써 가능하고 이러한 轉換에 의해서만 우리의 국방체제는 Free Rider의 利益을 享有할 수 있는 것이다.

대북 협상과정에서 주한미군의 문제는 앞으로 駐韓美軍이 한반도에의 주둔이 주로 자국의 이익을 維持 保全하기 위하여 주둔한다고 할 때에 우리측에서는 이 문제를 한·미간에 협의할 수 있을 것이다.

### 3) 韓半島 非核地帶化의 問題

北韓은 종래의 주장을 반복한 韓半島의 非核地帶化案으로 제1차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북과 남은 한반도를 非核地帶로 만든다면 세부적으로 다음 세가지 안을 내세웠다.

- ① 한반도에 배치된 모든 核武器들을 즉시 撤收시키기 위하여 共同으로 노력한다.
- ② 核武器를 生産 購入하지 않는다.
- ③ 核武器를 적재한 외국비행기, 艦船의 한반도내로의 출입과 통관을 금지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남한측은 北韓의 비핵화의 주장은 窮極的으로 駐韓美軍의 철수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核武器의 撤收에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에 대응, 남한은 북한의 核開發을 沮止하기 위하여 모든 外交力量을 기울

이면서 북한에 대하여는 軍事問題로서 북한이 핵사찰을 수용하게 될 때 한반도에 핵무기가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비핵화」에 대해서 협의할 예정에 있다.

한반도의 非核地帶化의 문제는 窮極的으로 南北韓이 핵을 가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체제에서 남북한이 핵을 가지지 않으므로 利益을 얻는 국가는 궁극적으로 주변 4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남한이 핵을 가지지 않으므로써 남한은 미국의 핵우산 아래 두어 남한의 國防體制를 자기들의 예측하에 둘 수 있게 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의 핵武裝과 中國 및 蘇聯과의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남북한 가운데 어느 한 편이라도 핵武裝을 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핵武裝을 필요로 하고, 자신들의 非核3原則을 깨뜨리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는 국제적으로 커다란 부담을 지우게 할 것이다.

한편 핵武器는 그 성격상 戰爭의 抑止 및 擴大를 방지하는 역할도 함을 최근의 중동전쟁에서 보았다. 또한 핵武器의 韓半島에서의 사용은 勝者도 敗者도 없는 전쟁을 의미하며 한민족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때<sup>7)</sup>에 實質的으로 핵武器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면서 使用確率이 가장 적은 非效果의인 武器로 생각할 수 있다. 오늘날 강대국의 전유물로 되고 있는 핵무기는 국제정치의 論理上 가지는 것이 가지지 않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할 수도 있어, 강력한 국력의 상징인 핵武器를 먼 훗날 통일한국이 가지는 方案도 배제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즉 한반도의 비핵지대화가 통일을 가속시킨다는 保障이 없는 상황에서 非核地帶化가 국제체제의 논리상 언제나 흠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오늘날 非核保有國들은 핵무기의 拋棄로 당연히 획득되어야 할 핵에너지의 평화적인 이용까지도 강대국과 國際原子力機構 등을 통하여 제한되고 있다는 면에서 비핵보유국들은 다양한 형태의 不利益을 당하고 있다.

만일 韓半島의 비핵화가 실현된다면 그것은 中·蘇의 핵무기가 남한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과 함께 중·소가 東北亞地域에 배치하고 있는 핵무기의 철수와 연계되어야 한다.<sup>8)</sup> 이는 남북한의 군사적인 균형의 維持를 전제로 하여야 한다는 기본적인 전제도 충족될 필요가 있다.

7) 오늘날 전술핵무기의 발달로 국토나 민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핵무기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8) 國土統一院, 「南北韓間 主要爭點解義」(서울:국토통일원, 1987), 62쪽.

#### 4) 國際的인 武器體制의 從屬問題

軍備增強에 있어서 중요한 要因으로 제시되고 있는 무기체계의 技術發展과 既存武器體系의 強大國에의 從屬問題는 신데탕트의 세계조류속에서 전개되는 강대국의 군축에 의한 군수산업의 사양을 南北韓과 같은 第3世界에 전가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오늘날 제3세계에서 기존의 군사력을 유지 保全하기 위하여는 강대국의 國際軍產複合體的인 압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남북한이 實質的인 軍縮에 합의한다고 할 때 이러한 압력을 배제할 수 있는 국제체제적인 장치나 제도가 확립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從屬關係를 탈피하는 방법은 무기수입선의 多樣化와 수입시 기술의 이전을 병행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대전과 防衛體制는 점점 尖端裝備에 의존하는 체제를 형성하고 있는데 제3세계인 남북한은 이러한 추세에 따라가기 위하여는 현실적으로 강대국에 의존하여야 하며, 그리고 실질적인 군축이란 바로 이러한 尖端裝備의 減縮이 수반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埋沒費用을 쉽게 포기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은 지속적으로 이들 強大國에 의존하여야 한다.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는 남북한의 합의하에 國際體制의 強大國과의 공동협상도 필요하다.

### 3. 南北韓 對立體制의 軍事問題의 解決方案

#### 1) 南北韓 共同防衛體制의 構築

효과적인 군사문제의 解決을 위하여는 해결에 의하여 가적을 종국적인 상태에 대한 합의가 前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統一韓國의 政治體制가 어떠한 형태를 가지건 남북한은 단일 또는 최소한 共同防衛體制를 구축하여야 하는 것은 남북한의 궁극적인 군사협상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窮極的인 目標로 할 때 現今의 군사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이 목표를 크게 손상시키는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군사적인 對立體制를 共同體制로 변화시킨다는 것을 부정할 수도 있으나 정치, 경제, 문화체제의 통합은 논의하고 必要性을 인정하면서 군사체제의 통합을 부정하거나 제외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지금까지의 統一 논의는 統一을 위한 과정만을 논의해 왔을 뿐 통일된 한국과 그뒤의 실질적인 통일이라고 할 수 있는 國民形成(Nation Building)에 대한

논의와 준비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최근 통일에 대한 희망이 과거보다는 可視化되고 있다는 樂觀的인 見解를 받아들인다고 할 때 우리는 이를 준비하고 論議할 필요성이 있다.

통일로의 과정에서 南北韓 共同防衛體制는 상징적인 의미를 벗어 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의 실제인 남북한 연합군 또는 民族軍은 한민족共同體 統一方案에서 주장하는 평화구역 및 統一 平和市에 두거나, 남북의 休戰線 대치를 일정한 정도씩 후퇴시켜 共同區域을 설정하여 그곳에 두거나 아니면 현재의 비무장지역을 활용 그곳에 위치시키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方案은 주변국에 위협을 주지 않고 형성될 수 있을 것이며 聯邦體制的인 통일의 경우에도 활용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민족共同體 統一方案”에서 統一國家의 未來像과 南北聯合의 구상에서 군사문제의 未來에 대한 제안도 보다 具體化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한 共同防衛體制의 구상에 대한 합의는 남북한의 정치 및 기본관계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형성되어야 하는 데, 이러한 基本關係의 틀 속에서 남북한은 군사적인 공동관계 속에서 주변 4강에 대한 기본 입장을 새롭게 定立하여 나아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2) 軍縮 및 軍備統制의 問題

남북한 軍縮 및 軍備統制에 대한 기존의 方案을 살펴 보면 남한은 과정중심의 방안을, 북한은 결과중심의 방안을, 제시하여 왔다. 南韓의 過程中心의 방안은 軍縮의 基本原則과 意志만을 제시하여 오다가 1990년 9월 제 1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강영훈 총리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으나 信賴構築을 위한 단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① 기습공격 방지를 위한 攻擊型 戰力構造의 防禦型 戰力構造로 轉換
- ② 軍事力の 相互 均衡維持를 위한 同數保有原則 適用
- ③ 武器減縮에 따른 兵力減縮과 常備戰力減縮에 상응한 豫備戰力 및 類似 軍組織 減縮
- ④ 쌍방 軍事力の 最終維持水準은 統一國家의 軍事力 所要를 감안하여 雙方 合意下에 決定

한편 同會議와 2차회의에서 北韓의 연형묵 총리는 1990년 5월 24일 최고인민

회의 제 9기 제 1 차회의에서 김일성이 제시한 “조국통일 5개방침”을 바탕으로 1990년 5월 31일 중앙인민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정무원 연합회의에서 제시된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군축제안”을 반복하고 있는데 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9)</sup>

#### 북남 무력 감축

##### ① 무력의 단계적 축감

- 병력축감은 군축안이 합의된 때부터 3-4년 동안 3단계로 실시(1단계 30만명선, 2단계 20만명선, 3단계 10만명선)
- 단계별 병력축감에 상응한 군사장비의 축소 폐기
- 정규무력 축감 첫단계에서 모든 민간군사조직과 민간무력 해체

##### ② 군사장비의 질적 경신 중지

- 새로운 군사기술 장비의 도입과 무장장비의 개발 중지
- 외국으로부터의 새로운 군사기술 및 무장장비의 반입 금지

##### ③ 군축情形의 호상 통보 및 검증 실시

- 무력축감 정형의 상대측 통지
- 호상 현지시찰을 통한 군축합의 이행정형 검증

현실적으로 군사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協商의 初期段階를 벗어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양측의 主張과 協商의 態度는 아직도 자신들의 입장만을 고수하는 硬性協商(Hard Positional Negotiation)<sup>10)</sup>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남한은 軍事問題에 대한 전략에서 기존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경제 및 外交的인 압력을 활용하고 있다.

軍縮이나 關係改善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는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인데 이는 남한측이 주장하는 軍事的인 先信賴構築 보다 上位의 概念인 政治的인 信賴構築에 의하여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下位의 論理인 軍事論理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還元論이 배제될 수는 없다. 어쨌든 한반도의 군사문제는

9) 통일원, 「통일백서」(1990), 136-138쪽.

10) 이달곤, “협상이론의 연구와 원칙에 준거한 협상전략, 『행정논총 제27권 1호』(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89. 6), 323-24쪽 참조.

政治的인 信賴構築이 이루어진다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많은 실마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논리구조 속에서 군사문제에 대한 조급한 해결의 요구는 자칫 葛藤을 더욱 크게 할 위험도 있음을 배제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최근의 급격한 世界體制의 變化속에서는 消極的으로 시간에 의한 해결의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군사문제에 대한 협상의 핵심인 優先順位의 문제는 남한측의 신뢰구축과 북한측의 軍縮의 문제를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로 하여 논의하고 다만 실행의 시기만을 段階的으로 접근한다면 많은 타협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남한측도 북한과 같이 軍縮에 대한 運營目標을 제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군사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인 통일한국의 防衛體制를 상징할 경우에만 나올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남북고위급회담의 1차회의에서 강영훈 국무총리가 제안한 통일국가의 군사력 소요를 감안한다는 軍縮의 推進方案을 보다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남북은 실질적인 軍縮論議에 앞서서 南北軍事關係者들이 통일한국의 방위체제에 대한 미래상을 논의하고 합의를 한다면 많은 군사문제의 妥協點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는 이데올로기적인 性格이 적고, 현상의 남북한의 군사체제의 변화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는 問題이기 때문에 쉽게 이루어질 수도 있는 문제이며 이로써 軍事的인 信賴를 構築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 3) 信賴構築의 問題

적대적인 對立國間에 軍事問題 특히 軍備統制 및 軍縮問題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는 軍事力의 均衡,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감축내용의 균형 및 포괄성, 신뢰할 수 있는 檢證體制등 학자에 따라서 다양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나<sup>11)</sup>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葛藤問題에 대한 정치적인 合意와 原則 宣言에 대한 합의가 선결되어야 한다.<sup>12)</sup> 이러한 면에서 남북은 군사문제의 論議에 앞서 상호 불가침협정 또는 平和協定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1) Evan Luard "Conciliation and Deterrence: A Comparison of Political Strategies in the Interwar and Postwar Period's, WP, January 1967, in Lider, op. cit., 367-377.

12) Ibid.

현단계에서 군사적인 問題의 解決이 信賴의 危機에 의하여 지속되고 타결의 실마리를 풀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면에서 남북은 먼저 信賴回復을 위한 신뢰구축의 방안부터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남북한은 信賴構築의 논의에 기본이 되는 신뢰의 개념 또는 불신의 原因에 대하여 까지도 일치하고 있지 못하다. 기본적으로 北韓은 정치군사적 대결이 불신의 원인으로 이해하고 있는 반면에 남한은 그들의 理念, 政策目標, 軍事力, 테러행위, 對外活動 등을 불신의 根本的인 原因으로 이해하고 있다.<sup>13)</sup> 이의 방안으로는 동서독의 관계에서 보았듯이 非軍事的 非政治的인 交流와 接觸의 확대에 의한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方案일 것이다.<sup>14)</sup>

다음으로 생각하여야 할 것은 남북의 협상하에 강제적인 信賴構築에 앞서서 신뢰구축을 위한 신뢰구축의 행동으로 남북은 자발적인 信賴增進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相對方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自發的인 軍事的 신뢰증진의 조치로는 북한의 경우 攻擊型的 전략의 전환, 땅굴의 폐쇄 및 공개, 휴전선 전진 배치의 해제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軍事問題의 信賴構築을 위하여 남한측이 할 수 있는 대안으로는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 韓美防衛體制에 대한 제반문제를 재검토하는 일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력과 방위체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상대방의 協商案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이 가장 신속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南韓이 베풀 수 있는 방안으로는 북한이 다양한 南北對話를 중단케 한 구실을 제공한 팀 스피리트 훈련을 점차 축소 또는 일시 중지하고 이를 다른 기존의 合同訓練으로 축소하여 한·미연합방위체제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방안 또는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등의 방안 등을 고려하여 北韓을 對話의 場으로 끌어 들이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信賴를 위한 信賴의 構築을 위하여서는 협상의 테이블을 마련하는 길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相互信賴關係 분위기를 형성하고자 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우선 제시하여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데 이러한 제안은 반대급부를 생각하나 그것이 꼭 실현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모험적인 것

13) 21世紀委員會, 「韓半島의 軍事的 安定을 위한 基本措置」(1991. 4), 11쪽 참조.

14)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을 참고, 오관치, 「한반도의 군사적 안정을 위한 기본조치」(서울 21세기위원회, 1991), 69-75쪽.

이 되게 마련이다. 그리하여 협상에 의한 交換去來는 이러한 모험에 의하여 처음에는 작은 거래부터 행하게 되는데<sup>15)</sup> 지금까지 南北韓은 상대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거래를 하지 않으려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信賴關係는 형성될 수 없는 것이 인간사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남북한은 不可侵 또는 武力의 不行使를 포함한 政治 軍事的인 問題에 대한 “남북한 기본관계 및 통일에 대한 段階的인 協定”과 이에 따른 법적 장치가 확립될 필요가 있다. 즉 오늘날과 같이 憲法이나 制度的으로 상대의 국가체제나 정권을 부정하는 상태에서는 吸收統一에 의한 서로의 불안을 제거할 수 없고 이는 어떠한 협상도 이를 正當化하는 논리로 인식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본적인 信賴構築을 위한 기초 단계는 남북한의 협상 보다는 남북한 양측이 신뢰구축을 위한 信賴構築行爲를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實踐에 옮기는 것이 先行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남북한은 남북한간 불가침협정, 또는 북한측의 平和協定の 協商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에 포함되어야 할 것은 남북대화의 上位 價値를 제시하는 ① 主權의 尊重, ② 領土保存, ③ 武力不使用 및 不可侵, ④ 紛爭問題의 平和的 解決, ⑤ 平和共存 등이 되어야 할 것이다.<sup>16)</sup> 신뢰구축에서 공통된 規範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나 價値의 共有는 신뢰를 형성하는 기본이 될 뿐만 아니라 신뢰의 강도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또한 최근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제안된 군사문제로서 共通事項으로 제시되고 있는 사항인 非武裝地帶의 平和地帶化, 軍事活動의 事前 通報, 軍高位級間의 직접적인 통신망구축 등의 案에 대하여 남한측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具體的인 方案을 제시하여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信賴構築은 軍縮이나 軍備統制의 協商의 前提條件일 뿐만 아니라 협상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현대의 많은 군축협상이 實行過程에서 좌절된 가장

15) Marvin E. Olsen, *The Process of Social Organization*(New York : Holt, Rinehart And Winston, 1978), p. 96. 이러한 사회적인 교환관계는 국제사회에도 적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16) 김달순, “남북한 군축협상의 가능성 진단,” 「국제문제 제218호」(1988. 10), 30쪽 참조.



기본적인 요인은 서로를 불신하고<sup>17)</sup> 檢證 및 信賴構築의 조치가 미비하였기 때문이다. 종종 군축협상은 군비증강 및 군사력 증진을 위한 技術開發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신뢰구축에 의한 檢證措置가 마련되지 않으면 아니된다.<sup>18)</sup> 이를 감안할 때 한반도의 군축의 논의는 그것이 實質的이고 運營的인 군축의 협상이든 언제나 信賴構築을 위한 행위의 일부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 4. 南北韓 國內體制的 軍事問題의 解決 方案

지금까지 南北韓은 統一이나 軍事問題를 政權이나 體制維持의 수단으로 이용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지금까지 南北韓이 統一을 위한 모든 제안을 공식적인 통로가 아닌 자체의 공식행사에서 일반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妥協이 不可能한 이상적인 안을 제시하면서 자기의 주장이 올바른 것이라고 주장하여 왔는데에서 논리적으로 추론될 수 있다. 이는 서로가 協商을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統一이나 軍事問題를 해결하고자 하는 政治的인 意志가 없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문제의 解決方案은 나올 수도 없으며 나온다고 하여도 실행이 불가능한 선언적인 의미를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다. 한반도의 信賴構築은 무엇보다도 통일이나 군사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政治的인 意志가 확고하게 표현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통일과 군사문제의 長期的인 解決에 制度的인 障礙要因이 되는 憲法 및 法律도 단계적으로 이에 알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즉 북한의 경우 憲法과 勞動黨 規約의 대남적화적인 내용 등과 남한의 경우 북한체제를 부정하는 헌법이나 기타 관련 법규의 적절한 改廢가 선행되어 協商의 基盤을 조성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서로를 인정할 수 있는 존재임을 확신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군축이 체제의 守護者役割을 하여온 軍의 位相을 低下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군에 심어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南北韓 공히 가

17) Roy J. Lewicki and Joseph A. Litterer(ed.), Negotiation(Illinois : Irwin, 1985), pp. 106-107.

18) SIPRI, Strategic Disarmament, Verification and National Security(London : Taylor & Francis Ltd., 1977), pp. 51-59. Robert Bowie "Basic Requirements of Arms Control," in D. G. Brennan, ed., Arms Control, Disarmament and National Security(New York : George Braziller Inc., 1961), p. 49.

장 선행되어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政治圈에서의 軍事的인 協商이 國內體制의 不安을 야기시킬 위험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軍의 位相을 定立시키고 軍縮등에 의한 軍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앞서서 언급한 통일 한국에서의 共同防衛體制와 軍의 位置를 먼저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未來의 不確實性을 명확한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 北韓 體制의 開放과 南韓體制의 지속적인 民主化의 진전은 南北韓 軍事 문제의 해결에 기초적인 기반을 제공하여 줄 것이다. 특히 남한측으로는 북한의 正統性 시비 즉 정권이 미제국주의의 창조물이라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남한 내의 革命力量에 대한 기대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國內體制의 民主化를 가속하여야 할 것이며, 북한측으로는 1960년대 이후 대남정책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3大革命力量強化 路線을 넘어 실용주의적인 개혁을 위하여 체제의 開放이 필요하다.<sup>19)</sup> 또한 北韓住民들에게 남한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sup>20)</sup>를 주입시켜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행위와 지금까지 軍備競争을 정당화시킨 남한의 정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요구될 때 북한 사회체제내에서 軍축을 正當化하는 논리가 받아들여질 것이다.

한편 남북한의 사회에 만연된 보수적인 現狀維持 지향적인 세력을 軍비경쟁이 아닌 軍備縮小로의 길에 올려 놓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사회체제에 의한 教育이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19) 하영선,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서울: 청계연구소, 1989), 31-34쪽 참조.

20) 이만우, 「북한 인민의 자화상」, 양성철, 박한식 편저, 「북한기행」(서울: 한울, 1986) 참고.

## V. 맺 음 말

分斷, 戰爭 그리고 對決로 이어진 韓半島의 45년여의 역사는 남한에는 안보의 위기를, 북한에게는 體制와 이데올로기의 危機속에서 自己保存의 法則에 따라 남북한의 군사력의 증대를 가져왔고 그 결과는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위험수준을 넘어서는 武器力을 한반도에 형성시켰다.

그러나 軍備競爭이 남북한의 統一과 民族의 生存을 위해 옳이 아니라는 의식이 비록 우리 민족의 自覺에 의하기 보다는 國際體制의 變化에 의하였지만 최근에 싹트기 시작하였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라 하겠다. 골이 깊어진 南北韓의 葛藤이 해결될 수 있다는 희망은 소련의 개혁과 개방에서 시작되어 동서독의 통일, 미·소의 核武器 減縮의 협상의 타결, 소련의 社會主義의 포기라는 국제체제의 급격한 변화와 세계질서의 재편성에 의하여 증대되고 있고, 南北韓 對立體制의 次元에서 南北韓의 유엔에의 동시가입과 비정치적인 교류의 확대, 보다 활발해질 징후가 있는 대화의 장은 남북한간의 위기를 平和的으로 해결하려는 힘있는 모습을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남북한 내적으로 남한의 民主化로의 길과 북한체제의 開放에 대한 압력과 김정일 체제로의 변화에 따른 가변적인 요인들은 종래에 불가능할 것이라는 統一과 緊張의 완화에 대한 비관을 낙관적으로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要因들이라고 하겠다.

남북한의 군비경쟁은 多次元的인 한반도 갈등의 외적인 표현으로서 국제체제에 의하여 형성되었고, 韓國動亂을 계기로 南北韓 국가 對立體制의인 요소가 이를 가속화시켰으며 남북한 국내의 권위주의적인 政治體制와 單細胞的인 사회체제적인 요인들에 의하여 강화되어 왔다. 남북한의 軍備競爭은 어느 한 편의 책임이 아니라 남북한 공동의 책임이며 주변 4강의 國際的인 倫理的인 책임이다.

국제체제적으로 한반도는 미·일·중·소의 국가적인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지역으로서 이들 4강은 기존의 利益을 지키기 위하여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강력하게 바라고 있다. 즉 남북한의 통일은 남북한의 이들에 대한 隸屬으로부터의 탈피를 의미하며 이들의 종속으로부터의 自律性을 의미할 뿐 아니라 동북아에 새로운 강력한 국가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周邊 4強은 한반도의 분단이라는 현실을 바라며 이러한 체제가 유지되도록 안정을 추구하고 있다. 이

러한 상황에서 남북한은 국가의 이념으로 내세우는 민족을 自主적으로 이룩하여야 할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다.

국제체제적인 한반도의 군사문제인 駐韓美軍, 비핵지대화의 문제는 한반도의 지금까지의 안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한편으로는 韓半島의 統一과 군사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障礙物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딜레마이다. 지금까지 韓·美共同防衛體制 속에서 국방의 Free Rider로서의 혜택을 입어온 한국은 주한미군의 위상의 변화와 함께 한반도에서 美國의 利益을 어느 정도 보호해 주면서 우리의 이익을 어떻게 極大化할 것이냐가 가장 큰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남북한 대립체제의 次元에서는 군사문제의 해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남북한이 그 해결방법에 있어서 남한은 過程中心의 先信賴構築을, 북한은 결과중심의 선군축을 주장하면서 서로는 協商을 妨害하는 정책을 지금까지 채택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이 먼저 解決해야 할 것은 협상을 위한 신뢰구축 즉 신뢰를 위한 신뢰구축을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군사문제의 具體的인 과제인 군축과 군비통제에 대한 協商에 앞서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남북한 국내체제적인 면에서는 무엇보다도 양측의 정책결정자들이 한반도의 군사문제 즉 군축과 軍備統制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다는 政治的인 意志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더 이상 군대나 군사문제를 政權차원이 아닌 한민족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공통의 規範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직도 잔존하는 남북한 사회내의 군비경쟁에 의한 卍和의 유지를 옹호하려는 理念과 사고를 탈피하는 것이 問題解決을 위하여 요구된다.

한반도 군사문제의 解決方案은 무엇보다도 군사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목표에 대한 합의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군사문제의 기본적인 목표는 통일한국의 미래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統一韓國의 政治形態가 어떠한 것이든 남북한은 공동방위체제를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남북한의 軍事會談의 의제로 한다면 軍事體制를 변경시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많은 결실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기준으로 할 때 軍縮과는 괴리가 있는 東北亞의 현상황에서 한반도의 군축이 한민족의 장래에 生存을 보장하는 것이냐에 대한 남북한의 합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남북한의 軍事力을 유지하면서 緊張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통일 한국의 未來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음을 배제하여서는 아니된다. 즉 군사력은 국력이며 힘의 場인 국제체제에서 강한 軍事力은 곧 힘이 될 수도 있음을 잊어서는 아니된다.

다음으로 군사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하여는 상대에게 利益이 될 수도 있는 작은 양보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아니된다. 이것은 信賴를 構築할 뿐만 아니라 대화의 장을 지속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自國의 提案만이 최선이라고 할 때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協商이 이루어지더라도 持續될 수는 없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작은 모험을 필요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팀스피리트 훈련의 중지 또는 변화를 시도하는 것도 代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남한측에서는 기존의 先 信賴構築에 의한 過程中心의 協商에서 結果에 대한 비전도 북한측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군사문제에 대한 基本 解決方向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러한 연후에 實踐의 優先順位를 협상의 대상으로 삼는 것도 대안이 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한반도의 군사문제의 해결은 남북한 양측이 相對를 協商의 相對로 인정하고 상대에 대하여 지금까지 固定化시킨 否定的인 이미지를 변화시키는 努力이 체제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參 考 文 獻

## 1. 국내단행본

- 구영록 외, 「남북한 정치동향과 국제관계」,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86.
- 국제문제연구소, 「방위연감, 1945-1989」, 국제문제연구소, 1990.
- 국토통일원, 「군비통제연구 문헌자료집」, 1989.
- 국토통일원, 「남북한간 주요쟁점해의」, 1987.
- 국토통일원, 「고르바초프의 대외정책 자료집」, 1988. 11.
- 국토통일원, 「한반도 군사문제관련 북한제의 주장에 대한 대응책 연구」, 1984. 12.
- 국토통일원, 「남북한의 핵개발 가능성과 비핵지대론 대응방안」, 1986.
- 국토통일원 통일연수원, 「민주통일론」, 1990.
- 김권철 편지, 「한반도내 군사력」, 천산산맥, 1989.
- 김을권, 「한반도 주변의 군사환경」, 세종연구소, 1989.
- 김달중, 「중국의 개혁정치」, 법문사, 1988.
- 김학준, 「강대국관계와 한반도」, 법문사, 1986.
-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백서」, 1988. 1989.
- 대학통일문제연구소 협의회, 「통일논의의 재문제」, 대왕사, 1988.
- 박재규 편, 「북한의 외교정책」,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86.
- 박재규 편, 「한미관계의 제조명」,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89.
- 박현채 외, 「한국사회의 제인식 I」, 한울, 1986.
- 북한연구소, 「북한군사론」, 1986.
-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1983. 1986.
- 백종천, 「국가방위론」, 박영사, 1985.
- 동아일보사, 「주한미군」, 1989.
- 양성철 편, 「남북통일 이론의 새로운 전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89.
- 연하청, 「북한경제정책의 운용」, 한국개발원, 1986.
- 오관치, 「한반도의 군사적 안정을 위한 기본조치」, 21세기위원회, 1991.
- 이갑윤 외, 「현대 일본의 정치」,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86.
- 이상우, 「한국의 안보환경 제 2 집」, 서강대학교 출판부, 1987.

- 이호재, 「한반도 군축론」, 법문사, 1989.
- 이호재, 「한반도 평화론」, 1989.
- 정상훈 외, 「북한경제의 전개과정」,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0.
- 프랭크 골드윈, 사계절 편집부 역, 「한국현대사」, 사계절, 1984.
- 하영선,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청계연구소, 1989.
- 하영선 편, 「한반도의 군비경쟁의 재인식」, 인간사랑, 1988.
- 통일원, 「통일백서」, 1990.

## 2. 국문논문

- 강한구, “전후 일본방위비의 구조와 전망”, 「국방논집」제 5 호, (한국국방연구원, 1987).
- 김국진, “신데탕트와 군비통제”, 「사상과 정책」(1989. 여름호).
- 김명기, “통일을 위한 남북한 신뢰구축방안”, 「통일문제연구」제 2 권 4호, (1990. 겨울).
- 김경수, “한국의 핵무기 유용론”, 「국제문제」 218호(1980).
- 김부기, “소련의 감군과 남북한 평화공존 및 군비통제”, 「통일문제연구」제 1 권4호(1989).
- 김재한, “한반도 군비통제와 전쟁억지”, 「통일문제연구」제 2 권 3호(1990).
- 남주홍, “군축의 일반이론에 관한 고찰”, 「국제정치논총」제29집 1호(1989).
- 남주홍, “군비경쟁과 통제: 이론과 실제”, 「국제정치논총」제24집 2호(1984).
- 박진구,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고찰”, 「국제문제」 218(1988).
- 배명오, “세계의 핵개발 추세와 북한의 핵개발”, 「저사자료 통일문제」23집 (1986).
- 박용옥, “남북한 군축과 한국의 안보전략체제”, 「국제정치논총」 제17집 (1978).
- 송대성, “한반도 군축 타당성 검토”,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발표논문(1988. 6).
- 양성철, “남북한 군사력과 동맹체계”, 「사상과 정책」(1989. 여름호).
- 이기택, “한반도의 새로운 군사환경”, 「북한학보」제 5 집(1981).
- 이기택, “소련의 극동군사정책과 북한과의 관계”, 「국방학술논총」제 1 집(1988).
- 이달곤, “군축이론에 입각한 남북한 군축협상대안 연구”, 「국방학술논총」제 1 집 (1988).

- 이달곤, “협상이론의 연구와 원칙에 준거한 협상전략”, 「행정논총」 제27집 1호 (1989).
- 이달곤, “남북한 군비통제 모델의 모색”, 「국제문제」(1990. 5).
- 이석호, “북한의 군비통제 정책”, 「국제정치논총」제29집 1호(1989).
- 이영희, “남북한 전쟁능력 비교연구”, 「사회와 사상」 창간호(1989. 9).
- 이호재, “한반도 군비축소문제의 한계와 가능성”, 「국제정치논총」제26집 제 2 호 (1989).
- 임동원, “군비경쟁시대는 끝났는가?”, 「월간중앙」(1990. 2).
- 전원하, “한반도 군축을 둘러싼 주변국의 전략과 입장”, 「사회와 사상」제26호 (1990. 4).
- 정순영, “미군의 한국군 작전 지휘권 현황”, 「입법조사월보」 163(1987. 10).
- 차영구, “남북한 군사관계”, 「아세아 연구」 제78호(1987. 7).
- 최 영, “한미안보협력과 주한미군감축론”, 「사상과 정책」(1989. 여름호).
- 하영선, “한반도의 현실적 군비통제방향”, 외교안보연구원 세미나 발표논문 (1990. 8. 31).

### 3. 영문단행본

- Benoit Emile, Defense and Economic Growth in Developing Countries Mass. : Lexington, 1973.
- Brennen Donald G., Arms Control Disarmament and National Security, New York : George Braziller, 1961.
- Bonawskie John(ed.) Avoiding War in the Nuclear Age, Colorado : Westview Press, 1986.
- Carlton David, The Dynamics of the Arms Race, London : Croom Helm, 1975.
- Gheballi, Victor-Yves,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Within the CSCE Process, New York : UN Institute for Disarmament Research, 1989.
- Goodby James, Security and Cooperation in Korea : A Framework for Analysis, Stanford Univ., 1989.
- Lieder Julian, Military Theory, England Aidershort : Grower Pub. Co., 1983.



Loehr, W. and MacCament(ed.), *Comparative Public Policy*, New York : John Wiley and Sons, 1975.

Mongenthau, Hans J., *Politics Among Nations*, New York : Alfred Knopf, 1976.

Snyder, Glenn H., *Deterrence and Defence*, Princeton : Princeton Univ. Press, 1971.

Segal, G.(ed.), *Arms Control in Asia*, MacMillan press, 1987.

#### 4. 영문논문

Anderson, Charles H., "Arms Race Modeling" *Th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33, No. 2(June 1989).

Ball Nicole, "Defence and development",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vol. 31, No. 3(Mar. 1983).

Baek Chong-Chon, "The conflict Interaction of the Korea Peninsula 1948-1989", *The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Vol. 2. No. 2(Fall/Winter 1982).

Baek Chong-Chon, "North Korea's Military Strategies for Reunification", *Korea and World Affairs* Vol. II. No. 4(1987. 12).

Choi Yong, *Confidence Building and Arms Control on the Korean Peninsula*, Seoul Council on U. S-Korea Security Studies(Nov. 30-Dec. 2, 1987).

Halst John J., "Confidence Building Measure : A Conceptual Framework". *Survival* Vol. XXV. No. 1(Jan./Feb. 1983).

Jervis R., "Cooperation under the Security Dilemma", *World Politics*, Vol. 30, 1978.

Kendell D., Mall and Geogory M. Luebert, "Arms Race and Military Expenditures Modrl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24. No. 1(Mar. 1980).

Niksich, Larry A., "The Military Balance on the Korean Peninsula", *Korea & World Affairs*. Vol. 10, No. 2(1986. 6).

Oh Kwan-Chi, "The Military Balance on the Korea Peninsula", *The Korea Journal of Defence Analysis*, Vol. II. No. 1(Summer. 1990).

Park, dong Whan, "The Arms Race and Arms Control in Korea", *Korea & World Affairs*, Vol. 10. No. 2.

Park, Dong Whan, "Political Economy of the Arms Race in Korea", *Asian Survey*, Vol. XXVI, No, 8 (August 1986).

〈부록 : 표 1〉 南韓 國防費의 變化

	國防費 : 經常 (백만원)	增加 率 : 經常 (%)	GNI deflator 1975 = 100	國防費 : def.價格 (백만원)	增加率 : def. (%)	軍事費總額 (미국직접지 원비포함) (억원)	總 額 增加率 (%)
1948	6						
49	24	300.0					
50	132	450.0					
51	330	150.0					
52	946	187.0					
53	3,261	245.0	2.2	148,227			
54	5,992	83.7	2.9	206,620	39.4		
55	10,638	77.5	4.7	266,340	9.5	31.6	
56	---	---	6.3	---	---	26.0	-17.7
57	11,246	5.7	7.7	146,052	-35.5	22.7	-12.7
58	12,732	13.2	7.6	167,526	14.7	27.1	19.4
59	13,919	9.3	7.7	180,766	7.9	26.2	-3.3
60	14,707	5.7	8.6	171,012	-5.4	26.1	-0.4
61	16,599	12.9	9.8	169,378	-1.0	50.8	94.6
62	20,474	23.5	11.6	176,500	4.2	38.3	-24.6
63	20,479	0.0	15.0	136,526	-22.6	61.3	60.1
64	24,926	21.5	19.5	127,826	-6.3	60.6	-1.1
65	29,874	20.1	20.7	144,319	12.9	60.5	-0.2
66	40,542	35.5	23.7	171,063	18.5	84.5	39.7
67	49,553	22.5	27.4	180,850	5.7	96.4	14.1
68	64,708	30.4	31.8	203,484	12.5	137.1	42.2
69	84,382	30.6	36.5	231,184	13.6	124.6	-9.1
70	102,335	21.1	42.2	242,500	4.9	147.2	18.1
71	134,738	39.0	47.3	284,858	17.5	245.4	66.7
72	173,909	27.6	54.7	317,932	11.6	255.7	4.2
73	183,469	1.1	61.9	296,396	-6.8	249.6	-2.4
74	296,846	61.8	80.2	370,132	24.9	338.5	35.6
75	442,437	49.0	100.0	442,437	19.5	484.0	43.0
76	703,753	59.1	117.7	597,921	35.1	733.9	51.6
77	949,623	34.9	136.9	693,662	16.0	952.5	29.8
78	1,289,421	37.7	165.1	780,994	12.6	1,307.6	37.3
79	1,526,311	19.0	197.0	774,777	-0.8	1,587.1	21.4
80	2,308,437	51.2	247.9 (100.0)	931,197 (2,308,437)	20.2	2,308.4	44.4
81	2,657,500	15.9	115.4	2,318,485	0.4	2,675.5	16.8
82	3,171,235	18.5	123.1	2,576,145	11.1	3,171.2	18.5
83	3,357,473	5.9	127.9	2,625,077	1.9	3,357.5	5.9
84	3,510,099	4.5	132.8	2,643,147	0.7	3,510.1	4.5
85	3,802,457	8.5	138.2	2,751,416	4.1	3,802.5	8.3
86	4,327,805	13.8	141.9	3,049,898	10.8	4,327.8	13.8
87	4,801,000	10.9	147.1	3,263,766	7.0	4,801.0	10.9
88	5,540,000	15.4				5,540.0	15.4
89	6,224,700	8.6				6,224.7	8.6

자료 : 〈부록 : 표 2〉와 같음.

〈부록 : 표-2〉 北韓의 國防費

	(a) 북한발표 (만 원)	(b) 국방부, 통일원 추계(천만원)	(c) 李達熙추계 (천만원)	(d) SIPRI (천만원)	(e) ACDA (억 \$)	a증가율	b증가율
1949	3.100						
50	4.305						
51							
52							
53	7.539	1.54					
54	5.836	5.84				-22.6	-22.6
55	6.126	6.13	15.96			5.0	5.0
56	5.640	5.64	12.41			-7.9	-7.9
57	5.419	5.42	12.40			-3.9	-3.9
58	5.680	5.68	12.92			4.8	4.8
59	6.104	6.10	13.14			7.5	7.5
60	6.100	6.10	13.25			-0.1	-0.1
61	5.917	5.85	12.89	56.5		-3.0	-4.1
62	6.163	7.10	21.47	62.5		4.2	21.4
63	6.359	5.75	13.36	70.0		3.2	-19.0
64	25,637	19.83	28.47	75.0		303.2	244.9
65	35,109	27.81	42.81	88.0		36.9	40.2
66	44,643	35.71	52.24	88.0		27.2	28.4
67	120,026	120.03	12.03	118.0		168.9	236.1
68	155,938	155.94	163.03	169.0		29.9	29.9
69	156,506	156.51	156.38	179.8		0.4	0.4
70	149,412	187.88	175.13	180.0		-4.5	20.0
71	195,982	196.00	195.98	189.0		31.2	4.3
72	125,606	228.20	240.43	125.4		-35.9	16.4
73	128,188	256.90	260.56	128.2		2.1	12.6
74	155,723	298.90	308.90	156.8	13.70	21.5	16.3
75	186,427	351.10	365.39	189.0	20.00	19.7	17.5
76	205,836	380.80	398.76	205.6	22.00	10.4	8.5
77	209,582	412.50	429.75	209.6	25.0	1.8	8.3
78	234,423	455.50	481.73	234.4	28.0	11.9	10.4
79	256,286	524.40	540.00	256.3	32.0	9.3	15.1
80	275,019	582.00	601.20	275.0	35.0	7.3	11.0
81	300,928	628.70	639.23	300.9	42.0	9.4	8.0
82	324,173	686.00	666.53	324.2	46.0	7.7	10.8
83	352,967	742.10	752.44	353.0	49.0	8.9	8.2
84	381,907	808.30	797.29	381.9	52.0	8.2	8.9
85	399,801	846.90	837.69	393.5		4.7	4.8
86	397,545	876.40	853.72	402.0		-0.6	3.5
87	397,123	937.30	883.57			-0.1	6.9
88	386,263	949.83	907.66			-2.7	1.3
89	405,963	1,005.21	961.33			5.1	5.8

## ◆ 北韓의 軍事力 現況에 관한 研究

— 核戰略 威脅에 따른 韓國安保의 政策設計를 中心으로 —

崔秉鶴(忠北大)

### 〈 要 約 文 〉

최근 들어 한반도는 국제사회의 각별한 관심과 주목을 받아 왔다. 그것은 북한의 핵개발 문제와 관련된 한반도 비핵지대화론으로서 이미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에서 핵사찰 서명요구를 받아 왔으면서도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이 실현된 지금까지도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미 북한은 1947년 우라늄광 탐사를 시발로 蘇聯과 原子力協定을 締結하고 1962년에는 迎邊의 原子力研究所를 설립한 데 이어 蘇聯으로부터 연구용 原子爐를 도입하면서, 1970년에는 실험용 原子爐를, 그리고 1980년에는 原子力發電所를 건설하였으며, 1990년에는 日本東海大學 정보기술센터에서 迎邊 原子力研究團地를 영상정보를 통해 공개하기에 이르렀다.

과연 北韓은 核開發이 완료된 것인가? 그렇다면 北韓은 불원간 核武器를 보유할 수 있다는 것인가? 어쨌든 2,500여명의 핵관련 전문인력과 核爆彈 雷管試驗場을 보유함으로써, 1983년부터 지금까지 약 70-80회의 고품실험을 실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핵개발과정은 불원간 核武器의 제조가 사실상 可視化되는 상황에 있음을 여러 정보소식통들은 전하고 있다.

이미 보도에서는 관련전문가들의 주장을 근거로 北韓이 핵재처리시설을 건설 중임을 발표하였는데, 당시 美國務部는 한국정부에 이러한 사실을 전달하고 필요한 조치를 상호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北韓의 핵재처리 공장은 이미 단순한 에너지 개발의 차원을 넘은 問題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핵개발·핵사찰 문제를 둘러싸고 주변 강대국들은 복잡한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간추려 보면, 4대 강대국들 중 어느 국가도 북한의 핵무장을 원치 않고 있다. 그것은 모두가 한반도에 대한 자국의 핵정책에 제동 내지는 압박요인으로 작용될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런데 더욱 복잡한 것은 이미 北韓이 非核地帶化論을 제기함으로써, 駐韓美軍

의 역할에 대한 韓國側의 對應폭을 좁히게 될 수도 있는 局面에 진입되어 있는 것이다.

1975년 6월 13일 美國을 방문한 박대통령의 核武器 개발가능성 발언 이후 1년도 채 못되어 시작된 東北亞 非核地帶化案을 내외에 거론하기 시작했으며, 그것은 바로 당시 한국의 독자적인 核開發 조짐에 제동을 걸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후로 북한은 비동맹의 반핵운동에 고무되어 계속하여 반미·반제 투쟁과 연계하여 駐韓美軍問題를 내외에 부각시키면서, 1979년에는 東北亞 및 全世界 非核地帶化의 결의와 1981년에는 日本 사회당과 동북아 非核地帶 設置問題에 대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다.

北韓의 非核地帶化論은 1988년 7월에 韓半島 非核地帶化論으로 바뀌면서, 1990년 3월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군축방안에서 거듭 주장하면서, 그 해 8월 중에 열린 「核擴散禁止條約」 제4차 평가회담에서 「美國의 核先制 不使用 保障」(NSA)을 선결조건으로 제시하기에 이른다.

이렇게 북한이 제기한 문제의 상황은 매우 복잡하면서도 예민한 사안이 되고 있다. 核安全協定加入을 통한 北韓의 核施設과 駐韓美軍의 核武器를 동시에 사찰해야 한다는 입장까지 내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편으로 北韓의 韓半島 非核地帶化論이 지니고 있는 논리는 정치전략적 의도가 짙고, 특히 核保有 여부의 向背에 따른 事案의 중대성과 복잡성이 얽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美國은 기본적으로 北韓의 核武裝을 반대할 수 밖에 없고 그것은 특히 駐韓美軍의 戰術核과 관련된 입장표명으로 부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반대논리는 北韓核이 동북아와 전세계에 미치는 波及效果가 소위 미국의 팍스 아메리카나와 核霸權主義에 장애가 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며, 그것은 한반도를 미국의 核雨傘 속에 두는 것이 기존의 안보질서에 걸맞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미국과는 속사정이 다르지만 蘇聯의 입장도 北韓의 核武裝을 반대하고 있으며, 그것은 북한의 核開發이 소련이 동북아지역에서 戰略的 優位를 추구하는데 역시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으며, 다만 韓半島 非核地帶化論은 특정조건에서 고려하고 있다.

중국 또한 北韓의 核武裝은 반대하면서도 韓半島의 非核地帶化論은 지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북한의 核開發이 동북아 지역의 核擴散을 초래하면

서 역시 자국의 立地上昇에 대한 제약요인으로 보기 때문이다. 특히, 日本은 이를 심각한 生存權的 차원에서 核威脅을 감지할 것이며, 이를 이유로 자체의 核武裝을 正當化시킬 명분을 갖고 軍事大國化의 길로 나가리라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앞서 밝힌 바처럼 복잡하고도 예측하기 난감한 문제의 상황에서, 이 研究는 다음과 같은 빛가지를 考慮하면서 수행되었다.

첫째는 최근 국제무대에서 北韓의 核武器 개발문제와 더불어 韓半島 非核地帶化論議가 고조되고 있는 새로운 政治-軍事的 局面에 대한 爭點을 체계적으로 분석·논의하고자 한다. 둘째는 北韓의 核 保有能力의 가시화 및 國際核査察 거부에 대한 動態分析과 걸프전 이후 국제질서의 재편과정에서 야기되는 주변 강대국인 美國·蘇聯·中國·日本과의 力學關係를 분석하고, 北韓이 제기한 核武裝이라는 威脅要因과 非核地帶化라는 宣傳要因이 한국의 安保政策(정책논리 및 정책기조)에 미치는 影響을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는 北韓의 核威脅에 대한 정치·군사·외교적 차원에서 한국의 政策的 對應戰略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특히, 그 對應戰略의 論理構造와 방향설정에 초점을 두면서 이러한 問題들과 관련하여 계속 논의·전개되고 있는 韓半島 軍備統制(신뢰구축 및 軍縮懸案 등)와의 적실성 있는 관계설정을 모색하고 동시에 그 連繫論理를 구상해 보려고 한다.

그러므로 이 研究에서는 北韓의 軍事力(특히 核威脅能力)이라는 威脅實體가 향후 한반도의 平和構圖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대응적인 한국안보의 政策代案을 구상·제안하려는 일종의 政策研究로서, 특히 최대의 懸案課題인 군비통제와의 상충관계를 타결하기 위한 連繫論理의 모색을 통해서 政策判斷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研究의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北韓의 軍事的 狀況을 일반군사력을 비롯하여 核武器 開發 및 보유 가능성과 韓半島 非核地帶化論을 검토한 뒤, 이것이 世界體制·地域體制·南北韓體制에 미치는 영향을 多次元으로 구분하여 분석·논의함으로써, 이에 대한 韓國의 政策的 對應論理와 과제를 설정하는데 연구범위를 두고 있다.

특히, 北韓의 전쟁관과 전쟁정책이 곧 ‘主體의 戰略’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軍事力 增強政策의 과정분석 및 核武器 開發政策의 추진실태와 더불어 그들의 한반도 비핵지대화론과 國際核査察 거부의 논리구조를 분석·논의하며, 이를 韓國軍

과의 戰力比較를 병행하면서 현단계의 安保威脅의 실체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研究主題의 특성상 1차 자료에의 충분한 접근에 따른 일정한 제약과 특히, 고도의 政策判斷을 요하는 부분이 없지 않았으나, 이러한 연구의 한계는 政策實務部署와의 협조로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韓國의 核選擇問題와도 같은 몇몇 事案에 대한 不可避한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것은 核關聯 政策事案이 국가정책에 있어서 사실상 가장 優先順位가 높은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향후 韓半島의 平和統一에 대한 構圖設定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중요한 사실은 기왕의 軍備統制를 포기하지 않은 채 북한과 주변국들의 向背에 주시하면서, 앞으로의 「統一韓國」의 安保體制가 부여하는 기본구도에 따라서 우리의 政策課題를 설정·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 I. 序 論

### 1. 研究의 目的

이 研究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研究의 目的을 지닌다.

첫째, 최근 국제무대에서 北韓의 核武器 개발문제와 더불어 韓半島 非核地帶化 論議가 고조되고 있는 '새로운 政治-軍事的 局面'에 대한 爭點을 체계적으로 분석· 논의하고자 한다.

둘째, 北韓의 核 保有能力의 가시화 및 國際核査察 거부에 대한 動態分析과 걸프 전 이후 국제질서의 재편과정에서 야기되는 주변 강대국인 美國·蘇聯·中國·日本과의 力學關係의 분석, 北韓의 核武裝이라는 威脅要因과 非核地帶化라는 宣傳要因이 한국의 安保政策 즉, 정책논리 및 정책기조에 미치는 影響을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北韓의 核威脅에 대한 정치·군사·외교적 차원에서 한국의 政策的 對應戰略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특히, 그 對應戰略의 論理構造와 방향설정에 초점을 두면서 이러한 問題들과 관련하여 계속 논의·전개되고 있는 韓半島 軍備統制(신뢰구축 및 軍縮懸案 등)와의 적실성 있는 관계설정과 동시에 그 連繫論理를 개발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研究는 北韓의 軍事力이라는 對南 威脅實體를 재래식 전력과 핵전력으로 대별하여 보고, 이들간의 戰力轉換의 논리구조를 규명하면서 이것이 한반도의 平和構圖에 미치는 영향을 多次元的으로 분석함으로써 능동적인 한국안보의 政策代案을 구상·제안하려는 '政策指向的' 研究이며, 특히 최대의 懸案課題인 군비통제 문제와의 상충관계를 '安定的'으로 해결하기 위한 裝置의 개발을 통해서 政策判斷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研究의 目的을 삼고 있다."

1) 즉, 이 研究를 통해 核威脅을 중심으로 한 北韓의 軍事力에 대한 재평가가 가능한 것이며, 남북한간의 軍事的 對決構造의 實相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특히, 무모한 '統一至上論'과 '韓國軍滅軍論-美軍撤收論'에 설득력 있는 대안적 논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국가적 현안과제인 軍備統制의 문제와의 관계설정 및 竝行論理의 개발에 論議核心(focus)를 두면서 연구가 진행될 것이 예상되고 있다.



## 2. 研究의 範圍 및 制限點

앞서의 研究目的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研究에서는 北韓의 軍事力 現況, 특히 核武器 開發 및 보유가능성과 「韓半島 非核地帶化論」을 검토해 보고, 이것이 미치는 영향을 空間的 範圍로서 世界體制(the World system)·地域體制(the Regional system)·南北韓體制(the Korean system)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분석·논의함으로써, 이에 대한 한국의 政策的 對應論理와 과제를 설정하는데 범위를 두고 있다.

특히, 北韓軍事力 增強政策의 과정분석 및 核武器 開發政策의 추진실태와 더불어 비핵지대화론·國際核査察 거부의 논리구조를 분석하며, 이를 韓國軍과의 戰力比較를 병행하면서 이것의 安保威脅에 대한 국내외적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이 研究의 중요한 範疇(locus)가 되고 있다.

그러나 研究의 특성상 자료의 蒐集과 분석·해석수준을 넘는 부분과 政策實務部 署와의 협조문제에 대한 不可避한 制限이 있음을 예상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것은 특히 核關聯 政策事案이 국가정책상 대단히 중차대한 問題이기 때문이다.<sup>2)</sup>

한편, 얼마전 李泳禧 교수와 裴名五 교수간의 '南侵不可論과 南侵常存論' 논쟁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들어 이 분야에 대한 매우 혼란된 狀況認識을 보여주는 경우가 적지 않은 실정에 있다.<sup>3)</sup>

그런 까닭에 극히 非現實的이고 추상적인 논의나 官邊的이거나 체제옹호적인 논의는 앞으로 극복·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問題의 성격에 따라 客觀性과 適實性의 기준에서 兩者를 극복할 수 있는 研究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 요망되고 있다.

南北韓 軍事力 均衡에 대한 研究는 국내외적으로 결코 적지 않은 상태에 있으나, 北韓軍事力에 대한 적실성 있는 評價研究가 부족하고, 특히 核關聯 研究는 매우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狀況임을 감안해 볼 때,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研究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2) 國家政策에 있어서 核問題는 '1級 秘密'(Top Secret)에 속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그러한 결과, 북한의 對南戰略과는 접목될 소지가 많고 따라 당국의 안보논리나 미국의 對韓政策에 극히 批判的이고 회의적인 경우가 적지 않다. 예컨대 남북한간의 軍事力 均衡比較에 있어서 南韓의 우세나, 軍備統制 및 軍縮에 있어서도 전면 수용 내지는 전면 해체와 같은 極端論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李泳禧, "南北韓 戰爭能力比較研究", 『월간 社會와 思想』(1988년 9월호); 또한 1989년 4월호 『월간 朝鮮』에서는 남북한 군사력 논쟁에서 李泳禧 교수의 '南韓優位論'·河英善 교수의 '南北韓均衡論'·吳寬治 교수의 '北韓優位論'을 각각 비교한 기사를 실은 바 있다.

더우기 外國事例나 理論的 研究水準에 불과한 실정을 감안하면, 가장 예민하고도 즉시 대응적이어야 할 北韓의 核威脅에 대한 반응이 미온적이며 추상적인 상태에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3. 研究의 方法

이 研究는 한반도의 軍事力 및 核關聯資料를 중점 분석하면서 진행한 文獻調查研究로서, 특히 北韓의 핵관련 威脅實體를 獨立變數로 간주하고 그리고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威脅狀況을 從屬變數로 보면서, 여기에서 비롯되고 있는 南北韓間의 긴장 구조와 대응상황의 關聯性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資料接近에 있어서 일정한 制約이 불가피한 부분을 위해서는 주로 國防政策 및 情報判斷部署와의 긴밀한 면담을 통해서 가능한 문제의 核心을 포착하려고 하였으며, 특히 문제의 성격이 現實性和 客觀性을 요구하는 까닭에서 '民間的 視角'(civilian perspective)과 '軍隊的 視角'(military perspective)間的 적정판단 가능치를 추출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南北韓間 군사적 긴장구조와 긴밀히 반응하고 있는 이들 中層次元은 한반도가 '힘의 論理와 依存의 論理'가 동시에 작용하는 現實態임을 동태적으로 규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분야에 나름대로의 理論的·實際的으로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더우기 北韓의 核戰略으로의 전환논리를 규명함으로써 여기에 對應하는 한국의 安保論理의 재정립에 일단의 기초를 제공하고, 동시에 가장 딜레마로 작용될 수 있는 軍備統制 문제와의 結合方法論의 모색은 北韓의 核威脅을 최소화시키면서 남북한 간의 緊張構造의 해소와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가능할 수 있는 安定메카니즘의 개발·구상은 轉換時代의 懸案 政策判斷에 일부를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sup>4)</sup>

4) 따라서 여기에 대한 政策的 對應課題도 가능한 '時宜性·現實性·相互性'에 입각하여 能動的으로 도출되어야 할 것이 요구된다.

## II. 北韓의 軍事力 增強過程 및 變化要因

### 1. 戰爭政策의 基調論理

#### (1) 戰爭政策의 形成

1948년 이미 北韓의 人民軍隊는 정규군으로 처음으로 創軍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독특한 戰爭觀을 형성시켜 나가게 되었다.

그 해 2월 8일 평양에서 열린 人民軍의 創軍에 대한 열병식장에서 金日成은 다음과 같이 말했던 것이다. 즉, “...우리는 진정한 人民의 정권인 北朝鮮人民委員會의 창립 2주년을 경축하면서, 朝鮮歷史에 처음으로 인민 자신의 正規的 武裝力인 조선 인민군의 創建을 선포하게 됩니다...日帝帝國主義者들의 총칼 앞에서 갖은 박해와 탄압을 당하던 朝鮮人民은 해방후 자기 손에 정권을 틀어쥐고 행복한 새 생활을 창조하는 길에 들어 섰으며, 이제는 조국과 민족을 보유하는 당당한 자기의 正規軍隊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약 43년이 경과된 오늘날까지 創軍 初期의 理念的 骨幹을 그대로 유지해 오고 있다는 것은, 바로 執權構造와 軍統帥權者가 교체되지 않고 그대로 北韓軍에 대한 명백한 實體로 작용하고 있다는 證左라고 봐도 무방한 것이다.

결국, 北韓의 戰爭觀을 형성시켜 온 내외부의 원인과정에 더불어 「主體思想」이라는 統治이데올로기와 단 한번도 교체된 적이 없는 統治構造는 강력한 戰爭政策의 논리 속에서 威脅力을 조직화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이번 북한의 核問題에 대하여 고려되지 않으면 안될 가장 기본적인 前提條件이 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5) 金日成, 『朝鮮人民軍 創建에 즈음하여』, 저작집 제4권 (平壤: 朝鮮勞動黨出版社, 1948), 99面.

## (2) 戰爭政策의 基調論理

## 1) '戰爭不可避論'의 論理

북한은 軍事戰略에 있어서도 한국전쟁 이전까지는 蘇聯軍의 戰略體系를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이며, 그 당시의 소련군이 유지하고 있던 전략체계는 소위 '包圍殲滅戰略'으로 소개될 수 있는 것이다.<sup>6)</sup>

그러나 金日成의 戰爭政策<sup>7)</sup>은 곧 北韓의 軍事戰略·戰術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을 「戰爭不可避論」이라는 차원에서 설명해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北韓은 이 세계에 제국주의가 존재하는 한 反帝鬭爭을 위한 전쟁은 본질적으로 불가피하다는 論理를 지지·천명해 왔으며, 金日成 자신도 "...帝國主義가 남아 있는 한 세계는 결코 평온할 수 없으며, 侵略과 戰爭은 없어질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던 것을 볼 때, 反帝鬭爭을 위한 戰爭의 不可避性에 대해서 그 正當性을 주장하고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과거의 레닌-스탈린에 의한 '戰爭肯定論'과 '戰爭不可避論'을 그대로 답습되었던 것이며, 다만 金日成에 의해서 상당 부분이 추가되었던 것이다.<sup>8)</sup> 따라서 金日成은 후르시초프가 내세운 전쟁의 不可避性에 대한 전면 부정으로 그가 내세운 전쟁은 피할 수 있으며 또한 피해야만 한다는 '戰爭可避論'이나 '平和共存論'<sup>9)</sup>은 정면으로 거부해 버리게 되었던 것이다.

6) 崔錫(編), 『軍事力과 國防』 (서울: 在鄉軍人會, 1972), 89면; Raymond Garthaff, *Soviet Military Doctrine III* (New York: The Free Press, 1970), p. 67 각각 참조.

7) 이러한 문제는 곧 북한의 戰爭觀에 대한 政策理解的 接近으로 가능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유용한 論據는 다음을 참조할 것. 梁炳基, "北韓의 戰爭·平和觀," 『社會科學論集』, 제3집, 淸州大學校 社會科學研究所 (1985).

8) 金日成, 앞의 책, 185面.

9) 金學俊, 『蘇聯政治論』 (서울: 一志社, 1976), 150面 참조.

10) 李基鐸, "平和共存에 관한 研究: 蘇聯外交의 論理와 構造," 『社會科學論集』, 延世大學校 社會科學研究所 (1975), 48-49面 참조.

## 2) '正義의 戰爭'의 論理

이러한 金日成의 戰爭政策에 대한 기본논리는 전쟁을 '現實的 次元'에서 인식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으며, 그것은 現時點에서 전쟁의 '現實的 根源'이 "美帝를 우두머리로 하는 帝國主義의 침략적·략탈적 본성에 있다"<sup>11)</sup>는 것을 거듭 확증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었다.

따라서 北韓의 전쟁정책은 기본적으로 계급투쟁의 차원에서의 '戰爭不可避論'이나 또는 '美帝消滅論'으로 압축될 수 있으며, 이것이 전쟁의 발발에 對備해야 한다는 논리는 당연한 論理的 歸結이라고 할 수 있다.<sup>12)</sup>

그렇다면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北韓은 공식적으로 戰爭勃發의 가능성을 상정하면서,<sup>13)</sup> 스스로 戰爭政策을 정당화시켜 왔다는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첫째, 美帝를 포함한 소위 帝國主義 陣營 내부의 모순이 심화되어 제국주의와 제국주의간에 戰爭이 도발하는 경우로서, 이로 인해 美帝가 한국문제에 간섭할 여유를 갖지 못할 때라고 한다.

둘째, 美帝 자체 내부의 모순이 심화되어 일반대중들이 지배층을 반대하고 鬭爭함에 따라서 美帝가 한국문제에 관심을 돌릴 수 없을 때라고 한다.

셋째, 소위 帝國主義 陣營과 社會主義 陣營間的 전쟁이 발발하여 美帝가 한국문제에 간섭할 여유가 없을 때라고 한다.

넷째, 한국 내부에서 反美·反政府 蜂起가 일어나 통일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될 때라고 한다.

이미 北韓은 전쟁의 유형에 관하여 公式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곧 '正義의 戰爭'과 '不正義의 戰爭'이라는 구분이다.<sup>14)</sup> '正義의 戰爭'에 대한 北韓의 공식

11) 社會科學出版社(編), 앞의 사전, 744-745面 참조.

12) 梁炳基, 앞의 論文, 108-112面 참조.

13) 金日成, 『金日成 著作選集: 9』(平壤: 朝鮮勞動黨出版社, 1980), 178-179面.

14) 물론, 기타의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북한군의 전쟁관이 소련의 그것으로부터 연유된 바가 크기 때문에 소련에서의 전쟁의 유형을 나누는 '善한 戰爭'과 '惡한 戰爭'의 기준에 따라 구분하는 제1의 분류방식과 전쟁의 유형에 따라 구분하는 제2의 분류방식이 있다. 즉, 前者에 의한 구분이 바로 북한군이 취하고 있는 '正義의 戰爭'(just war)과 '不正義의 戰爭'(unjust war)인 것이며, 後者는 ①영토확대·략탈 또는 王朝의 野心의 전쟁 ②일반적인 독립·주권국가간의 전쟁 ③帝國主義 戰爭과 植民地 戰爭 ④世界大戰 ⑤局地戰 ⑥民族解放戰爭 및 民族戰爭 ⑦聯合戰 ⑧內戰 ⑨革命戰爭 ⑩友愛的 支援의 戰爭 등으로 구분된다. P. H. Vigor, *The Soviet View of War, Peace, and Neutrality*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75), pp. 25-58.

분헌에 따르면, “...帝國主義 侵略者들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解放戰爭인 것이며, 反動階級들과 그들의 통치기관을 약화시키거나 소탕하고 피압박 인민들을 제국주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 사회발전을 촉진...”시키는 戰爭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北韓의 戰爭觀의 특이성은 자신들이 수행하거나 또는 수행할 전쟁은 모두 ‘正義의 戰爭’으로 단정하고 있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예컨대, 그것은 “...우리가 수행하는 戰爭은 그 어떤 경우이거나 모두 ‘正義의 戰爭’이다. 그것은 美帝의 침략을 물리치고 帝國主義 植民地 統治基盤에서 남조선을 해방하며, 민족의 自主權을 옹호하기 위한 民族解放戰爭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서 北韓이 수행하거나 수행할 전쟁은 모두 ‘正義의 戰爭’인 것이며, 특히 民族解放의 戰爭인 까닭에 모두가 絕對적으로 긍정하고 합당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北韓은 한국전쟁을 그들이 말하는 ‘正義의 戰爭의 가장 훌륭한 戰爭’이라고 극구 주장하고 있으며, 향후 韓半島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될 때 北韓이 수행할 전쟁은 ‘자기 祖國을 지키며 원수들에게 빼앗긴 땅을 도로 찾는 正義의 戰爭’이 될 것을 말하고 있다.<sup>15)</sup>

## 2. 軍事戰略·戰術의 構造

### (1) ‘主體의 戰略’

그러므로 北韓의 軍事戰略이나 군사전술의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서도, 앞서 논의한 北韓의 戰爭觀과 戰爭政策에 대한 기본인식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北韓의 전략·전술은 金日成의 抗日遊擊戰鬪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미 그 앞에는 마르크스·레닌·스탈린·毛澤東 등의 軍事思想을 ‘教條的’으로 받

15) 社會科學出版社(編), 『政治事典』(平壤: 社會科學出版社, 1973), 744面.

16) 허종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리론』(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271면 참조.

17) 社會科學出版社(編), 앞의 사전, 744面; 金日成, 『金日成 著作選集: 5』(平壤: 朝鮮勞動黨出版社, 1972), 16面.

아들임으로서 北韓軍의 軍事戰略이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韓國戰爭 이전까지는 전적으로 소련군의 전략·전술을 그대로 모방하게 되었으며, 전쟁의 과정에서는 소련의 '빨치산戰略'과 毛澤東의 '遊擊戰思想'을 병행하여 나름대로 독자적인 軍事戰略을 수립하게 되었다.<sup>18)</sup>

그러나 한국전쟁은 金日成으로 하여금 軍事戰略에 재정립을 요구하였던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휴전 이후 무장계급라의 南派 등의 직접 경험과 쿠바事態, 越南戰과 中東戰 등의 간접 경험을 교훈으로 받아들여 소위 金日成의 '主體戰略'이라는 軍事戰略을 수립하게 되었던 것이다.<sup>19)</sup>

즉, '主體의 戰略'이라는 것은 현대전쟁과 혁명전쟁의 合法則性으로 速戰機動共同戰略과 포위섬멸전략으로 구성된 소련식 軍事戰略과 대부대유격전략인 모택동식 軍事戰略의 부분적인 융합과 수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sup>20)</sup>

더우기 北韓에 있어서의 군사정책이란 곧 國家政策과 동일시되고 있으며,<sup>21)</sup> 이러한 논리에 입각한다면 北韓에 있어서의 軍事戰略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높은 것으로서 그것은 勞動黨의 전략목표와 사실상 같은 位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 (2) 戰略·戰術의 基本構造

北韓의 軍事戰略은 크게 볼 때 構想的 次元과 概念的 次元으로 구분되어 설명될 수 있다.<sup>22)</sup> 즉, 戰略構想은 전략적 목표를 말하는 것이며 戰略概念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軍事行動의 방법을 명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北韓의 對南 軍事戰略에 있어서의 전략구상으로는 敵有生力量의 섬멸, 남

18)이기봉, "北韓의 軍事戰略 形成過程과 당면 軍事戰略," 『새물결』, 제121호, 自由評論社 (1985), 80-81面 참조.

19)閔丙天(編著), 『北韓共產主義』 (서울: 大旺社, 1983), 376-386面.

20)이것은 북한이 초기에 蘇聯式 軍事戰略을 전적으로 모방하여 군사전략의 정립을 시도하였으나, 한국전쟁으로 결함이 노출되어 國共內戰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과학적으로 체계화되었다는 毛澤東式 軍事戰略을 받아들여 이것들을 한국적 상황에 맞도록 적용시킨 戰略이라고 할 수 있다. 白光一, "北韓의 軍事環境과 軍事政策," 金乙權(編), 『韓半島 周邊의 軍事環境』 (서울: 世宗研究所, 1988), 495面 참조.

21)그렇다고 軍의 독자적인 政策樹立이 가능하다는 意味는 아닌 것이다. 어디까지나 軍隊는 '黨의 革命的 武裝力'인 것이기 때문이다.

22)이 부분에 대한 論議는 다음을 참조하였다. 『北韓軍事論』, 北韓研究叢書, 제7집, 249-251面; 『北韓要覽』 (서울: 國土統一院, 1984), 1456-1458面;

조선 전역의 同時戰場化, 남조선 首都圈 조기석권, 남조선 전역의 早期占領이라는 네 가지의 전략을 유추할 수 있다.<sup>23)</sup>

첫째, 敵有生力量의 섬멸은 적을 電擊의으로 기습하여 완전 섬멸함으로서 적을 再起不能의 상태로 만들어 부대를 再收拾하여 反攻할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으로 '별오리會談'<sup>24)</sup>에서 지적된 한국전쟁의 실패원인을 보완한 전략인 것이다.

둘째, 남조선 전역의 同時戰場化는 특정지역에 한하여 戰鬥을 하는 것이 아니라 正規戰主力部隊와 非正規戰部隊를 포함한 모든 戰力を 동시에 전국적으로 투입하여 攻撃을 감행함으로서 全國的인 혼란을 야기시킨다는 戰略으로서, 육·해·공군의 總力合同作戰을 의미한다.

셋째, 南朝鮮 首都圈 조기석권은 서울을 奇襲攻擊하여 탈환함으로서 南韓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의 中心地를 획득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인 전쟁의 승리를 早期達成하여 협상을 시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는 것이다.

넷째, 南朝鮮 전역의 早期占領은 앞의 세가지 전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가능한 전략으로 한국군의 反擊機會를 無爲化시키고 미국의 介入時期를 박탈하려는 의도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基本戰略構想을 중심으로 北韓은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군사행동의 방법으로서 당면의 軍事戰略을 체계화시키고 있는데, 그것은 곧 當面 軍事戰略개념인 總力戰戰略과 正規戰·非正規戰의 配合戰略, 大量先制 奇襲攻擊戰略, 速戰速決戰略이 되고 있는 것이다.

첫째, 總力戰戰略은 평화공세와 欺瞞戰術로 구성된 政治戰으로서, 軍事와 경제를 결합시키고 軍事와 外交戰을 결합시키며, 다시 軍事와 心理戰을 결합시키는 것이다.

둘째, 正規戰·非正規戰의 配合戰略은 모택동의 遊擊戰略과 소련의 軍事戰略을 결합하여 만든 配合戰略으로서, 이는 한국적 실정에 맞는 '主體的 戰略'이라고도 하는데 대규모적인 正規作戰과 非正規的인 유격전을 배합하여 상대를 도처에서 티격하는 戰線이 없는 전쟁으로서 南韓 전역을 同時戰場化한다는 것이다.<sup>25)</sup>

23)白光一, 앞의 論文, 496-498面.

24)이는 1950년 12월 21일부터 23일까지 열린 黨 中央委員會 제2기 3차 擴大全員會議로서, 이 때 중요하게 논의된 것은 蘇聯式 軍事戰略 一邊倒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많은 問題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25)즉, 이것은 前方에서는 상대방의 主力軍을 붙잡아 놓고, 後方에서는 人民抗爭을 유발시켜 全面攻勢를 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위의 論文, 498面 참조.



셋째, 大量先制 奇襲攻擊戰略과 速戰速決戰略은 金日成의 軍事戰略을 지도하는 중요한 원칙의 하나로서 正規軍에서부터 非正規戰의 武裝特功계릴라부대에 이르기까지 先制奇襲攻擊은 광범위하고도 다양한 특징이 있다. 즉, 金日成은 정규군에게는 기동력을 극대화하고 비정규군에게는 무장을 경량화함으로써 軍事力에서 속도를 크게 중요시하고 있다.<sup>26)</sup>

### 3. 軍事力 增強變化 推移

#### (1) 背景

이미 1964년 2월에 개최된 黨 中央委員會 제4기 8차 全員會議에서 최종 확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남조선혁명을 위한 기본노선인 '革命力量論'의 주요골자는 北韓 자신의 '自體革命力量', 남한내의 '同調革命力量', 국제적인 '支援革命力量' 등 세가지의 革命力量의 극대화 방안으로 망라되어 제시되고 있다.

특히, 이 중에서는 다음과 같은 軍事分野에 대한 투자·노력이 北韓의 군사정책에 있어서의 實體로서 현재까지 꾸준히 발전되어 왔다.<sup>27)</sup>

北韓 자신의 自體革命力量의 완성에 대해서 金日成은 말하기를, "...共和國 북반부에 社會主義 건설을 잘하여 정치·경제·군사적으로 남조선 해방을 위한 革命基地化할 것..."을 지시함으로써, 1962년 12월 제4기 5차 全員會議를 통하여 北韓의 핵심적인 군사정책으로 채택된 '國防自衛政策'이 등장하게 되었다.

金日成의 '國防自衛政策'에 대한 해석에 의하면, "國防에서의 自衛라는 것은 자체의 힘으로 자기 나라를 保衛하는 것으로 黨의 主體思想이 구현된 것"이라고 하였던 것이다.<sup>28)</sup>

26) 이것은 特定地域을 速戰速決로 先制奇襲攻擊하여 먼저 軍事的으로 占領을 하고, 나중에 協商을 할 수 있는 전략으로서, 제4차 中東戰에서의 敎訓이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27) 襄名五, "北韓의 軍事政策 및 軍事戰略," 『海洋戰略』, 제65호, 海軍大學 (1990)

28)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自衛'가 아니라 남한내에서 決定的인 時機가 조성되면, 中·蘇의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武力攻擊을 감행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사용되는 의미인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서 戰爭物資의 비축과 무기의 자체생산에 박차를 가하면서 모든 軍事的 問題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것을 강조하는 한편, 한반도의 地形的 特殊性과 한국전쟁에서 얻은 교훈을 통해서 독자적인 軍事戰略 및 戰術敎理의 개발에 착수하게 되었다.

특히, 金日成의 '自衛政策'이라는 것에 의하면, '革命的 自衛政策에 기초하여 全民的, 全國的인 방위체제를 수립하고 온 나라를 難攻不落의 要塞로 만드는 새로운 이론이라는 것으로서, 이것의 實踐的 行動要綱이 곧 '4大 軍事路線'이다. 즉, 全人民의 武裝化, 全國土의 要塞化, 人民軍의 幹部化, 軍裝備의 現代化 등으로 잘 알려진 '4大 軍事路線'은 北韓의 軍事力을 실질적으로 증강시킬 수 있는 기본토대로 작용해 왔던 것이다.

1960년대부터 이루어진 自衛軍事力의 신장을 위한 자체 노력은 GNP의 약 20% 이상을 軍事部門에 투입하도록 강요해 왔으며, 이러한 軍事力 增強政策은 北韓軍事力의 괄목할만한 진전을 가져오게 만들었고, 특히 正規軍 兵力의 현저한 증가와 함께 장비의 現代化와 무엇보다도 機械化 部隊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러한 軍事路線은 勞動赤衛隊를 보강하여 정규군의 수준으로 강화되었으며 동시에 붉은靑年近衛隊를 조직함으로써 전인민의 武裝化에 주력하게 되었다. 그리고 전지역에는 각종 待避所를 구축하고 주요산업 및 군사시설을 地下化함으로써 전지역을 要塞化하였으며, 전군의 幹部化 政策으로 正規軍 모두에게 1계급 이상 상위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시킴으로서 指揮能力을 갖춘 장교와 병사를 확보하였다.<sup>29)</sup>

특히, 1966년 이래 장비의 現代化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소련으로부터 Ⅱ級 잠수함, KOMAR級 誘導戰艇, MIG-19機, SA-2 地對空미사일 등 각종 고성능 전자장비를 도입하였다. 1970년대 초반에는 地上軍의 경우 T-54·T-55·T-59型 重型戰車, PT-76輕戰車, 對戰車 誘導戰用 SNAPPER와 FROG-5로켓 등이 증강되었으며, 海軍의 경우에는 KOMAR 및 OSA級 誘導戰艇 등을 보강하였다.

이러한 장비현대화는 1984년 5월 金日成이 소련을 방문한 이후로 급진전되었으며, 특히 1985년부터는 MIG-23機와 같은 최신예전투기와 T-72型 戰車, 사정거리 270

29)이창하, "南北韓 軍事力 均衡과 韓半島 平和," 『外交』, 제5호, 韓國外交協會(1988. 3), 21-22面.

Km에 달하는 SCUD미사일, SA-3 地對空미사일 등을 소련으로부터 도입하였다. 그리고 최근에는 최신에 地上戰鬪支援 戰鬪機인 SU-25機 10대를 소련으로부터 도입·실전 배치함으로써 공군의 實戰能力을 크게 증강시키고 있다.

## (2) 軍事力 水準

1989년에서부터 1991년까지를 분석의 대상시기로 볼 때, 南北韓間의 軍事力 均衡의 평가문제는 상당히 예민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아직도 軍事力 比較에 있어서의 비교기준과 解釋上의 차이,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核戰力 評價까지 포함되어야 하는 상황인 까닭에 그것은 사실상 대단히 복잡한 問題의 性格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sup>30)</sup>

여기에서는 일단 信賴性 있는 최근자료를 통해서 비교해 본 南北韓의 軍事力 現況은 다음의 <표-1>과 같다.

30) 軍事力에 대한 분석적인 평가는 現存能力과 潛在能力을 포함하면서 평가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現存能力이란 유사시에 즉각 전투에 투입될 수 있는 常備軍事能力을 말하며, 대체로 可視的인 數値에 의해서 표시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潛在能力이란 장기종합 전쟁수행능력을 말하며, 인적 자원·경제역량·군수산업·민간부문의 軍需用 전환능력 등을 포함한다. 물론, 일반적으로 軍事力은 動態性·狀況性·相對性을 통해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남북한간에는 이러한 狀況性과 相對性에 더욱 비중을 두면서 분석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軍事力 사용이 狀況的 特殊性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狀況性이며, 또한 軍事力의 사용이 攻擊과 防禦 중 어느 쪽에 치중되는가의 문제는 相對性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Amos A. Jordan and William J. Taylor, Jr., *American National Security: Policy and Process* (Baltimore and London: The Johns Hopkins Univ. Press, 1984), p. 25.

&lt; 표-1 &gt;

## 南北韓 軍事力 比較

口 分	北 韓	南 韓
· 兵力(名)	1,000,000	650,000
· 地上戰力		
보병사단(개)	30	21
기계화 보병사단(개)	-	2
기갑사단(개)	1	-
차량화 보병사단(개)	1	-
교도(향토)사단(개)	23	25
보병여단(개)	4	-
기계화 보병여단(개)	23	15
기갑여단(개)	12	-
특수(특전)여단(개)	22	-
전차(대)	3,500	1,500
장갑차(대)	1,960	1,550
야포(문)	7,800	4,000
방사포(문)	2,500	140
박격포(문)	11,000	5,300
헬리콥터(대)	170	314
· 海上戰力	630	300
잠수함(척)	23	3
구축함(척)	2	29
유도탄정(척)	30	11
구잠함(척)	30	-
경비함/경비정(척)	106	94
어뢰정(척)	173	-
상륙함(척)	126	52
화력지원정(척)	66	-
기타 함정(척)	74	112
· 航空戰力	1,800	1,170
폭격기(대)	83	-
대지공격기(대)	30	23
전폭기(대)	907	457
지원기(대)	780	690

\* 出處:IISS, *The Military Balance* (1989-1990); 『國防白書』 (1989-1990).

여기에서 비교하여 볼 수 있듯이, 현재 北韓은 약 백만명이 넘는 常備戰力과 55개의 사단급 부대 및 61개의 여단급 부대를 확보하고 있는데 비해, 南韓은 약 65만 명의 常備戰力과 48개의 사단급 부대 및 15개의 여단급 부대만을 확보하고 있다.

이를 地上戰力으로 보면, 北韓은 3,500여대의 戰車와 1,960대의 장갑차 및 7,800

여문의 야포를 보유하고 있는데 비해서, 南韓은 1,500여대의 戰車와 1,500여대의 장갑차 및 4,000여문의 야포를 보유하고 있다. 海上戰力을 보면, 北韓은 잠수함·구잠함·어뢰정 등을 포함하여 모두 630여척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는데 비해, 南韓은 잠수정 3척을 포함하여 모두 300여척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航空戰力을 보면, 北韓은 폭격기를 포함하여 1,800여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비해, 南韓은 불과 1,170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남북한간 軍事力 比較의 客觀性을 높이기 위해서 영국의 戰略問題研究所와 美國防省의 軍事情報局 및 일본의 防衛廳의 최근자료를 통한 國際比較의 결과를 볼 필요가 있다.<sup>31)</sup>

< 표-2 > 南北韓 軍事力の 國際比較

口 分	英國戰略問題研究所		美國 軍事情報局		日本 防衛廳	
	南韓	北韓	南韓	北韓	南韓	北韓
兵力(천명)	650	1,040	650	1,040	※540	※750
師團/旅團	44	70	50	108	※※21	※※25
特殊旅團	7	25	7	25		
戰 車(대)	1,560	3,200	1,500	3,500		3,500
裝甲車(대)	1,550	1,600	1,500	1,960		
野 砲(문)	4,240	7,200	4,037	10,300		
艦艇/潛水艦 (척)	143	516 (23)	172	543 (23)	170	520 (21)
戰術機(대)	447	694	480	694	390	770

※육군 / ※※상비사

이러한 國際比較를 통해 살펴볼 수 있듯이 전반적으로 軍事力 水準은 北韓이 우세한 것으로 보이고, 더우기 韓·美 戰鬪序列 判斷資料와 각국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31) IISS, *The Military Balance* (1989-1990); 美國防省 軍事情報局 發表資料 (1989. 7...3); 日本防衛廳, 『防衛白書』 (1989).

종합해 보면, 總兵力面에서는 北韓이 약 1.5배 정도 우세하며, 전차·야포·전투함·전투기 등 主要戰力面에서는 北韓이 평균 2배 정도 우세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數量比較는 객관성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武器體系나 장비의 질적 비교 등 相對的 比較를 통한 總體的인 判斷에는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戰力指數에 의한 比較方法<sup>32)</sup>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 표-3 > 戰力指數에 의한 南北韓 軍事力 比較

區分	基準部隊	北韓	南韓	比(北/南)
· 地上戰鬪部隊 보병부대 기계화부대 비사단포병부대	보병사단	56개	46개	1.2
	기계화보병사단	22개	4.5개	4.8
	155밀리포병대대	160개	40개	4.0
· 海上戰鬪部隊 수상전력 수중/대잠전력 상륙전력 소해전력	구축함	74척	57척	1.3
	잠수함	27척	4척	6.8
	LST	23척	12척	2.0
	MSC	15척	10척	1.5
· 空中戰力	F-16	345대	219대	1.6

\* 出處: 韓國國防研究院, 『韓半島 戰爭威脅은 사라졌는가?』 (1989. 2), 22面.

이러한 결과를 보면, 북한의 軍事力은 남한에 비해서 사실상 優位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따라서 潛在戰力의 比較까지 덧붙여 본다면 그 격차는 더 커질 것이다. 특히, 뒤에서 논의할 核戰力을 고려하면 남북한간의 軍事力이 그렇게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評價되기란 사실상 어렵다.

여기에서 한가지 파악해야 할 것은 優勢한 북한의 軍事力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응해 온 남한의 軍事力 規模 또한 적지 않은 실정이다 보면, 韓半島는 격심한 軍備對決을 벌여왔다는 것이며, 북한은 '主體思想'을 통한 '軍事神話的 論理- 곧 軍神

32) 이는 무기체계가 지닌 고유의 전투잠재능력을 상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공통기준을 선정하여 이를 단일척도로 표시하게 되며 개관적인 기술특성의 요소와 무형요소 중에서 개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요소만을 비교평가하는 방법이다. 현재 한국군에서는 미육군개념분석국(CAA)에서 개발한 방법론을 일부 수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의 論理'를 맹신적으로 추종하게 強要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북한의 위협에 대한 남한은 '軍事工學的 論理-곧 軍部の 論理'로 서로 팽팽하게 맞서 왔다는 것이다.

#### 4. 軍事同盟의 力學關係

최근 신데탕트 체제 속에서의 潮流變化는 걸프전 이후 미묘하게 전개되고 있는 북한의 核開發을 둘러싸고 일대 파급을 미치고 있다. 최근들어 계속되는 開放을 요구 받던 북한이 核問題를 제기함으로써, 또 다른 局面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즉, 傳統的으로 유지되어 왔던 蘇聯과의 관계도 '3日 天下'로 끝난 소련의 軍事 쿠데타를 기점으로 더 이상 正常關係를 맺을 수 없게 될 공산이 커지고 있으며, 中國 또한 일정한 距離를 조정하면서 북한의 向背를 타진하려는듯 보여지고 있다.

그러나 日本은 남북한의 유엔가입에 즈음하여 그 직전부터 北韓에 대한 태도가 肯定的으로 비쳐지고 있으면서도, 최근 核査察 拒否를 둘러싸고 불편한 心氣를 드러내고 있는 형편에 있다. 물론, 최근에 日本은 국제적으로도 '自衛'의 概念을 확대하면서 새로운 軍事大國으로의 변신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sup>33)</sup>

따라서 과거의 蘇·中관계로부터 多變化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北韓의 軍事同盟體制는 기존의 '北方三角關係'를 그대로 유지하기란 전망하기가 쉽지 않다.

결국, 신데탕트 분위기와는 '區別的'으로 노정되고 있는 狀況을 맞고 있으면서, 걸프전 이후 霸權走者임을 자처하는 팍스아메리카나와 제2의 局面에 진입할 소련의 向方 그리고 내부적 변모를 受容하면서도 아직도 社會主義를 전명하고 있는 中國, 等距離 政策을 유지하면서 또 다시 自己變身을 감행하는 일본은 북한의 향후 거취는 물론, 轉換時代에 예비되고 있는 韓半島의 統一構圖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sup>34)</sup>

33)『朝鮮日報』(1991. 9. 16); 『한겨레新聞』(1991. 9. 15) 각각 참조.

34)이 문제와 관련되는 論議는 뒤에서 취급할 북한의 核開發을 둘러싼 周邊國들의 反應關係에서 상세하게 논의될 것이다.

### Ⅲ. 北韓의 核武器 開發問題와 ‘非核地帶化論’의 論理分析

#### 1. 核開發의 推進過程

걸프전의 여세를 몰아 美國은 소위 ‘主體의 原爆’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식 ‘自衛的 先制攻擊’이라는 시나리오까지 검토되고 있다는 世間の 「北韓核施設 爆擊論 云云」이라는 問題의 상황은 무엇보다 北韓의 核開發·核保有에 따른 단순한 우려의 차원을 넘은 당혹과 불안을 불러 일으켰다.<sup>1)</sup>

그동안 국내외의 보도매체와 情報機關들에 의해 제시된 北韓의 核開發 狀況의 대략적인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즉, 1947년 우라늄광 탐사를 시발로 1959년 蘇聯과 原子力協定 締結, 1962년 평북 迎邊의 原子力研究所 설립에 이어 1965년 蘇聯으로부터 연구용 原子爐 1기를 도입(2Mw급), 1970년 제2호 실험용 原子爐 1기 건설(3Mw급), 1980년 原子力發電所 건설(3Mw급)과 1989년 IAEA총회에서 原子爐 4기(44Mw급) 건설 중임을 발표, 1990년 日本東海大學 정보기술센터에서 迎邊 原子力 研究團地를 衛星寫眞으로 공개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과연 北韓은 核開發이 완료된 것인가? 그렇다면 北韓은 불원간 核武器를 보유할 수 있다는 것인가? 이러한 궁금증은 이미 초미의 關心事로 등장했으면서도 이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부족한 실정에 있다.

실제로 北韓이 原子力에 관심을 가진 것 자체가 상당히 오랜 歷史를 이루고 있으며, 그것은 이미 전쟁 중에 美國의 核使用 위협으로 인하여 核武器에 대한 관심이 휴전 직후부터 촉발되었다고 판단되고 있다.

그러므로 1947년 우라늄광 탐사를 시작으로 최근의 核開發 問題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경과를 통해서 어느 정도 可視化 단계에 육박하는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단 현재까지 국내외의 情報網을 통해 입수된 北韓의 核開發 경과내용을 그 추진내용별로 살펴보기로 한다.<sup>2)</sup>

1) 趙甲濟, “北韓核施設 爆擊論,” 『月刊 朝鮮』, 朝鮮日報社 (1991年 3月號), 118-135面 참조.

2) 宋英仙, “北韓의 核安全措置協定 未締結과 核能力,” 『月例論文發表』, 別刷本, 韓國政治學會 (1991. 5), 17-19面 참조.



첫째, 1955년 6월 27일에는 北韓의 科學院 대표일행이 原子力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蘇聯의 과학원 학술회의에 참석하였고, 이듬해 2월 28일 모스크바에서 「聯合核研究所 組織에 관한 協定」을 체결하였다.

둘째, 1958년도에는 核開發 지식의 습득을 위해 北韓內의 물리학자와 기술자들이 蘇聯에 파견되었으며, 1959년 蘇聯 및 中國과 「原子力의 平和的 利用에 관한 協定」과 議定書를 각각 체결하였다.

셋째, 北韓은 1961년부터 1967년까지 약 3,000여명의 과학자와 기술자를 蘇聯에 파견하여 이미 核分野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하였으며,<sup>3)</sup> 특히 1962년에는 金日成대학 물리학 교수인 한인석에 의한 核開發 關聯論文이 최초로 발표되었다.

넷째, 1964년 2월에는 「北韓原子力研究所」가 평안북도 迎邊一帶에 설립되었으며, 1965년에는 研究用 原子爐(IRT-1000) 1기가 蘇聯으로부터 도입되어 설치되었다.<sup>4)</sup> 이어 1970년에는 제2호 實驗用 原子爐 1기가 건설되었으며, 또한 1964년에는 함흥·용기·해금강 일대에서 우라늄鑛을 발견했다는 보도와 1968년 8월 9일에는 100Mw級 核發電機를 북창화력발전소에 설치하기 위한 일련의 협정을 蘇聯과 체결하였으나 蘇聯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傳言이 있었다.

다섯째, 1973년에는 金日成大學에 核物理學科를 설치하였으며, 김책공업대학에는 核電氣工學科·核燃料工學科·原子爐工學科 등이 설치되었다.<sup>5)</sup> 이어 1974년 9월에는 國際原子力機構에 가입하면서 그 해말인 12월에는 極東地域代表理事團에 피선되었으며, 1976년 5월 20일에는 김영준을 단장으로 한 「放射線 同位元素 應用代表團」이 북경에 파견되었다. 그리고 1976년 5월 20일에는 모스크바 근교의 드브나 「聯合核研究所」의 학술회의에 대표단 일행을 파견하였다.

여섯째, 1980년에는 3Kw급 原子力發電所가 건설되었고,<sup>6)</sup> 1983년 北韓은 蘇聯의 지원으로 일련의 核武器製造計劃을 수립하였으나 美國의 압력으로 무산되었다.<sup>7)</sup> 그리고 北韓에 核武器 제조에 轉用될 수 있는 核燃料 재처리공장을 1개를 이미 보유하고

3)李基鐸, "한국과 核: 그 戰略的·政治的 考慮," 『社會科學論集』, 延世大學校 社會科學研究所 (1981), 2-3面.

4)韓國原子力研究所(編), 『韓國原子力研究』(서울: 1975), 20面.

5)Yong-sun Ha, "Nuclearization of Small States and World Order: The Case of Korea," *Asian Survey* (Nov. 1978), p. 1139.

6)이것은 이미 1987년 10월 臨界值에 도달하였다.

7)즉, 北韓에 대한 核技術 援助를 문제삼아 반대하는 外交覺書를 美國이 소련에 전달하였다. *Los Angeles Time* (1985. 6. 2).

있다는 기사를 美國의 ABC방송에서 발표했다.<sup>8)</sup>

일곱째, 1986년 4월 모스크바방송에서는 1985년 12월의 蘇聯-北韓간 경제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에 따라서 건설되는 176만Kw級 原子力發電所에 사용될 출력 44만Kw級 발전기를 4대 제공할 것이 보도되었다.<sup>9)</sup> 또한 1986년 8월에 당시 訪日 중에 있던 蘇聯의 카피차 외부차관은 北韓에 대한 蘇聯의 原子力發電所 건설지원을 시인하였다.

여덟째, 1989년에 44Kw급 原子爐 4기가 건설 중임을 國際原子力機構 총회에서 발표하였고, 이 때부터 美國은 北韓을 A급 감시국가로 선정하고 軍事衛星 監視를 시작하였으며, 최근들어 1990년 2월 7일에는 日本 東海大學의 정보기술센터에서 迎邊 原子力 연구단지를 衛星寫眞을 통해 공개하기에 이르렀다.<sup>10)</sup>

그러므로 현재는 약 2,500명의 핵관련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核爆彈 試射試驗장을 보유함으로써, 1983년부터 현재까지 약 70-80회의 고폭실험을 실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sup>11)</sup> 이러한 집요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1950년대 중반부터 약 30여년간에 걸친 核開發에 대한 투자의 결과는 현재 核武器의 제조가 사실상 可視化되는 상황에까지 육박해 왔다고 볼 수 있다.

## 2. 核保有能力的 可視化

### (1) 核施設

최근 프랑스의 상업용 지구관측 위성인 SPOT호가 830km 상공에서 촬영한 映像資料를 통해 더욱 可視化되고 있는 北韓의 核施設은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점차 可視化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자료들이 속속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 있다.

즉, 평안북도 迎邊에 위치한 核施設은 구룡강으로 둘러싸인 요지에 原子爐와 核燃料, 재처리시설 濃縮 등 核燃料 시설, 연구실험실과 직원주택으로 보이는 시설물들

8) 『朝鮮日報』 (1985. 6. 8).

9) 『韓國日報』 (1986. 8. 29).

10) 『諸君』, 文藝春秋社 (1990年 5月號).

11) 『内外通信: 종합판』, 제319호 (1983. 2. 18), 257面; 北韓研究所(編), 『北韓總覽』 (1983), 1588面 각각 참조.

이 분산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sup>12)</sup>

이미 보도에서는 관련전문가들의 주장을 근거로 北韓이 핵재처리시설을 건설 중임을 발표하였는데, 당시 美國務部는 한국정부에 이러한 사실을 전달하고 필요한 조치를 상호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음을 전달하였으며, 특히 北韓의 핵재처리 공장은 이미 단순한 에너지 개발의 차원을 넘은 問題라는 점을 지적하였다.<sup>13)</sup>

美國의 위성관측에 포착된 바로는 北韓이 상당정도의 原子爐를 건설하고 있으면서도 國際原子力機構의 일반적인 國際規程을 무시하고 이를 일체의 비밀에 붙이고 있으며, 어떠한 국제기구의 공식요원도 입국을 허용치 않고 있다는 것이다.<sup>14)</sup>

이러한 北韓의 핵관련 보도는 事案의 중대함을 계속 전하면서, 이미 北韓이 지난 1970년대 중반부터 의학 및 산업용 방사선 동위원소를 생산하기 위해 평양 북쪽 90km에 위치한 迎邊 부근의 핵연구단지에 蘇聯이 제공한 2-4Mw 용량의 연구용 原子爐를 설치하였다는 사실이 거듭 강조되었으며,<sup>15)</sup> 그 후 독자적으로 설계한 것으로 추정되는 30Mw급 原子爐가 1987년 10월부터 가동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아울러 속속 美國의 衛星寫眞들은 역시 迎邊 일대에 추가로 4-5개의 核施設이 건설 중인 것을 탐지했다고 밝혔으며, 특히 한 번 사용하고 난 核廢棄物로부터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재처리공장이 건설 중이며 그 인근에는 核雷管試驗場으로 보이는 고도의 爆發物 試驗場도 있는 것으로 최근 人工衛星 寫眞資料를 통해 확인되었다는 보도가 잇달았다.<sup>16)</sup>

## (2) 核 能 力

현재까지 北韓의 核開發 經過로 보아 北韓의 核能力은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그것은 어떠한 객관적 판단기준에 의해서 인정이 가능한가?

12) 아소우 소이치로, "北韓의 核開發과 日本의 役課", 『諸君』, 文藝春秋社 (1990년 6월號).

13) 『朝鮮日報』 (1985. 6. 8); 『韓國日報』 (1989. 8. 26)

14) 따라서 北韓의 핵재처리공장은 1989년 8월에 들어서면, 美國의 New York Times紙와 Washington Post紙, 그리고 日本의 『産經新聞』 등에서 고위급의 情報源通을 인용하면서 그것의 危險性과 사태의 緊박성을 수차례 報道한 바 있다.

15) Janes Defence Weekly (1989. 9. 20).

16) 『中央日報』 (1989. 7. 29).

이점에 관해서는 이미 韓國國防研究院의 宋英仙 박사에 의해서 꽤나 설득력 있는 기준이 제시된 바 있는데, 그것은 ①北韓의 核武器開發에 대한 의지와 정책 ②核武器 개발의 시설과 기술수준 ③核實驗의 시도 유무 ④核武器개발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봄으로서 좀 더 확실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17)</sup>

물론, 이러한 객관적인 판단기준은 충분히 타당한 核能力에 관한 측정지표로 적용될 수 있다. 다만 核能力과 긴밀히 관련된 최근의 외교행태 -즉, 駐韓美軍이 보유한 戰術核의 사전 철수라는 기본전제와 국제核査察의 필수요구라는 外壓要因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 北韓의 소위 핵관리정책- 는 물론, 여기에 결정요인으로 작용해 온 北韓의 일종의 '政軍複合體'(a political-military complex)라는 개념구조 -이를 통해서 또 다시 분석될 수 있는 主觀的 要因- 속에서 도출될 수 있는 核能力의 촉발·가속요인에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달리 말하여, 北韓의 군사전략에서 기초논리로 작동되고 있는 ①「金日成 군사사상」의 핵심내용인 '政治·軍事 兩戰論理'<sup>18)</sup>와 '和戰竝用論理' ②「先制奇襲攻擊」의 論理<sup>19)</sup> ③「主體戰法」중의 하나인 '抗道戰 論理' 등과 관련하여 논의의 기점을 설정해야 할 것이며, 이것이 최근 核査察 요구·의무를 둘러싸고 복잡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보여지고 있는 北韓의 대응논리나 驅使行態를 진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첫째로는 '政治·軍事 兩戰論理'나 '和戰竝用論理'의 관점에서 보면, 北韓은 核問題를 대내외적 정치·군사의 兩戰論理로 심분 활용하면서 核開發에 따른 核威脅의 고조와 核査察의 수락-거부라는 고도의 和戰竝用論理를 구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로는 '先制奇襲攻擊論理'와 '速戰速決論理'는 核武器야말로 가장 선제위협적이고도 속전속결적이라는 점에서 전략적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것이며, 특히 '抗道戰 論理'와 '要塞化論理'는 그 자체가 핵공격에 대비한 적극(선제)방어논리인 것이므로, 결국 이들을 결합한 소위 '핵공격-핵방어의 兩戰論理'는 이미 그 자체로서 충분한 정치전략적 차원에서 구사될 수 있는 行動基盤을 구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核査察을 둘러싸고 빚어지는 核能力 진위問題는 그 가시적인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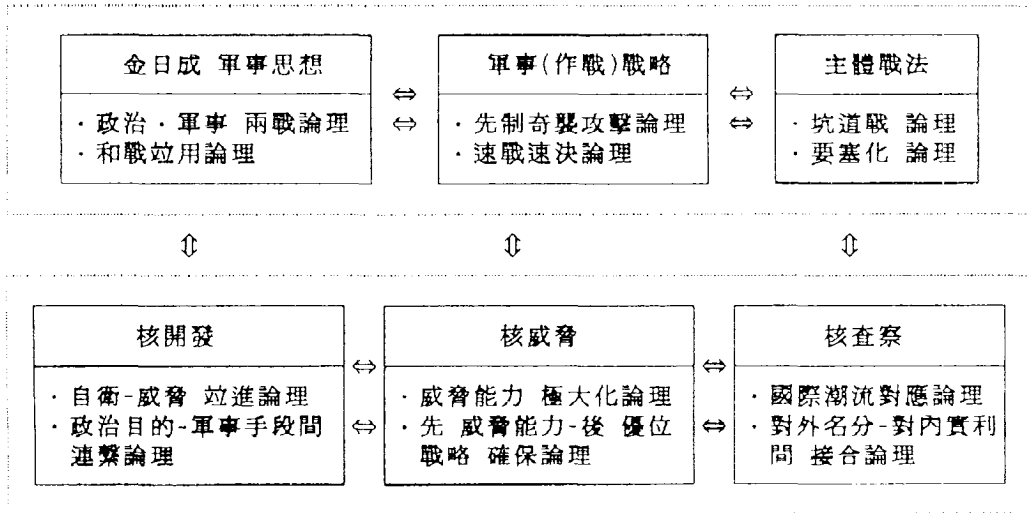
17) 宋英仙, "北韓의 核開發: 眞相과 속셈," 『月刊 新東亞』, 東亞日報社 (1990年 9月 號) 참조.

18) 그러나 이것은 「政治 7-軍事 3의 間接戰略思想」이라는 전통적 共產主義 戰爭觀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다.

19) 북한은 奇襲攻擊이 原子彈 보다도 더 큰 위력이 있다는 意味를 부여하고 있다.

인과 더불어 그 속에서 엄연히 전제되고 있는 北韓의 政治-軍事戰略이라는 결정구조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다음의 <그림-1>에서와 같이 整理·圖式化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그림-1 > 北韓의 政治-軍事戰略과 核戰略間的 論理構造



이미 잘 알려진 바대로 현재 막대한 핵관련 전문인력과 核爆彈 雷管試驗場을 보유하고 1983년부터 현재까지 70-80여회의 고폭실험을 실시해 왔으며, 이미 구룡강으로 둘러싸인 요지에 原子爐·核燃料 재처리시설·濃縮核 燃料施設·연구실험실·직원주택 등이 노출된 상황은 核能力의 가시적 필요조건이 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1985년에 착공된 재처리공장은 약 1993년 완공이 예상되고 있으며, 3기 原子爐까지 가동시에는 연간 18-50Kg의 플루토늄 생산이 가능하고, 1987년 이후 핵부발 수단인 蘇聯제 스커드(SKUD) 미사일 자체생산과 그것의 휴전선 부근에 배치가 예상되고 있다.

그러므로 전반적인 여건을 면밀히 고려해 본다면, 재처리 및 재처리시설은 향후 1-2년 이내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1992-1993년에, 그리고 核保有는 1993년 전후가 될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sup>20)</sup>

20) 물론, 여기에 대한 推定値는 몇몇 論者들이나 關聯資料에 따라 약 1-2년의 時差를 보여주고 있는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간의 分析資料와 軍當局의 戰略情報判斷資料에 의거하여 推定한 것임을 밝혀둔다.

核能力의 핵심요소인 原子爐의 자체개발과 재처리공장의 건설에서도 시사받을 수 있듯이, 사실 과거 北韓의 原子力 개발이란 蘇聯의 지원에 의한 것으로서 蘇聯의 對北韓 原子力시설의 관리·통제가 가능하였다.

그런데 問題는 최근의 핵관련 시설에 있어서 北韓이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1993년 경에 완공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재처리공장의 착공·완공이 주는 점은 北韓이 독자적으로 蘇聯의 지원 없이 核製造가 가능하다는 것을 강력히 시사한다는 것이다. 이미 金日成은 北韓을 核保有國으로 부각시킴으로써 국제적 영향력과 지지를 확보하려는 企圖 속에서 核開發을 추진하고 있다는 논거는 일찍부터 제시되어 왔던 것이다.<sup>21)</sup>

北韓이 개발하는 原子爐의 특징을 보면, 우선 그 형태가 콜라볼드형으로서 흑연 감속형이며 그것의 특징으로서는 英國에서 초기에 제조된 구형모델과 동일한 것으로 높은 수준의 기술이 필요한 輕水爐에 비해 비교적 쉽게 제조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는 고가의 수입 濃縮우라늄이 아닌 北韓산 천연우라늄 사용이 가능하고 원료의 자급자족 및 설계도 상위 베이스로 쉽게 입수를 할 수 있고, 특히 건설과 운수관리에는 10여명 이내의 소수 전문가로 취급이 가능하며, 따라서 核燃料 재처리에 의한 생산가능의 플로토늄은 연간 약 10kg이 예상된다고 볼 수 있다.<sup>22)</sup>

물론, 현재 가동하고 있는 소형 原子爐 2기와 더불어 3기 原子爐의 복수가동시에는 연간 약 18-50kg의 플로토늄 생산이 가능하다고 보면, 1994년부터는 대량생산체제의 도입이 충분히 예상되고 있으며 현재의 재처리공장 시설의 전반적인 건설진도에 입각해 보면 향후 1-3년내인 1993년 전후에 核製造가 가능하다는 결론인 것이다.<sup>23)</sup>

21)그 代表的인 것은 다음을 들 수 있다. 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 *Nuclear Proliferation and Safeguards* (New York: Praeger, 1977), p. 100.

22)참고로 이러한 能力規模는 히로시마형 原爆 2-3개의 제조가 가능한 분량으로 판단되고 있다.

23)이러한 판단은 정보판단자료에 의한 것이며, 또한 信憑性 있는 推定資料를 제시한 軍事專門誌에 따르면, 향후 1-3년내에는 核製造가 가능할 것이며 그 시기는 대략 1994년 말에서부터 1995년 초 사이로 豫想되고 있다는 것이다. *Janes Defence Weekly* (1989. 9); 『한겨레新聞』 (1991. 5. 25) 각각 참조.

그런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은 核投發手段의 問題로서,<sup>24)</sup> 이미 北韓은 蘇聯의 스커드(SCUD) 미사일을 자체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에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당연하게도 이 問題는 최근 軍備統制에 관한 논의 속에서도 北韓의 핵투발목적의 스커드 미사일생산에 대응하려는 한국군의 玄武미사일 개발問題와 관련되어 또 다른 차원에서 軍備競爭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있을 정도이다.<sup>25)</sup>

즉, 이것은 이미 1983년에 이집트에서 蘇聯계 스커드 미사일을 도입함으로써 자체모델개발에 착수한 것으로부터 연유되고 있다.<sup>26)</sup> 그러한 결과로 北韓은 核彈의 운반이 가능한 항공기와 9基의 프로그(FROG)-5는 물론, 약 30基의 地對地誘導彈 등 핵투발수단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sup>27)</sup>

그러므로 量産體制로 돌입한 1987년부터는 연간 약 50基의 생산이 가능하고 현재는 54基의 發射臺를 보유하고 있으며,<sup>28)</sup> 특히 北韓은 현재 스커드 B·C型 이외에도 사정거리 1,000km의 D형을 개발하는 중에 있다는 점에서, 그것은 南韓 전역에 걸친 충분한 行動半徑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미 휴전선 부근에 12基, 휴전선 40-50km 반경내에 약 50基가 배치 완료되었다고 하는 설이 있다.<sup>29)</sup>

### 3. '非核地帶化論'의 論理

#### (1) 韓半島와 關聯된 非核地帶論

韓半島에 關聯된 非核地帶論은 최초의 非核地帶안인 1959년의 후르시초프案으로부터 北韓의 非核地帶論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다양한 형태로 제시되고 있다. 어쨌든 韓半島 非核地帶論은 동북아 지역에서 새로운 국제질서기 변형·재편되는 1980년대 이

24) 核投發手段은 당연하게도 核能力의 必須要素로 간주·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근간의 論議는 비교적 制限된 입장에 있다. 특히, 스커드 미사일의 경우에는 核彈頭와 化學彈頭의 장착·투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事實의 증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5) 庾龍源, "玄武 對 스커드(SCUD)", 『月刊 朝鮮』, 朝鮮日報社(1991. 4).

26) 물론, 이와 같은 일련의 推進過程에서 이란의 財政支授과 함께 이집트의 技術支授이 뒤따랐다.

27) 『東亞日報』(1989. 7. 13).

28) 이는 固定型과 移動型을 포함한 규모이다.

29) 이것은 최근의 情報判斷資料(1991. 7)에 의한 것이다.

후로 매우 복잡하게 얽힌 國際的 力學構造 속에서 일정한 진폭과 다양한 반전을 겪어 왔다.<sup>30)</sup>

특히 蘇聯의 고르바초프 등장은 韓半島를 포함한 아시아지역 일대에 걸친 비교적 구체적이라고 알려진 非核地帶案을 제시하는 것을 필두로 하여, 北韓은 韓半島 非核地帶論을 본격적으로 거론하여 왔으며 현재까지 최소한 15회 이상을 제의해 왔다.<sup>31)</sup>

그런데 核擴散禁止條約(核擴散禁止條約)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非核地帶 설립은 중요한 군축조치라는 입장과 그러나 非核地帶 설치는 각 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있다.

특히, 核擴散禁止條約 제4차 評價會議(1990년 9월 4일)에서는 지역내 당사국들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기초한 非核地帶 설치가 중요한 군축조치로서, 非核地帶 설치과정에서 각 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함을 재확인하였다. 이것은 南韓과 美國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30) 다양하게 제시되었던 韓半島 關聯의 非核地帶論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최초의 비핵지대안인 1959년의 후르시초프에 의한 「極東 및 太平洋地帶案」은 이 지역에 대한 平和地域 혹은 비핵지대의 설정을 제안한 것이다.

② 1972년의 알렌 화이트링 교수의 「東北亞 非核地帶案」은 일본의 핵무장화 억제를 노리면서 동경 중심 2,400km 반경 지역내의 核撤收를 말한 것으로서 여기에는 소련과 中國은 논외로 한 채 미국의 核撤收를 주장하였다.

③ 1975년의 윌리엄 커닝햄의 「韓半島 非核地帶案」은 미·중·소 3개국간 또는 미·소·중·일·남·북 7개국간 합의에 의한 韓半島 비핵지대 설치안으로서, 한반도의 非核地帶化를 전제로 삼은 일본 核武裝의 사전 저지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었으나, 韓國인 미·중·소와 기타 강대국의 위치나 역할이 불투명하게 제시되었다.

④ 물론 헬퍼린의 「韓半島 非核地帶案」은 남북간 상호 무력불사용에 합의한 후 한반도 非核地帶 設定條約을 체결하며, 미·일·중·소 4개국이 공동 또는 별개로 조약 존중의 약속과 비핵지대의 범위를 韓半島에 한정하고 주변 강대국들간에 구체적인 보장을 모색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나, 韓半島의 特殊狀況과 미·소의 세계전략구도에서의 지나친 낙관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⑤ 마에다 하야시의 「韓半島 平和地帶案」은 남북간 핵무기·화학무기·기타 대량 파괴무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平和條約으로 미·소·중·일 4개국의 보장과 일본의 '非核 3原則'의 준수를 선언하고 이를 남북한·미·소·중의 승인과 유엔이 실천에 요구되는 措置의 강구 등을 主要内容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韓半島가 주변강대국들의 軍事 過密地域이라는 사실과 南北韓의 역할에 대한 지나친 樂觀論을 펼쳤다는 지적이 있다. 『코평』(1979년 4월호); Pacific Community, 第3卷 2號(1972).

31) 즉, 고르바초프는 미·소의 핵병력상태가 오래 전부터 「相互相滅」을 보장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 있음을 깨닫고, 불필요하게 남아도는 양국의 剩餘核戰力을 합리적으로 감축하기 위해서 美國과의 군축회담에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INF의 성공 또한 美國과의 핵경쟁에서 「合理的 充分性」을 추구하려는 고르바초프의 새로운 核戰略이 적용된 결과였다는 것이다. 李昊宰, 앞의 論文, 301面.



蘇聯의 韓半島 非核地帶論은 꽤나 긴 경과과정을 지니고 있다. 최초의 제안은 후르시초프의 극동 및 모든 태평양 지역에 대한 평화지역 또는 非核地帶 설치안 제안(1959년)이었으며, 1960-1970년대는 軍備競爭의 군사대결 분위기로 별다른 진전은 없었으나, 1980년대는 급변하는 國際核査察의 변동구조 속에서 동북아시아 非核地帶論이 크게 거론되었다.

이것은 앞서 말한 고르바초프 등장 이후로 더욱 현저해졌는데, 그의 韓半島 非核地帶化 주장의 내용은 1986년 7월 28일의 「블라디보스톡 宣言」에서 “北韓의 韓半島 非核 平和地帶 創設提議는 韓半島 平和政策에 기여한다”라고 하면서 아·태지역의 核武器 擴散禁止를 역설하였다.

이어 그해 말인 11월의 인도방문시에도 韓半島 非核地帶案을 구체적으로 제의하였는데 그 핵심내용을 보면, ①아시아 核保有國의 핵선제 사용을 포기 ②아시아에서 核實驗 禁止 및 모든 군사활동 동결 ③核擴散 禁止條約에 서명 ④우주의 군사화에는 불가담 ⑤아시아 주둔 외국군 기지의 철수 ⑥기존의 군사블럭 해체 등이다.

특히, 그의 정치적 입지가 강화되고 있었던 시기 중인 1986년 9월 16일 「끄라스노야르스크 演說」을 통해 아·태지역에서 蘇聯의 核武器 증강을 중지하고 이에 따라 美國 및 기타 核保有國은 이 지역내에 核武器를 배치하지 말 것을 촉구하였다. 이와 더불어 소·중·일 그리고 南北韓의 해안선이 집중하는 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대치問題 토의를 위한 관련 당사국간의 國際會議 개최를 주장하였다. 그 후 1990년 5월 17일 중·소 정상회담에서 고르바초프는 蘇聯 極東軍 12만명 감축을 일방 선언하면서 美國에 대해서는 여기에 상응한 조치로서 駐韓美軍 4만명 철수를 요구했다.

1987년 10월 美國의 스탠포드대학 부설 연구소와 蘇聯의 과학아카데미 극동연구소가 「韓半島에서 安保強化 및 協力增進을 위한 對策」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일련의 제안을 내어 놓은 바 있다. 주요내용은 ①韓半島의 위협경감을 위해 「스톡홀름 현장」에 명시된 신뢰구축방안계획에 근거를 두고, 비무장지대와 그 인접지역에 軍事對決을 제한·경감시킬 수 있는 조치의 실시 ②韓半島의 안보 및 평화를 위한 核武器 問題는 반드시 논의되어야 하고, 南北間 核武器 협정에는 쌍방 모두의 核非配置에 대한 명문화 ③韓半島를 위요한 모든 핵국들의 南北韓간의 핵협정 존중 및 보장 등이다.<sup>32)</sup>

32) Joint Proposals of International Strategic Institute at Stanford, Stanford Univ. and Institute of Far Eastern Studies, Academy of Sciences of the USSR, NUB (1988. 11), p. 189.

최근 1991년 2월 23일 蘇聯科學院 極東研究所長인 미하일 티타렌코는 그의 訪韓 중의 기자회견에서 韓半島 非核地帶化가 동북아의 평화정착을 위한 蘇聯 정부의 기본 방침이며 韓半島 非核地帶化는 그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한 바 있다.

## (2) 北韓의 韓半島 非核地帶化論

### 1) 論議의 背景

北韓의 「韓半島 非核地帶化論」은 駐韓美軍의 철수론에 대한 한국측의 대응과정에서부터 파급되는 問題의 상황을 안고 있다. 즉, 1975년 6월 13일 美國을 방문한 박정희 대통령의 核武器 개발가능성 발언에 대하여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슬레진저는 駐韓美軍의 戰術核武器가 배치되었음을 시인하면서, 동시에 北韓의 남침시에 韓半島에서의 戰術核武器의 사용가능성을 시사했다.<sup>33)</sup>

美國은 한국에 대한 '核雨傘'의 확고부동성을 일단 천명하는 선에서 일단락되었으나, 얼마후 한국내의 核論議가 다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즉, 1977년 6월 13일 현대정치연구회 세미나에서 있었던 최초의 핵관계 논문인 李昊宰 교수의 "自主國防과 自主外交의 方向"의 발표에 이어 "核開發의 啓明된 論議"라는 新聞社說<sup>34)</sup>과 국회내에서의 駐韓美軍철수에 대한 적극적 자주국방의 정책논리가 강구·제한되는 등 복잡한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논의는 진척되지 못했다.<sup>35)</sup>

그러나 박대통령의 核武器 개발가능성 사건 이후 1년도 채 안된 시기에 北韓은

33) 이것은 당시 朴大統領이 Washington Post紙와의 記者會見을 통해서, '韓國의 平和構造를 위한 4대 周邊強國의 平和保障論은 비현실적인 것'이라는 批判을 통해서 최초로 韓半島의 核論議가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에 기인하고 있다. 당시의 狀況에 대한 배경을 위해서는 다음을 참조한 것. 『東亞日報』(1975, 6. 13); 『朝鮮日報』(1975, 6. 13); 宋英仙, "韓半島의 核," 『月刊 新東亞』, 東亞日報社(1991年 6月號), 215面.

34) 『서울新聞』(1977, 6. 25).

35) 다만, 李昊宰 교수가 제기한 바 있던 假定的 狀況下에서의 ①韓國의 核選擇이 동북아와 국제질서에 미치는 影響問題 ②남북상호간 小規模의 '核均衡'이 기존의 核國과 같이 戰爭抑制效果를 나타낼 수 있겠는가의 問題 ③核武裝時의 適正規模(一發原爆國)와 假想敵國(북한 및 중국·소련 등)의 設定問題 ④核開發에 따르는 경비부담과 核發展과의 相關된 問題 ⑤核論議의 개진과 核(非核)選擇에 대한 의지표명의 충분한 政策的 考慮問題 등은 최근의 事案에 중요한 示唆를 주고 있다. 李昊宰, 『核의 世界와 韓國核政策』(서울: 法文社, 1987), 256-257面 참조.

「東北亞 非核地帶化案」을 내외에 거론하기 시작했으며, 그것은 바로 당시 한국의 독자적인 核開發 조짐에 제동을 걸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더욱이 그것은 南北韓간 치열한 군사적 대결구조로 점철되던 시기인 1975년 8월에 있었던 北韓의 비동맹 가입을 계기로 강력한 內外反響을 일으켰던 것이다.

이듬해인 1976년 8월 12일에는 비동맹의 반핵운동에 고무되어 非核地帶 問題를 비공식으로 제기하게 되는데, 이 때 동경에서 개최된 「韓國問題 緊急 國際會議」에서 “韓半島의 非核地帶화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요지의 보고문을 발표하면서, 동시에 반미·반제투쟁과 연계하여 駐韓美軍 問題를 부각시켰다.

1978년 12월에는 日本 사회당 대표인 시모다히라·쇼이치의 평양방문시 당시 北韓 노동당 국제부장인 김영남과의 회담에서 東北亞 非核地帶 설치에 대한 의견일치를 나누었으며, 이듬해인 1979년 7월 18일 北韓 내부에서는 당 중앙위원회와 중앙인민위원회간의 연합회의에서 「東北亞 및 全世界 非核地帶化」를 결의하였다. 이같은 내용은 1979년 9월 제6차 비동맹권(쿠바·아바나)에서 반복적으로 주장되었다.

이어 1980년 10월 10일 北韓은 제6차 당대회에서 고려민주연방제를 주장하면서 역시 韓半島 非核地帶화 問題를 공식적으로 거론하였으며, 1981년 3월 14일 日本 사회당과 동북아 非核地帶 設置問題에 대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즉, 그것의 주요내용은 첫째, 동북아지역에서의 核武器 철거와 파괴, 개발·반입금지 둘째, 외국의 군사기지와 군대철수 셋째, 동북아 군사블럭 해체 및 군사동맹 금지 넷째, 동북아 非核地帶의 범위는 韓半島와 日本 및 그 주변해역으로 설정하는 것 등이었다.

그러다가 1986년 6월에는 조선반도 非核地帶 및 평화지대의 창설과 관련한 北韓·南韓·美國 정부당국간의 협상용의(3자 회담)를 표명하였으며, 그 해 9월 6일부터 8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韓半島 非核平和를 위한 國際會議」의 개최를 기해서 駐韓美軍 철수問題와 韓半島 非核地帶의 設置問題를 중점 거론하게 되면서, 1987년 7월 13일 외교부 성명을 통해 韓半島 非核地帶를 위한 유관국가들의 실천대책의 강구를 촉구하기에 이른다.

특히 1987년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亞·太地域 非核平和와 反帝連帶性을 위한 國際會議」에서 金日成 주석은 韓半島 非核平和지대의 창설을 제의하게

36) 『讀買新聞』(1978. 12. 21).

되었으며, 이듬해인 1988년 11월 16일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포괄적인 평화방안」을 통해서 「駐韓美軍 核 2段階 撤收案」을 제의하였다.<sup>37)</sup>

이로써 北韓의 「東北亞 非核地帶化案」은 1988년 7월 「韓半島 非核地帶化論」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러한 주장은 北韓의 核燃料제처리 시설공장이 착공된 시기(1988년 8월 이전)와 비슷한 시기에 제기되었다는 점이 주목되고 있다.<sup>38)</sup>

그 이후로도 北韓의 韓半島 非核地帶化論은 계속 주장되었는데, 1989년 11월의 韓半島 非核地帶化를 위한 3자회담의 제의가 北韓 外交部 성명을 통해 있었으며, 1990년 3월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군축방안에서 조선반도의 非核地帶化를 다시 주장하면서, 그 해 8월 중에 열린 「核擴散禁止條約」 제4차 평가회담에서 「美國의 核先制 不使用保障」(NSA)을 선결조건으로 제시하였다.<sup>39)</sup>

## 2) 論 理

1970년대 말까지 北韓의 非核地帶化 주장은 주로 정치선전적 차원에서 비동맹국을 중심으로 동북아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非核地帶化를 제기했음에 비해서, 1980년대 중반 이후로는 미·소간 군축협상의 진전과 고르바초프의 「全亞世亞安保構想」 및 블라디보스톡선언과 때를 같이 하여 소위 「韓半島 非核地帶化論」으로 그 범위를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결국, 이러한 北韓의 「韓半島 非核地帶化論」은 모두 네가지의 특징이 있다는 것이다.<sup>40)</sup> 첫째로는 北韓은 駐韓美軍이 核武器를 보유하고 있다는 기본전제하에서 韓半島에서의 핵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駐韓美軍과 核武器의 철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며, 둘째로는 韓半島에서의 핵전쟁 위험성과 긴장조성의 책임이 南韓과 美國側에 있다고 인식시킴으로서 국제사회에서 반한·반미감정을 고조시키려고 한다는 것이다.

37) 즉, 第1段階는 1989년 말까지 북위 35도 30분 以北地域에 배치된 核武器를 철수하고, 第2段階는 1990년 말까지 그 以南地域의 核武器를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38) 宋英仙, 앞의 論文, 216面.

39) Tae-woo Kim, "Nuclear Proliferation: Long-term Prospect and Strategy on the Basis of a Realist Explanation of Indian Case" (Ph. D. Diss. Statw Univ. of New York, 1989), pp. 188-189 참조.

40) 宋英仙, 앞의 論文, 216面 참조.

셋째, 駐韓美軍 보유의 핵철폐에 대비한 한국의 독자적인 核開發可能性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넷째로는 蘇聯의 對亞政策과 핵전략에 동조하며 이를 적극 지지함으로써 북·소관계를 더욱 긴밀히 하고 이로써 戰略的 連繫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일련의 주장 속에서 제기되었던 「韓半島 非核地帶化論」의 논리를 분석해 보면, 우선 韓半島에서의 核武器 및 그 운반수단의 생산·반입·사용·위험의 금지를 핵심으로 하여 반입된 核武器의 완전철폐, 核武器 사용에 관한 기존 작전계획 취소의 공약천명 요구, 核武器를 적재한 외국항공기나 함선의 域內出入·봉과 금지, 核武器의 韓半島 통과불허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도출해 볼 수 있다.

아울러 日本 영토의 핵출격기지화 및 보급기지화를 단호히 거부하고, 주변 核國들의 韓半島에 대한 核威脅과 주변지역에서의 핵전쟁을 금지하면서, 核武器의 즉각 철거를 위한 南北韓間의 공동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北韓의 대외성 발언의 논리는 다음과 같은 여러 형태로 다양하게 표명되고 있다. 우선 北韓은 어떠한 核武器 생산계획도 없으며 韓半島에서 어떠한 核武器 생산이나 배치도 반대한다는 수차례의 발언을 들 수 있다.<sup>41)</sup> 또한 北韓이 核擴散禁止條約條約상의 의무이행을 위해서는 駐韓美軍 核武器 철수라는 여건마련이 필요하다는 1989년 9월 國際原子力機構의 총회내용이 있고, 더우기 「미국의 핵선제 불사용보장」과 「駐韓美軍의 核撤收」 등을 韓半島 非核地帶화의 선결조건으로 제시한 최근 여러 차례의 핵관련 國際會議를 볼 수 있다.

더우기 최근에는 北韓의 核安全協定 가입을 통한 北韓의 核施設과 駐韓美軍의 核武器를 동시에 사찰해야 한다는 입장까지 내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北韓의 「韓半島 非核地帶化論」의 논리는 정치전략적 의도가 짙고, 특히 核保有 여부의 向背에 따른 事案의 중대성과 복잡성이 얽혀 있다.

41) 즉, 1989년 10월 26일 朝總委의 발표내용과 1990년 9월 23일 「金日成-가네마루間會談」 때의 발언내용이 여기에 해당되고 있다.

#### 4. 北韓의 核査察 拒否論理

##### (1) 狀 況

원래 北韓이 國際原子力機構에 가입한 것은 1974년 9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美國의 중용에 의한 蘇聯의 압력으로 「核擴散禁止條約」에는 1985년 12월에 가입했다.<sup>42)</sup>

원래 「核擴散禁止條約」을 체결한 국가는 6개월내에 國際原子力機構와 「全面安全協定」(Fullscope Safeguards)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해야 하고, 협상개시후 18개월 이내에 이 협정을 체결하도록 義務化되어 있다. 더우기 「核擴散禁止條約」에 가입한 국가는 24개월 이내에 國際原子力機構와 核安全協定을 체결하도록 會員國간의 의무조항(제3조 1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核安全協定の 체결은 핵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檢證開放인 곧 核査察을 의미한다.

이러한 「全面安全協定」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분적 감시를 받게 되지만,<sup>43)</sup> 이 협정을 체결할 경우에는 자체생산이나 해외도입의 여부에 관계 없이 모든 핵관련 시설 및 장비 일체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와 함께 전면적인 核査察 및 核監視를 받게 된다.

그런데도 「核擴散禁止條約」에 가입한 北韓은 약 5년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核安全協定締結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논의된 최근 오스트레일리아 캔버라 국립대의 앤드류 맥 교수의 '北韓核問題의 본질은 北韓이 우려하는 駐韓美軍의 核武器라는 부담'에 대한 理解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sup>44)</sup>

최근 빈 외신종합에 따른 국내의 한 消息通에 의하면,<sup>45)</sup> 國際原子力機構 이사회는 이미 9월 12일자로 北韓과 합의된 核安全協定の 표준문안을 공식 승인한 데 이어, 北韓에 대한 협정의 早期署名 및 협정의무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

42) 물론, 당시 蘇聯으로부터 大型 原子爐 4基를 제공하는 조건이 前提되어 있었다.

43) 즉, 自體生産을 제외한 國際原子力機構를 통해 해외에서 도입한 核物質과 核裝備에 대해서만 한정하여 監視를 받게 된다.

44) 『韓國日報』(1991. 9. 10).

45) 『한겨레新聞』(1991. 9. 14).

다.<sup>46</sup> 그런데 北韓의 오창림 외교부 본부대사는 이날 조기사명을 촉구한 결의안이 채택된 데 대해서, 北韓이 그동안 核査察에 대한 '前向的 態度'를 보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強壓的 手段'을 동원하는 것은 유감이라면서 강한 반발을 보였다는 것이다.<sup>47</sup>

더우기 도쿄에서 수신된 北韓의 『中央通信』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sup>48</sup> 北韓은 15일 현재 국제적 압력이 없어진다면 核安全協定 署名問題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北韓은 14일자 외교부의 성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국제적 압력을 가하는 것은 우리의 內政에 간섭하는 것이며, 그것은 협정체결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어렵게 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표명했던 것이다.

## 2) 拒否論理

그렇다면 그동안 北韓이 내세웠던 核査察의 拒否論理는 무엇인가? 그것이 駐韓美軍의 戰術核 撤收論理와 연계될 수 있는 강력한 소지는 없는가?

먼저 그러한 이유로는 國際原子力機構의 감시내용이 첫째, 「核擴散禁止條約」의 범주를 벗어난다는 것 둘째, 韓半島 非核地帶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核安全措施協定을 체결할 수는 없다는 것 셋째, 核武器의 철거와 한·미합동의 팀스피리트 훈련의 중지 및 核武器 保有國의 태도에 따라 北韓이 체결한 核安全協定이 정지할 수도 있다는 전제조건을 協定書에 명시할 경우에만 체결한다는 것이다.<sup>49</sup>

언필칭 이러한 논리는 1990년 9월 4일 「核擴散禁止條約」의 제4차 評價會議에서도 사실상 반복되었으며,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그것은 그동안 南北韓 軍備統制의 선

46) 따라서 핵안전협정의 체결을 위한 준비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되었으며 북한에 대한 현장사찰이 실시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협정서명·비준과 함께 협정체결 이후의 사찰대상이 되는 핵물질과 핵시설의 위치·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제출하도록 의무화된 부속 약정서의 체결이 수행되어야만 한다.

47) 그는 이어 북한의 核安全協定의 서명시기에 대해서, "미국이 韓半島에서 핵무기를 철수하지 않는 한 협정체결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현재로서는 체결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했다. 더우기 協定署名 및 核査察의 이행노력을 촉구한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라고 밝히면서도, "그러나 그것은 美國의 태도에 달려있다"라고 말함으로써 協定署名과 한반도의 非核化 論議를 연계시켜 보겠다는 뜻을 강력히 시사했다.

48) 『朝鮮日報』(1991. 9. 17); 『한겨레新聞』(1991. 9. 17) 각각 참조.

49) 이러한 論據는 1990년 2월 國際原子力機構 理事會에서 北韓代表團이 나온 會談의 發言內容에 근거한 것이다.

행조건으로 제시되어 왔던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전복하려는듯이 일단 北韓은 국제核査察의 수락과 한편으로는 유엔가입의 問題를 제기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9월 18일 오후 3시(한국시간) 南北韓은 제46차 총회를 통해서 마침내 유엔 會員國으로 가입하게 되으나,<sup>50</sup> 北韓의 核査察 問題는 사실상 거부되었으며 또한 한국이 16일 개막된 제35차 총회에서 國際原子力機構의 理事國으로 선임이 확정된 한편 北韓은 이미 13일 理事國 입후보의 뜻을 갑자기 철회했다는 것 등이 問題의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sup>51</sup>

즉, 北韓은 「核擴散禁止條約」에 있어서 국제적 감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입했을 뿐, 그 査察檢證을 거부하고 있는 논리는 결국 核製造·核保有의 은폐에 있다는 사실을 외면할 수 없으며,<sup>52</sup> 사실상 “北韓은 이미 核開發을 완료했을 지 모른다”라는 國際原子力機構의 1987년도 연례보고서의 지적도 전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이미 美國의 핵전문가들에 의해서도 계속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sup>53</sup>

그런데도 얼마전 9월 13일에는 北韓의 外交部 副部長(次官)인 강석주의 美國 켈럽비아대학에서 있었던 “현재의 國際核査察와 韓半島 問題”라는 강연과 더불어 한국유학생과의 질의응답에서 표명된 ‘北韓의 核武器와 化學武器 존재 여부’에 대한 답변에서, “...그것은 남쪽에 가득차 있는데, 우리(北韓)는 있는가 없는가 하는 問題를 가지고 야단들이다...우리에게는 核武器도, 그것을 개발할 능력도 없다...”라고 일축해 버렸던 것이다.<sup>54</sup>

그렇다면 앞서 논의되었듯이, 北韓의 核査察 拒否論理는 고르바초프의 新思考에 의한 정치·군사전략의 일환으로 걸프전 이후 蘇聯의 영향력을 이 지역에서 만회한다는 측면과 北韓의 核武裝 沮止 및 核査察 유도, 주한 미군철수의 촉진과 日本의 제무장 경계 및 동서간 군축협상에서의 주도권 획득과 기본적으로 관련되고 있다는 사실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더욱 더 중요한 사실은 北韓의 核選擇(Nuclear option) 問題가 최선의 정치군사적·경제적 선택, 內部矛盾의 전환·결집메카니즘, 대남·대미협상의 카드화,

50) 『東亞日報』(1991. 9. 17); 『한겨레新聞』(1991. 9. 17) 각각 참조.

51) 『朝鮮日報』(1991. 9. 15); 『한겨레新聞』(1991. 9. 15).

52) 國防部, 『時事安保解說集』, 第89-6號(1989. 8), 112面 참조.

53) 위의 資料, 117面.

54) 『한겨레新聞』(1991. 9. 15).



그리고 國際的 威信高揚 등으로서,<sup>55)</sup> 결국 이것이 戰略的 優位確保를 겨냥하고 있다는 데 논의의 초점을 두어야만 할 것이다.

## 5. 核威脅戰略의 周邊反應

이러한 북한의 핵개발·핵사찰 문제를 둘러싸고 주변강대국들은 복잡한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간추려 보면, 4대 강대국들 중 어느 국가도 북한의 핵무장을 원치 않고 있다. 그것은 모두가 한반도에 대한 자국의 핵정책에 제동 내지는 압박요인으로 작용될 것을 알기 때문이다.<sup>56)</sup>

그러므로 美國은 기본적으로 北韓의 核武裝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특히, 駐韓美軍의 戰術核과 관련된 입장표명으로 부정적 반응을 보일 것이며, 결국 이러한 반대논리는 北韓核이 동북아와 전세계에 미치는 波及效果가 소위 미국의 '核霸權主義'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국과는 사정이 다르지만 蘇聯의 입장도 北韓의 核武裝을 반대하고 있는데, 그것은 북한의 핵개발이 소련의 이 지역에서 戰略優位를 추구하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며, 다만 非核地帶化論은 특정조건에서 고려하고 있다.

물론, 중국 또한 北韓의 核武裝은 반대하면서도 韓半島의 非核地帶論은 지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북한의 핵개발이 동북아 지역의 핵擴散을 초래하면서 역시 자국의 立地上昇에 대한 불안요인으로 보기 때문이다. 특히, 日本은 이를 심각한 生存權的 차원에서 核威脅을 감지할 것이며, 이를 이유로 자체 核武裝을 正當化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55) 國防政策分析官과의 對談資料(1991, 8).

56) 이 문제에 관한 충분한 論議는 뒤의 地域體制的 次元에서의 各국들의 反應論理에서 다시 상세하게 취급할 것이다.

#### IV. 北韓의 核武裝이 韓半島 平和構造에 미치는 影響分析

##### 1. 世界體制的 次元

北韓의 核武裝과 非核地帶化論은 최근의 新냉전체제 속에서도 심각한 미·소간의 戰略的 優位占有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南北韓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同盟體制間的 關係를 유지·변화시키는 결정상황에도 모종의 영향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충분히 예측되고 있다.

물론, 과거의 世界體制란 미·소간의 兩極體制(bilateral system)로 어느 정도 설명될 수 있었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 급격히 탈바꿈되는 脫冷戰構造는 동북아 지역이나 韓半島에서의 미·소간 對立構圖에도 변화를 주고 있다.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미소대결의 완화가 전략무기의 軍備統制나 군축으로 可視化되는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이며, 특히 그것이 향후 韓半島의 평화와 통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관한 論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sup>1)</sup>

그렇다면, 이번 北韓의 核開發·核査察은 世界體制에 어떠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는가?

지난 걸프전에서 보여준 미소간의 對應態도와 얼마전의 '3日 天下'로 막을 내린 蘇聯의 군사쿠테타에서도 충분히 엿볼 수 있듯이, 급기야 蘇聯의 정치경제적 문제와 과제에서 비롯된 이른바 '新思考'에 의한 대외정책 표방, 국제무대에서의 中國의 비중확대, 경제대국 日本의 軍事大國化 조짐 등은 현존하는 세계질서는 물론, 극동에서의 질서재편을 예고하는 충분한 조건들이 되고 있다.<sup>2)</sup>

蘇聯의 개혁·개방정책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면서, 한편 美國은 걸프전에서 만회한 새로운 '美國主權의 平和秩序'(Pax-Americana)는 고도의 國家利益과 정치적 계

1) 이와 같은 근간의 論議들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金洛中外, "韓半島 軍縮: 긴급 대토론", 『월간 中央』, 中央日報社 (1990. 2); 李相禹, "南北韓 軍事葛藤과 軍縮", 『韓國政治學會報』, 제14집 (1980); 李昊宰(編), 『韓半島 平和論』(서울: 法文社, 1989); 李昊宰 外, 『韓國人の 平和意識과 統一觀』(서울: 法文社, 1989); John H. Barton, *The Politics of Peace* (Stanford: Stanford Univ. Press, 1981); P.S. Brown, *Purpose, Achievements, and Priorities of Arms Control* (CA: 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 1987); SPIRI, *World Armament and Disarmament: SPIRI Yearbook* (Oxford: Oxford Univ. Press, Yearly).

산 아래 펼쳐지는 최근의 세계질서는 核國과 非核國간의 대결구도와 核選擇과 비核選擇간의 미묘한 葛藤構造를 연출하고 있는 전환의 국면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미·소관계와 세계문제들은 결과적으로 韓半島에 직·간접적으로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우며,<sup>2)</sup> 과거의 冷戰構造가 오늘의 和解構造로의 이행가능성과 더불어 또 다시 냉혹한 國家利益간의 충돌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는 점을 외면하기 힘들다.

그렇다면, 北韓의 核開發과 核査察은 世界體制的 觀點에서 볼 때, 어떠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는가? 물론, 그것은 미·소간의 關係設定과 더불어 국제기구를 통한 南北韓間的 비중고려 및 주변 강대국들의 利害關聯과 항배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韓國問題의 韓國化'라는 문제해결의 道具가 과연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는 한국을 둘러싼 地域體制的 차원에서 미묘하게 엇갈리는 4대 강국들과 南北韓 당사자가 어떠한 절충을 시도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다.<sup>4)</sup> 물론, 최종적으로는 南北韓 두 當事者의 선택이 남아 있다.

## 2. 地域體制的 次元

극동·아태지역의 勢力構圖에 미치는 영향은 세계체제적 차원의 그것이 응축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며, 이미 변모되고 있는 南方 및 北方의 '三角關係'(the Triangular Structure)에 심각한 변화를 줄 것도 충분히 예상되고 있다.

특히, 北韓의 核威脅 戰略에 대한 이 지역에 利害關係를 교차시키고 있는 周邊反應은 곧 地域體制的 力學關係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간주될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은 美國·蘇聯·中國·日本의 반응행태와 政策標榜으로 점차 可視化될 수 있을 것이다.

2) 崔秉鶴, "소련의 體制變動을 보는 價値認識," 『忠北大新聞』(1991. 4. 10); 崔秉鶴, "걸프전과 世界秩序의 改編: '아랍민족주의'와 '팍스 아메리카나'간의 衝突이라는 解釋의 再解釋", 『敎員大新聞』(1991. 4. 17) 각각 참조.

3) 安秉俊, 『國際環境의 변화와 民族統一』(서울: 正晉社, 1986), 5面.

4) 이것은 무엇보다도 韓半島의 '戰爭과 平和의 二重構造'를 주시하고 있는 주변국의 利害關係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로 직충할 것이며, 따라서 韓半島의 統一問題까지도 주변국들의 입장표명을 포함하는 경우도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 (1) 美國의 立場

인래 駐韓美軍의 戰術核과 北韓의 核開發에 대한 남한의 對應論理에 관한 美國의 立場은 기본적으로 核에 관하여 「確認도 否認도 않는 政策」(NCND)으로서, 北韓의 核武裝을 반대하면서 駐韓美軍의 核問題와 관련된 韓半島의 核政策에는 부심할 것이 예상되며, 불원간의 명확한 입장표명이 개선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더우기 美國의 立場은 「核先制 不使用保障」(NCA: Negative Security Assurance)이라는 기본논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풀이될 수 있다. 특히, 이점은 「核先制 不使用保障」의 천명에 있어서 「核擴散禁止條約」에 가입한 비核保有國이 美國의 영토 또는 군대나 그 동맹국에 대한 공격을 하지 않는 한 美國은 “非核國에 核武器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1978년 이래 수시로 대외선언을 해왔던 사실과 맥락을 함께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南北韓 동시 核査察과 관련하여 기존의 「確認도 否認도 하지 않는 政策」의 변경가능성도 사실상 배제되지는 않고 있다. 그것은 北韓의 核開發이 명백히 입증되고 核武器 생산이 임박한 것으로 판단될 때, 그리고 北韓이 國際原子力機構의 核安全協定에 서명하고 국제核査察을 실질적으로 수용할 때라는 전제조건이 붙어 있는 상태인 것이다.

이렇게 北韓의 核武裝에 반대하는 美國의 立場은 北韓의 核武裝이 한국과 日本 및 전세계적인 파급효과의 초래로 소위 걸프전 이후 내세우고 있는 「팍스 아메리카나」(Pax-Americana)의 추구에 중대한 障礙要素로 작용할 것이라는 사실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 美國은 北韓의 國際原子力機構 核安全協定체결을 북·미 관계개선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던 것이다.

그러므로 美國의 立場에서 개연성 높게 개선되어 온 「韓半島 非核地帶論」에 대한 美國의 立場논리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은 대략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논리로 설명될 수 있다.<sup>5)</sup>

첫째, 美國은 기존의 지역 및 國際安保秩序를 저해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지역별로 非核地帶化를 지지 또는 반대한다는 것이다. 둘째, 韓半島·유럽·동남아 지역에서는 非核地帶化 지역의 창설로 인하여 기존의 安保秩序가 위태로워 질 수 있으므로

5) 國防情報分析官과의 對談資料 (1991. 7).

非核地帶化에 가능한 반대한다는 것이다. 셋째, 그러나 지역내 국가들의 核武器 획득방지와 기존의 核國에 의한 核配置를 금지함으로써 安保秩序가 제고될 수 있는 지역에서는 非核地帶화를 지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sup>6)</sup>

그러므로 이와 같은 반대논리를 전제로 삼아 본다면, 향후 韓半島의 非核地帶化에 대한 美國의 반응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실로 추론할 수 있다.<sup>7)</sup>

첫째, 韓半島의 非核地帶化 창설은 기존의 安保秩序를 저해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이며 둘째, 韓半島 非核地帶化 방안은 충분한 반대급부 없이 기존의 安保秩序와 核抑制力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sup>8)</sup> 셋째, 韓半島가 蘇聯·中國의 核武器 사정권내에 존재하고 있고 따라서 韓半島에 非核地帶를 만드는 일은 외부로부터 核威脅이 없는 南美國家와는 실상이 다르다는 것이다.<sup>9)</sup>

그리고 넷째, 南北韓은 공히 「核擴散禁止條約」의 加入國으로서 남한은 核安全協定을 이미 체결하였으며 北韓은 國際原子力機構와의 核安全協定을 체결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으므로, 韓半島 非核地帶化는 非核擴散體制에 대한 어떠한 강화조치로도 볼 수는 없다는 것이며 다섯째, 北韓이 非核地帶 설정에 필요한 어떠한 檢證 및 查察方案도 가지고 있지 못하며, 따라서 非核地帶의 설정으로 北韓의 核開發·核保有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논리로부터 美國이 실질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非核地帶化의 요건은 무엇이겠는가? 즉, 이러한 論議 속에 깔린 北韓에 대한 美國의 核對應 論理와 나아가서는 韓半島에 대한 美國의 核政策 論理를 추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sup>10)</sup>

그것은 첫째, 非核地帶化의 창설은 해당 지역내의 국가에 의해 주도되어야 하고,

6) 이러한 지적은 특히 기존의 政治·軍事秩序를 통해서 구가되고 있는 미국의 「安保利益」(security interest)에 그 기반을 두고 설명되는 일반적인 경향을 가진다. 따라서 세번째의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지역으로는 南美·남아시아 대륙·아프리카·中東地域이 될 수 있다는 것이며, 韓半島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준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7) 위의 資料 (1991. 7).

8) 이점에 관해서는 최근 1991년 3월 6일 美國 솔로몬 次官補의 下院證言의 내용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

9) 이러한 견해는 韓半島 非核地帶化의 실현이 현실적으로 모종의 난관에 봉착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것은 사실상 不可能한 것이라는 1991년 4월 9일 그레그 주한 美大使의 發言內容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0) 즉, 그것은 일단 美國側이 현실적인 측면을 면밀히 考慮하여 제시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要件들을 통해서 論理的으로 추론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할 것이다. 위의 資料 (1991. 7) 참조.

가능한 모든 인접국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非核地帶化에 따른 타당한 檢證裝置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非核地帶化의 창설로 기존의 地域·國際安保秩序가 저해되지 않아야 하며, 현실적으로 참가국들의 核開發·核保有가 실효성 있게 저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非核地帶化의 창설로 인하여 국제법상 인정된 權利<sup>11)</sup>의 제한이 초래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며, 非核地帶化 설치가 국제법상 당사국의 既得權에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서 상대국의 入港 및 通港을 포함한 通過權을 부여하거나 부인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sup>12)</sup>

이러한 論議를 종합해 보면, 美國의 입장이란 韓半島에서의 非核地帶化를 현실적으로 거부하고 있으며, 北韓의 核開發에 대한 '刺戟者的 責任'을 현실적으로 풀기 위하여 급격한 '核北煤論'의 감행이나 또는 섣부른 '駐韓美軍核撤收論'을 시도할 것이라는 가능성은 구체화되기 어렵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美國의 행동폭은 그다지 넓다고만 볼 수 없게 될 것이며, 아직까지 매듭되지 않은 北韓의 向배와 또 다른 外因的 變數<sup>13)</sup>들의 영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을 배제할 상황은 아닌 것이다.

그러한 징표가 지난 9월 3일 國防部 제1회의실에서 여·야 국회의원과 차관급 이상의 政府公職者가 참석하여 열린 北韓의 核開發에 대한 한·미양국의 共同對處方案의 모색과정에서 美中央情報局(CIA)의 合同政勢報告會議기 비공개로 열렸던 것과도 전혀 무관하지 않다.<sup>14)</sup>

11) 즉, 해상 및 공중통행권, 공해 및 다도해로상 통행의 자유, 국제항해상 사용되고 있는 해협통과의 자유, 그리고 영해 및 다도해상의 無害通行權 등이 현실적으로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12) 특히, 마지막 세번째의 問題는 美國側의 입장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非核地帶化를 원하는 當事國의 입장에서 미국에 대한 安全保證을 위한 장치라는 의미가 현실적으로 부여되어 있다고 分析될 수 있다.

13) 예컨대, 필리핀 軍事基地協定이 최근 上院에서 부결됨에 따라 亞太地域에서 새로운 代替基地를 모색하기에 부심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韓國과 日本도 포함되어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키히노 대통령은 9월 16일 '美軍基地 賃貸期間延長協定比準案'에 관한 上院의 否決에도 불구하고 이를 國民投票에 붙일 것을 준비하고 있는 중에 18일 필리핀 政府當局과의 협의에서 1년 더 기지사용임대를 사실상 확정했다. 향후 이에 따른 미국의 입장은 또 다른 대안을 모색하려 할 것이며, 이것은 향후 한반도의 안보상황에 유려한 影響變數가 될 것은 틀림 없다고 보여지고 있다. 또한 '東南亞國家聯合'(Asian)도 미군기지의 설치에 반발하고 있으며, 특히 타이 政府는 지난 9월 10일자로 공식 反對立場을 표명했다. 『한겨레 新聞』(1991. 9. 12): 『中部每日』(1991. 9. 17): 『朝鮮日報』(1991. 9. 18).

14) 『朝鮮日報』(1991. 9. 4).

## (2) 蘇聯의 立場

蘇聯의 立場은 北韓의 核武裝 반대와 동시에 韓半島 非核地帶化를 통해서 이 지역에서의 戰略的 優位를 추구하는 데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sup>15)</sup>

그런 까닭에 蘇聯은 「核擴散禁止條約」의 수탁국으로서 北韓의 核開發 저지노력에 동참하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즉, 이것은 北韓의 核開發이 核擴散防止에 배치될 뿐 아니라 蘇聯의 亞·太政策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미 蘇聯은 北韓이 國際原子力機構의 核査察을 수용할 때까지 원자력발전소 건설지원을 전면적으로 중지할 것을 표명한 바 있다.

즉, 北韓의 核武裝은 남한과 日本의 核武裝 파급효과 내지는 특히 日本의 재무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蘇聯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蘇聯의 對北韓 영향력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음도 시인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蘇聯의 韓半島 非核地帶化 논리가 고르바초프의 新思考에 의한 소위 정치·軍事戰略의 일환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면서 집중적으로 분석·論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sup>16)</sup>

첫째, 蘇聯의 개혁·개방에 따른 세계전략상 '合理的 充分性 戰略'에 의한 극동 軍事力의 감축으로 평화공세 및 協商利點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며,<sup>17)</sup> 기존의 동북아 군사블럭 해체와 헬싱키형 아시아안보회의 결성·추진 등 아시아 지역의 新秩序 구축과 군사적 影響力의 확대로 극동의 安保이니셔티브 획득을 위한 시도로 분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한·소수교를 비롯한 한·소간 관계개선과는 별개로 北·蘇間 군사적 利害關係가 일치되는 부분에서는 北韓을 경유한 한국에 대한 상대적 건

15)더우기 고르바초프 등장 이후 北·蘇密着은 소련의 對亞政策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블라디보스톡(Vladivostok)宣言」 등을 통해 한반도의 非核問題를 거론하고 있다는 데 근거한다. 武貞秀士, 「韓半島의 軍縮·軍備管理」, 『共產圈研究』(1987. 1), 98面.

16)國防情報分析官과의 對談資料(1991. 7).

17)특히 소련의 고르바초프 등장은 韓半島를 포함한 아시아지역 일대에 걸친 비교적 구체적이라고 알려진 非核地帶案을 제시하는 것을 필두로 하여, 북한은 韓半島 비핵지대론을 본격적으로 擧論하여 왔으며 현재까지 최소한 15회 이상을 제의해 온 것이다. 즉, 고르바초프는 미·소의 核競爭狀況이 오래 전부터 미국과의 核競爭에서 '合理的 充分性'을 추구하고 있다. 李昊宰, 「韓半島의 核論爭과 非核地帶案」, 李昊宰(編), 『韓半島 軍縮論』(서울: 法文社, 1989), 301面 참조

제를 의도하고 있다는 것이다.<sup>18)</sup>

이러한 論議를 전제로 삼는다면, 향후 韓半島에 대한 정치적 측면과 긴밀하게 연계되는 軍事的 側面에서 분석될 수 있는 要點은 다음과 같다.<sup>19)</sup>

첫째, 蘇聯은 사실상 北韓의 核武裝 저지와 함께 核査察의 수용을 유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지역에서의 美軍撤收를 촉진하고, 점차적으로 美國의 세력을 약화시킴으로써 군사적·외교적 이익을 획득하려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日本의 軍事再武裝에 의한 이 지역에서의 위협제고를 가능한 사전에 방지하려는 의도를 관철시키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셋째, 東西間 軍縮協商의 主導權을 이 지역에서 확보하려고 할 것이며, 또한 美國의 「戰略防衛構想」(SDI)에 대한 日本과 韓國 등 아·태국가들의 참여노력을 사실상 저지하려는 목표를 가진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따라서 蘇聯의 입장은 韓半島 非核地帶化의 적극 추구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그것은 동북아 美軍事力의 감축과 韓半島 非核化 問題에 있어서 北韓과의 군사적 이해일치를 거당할 것이라는 점이 배제되기 어렵다.

물론, 이러한 진단은 최근의 한·소수교와 무관하다고 볼 수 있으나, 어쨌든 北韓이 주장하는 駐韓美軍 核撤收와 韓半島 非核地帶化 문제는 자국의 국익에도 내심 부합된다는 입장에서 지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sup>20)</sup>

특히, 기존 군사불력의 해체와 「아시아 安保會議 構想戰略」을 연계시키려는 蘇聯의 논리는 대략 다음과 같은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걸프전 이후 國際的 新秩序의 구축과정에서 유럽과 중동지역에서 상실한 蘇聯의 영향력 내지는 전략적 주도권을 동북아지역에서 만회해 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韓半島를 포함한 동북아지역에서의 非核地帶化를 적극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18) 특히, 걸프전 이후 中東地域에서 상실한 소련의 影響力 및 主導權을 신질서 재편 과정에서 亞太地域(특히 극동아시아)에서 만회해 보려는 노력을 십분 경주할 것으로 내다 보이고 있다.

19) 國防情報分析官과의 對談資料 (1991. 7).

20) 다만, 소련은 북한의 核査察 受容을 그 전제조건으로 삼으면서 支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소련은 미국과 남한의 妥協的인 姿勢를 유도하기 위한 모종의 노력이 계속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 (3) 中國의 立場

中國의 입장도 역시 蘇聯의 그것과 비슷할 것이나, 최근에는 남한의 유엔가입 결과를 놓고 中國은 “...유엔에 가입하는 것과 그것을 國家로 인정하는 것은 별개의 問題...”<sup>21)</sup>라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만큼, 北韓의 核問題가 中國에 적지 않은 波長을 주는 것만은 확실하다.

이미 1950년대 후반기부터 독자적인 核開發을 서둘러 온 中國은 1964년 10월과 1967년 6월 核爆實驗의 성공 등 1978년 중순까지 무려 23회의 核실험과 8회의 인공 위성 실험발사로 核運搬能力을 과시한 바 있다.<sup>22)</sup>

그러나 中國은 北韓의 核武裝에는 사실상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즉, 中國은 현재까지도 「核擴散禁止條約」의 非加入國으로서 이 문제에 관해서 명시적인 개입을 원치 않고 있으나, 최근 安全協定 문제와 관련하여 이미 北韓과 論議한 사실은 시인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1990년 4월 중에 있었던 李鵬 首相의 訪蘇時에 최초로 관심이 표명되었으며, 그 해 11월 쉰 외상의 訪美時에도 “美國, 北韓 양측은 상대방을 더욱 잘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中國은 北韓의 韓半島 非核地帶論을 지지하고 있다. 이 점에서 蘇聯과는 그 입장이 약간 다르지만, 中國도 北韓의 核開發이 동북아 지역의 核擴散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따라서 현단계에서는 비교적 소극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면서도 韓半島 統一問題에 관해서는 北韓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이 감안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한 中國의 지지입장은 中國의 독자적 核武裝권이 제한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北韓의 「韓半島 非核地帶論」을 지지할 것이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 (4) 日本의 立場

무엇보다 日本의 입장은 심각한 生存權 威脅으로 판단하고 자체의 核武裝을 정당

21) 『東亞日報』(1991. 9. 18): 『한겨레新聞』(1991. 9. 18) 각각 참조.

22) P. R. Chari, "China's Nuclear Posture: An Evaluation," *Asian Survey* (1978), p. 819.

화시킬 명분을 찾을 가능성이 클 것이 충분히 예상되고 있다.

南北韓의 유엔가입을 둘러싸고 北韓과의 關係設定을 필요로 하던 日本은 '北韓의 國家承認'을 비교적 낙관적으로 타진하고 있는 상황 속<sup>23)</sup>에서 동시에 北韓이 核安全 協定에 조기 서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日本 政府는 공식적으로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sup>24)</sup>

사실상 日本의 입장은 北韓의 核武裝을 반대하고 있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심각한 생존적 차원의 위협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北韓의 核開發이 日本의 안보는 물론, 이 지역의 안정구조에 직접적인 저해요인이 되므로 이를 극구 저지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日本은 北韓의 國際原子力機構 사찰을 북·일수교의 전제조건으로 제안한 바 있으며, 국제원자력기구 核査察 受容問題를 北韓에 대해서는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다.<sup>25)</sup> 한편, 日本은 韓半島 非核地帶化에 대한 기본 입장을 구체적으로 표명하고 있지는 않으나, 日本의 '非核 3原則' 고수의 입장에 비추어 韓半島의 非核地帶化를 내심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즉, 기본입장의 구체적인 표명은 크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日本의 '非核 3原則'의 고수라는 입장에 비추어 볼 때, 韓半島의 非核地帶化는 일본의 한반도 정책의 基調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等距離政策을 구사해 온 日本의 경우에 모종의 변화가 농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는 주장도 꽤나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23) 즉, 최근 「日本の 北韓承認 檢討 云云」이라는 대목의 기사가 부쩍 늘고 있어 주목을 끈다. 즉, 일본 정부의 代辯人格인 사카모토(坂本) 官房長官은 9월 11일 북한승인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과 북한간 國交正常化 會談의 경과와 한국을 비롯한 國際輿論을 감안하여 검토할 문제...”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어엿한 國家로 존재하면서 유효한 統治를 행하고 國際條約을 지켜 우호를 추진하는 국가인 것이 확인되면 국가로 승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일단 肯定的인 측면에서 北韓承認의 문제가 可視化되고 있음을 보였다. 『中朝日報』(1991. 9. 12).

24) 『한겨레新聞』(1991. 9. 14). 즉, 사카모토 미소지 官房長官은 잘막한 성명을 통해서, “... (북한이 정당하지 않은 이유들 때문에 國際法上的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는 것은 개탄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25) 더우기 최근 일본은 核開發 疑惑國家에 대한 強制査察이 가능하도록 「核擴散禁止條約」條約修正의 제의를 할 용의가 있음도 표명하였다.

### 3. 南北體制的 次元

이 문제에 대한 당사자인 南北韓은 가장 첨예한 각도에서 相互 生存戰略을 구상하기에 부심할 것이며, 결국 核選擇 問題를 놓고 남한의 '平和優先의 論理'와 北韓의 '統一優先의 論理'間的 마찰을 극복하기 위한 자체 政策論理의 개발에 분분할 것이 예상되지 않을 수 없다.<sup>26)</sup>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평화와 통일을 동시에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核問題와 軍備統制를 효율적으로 결합시킬 수 있는 政策代案의 결정에 政策選擇의 높은 우선순위를 두게 될 것이 예상된다.

#### (1) 北韓의 立場

이번의 核開發·核査察 문제에서 가장 행위선택의 난감하고 運身の 폭이 좁은 것이 바로 北韓의 입장인 것은 틀림 없는 사실일 것이다.

특히, 그동안 무리하게 '統一 優先의 論理'를 표명해 온 北韓의 입장은 한국정부의 統一論理나 주장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정치전략적 차원에서 「韓半島 非核地帶化論」이나 이와 유사한 平和攻勢를 집요하게 펼쳐 왔으며, 그 결과는 남한의 반체제 세력과 운동주의자들의 논리와도 접합될 수 있는 소지를 제공하게 된 사태마저 남게 되었다.

현재와도 같은 分斷構造를 일격에 타파하고 인민들이 주도하는 새로운 '統一王國' (?)을 건설하자는 주장은 특히, '主體의 論理'와 反美路線에 입각한 自主的 武力 統一論만을 강변하는 형태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그동안 南北韓間에 제안해 온 軍備統制의 쟁점들을 살펴보면, 이번 北韓의 核問題의 향방을 짐작하는 데 중요한 시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駐韓美軍撤收案」은 가장 많았던 北韓의 제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26) 즉,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구조를 해소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방법론의 하나인 군비통제의 노력과는 또 다른 국면을 대면하면서, '同床異夢' -名分과 實利의 結合을 위한- 속에서 각기 전략적 선택을 위한 정책구상에 돌입할 것이다.

내포하고 있다. 北韓은 이를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소로 삼고 있으며,<sup>27)</sup> 자체의 軍事力의 운용전략과 소위 '北方三角關係'를 통한 유리한 軍事同盟體制에 기반을 두고 있던 것은 물론, 특히 駐韓美軍 철수로 인한 군사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北韓側의 核選擇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둘째, 「相互減軍案」은 쌍방의 軍事力을 10만명선으로 줄이자는 매우 급격하고도 파격적인 軍備統制案으로서 격심한 군비증강 못지 않게 쌍방간의 不安要因을 내포하고 있다. 쌍방의 현 병력수준을 비교해 볼 때, 10만명으로의 즉각적인 減軍措置는 거의 실현 불가능한 제안이 되기 쉽고,<sup>28)</sup> 또한 北韓側의 제안은 감군을 실제로 보증할 수 있는 아무런 檢證裝置(verification)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sup>29)</sup>

셋째, 특히 「韓半島 非核地帶(Nuclear Free Zone)設定案」은 세계적인 反核運動에의 편승과 대남전략이라는 양면적 성격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核開發·核武裝과 관련되어 열히고 쉼 없는 복잡한 양상으로 치달고 있다.

여기에는 계속하여 北韓側이 주장한 駐韓美軍의 철수문제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으며,<sup>30)</sup> 폐쇄노선을 고수하면서도 현실적으로 自救策을 찾기에 부심하고 있던 北韓이 대내적으로는 北韓住民의 체제결속과 대외적으로는 威身高揚을 위한 고도의 '政治防壁'으로 제시된 것이다.

## (2) 南韓의 立場

이번 北韓의 核開發·核査察 문제로 당혹과 대응에 역시 부심하고 있는 것은 바

27) 남한과 미국은 카터 行政府의 「美軍撤收 計劃」이래로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이후에 段階的인 철수문제를 거론해 오고 있다.

28) 이 점에서 병력규모도 크지만 전체 인민을 상대로 과도한 군사동원체제를 운용하고 있는 북한에 비해, 군사분야에만 전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비율이 큰 남한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발생한다. 무기의 감축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병력만의 감축은 한계성을 내포한다는 것이다.

29) 즉, 감군에 恣意한다 할 지라도 協定違反의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대한 制裁措置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問題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바로 이 점에서 核査察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와 맥락을 함께 한다.

30) 얼마전 미국을 방문한 北韓의 한시해 祖國平和統一委員會 부위원장의 1991년 6월 18일 오후(현지시각)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美洲韓人放送」(KCB)과의 회견에서 말한 바 있는 내용(“...북한이 核安全協定에 가입하더라도 실제적인 核施設 査察問題는 미국의 南韓配置 核武器의 철수문제와 연계시킬 수 있는...”) 중에서 강력히 示唆한 사실을 참조할 수 있다. 『한겨레新聞』(1991. 6. 20).

로 남한의 입장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이것은 그동안 韓半島의 통일논리에 있어서 겪어 왔던 政策論理上的 난항과도 전혀 무관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가장 어려운 현안 정책과제는 '平和 優先의 論理'에 입각하면서 추진해 온 軍備統制에 대한 位相定立의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현존하는 전쟁부재의 韓半島 狀況의 현상유지라는 측면과 또한 이를 위해서는 역시 '힘(勢力均衡)에 의한 平和維持'라는 전제조건이 깔려 있기 때문에, 韓半島가 軍事化되는 것은 平和維持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논리로 正當化될 소지가 없지 않다.<sup>31)</sup>

따라서 이것의 인식론적·실천적 한계를 지적하는 경우는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즉, '平和 優先의 論理'에서는 대체로 현존하는 평화상태의 지속을 위한 現狀維持(status quo)를 강조하고 있으며, 그것은 평화를 통일에 대한 한낱 수단가치로 간주하기 쉬운 一面을 胚胎하고 있다는 것이다.<sup>32)</sup>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기초적 단계가 바로 信賴確證으로 특별히 강조되고 있으며, 이것이 선행되지 못하면 그 이후의 어떠한 통일에의 段階的 接近도 전혀 불가능하며 또한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현재와도 같은 南北韓 상황의 급격한 변동에 대하여 懷疑的인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南北韓間 軍備統制나 군축은 물론 유엔 동시가입이나 平和協定·不可侵協定 등 관계진전을 위한 일련의 政策處方에 있어서도 다분히 미온적이며 현상지속을 위한 성향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31) 이와 같은 '平和 優先의 論理'는 대체로 분단구조 속에서의 現實認定을 강조하면서, 특히 북한의 對南戰略에 대한 抑止論理로서 안보태세의 강화와 駐韓美軍의 역할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려는 경향을 보여 왔다. 그러나 이것이 '制度圈의 論理'나 '現狀維持의 政策' 및 '認識 優先의 論理'와도 긴밀히 관련되어 주장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問題認識은 다음을 참조할 것. 金點坤, "南北韓 關係의 전망: 平和構造를 위한 試論," 『社會科學研究』, 제12호, 慶熙大學校 社會科學研究所 (1986); 白雲善, "體制勢力, 反體制勢力과 한국정치," 『韓國政治學會報』, 제22집 2호 (1988); 金永明, "韓國의 政治變動과 미국," 『韓國政治學會報』, 제22집 2호 (1988); 정관용, "保守進步의 政治空間," 『계간 思想과 政策』, 京鄉新聞社 (1988년 가을호).

32) 따라서 이러한 「分斷狀況 속의 平和構造」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북한간 군사력 균형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對外依存的인 軍事同盟體制的 結束·可動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물론, 이 점은 미국을 비롯한 주변 강대국들의 한반도에 대한 現狀維持 政策과 맥락적으로 相應하는 일면이 있다는 사실을 중요한 論據로 제시하고 있다.

결국, 그러한 길과 韓半島의 통일문제는 현존하는 평화유지의 확고한 保證이 실행되어야만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강대국과의 긴밀한 軍事同盟體制를 통해서 유지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적극적인 평화구축을 위해서 요구되고 있는 軍備統制나 군축실현도 국제적 力學構圖에 便乘·置重하려는 성향을 보여 온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서 다시 남한이 北韓에 제안해 온 軍備統制의 쟁점들을 살펴보면, 앞으로 北韓의 核問題의 向方을 가늠해 보는데 중요한 시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相互武力使用 拋棄宣言」 및 「相互不可侵條約 締結案」으로서 분단 이후 南北韓은 韓半島의 평화통일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수많은 제의를 나누었는데, 그 중에서 북한은 「平和協定」의 체결을, 이에 대해 남한은 「不可侵協定」의 체결을 각각 주장해 왔다.<sup>33)</sup> 그러나 쌍방에 의한 광범위한 정치적 절충이나 교섭없이 채택된 무력불사용포기선언이나 불가침조약은 '宣言의인 效果'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없었으며, 특히 제3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도 남북불가침선언에 대해서는 서로의 의견을 개진하기만 했지 별다른 妥協點을 찾지 못했다.<sup>34)</sup>

둘째, 「緊張緩和措置案」으로서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에 들어오면서부터 남한은 「南北韓 最高責任者 會談」과 「非武裝地帶(DMZ)의 平和的 利用」등을 제안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극단적 대치상황을 풀어 나가려는 조짐으로 파악되나 그 본질상 군축문제 자체에는 큰 관련이 없으므로,<sup>35)</sup> 쌍방간에 첨예한 軍事的 緊張을 해소하기 위해서 군사자료나 軍事配置에 대한 정보를 공개·교환할 수 있을 때 상대방에 대한 부명한 理解를 가질 수 있으며, 나아가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現場에서 감시가 가능할 때 緊張緩和의 조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sup>36)</sup>

33)북한의 「平和協定」에 대한 남한의 不應理由가 그것이 체결되면 「休戰協定」이 폐기되고, 또 그렇게 되면 그의 일방 當事者인 유엔의 시행기관인 國際聯合軍司令部가 해체 및 철수되기 때문에 이 제의를 수락할 수 없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34)이러한 이유는 제2차 남북고위급회담(1990년 10월 17일의 평양회담)에서 북한측이 제시한 「북남불가침에 관한 선언(草案)」에서 일부 개선된 내용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것의 협정·협약 등의 명칭문제와 군비통제에 따르는 검증장치 및 비무장지대의 감시방안 등 무리한 조항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남한 당국은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金明基, "북남불가침에 관한 선언: 제의 과정과 법적 성격," 『北韓』, 제229호, 北韓研究所(1991. 1), 144-153面 참조.

35)이같은 제안이 實效를 거두려면 쌍방간 군사책임자회담이 개최되어 일정한 협의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이러한 軍事協商은 政治協商의 일환으로 이루어질 공산도 크다.

36)Adam Robert, "Arms Control: Problems of Success", *Adelphy Papers*, No. 236 (Spr. 1989), pp. 103-115.

그러므로 이같은 일련의 論議를 통해 볼 때, 아직도 南北韓間에는 軍備統制가 구체적으로 적용되어 있지 못하며, 더욱이 이번 北韓의 核問題를 놓고 어떠한 정책적 처방을 내려야만 하는가의 문제는 「統一韓國」을 지향하는 전환시대에 있어서 가장 책임 있게 풀어야 할 當面課題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소위 「거울(mirror)이미지」(=자기만이 옳하고 상대방은 好戰的이고 攻撃的이라고 보는 일방적 사고)에서 오는 相互不信의 壁은 南北韓 軍備統制를 踏步狀態로 물고 가는 가장 큰 장애물이며, 따라서 軍備統制에 앞서 신뢰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논리도 바로 이러한 이유로 설명되고 있다<sup>37)</sup>

현재 南北韓間 軍備統制를 제약하는 가장 중요한 장애요인으로는 현재의 극심한 相互不信이다. 이러한 相互不信의 결과로 쌍방이 어떤 軍備統制 제의를 하든지 적극적으로 수용할 태세를 갖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37)이러한 남북간의 相互不信을 제3자의 立場에서 본 근간의 研究는 다음을 참조할 것. Peter Polobkay, "The Two Koreas: Catalyst Conflict in East Asia", *Adelphy Papers*, No. 28 (London: IISS, 1986), pp. 12-14.

## V. 結論：韓國의 政策的 對應課題

### 1. 北韓의 核威脅에 대한 立場定立

지금까지 核戰略으로서의 北韓의 威脅論理에 관한 일련의 論議를 펼쳐 보았다. 그러나 최근들어 부쩍 국제적으로도 韓半島 關聯問題가 꽤나 복잡한 국면으로 진입되고 있음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먼저 韓半島야말로 核 초강대국인 미·소의 世界戰略 構圖 속에 위치함으로서 戰略的 選擇權이 현실적으로 크게 제약되어 있으며,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韓半島의 독자적인 核開發이나 또는 非核選擇 어느 것도 사실상 쉽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sup>38)</sup>

이미 세계는 全體 核保有國의 核 중에서 미·소가 약 90%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미·소의 保有核 중에서 30%가 韓半島에서 대치하고 있으며, 또한 최근 동서 대결구조의 와해로 인한 軍備統制와 군축의 결과로 蘇聯은 韓半島 地域을 중심으로 하는 자체 보유의 核 중에서 약 70%를 서서히 밀집시켜 놓고 있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볼 때, 問題의 重大性을 재확인할 수 있게 된다.<sup>39)</sup>

사실, 국제정치에 있어서의 非核地帶 論議는 그 實效性보다는 어떤 '宜言的 意味'가 강한 측면이 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國際力學關係 속에서 이상적인 非核地帶 論議는 그 실효성 문제에 있어 現實的인 한계를 내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非核地帶化의 전제는 일정지역의 국가가 참여하여 조약의 체결과 그 이행의 보장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문제는 美國의 核雨傘 철거시 과연 日本이 계속하여 '非核 3 原則'을 고수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은 계속 증폭되고 있으며, 아직도 美國의 극동이

38) 그것은 한반도 지역 당사자들이 세계의 주요 핵강대국인 미국·소련·중국 및 핵 보유 잠재국인 일본에 의해서 국제적 세력균형의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가도 기본적으로 궤도를 함께 한다.

39) 이러한 점에서, 「韓半島 非核地帶化論」이 한반도를 射程圈으로 한 중국과 소련의 핵은 도외시하고 주한미군의 核만 거론하는 것은 衡平의 原則에도 위배된다는 주장도 일정한 설득력을 가진다.



시아 전략 및 세계전략의 수정 내지는 변경에 따른 美國의 수락가능성도 현실적인 답변이 대단히 불분명한 상태에 있다.<sup>4)</sup>

결국, 北韓의 核選擇은 蘇聯주도의 아시아 안보체제 구축과정의 일환으로 일정하게 진전된다면, 韓半島의 정치·군사적 부담은 대단히 증폭될 것이며 이것은 곧 소련이 북한과의 軍事的 利害一致에 따르는 남한측의 對應폭이 그만큼 제약된다는 사실을 의미하게 되고, 당연히게도 韓半島 安保環境이 불안정화될 수 있는 蓋然性은 그만큼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역시 중요한 점은 北韓의 지속적인 對南攻勢의 전략이라는 차원을 무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실 北韓은 核開發 및 韓半島 非核地帶論으로 자체내의 불만을 무마시키고 내부체제의 결속을 강화해 오면서 남북대화의 主導權을 획득한 수 있었으며, 남한의 자체核武器 생산금지 및 駐韓美軍에 의한 核雨傘(확장억제)을 제거할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었다는 점을 부인하기 쉽지 않다.

## 2. 韓國의 政策的 對應方向

그러므로 앞서의 北韓의 核問題를 명백히 전제해 볼 때, 北韓의 核威脅에 대한 한국의 책임 있는 對應論理가 과연 현행 군비통제와 '葛藤關係'로서만 나타날 수 있는가라는 問題認識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南北韓間의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軍備統制가 명백히 전제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현재와도 같은 北韓의 核保有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것이 순조롭게 추진되기란 쉽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의 적절한 對應論理는 무엇이며, 그에 따른 政策課題는 무엇이겠는가?

첫째로는 事案의 중대성을 인정하고 北韓의 核選擇 여부에 따라 우리의 대응과제를 기민하게 組織化하는 것이다. 현재까지와도 같이 北韓의 核武裝이 구체적인 현실로 제시된다면, 이에 대한 對應폭은 오히려 넓어질 수가 있다. 다만 戰略的 優位가 소거된 상태에서 守勢的 立場을 어떻게 상쇄시킬 것인가는 사전에 면밀한 시나리오

4) 최근들어 미국은 소련의 東北亞 地域에 대한 戰略的 主導權 및 영향력 증대의 不許立場을 계속 강조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 既存 軍事同盟體制의 고수내지는 변경을 원하지 않고 있는 추세이다.

를 통해서 적절히 그리고 충분히 豫備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sup>41)</sup>

물론, 北韓이 먼저 국제법상의 명시적 義務事項인 核安全協定을 체결하고 核査察을 성실하게 수락하며, 그리고 對南企圖의 포기와 統一時代에의 동반책임을 공유하겠다는 조건이 갖추어진다면, 쌍방은 과감한 政治的 決斷을 통해서 「韓半島非核化宣言」 등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sup>42)</sup>

둘째로는 이제의 軍備統制나 오늘의 核問題는 평화통일 이후 「統一韓國」의 安保體制와도 긴밀한 관계를 갖게 된다는 사실에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분석적으로 본다면, 軍備統制는 南北韓間의 긴장구조를 완화시키고 '統一이 될 수 있는 水準' 까지 시도될 수 있으며 또한 「統一韓國」의 安保體制는 한민족 내부간의 대결이 아닌 '對內的인 自衛權이 實質的으로 전제될 수 있는 水準'에서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軍備統制의 適正推進水準은 곧 「統一韓國」의 安保要求水準과 일정한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推定構圖가 현재 北韓의 核威脅 상황에 대한 적절한 對應論理로 제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對應論理는 곧 문제해결을 위한 '安定裝置'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軍備統制와 核選擇 問題를 기능적으로 接木시킬 수 있는 '連結裝置'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더우기 앞서 첫번째의 對應論理를 효율적으로 추가킬 수 있다면, 그만큼 남한측의 對應폭은 커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41) 이러한 문제제기에 관해서는 國防政策 및 戰略情報 擔當官과의 수차례 논의과정을 통해서 개진된 바 있다. 다만 그 구체적인 方案이나 節次 등에 대해서는 軍機密上 생각하기로 한다.

42) 이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韓半島는 남북한간의 信賴構築 및 실질적인 관계발전과 남북한과 주변국간의 關係改善을 통하여 韓半島 주변의 안정과 평화가 정착되어야 하며, 이러한 여건을 바탕으로 軍備競爭의 내실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단 향후 韓半島의 非核地帶化를 상정해 본다면, 여기에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한다. 이 점에서 앞으로 한반도의 平和統一을 위한 비핵지대화 설정의 必要充分條件은 다음과 같다. 물론, 이러한 問題提起도 국방정책 및 전략정보 담당관과의 수차례 논의과정을 통해서 도출된 것이다. ① 韓半島 비핵지대화에는 관련된 당사국들이 모두 참가해야 하며 현재의 핵보유국들이 한반도에 대한 核武器 불사용 및 核威脅 불행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한반도의 비핵지대화가 한반도의 안보와 안정을 위협하는 地域戰略的 環境의 변화를 초래해서는 곤란하다. ③ 韓半島 비핵지대화는 國際法에서 인정된 참가국들의 기본권리를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④ 韓半島 비핵지대화 참가국들은 남북한이 어떠한 목적에서든지 核爆發裝置를 보유하거나 개발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어야 하며, 따라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檢證方案이 보장되어야 한다. ⑤ 남북한간에 정치·군사적 信賴回復과 상호불가침 보장 등 平和統一의 여건이 형성·정착되어야 한다.

최근들어 韓半島 狀況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점고되고 있는 중에 보기드문 軍事 專門研究書가 소개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北韓의 核戰略에 대한 한국의 對應論理를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어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sup>43)</sup>

첫째, 北韓으로부터의 도발위협이 고조될 때마다 美國은 공개적으로 核使用 意志를 천명한 결과, 이러한 자극은 北韓으로 하여금 오히려 核開發에 집착토록 한 결과가 되었다는 것이며, 따라서 이제 美國은 그 책임을 질 차례에 와 있다는 것이다.

둘째, 北韓의 核武裝化는 日本의 再武裝 및 核開發을 정당화시키게 되며, 그것은 남한을 비롯한 동북아 국가들에게 '核의 時代'를 열게 해준다는 사실을 의미하게 되고, 따라서 北韓의 核問題가 거론되는 한 美國의 방위비 증액압력은 더해 갈 것이며 그 와중에서 蘇聯은 實利를 추구하려 할 것이라는 점이다.

셋째, 이러한 게임에서 풀려나기 위해서는 北韓의 核에 대한 성토와 이에 대한 美國의 강경한 조치를 공개적으로 요구해야만 하며, 北韓의 核開發은 결국 남한의 核開發을 正當化시켜 줄 것이라는 국민적 믿음을 國際社會에 표현한다는 것은 미·소에게는 가장 효과적인 압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北韓이 核開發에 집착하고 있는 동안 南北韓 會談은 그들의 시간을 벌여 주기 위한 平和攻勢場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때에 우리는 방관자가 아닌 責任 있는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만 한다.

이러한 대응적 論議가 반드시 시의적절하다고는 볼 수 없으나, 극히 유동적인 최근의 현실 속에서 책임 있는 政策處方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일깨워 주고 있다. 물론, 北韓의 核威脅과 非核地帶化論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公式立場의 마련이 금명간 필요할 것이며, 이 경우에 대단히 복잡하고도 신뢰성 있는 政策判斷이 요구될 것임은 분명한 것이다.

특히, 駐韓美軍과 관련된 부분과 주변국들간의 力學關係를 포함한 내용은 내부 정치사회적 변수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실성 있는 安保政策의 論理로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 요망된다.

43) 池萬元, 『70萬 經營體: 韓國軍, 어디로 가야 하나』, (서울: 김영사, 1991).

## 參 考 文 獻

## I. 國內文獻

- 고병철, “南北韓 政策의 評價,” 김한교 외, 『韓半島의 統一展望: 可能性과 限界』 (서울: 慶南大學校 極東問題研究所, 1986).
- 國防部, 『國防白書』 (1988-1990).
- 國際問題研究所, 『防衛年鑑』 (연도별).
- 國土統一院, 『南北韓의 核開發可能性과 非核地帶化論 對應方案』 (1986. 12).
- 國土統一院 南北對話事務局, 『北韓의 軍事問題 提議의 관련자료』 (1989. 1).
- 國土統一院 南北對話事務局, 『南北韓 軍縮關聯 主要提議: 1980년 이후』 (1990. 7).
- 權泰榮, 『軍備競爭과 軍備統制: 東西, 그리고 南北의 軍備爭點』 (安保問題研究所, 1983).
- 김근철 (편), 『韓半島內 軍事力』 (서울: 천산산맥, 1989).
- 金洛中外, “韓半島 軍縮: 긴급 대토론,” 『월간 中央』 (1990. 2).
- 金南植, “北韓이 내놓은 南北軍事問題 解決案,” 『社會와 思想』 (1989. 2).
- 김대수, “南北韓 軍事對峙의 變動展望,” 『南北韓 關係와 軍備統制 問題』, 國土統一院 (1989. 12).
- 金明基, “南北韓 平和協定과 不可侵協定 比較,” 『統一論議의 諸問題』 (서울: 大旺社, 1989).
- 南柱洪, “軍備競爭과 統制: 理論과 實際,” 『國際政治論叢』, 24집 (1984).
- , “南北韓 國防政策의 比較,” 李炅宰 (編), 『韓半島 軍縮論』 (서울: 法文社, 1989).
- 다케사다 (武貞秀士), “韓半島의 軍備管理,” 『國際政治論叢』, 26집 2호 (1986).
- Naewoe Press, *Some Facts about North Korea* (1984).
- 閔丙天, “南北韓의 軍縮問題,” 『統一論議의 諸問題』 (서울: 大旺社, 1984).
- 박갑수, “南北韓의 軍縮提議 比較 및 軍縮成立條件,” 『北韓』, 224호 (1990. 8).
- Park Dong-Whan, “The Korean Arms Race: Implications in the International Politics of Northeast Asia,” *Asian Survey* (June 1980).

- Park Dong Whan and Jeong Se Hyun, "Arms Race, Competition, and Coexistence between the Two Koreas," 『國際政治論叢』, 26집 2호 (1986).
- 北韓研究所(編), 『北韓軍事論』(1978).
- 竊名五, "北韓의 減縮主張과 軍事動員體制," 『北韓』, 224호 (1990. 8).
- , "세계의 核開發 추세와 北韓의 核開發," 『統一問題』, 23, 國土統一院, (1989).
- 白光一, "北韓의 軍事環境과 軍事政策," 金乙權(編), 『韓半島 周邊의 軍事環境』 (서울: 世宗研究所, 1988).
- 白鍾天, "韓半島 軍縮推進 戰略," 『政策研究』, 제97호 (1984. 4).
- , "北韓의 對南戰略에 있어서 軍事力の 役割: 對南戰略과 軍事力과의 連繫性 分析," 『國際問題』, 제17권 1호 (1986. 1).
- , "北韓의 軍事力과 軍事戰略," 『統一問題研究』, 제1권 2호(1989, 여름호).
- 사토 다치야(佐藤達也)·이재선(譯), 『韓半島의 軍事地圖』 (서울: 科學과 思想, 1989).
- 徐鎭英, "北韓의 經濟發展과 國防費 問題," 李昊宰(編), 『韓半島 軍縮論』 (서울: 法文社, 1989).
- 宋大晟, "韓半島 軍縮妥當성에 관한 檢討: 韓半島 軍縮의 可能性 및 制約性," 『國際政治論叢』, 제29집 1호 (1989).
- 송방선, "南北韓 防衛條約의 比較," 『國防管理』, 86-142호, 國防管理研究所(1986. 7).
- 申正鉉, "韓國의 安保狀況과 重點 考慮要素," 『國際問題』, 제192호 (1986. 8).
- , 『韓半島의 軍備統制: 平和와 統一의 새 局面』 (서울: 예진출판, 1990).
- 申喆均, "美·蘇 核戰略과 韓半島 核問題," 『思想과 政策』, Vol. 6, No. 2(1989).
- 安秉俊, "南北韓 軍縮의 方向," 『國際政治論叢』, 제29집 1호 (1989).
- Ahn, Byung-joon, "Arms Control Proposals of North and South Korea and Their Implications for Korean Security," 『國際政治論叢』, 제26집 2호(1986).
- 梁性喆, "南北韓 軍事力과 同盟體制," 『思想과 政策』 (1989년 여름호).
- 양성철·조덕현, "南北韓 軍備統制提案의 分析 및 評價," 『韓國政治學會報』, 제21집 1호 (1987).
- 柳錫烈, "北韓의 對外政策分析," 『韓國政治學會報』, 제14집 (1980).
- , 『南北韓 關係論』 (서울: 正音社, 1985).

- 吳寬治, “南北韓의 軍事力指標比較,” 李昊宰(編), 『韓半島 軍縮論』(서울: 法文社, 1989).
- 吳淇坪, “韓半島 非核地帶에 관한 試論,” 『國際政治論叢』, 제18집 (1978).
- 온창일, “核과 韓半島 統一,” 『統一論議에서의 새로운 接近: 軍縮과 民族和合』, 國土統一院 研究論文 (1989. 11).
- 柳在甲·姜鎮錫, 『戰爭과 政治』(서울: 韓元, 1989).
- 柳漢盛, “北韓의 國家資源配分과 南北韓 豫算比較,” 李昊宰(編), 『韓半島 軍縮論』(서울: 法文社, 1989).
- 李基鐸, 『韓半島의 政治와 軍事: 理論과 實際』(서울: 가남사, 1988).
- , “南北韓 不可侵協定과 安全保障,” 『北韓』, 제27호 (1974).
- 李達坤, “軍縮理論에 입각한 南北韓 軍縮協商 代案研究,” 『統一問題研究』, 國土統一院(1989년 봄호).
- 李相禹, “南北韓 軍事葛藤과 軍縮,” 『韓國政治學會報』, 제14집 (1980).
- , “럼멜(Rummel)葛藤理論으로 본 南北韓 戰爭可能性,” 韓國國際政治學會 學術大會 (198?).
- , 『國際關係理論: 國家間的 葛藤原因과 秩序維持』(서울: 博英社, 1987).
- 李錫浩, “北韓의 軍備統制 政策,” 『國際政治論叢』, 제29집 1호 (1989).
- 이승헌, “南北韓 平和戰略 比較: 그 構想內容과 展開狀況을 중심으로 한 考察,” 『國際政治論叢』, 제18집 (1978).
- 李殷鎬, “韓半島와 武器問題,” 『清大春秋』, 제26집, 清州大學校 (1980).
- , “美國의 對韓軍援 變化: 특히 武器政策 및 武器競爭과 관련하여,” 『國際政治와 外交政策: 金明會 博士 回甲記念 論文集』(서울: 大旺社, 1983).
- Lee Eun Ho and Yim Yong Soon, *Arms and Politics on the Korean Peninsula*(Chong Ju: Chong Ju Univ. Press, 1983).
- 李永禧(編), 『核戰略의 危機의 構造』(서울: 世界, 1984).
- , “南北韓 戰爭能力 比較研究,” 『社會와 思想』, 창간호, 한길사 (1988. 9).
- , “南北韓 軍事力 比較,” 『월간 朝鮮』(1989. 4).
- 李廷植 外, 『反戰反核平和統一論』(서울: 形成社, 1989).
- 이정혁(편역), 『팀스피리트와 美國의 軍事戰略』(서울: 동녘, 1989).
- 李章, “南北韓의 戰力과 國防費와 安保論理,” 『韓半島의 軍縮과 平和』, 國土統一院 研究報告書 (1989. 12).

- , “南北韓의 緊張緩和를 위한 提案,” 『國際政治論叢』, 제30집 1호 (1986).
- 이한(편), 『北韓의 統一政策 變遷史: 1948-1985년 주요문건』 (서울: 온누리, 1989).
- 李昊宰, “韓半島 軍備縮小 問題의 限界와 可能性,” 『國際政治論叢』, 제26집 2호 (1986).
- , 『韓半島 平和論』 (서울: 法文社, 1989).
- 外, 『韓國人의 平和意識과 統一觀』 (서울: 法文社, 1989).
- , “韓半島의 核論爭과 非核地帶化,” 李昊宰(편), 『韓半島 軍縮論』 (서울: 法文社, 1989).
- 全寅永, “自衛戰略 構想,” 金乙權(編), 『2000년대 韓國의 國防體系』 (城南: 日海研究所, 1988).
- 全正煥, “南北韓 外交競爭과 安保問題와의 相關關係,” 『國際政治와 外交政策』.
- 정병호, “南北韓 軍事力: 그 實相과 虛像,” 『國際政治論叢』, 제29집 1호 (1989).
- Chung, Chong Wook, “Inter-Korea Dialogue and Strategic Relations in Asia,” *Korea Observer*, Vol. XVII, No. 3 (Autumn 1986).
- 車榮九, “南北韓 軍事關係,” 『亞世亞研究』, 高麗大學校 亞世亞問題研究所 (1987. 7).
- , “韓美 軍事關係의 將來(11).” 『신데탕트와 韓半島 安保』, 韓國國防研究院 (1990. 10).
- 崔 榮, “美·所 軍縮協商,” 『國際政勢』 (1989. 9).
- , “南北韓의 軍備縮小,” 『外交』, 제9호, 韓國外交協會 (1989).
- 崔章集, “제3세계의 軍事化와 平和,” 李昊宰(편), 『韓半島 軍縮論』 (서울: 法文社, 1989).
- Choi Chang Yoon, “South Korea: Security and Strategic Issues,” *Asian Survey* (Nov. 1980).
- 터너(Joy C. Turner), 『共產側의 協商態度』 (國土統一院, 1988).
- 河英善, “韓半島의 核武器,” 鄭鐘旭(編), 『韓半島의 軍縮과 平和』, 國土統一院 (1982).
- , 『韓半島의 戰爭과 平和: 軍事的 緊張의 構造』 (서울: 靑溪研究所, 1988).
- , 『韓半島 軍備競爭의 再認識: 戰爭에서 平和로』 (서울: 인간사랑, 1989).
- , “韓半島의 軍事問題를 어떻게 볼 것인가?,” 『敎會와 世界』, No. 80(1989. 5).

- Young-Sun Ha, *Nuclear Proliferation, World Order, and Korea* (Seoul: Seoul National Univ. Press, 1983).
- 韓國基督教社會問題研究院(編), 『核武器는 가라!: 美國核戰略과 韓半島의 平和』 (서울: 民衆社, 1988).
- 韓國國防研究院(編), 『신데랑트와 韓半島 安保: KIDA와 CSIS의 共同主催 學術會議 論文集』 (1990).
- 洪鐘萬, “軍備統制問題의 實證的 接近方法 摸索,” 『國際政治論叢』, 제30집 1호 (1986).

## II. 國外文獻

- ACDA, *World Military Expenditures and Arms Transfer* (Washington, D. C.: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1986).
- B. K. Bhandari, *Control of Nuclear Arms Race from Hiroshima to SALT II: Success or Hailure?* (New Delhi: ABC Publishing House, 1984).
- Brassey's Defence, *Asian Security* (London: 1979).
- Bruce G. Blair, *Strategic Command and Control: Redefining the Nuclear Threat* (Washington, D. 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85).
- Colin Hines and David Lowry, "Reluctant Compromise on the Nuclear Arms Age," *Third World Quarterly*, Vol. 8, No.2 (Apr. 1986).
- Committee on International Security and Arms Control National Academy of Science, *Nuclear Arms Control: Background and Issues*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1985).
- Edward N. Luttwak, *Strategy: The Logic of War and Peace*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1987).
- Frank Barnaby and Ronald Huisken (eds.), *Arms Uncontrolled*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1975).
- Frank Barnaby and Geoffrey Thomas (eds.), *The Nuclear Arms Race: Control or Catastrophe?* (London: Frances Printer, 1982).
- Frank Blackaby (ed.), *The Arms Race and Arms Control* (London: Taylor and Fr-



- ancis, 1982).
- Franklin B. Weinstein and Fuji Kamiya, *The Security of Korea* (Colorado: Westview Press, 1980).
- George W. Downs, David M. Rocke, and Randolph M. Silversom, "Arms Races and Cooperation," *World Politics*, Vol. XXXV III, No.1 (Oct. 1985).
- Klaus Knorr and Patrick Morgan, *Strategic Military Surprise* (New Brunswick: Transaction Books, 1983).
- IISS, *Strategic Survey / Military Balance* (London: Yearly).
- J. Galtung, "Alternatives to Nuclear Arms Race: Ten Proposals for Concrete Peace Politics for 1980s," *Bulletin of Peace Proposals*, Vol. 12, No. 4 (1981).
- J. H. Barton, *The Politics of Peace* (Stanford: Stanford Univ. Press, 1981).
- John Spanier, *Games Nations Play* (New York: Rinehart, and Winston, 1978).
- Larry A. Niksch, "The Military Balance on the Korean Peninsula," *Korea and World Affairs*, Vol. 10, No. 2 (Summ. 1986).
- Louis Rene Beres, *Apocalypes: Nuclear Catastrophe in World Politics* (Chicago: The Univ. of Chicago Press, 1980).
- Luc Reychler, "Arms Control Evaluation: A Joint Search for Objective Criteria," *A Paper Delivered at the U.N. International Year of Peace Seminar* (Korea, GIPS: Kyung Hee Univ., 1986).
- M. Sheehan, *The Arms Race* (Oxford: Martin Robertson, 1983).
- Peter Polomkay, *The Two Koreas: Catalyst Conflict in East Asia*, Adelphi Paper, No. 28 (London: IISS, 1986).
- P. S. Brown, *Purpose, Achievements, and Priorities of Arms Control* (CA: 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 1987).
- R. Hardin, et al. (eds.), *Nuclear Deterrence: Ethic and Strategy*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1985).
- Richard A. Scribner and Robert Travis Scott (eds.), *Strategic Nuclear Arms Control Verification: An Annotated Bibliography, 1977-1984* (Washington, D. C.: American for Advancement of Science, 1985).
- Stephen D. Goose, *The Military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wo Koreas*

- One Future?* (The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1987).
- Uri Bronfenbrenner, "The Mirror Image in Soviet-American Relations," *Journal of Social Issues*, Vol. 17, No. 3 (1961).
- U. S. House of Representatives, *Shifting of Power in Asia: Implications for Future U.S. Policy, Hearings, Committee on International Relations, 94th Cong.* (Washington, D. 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6).
- Young-Sun Ha, "Korean Nuclear Energy Program: Post, Present, and Prospect," in James E. Kats and Onkar S. Marwah (eds.), *Nuclear Power in Developing Countries: An Analysis of Decision-Making* (Lexington, Mass.: Lexington Books, 1981).
- S. Degar and R. Smith, "Military Expenditure and Growth in Less Developed Countries," *Journal of Conflict Revolution*, Vol. 27 (June 1983).
- SPIRI, *World Armament and Disarmament: SPIRI Yearbook* (Oxford: Oxford Univ. Press, Yearly).
- W. A. Arkin and W. Fieldhouse, "Focus on the Nuclear Infrastructure," *Bulletin of Atomic Scientists* (June/July 1985).
- The Others: Reports · Memorendom · News Papers, et al.

## ◆ 北韓人民軍의 組織管理方式과 實戰能力 評價 研究

안찬일(建國大)

### 〈 要 約 文 〉

韓國戰爭을 통하여 精神的 敎訓(南)과 軍事的 敎訓(北)을 얻은 남북한의 統治 勢力이 社會的 動員化를 통한 國民總和와 南朝鮮 革命을 統治 이데올로기로 表面화시킨 것과는 달리 오늘날까지 南北韓 軍部の 最高 수뇌부와 엘리트들 사이에는 일반적인 軍隊의 속성대로 대체로 현상유지를 바라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韓國軍이 5.16을 계기로 정치참여의식이 팽배해진 것을 특성으로 지적한다면 北韓人民軍은 6.25를 통하여 現代 戰爭에서 군사기술적 우세의 威力을 체험한 때로부터 더욱이 現狀維持的 體制維持軍으로서의 特性을 固守하고 있다고指摘하고 싶다.

따라서 戰爭이 없이 40여년 가까이 ‘革命軍隊’인 人民軍을 유지 管理하는 데는 상당한 문제점도 없지 않을 것이다.

이 論文에서는 인민군의 創建에서부터 그후 韓國戰爭, 그리고 국내외 情勢의 變化속에서 戰爭을 目標로 하는 本質的 意味에서 軍組織 管理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오늘날 實際로 人民軍組織의 效率性은 어느 정도인지 診斷하고자 하는데 기본 목적이 있다.

兵力에 의존하는 노동집약적인 군사력의 쇠퇴와 무기의존의 기술집약적 군사력의 추세로 급속히 이전하고 있는 現 단계에서 인민군의 조직관리방식도 제도주의(Institutionalism)에서 직업주의(Occupationalism)로의 변화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소수 精銳軍의 維持와 전인민적인 지방軍 추세로 가고 있다.

군대문제를 논함에 있어서 자노위츠(Janowitz)는 現代的 軍隊組織의 性格을 파악하는데 있어 반드시 전제로 해야 할 다섯가지의 기본 명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組織的 權威(Organizational Authority)의 變化

둘째, 軍事技術과 民間엘리트의 技術의 差異가 減少된 것

셋째, 將校 充員의 社會的 基盤이 擴大된 점  
 넷째, 經歷樣態(Career pattern)가 증가된 점  
 다섯째, 군대의 정치적 사상주입의 경향

인민군의 조직관리에서 특징적인 것은 정치 우선인 黨軍관계의 강화로 軍隊組織의 生命인 위계질서가 약화되고 나아가 본래 사명인 전투력이 저하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는 個人崇拜와 절대적 충성의 강요는 군사조직의 기본 성원인 초급 지휘관들과 하진사들속에 요령주의, 형식주의를 만연시키고 정년이 없는 장령(將星)들은 무사안일주의에 안주함으로써 80년대에 들어 더욱 헤이된 樣態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인력 및 인사관리에 역점을 두고 그것을 下部構造로 하는 軍建設과 黨軍關係의 上部構造를 分析함으로써 組織管理의 力點과 問題點, 效率性和 비효율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제2장 인민군의 창건과 발전 과정을 통해 인민군의 탄생 과정을 보면 해방 직후 건당, 건국, 건군을 강력히 추진한 소련군과 金日成 등에 의해 이미 정부수립 이전인 1948년 2월 8일 인민군의 創建을 선포하였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48년 2월 7일 남로당에 의해 남한 전역에서 폭동이 일어난 직후, 그동안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온 인민군을 세상에 알리고 ‘해방군’으로서의 성격을 규정짓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소련군 25군 사령관 치스차코프대장은 1945년 10월 12일 북한내 각종 무장세력(현준혁 등 국내 공산주의 세력의 치안대, 조만식등 민족주의 세력의 자위대, 소련군 진주와 함께 입북한 항일유격대 세력의 적위대)의 解散을 命令하고 적위대를 중심으로 보안대를 조직하였다. 그 후 철도보안대가 組織되고(1946년 1월 11일) 평양학원(1945년 11월), 보안간부 학교(1946년 6월)를 창설하여 군 간부들을 양성하였는데 그 핵심은 金日成유격대의 최용진, 김 채, 연안에서 돌아온 조선의용군의 무 정, 박효삼, 소련군 경험이 풍부한 김봉울, 유성철 등 보누가 항일유격대 세력이었다.

비교적 식민지 청산이 빠른 편인 北韓에서 프롤레타리아 軍隊인 인민군의 조직은 순조로웠으며 그 여세가 6.25전쟁을 도발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데 전쟁 초기 핵심적 역할을 한 것은 조선의용군 출신의 무정(제2군단장), 방학세(제6사단장), 최용진(제5사단장)등 지휘관들과 그의 부하들이었다.

제3장 인민군의 전통적 관리방식에서는 創建初期 소련군 고문관들에 의해 소

련군교리가 중시되었던 것과는 달리 韓國戰爭 초기 中國人民支援軍이 參戰하면서 중국군식이 도입되어 계속 발전되어 온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것은 현대적 군사기술 장비의 위력 앞에 어차피 소련식 기술과 장비로 무장해봤자 대결이 안된다는 결론에서 도출된 방안의 모색이었고 이 논리는 소련유학과 김창봉(제3대 민족보위상, 62, 10~68. 12, 숙청)에 의해 잠시 무시되기도 했지만 시종일관 중시되어 왔다. 中國軍식의 도입은 당군관계의 중시라는 결과로 평화시기 군조직관리에서 군기문란, 전투력약화라는 당연한 귀결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제4장 현대적 조직관리 방식에서는 人力 및 人事管理와 군기 및 部隊管理로 구분하여 참모부, 정치부 등 부대구성과 관리, 군 초모(징집)에서 체대(전역), 사기 등을 다루고 있다.

인민군은 그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創建初期에는 계층간에 동일성을 유지하였고 또 그것이 큰 장점이었으나 60년대 이후부터 인력구성에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군 初募시 전·후방, 군종·병종간에 철저한 성분으로 차별을 두고 군관도 행정군관(8촌 이하까지 성분조사), 정치군관(10촌 이하까지 성분조사), 보위군관(12촌 이하까지 성분조사)은 출신성분, 가족관계 등으로 엄격히 분류하여 임관시킴으로써 위화감과 내분을 조장하고 있다. 오늘날 인민군내에서 백두산줄기(항일유격대 출신 가족), 낙동강줄기(전쟁영웅 및 전사자가족)라는 은어는 이와 같은 인간차별 政策에 대한 공공연한 비판이 되고 있다.

인민군이 國軍과 對照되는 하나는 직업군인 하사관제도를 기술병종(포병, 자동차, 병기수리)에만 제한하여 두는 것을 강점으로 자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민군은 1962년 최고사령관 명령으로 定員制度를 채택하여 10여년간은 잘 지켜 왔으나 1973년 초부터 대량의 하전사들을 건설장으로 빼내간 다음부터 지금까지 부대정원을 제대로 채워 본 적이 없다. 군관의 보직관리에서도 우리 국군이 1952년부터 MOS(Military Occupational Speciality)에 의한 경력관리제도, 1961년부터 순환보직제도, 1968년부터 다목적 경력관리제도의 시행을 거쳐 1972년부터 직능화인사관리제도를 시행하여 戰鬪兵科 위주의 보직관리를 탈피한 반면 인민군은 초기 임관된 병과를 떠날 수 없는 경직된 보직제도를 지금까지 固守함으로써 軍組織의 現代化에 進展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제5장 인민군의 실전능력 평가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유형요소(인력,

무기체계, 지휘체계) 및 무형요소(통솔력, 전략전술, 훈련, 정신력)의 모델을 벗어나 구체적인 個人戰鬥能力과 部隊戰鬥能力으로 區分하여 조직관리 측면과 결부시켜 분석하였다.

개인 및 부대전투능력에 모두 관련되는 것이지만 인민군은 1973년부터 대대적인 社會建設과 농촌지원에 동원됨으로서 産業維持軍이라는 인상마저 주고 있는 것이 事實이다. 이에 따르는 군조직구조의 부질서는 전투력에 상당한 影響을 미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군이 월남전에서 얻은 풍부한 戰爭經驗을 소유하고 있는데 반해 인민군은 월남전 일부와 미동맹권, 남미, 아프리카 지역에 수출해온 폭력혁명을 통한 게릴라전 경험을 장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歷代 인민부력부장(1972년 12월 이전은 민족보위장, 1대~5대)과 총참모장(1대~9대)의 정력과 조직관리 성향을 분석함으로써 통합군모델인 인민군의 지휘원칙을 概略하였다.

“打倒 蘇聯”이 日本軍의 전통적 사명인 것처럼 “남조선 해방”은 인민군의 최대 사명이다.

그러나 6.25전쟁을 통하여 군사기술적 우세를 확보하고 있는 미군과 成長을 거듭해 온 韓國軍 앞에 그 사명은 명분을 喪失하고 있다. 現在 우리 國軍이 군구조개편(818계획)을 추진하면서 발전적인 國防力을 維持시키고 있는 조건에서 北韓人民軍의 外形的 能力보다 실제적 組織관리를 관찰하여 실전 능력을 제때에 感知하는 것은 다가오는 統一을 위해 바람직스러운 일일 것이다.

(本文은 別冊으로 發刊)

## ◆ 北韓의 體制類型과 官僚腐敗에 關한 研究

— 體制類型, 體制管理, 腐敗類型을 中心으로 —

윤 태 번(서울大)

### 〈要 約 文〉

지금까지 北韓에 대한 연구는 양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질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성장을 하였다. 비록 현실적인 資料에 접근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그래도 北韓社會를 理解하고 研究하는 데에 일조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한반도의 통일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여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기존의 연구는 지나치게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에 치우쳐서 논의하였기 때문에 편견이 개입될 여지가 상당히 있었다는 점이다. 즉 연구의 시작단계에서부터 부정적인 측면 혹은 비판적인 입장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결론에서도 부정적인 측면에서 평가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연구태도는 그렇게 바람직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이데올로기 편향적인 연구에서 벗어나 中立的인 視角에서 북한사회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사회도 한국과 같은 하나의 體制(System)로서 수용하는 體制理論의 立場에서 북한사회의 특성을 규명하였고, 이러한 논의위에서 북한체제의 體制的 病理現象 특히 그 중에서도 관료체제의 병리현상(부패현상)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체제이론 중에서도 특히 Surtherland의 논의를 기본으로 하고 이를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하여 북한사회의 體制的 性格을 규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體制的 類型을 규범적으로 決定的 體制(Determinant System), 약간 推計的(Moderately Stochastic), 심히 推計的(Severely Stochastic), 그리고 非 決定的 體制(Indeterminate System)로 분류하였고, 여기서 북한의 體制類型은 다음의 표와 같다.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체제의 경우 결정적 체제로서 안정적 자급자족적 환경체제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으나, 실제의 운영전략면에서는 세 유형의 체제와 관련된 전략을 이용하고 있어서 부정합성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政治體制, 經濟體制, 社會體制, 行政樣式, 그리고 統制樣式的 측면에서 부정합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體制類型的 分類〉

체제유형	환 경	정치체제	경제체제	사회체제	행정양식	통제양식
결 정 적	안정적 자급자족	신정 혹은 왕정	농업혹은 생존체제	의례주의	유한체제 (원시)	의식 도그마
약 간 추 계 적	공생적	전체주의	공업혹은 2차산업	강제적	통계적 (관료제)	규제/규제
심 히 추 계 적	경쟁적	민주제	기술과 혁신	도구주의적	추계적	합리주의
비 결 정 적	격동적	무정부주의	후기 산업 사회	자발적	교시적	자율규제

이것은 결국 북한체제의 경우 복잡한 국제환경속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내부적인 전략적인 측면에서 孤立的인 體制를 유지하려 하고, 또한 실제적인 운영양식에 추가하여 唯一思想的 理念體系를 上位戰略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서 발생하게 되는 북한의 體制病理도 결국은 위와 같은 이유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 즉 북한의 경우에 資本主義 體制에서와 같은 政治腐敗를 발견할 수는 없고 대신 정치적 권력투쟁 혹은 肅清의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 이것은 결국 이데올로기의 지배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社會的 病理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북한체제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부적응과 個人的 逸脫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 그리고 官僚腐敗의 경우에도 두가지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그 하나는 이데올로기에 의한 것이고 또 하나는 관료주의에 의한 것이다. 여기서의 이데올로기는 북한에서 발생하는 관료부패의 상당부분은 당원자격의 취득과 관련되었다는 것이며, 官僚主義는 자본주의 사회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경우에도 비록 이념상으로는 관료주의를 배격하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관료주의적 현상이 상당히 발견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부패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삼은 13건의 腐敗事例중에서 약 7건이 관료주의에 의한 것이라는 결과에 의해서도 설명이 된다.



북한체제의 부패 혹은 병리가 자본주의 사회의 그것과 구별되는 특징적인 것 중의 하나는 정치적 부패, 사회적 부패, 그리고 관료부패가 서로 연결되어 있지 못하고 즉 구조적으로 연결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體制的인 統合性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어서 부패현상들이 제각기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북한 당국은 이러한 병리현상을 統制하는데 있어서 크게는 두가지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하나는 주민에 대한 직접통제수단이고 또 하나는 이념적인 사상무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념적인 사상무장이다. 즉 철저한 共產主義思想으로 무장하고 김일성에게 충성을 하게 되면 병리현상은 소멸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도 지적하였듯이 관료부패의 경우 그 원인의 상당부분은 자본주의 사회에서와 같은 관료주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통제수단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북한체제의 경우에 병리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體制와 環境을 잘못 규정한 데서 비롯되었으며, 또한 체제의 運營戰略이 잘못 채택된 데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결국 북한에 대해 많은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北韓體制의 開放化와도 연결되는 논의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개방된다는 것은 하나의 체제가 그 체제를 둘러싼 환경 혹은 환경의 변화를 인식한다는 것이며, 이것은 또한 체제의 운영 혹은 관리전략의 수정을 야기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 I. 序 論

### 1. 研究目的

맑스주의자들은 資本主義를 비판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官僚腐敗”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즉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관료부패란 “資本主義的 生産樣式” 그 자체 혹은 결과라고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부패란 피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것이며, 이것은 특권층이나 부르조아, 그리고 官僚 자신들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자본주의 혹은 민주주의 체제에 있어서 관료의 존재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共產主義(社會主義)體制의 경우에는 어떠한가? 관료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더군다나 관료부패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답은 극히 부정적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최근의 사회주의 체제의 변화과정에서도 목격할 수 있듯이 오히려 共產主義 政治體制下에서 더욱 심한 체제적 病理現象 혹은 관료제적 부패현상을 목격할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료부패의 문제를 공산주의체제 혹은 사회주의체제라는 특정한 체제의 틀속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만,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데올로기적 시각 내지는 관점을 떠나서 北韓의 경우도 하나의 체제라는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즉 북한이든 한국이든 미국이든 소련이든 하나의 체제라는 측면에서 동일한 선상에서의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資本主義 혹은 民主主義, 社會主義 혹은 共產主義라는 이념적 문제를 논의의 전제로 할 경우에는 처음부터 편견에 빠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도 하나의 체제라는 體制論的인 觀點에서 北韓體制의 病理現象 특히 官僚體制의 病理現象을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체제이론을 기본으로 하여 체제의 環境, 下位體制로서의 政治體制, 社會體制 그리고 經濟體制의 유형과 성격 그리고 운영양식과 상호작용, 이를 바탕으로 체제에 대한 체제관리자의 관리 혹은 통제양식을 논하고자 한다. 특히 이러한 체 유형의 適合性이 결여되고 체제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體制腐敗 혹은 官僚腐敗가 발생한다는 논의를 정리하고자 한다. 특히

여기서 중요하게 논의될 수 있는 것이 체제와 자원간의 관계이다.

예를 들어서 서덜랜드의 논의를 수용하여 체제를 4가지로 유형화할 경우 각 체제마다 상이한 메카니즘에 의한 상이한 병리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그 병리현상의 原因 및 性格, 影響 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논의가 전개될 수 있다. 이러한 제반 논의를 북한이라는 체제에 적용시킬 경우 먼저 북한이 환경을 어떻게 규정하며, 북한체제는 어떠한 유형에 속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어떤 전략으로 체제를 관리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발생하는 체제적인 병리현상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념성을 떠난 보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체제론적인 입장에서 체제관리의 문제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 2. 研究範圍 및 方法

사회주의 내지는 공산주의체제의 병리현상에 대한 연구는 양적 질적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주된 이유는 바로 資料의 활용문제에서 비롯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북한체제에 대한 연구의 경우 이러한 자료의 접근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어서 보다 충실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본 연구도 이와 동일한 資料接近의 문제에 봉착할 수 밖에 없다. 특히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공식적 자료는 더욱 부족하여 연구를 진행하는데 많은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적으로는 부족하지만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事例分析을 실시하고자 한다. 즉 부패에 대한 각종 사례의 유형과 성격 그리고 메카니즘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분석에 이용되는 자료는 로동신문과 북한에서 출간된 각종 서적, 그리고 내외통신 등을 통하여 13건을 수집하였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례수는 매우 적은 것이지만 북한체제의 特殊性을 고려할 때는 어느 정도 妥當性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수집된 자료는 주로 70년대와 80년대에 발생한 것들이다. 한편 이러한 사례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기존의 연구를 참고하였으나 많은 도움은 되지 못하였다.

## II. 官僚腐敗의 概念과 接近方法

### 1. 官僚腐敗의 概念定義와 限界

특정한 문제의 연구나 조사에 있어서 주요한 요소의 概念化는 연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이다.<sup>1)</sup> 즉 명확한 개념정의는 용어의 모호함에 따른 불명확성을 최소화시켜 연구의 論理性이나 妥當性을 높여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념을 규정하는 일이 연구의 출발점 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개념이 본래 내포하고 있는 抽象性의 정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현상에 대한 이해는 연구자의 경험, 사고, 환경, 그리고 시대에 따라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官僚腐敗(Bureaucratic Corruption or Pathology)의 경우에도 예외일 수는 없다.<sup>2)</sup> 즉 부패현상은 특정한 국가, 사회의 정치제도, 국민의 가치관 내지는 도덕성, 그리고 사회적 정향을 반영하는 것이므로,<sup>3)</sup> 부패의 개념에 대한 연구자들의 견해는 매우 다양하며 통일적인 개념정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왔다. 또한 개념정의를 시도하였어도 영속적이고 세밀한 부분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을 규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sup>4)</sup> 학자들은 지나치게 세밀한 개념화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포괄적인 정의 혹은 研究目的에만 한정된 부분적 개념정의를 시도하였다.

부패에 관한 여러 논문을 모아서 편집, 정리한 Heidenheimer도 상이한 사회적, 정치적 상황하에서 規範이 어떻게 행태에 관련되는가를 깊이 통찰하기 위해서는 文化橫斷的 比較方法(Cross-cultural and comparative approach)을 채택하지 않으

1) Thomas D. Cook, et al., Quasi Experimentation(Chicago : Rand McNally College Publishing Co., 1989), pp. 1--30.

2) 이하에는 병리(Pathology)라는 용어 대신에 부패로 통일하여 쓰기로 한다. 학자에 따라서 엄격한 구별을 하기도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엄격한 구별은 피하며, 필요에 따라서 혼용하기도 할 것이다.

3) James C. Scott., Comparative Political Corruption (Englewood Cliffs, N. J. : Prentice-Hall, 1972), p. 3.

4) Michael Johnstone, "The Political Consequences of Corruption" Comparative Politics(July, 1986), p. 460.

면 안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sup>5)</sup> 즉 이러한 주장은 개념정의가 갖는 본래적 한계성과 특히 관료부패에 대한 개념정의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비교방법을 택하였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Heidenheimer는 이러한 비교방법을 택하여 부패의 개념을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하여 파악하였다. 즉 첫째는 公職과 관련된 개념(Public-office-centered definition), 둘째는 市場중심적 개념(Market-centered definition), 셋째는 公益과 관련된 개념(Public-interest-definition)으로 분류하였다.<sup>6)</sup> 그러나 이 세 가지 범주 가운데 그 어느 하나도 독자적으로 완전무결한 정의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특히 그의 分類는 單一 基準에 의해서 분류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腐敗의 主體, 結果 그리고 原因등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성을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Heidenheimer의 분류 이외에도 ASIAN DRAMA에서 “부패란 공공생활에서 차지하는 특수한 지위나 공직과 관계있는 영향력이나 권력을 이기적으로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태나 수취행위의 모든 형태”라고 규정한 Myrdal,<sup>7)</sup> “부패란 실질적인 공공복지에 이익이 되는 행동, 상징, 기구에 대해 합리적 이성적으로 사심없이 헌신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도덕적 무능력”이라고 규정한 Dobel,<sup>8)</sup> “공직자가 사리사욕을 위해서 공직에 부수되는 공권력을 남용하거나 공직에 있음을 기회로 영향력을 직·간접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및 의무불이행 또는 부당행위 등으로 규범적 의무를 일탈하는 경우”로 규정한 전수일,<sup>9)</sup> “발전도상국에 있어서 관료의 행태, 관료체제의 역기능, 그리고 사회-문화적 환경의 수요와 공급의 3자적 관계의 부산물”이라고 부패의 개념을 규정한 김영중 등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고 있다<sup>10)</sup>

결국 이렇게 다양한 개념정의는 부패현상 자체가 그 나라의 政治制度 및 社會

5) Arnold S. Heidenheimer, Political Corruption (N. Y. : Holt, Rinehart and Winston, 1990), preface. V.

6) Ibid., pp.4-6.

7) G. Myrdal, Asian Drama, (N. Y. : Pantheon Books Inc., 1968), pp. 200-210.

8) J. P. Dobel, “The Corruption of a State”, APSR, Vol. 72, No. 1(1984), p. 958.

9) 전수일, “관료부패연구 : 사회문화적 접근”, 한국행정학보, Vol. 18, No. 1(1984), pp. 145f.

10) 김영중, “개발도상국가들의 관료부패모형정립”, 한국행정학보, Vol. 19, No. 2(1985), p. 143.

文化的 環境과 깊이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 전통과도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관료부패의 개념을 임직하게 정의하기란 거의 불가능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官僚腐敗에 대한 명확하고 세밀한 정의는 피하고자 한다. 이러한 개념정의의 태도는 비록 개념 자체의 설명에 대한 완벽성은 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한정된 목적을 지닌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오히려 현실적합성을 결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관료부패 자체가 準公式文化(Quasi-formal culture) 내지는 地下文化(Underground culture)의 성격을 지녀<sup>11)</sup> 관료부패의 실체를 완벽하게 파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념화 자체가 많은 한계와 오류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지나친 세련화 또는 포괄성은 오히려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개념화작업에 앞서서 필요한 것은 어떻게 관료부패를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입장 내지는 시각에 대한 것이다. 즉 어느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관료부패의 본체에 대한 이해가 상이해지기 때문이다.

## 2. 官僚腐敗에 대한 既存의 論議 및 限界

官僚腐敗에 대한 연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꼭 접할 필요성이 있는 책으로서 J. C. Scott의 Comparative Political Corruption(Prentice-Hall, 1972)과 A. J. Heidenheimer의 Political Corruption(Holt, Rinehart and Winston, 1970)을 들 수 있다. 물론 두 책 다 比較論的 接近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지만, 방법론이나 연구경향을 파악하는데 있어서는 하이덴하이머의 저서가 보다 적절하다. 왜냐하면 이 책은 저자 자신의 견해를 포함하여 기존의 부패에 관련된 문헌을 나름대로 정리하여 분류, 편집한 책이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경향의 파악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결국 이 두 책의 공통점을 연구경향이라는 점에서 살펴보면 그것은 곧 관료부패의 연구의 한계와 일치하는 것이다. 즉 앞서도 지적하였듯이 腐敗의 實體에 접근하는 데에 있어서의 한계 때문에 결국 비교론을 채택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11) 김혜동, “관료부패에 관한 연구(I)”,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논총, Vol. X, No. 1 (1972), p. 171.

한편 1990년에 나온 Heidenheimer(M. Johnstone과 공동으로 편집)의 2판에는 1970년의 초판과는 상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전반적인 책의 체계가 변화하였음은 물론, 특히 관료부패를 보는 시각과 연구방법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2판에는 1판에 이미 수록이 되었던 논문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도 하지만 새로운 연구방법과 시각을 반영한 논문들이 추가로 수록됨과 아울러, 단편적인 나열식의 비교론적 시각에서의 책 구성을 어느 정도 탈피하고 體制論的 接近을 이용한 논문을 포함시키는 등 가급적 학문적 일반화를 시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곧 1960년대까지의 機能主義的 혹은 比較論的 視角에 의한 연구의 한계를 인식함과 아울러 새로운 시각에서의 다양한 접근이 가능함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12)</sup> 특히 2판에 새로이 추가된 논문들 중에서 B. E. Cronbeck, J. M. Kramer, Susan Rose-Ackerman, 그리고 M. Johnstone 등의 논문들에서 이러한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sup>13)</sup>

1960년대까지 주류를 이루었던 연구방법이 기능주의적 접근방법(Functionalist Approach)이었다면, 1970년대 이후에 등장한 주도적인 접근방법은 後期-機能主義(Post-Functionalist Approach)로 분류될 수 있다.<sup>14)</sup> 기능주의적 접근방법에서는 관료부패를 국가가 성장하여 어느 정도 발전단계에 들어섰을 때에는 자연적으로 감소 혹은 소멸되는 자기파괴적인 것(Self-Destructive), 즉 어느 정도 안정상태에 도달하지 못한 근대화 도상에 있는 국가들이 직면하게 되는 어쩔 수 없는 病理現象, 혹은 후진국에서 등장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선진국을 기준으로 한 近代化論에 입각하여 관료부패의 원인 내지는 조건을 설명할 경우, 결국 관료부패는 어쩔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즉 관료부패는 發展의 從屬變數로 간주되어 일종의 副產物(byproduct)로서 취급이 되며, 정치, 경제의 발전에 있어서 순기능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하며, 비도덕적인 개인으로서의 공무원에 의해서 사익을 위해 일시적으로 자행되는 개인적 행동으로

12) Simcha B. Werner, "New Directions in the Study of Administrative Corruption", PAR, Vol. 43, No. 2(1983).

13) Heidenheimer(1990)를 참고할 것.

14) Werner, op. cit., p. 146.

이해된다.<sup>15)</sup> 이러한 경우 대개의 부패 억제책으로서 제시되는 것들은 법률적이거나 윤리규범과 같은 것에 의존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1970년대 후반 이후부터는 상당히 쇠퇴하고, 대신 관료부패란 자기파괴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영속적인 것(Self-perpetuating)으로서, 國家가 성장 발전하여 어느 정도 안정성을 유지한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소멸 혹은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양한 먹이(여기서는 원인)를 먹고 사는 하나의 거대한 괴물로서 파악하는 후기기능주의가 등장하였다. 그러면서 오히려 부패의 擴散效果(Spillover Effect)를 보다 중요시하게 되었다.<sup>16)</sup> 이러한 시각의 기본적 전제로서 관료부패에 있어서 “後援者-顧客의 網”(Patron-Client Network)은 정치발전이나 제도화의 어떤 단계에서도 발견될 수 있으며,<sup>17)</sup> 사회경제적 혹은 정치적 불평등에 의해서 부패가 촉진될 수 있으며,<sup>18)</sup> 정부의 통제기능도 역으로 부패를 더욱 다양하게 하고 촉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sup>19)</sup> 이러한 시각 이외에도 다양한 시각을 발견할 수 있으나 그것들은 이 두 유형의 아류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위에서 논의한 것들은 관료부패에 대한 접근법의 입장에서 본다면 크게 個人的 接近(Individual Approach), 社會文化的 接近(Sociocultural Approach), 制度的 接近(Institutional Approach), 그리고 體制的 接近(Systematic Approach)으로 분류될 수 있다.

먼저 여기서 개인적 접근이라는 것은, 부패라는 것은 개인들의 행동의 결과로서, 개인이나 소규모의 집단이 공적 역할을 지배하는 법규를 침해할 경우, 부패의 원인을 이러한 행위에 참여한 개인들의 자질 혹은 본성(Nature)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를 말한다.<sup>20)</sup> 즉 개인의 성격이라든가 독특한 습성이 부패행태와 밀접

15) J. S. Nye, “Corruption and Political Development : A Cost-Benefit Analysis”, APSR, Vol. 61(June, 1967), p. 424.

16) Werner, op. cit., p. 149.

17) S. Mamoru and H. Auerbach, “Political Corruption and Social Structure”, Asian Survey, Vol. 17(June, 1977)

18) Dobel, op. cit.

19) S. P. Varma, “Corruption and Political Development in India”, PSR, Vol. 13, Nos. 1-4 (1977), pp. 157-179.

20) Michael Johnstone, Political Corruption and Public Policy in America(Belmont, Calif. : Brooks/Cole, 1982), pp. 12-16.



한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sup>21)</sup>

또한 흔히 부패를 당사자의 非道德性이나 非倫理性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으며, 이러한 비도덕적 행위를 증오하고 처벌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이 가장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서 월급이 적어서 부패행위를 한다든지 혹은 윤리의식수준이 낮아서 부패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설명과 상당히 부합된다.

특히 부패현상이나 행위가 특정상황하에서 또는 어떠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과 달리 왜 그렇게 반응하였는가를 설명할 경우에는 이와 같은 개인적 습성이나 성격에서의 접근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성격론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적 특성에 입각한 접근에는 몇가지 약점이 있다. 첫째는 부패행위가 특정한 형의 인간의 고유한 행위가 아니라는 점이다.<sup>22)</sup> 즉 부패현상은 교학력이나 저학력, 출신의 차이, 그리고 인종의 차이를 막론하고 발견되기 때문이다. 물론 통계적 분석들이 어느 정도의 차이를 설명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일반성을 띤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sup>23)</sup>

두번째 한계는 이러한 개인적 특성에 의하여 부패를 설명하는 것은 우리의 제도나 법률 및 운영이 대체로 완전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 이러한 의미에서 개인적 특성에 의한 접근은 도덕주의자들이 부패를 증오하고 비난하는데 도움이 될 뿐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개인적 미시적 접근은 결국 부패현상의 사회적 혹은 정치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러한 개인적 접근과는 달리 부패가 사회문화적 특성의 소산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즉 특정한 지배적 관습이나 경험적 습성같은 것이 바로 부패를 조장한다고 보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 선물증정의 관행은 바로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즉 공식적인 법규나 규범보다는 사회문화적인 관습을 더욱 우선시하여 일정한 행위를 할 경우 이것도 법규정의 측면에서 볼 경우 틀림없이 부패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의 발생은 開發

21) 김해동, “관료부패의 유형”,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논총, Vol. 28, No. 1, p. 146.

22) Ibid., p. 13.

23) M. Colin, “A critique of Criminolog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89, No. 3, 1983.

途上國이나 後進國의 경우에 있어서 지배적인 내면적 가치관 내지는 규범과 표면적인 실제 행동기준과의 괴리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에 치중할 경우, 앞서의 경우처럼 어느 정도 한계를 지니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약점은 관료부패를 비판 내지 판단하는 근거로서 대개 서구적 기준에 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우리의 전통적 규범이나 윤리기준이 서구적 규범의 측면에서 볼 때 매우 비합리적이며, 결국 이러한 판단은 韓國社會가 완전히 西歐化가 될 때까지는 부패가 성행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부패를 정당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관료부패를 설명하는 또 하나의 입장으로서는 制度的 接近을 들 수 있다. 말하자면 사회의 法과 制度上的 缺陷이나 또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관리기구들과 그 운영상의 문제들, 또는 이러한 것들의 예기치 않았던 부작용등이 부정부패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특히 어떠한 정책이나 전략상의 유인들이 부패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정치나 선거제도의 운영, 그리고 정부 각 기관의 관리와 그 과정이나 절차들이 너무나 이상에 치우쳐 있다거나 형식적이며, 현실성을 무시하고 있어서 비현실적인 경우에는 각종 부정부패현상들이 야기된다는 것을 특히 후진국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앞서의 사회문화적 입장과도 연결된다. 특히 이러한 제도적 측면에서의 부패행태는 관료의 상당한 裁量權 行使를 수반하기도 한다. 즉 모호한 법령에 대한 공무원의 재량적, 자의적 해석에 의해서 부패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제도 또는 관리론은 부정부패현상이 단순히 피상적인 개인적 성격, 행태상의 변칙에서가 아니라 보다 더 넓은 정책적 안목을 제시하여 준다. 또한 부정부패에 대한 보다 더 넓은 사회적 시각을 제시해 준다. 즉 제도나 관리상의 개혁은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보다 더 많은 계층의 행태변화를 가능하게 한다. 사실상 제도나 관리는 인간의 습성 또는 행태를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접근의 장점중의 하나는 바로 부패를 위한 제도적 처방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접근법의 가장 큰 단점은 보다 폭 넓은 정치, 사회적 맥락을 무시한 채 조직이나 법규를 분석한다는 것이다. 즉 조직, 법규의 운영은 정치, 사회의 커다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접근법도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악법의 경우처럼 잘못된 정책 또는 규칙 등은 이것을 대상

자들이 지키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혀 예기치 못했던 부작용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결국 위에서 지적한 접근법들은 극히 부분적인 설명력만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특정 사회 혹은 체제의 성격과 관련된 構造的 腐敗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한 사회 혹은 국가에서 발생하는 부패, 특히 관료부패의 상당부분은 미시적인 접근이 아닌 거시적인 접근에 의해서만 이해 혹은 설명될 수 있으며, 이러한 부패는 또한 부분적인 치유책에 의해서 해결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지적한 한계를 극복하고 거시적인 접근을 위해서 體制論的인 接近을 채택하고자 하며, 관료부패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체제론적 접근의 유용성은 다음의 제 3 절에서 지적하고자 하며, 본 연구와 관련된 體制論에 대한 논의는 제 3 장에서 정리하고자 한다.

### 3. 官僚腐敗에 대한 體制論的 接近의 有用性

사실상 어느 사회 혹은 체제에서나 발견되는 官僚腐敗는 그 종류에 있어서 매우 다양하게 정리될 수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부패를 설명하는 방법 내지는 접근법도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체제론적 접근도 결국은 관료부패를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법의 하나이며, 체제론적 접근이 설명할 수 있는 관료부패의 범위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발견되는 관료부패가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을 고려하고, 그러한 부패의 상당부분은 결국 체제론적 접근에 의해서만 적절히 설명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체제론적 접근은 관료부패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상당한 유용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논의되는 체제론적 접근은 관료부패의 원인을 體制的 혹은 全體 措置的 水準에서 논의를 하고, 특히 체제(여기서는 정치, 경제,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운영양식, 체제(여기서는 정부)와 환경과의 관계(운영양식의 측면), 그리고 정부의 운영양식에서 관료부패의 원인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설명은 개인이나 제도의 결함 혹은 실패가 아닌, 부패현상을 中立的이고 分析的인 視角에서 체제의 성격으로부터 기인하는 하나의 결과(results) 혹은 영향(impact)으로 보는 것이다.<sup>24)</sup>

24) Scott, p.3.

여기서 체제(System)란 하나의 정규적이고 일관성있는 행동(Action)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곧 체제의 운영양식과 성격을 밝힘으로써 체제구성원들의 성격과 행동양식을 유추할 수 있고, 관료부패는 바로 체제의 성격과 구성원들의 성격을 밝힘으로써 역으로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체제가 일정한 운영양식을 갖고 있고, 또한 그 結果(政策)가 체제의 성격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결국 여기에서도 여전히 정책의 혜택을 받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집단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즉 정책에 순응하는지 혹은 정책에 역행하여 정책을 변경시키려고 할 것이다. 여기서 관련자들간의 일정한 거래등의 부패행위가 발견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체제의 기존 정책에 대해서 관련자들이 취할 수 있는 행위의 종류도 또한 체제의 성격에 의해서 규정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체제가 구성원들의 의사 혹은 요구를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하느냐 하는 것이다.

앞서도 지적하였듯이 이러한 體制論도 여전히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즉 이러한 입장에서는 손쉬운 혹은 간단한 부패통제의 수단이나 방법의 강구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체제론적 설명은 체계적 구조적 설명은 용이하지만, 한편에서는 체제적 구조적 개혁을 못할 경우에는 대개 체념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들에도 불구하고 체제론적 접근을 수용하고자 한다. 특히 그것은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될 수 있는 남북한의 比較研究에 있어서도 이념적 편견을 배제한 보다 客觀的인 研究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 Ⅲ. 體制理論, 體制類型 그리고 體制病理(體制腐敗)

#### 1. 體制的 概念

體制論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체제론에 대한 연구는 비단 사회학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학에서도 주요 접근법의 하나로서 많은 이론적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학자들마다 체제라는 개념의 정의에 대해서는 다양성을 나타내고 있다.

우선 體制(System)라고 할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하나는 一般體制理論(General System Theory)에서 논의되고 있는 체제로서의 개념을 들 수 있고, 또 하나의 개념은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나 하는 政治的 理念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理想的 體制(Ideological System)를 들 수 있다.<sup>25)</sup> 동일한 개념으로서 표현되지만 이 두 개념간에는 상당한 의미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후자의 정치적 이념으로서의 체제논의는 이미 체제에 대한 선호, 판단, 선택, 혹은 긍정과 부정이라는 가치판단을 전제로 한 논의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에서 체제론을 수용할 경우에는 논의에 있어서 가치판단과 편견을 배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또한 이때의 논의의 방향은 결국 다른 체제에 대한 부정적 판단등으로 결론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학문적 연구에 있어서 이러한 이념적 측면에서의 체제론적 접근을 수용하는 데는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념적 논의나 판단 등을 비교적 배제하기가 용이하고 객관적 연구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전자의 입장에서의 체제개념, 즉 일반체제이론에서의 체제개념을 수용하여 논의를 정리하고자 한다. 물론 여기서 논의되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기존 학자들의 연구결과를 수용할 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재해석하는 등의 수정이 어느 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체제라고 할 경우 그것은 흔히 “相互關係(interrelations)를 가진 일련의

25) 이은죽, “남북한 사회체제 강약점 분석”, 통일원, 남북한 사회문화역량 종합평가, (1990), p. 39.

요소들의 구성물 혹은 集合體(set),<sup>26)</sup> 혹은 “상관관계와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을 띤 부분요소들로 구성된 하나의 全體(wholes)”를 지칭하기도 한다.<sup>27)</sup> 따라서 체제를 이렇게 정의할 경우 이에 관련된 주요 개념들로서 체제, 下位體制(sub-system), 環境(boundary), 領土(domain), 資源(resources), 環境(environment), 그리고 相互作用(interaction)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체제개념, 성격 내지는 구조를 적절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관련 변수들에 대한 적절한 정리가 있어야 한다.

먼저 하위체제라는 것은 전체로서의 체제는 그것을 구성하는 부분요소들로서 이루어지며, 결국 이 부분요소들은 상호의존관계속에서 相關關係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하위요소들은 항상 전체로서의 체제 혹은 다른 하위 요소들과의 관계속에서 적절히 이해될 수 있으며, 이렇게 하위요소들간에 상호관계가 있을 경우 어떤 한 부분의 성격 혹은 구조의 변화는 전체체제에 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전체와 다른 하위요소들의 변화는 특정 부분의 변화를 가져 온다고 할 수 있다.<sup>28)</sup> 또한 이렇게 보면 결국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나”(whole is greater than the sum of its parts)라는 말은 전체 체제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構成的 特徵은 개별적으로 분리 논의되는 하위요소들의 특징으로부터 적절하게 도출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곧 체제이론을 분석에 이용할 경우에는 개별적인 하위체제에 대한 논의는 일정한 한계가 있으며, 결국 전체로서만 적절히 논의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체제이든지, 즉 체제가 개방적이든 혹은 폐쇄적이든 간에 경계를 보유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서의 경계는 물리적인 것일 수도 있고 추상적인 것일 수도 있다. 즉 물리적 경계는 흔히 국가체제의 경우 국경선으로 논의될 수 있지만 추상적으로 경계를 논의할 경우에는 다른 체제가 개입하는 것을 막는 법체제나 이념적 가치 까지도 하나의 체제의 경계로서 논의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

26) F. Kenneth Berrien, *General and Social Systems*(New Brunswick, N. J. : Rutgers Univ. Press, 1968), p. 1.

27) 이운축, *op. cit.*, p. 39.

28) Ludwig von Bertalanffy, *General Systems Theory : Foundations, Development, Applications*(N. Y. : George Braziller, 1968), pp. 55f.

히 이러한 추상적 경계는 그 사회의 중심세력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사회의 경계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그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 혹은 이념이 논의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논의는 그 체제가 체제환경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가 까지도 결정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체제의 영토라는 것은 곧 그 체제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範圍를 말한다. 즉 이러한 논의는 영토라는 것은 앞서의 논의처럼 물리적 자연적으로 결정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상적 포괄적으로도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영토의 개념은 체제로서의 국가에 대한 하위개념으로서의 경제, 사회등 개별적인 하위체제에 적용시킬 때 더욱 의미가 있다. 즉 하위체제들의 영토라는 것은 결국 그 하위체제들의 自律的인 運營의 領域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영토가 과연 얼마나 自律性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체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될 수 있는 것으로서 資源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즉 자원은 체제의 생성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임은 물론 체제가 유지 혹은 확대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즉 체제에 있어서의 자원은 곧 사람에게 있어서의 공기와 같은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조직이 이러한 자원을 동원하는데 있어서 선택될 수 있는 戰略의 範圍는 체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즉 개방체제로 체제를 정의할 경우 조직에 필요한 資源은 어느 정도 環境에 의존할 수 있지만, 체제를 폐쇄적인 것으로 간주할 경우에는 체제운영에 필요한 자원을 내부적으로 조달, 즉 自給 自足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결국 체제와 환경이라는 相互作用의 관계속에서 즉 경쟁 혹은 협조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논의가 정리될 수 있는 반면에, 후자의 경우는 자원을 내부적으로 얼마나 동원할 수 있느냐 하는 점으로서 체제의 능력 혹은 성격이 결정될 것이다.

체제에서 외부적 조건으로서 環境을 논할 경우 그것은 개방체제를 전제로 한 논의이다. 특히 이러한 환경은 그 체제의 유지에 필요한 자원의 공급처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게 논의될 수 있으며, 이것은 또한 체제의 관리전략과 깊이 연관된다는 것이다. 즉 체제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환경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는 것은 바로 체제의 운영 혹은 관리전략과 밀접히 연관된다는 점이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체제를 어떠한 성격으로 규정하느냐 하는 것과 아

올려 환경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나 하는 것이다. 만일 환경을 잘못 규정하였을 경우 그것은 체제의 운영전략에 있어서 커다란 문제점을 야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체제에 있어서의 相互作用은 체제와 환경간의 관계로서 규정할 수 있으며, 이것은 또한 양자의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적인 관계라는 것으로서, 상호작용이 어느 일방에 의해서만 규정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특히 환경에서의 요구가 體制의 維持와 관련된 운영 혹은 관리전략과 상치할 경우에는 갈등이 노출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경우 체제가 취할 수 있는 戰略은 體制를 環境의 요구와는 무관한 폐쇄체제로 관리하든지 혹은 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취하는 두가지 전략만이 존재한다.

이상에서 논의한 체제의 개념과 이 개념의 속성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현실에서 그대로 적용시키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체제의 모든 것을 고려하고 환경의 모든 것을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에서 이상의 논의도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 2. 體制의 環境과 體制類型, 그리고 對應樣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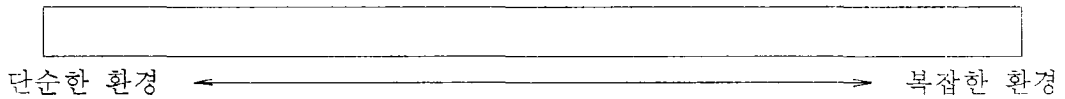
### 1) 體制의 環境과 類型

체제의 開放性을 인정할 경우 체제 혹은 조직을 둘러싼 환경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곧 체제의 성격이나 대응전략 혹은 관리전략이 결국은 환경의 성격의 영향을 상당부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이러한 체제의 환경은 이것을 단순히 외생적 조건으로만 인식할 경우에는 체제에 緊張을 유발하는 등의 壓力要因으로서 피동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되지만, 오히려 이와는 반대로 환경을 체제가 성장하고 확대될 수 있는 장으로서 인식할 경우 오히려 체제에 대한 하나의 자극제로서 체제의 정체성을 쇄신시킬 수 있는 기능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은 매우 다양하게 논의될 수 있다.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간에 엄격한 구분을 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며 다만 몇가지 변수의 측면에서 類型化가 가능할 것이다. 즉 이러한 유형은 일정한 연속선상위에서만 논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다음과 같은 간단한 연속선상에서 환경의 분류를 시도할 수도 있다.





이러한 단순한 도식이외에도 Sutherland(1975)는 몇가지 변수를 이용하여 환경의 유형화작업을 하였다.<sup>29)</sup>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기초로 하여 환경의 유형화를 논하고자 한다.

그는 환경을 분류하는데 있어서 환경내의 資源配分機能, 環境 자체의 性格 혹은 方向, 그리고 환경과 다른 환경 혹은 체제와의 關係등을 기준으로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즉 安定的 自給自足的인 環境(Autarchic), 共生的 環境(Symbiont), 競爭的 環境(Competitive), 그리고 激動的 環境(Turbulent)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성격으로 논하였다. 다음의 <표 1>은 환경의 유형과 성격을 간단히 나타낸 것이다.

<표 1> 環境의 類型과 性格

환경유형	성 격	자원배분기능	환경의 방향	접촉의 성격
안정적 자급자족적	매우 단순 (결정적)	동질적 자원 배분(무작위)	보존 또는 유 지	항상 폐쇄적
공생적	상당수준 계획가능	분화된 자원 (집합적)	타협	고도의 선택성
경쟁적 (반응적)	상당히 추계적	배분된 자원의 계층성	개발 또는 개 척	어느정도 개방적
격동적 (의존적)	매우 복잡 (비결정적)	자원배분의 비 예측성	대응 (탄력성)	상당히 개방적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정적 자급자족적인 환경은 그 성격상 매우 단순한 형태로서 구조적으로나 기능상으로도 분화의 정도가 매우 약하고 복잡성이 매우 적은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하에서는 환경 자체나 환경내에서의 체제변화의 예측과 자원의 변화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고, 또한 예측력의 정도도 매

29) John W. Sutherland, Systems(N. Y. : Litton, 1975)를 참고할 것.

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환경하에서 배분되는 자원의 성격은 매우 동질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은 다른 환경 혹은 문화와의 접촉에 대해서 극히 폐쇄적이며, 기존의 환경을 가급적이면 보존 또는 유지하려는 성향을 지니고 있어서, 이러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체제도 제한될 수 밖에 없다.

두번째 환경유형인 공생적 환경은 첫번째 환경유형 보다는 분화되고 복잡한 모습을 나타낸다. 따라서 그러한 환경에 있어서의 예측력은 전자보다 상대적으로 낮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일정한 계획의 수립이 요구된다. 즉 인위적인 계획에 의해서 환경 혹은 체제상의 변화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 것이다. 또한 환경내의 체제들이 어느 정도 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체제에 배분되는 자원은 성격상 다양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환경하에서는 다른 환경과의 접촉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타협의 전략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환경은 환경의 개별적인 요소들이 전문화라는 기준에 의해서 배치될 것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체제의 성격을 제한한다. 여기서 공생의 정도는 다음의 몇가지 기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sup>30)</sup>

- ① 집합체들간의 분화의 정도
- ② 체제들간의 분화의 정도(역으로 자급자족성의 결여의 정도)
- ③ 집합체들 사이의 거리
- ④ 집적된 자원에 대한 수요의 비탄력성 정도

세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경쟁적 환경유형은 환경에서의 예측성이 상당히 어려운 반응적이고 경쟁적인 상황이라는 것이다. 즉 환경에서 동원되는 資源이 그 환경내에서 충족될 수 없음은 물론 환경에서의 자원분배는 일정한 계층성에 의해서 분류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에서 환경이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새로운 환경과 접촉을 적극적으로 피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환경내에서 새로운 자원을 개발해 내야만 한다. 이르기 위해서는 환경은 다른 환경이나 체제의 등장이나 접촉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의 개방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체제는 자원의 고갈에 따른 엔트로피를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환경유형으로서 격동적 환경을 들 수 있다. 즉 환경에 존재하는 체 속성들이 이질적이고 변화가 급격한 것을 말한다. 결국 첫번째 환경과 가장 대칭되

30) Ibid., p. 134.

는 성격을 지니고 있는 유형으로서 환경의 존재는 항상 다른 환경과 관련해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 독단적으로는 자원을 조달할 수 없으며, 다른 환경에 상당히 의존하게 되는 매우 분화되고 복합적인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이러한 환경은 다른 환경에 대해서 거의 완전히 開放的일 수 밖에 없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의 對應性, 彈力性, 혹은 伸縮性이 매우 높아야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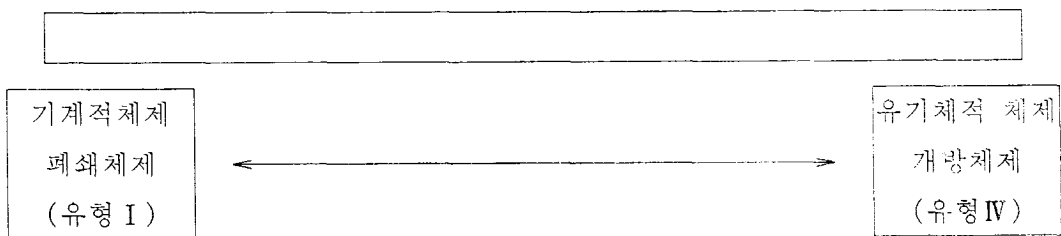
이렇게 4가지로 환경을 유형화할 수 있는데, 이러한 유형을 모두 발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즉 앞서도 지적하였듯이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일이며, 이러한 유형을 현실에서 찾기가 어려운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

2) 體制類型

위에서 논의한 환경의 유형은 결국 그러한 환경하에서 적응할 수 있는 체제의 유형을 제한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체제가 적절하게 유지 또는 성장하기 위해서는 환경에 적절히 조응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또한 그러한 환경의 변화에 체제도 적응적 변화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환경과 체제의 적절한 적응 내지 조응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하겠다.

먼저 가장 일반적으로는 논의가 많이 이루어진 체제의 분류로서 開放的 體制(open system)와 閉鎖的 體制(closed system)로의 분류, 機械的 體制(mechanical system)와 有機體的 體制(organic system)로의 분류를 들 수 있다. 이것을 간단한 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體制의 分類



먼저 폐쇄체제는 체제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으로부터 격리된 체제로서 이러한 체제는 결국 체제내에 엔트로피(Entropy)가 증가하고, 결국에는 균형상태에서

과정이 정지되어 버린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의 엔트로피는 확률치의 개념으로서, 이러한 폐쇄체제는 가장 확률이 높은 분포상태로 가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무질서의 상태인 것이다. 예를 들어서 체제가 환경과의 交互作用을 중지하고 체제운영에 필요한 자원을 내부적으로만 동원할 경우 이것이 불가능해질 때 이러한 엔트로피의 개념이 이용될 수 있다. 반면에 개방체제는 체제를 둘러싼 환경과 물질 또는 자원을 상호 교환하는 체제로서 체제의 구성부분에 상응하는 자원을 수입하고 산출을 하면서 체제를 구성하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질서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組織化된 複雜性”(organized complexity)인 것이다.<sup>31)</sup>

한편 위에서 지적한 폐쇄체제에 상응하는 조직유형으로서 기계적 체제를 들 수 있다. 이 기계적 체제는 보통 잘 한정된 유형의 체제경계를 가지고 있어서 그 경계는 체제를 출입하는 제 세력을 다소 선택하도록 내부적으로 조정이 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러한 체제의 구성부분은 단정하고 관찰될 수 있는 계층으로 배열되어 있어서 한 수준의 속성은 다른 수준의 연장이 되는 경향이 있고, 각 수준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결정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체제의 각 부분은 통상 고도로 제약되어 있어서 허용된 반응은 극히 한정되어 있다. 반면에 유기체적 체제는 환경과 외부세력에 대하여 고도로 개방적이다. 따라서 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결정요인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분석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그리고 기계적 체제와는 달리 이 개방적 체제의 제 부분들은 단정하고 안정된 계층으로 배열된 것이 아니라 추계적으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각 부분들의 相互關係의 구조와 방향은 일반적으로 환경의 부분적 영향에 대한 반응으로서 거의 부단하게 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분법적으로 체제를 분류하여 설명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의 극단적 표현으로서, 위의 그림처럼 완전히 구분될 수 없고 일정한 연속선상에서 파악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후술하게 될 체제의 유형도 위의 그림에서 처럼 연속선상에서 발견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체제의 유형은 앞서 논의한 4개의 환경유형에 따라 동일하게 4개로 분류할 수 있다. 다음 <표 2>는 환경유형에 대응할 수 있는 4개의 體制類型과 각각

31) Bertalanffy, op. cit., p. 39.

의 체제유형에 따른 성격을 나타낸 것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환경유형에 따라 체제를 결정적 체제(deterministic system), 약간 추계적 체제(moderately stochastic system), 심히 추계적 체제(severely stochastic system), 그리고 비결정적 체제(indeterminate system)로 분류 할 수 있다.

〈표 2〉 環境과 體制類型 및 性格

환경유형	체제유형	체제의 구조 기능상의 특징	정보산출의 성 격	실세계의 예 시
안정적 자급자족적	결정적  (유형 I)	구조적, 기능적 으로 단절됨	문제해결을 위 한 단일의 정 보를 산출	제도화된 체제
공생적	약간 추계적  (유형 II)	구조적으로 단 절, 기능적으로 통합	일정한 범위를 가진 정보를 산출	관료주의적 체 제
경쟁적 (반응적)	심히 추계적  (유형 III)	구조적, 기능적 으로 통합됨	논리적으로 연 관될 수 있는 대안체제 제시	경쟁적 체제
격동적 (의존적)	비결정적  (유형 IV)	구조적으로 통 합, 기능적으로 단절	최초의 일정한 한계만 제시	생성적 혹은 전문가 체제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유형구분은 일정한 연속선상에서만 적절히 논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구분은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다. 여기서 특히 논의가 필요한 유형은 유형1과 유형2로서 사실상 이 두 유형이 현실적으로 논의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체제의 유형분류에 따른 下位體制의 유형분류는 다음의 〈표 3〉에서 나타나 있다.

〈표 3〉 下位體制의 類型과 性格

체제유형	정치체제	경제체제	사회체제	조직유형
결정적	신정 혹은 엄격한 왕정	농업 혹은 생존유지체제	의례(의식) 주의적 체제	제도주의적 혹은 귀속적 조직
약간 추계적	전체주의 혹은 국수주의	공업 혹은 2차 산업	강제적 사회체제	관료적 혹은 중앙집권적
심히 추계적	민주주의제 혹은 의회제	기술 혹은 혁신용호체제	도구주의적 의도적 체제	분권적 조직
비결정적	무정부주의적	후기산업사회	자발적 혹은 감정적 체제	임시적 조직

여기서의 下位體制의 분류는 결국 체제가 어느 정도 안정성을 유지하고 전체적으로 統合性을 지니기 위해서는 하위체제들간에 일정한 유형상의 적합성이 있어야 함을 뜻한다. 통합성을 결여할 경우에는 결국 다원적인 관리전략이 사용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곧 체제의 능력의 분산과 갈등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체제의 관리와 관련된 行政體制의 類型과 性格에 대한 표는 다음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에서 보면 체제의 성격이 어떠한지라는 바로 체제를 관리하는 행정체제의 성격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표 4〉 行政體制의 類型과 性格

체제유형	행정체제의 유형	의사결정의 재량성 정도	의사결정의 전제
결정적	사회구조와 공존하는 공존체제	전혀 없음 (모든 행동은 의례와 도그마에 의해 제약)	신비감, 경전 혹은 도그마
약간 추계적	계층제적 혹은 집권화된 체제	극히 조금 있음 (대개의 행동은 구속됨)	선례, 전통, 혹은 임법화된 약속

체제유형	행정체제의 유형	의사결정의 재량성 정도	의사결정의 전제
심히 추계적	분권화된 체제	어느 정도 있음 (어느정도 허용된 전문성등 범위내)	합리주의 혹은 과학 성
비결정적	무정형의 혹은 임시 적 행정조직	상당히 허용됨 (가끔씩 형식적 제 약이 따름)	직감 혹은 특수한 판단

그리고 각 체제유형에 따른 體制管理樣式 내지는 統制樣式은 다음의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즉 체제유형에 따라 체제에서 용인하는 혹은 수용성이 높은 통제 전략이 사용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체제유형과 통제양식이 적절하게 조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비효율성 혹은 비능률성이 초래될 수도 있다. 이러한 통제의 효율성에 대한 표는 다음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상향으로 갈수록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좌하향으로 갈수록 지나친 통제비용의 지출에 따른 비능률성을 초래한다고 할 수 있다.

<표 5> 體制類型과 統制의 樣式

체제유형	행정유형	통제양식	권위의 규범적기초	바람직한 행동양식
결정적	사회구조와 공 존한 공존체제	의식 도그마 관습적 제도화	전통과 신비적 요인	기계적 복종 (무저항성)
약간 추계적	계층제적 혹은 집권화된 체제	잠재적, 직접적 강제. 규칙 계획	계층제적 지위	계획성과 예측 성
심히 추계적	분권화된 체제	합리적 잇점 혹은 객관적 감사	전문성 혹은 이해	혁신과 근면성
비결정적	무정형의 혹은 임시적 체제	자율적 규제 전문가적 윤리	자유로운 의사 결정자인 개인	창조성(변화지 향성)

〈표 6〉 體制와 統制의 效率性

분 류	체 제 유 형			
	유 형 IV	유 형 I	유 형 II	유 형 III
의 식 과 도 그 마	X			
강 제 와 규 칙, 계 획		X		
합 리 적 성 과 객 관 적 감 사			X	
자 율 적 규 제 전 문 가 윤 리				X

### 3. 體制病理(System Pathology) 혹은 腐敗

#### 1) 環境, 體制 그리고 腐敗

앞서도 논의하였지만 體制論的인 立場에서 부패를 볼 경우 개인적인 부패 보다는 체제적 병리 혹은 부패(Systematic Corruption)가 더욱 문제가 되며, 이러한 부패는 흔히 “制度化된 腐敗(institutionalized corruption)”라고도 불리우며, 이 부패는 또한 Johnstone이 말하는 “危機腐敗(Crisis Corruption)”라고도 불리운다.<sup>32)</sup> 결국 체제론적인 접근이 필요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많은 부패가 사실상 체제의 성격 혹은 체제의 관리 운영상의 문제에서 비롯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의 환경 유형에 대한 논의와 체제의 유형에 대한 논의를 연결시킬 때, 특정한 체제에 대해서 환경은 주어진 것일 수도 있고 체제 자율적으로 규정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환경에 대한 규정 내지는 이해는 결국 체제에 대한 규정 내지는 이해와 연결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체제관리자가 환경을 체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外部變數로서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체제 운영에 환경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환경이 체제에 거의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긴장을 유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환경을 규정할

32) Johnstone, op. cit., p. 93.



경우 체제관리자는 체제유지에 필요한 자원을 내부적으로 거의 무한히 그리고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동원할 수 있어야 하며, 외부적인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내적인 역량을 구축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체제를 관리함에 있어서 체제구성원들이 나타낼 수 있는 葛藤을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지만 체제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고 또한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자원을 내부적으로 동원할 수 있고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할 수 없을 경우 체제관리자는 체제에 대한 통제를 한층 강화시키든지 혹은 환경에 대한 규정을 다시하고 체제관리전략을 수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체제는 엔트로피를 향하여 치닫게 되고 체제는 붕괴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가운데 체제의 하위구성요소들이나 구성원들은 이러한 위기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체제에 대한 의존을 탈피하고 개별적인 생존유지전략을 수립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체제의 안정성을 강화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체제의 엔트로피를 더욱 증가시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체제자체는 계속 폐쇄성을 유지하는 반면에 내부적으로는 자원의 고갈을 맞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체제 자체 혹은 체제관리자의 입장에서는 바로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되는 것이며 이것은 또한 體制腐敗 혹은 體制病理로서 인식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체제를 개방적인 것으로 인식할 경우 체제관리자는 체제의 운영을 위해서 환경과 일정한 교호작용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은 곧 체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관리자 독단적으로 전략을 수립하는데 일정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체제구성원들은 항상 환경을 주체적으로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체제의 운영에 대해서 일정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체제의 자원부족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리고 체제관리자들이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지 못하였을 경우 체제구성원들은 관리자의 교체를 요청하는 등 일정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관리자가 계속적으로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지 못한다면 혹은 교체를 거부할 경우 구성원들은 집단적 행동을 할 수도 있으며, 개별적인 생존전략을 추구하기도 할 것이다. 이러한 개별적 행동을 하는데 있어서 영향력이 있는 구성원들은 체제적 규범과 거리가 있는 전략을 수립하여 자원을 동원하려 할 것이고, 그러한 영향력이 부족한 개인들은 개인적 일탈로 빠지거나 자원동원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체제 자체가 개방적이기 때

분에 자원을 동원하는데 있어서 전자 즉 폐쇄체제가 겪는 엔트로피는 경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결국 체제병리는 개인적인 일탈로 설명하는데는 많은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으며 체제의 속성 혹은 관리전략을 관찰함으로써 적절히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체제관리자가 규정하게 되는 환경의 유형, 체제의 성격, 체제관리전략, 그리고 체제의 통제유형이 적절하게 조응하지 못할 때 체제부패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 2) 體制腐敗의 성격과 構造

체제부패의 성격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즉 체제의 유형이 어떠한 것이냐에 따라 다양하게 논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수준에서 體制腐敗의 성격과 구조를 논하고자 한다.

체제부패는 개인으로서의 어찌할 수 없는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규정하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체제부패에 동참하게 된다. 이것은 곧 체제부패가 상당히 만연되어 있을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체제부패에 저항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다. 즉 체제구성원들이 체제의 입장에서 바람직스럽지 못한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하도록 역설적으로 체제가 강요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체제부패에 저항할 경우에는 오히려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처벌을 받기도 한다.<sup>33)</sup> 이러한 체제적 부패하에서의 일탈된 행동은 制度化된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개인도 인격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독단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소위 역기능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상당히 보호된다. 이러한 체제부패가 성행할 수 있는 조건은 전자에서 논의한 체제적 부정합성 이외에 다음과 같은 추가적 조건을 들 수 있다.

- ① 이러한 체제는 조직 내적 실제와는 모순되는 외적 윤리규범을 갖고 있다.
- ② 공식적 조직규범을 고수하는 조직원은 처벌을 받기도 한다.
- ③ 공식적인 조직규범 위반자는 보호되기도 하며, 설사 적발되었어도 관대한 처벌을 받기도 한다. 오히려 이들을 적발한 사람이 처벌을 받기도 한다.
- ④ 예상되는 내부밀고자들은 항상 위협을 받으며, 침묵하도록 강요를 받는다.

33) Gerald E. Caiden, "Administrative Corruption", PAR, Vol. 27(1977), p. 306.

- ⑤ 체제부패에는 기존 체제의 영향력 있는 개인 혹은 집단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위에서 지적한 것들은 집단적 용인없이 거의 이루어지기가 힘들다고 할 수 있다. 즉 체제내에 있는 대개의 사람들이 그러한 體制腐敗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침묵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체제에서 발생하는 부패는 그 내부적 과정을 파악하기가 매우 힘들고 또한 關聯變數를 개별적으로 도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또한 조직구성원은 변하더라도 체제는 그 속성상 계속성을 유지하려 하기 때문에 조직에 처음 진입할 때는 상당히 깨끗하더라도 이러한 체제에서 일정기간을 보내게 되면 자연스럽게 體制腐敗過程에 편입하게 된다. 이러한 체제부패의 성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체제부패는 폐쇄체제를 영속화시키려고 해서 정치제도 또는 체제에서의 변화를 억제하려는 경향이 있다.
- ② 체제부패는 적개심을 증가시키는 반대세력을 억압하려고 한다. 따라서 폭력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생각되는 체제부패는 더욱 심한 폭력을 수반하기도 한다.
- ③ 체제부패는 계층적, 사회적, 경제적 거리를 더욱 멀게 하며, 사회적 긴장과 무질서를 확대시키고 사회적 통합을 저해한다.
- ④ 체제부패는 개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해로운 행정행위가 오히려 이로운 것처럼 보이게 한다.
- ⑤ 체제부패는 사회적 무질서와 범죄발생을 증가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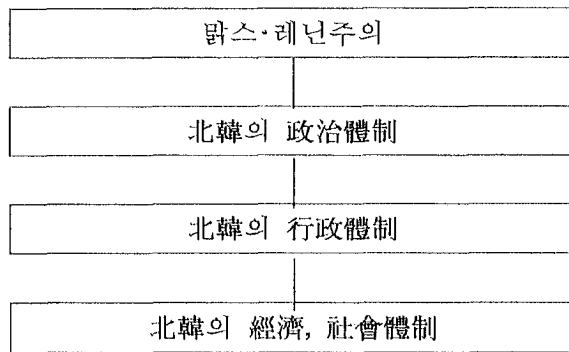
이상에서 논의한 체제부패는 어느 사회에서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발견될 수 있다. 여기서 존재하는 차이점은 결국 이러한 부패에 대해서 체제관리자가 어떠한 관리전략을 수립하는가 하는 것이다.

#### IV. 北韓體制의 類型과 體制病理

##### 1. 北韓體制의 類型 및 性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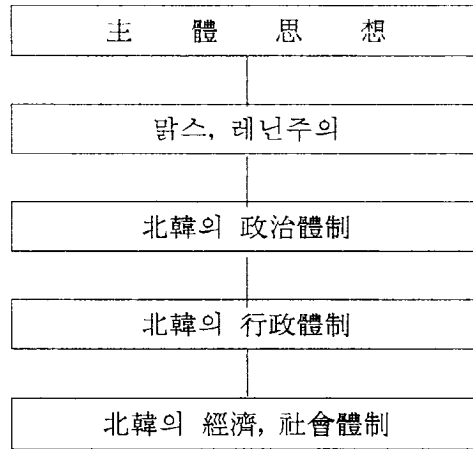
北韓體制의 성격을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반적인 북한체제의 構造를 살펴 보아야 한다. 즉 구체적으로 政治, 經濟 그리고 社會體制의 성격을 논하기 전에 먼저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면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 北韓體制의 一般的 構造



위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체제의 성격을 결정짓는 것은 맑스, 레닌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적 기초위에서 제반 정치체제와 행정체제 등이 운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와서는 이러한 기본적 틀에서 일정한 變形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맑스, 레닌주의에 우선하여 김일성주의적인 主體思想이 보다 上位의 理念으로서 자리잡은 것이다. 오히려 맑스, 레닌주의는 보조적 가치로 전락한 인상마저 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의 그림을 변형한 새로운 그림은 다음 〈그림 3〉과 같다.

〈그림 3〉 修正된 北韓體制의 構造



이러한 수정된 틀을 연구에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후술하겠지만, 북한의 體制的 性格과 政治, 經濟, 社會體制的 性格을 결정짓는데 이러한 주체사상이 중요한 기본이 되었기 때문이다.

#### 1) 北韓體制的 環境의 規定

북한체제의 경우 대외적으로는 분명한 開放體制를 표방하고 있다. 즉 북한체제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있고, 또한 경제적인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閉鎖體制 혹은 고립적인 機械的 體制 혹은 앞서의 환경유형에서 논한 유형 1이 아닌 분명히 환경과의 교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1990년 12월 현재 북한은 약 105개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어서 한국의 145개국과 비교해서 그렇게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경제적 교류를 보더라도 1989년 현재 무역규모가 약 48억달러 규모로서 총량적인 규모면에서는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정도로 각국과 경제교류를 하고 있어 環境을 하나의 變數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환경과의 관계에서 북한체제가 환경을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특징적인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는 북한체제가 환경을 규정하고 또한 환경과 相互作用을 하는 데 있어서 고도의 選擇性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북한체제를 둘러싼 환경 전체를 수

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용과정에서 상당한 理想性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선택성은 비록 환경과의 일정한 교류를 수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북한 경제교류의 상당부분은 社會主義 體制에 집중된 것으로서, 1989년 현재무역량의 약 80%정도가 사회주의체제에 편중되어 있어서 개방성의 의미가 상당히 축소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 대한 고도의 선택성은 다음의 몇 가지 이유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 먼저 북한체제는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사회주의 국가와의 협력을 우선적인 정책으로 하고, 두번째는 비동맹 제3세계와의 동맹을 강조하고, 마지막으로 북한의 體制維持性向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sup>34)</sup> 이 세번째 요인은 다음의 북한체제의 환경규정의 두번째 특징과 연결된다.

북한체제가 환경규정을 하는데 있어서 고도의 선택성을 유지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바로 북한체제의 유지에 대한 政策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체제유지 혹은 성장을 위해서는 일정한 정도로 資源을 環境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 완전한 개방성을 지향할 경우에는 체제의 변화를 초래하고 구조상의 변동을 초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고도의 선택성을 유지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체제내부적인 관리에 있어서는 고도의 閉鎖性으로 나타나, 북한 체제의 경우 二元的인 體制管理를 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체제 외적으로는 개방성을, 체제 내적으로는 폐쇄성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분명한 것은 대내적 폐쇄성과 이에 따른 정책이 대외적 개방성에 우선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 대한 규정 내지는 상호작용을 간단히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7>과 같다. 이 표는 앞서서 논의한 환경에 대한 類型化를 할 때 이미 언급된 것으로서, 먼저 북한체제는 환경을 공생적인 것으로 대외적으로는 규정을 하면서도 이에 우선하는 것으로서 安定的 自給自足的 環境規定을 하여 대내적 전략의 기반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의 방향은 보존 또는 유지로 규정하려고 하고, 환경과의 접촉은 고도의 선택성을 나타내고 있어서,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二重性을 발견할 수 있다.

34) 통일원, 북한개요(서울: 1990), p. 350.

## 〈표 7〉 北韓體制的 環境規定과 性格

환경유형	성격	환경의 방향	접촉의 성격
안정적 자급자족적	(매우 단순)	보존 또는 유지	(항상 폐쇄적)
(공생적)	상당수준 계획가능	(타협)	고도의 선택성

## 2) 政治, 經濟, 社會體制的 規定

위에서 지적한 환경에 대한 규정은 또한 체제에 대한 규정과 운영전략에서도 그대로 투영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체제의 성격을 가장 특징적인 면에서 지적하면, 政治體制的 경우에 있어서는 主體思想, 經濟體制的 경우에 있어서는 自立經濟, 그리고 社會體制的 경우에 있어서는 階級政策과 統制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주요 특징을 중심으로 북한의 下位體制的 성격을 논하고자 한다.

## 가. 政治體制的 性格

북한의 정치체제를 규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될 수 있는 것이 바로 主體思想이다. 즉 오늘날의 북한체제를 지배하는 지도적인 이념이 바로 김일성 주체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 주체사상이라는 말이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1955년 이후부터라고 보고 있으나 공식적인 통치 이데올로기로서 체계화된 것은 197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다음 〈표 8〉은 북한 정치체제의 지도이념의 시대적 변천을 나타낸 것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50년대 초까지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입각한 共產主義 理念이 지배적인 정치이념이었으나, 1970년 조선노동당 제5차 대회 이후부터는 김일성 주체사상이 지도적인 이념으로서 체계화되었다.

## 〈표 8〉 北韓의 指導的 理念的 變化過程

規 約	指 導 理 念
북조선 노동당 창립대회 (1946. 8)	마르크스, 레닌주의

規 約	指 導 理 念
남북노동당 합당대회 (1949. 6)	마르크스, 레닌주의
조선노동당 5차 대회 (1970. 11)	마르크스, 레닌주의+ 김일성 주체사상
조선노동당 6차 대회 (1980. 10)	김일성 주체사상

이러한 주체사상은 “주체를 세운다는 것은 주인다운 태도를 가진다는 것이고, 주인다운 태도란 자주적 입장과 창조적 입장을 견지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당의 유일사상체계는 주체의 사상체계”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sup>35)</sup> 북한의 이러한 주체사상은 모든 분야에 걸쳐 지도이념화되고 있으며, 모든 정책에서도 적용이 되는 이념이 되었다. 즉 이러한 주체사상을 정책노선에 적용하여 정치에서의 自主, 경제에서의 自立, 그리고 국방에서의 自衛를 내세우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주체사상은 북한의 최고이념으로서 어떠한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확고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든 체제구성원들은 이에 순종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은 다분히 왕정시대에 볼 수 있는 그러한 정치체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정치체제는 앞서의 분류에 의할 경우 신정 혹은 왕정과 全體主義가 결부된 상황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나. 經濟體制의 性格

북한 경제의 성격은 크게 세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 즉 자립경제의 구축, 중공업 우선정책, 그리고 군사·경제의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중에서 본 연구와 관련하여 특히 중요하게 논의될 수 있는 것이 바로 自立經濟의 구축이다. 이러한 자립경제와 관련한 자력갱생은 1956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처음 주장되었으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한다는 것은 남에게 예속되지 않고 제발로 걸어 나가는 경제, 자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자기나라의 자원과 자기인민의 힘에 의하여 발전하는 경제를 건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sup>36)</sup>

35) 김일성 저작선집 5권(평양 : 조선노동당 출판사, 1972), p. 504f.

36) 김일성 저작선집 2(1968), p. 104.



그러나 이러한 自力更生의 자립경제의 구축은 사실상 많은 실패를 거듭하였다. 즉 이러한 경제정책의 고수는 결국 閉鎖的 經濟體制를 구축함으로써 자원이 부족한 조건하에서 국가간 자원과 상품의 교류에서 오는 국제분업의 이익을 얻지 못함은 물론 기술수준과 생산성의 저하로 경제적 자립은 커녕 경제체제의 위기를 초래하였다. 물론 부분적인 교류도 있었지만 그것은 북한 체제의 운영을 위한 資源의 動員이라는 측면에서는 극히 적은 양이었다는 것이다.

먼저 북한경제계획의 시대별 내용을 보면 다음 <표 9>와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0년대 후반부터는 자립경제 정책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무역정책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시작하였고, 1980년대 후반부터는 이를 보다 강조하여 자립경제의 고수가 점차 흔들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84년 9월의 합영법은 결국 체제유지에 필요한 자원동원의 한계를 느끼고 환경에 어느 정도 體制를 開放시키려고 한 조치로 볼 수 있지만 여전히 내부의 관리체제에서는 개방성을 나타내지 못하는 二元的 管理體制를 유지시킨 것이다.

<표 9> 北韓經濟計劃의 時代別 內容

구 분	기 본 적 내 용
제 1 차 7개년 계획 (1961-1970)	- 중공업 발전 - 전국적 기술혁신 - 국방과 경제의 병진
6개년 계획 (1971-1976)	- 산업설비 근대화 - 기술혁명 촉진
제 2 차 7개년 계획 (1978-1984)	- 인민경제의 주체화 - 생산원가 인하 - 주민생활 향상 - 대외무역 증대
제 3 차 7개년 계획 (1987-1993)	- 인민경제의 주체화 - 기술혁신 - 대외무역 및 경제협력 증대

#### 다. 社會體制의 性格

위에서 논의된 것은 원용하면 북한의 정치체제는 김일성 주체사상에 의하여 운영되며 따라서 어떠한 사상적 이념적 논쟁도 있을 수 없으며, 이러한 主體思想을 바탕으로 한 경제체제는 곧 주체적인 자립경제정책을 추구하게 되었다. 대외적 즉 외교적으로는 고도의 환경적 選擇性에 의한 부분적 개방화를 시도하여 사회주의적 연대를 유지하고, 내부적으로는 폐쇄성을 유지하여 체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내부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자립경제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자립경제를 실시함에 있어서의 폐쇄성은 내부적 資源의 枯渴과 經濟體制의 불안정을 초래하기에, 결국 사회체제에 대한 일정한 統制를 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이러한 사회체제에 대한 통제를 행함에 있어서도 여전히 주체사상이 하나의 기본적인 틀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북한 사회체제는 크게 階級政策과 統制로서 특징지을 수 있다.

먼저 북한의 사회정책의 기본은 사회구성원의 계급화로서, 이를 통해서 사회주의 혁명을 공고히 하고 북한 체제의 강화를 꾀하려 하고 있다. 즉 이러한 계급화를 통해서 체제유지에 필수적인 核心的인 階級을 양성하고 이를 통해서 체제를 관리하고 유지하며, 이들은 또한 주체사상으로 무장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계급정책은 사회구성원들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統制裝置가 된다는 것이다. 즉 사회가 완전히 계급화가 이루어질 경우 그것은 資本主義社會의 계층과 다를 것이 없으며, 이것은 또한 사회구성원들의 상향적 이동을 체계적으로 막는다는 것이다. 즉 북한 사회에서 상위계급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체제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응과 더불어 김일성 주체사상에 대한 충성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계급의 차이는 결국 체제에서 동원될 수 있는 자원의 配分과 밀접히 관련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북한 사회의 계급분류는 다음의 <표 10>에 제시되어 있다.

〈표 10〉 北韓 社會의 階級分類

계 급	분 류	대 우
핵심계급 598만명 (28%)	노동자, 빈농, 노동당원, 혁명유가족 등 12개 분류	- 단, 정, 군간부 등용 - 특혜조치
동요계급 962만명 (45%)	수공업인, 월남자가족, 중공귀환인, 유학자 등 18개 분류	- 하급간부 및 기술자 - 극소수는 핵심계급화
적대계급 577만명 (27%)	부농, 지주, 친일·친미인, 종교신자 등 21개 분류	- 중노동에 종사 - 입당봉쇄 - 감시대상

## 라) 北韓體制의 類型 評價

이상에서 논한 북한체제의 유형을 앞서 논의한 유형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의 〈표 11〉과 같다.

〈표 11〉 北韓의 體制類型

체제유형	정치체제	경제체제	사회체제
(결정적)	신정 혹은 엄격한 왕정	농 업	의례주의적
약간 추계적	전체주의 혹은 국수주의	농 업	강제적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의 체제는 일정하게 어느 한가지로 분류될 수 없고 두가지 유형에 걸쳐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러한 현상은 체제에 대한 이원적 관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 2. 北韓의 體制管理樣式과 不整合性

어떠한 체제든지 체제의 安定性을 도모하고 發展을 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통제를 행하게 된다. 북한 체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체제의 유지를 위하여 일정

한 통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특이한 점은 이러한 체제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것은 앞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념성이라는 것이다. 체제의 구성원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고 통제를 행하는 기준으로서 共產主義 思想體系와 더불어 主體思想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곧 일정한 체제를 관리 혹은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체제의 속성과 관련해서 그 統制手段을 도출하고 그러한 속성에 대해서 통제를 해야만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과 상치하는 것이다. 즉 문제의 발생은 체제적인 것인데 반해, 이를 해결하려는 방법은 사상체계 혹은 이념에서 도출하여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체제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사상적 기반의 강화는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체제적인 수준에서의 제 통제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난 이후에 보조적 간접적인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을 뿐이다. 북한체제의 체제유형과 통제양식간의 부합의 정도는 다음 <표 12>에 제시되어 있다.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반적인 체제의 유형은 유형 2에 가깝다고 할 수 있지만, 이 체제를 관리하는 주된 統制樣式은 유형 1에서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이 동원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오히려 주류를 이루고 있어 심한 부정합성을 노출시키고 있다.

<표 12> 北韓의 體制類型과 統制樣式

체제유형	행정유형	통제양식	권위의 기초	바람직한 행동
결정적	(사회구조와 공존하는 체제)	의식, 도그마, 관습적 제도화	전통과 신비적 요인	기계적 복종
약간 추계적	계층제 혹은 집권화된 체제	강제, 규칙, 계획	(계층제적 지위)	계획성과 예측성

### 3. 北韓의 體制腐敗

앞서서 논의한 결과와 연결시킬 때, 북한에서 발견할 수 있는 體制腐敗는 북한의 체제성격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체제부패의 발생은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정리될 수 있다. 하나는 체제의 폐쇄적 운영에 따른 內部

的 資源의 動員과 관련된 것이고, 하나는 북한체제의 階級的 혹은 權力的 屬性에서 비롯될 수 있는 부패이다.

먼저 내부적 자원의 동원과 관련된 부패는 북한 체제에 전반적으로 만연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기본적으로 체제내에 부존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성원들은 그 계급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체제에서 용인하는 방법으로 동원할 수 없는 자원을 동원하기 위해서 부패의 메카니즘에 개입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의 부패는 체제내에서 뿐만이 아니라 체제 외부에서도 빈번히 목격된다. 즉 북한의 외교관들이 각종 밀수에 가담하는 것도 결국은 폐쇄체제속에서의 자원의 결핍을 극복하려는 하나의 방법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체제적 부패는 북한 사회에서 거의 공공연한 것으로 간주되고 그렇게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북한 체제의 계급적 혹은 권력적 속성과 관련된 것이다. 즉 체제내에 아무리 자원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계급의 차이 혹은 권력보유의 차이에 의해서 資源에 接近하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즉 이렇게 권력의 부유에 차이가 나는 것은 결국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핵심계급이나 아니냐 혹은 당원이나 아니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핵심계급 혹은 당원인 경우 내부적인 자원의 조달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다른 계급과 완전히 구별되는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부패를 연구할 때 가정을 하게 되는 “去來關係” 특히 병렬적인 거래관계가 관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북한체제에 있어서의 체제부패는 상당부분 雙方的인 것이 아니라 一方的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여기서 체제부패의 결정권자 내지는 이니셔티브는 명백히 體制의 上位階級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구도 이외에 북한의 체제부패를 논함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인들이 있다. 즉 정치부패에 대한 논의와 개인적 범죄 혹은 일탈에 대한 것이다.

먼저 과연 북한체제에서 체제부패로서 政治腐敗를 논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북한체제의 경우 정치적인 논의는 유일당인 노동당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논의될 수는 없으며, 다만, 반대파 혹은 정치적 저항세력에 대한 肅清 등의 수준에서만 논의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에 정치부패의 논의는 극히 제한된다. 그리고 개인적 범죄 혹은 일탈의 경우는 어느 사회 혹은 체제에

서도 발견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체제의 성격과 관련하여 그 특성을 규명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다만, 앞서의 논의와 연결시킬 경우 個人的 犯罪의 경우에도 특정한 부가적 이익의 추구라기 보다는 生存의 問題와 연결되어 있는 성격이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북한체제에서 발견되는 犯罪 類型을 제시하면 다음의 <표 13>과 같다.

<표 13> 北韓體制的 犯罪類型

종 류	내 용	비 고
정 치 범	반당, 반혁명, 김일성 권위훼손, 탈출범 등	김일성 투쟁역사 비판, 교시 비방등
경 제 범	공공재산의 횡령, 양곡횡령, 물품의 부정유출 등	경제부문에 종사하는 간부층의 비행
인신침해범	폭력, 살인, 강간 등	성범죄의 경우 당간부에 의해서 많이 자행됨
기 타	깡패, 소매치기, 강도, 절도, 방화 등	농민들의 생계를 위한 절도가 많음

출처 : 통일원, 북한개요(1990), p. 243.

## V. 北韓 官僚體制的 腐敗의 類型과 性格

### 1. 北韓 官僚體制的 性格

원래 맑시즘에서는 관료제문제를 階級鬭爭의 관계로 파악하여, 그 특성으로서 官僚制를 다수 국민과 거리가 먼 존재로 간주하는 소외과정, 창의성과 상상력을 결여하고 어떠한 책임을 지기 싫어하는 무능한 존재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맑스는 관료제를 資本家 階級の 도구로 보며 프롤레타리아 혁명, 무계급사회의 도래에 의하여 국가와 관료제는 쇠잔해 버릴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후대의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관료(제)에 대한 역할논의가 어느 정도 수정되기는 하였지만, 결국 社會主義國家에 있어서도 관료제는 자본주의국가와 마찬가지로 오히려 불가피한 존재화하였다. 따라서 이들에 의한 統制와 管理的 機能은 오히려 더욱 강화되고 있는 느낌이다. 아무리 맑스 이데올로기의 본질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反官僚主義의 탈피를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專門性과 管理능력에 바탕을 둔 관료제의 效率性을 배제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어느 체제에서건 관료제의 일정한 역할이 존재한다고 가정할 때, 북한 관료제의 특징으로서 主體思想, 수령의 唯一的 領導制, 權力統合的 統治機構, 黨性 등을 지적할 수 있다.

#### 1) 主體思想

북한 사회의 여타 체제와 마찬가지로 관료체제의 사상적 기반도 주체사상인 것이다. 즉 1980년에 개정된 노동당규약에서는 “조선 로동당은 오직 위대한 김 일성 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하여 지도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회주의 헌법 제4조에서는 “맑스-레닌주의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 로동당의 主體思想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규정함으로써, 하나의 조직체로서의 官僚制의 운영도 주체사상이라는 사상적 이념적 지배를 받음을 명시하고 있다.

#### 2) 수령의 唯一的 領導制

북한의 헌법은 여타 사회주의 국가와는 달리 북한체제의 관료제를 “수령의 유일적 영도제”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북한의 국가기관 즉 관료제의 조직과 역할

은 수령의 사상을 지도적인 지침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수행하며, 수령의 사상과 명령, 지시에 따라 전당, 전국, 전민이 하나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기관은 수령의 영도를 받을 때에만 수령의 혁명사상을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직접적 무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sup>37)</sup>

이러한 유일적 영도제를 통한 지도체제의 강화는 1973년 김정일이 후계자로 부상된 후 더욱 강화되었으며, 특히 그가 발표한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 원칙”과 그의 실천은 수령체제를 이데올로기적으로 결속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sup>38)</sup>

### 3) 權力統合的 統治機構

북한의 통치기구(기구)는 형식상으로는 최고인민회의(입법),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행정), 중앙재판소, 중앙검찰소(사법) 등으로 권력이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절대적 지위인 주석을 정점으로 그 밑에 중앙인민위원회가 국가주권의 최고 지도기관으로 행정과 사법 및 입법적 사항까지 포함하여 전반적인 지도권을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김일성은 로동당 총비서, 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서열 1위, 국방위원회 위원장, 최고인민위원회 대의원 등을 모두 겸직함으로써 북한의 권력체제는 통합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신헌법은 1인 지도제에 의한 주석 중심의 정부조직체계를 제도화한 것으로서 과거의 집단지도체제와는 달리 수령의 유일적 영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4) 黨 性

북한 관료체제에 있어서 관료의 충원은 黨性, 階級性, 專門性 등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서 당성을 지적할 수 있다. 북한 체제에서의 당은 노동계급의 당으로서 김일성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조직되고 김일성의 영도하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과 건설을 위한 투쟁을 한다는 것이다. 결국 북한사회에서 당은 혁명정당이며 전사회를 조정하고 통제하는 가장 중요한 세력으로서 존재한다. 김일성은 당성에 대하여

37) 주체의 사회주의헌법 연구(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77), pp.126f.

38) 김남식, “해방전후 북한 현대사의 인식”, 해방전후사의 인식(서울 : 한길사, 1989), p. 38.



“당성이란 당의 정책과 결정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모든 힘, 필요하다면 생명까지 바쳐 싸우려는 당과 인민에게 무한히 충성을 다하려는 그러한 전투정신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sup>39)</sup>

이러한 관료충원과정에서 당성의 고려는 곧 앞서 논의하였던 북한사회의 계급 성과도 연결되는 논의라고 할 수 있다. 즉 계급화된 사회는 곧 당원으로 혹은 관료로 충원될 수 있는 기회를 이미 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논한 北韓 官僚制의 특성을 앞서 제시한 유형분류를 통해 확인하면 다음 <표14>와 같다.

<표 14> 北韓 官僚體制의 類型

체제유형	행정체제의 유형	의사결정의 재량성	의사결정의 전제
결정적	(사회구조와 공존하는 체제)	전혀 없음	경전 혹은 도그마
약간추계적	계층제 혹은 집권화된 체제	(극히 조금 있음)	(선례와 전통)

위의 표에서 보면 북한 관료제는 관료체제의 유형 2에 가깝지만, 의사결정의 전제나 재량성의 정도에 있어서는 오히려 유형 1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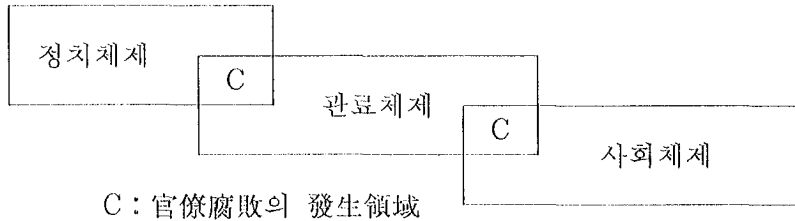
## 2. 北韓의 體制腐敗와 官僚體制의 關係

북한의 體制腐敗를 환경과 체제의 부정합성, 그리고 체제에 대한 관리전략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체제부패는 과연 북한의 官僚體制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은 관료부패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된다.

우선 일반적으로 자본주의체제에서 볼 수 있는 관료부패는 다음의 그림을 통해서 정리될 수 있다.

39) 김일성저작선집, 2권, p. 267

〈그림 3〉 官僚腐敗의 一般的 關係



즉 위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관료부패는 정치체제와 사회체제와의 相互作用의 관계에서 적절히 논의될 수 있다. 즉 체제부패는 이러한 세 축을 이해함으로써만 적절히 분석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체제의 경우에는 이러한 연관성의 발견이 극히 희박하다는 것이다. 즉 세 체제간에 일정한 有機的 關聯性이 없이 개별적으로 부패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분류하면 정치적 부패는 이데올로기(혹은 주체사상)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관료부패는 기본적으로는 이데올로기에 바탕을 둘 수 있지만 실제 이유의 상당부분은 권력에 바탕을 둔 官僚主義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부패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설명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체제에 있어서의 생존유지와 혹은 개인적 일탈로서 그 원인을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체제의 경우 체제병리가 일단은 개별적인 수준에서 발생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관료체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개별적인 수준에서의 부패발생은 곧 내부적으로 腐敗過程에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극히 부족하여 각 하위체제간에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며, 한편에서는 북한 사회의 엄격한 계급성의 존재가 부패의 관계를 방해한다고 설명할 수도 있다.

### 3. 北韓 官僚體制 腐敗의 類型과 性格

#### 1) 北韓 官僚의 病理에 대한 既存의 研究

北韓 官僚制의 腐敗 혹은 病理現象에 대한 體系的 研究는 극히 드문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행해진 연구의 대개는 김일성의 신년사, 노동당대회에서의 김일성의 연설, 그리고 김일성 저작선집 등의 내용을 분석한 內容分析(content analysis)이 주류를 이루어 실제와는 거리가 상당히 있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참고로 박완신은 북한 관료제의 병리현상으로서 권위주의적 행태, 동조과잉적 행태, 형식주의적 행태, 무사안일적 행태, 그리고 분파성 행태를 지적하고, 이러한 병리현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김일성 저작선집, 로동신문, 그리고 민주조선 등을 내용분석하였다.<sup>40)</sup> 그러나 북한 관료 부패의 원인이나 성격을 적절히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김공열은 북한 관료제의 병리현상으로서 권위주의, 이기주의, 파벌주의, 그리고 형식주의를 지적하고 김일성 저작선집과 각종 연설문을 내용분석하였다.<sup>41)</sup>

## 2) 北韓의 官僚體制 腐敗의 類型과 性格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표면적인 연구를 지향하고 직접적인 事例를 분석하여 북한 官僚腐敗의 유형과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물론 북한체제의 성격상 극히 제한된 수의 사례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기에 代表性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로동신문과 내외통신, 그리고 북한에서 발간된 자료를 탐색하여 총 13건의 관료 부패사례를 수집하였다. 이들 부패사례는 시대별로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 사례에 대한 분석은 먼저 부패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이들이 발생하게 된 원인들을 구분하고, 마지막으로 관련당사자가 누구이며 주-종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하였다.

먼저 이들 부패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다음 <표15>와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패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할 경우 權力濫用에 해당하는 것과 뇌물수수에 해당하는 것이 총 13건중 8건으로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橫領의 경우는 3건에 불과하여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목격할 수 있는 것과는 상당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40) 박완신, 북한행정론(서울: 회성출판사, 1988), pp. 243-294.

41) 김공열, 북한의 공공관료제에 관한 연구(동국대 행정학 박사학위논문, 1989).

〈표 15〉 腐敗事例의 類型別 分類

유 형	빈 도	기 타
권력남용	4	정조유린 등
뇌물수수	4	당적획득관련 등
횡 령	3	공공물자
기 타	2	허위보고 등

결국 본 사례를 볼 때, 북한체제에서 발견되는 관료 부패의 유형은 극히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존의 문헌에서는 매우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으나 이것들은 위와 같은 유형에 대개 포함되어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4. 北韓 官僚體制 腐敗의 原因과 메카니즘

위에서 분류한 관료부패는 그 원인별로 재분류할 때 상당히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다음의 〈표 16〉은 관료부패를 원인별로 분류한 것이다.

〈표 16〉 腐敗事例의 原因別 分類

원 인	빈 도	기 타
당원입당	4	이데올로기성
이익추구	4	경제성
편리주의	4	관료주의
기 타	1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석대상인 부패사례는 원인별로 분류할 때, 당원 입당, 경제적 이익추구, 그리고 관료적 편의주의로 분류된다. 여기서 특기할 만한 것은 당원입당과 관련한 사례가 4건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이러한 원인은 우선 資本主義體制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원인이기도 하지만, 북한체제의 體制的 性格에서 기인하는 構造的인 腐敗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북한체제에서는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엄격한 階級性을 강조하고

있고, 이러한 계급성은 바로 당원의 자격과 연결되며, 이러한 로동당원으로서의 자격은 바로 북한체제에서 내부적으로 자원을 조달하기에 용이한 지위인 것이기 때문에 당원이 되기 위하여 물품을 제공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면 남자는 입당할 때 평균노동자의 일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약 1천 원을 뇌물로 바쳐야 하며, 여자의 경우에는 금전적 뇌물보다는 정조가 하나의 뇌물수단이 되는 경우가 보편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로동당에의 입당 자체는 극히 최소한도의 資源供給을 보장해 줄 뿐인데도, 부패의 원인으로서 이것이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은 바로 당원이 됨으로써 북한 체제의 構造的인 腐敗過程에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북한체제에서는 이념 혹은 이데올로기가 하나의 부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이러한 입당이 이루어짐으로써 두번째 원인으로 지적된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지위에 오르는 것이다. 經濟的 利益追求와 관련된 부패도 북한사회에서 대표적으로 목격할 수 있는 부패사례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경제적인 이익의 추구는 누구나 가능한 것이 아니라 당원이나 당간부만이 참여할 수 있는 과정으로서 이를 통해서 계급간의 생활수준의 차이는 더욱 확대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사례는 밀수라는 과정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즉 북한 사회에도 자본주의체제에서 발견될 수 있는 暗市場(black market)이 존재하며 이러한 암시장을 통해서 밀수품이 거래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의약품의 경우 보통 10배이상의 이익을 취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20배 이상의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42)</sup>

一線機關에서 이루어지는 官僚的 便宜主義에 의한 관료부패는 북한사회에서도 공산주의가 가장 부정적인 것중의 하나로 인식하는 관료주의 혹은 관료주의적 병리현상이 발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편의주의의 대표적인 예로서 각종 증명서의 발급과 관련된 부패를 들 수 있다. 이것은 증명서 만능풍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서, 증명서의 발급은 바로 자원의 획득을 허용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료부패를 관련당사자별로 분류하면 다음의 <표 17>과 같다.

42) 경향신문, 1985년 11월 26일자.

## 〈표 17〉 官僚腐敗의 當事者別 分類

분 류	빈 도	기 타
관 료 단 독	5	
관 료-관 료	5	
관 료-시 민	3	관 료가 주 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료단독으로 이루어지는 부패사태가 5건이며 관료가 집단적으로 참여하는 사례도 5건으로서 10건을 차지하여, 북한사회에 있어서의 관료부패는 일반시민과의 상호작용보다는 관료들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腐敗過程에 있어서 일반시민은 거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어디까지나 주체는 관료라는 것이다. 이것은 북한체제의 경우 일반시민은 부패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원 자체가 극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어렵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북한의 관료체제의 부패는 市民의 參與가 상당히 배제된 과정으로서 관료가 주체가 되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여기서 참여하는 시민의 입장도 부패관계를 통해서 커다란 이익을 획득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희생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곧 북한체제에 있어서 발견되는 관료부패는 관료의 입장에서는 일정한 이익 또는 편익을 획득하는 수단으로서 인식될 수 있지만, 일반시민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惠澤이 아닌 強奪(extortion)을 당하는 수단으로서 인식되는 것이다.

## 5. 官僚體制의 腐敗에 대한 北韓政府의 對應樣式

북한체제를 흔히 統制社會라고 표현하는 것은 곧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장치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통제수단을 제시하면, 사회의 계급화를 위한 성분의 차별화, 사회안전부, 국가정치보위부, 국가검열위원회, 사회주의범무생활지도위원회의 설치, 동지심판제도 등의 운영, 주민통제를 위한 인민반조직과 5호담당제의 활용, 경제적 차등화 등 다양한 조직을 통하여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가장 중요한 통제기구로서 국가보위부와 사회안전부를 들 수 있다. 국가보위부는 1973년경에 설치된 것으로서 소위 반당, 반체제음모자 색출 검거

와 특정지역내 잠입, 변절자 색출 등 思想査察의 전담기구로서 이용되고 있다. 이것이 1973년경에 만들어진 것은 당시부터 후계자로 부상하기 시작한 김정일에 대한 저항을 무마시키기 위한 필요성 때문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사회안전부는 기존에 존재하던 기구를 1972년에 개편한 것으로서 주임무는 국가와 인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주민들에 대한 彈壓機能이라고 할 수 있다.

법령을 보더라도 형법상의 국가주권적대에 관한 죄, 국가관리침해에 관한 죄, 인신침해에 관한 죄, 공민의 재산침해에 관한 죄, 노동법령위반에 관한 죄, 공무상범죄, 경제에 관한 범죄 등으로 다양한 법체계를 구성하여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결국 이렇게 다양한 통제방법들이 강구되고 있지만, 최근 들어와서는 이러한 제도적인 통제보다는 思想統制를 더욱 강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최근에 방송과 노동신문의 사설에 등장한 내용을 보면

“……관료주의 권위주의 등 낡은 사업방법이 당과 대중을 이탈시키고……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튼튼히 무장…… 김일성, 김정일 동지에 충성하고……”(’91. 2. 11일 방송)

“……무사안일한 보신주의와 탁상공론식 사업태도를 비판하고……김일성지도자에 대한 충성을 각오하고……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91. 3. 13)

“……당과 수령이 제시한 당정책이 가장 정당하다는 신념과 긍지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당정책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는 투철한 입장을 지녀야 한다……”(’91. 4. 2)

이상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북한의 체제관리자 내지는 당국자는 부정과 부패가 발생하는 원인을 社會主義 思想에 투철하지 못하고 또한 김일성 김정일 부자에 대한 충성심이 박약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앞의 분석에서도 지적하였듯이 관료부패의 상당부분은 內部的 資源動員의 限界와 官僚主義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때, 이러한 思想統制는 그 효과에 있어서 한계를 나타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 VI. 結論—體制類型과 體制管理의 統合

官僚腐敗는 어느 社會 어느 體制에서나 발견될 수 있는 보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어느 체제만 유난히 많고 또 어느 체제는 적다고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오히려 적절하게 해석을 하려면 體制의 類型에 따라서 부패가 어떠한 성격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때문에 본고에서는 체제론적인 입장에서 관료부패를 분석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또한 여기서 한 가지 주안점을 두었던 것은 사회주의 체제의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관료제 혹은 그에 따른 관료주의를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보았으며, 극단적으로는 관료제의 역할을 무시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과연 社會主義 體制로서의 北韓體制의 경우에는 관료의 역할이 어떠한가, 과연 官僚主義的인 弊病이 나타나지 않는가를 밝히려고 했던 것도 본 연구의 의도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북한체제의 경우 體制論的인 立場에서 심각한 부정합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즉 환경에 대한 규정에서부터 체제의 규정과 체제관리 전략, 그리고 체제에 대한 통제와 문제까지 유기적인 연관성을 갖지 못하고 개별적 혹은 이원적으로 운영되었다는 것이다. 즉 環境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외적으로는 고도의 제한적이고 選擇的인 開放性을 띠고, 대내적으로는 엄격한 閉鎖性을 유지하였으며, 對內的 體制管理를 함에 있어서 혁신성, 기술성을 강조하는 유형 2의 규정을 하면서도, 체제유지의 기본적인 가치체계는 유형1에 가까운 신정체제 혹은 도그마에 의해서 체제를 관리하려고 하고, 마지막으로 통제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각종 제도적 장치에 우선하여 思想強化를 강조하는 등 심각한 부정합성을 초래한 것이다. 결국 북한체제에서 발견되는 체제부패의 상당부분은 이러한 부정합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환경과의 관계에서 이종적인 전략을 택하고, 대내적으로는 엄격한 폐쇄성을 유지하고, 이에 따른 내부적 자원의 부족과 동원의 문제는 체제부패를 야기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이다.

결국 본 연구의 결과를 볼 때, 體制를 적절하게 管理하고 官僚腐敗를 적절히 통제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전략이 사용될 수 있다. 하나는 體制論의 입장에서 완전한 유형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전략은 아예 체제를 開放化시



키는 것이다. 즉 환경에 대한 선택성을 포기하고 적극적으로 환경과 交互作用을 하여 資源動員의 폭을 확대시키고 이에 맞게 체제도 개방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경우이든지 간에 기존의 체제에 존재하는 權力上의 變動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體制管理者들이 이러한 전략을 수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상의 결론은 많은 한계속에서 도출된 것이기 때문에 妥當性和 合理性의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을 수 밖에 없다. 특히 연구에 가장 중요한 자료수집의 부족은 연구가 갖는 문제를 더욱 확대시켰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보다 타당하고 적실성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료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參考文獻〉

## 1. 國內文獻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사회의 구조와 변화(1987).

김공열, 북한의 공공관료제에 관한 연구(동국대 행정학 박사학위 논문, 1989).

김남식, “해방전후 북한 현대사의 인식”, 해방전후사의 인식(서울:한길사, 1989).

김영중, “개발도상국가들의 관료부패모형정립”, 한국행정학보, Vol. 19, No.2 (1985).

김충남, “공산주의 통제체제와 부정부패”, 현대사회연구소, 현대사회, 1985, 겨울호 및 1986 봄호.

김해동, “관료부패에 관한 연구(I)”,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논총, Vol. X, No. 1(1972).

\_\_\_\_\_, “관료부패의 유형”,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논총, Vol. 28, No. 1 (1990).

박분갑의 4인, 남북한 비교론(서울:문우사, 1986).

박완신, 북한행정론(서울:희성출판사, 1988).

사회과학출판사, 정치용어사전(평양, 1970).

양성철, 북한정치론(서울:박영사, 1991).

유석열, 북한정책론(서울:법문사, 1989).

이상우외7인, 북한 40년(서울:을유문화사, 1989).

이온죽, “남북한 사회체제 강약집 분석”, 통일원, 남북한 사회역량종합 평가 (1990).

\_\_\_\_\_, 북한사회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1988).

이태욱, 북한의 경제(서울:을유문화사, 1990).

전수일, “관료부패연구:사회문화적 접근”, 한국행정학보, Vol, 18, No.1(1984).

통일원, 북한 주민생활 실태조사(1989).

\_\_\_\_\_, 북한개요(서울; 1990).

한용원, 북한연구(서울:박영사, 1989).

\*타 북한에서 간행된 각종 서적과 신문, 그리고 내외통신 자료.

## 2. 外國文獻

- Alan, P. L. Liu, "The Politics of Corruption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PSR, Vol. 77(1983).
- Aldrich, H. E., Organization and Environment(Prentice-hall, 1979).
- Berrien, F. K., General and Social Systems(Rutgers, 1968).
- Bertalanffy, L. von, General System Theory(George Braziller, 1968).
- Cook, Thomas D., et al., Quasi Experimentation(Chicago : Rand McNally, 1979).
- Dobel, J. P., "The corruption of a state", APSR, Vol. 72, No. 1(1984).
- Heidenheimer, A. S., Political Corruption(N. Y. : Holt, Rinehart, and Winston,  
1990).
- Johnstone, M., Political corruption and Public Policy in America(Belmont : Brooks  
/Cole, 1982).
- Myrdal, G., Asian Drama(N. Y. : Pantheon Books, 1968).
- Scott, James C., Comparative political Corruption(Englewood Cliffs, N. J. : Prentice  
-hall, 1972).
- Shelley, J. W., "Crime and Punishment under Socialism", Problems of Communism,  
Vol, 31(1982).
- Simis, C. M., USSR : The Corrupt Society(N. Y. : Simon and Schuster, 1982).
- Sutherland, J. W., Systems, Van Nostland Reinhold co.(1975).
- Werner, Simcha B., "New Directions in the study of Administrative Corruption",  
PAR, Vol. 43, No. 2(1983).

## ◆ 主體思想 形成 原因論 研究

— 北韓政治體制內에서의 傳統政治文化的 變容過程 —

金英秀(西江大)

### 〈 要 約 文 〉

본 연구의 目的은 북한정치체제내에서의 傳統政治文化的 變容過程을 살펴 主體思想의 형성배경을 밝히는 데 있다. 역사 속에 내제되어 있는 전통정치문화를 전면적으로 부정할 수 없어 부분적으로 그것을 채택해 온 비판적 계승의 산물이 현재의 북한정치체제 특성이며, 전통의 變容過程이 바로 주체사상을 형성해 온 밑바탕이라는 문제의식을 전제로, 주체사상이 형성된 북한의 역사적, 문화적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 연구주제이다.

어느 정치제도라 할지라도 그 사회에서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傳統的 政治文化와 완전히 단절해서 새로운 정치문화를 창조할 수는 없다는 전제아래 공산화수립과정에 미친 전통정치문화의 역할에 주목하여 전통의 단절이 아닌 그 연속성에서 주체사상의 출현을 보고자 한다. 즉 북한정치문화의 형성요인을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맥락에서 전통적 정치문화가 북한의 主體思想形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피고자 한다. 또한 김일성 개인의 리더쉽 측면 중 전통적 요소 管理者로서의 김일성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전통적 요소의 연속성과 잠재성을 감안한 김일성으로서 어떤 방식으로 전통을 관리하여 상징조직 및 동원체제형성에 노력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주체사상 형성 원인을 중소분쟁, 국내 권력투쟁의 관점에서 찾는 것과는 달리, 전통정치문화가 북한정치체제에서 맑스-레닌주의적 요소와 어떻게 관계를 가지면서 正統性확립을 위해 지속과 변동을 해 왔는지를 그 형성배경을 규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통정치문화가 북한정치체제에서 맑스-레닌주의적 요소와 어떻게 상호침투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정통성 확립을 위해 지속과 변동을 해왔는지를 살펴 북한정치체제 작동원리로서의 政治文化的 機能을 분석하며, 또

한 承繼, 變容, 改造의 적응노력으로 만들어진 북한의 새로운 정치문화의 특성은 무엇이며 이는 남북한 文化統合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 연구하려고 한다.

즉, 주체사상이 형성된 북한의 역사적, 문화적 요인을 규명하는 작업과 함께 새로이 생성된 주체사상에 입각한 新政治文化가 남북한 통일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데 연구목적을 둔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研究內容은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우선 전통정치문화가 북한정치체제 속에서 사회주의적 요소인 레닌주의체제적 특성과 어떤 상호침투관계를 맺으면서 체제변화 및 구성원 의식변화를 유도해 나가고 적응해 나가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의 편의를 위해 적응노력을 크게 세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承繼, 變容, 改造의 시각에서 전통정치문화의 적응과정을 보려고 한다. 정통성 확립을 위해 실질상 주체인 김일성을 비롯한 소수의 권력 엘리트들이 전통정치문화를 어떻게 활용·관리해 왔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다음으로는 적응노력의 時期的 區分을 하고자 한다. 이는 공산화 이후 발표된 전통과 관련된 김일성 敎示나 당의 지침을 시기적으로 분류하여 왜 그런 지시를 내리게 되었는가 라는데 주목하여 敎示, 지침의 정치적 함의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전통정치문화의 적응실태를 보고자 한다. 시기는 크게 네 시기로 나누어 제1기는 정권수립후 1958년 사회주의 개조기(농업의 집단화를 이룩한 시기), 제2기는 1958년부터 1972년 사회주의 헌법을 제정하는 시기, 제3기는 국가 주석제 채택 이후 김정일에 의한 김일성주의 창조시기, 제4기는 1980년 이후로 정해놓고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은 전통정치문화가 정통성 확립을 위해 승계, 변용, 개조의 과정을 거치면서 레닌주의적 특성과 갈등과 조화 속에서 相互浸透현상을 나타내며 만들어진 북한의 새로운 政治文化에 대한 연구이다. 교조적 이념주의, 전제적 권위주의, 민족주의적 성향 등의 새로운 정치문화의 특성이 전통정치문화의 측면에서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연관시켜 해석하며, 新政治文化가 정치체제작동원리로서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끝으로 레닌주의적 특성과 상호 갈등과 조화를 이루면서 정통성 확립을 위해

새롭게 창조된 북한의 정치문화가 앞으로 예상되는 南北韓 文化統合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면서 연구결과를 정리하려고 한다.

이 연구는 결국 첫째, 주체사상체계와 내용중심의 연구시각을 전통과 정치문화의 시각으로 연결시킬 수도 있다는 것, 둘째, 북한정치체제를 맑스-레닌주의 모델로만 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분석틀을 모델화하기 위해 전통과 사회주의관계를 상호침투적인 관계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 셋째, 김일성 지도체제가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는 배경에 김일성의 지도력, 외세, 조직력 등의 요인도 포함될 수 있지만, 특히 전통정치문화적인 요소를 잘 調整, 管理하면서 전통의 잠재요소를 지니고 있는 북한 사회구성원들을 동원한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I. 序 論

### 1. 研究目的

본 연구의 目的은 북한정치체제내에서의 傳統政治文化의 變容過程을 살펴 主體思想의 형성배경을 밝히는데 있다. 역사 속에 내재되어 있는 전통정치문화를 전면적으로 부정할 수 없어 부분적으로 그것을 채택해온 비판적 계승의 산물이 현재의 북한정치체제 특성이며, 전통의 變容過程이 바로 주체사상을 형성해온 밑바탕이라는 문제의식을 전제로, 주체사상이 형성된 북한의 역사적, 문화적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 연구주제이다.

어느 정치제도라 할지라도 그 사회에서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傳統的 政治文化와 완전히 단절해서 새로운 정치문화를 창조할 수는 없다는 전제아래 공산화 수립과정에 미친 전통정치문화의 역할에 주목하여 전통의 단절이 아닌 그 연속성에서 주체사상의 출현을 보고자 한다. 즉 북한정치문화의 형성요인을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맥락에서 전통적 정치문화가 북한의 主體思想形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피고자 한다. 또한 김일성 개인의 리더십 측면 중 전통적 요소 管理者로서의 김일성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전통적 요소의 연속성과 잠재성을 감안한 김일성으로서 어떤 방식으로 전통을 관리하여 상징조작 및 동원체제형성에 노력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주체사상형성 원인을 중소분쟁, 국내 권력투쟁의 관점에서 찾

는 것과는 달리, 전봉정치문화가 북한정치체제에서 맑스-레닌주의적 요소와 어떻게 관계를 가지면서 正統性 확립을 위해 지속과 변동을 해왔는지 살펴 그 형성배경을 규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봉정치문화가 북한정치체제에서 맑스-레닌주의적 요소와 어떻게 상호침투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정통성 확립을 위해 지속과 변동을 해왔는지 살펴 북한정치체제 작동원리로서의 政治文化的 機能을 분석하며, 또한 承繼, 變容, 改造의 적응노력으로 만들어진 북한의 새로운 정치문화의 특성은 무엇이며 이는 남북한 文化統合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 연구하려고 한다.

즉, 주체사상이 형성된 북한의 역사적, 문화적 요인을 규명하는 작업과 함께 새로이 생성된 주체사상에 입각한 新政治文化가 남북한 통일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데 연구목적을 둔다.

## 2. 研究方法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研究內容은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우선 전봉정치문화가 북한정치체제 속에서 사회주의적 요소인 레닌주의체제적 특성과 어떤 상호침투관계를 맺으면서 체제변화 및 구성원 의식변화를 유도해나가고 적응해 나가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의 편의를 위해 적응노력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承繼, 變容, 改造의 시각에서 전봉정치문화의 적응과정을 보려고 한다. 정통성 확립을 위해 실질상 주체인 김일성을 비롯한 소수의 권력 엘리트



뜨들이 전봉정치문화를 어떻게 활용, 관리해왔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다음으로는 적응노력의 時期的 區分을 하고자 한다. 이는 공산화 이후 발표된 전봉과 관련된 김일성 敎示나 당의 지침을 시기적으로 분류하여 왜 그런 지시를 내리게 되었는가라는데 주목하여 교시, 지침의 정치적 함의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전봉정치문화의 적응실태를 보고자 한다. 시기는 크게 네 시기로 나누어 제1기는 정권수립 후 1958년 사회주의 개조기(농업의 집단화를 이룩한 시기), 제2기는 1958년부터 1972년 사회주의 헌법을 제정하는 시기, 제3기는 국가 주석 제채택 이후 김정일에 의한 김일성주의 창조시기, 제4기는 1980년 이후로 정해놓고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은 전봉정치문화가 정봉성 확립을 위해 승계, 변용, 개조의 과정을 거치면서 레닌주의적 특성과 갈등과 조화 속에서 相互浸透현상을 나타내며 만들어진 북한의 새로운 政治文化에 대한 연구이다. 교조적 이념주의, 전제적 권위주의, 민족주의적 성향 등의 새로운 정치문화의 특성이 전봉정치문화의 측면에서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연관시켜 해석하며, 新政治文化가 정치체제 작동원리로서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끝으로 레닌주의적 특성과 상호 갈등과 조화를 이루면서 정봉성 확립을 위해 새롭게 창조된 북한의 정치문화가 앞으로 예상되는 南北韓 文化統合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면서 연구결과를 정리하려고 한다.

이 연구는 결국 첫째, 주체사상체계와 내용중심의 연구시각을 전봉과 정치문화의 시각으로 연결시킬 수도 있다는 것, 둘째, 북한정치체제를 맑스-레닌주의 모델로만 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분석틀을 모델화하기 위해 전봉과 사회주의관계를 상호침투적인 관계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 셋째, 김일성 지도체제가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는 배경에 김일성의 지도력, 외세, 조직력 등의 요인도 포함될 수 있지만, 특히 전봉정치문화적인 요소를 잘 調整, 管理하면서 전봉의 잠재요소를 지니고 있는 북한 사회구성원들을 동원한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II. 政治體制作動原理로서의 政治文化

### 1. 理論的 背景

政治文化(political culture)는 일반문화의 정치적 국면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치이데올로기, 여론, 국민성 등과 같은 개념들과 오랫동안 관련되어 왔던 많은 것들을 포함한다. 따라서 한 나라의 정치·사회적 환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치문화를 연구하는 것이 유용한 방법이 된다.

“政治文化는 한 정치체계의 집합적인 전체의 역사와 그 체계구성원들의 생활사를 포괄하는 양자의 산물”<sup>1)</sup>이라는 정의에 비추어 볼 때, 정치문화란 정치과정에 질서를 부여하고, 정치체계에 있어서 행위를 지배하는 기초적인 가정과 규칙을 제시하는 態度, 信念, 情緒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문화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된 것은 행태주의의 관심이 고조되면서부터였다. 그러나 행태주의가 흥미한 이후 그 영향으로 정치문화에 대한 연구도 유행의 뒷전으로 밀려났었다. 이러한 추세에서 共產主義國家들의 공통적인 현상으로 등장한 체제의 지속성과 또 그 변화의 문제와 관련하여 政治文化的 接近의 妥當性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공산주의국가의 경우 정치문화적 관점에서 볼 때 관

---

1) Lucian W. Pye, "Political Cultur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Social Science*, Vol.12, p.218.

심을 끄는 이유는, 교육제도나 매스미디어를 통제하고 국가공식 이데올로기를 선전, 교화함으로써 체제를 유지하는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다. 즉 공산주의체제에서는 혁명에 성공한 집단들이 기존의 정치문화를 변형시키지 않고서는 지배관계를 안정시킬 수 없기 때문에 政治的 社會化過程을 통하여 계획적으로 새로운 정치문화인 공산주의 정치문화를 만들어왔던 것이다.

공산주의체제연구에 대한 정치문화적 접근방법의 適實性에 대한 지적은 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조위트(Kenneth Jowitt)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정치문화가 공산주의 체제에 대한 연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sup>2)</sup>

첫째로 중대한 변화를 수반하는 혁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혁명이란, 생활의 많은 영역에서 과거의 근본적이고 돌발적인 파열을 수반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야 하는 측면, 둘째로 공산주의체제를 다면적으로 인식하려면 체제와 사회와의 관계가 단순히 지배복종이라는 유형의 측면만 중시할 것이 아니라 정치생활의 행태와 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文化的 側面을 중시해야 한다는 점, 셋째로 ①마르크스·레닌주의체제는 체제전환과 체제강화로부터 근대화해 이르는 그들이 수행해야 할 과업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고 ②기존 지배정당들의 체제와

---

2) Kenneth Jowitt, "An Organizational Approach to the Study of Political Culture in Marxist-Leninist System,"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IX V iii, No.3(September 1974), pp.71-72.

공동체는 성원집단들에 대한 일체성의 준거로서의 응집력과 능력을 상실하게 되며 ③이로서 이러한 당들의 사회적 성분이 변화되고 ④비마르크스주의적 세계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변하게 된다는 점에서 정치문화는 분석적 연구의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이데올로기하에서는 혁명이나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정치권력을 장악한 집단이 사회를 社會主義的으로 改造하고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에로의 이행이라는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발전과정을 명백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조위트의 주장은 설명능력이 있다고 본다.

또한 브라운(Archie Brown)도, 다양한 역사적, 문화적 전통을 가진 사회에서 정치적, 경제적 및 문화적 변화가 공산당들에 의해서 추구되고 있다는 사실은 政治文化的 接近이 공산주의국가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며, 특히 공산주의국가들의 변화와 지속성 문제와 관련된 체제유지와 발전의 측면에서 볼 때, 정치문화의 연구는 適實性을 가진다고 주장한다.<sup>3)</sup>

물론 공산주의체제의 정치문화적 연구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두 일치된 견해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그레이(Jack Gray)는 정치문화에 대한 가설들이 예측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한에서는 행태를 예측할 수 있으나 행태를 예측할 수 없을 때는 가설을 수정하기 위해 사

---

3) Archie Brown and Jack Gray (eds.), *Political Culture and Political Change in Communist States* (New York: Holmes and Meier, 1979), p.1.

용되는 자료가 될 뿐이라고 언급하고 있다.<sup>4)</sup> 또한 이와 같은 정치문화의 變形 내지 創造는 공산주의 국가의 특이한 현상이라고만 볼 수는 없을 뿐 아니라, 아무리 견고한 국가적 동일성을 가진 국가도 시간적·공간적 상황에 따라 변화 내지는 개조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신생국 내지 체제변혁을 겪은 공산주의체제는 기존체제에 대한 지지를 무산시키기 위해 정치사회화로 인한 정치문화의 전승과정에서 오는 변화뿐만 아니라, 의도적인 정치사회화를 수행함으로써 새로운 체제에 알맞은 정치문화로 變形시키거나 새로운 정치문화를 創造하려고 하고 있다.

공산주의 체제의 정치문화적 접근의 타당성은 결국 정치체제의 기본적 요소인 정치규범, 정치과정, 정치적 상징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규명해야 할 그 態度의 핵심적 요소는 무엇인가?

로젠바움(W.A. Rosenbaum)은 일반적인 정치문화의 태도의 요소들 體制定向과 정치적 투입·산출에 관한 정향을 포함한 政治構造에 대한 定向, 政治的一體感, 信賴, 規範을 포함한 정치체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정향, 정치적 능력, 효능감을 포함한 자신의 정치행동에 대한 정향으로 분류하고 있다.<sup>5)</sup> 또한 버치(Gray K. Bertsch) 등은 공산주의국가 시민들의 정치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보편적인 신념과 태도를 支配的 政治文化로 간주하며, 이 지배적 정치문화는

4) Archie Brown and Jack Gray (eds.), 앞의 책, p.255.

5) W.A. Rosenbaum, *Political Culture* (London: Thomas Nelson and Sons Ltd., 1975), pp.6-7.

오늘날 공산주의국가들에서 정치생활을 결정하는 신념과 견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 영향을 미치는 정향으로서 權力, 尊敬, 福祉, 啓發 등의 요소를 들고 있다.<sup>6)</sup>

결국 로젠바움이나 버치의 지적에서 공통으로 찾을 수 있는 정치문화의 정향을 재정리하면, 政治體에 대한 定向, 政權담당자에 대한 定向, 사회경제적인 定向, 政治的 自我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런 이론적 배경에 준하여 북한 政治體制作動原理로서의 政治文化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의 문제가 설명되어야 한다.

첫째, 북한정치체에 대한 稾明과 인민들의 態度에 관한 문제

둘째, 정권담당자에 대한 태도로서 북한주민들이 그들의 지도자를 존경하고 복종하며, 체제에 대한 自矜心을 가지는 것은 어디에 그 근원을 두고 있는가라는 문제

셋째, 새로운 사회주의건설이라는 측면에서의 북한사회경제 작동 원리

넷째, 정치적인 자아문제인 集團主義 意識問題 등이다.

그런데 이러한 구체적인 정향을 설명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북한 정치문화의 形成背景에 관한 고찰이다. 즉 북한이 정권을 수립하기 이전의 전통적인 가치와 수립 이후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

6) G.K. Bertsch, R.P. Clark and D.M. Wood, *Comparing Political Systems: Power and Policy in Third Worlds*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1982), pp. 249-261.

간의 葛藤과 調和의 局面을 살피는 작업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다.

## 2. 機 能

북한정치문화의 형성요소 및 생성배경에 대한 고찰에 앞서 북한에서의 정치문화의 性格糾明과 機能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8·15 해방 이후 46년간의 정치변화과정을 거친 북한정치체제는 主體思想에 의해 작동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북한체제의 최고규범인 '조선로동당규약'이나 '사회주의헌법'에서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고, 인간관, 과학이론, 철학, 정치이념, 혁명론 등 모두가 主體思想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리고 북한을 방문한 외부관찰자나 귀순자에 비친 북한의 모습은 북한주민의 사고방식, 행동양식에서 정책지표에 이르기까지 모두 唯一思想으로서의 主體思想에 의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주체사상은 북한의 정책결정과 개인의 행동, 사고, 감정을 결정할 유일한 준거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북한의 정치문화는 바로 主體思想의 文化인 것이다.

이와 같이 주체사상을 중심으로 북한의 정치문화를 파악하고자 할 때, 사회변동을 이데올로기의 성격과 연계시켜 분석한 왈라스



(Anthony Wallace)의 目標文化(goal culture)와 轉移文化(transfer culture) 개념이 유용한 분석적 도구가 될 수 있다.<sup>7)</sup> 이러한 개념적 도구는 이데올로기의 정치문화를 혁명의 목표와 혁명을 위한 제전략을 상호연계시켜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북한도 다른 공산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공산사회건설을 궁극적 목표로 삼고, 이 목표문화를 달성하기 위해 전이문화로서 主體思想을 내세우고 있다.

북한은 인민대중의 완전한 자주성이 실현될 때 공산주의적 무계급 사회가 건설된다고 전제하고 이를 궁극적 목표로 삼고 있다. 김일성에 의하면,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최대로 실현되고 인간해방을 이룩한 공산주의사회에서는 ①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가 없어져 노동계급과 농민간의 차이가 해소되며, ② 협동적 소유형태가 모두 全人民의 所有형태로 단일화되며, ③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차이가 없어지고, ④ 생산력의 제고로 사람들이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따라 분배를 받게 되는 사회로 묘사되어 있다.<sup>8)</sup> 이러한 궁극적 목표는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사회주의건설과 관련된 보편적 내용이다.

북한은 이상의 목표문화를 실현하기 위해 主體思想을 轉移文化로 설정하고 있다. 목표달성에 따르는 현실적인 제약성을 감안하여 공

7) Anthony Wallace, *Culture and Personality* (New York: Random House Inc., 1961) 참조.

8) 「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p.49.

산주의 국가들에서는 궁극적 목표달성 수단으로서 실현가능한 中間目標을 제시하게 된다. 대개의 경우 공산주의적 물질 토대를 쌓기 위한 산업화를 앞세운 것이 역사적 현실이다.

볼셰비키 혁명 이후 레닌주의와 스탈린주의가 등장한 것도 러시아적 전봉과 현실적 조건에 적응시킨 마르크스주의의 실천이며, 또한 중국혁명 과정에 따라 형성된 모택동사상도 마르크스주의, 레닌주의, 스탈린주의의 이론체계와 경험을 중국적 전봉과 현실적 조건에 적응시킨 실천적 이론인 것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북한의 대내외적 현실을 고려하여 김일성은 '主體'를 내세워, 공산주의건설이라는 궁극목표를 제시하면서도 民族的特殊性에 따라 그 방법이나 형식을 달리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김일성은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을 교조주의라 비난하면서 민족적 특수성에 따라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공산주의 건설을 완수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민족적 특수성의 강조는 각 민족의 특수한 조건과 실정에 따라 혁명과 건설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며 전이문화로서의 주체사상은 그 지도원칙으로서 '자주적 립장'과 '창조적 방법', '사상적 주체'를 표방하고 있다.

그런데 주체사상이 지닌 내용구성이나 공식적 표명과정에 못지 않게 중요한 사실은 주체사상이 唯一思想으로서 정치문화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른바 혁명전봉으로부터 주체사상으로 이어지는 김일성에 대한 권위가 북한사회내에서 일종의 宗教的 信仰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 사실이나 정세에 대한 인지나 판단도 바로 主體思想이라는 혁명이데올로기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진다. 북한주민의 태도를 인지하기 위해서는 주체사상의 유일적 지배체제를 확립하고 있는 정치문화의 기능들을 매개로 하지 않을 수 없다.

서만(Franz Schurmann)은 공산주의 체제의 확립과 혁명수행과정에서 이데올로기는, ①커뮤니케이션 기능 ②正當化 機能 ③社會的 融合 기능 ④국제적 연대감 창출기능 ⑤大衆動員 機能 ⑥체제유지와 발전 전략 기능을 수행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sup>9)</sup>

북한의 主體思想도 기본적으로 위의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분단상황 및 전통적 정치문화의 특성에 따라 독특한 기능들이 변형적으로 첨가되고 있다고 본다. 결국 北韓政治體制作動原理로서의 政治文化라고 할 수 있는 주체사상은 권력체제의 정당화 기능, 대중동원의 기능, 권력세습의 합리화 기능, 대남혁명전략으로서의 기능 등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

9) Franz Schurmann, *Ideology and Organization in Communist China* (Berkeley: California Univ. Press, 1966), pp.58-62.

### Ⅲ. 傳統政治文化와 레닌주의 體制

#### 1. 特 性

정치문화와 정치체제가 갖는 밀접한 상관관계에서 볼 때, 공산체제의 특수성에 의하여 정치구조는 정치문화를 반영하는 정치문화의 산물이며, 또한 정치구조가 정치문화의 변동에 영향을 주는 '주어진 것들'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앞의 요지이다.

그러면, 북한 정치문화를 형성하는 構成要素는 무엇인가?

이 글에서는 크게 두 가지 요소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하나는 傳統政治文化이고 다른 하나는 마르크스주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레닌主義體制的 特性이다. 북한체제를 단순히 전체주의 모델 속에 넣어 전체주의 정치문화와 의도적 사회화 내지 정치교화의 입장에서 설명하기에는 북한정치문화가 갖는 특성이 독특하기 때문에 傳統과의 관계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북한의 정치문화 形成要因을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정치문화는 문화현상의 일부란 점에서 歷史性을 지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통적 정치문화와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어느 정치제도라 할지라도 그 사회에서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전통적 정치문화와 완전히 단절해서 새로운 정치문화를 창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회주의적 인간이나 사회주의적 이상사회라는 국가목표가 모든 사회제도

의 일상생활을 결정짓고 그 속에서 새로운 사회주의문화가 형성된다는 논리는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소련과 동구제국이 공산사회로 전이된 역사적 사실을 전통사회가 깨지는 혁명적 변혁으로 인식하고 전통문화가 완전히 소멸되는 과정으로서 사회주의 개혁을 분석한다면 자칫 共產社會의 心理文化體系의 상호작용을 인식할 수 없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 따라서 가시적 변동 속에 먼먼히 지속되는 전통문화의 속성들이 공산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접근방법의 의의를 중요시하고자 한다.

北韓의 傳統的 政治文化란 공산화되기 이전에 존재했던 정치문화를 지칭하게 된다. 이러한 전통적 정치문화는 북한의 정치문화의 형성에 매우 큰 영향을 주었으며 어떤 측면에서는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적절히 이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북한의 정치문화형성에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되는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물론 정치문화형성요인을 지적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나 대표적인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10)</sup>

첫째, 역사적인 요인으로서 朝鮮朝의 儒敎文化를 먼저 들지 않을 수 없다. 조선조 500여년간은 유교문화가 사회를 지배했기 때문에 삼강오륜과 같은 유교적 가치관에 의해 행동이 규제되었고, 사상이나 생활에 준 감화와 영향은 막대한 것으로서 조선인은 이 유학으로 인

10) 전인영 외, 「북한의 정치」(서울: 을유문화사, 1990), p. 145.

하여 사상이 변하고 민족적 성격까지 변화를 가져올 만큼 철저히 신봉하여 그외의 어떤 정치적·사회적 이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유교문화는 전통적 정치문화를 權威主義的 特性을 갖게 했으며, 권위주의는 북한의 정치문화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둘째, 民族主義的 性向을 들 수 있다. 한민족은 단일민족으로서 5천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에서 다른 나라의 민족과 문화와는 명백히 구분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민족적 주체성 내지 민족주의적 성향이 전통적 정치문화에 강하게 흐르고 있다. 계속된 외침에 대한 저항, 독립운동, 민족분단 등은 민족주의적 성향을 고양시키기에 충분한 역사적 경험이었다.

셋째, 36년간의 식민지 봉치기간에 지배했던 日帝의 軍國主義 文化도 북한 정치문화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조선조 봉치체계를 붕괴시킨 다음 자리잡은 일본의 군국주의적 위계질서는 자유주의나 민주주의의 어떤 경험도 우리 민족에게 허용하지 않았다.

이상의 전통적 정치문화와 더불어 북한 정치문화형성에 또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共產主義 이데올로기이다. 현재 북한은 주체사상을 공식 이데올로기로 천명하고 있지만, 정권수립과정에서부터 정치문화형성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인 공산주의였다.

북한에 유입된 이래 정치문화형성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공산주의는 마르크스주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하겠으나 레닌주의와

스탈린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불세비즘의 영향도 대단히 컸으며, 毛澤東思想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다. 북한공산주의에서 마르크스주의가 이념적 토대였다고 한다면 불세비즘은 그의 실천이론이었으며 모택동 사상은 변화가능성의 한계적 토대였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정치문화형성에 작용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사상으로 ①唯物史觀, ②階級鬭爭說, ③資本主義 崩壞說, ④國家消滅論 등을 들 수 있고,

둘째, 레닌의 사상으로 ①공산주의사회는 마르크스주의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필연적으로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 혁명세력의 정치적 의지에 의해 성취될 수 있다는 主義說, ②공산주의 혁명부정을 조직하고 지도하는 소수정예의 직업혁명가 집단이 공산당이며, 그 공산당 조직원칙과 활동방향 및 목적 등에 관한 黨理論, ③帝國主義論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스탈린의 사상으로 ①마르크스주의의 세계혁명론을 부인하고 소비에트 러시아 한 나라만의 사회주의 건설이 가능하다는 一國社會主義論, ②자본주의 멸망과 공산주의 실현은 이론이나 사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산당 군사력에 의한 전승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하며 국가와 집단의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의 자유와 재산, 생명 등 모든 것은 불가치적으로 철저히 동원한다는 전체주의에 관한 주장인 暴力的 全體主義를 들 수 있다.

끝으로 모택동의 전략사상으로 ①레닌이 착상한 것을 모택동이 발전시켜 이론체계화하고 중국공산혁명에 현실적으로 적용하는데 성

공한 後進地域革命論, ②모택동식 총력전 구상인 遊擊戰略, ③의식개혁위주의 教化政策 및 ④大衆動員路線을 들 수 있다.

이상에서 열거한 전봉적 정치문화요소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요소가 북한정치문화를 형성하는데 어떻게 작용해왔으며, 두 요소들끼리 어떻게 相互浸透的인 관계를 가져왔는지는 다음 장에서 검토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주제사상이라는 정치문화형성에 영향을 미친 두 요소의 相互關係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 2. 相互關係：葛藤과 調和

전봉적 정치문화와 북한에 유입된 공산주의적 특성은 서로 갈등과 조화를 이루면서 각각 본래의 성질을 변화시켜 왔다고 볼 수 있다.

어떤 측면에서 調和를 나타냈다고 평가할 수 있는가?

첫째, 북한의 문화정책 중 최우선시하는 主體確立은 우리 민족 고유의 민족자주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주민의 큰 저항없이 수용·발전시킬 수 있었다고 본다. 공산주의에서는 民族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는 달리 사용하고 있으나<sup>11)</sup> 북한에서는 굳이 공산주의에 입각한 민족의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의 개념으로 넓게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의도는 우리의 民族感情을 利用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

11) 김용구, "전봉적 민족개념과 공산권 민족개념의 비교," 『통일정책』 제5권 제1호(1979), pp.16-30.



따라서 정권수립 이후 北韓 文化政策에서 시도하려 했던 마르크스-레닌주의 원칙의 이식정책을 뒤에 수정하여 그 원칙을 역사적 배경과 현실적 조건에 맞도록 창조적으로 적용한다는 취지로 시작한 주체사상은 북한의 주민들에 의해 보다 쉽게 수용될 수 있었다고 본다.

둘째, 김일성 숭배를 위해 만들어낸 唯一思想體系의 受容度도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 등을 숭배하는 외래사상의 수용도보다 높았으리라 생각된다. 북한체제 수립 초기에 강조한 평등사상으로 모든 사회관계에 동무 호칭을 사용하도록 강요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는 김일성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은 민족의 태양, 최고 수령, 어버이 등 최고 호칭으로 바뀌었을 뿐 아니라 이 변화가 쉽게 그리고 큰 저항없이 북한 주민들에게 수용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儒敎的 忠誠의식과 상위자에 대한 존경의식, 의존의식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셋째, 북한에서 集團主義가 어느 정도 수용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전통적 협동의식, 상부상조의식 때문이라는 점이다. 개인주의가 발달한 서구사회에서 집단주의가 수용되는 상황과 비교하면 북한의 집단주의는 상당히 쉽게 수용, 전파되었다고 본다.

넷째, 북한이 강조하는 勞動愛護精神과 혁명적 낙관주의가 북한에 어느 정도 수용될 수 있었던 것도 우리의 전통적 근면, 소박, 낙천적 생활관을 토대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다섯째, 북한이 특이하게 강조하는 사람과 사람과의 사업은 우리의 傳統的 人間關係를 의식하여 출발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여러 유형의 조직을 형성하여 그 속에서 당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게 하는 노동동원체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전통적 인간관계의 유대의식을 이용하려 한 것이라 짐작된다.

이상에서 지적한 몇 가지 점은 북한이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입각해 새로이 형성하려는 공식적 문화와 전봉적 정치문화가 조화를 이루거나 변용될 수 있는 것들이다.<sup>12)</sup> 이러한 변용 과정을 통하여 북한에서는 북한 특유의 정치문화를 형성해오고 있다.

다음에는 북한이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입각하여 형성하려는 공식적 문화와 전봉적 정치문화가 서로 조화될 수 없는 葛藤의 측면을 지적하고자 한다.<sup>13)</sup>

첫째, 階級敎養과 革命傳統敎養은 전봉적 정치문화와는 전혀 다른 이질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우리의 역사를 계급간의 투쟁 과정으로 설명하려 하고 階級鬪爭의식을 강조하고 있으나 과거전봉은 평화애호정신과 타협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조화와 질서를 유지해 온 사회이다. 그리고 북한은 혁명적 세계관을 제시하고 있으나 전봉은 자연·사회·인간의 조화를 이상으로 하는 人本主義的 傳統을 가지고 있다.

둘째, 集團主義에서 개인의 희생을 요구하고 집단과 전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집단영웅주의를 구가하면서 공식조직의 규율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북한 주민들 사이에는 가정과 가문, 그리고 지역사회에 있게 되는 비공식적 자생집단의 규범을 우선시하고 개인의 이기적 성향과 개인영웅주의적 성향이 아직도 지배적이다.

---

12) 박용현, "북한의 문화정책과 전봉문화," 『북한학보』 제2집 (1978), pp.27-28.

13) 박용현, 앞의 글, pp.28-29.

셋째, 공산주의 도덕에서 강조하는 재산의 공동소유의식, 공공재산의 애호, 당과 조직에의 충성의식, 평등의식 등은 私有財産에 대한 애착, 가문의식, 남녀유별, 장유유서 등의 전통적 가치관과 의식구조와 일치하지 않는 내용들이다.

넷째, 북한이 근절해야 할 것으로 강조되는 반동적 사상과 낡은 관습은 전통적 가치관과 전통적 관습과 결부되어 있어서 쉽게 없앨 수 없는 내용들이다. 反家族主義, 反個人主義, 反地主, 反資本主義, 反封建的 儒敎道德 등은 북한이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요소들이다. 그러나 혈육의식, 인정, 상부상조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관계의 유대의식, 유교적 질서의식, 상호의존의식 등의 전통적 가치관과 관습은 북한이 요구하는 바대로 쉽게 없어질 수 없으며, 이들 전통적 의식구조와 생활양식으로 인하여 새로이 강요하는 사회주의적 가치관과 생활양식을 수용하는 과정에 적지 않은 갈등과 마찰이 야기될 것으로 본다.

이상의 相互關係를 볼 때, 어느 정치제도라 할지라도 그 사회에서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전통적 정치문화와 완전히 단절해서 새로운 정치문화를 창조할 수는 없다. 단지 체계적인 변화를 시도하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 원용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 IV. 適應努力的 類型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해방 후 북한에 투입된 새로운 외래문화인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는 우리의 전통문화와 끊임없는 相互作用의 결과로 오늘의 北韓의 社會文化體系(sociocultural system)를 낳았다. 모든 공산주의국가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처럼, 북한에서도 사회문화체계에서 政治的인 側面이 차지하는 정도는 압도적인 것 같다. 주민생활의 모든 측면이 '정치'<sup>14)</sup>와 관련되어 있고, 사회변동 내지는 사회발전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을 政治에서 찾으려고 하는 공산주의자들의 철학은 북한의 정책에 관한 공식적인 문헌의 어디에서나 흔히 찾아볼 수 있는 하나의 특징이다.

따라서 政治文化의 개념을 "사회구성원들의 정치체제에 대한 심리적인 정향(psychological orientation)"이라는 主觀的인 側面에만 초점을 두고 북한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치과정을 파악하고 이해하려고 하면 별로 도움을 얻을 수 없다고 본다.

---

14) 북한에서는 '政治'를 "일정한 계급이 사회에 대한 계급적 지배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치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755. 특히 정치를 프롤레타리아 독재 혹은 노동자계급이 지배하는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으로 보고 있어,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주민생활을 통제하고 조직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본다. 따라서 북한에서 정치는 사회의 모든 부분을 조직, 지도, 통제하는 상위의 개념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 글에서는 북한이라는 사회문화체계 속에서의 한 下位體系(subsystem)라고 할 수 있는 정치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제부분 또는 요소들간의 상호작용을 편의상 北韓의 政治文化로 간주하고 논의하려고 한다. 또한 전통적 정치문화의 의미도 정치문화라는데 비중을 두지 않고 傳統文化라는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 장에서는 북한정치체제 내에서 전통정치문화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 變容過程을 承繼, 變容, 改造의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승계는 전통정치문화가 큰 수정없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 변용은 골격은 유지한 채 내용이 많이 달라진 것, 개조는 골격과 내용에 있어서 모두 달라진 것이라는 개념에 입각해 보려고 한다. 이 개념들의 구분기준은 엄격한 것이 아니고 전통정치문화의 변화형태를 보기 위해 편의상 나는 것이다.

또한 앞 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통정치문화와 공산주의적 특성간의 相互浸透的인 입장을 전제로 하되, 여기서는 전통정치문화의 변용과정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또한 전통정치문화가 북한정치체제의 특성형성에 능동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북한 지도자들이 그들의 정통성 확립을 위해 전통적 요소를 부각시키며 取捨選擇해 온 과정을 보는데 비중을 두고자 한다.

해방 이후 북한에서는 전통문화에 대한 평가와 계승을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왔다. 이는 그것이 社會主義的 民族文化建設의 바탕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 새로운 사회주의적인 민족문화는 결코 빈터 위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민족문화의 우수한 전통을 비판적으로 계승·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건설”<sup>15)</sup> 된다고 하는 입장이 바로 그것이다.

북한이 민족문화유산인 전통문화의 평가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또 다른 이유는 그를 통해 社會主義的 愛國主義를 고취시키는 데 있다.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는 사회주의에서 사회발전을 추동하는 강력한 요인의 하나이며 혁명과 건설을 수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애국주의 정신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나라의 현실과 역사 그리고 우수한 傳統을 잘 아는데서 생겨나므로 문화유산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계승이 愛國主義 形成의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이다.

결국 전통문화에 대한 평가와 계승은 사회주의 건설에 복무하는 주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받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단지 사회주의 문화건설의 차원만이 아니고 사회주의 사회 그 자체의 건설에 필요불가결한 요소로서 思想敎養, 思想革命의 중요한 한 부분을 구성한다. 북한사회에서 전통문화의 평가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 1. 承 繼

북한의 계획적인 文化政策의 실행결과 전통문화가 그대로 승계되는

---

15) “ 조선혁명가들은 조선을 알아야 한다, ” 「 김일성선집 」 (서울: 대동, 1988), p.194.

에는 쉽게 찾아보기 힘들지만, 전통문화요소 중에서 '孝'의 관념은 크게 변화되지 않은 채 승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권수립 초기 북한정권당국자들은 전 사회를 혁명화시키는 첫 단계로 家庭生活의 革命을 불러 일으키기를 강조해왔다. 전통사회에서 가족이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들은 사회주의 건설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이유로 가족주의를 儒敎的인 傳統의 殘在로 간주하여 이 문화요소를 제거해버리려는 강력한 운동을 벌인 바 있다.

그러나 부모와 자식들간의 긴밀한 가족관계를 파괴시키려는 표면적인 조치는 취할 수가 없었다. 유교적인 사상을 송두리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오히려 孝의 觀念을 통치수단으로 이용하고자 잔존시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북한의 민속학분야의 기관지인 「고고민속」은 孝를 문화유산으로 보존해야 할 미풍양속이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sup>16)</sup>

또한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사랑을 "산보다도 높고 바다보다도 깊은" 것에 비유한 것을 보면 유교적인 전통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표현인 것 같다.<sup>17)</sup> 또한 자식이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의 노후를 돌보는 것은 도덕적인 의무이며, 만약 이러한 의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면 배은망덕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은 가정생활의 중요성을 아직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

16) 「고고민속」 제53호(1966년 11월호), p.3.

17) 「조선여성」(1962년 1월호), p.22. 이문웅, "북한정치문화의 형성과 그 특징," 「통일정책」 제4권 제2호(1978), p.187에서 재인용.

나 문제는 이러한 이상적인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는 만약 부모가 反社會的인 行爲를 범했을 때는 결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효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김정일에게로의 권력이양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더 強해지고 있다.

그 외의 사회구조 및 가족제도는 사회주의적 사회정책에 따라 1950년대부터 전봉적 특색을 잃고 말았다.

家族主義는 門閥主義라 하여 종파형성의 원인으로 보고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은 1947년에 戶籍제도를 폐지한데서 시작된다. 사유재산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가정은 가정중심의 생활영위보다 전체사회에 구속성을 더 갖게 된다. 즉 家主의 家財權이 없기 때문에 家督權을 행사할 수 없고 더우기 당이나 단체가 가정개인을 묶어두고 있기 때문에 가정은 형식적인 가족의 대표일 수 밖에 없다. 부녀자의 가정으로부터의 혁명, 어린이의 탁아소 강제위탁은 혈연에 기초한 가정의 구성요소를 약화시켜버리고 말았다.

또한 1953년부터 시작한 농업협동화는 親族조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sup>18)</sup> 이로써 문중집단은 조상전래의 강력한 사회조직을 구사할 수 없게 되었고 재정적인 토대를 박탈당하고 말았다. 특히 1946년 초에 실시한 土地改革으로 인해 뿌리 깊은 전봉적인 친족조직은 이미 공산화 초기에 파괴되기 시작했다. “농지는 경작자에게”라는 슬로건을 들고 진행된 토지개혁으로 인해 농가구당 5정보 이상의 농지는

---

18) 이문웅, “공산체제하에서의 친족조직,” 문화인류학회 전국대회 발표요지(1977.10.7.) 참조.



몰수되었고 부재지주 및 반역자의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의 농지는 몰수됐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전통적인 친족조직과의 정면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문중소유의 묘지에 관련된 산림은 몰수대상에서 일단 제외했다는 점이다.

게다가 인력수급정책의 일환인 人口의 地域的 再配置는 북한의 전통적인 부락조직, 혈연, 가족의 전통성을 약화시키고 그 기능을 상실하게 하였다.

지금 현재 비공식적으로 가족단위로 家祭를 지내고 있는 일부분의 현상을 빼놓고는 전통적인 모습은 거의 사라진 셈이다. 공산화 초기에는 한 동안 조상제사의 관습을 근절시키려고 했었으나 심한 반발에 부딪쳐 이 조치는 완화되었고 현재는 방임상태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부락단위, 문중단위의 제의식은 찾아볼 수 없이 근절되었으나 가제사는 방임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가족끼리 조촐하게 지낸다. 노동당에서도 祭祀를 권장하면서 주인의 생존시의 사상성이나 업적 등을 비판하고 반성의 기회로 삼으라고 지도해오고 있다.

이에 북한에서는 가제사에 당간부들의 제사참여를 권장하고 있으며 이것이 새로운 관습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불행한 처지에 있었던 조상의 자손들이나 행정권의 지배층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조상제사가 그들의 조상들이 소위 인민의 편에 섰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절호의 기회가 되지만, 이는 제사를 통해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일부층에 국한된 관습이라 하겠다. 떳떳하지 못한 공산화 이전의 엘리트 계층 출신에게는 이를 오히려 피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2. 變 容

변용의 예로서 북한에서 강조하는 民族 自負心에 대한 것을 먼저 들 수 있겠다.

북한의 민족문제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민족적 자부심이다. 이는 논리라기 보다는 일종의 感情이며 信心이다. 이는 다음 귀절에 잘 나타난다.

“우리 민족의 민족적 자부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것은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모시고 혁명한다는 높은 긍지와 자랑, 그이께서 세워주신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 제도라는 우월감, 그이께서 몸소 이룩하신 빛나는 혁명, 전통의 계승자 된 영예, 그이의 영도 밑에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거대한 업적을 가지고 있다는 자부심이다.”<sup>19)</sup>

이를 통해 보면 민족적 자부심은 김일성과 더불어 시작되고 끝나는 것이며 김일성과 관계되지 않은 것은 민족적 자부심과 무관한 것이 된다. 어찌서 김일성만이 민족적 자부심의 근거이자 근원일 수 있는가를 따질 때 부각되는 것이 몸소 이룩하신 빛나는 ‘혁명전통’이다. 이 개인숭배사상은 물론 마르크스-레닌주의와는 상관없는 소위 부르조아적, 봉건적 사상임에 틀림없다.

그러면 이러한 개인숭배사상이 왜 북한에 출현하고 또한 수용되고

---

19) 「정치사전」, 앞의 책, P.429.

있는가? 이 대답을 위해 傳統的인 民族的 特性과 무관하지 않다고 전제를 할 수 있다.

먼저, 家父長制的인 東洋的 秩序觀과의 관련성을 검토해볼 때, 이 문제는 헤겔이 그의 「역사철학」 서론에서 중국을 ‘지속의 나라’라고 지적한 것에 관련된다. 헤겔에 의하면, 중국 및 몽고 등 동양의 나라는 강력한 가부장제를 이루어 한 사람의 부가 최상위에 군림하게 되는데, 이 원리가 국가조직에까지 적용되며 개인은 도덕적으로는 무아와 같다는 것이다.<sup>20)</sup> 이를 그는 散文的인 나라 또는 持續의 나라라고 불렀다. 父로서의 絶對權을 행사하는 가부장 또는 국왕이 위에 놓여 있고 백성(개인)은 모두 자의 위치에 놓여진다. 부자관계가 강하면 강할수록 사회적 안정감으로서의 지속성은 가능하지만 父는 언제나 父이고 자는 또한 늘 자일뿐 이에 대한 변동은 없다. 이를 공간적 지속이라 부른다. 이 공간내부에서는 주체(개인)는 자기의 권리(자각)에 도달될 수 없고 언제나 父에 대한 자로서만 존재될 뿐이다. 유아기에서 벗어날 방도가 없다. 무역사성이라 함은 이 때문이다.

이 가부장제와 국가제도가 밀접히 관련되었다는 것, 그 철학적 기반이 儒敎思想임은 누구나 아는 일이다. 그 규범은 오분으로 집약된다. 이러한 가부장제와 국가조직의 사상은 유교의 교리와 함께 동양

---

20) 헤겔, 「역사철학」(김증호 역, 사상문고), p.221. 김운식, “북한의 민족이념 - 주체사상과 관련하여-”, 「통일정책」 제4권 제4호(1978), p.41에서 재인용.

적 질서감각으로서 우리 나라에도 오래도록 깊은 뿌리를 남겨 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사의 특수성과 관련시켜 민족적 자부심을 살필 필요가 있다. 즉 민족적 자부심의 정체가 유교적 사유에서 벗어난 성질에서 연유한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자부심이란 일종의 감정이자 신심이어서 논리화는 거의 무관하다. 한마디로 이 감정이나 신념은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과 그 후의 행위에서만 발생 적용되며,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다. 다시 말해 북한에서 말하는 민족적 자부심의 근거는 김일성이라는 존재에 있을 따름이다.

이는 동양적, 조선조적인 儒敎的 思惟의 側面으로 분석될 수 있다.

소위 父 개념의 설정이 그것이다. 일체에 의해 살해당한 父 개념(국가 개념)은 형언할 수 없는 그리움을 낳았다. 이 엄청난 고통부분을 메우려는 급진적인 사상은 그 대가불을 찾는 강렬한 충동을 낳는 것이며 이는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다. 이를 어느 순간 하나의 고정모델로 설정하면 부는 항상 부로, 자는 항상 자로 상하관계가 성립된다. 심리적 지속은 이로서 획득된다. 대내적 변화는 없다.

이것이 해방 이후 현재까지의 북한 사람들의 심리구조라고도 볼 수 있다. 더구나 남한을 대외적인 존재로도, 혹은 대내적인 존재로도 볼 수 있는 처지에 놓을 수 있기에 부 개념으로서의 김일성 사상은 계속 민족적 자부심을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변용의 또 하나의 예로서 歷史에 대한 해석을 들 수 있다.

북한에서의 과거역사에 대한 기술은 독특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거에 대한 평가는 주체사상의 형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을 뿐 아니라 그것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현재 역사해석의 기준은 다름아닌 主體史觀이다. 즉, 주체성의 원칙, 당성·노동계급성·역사주의 원칙에 따라 역사적 사물과 현상을 평가하고 있다. 이 원칙에 입각하여 계승·발전시켜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정한다. 특히 북한에서는 역사학이 애국주의와 계급교양의 강화수단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人民階級の 觀點에서 평가한다.

북한에서는 철학사, 사상사의 발전을 唯物論과 觀念論, 辨證法과 形而上學의 상반되는 두 조류가 투쟁한 역사로 파악한다. 유물론과 변증법은 진보적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고, 관념론과 형이상학은 인민의 투쟁을 억압·말살하려는 반동계급의 이해를 대변한 것으로 구분하여 이 두 조류 사이의 투쟁이 두 계급·계층간의 투쟁을 반영하며 발전해왔다고 본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상사의 특징으로 유물론인 변증법적인 사유가 중단없이 계속 발전해온 점, 유물론 철학이 변증법적 사상 특히 진보적인 사회정치사상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발전해온 점, 불교에 대한 적불론, 유교에 대한 실학, 기독교에 대한 동학과 같은 무신론 사상이 발전해온 점을 들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지닌 北韓의 歷史學은 단순한 학문으로서의 기능을 넘어 정치사상적, 정치교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해석에 대한 기준은 黨의 政治思想的 觀點에서 결정되고 있다. 따라서 그 기준도 당의 현실적 목표와 관련한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제시되고, 그 때문에 정치정세에 따라 평가의 기준이 달라지게 된다.

實學에 대한 평가는 과거 전통문화에 대한 평가의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로 들 수 있다.<sup>21)</sup> 전통문화에 대한 전면적 연구와 계승이 주장되던 시기에 실학은 변증법적·유물론적 요소를 내포하고 유물론철학의 발전에 공헌하였으며 조국의 부강발전을 염원한 진보적 양반들과 농민·도시평민들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한 진보적 이데올로기로 높이 평가되었으나, 復古主義 경향에 대한 비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실학에 대한 과도한 평가가 지적되어 크게 수정되었다.

“실학파를 올바르게 평가하는 것은 민족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는 데서, 교육사업에서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데서 매우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고 실학평가의 의의를 제시한 뒤 그 동안 실학사상을 “너무 높게 평가해왔다”는 金日成의 敎示<sup>22)</sup>를 기준으로 하여 실학파의 사상은 반동봉지배들을 반대한 진보적 양반계층의 사상으로서 거기에는 그들이 처한 사회계급적 처지에서 오는 본질적 결함과 당시의 생산력 수준과 과학발전 수준에 의하여 제약되는 여러 가지 제한성이 있으며, 봉건제도와 특권적인 양반신분을 보존하는 조건하에서 사회정치적 변혁을 주장한 것으로 封建儒敎思想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미신적이며 비과학적인 견해를 먼치 못한 한계가 있다고 再評價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실학파인물들은 어디까지나 당대의 역사적 환경에서만 일정하게 진보적인 역할을 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그들의

21) 김영수, “북한에서의 실학 연구실태,” 『통일문제연구』 제1권 제4호(1989 겨울), pp. 210-234 참조.

22) 김영수, “북한의 다산연구시각,” 『동아연구』 제19집(1989, 12), p.45.

책이나 작품들은 당시의 역사나 문화를 연구하는 데는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 오늘에 와서까지 그 무슨 큰 의의를 가지는 것처럼 볼 수는 없다고 한다. 결국 실학파의 사상은 “로동계급의 혁명사상도 봉건주의사상도 아니며 자본주의적 관계가 형성되어 가던 초기에 반동적 봉건통치배들을 비판하고 자본주의의 길로 나갈 것을 지향한 진보적 철학사상조류”로 평가되었다.

이와 같이 歷史 속의 傳統文化는 주체사상형성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變容의 과정을 거쳤다.

### 3. 改 造

전통문화의 개조는 북한정치체제의 정통성 확립을 위해 많은 분야에서 진행되었다.

먼저 革命傳統의 創造를 들 수 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북한은 민족사를 당성의 원칙에 의해 해석하여 김일성체제를 정당화하는데 이 용하고 있다. 해방 후 역사관이 정립되지 못한 초기에는 46년의 「조선민족부쟁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민족사를 사회주의이론에 입각해서 조선공산당사 중심으로 해석했으며, 그 후 마르크스의 5단계 경제발전론의 도입이 논의됨에 따라 56년과 58년의 「조선통사」 상·하에서는 唯物論에 입각해서 해석하고 있었다.

그러나 60년대에 들어서면서 김일성의 우상화를 위해 근세사, 현대사를 중심으로 한 58년의 「조선민족해방부쟁사」를 개편하고 김일성의 혁명전통의 부각에 역점을 두고 있다. 김일성은 64년 11월 4일

작가 예술인들에게 “혁명적 문학, 예술을 창작할 데 대하여”라는 교시를 내려 당과 혁명에 복무할 수 있는 혁명전용교양을 심도있게 할 것과 혁명적 대작을 창작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일성 집안의 血統을 미화하여 개인숭배의 바탕으로 삼는 노력을 기울여, 봉화, 은률 등지에 김일성의 父 김형직의 사적지, 사적관이 건립되었고, 함경북도 회령에는 김정일의 생모 김정숙의 사적지, 사적관이 건립되었고 평양시 근교의 대성산에는 혁명열사능이라는 명칭하에 김정숙의 능이 생겼다. 더우기 1866년 미국상선 서만호를 격침시키는데 김일성의 증조부 김응우가 주동적인 역할을 했으며, 3·1운동은 김일성의 父 김형직의 반일지하조직인 조선국민회가, 1920년대 후반기 이후의 항일투쟁은 오직 김일성의 주도로 행한 것처럼 역사를 개조하고 있다.

역사개조의 예를 몇 가지들면, 고조선, 부여, 삼한을 古代奴隸制 國家로 설정하고 있고, 고려시대의 묘청과 정지상의 난을 중앙과 지방간의 지역적 대립으로 보는 南韓의 역사해석과는 달리 대토지 소유자와 중소 봉건계급간의 투쟁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私奴 만적의 난을 피지배계층의 지배층을 향한 階級鬪爭의 시각에서 크게 浮刻시키고 있으며, 訓民正音 창조도 세종대왕이 封建制度를 強化할 목적으로 만들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특히 人物評價에서 역사개조의 예는 잘 드러난다. 인물평가에서는 그가 인민적·진보적·애국적 입장에 있었는가 하는 점이 평가의 기준이 된다. 역사적 상황 속에서 애국심은 애국심대로 높게 평가하지



만, 愛國心을 階級的 入場에서 평가한다.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의 관점에서 옛 명장이나 그들의 애국주의를 평가할 때는 애국주의의 계급적 기초가 본질적인 문제가 된다. 애국명장들은 거의 전부다 경제적 관계에서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는 대관료였으며, 그들의 사상도 지배계급의 입장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어서 지배계급에 속한 애국명장들의 애국주의는 결코 인민의 이익을 위하여 발휘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 이들이 소위 부르조아 명장이다. 왕건, 이성계, 김부식 등이 平價切下된 대표적 인물들이다.

반면, 온달은 천인 출신이라는 이유 때문에 역대로 명장에 끼지 못하였다고 비판하면서, 6세기 후반 후주 침입을 격퇴할 때 총지휘한 공을 들어 애국명장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국왕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역대로 반역자로 평가되어온 배중손을 몽고침략자 및 그와 결탁한 국왕 일파와 용감하게 싸운 애국명장으로, 전봉준은 농민전쟁을 지휘하여 봉건지배층과 일제침략자에 대항하여 투쟁한 명장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순신에 대해서는 부패무능한 봉건지배계급의 박해를 무릅쓰고 침략자를 무찌르는데 힘쓴 애국명장이지만, 양반지배계급 출신의 지휘관으로서 그의 애국심은 국왕과 봉건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기초한 것으로서 양반지배계급의 통치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있었다고 평가해 그의 애국심의 한계를 지적한다.

개조의 또 하나의 예로서 憎惡의 美德을 들 수 있다. 북한 정치교양사업에서는 역사에 나타난 否定的인 側面들을 강조함으로써 현세에

서 이를 극복하고 혁명적인 열의를 불러 일으키려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다. 아울러 정치교화사업에서 가장 강력한 수단은 敵에 대한 증오심의 긍정적인 사용이다. 적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은 사회주의적인 애국심과 현존하는 정치체제에 대한 신뢰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미제국주의, 일본제국주의라는 적은 북한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증오의 대상이다.

이런 증오의 감정은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또는 사회주의적 휴머니즘으로 연결된다. 「근로자」에 의하면 계급적인 적에 대한 증오의 정신은 인민에 대한 사랑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뿐 아니라, 이 두 가지는 함께 공산주의휴머니즘의 핵심을 이룬다는 것이다.<sup>23)</sup>

---

23) 「근로자」(1964년 10월호, p.6). 이문웅, “북한정치문화의 형성과 그 특징,” 앞의 글, p.198에서 재인용.

## V. 適應努力的 時期的 區分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북한에 이식하기 위해 북한이 초기부터 계속 추진해온 정책 중의 하나는 傳統文化에 대한 選擇的 受容政策이다. 北韓도 다른 공산국가와 마찬가지로 공산주의적 새 인간 및 새 사회의 조형을 교양사업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이 시도한 傳統文化의 選擇的 受容에 대한 정책의 변천과정을 살펴 그 속에서 나타난 전통문화의 변화과정을 보고자 한다.

북한이 시도한 정책의 변천과정을 시기구분을 해가며 정확히 추적하기는 어렵지만, 여기서는 편의상 네 단계로 나누어 보기로 한다.

### 1. 第1期(1945—1958)

이 시기는 소련의 사회주의적 문화의 模倣期라 할 수 있다. 이런 시기구분을 하는 이유는 첫째, 6·25 이전까지는 특기할만한 문화정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과, 둘째, 1959년부터는 본격적인 주체사상 확립기로 접어들면서 文化政策이 크게 변천되었다는 점 때문이다.

6·25 이전까지는 소련의 지원 아래 정치적 기반을 구축하는 시기였기에 뚜렷한 문화정책이 없고 단지 '건국사상 총동원'이라는 구호를 제시하고 남침을 위한 정신무장을 강화하는 정도였다. 思想教育의 방향에 대해서는 ①마르크스-레닌주의로 무장할 것, ②반미·반일사상의 고취, ③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강조할 것, ④과학·기술

교육을 강화할 것 등을 언급할 정도였다.

그런데 전후 복구사업을 진행해 나가면서는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걸친 개혁을 단행하게 된다. 이 시기에 사유재산의 몰수, 토지개혁, 생산과 노동의 집단화 등 경제체제개혁을 단행하면서 전통적 제도와 생활양식의 타파를 위해 철저한 階級意識을 고취하고 공산주의사상교육을 강화하게 된다.

이러한 제도의 개혁은 가족관계를 비롯한 여타 영역의 생활양식에 변화를 초래하게 했으며,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타파하는 의도적인 교육적 노력도 수반되어 생활양식의 변화는 크게 촉진되었다.

이 시기의 개혁의 기준은 마르크스-레닌주의였다. 적성화, 전문화, 노동화 등 3대 교육지침을 포함한 文化政策의 基本方向도 소련의 것을 모방한 기본 원칙이었다. 이같은 소련제인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따라 모든 체제와 제도, 그리고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을 포함한 생활양식을 개혁하려 했던 북한은 傳統文化를 낡은 것이라고 하여 배격하지 않을 수 없었다.

## 2. 第2期(1958—1972)

이 시기는 주체사상에 입각한 혁명전봉의 확립기로서 한마디로 전봉문화의 選擇的 受容의 時期라고 할 수 있다.

이 기간은 주체사상을 부각시켜 소련에의 의존상태에서 다소 벗어나 새로운 정치노선을 구축하면서 내적으로 혁명전봉을 확립하여 정치교화를 포함한 문화정책의 방향을 전환하게 된다. 1955년 말부터

제기된 주체확립의 필요성은 1958년 사회주의 건설을 표방하면서 본격화된다. 중소분쟁의 와중에서 또한 국내 권력투쟁의 소용돌이에서 主體確立의 名分을 내세워 이를 타개해나가려는 김일성은 공산주의 이식과정에서 말살·단절하려 했던 전통문화와의 갈등을 인식했으며, 더우기 주민들의 저항과 반발을 부마시킬 필요를 인식했다.

특히 사회제도와 물질적 조건이 사람의 의식을 결정한다는 마르크스-레닌주의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는 다음의 연설문에 나타난다.

“ 사회생활의 제도적·물질적 조건들이 변하여도 낡은 사상과 낡은 습성들은 아직도 남아 있으며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 퍼지며 계승된다.”<sup>24)</sup>

이는 생산관계를 포함한 경제사회의 제반 제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고 물질기술적 토대를 닦아 물질적 요새를 점령하는데 크게 성공했으나 사람의 意識構造는 크게 변화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또한 사람의 의식구조를 개조하고 문화수준을 높이는 일은 사회제도와 물질적 조건을 개조하는 일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하고 교육을 포함한 文化政策의 方向을 轉換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

24) “ 정소년 교양에서 교육일군들의 임무에 대하여 ” (전국교육일군 열성자대회에서 행한 김일성의 연설, 1961년 4월 25일)

“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은 강압적인 방법으로 한꺼번에 다 없앨 수 없으며 점차적인 방법으로 꾸준한 교양과 투쟁을 통해서만 없앨 수 있다.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은 수천년을 내려오면서 사람들의 생활과 연결되었으며 적지 않은 관습과 습관, 풍속으로 된 것들은 그것의 보편성으로 하여 좋은가 나쁜 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 그러므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으로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행정식, 강압식으로 할 수는 없다. …… 오직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의 본질과 해독성,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의 본질과 우월성을 인내성 있게 목적의식적으로 해설교양하는 것과 함께 낡은 생활양식을 반대하는 강한 사상투쟁을 진행함으로써만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점차적으로 확립해 나갈 수가 있다. ”<sup>25)</sup>

이런 취지에 따라 전통문화에 대한 기본 방향에는 변함이 없지만, 선택적 수용의 문을 다소 넓혀 결혼, 회갑, 조상제사, 성묘 등과 같은 관혼상제의 예식 같은 풍습을 허용하고 동무 호칭을 선별적으로 하게 하며, 가정의 교육적 기능을 강조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 3. 第3期(1972-1980)

이 시기는 1972년 12월에 김일성 지배체제를 강화하는 新憲法인 사회주의헌법을 공포한 후 김정일에 의한 김일성주의가 완성되는 시기

25) 「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pp.217-218.

이다. 이 기간에도 제2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전몽문화와 주민들의 의식구조와의 마찰을 피하고 전몽문화와의 調和를 모색하는 문화정책을 계속 시도한다.

그러나 가정의 혁명화를 제3기 초기까지 계속하였으나 부모로부터 전승되는 낡은 사상·습관을 근절할 수 없고 혁명과업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하고 70년대 중반부터는 가정의 교육적 기능을 최소화하는 정책으로 재전환하게 된다. 그 예의 하나가 1976년 4월에 공포한 “어린이 보육교양법”이다.

전문 6장 58조로 된 “어린이 보육교양법”의 전문에 “어린이로 하여금 주체형의 혁명가로 보육·교양하고 모든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로 시작한 내용의 글자는 ①모든 어린이들을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보육·교양하며, ②어린이들을 과학적으로 문화적으로 키우기 위한 가장 선진적인 제도와, ③모든 어린이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우기 위한 혁명적 제도를 수립·운영하여, ④여성들로 하여금 자녀를 키우는 부담에서 벗어나게 하여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을 적극 보장하고 그들의 혁명화·노동계급화를 다그치게 한다는 등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이는 표면상의 명분이며 김일성지배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목적에서 전통적 가정의 교육적 기능을 집단으로 이관하려는 노력인 것이다. 부모로부터 전승되는 일체의 낡은 사상과 습관을 배제하고 김일성을 아버지로 여기게 하여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인간으로 조형하려는 것이다. 문학·예술의 정책도 여기서 제외되지 않으며, 언어와 언론 등 動員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여기에 쫓점을 맞추고 있다.

#### 4. 第4期(1980 以後)

이 시기의 문화정책은 김일성지배체제 유지와 더불어 김정일로 이어지는 세습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수립되고 있다.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역시 革命傳統의 神聖性 고양이며, 어버이에 대한 孝道가 유난히 강조되고 있다. 80년대 초반부터는 부모의 잘못을 고발하는 것은 인륜에 어긋난 행동이라는 김일성의 지적도 나오는 것을 볼 때, 세습체제 확립과 관련된 전통적 요소를 주민들 의식에 부각시키려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최근들어 가족제사라든가 성묘를 비공식적으로 허용하는 분위기에서 전통적인 가치 및 의식에 대해 매우 유연하게 대처하려는 북한 태도를 읽을 수 있다. 금년 추석부터는 성묘객들에게 국가에서 수송수단을 제공했다는 한 방문객의 목격담을 실은 신문기사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歷史觀의 變化도 읽을 수 있는데, 1987년판 「조선통사」에 나타난 변화가 그것이다. 1977년판의 것에 비해 볼 때, 계급적 관점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것으로 보이는 곳이 발견된다. 이러한 변화가 사관의 큰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전통문화의 평가에서 북고주의를 비판하면서 과도하게 내세웠던 階級的 觀點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 VI. 主體思想에 基礎한 新政治文化의 創造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북한의 정치문화는 북한 정치체제를 둘러싸고 있는 역사적, 환경적 조건과 함께 정권수립 이후 정치체제를 지배하고 있는 共產主義 이데올로기, 그리고 북한사회의 정치적 정향을 산출시킨 傳統的 文化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요소들의 상호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북한정치문화는 북한 정치체제 작동원리로서 그 기능을 수행해 왔다.

현재 북한의 정치문화를 대표하고 지지해나가는 것은 다름아닌 主體思想이다.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한 새로운 정치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조선의 현실에 맞게 창조적으로 전봉적 정치문화의 여러 요소들을 적절히 援用하는 과정에서 주체사상에 의해 주도되는 새로운 정치문화가 형성된 것이다.

### 1. 特 性

전봉적 정치문화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토대로 하여 형성된 주체사상에 의해 주도되는 새로운 정치문화의 特性은 무엇인가?

첫째, 敎條的인 理念主義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조적인 이념주의는 공산주의 체제의 속성을 지적하는데 사용되는 개념이지만 이것이 북한 정치문화의 내용상의 특징으로 지칭되는 것은 사회주의 진영내의 어느 공산국가보다도 완고하며 교

조적이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와 사회를 지도하는 이념을 조작적으로 정립하고 그를 절대시하며, 이념의 적용과 실천에 현실적 융통성을 전혀 긍정하지 않으려는 정치체제의 인지적 태도와 습득된 정향을 의미한다.

이미 공산주의의 증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소련 및 중국당국이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오류를 지적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반해, 북한정권은 이를 修正主義라 비난하면서 그 이념적 교조성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 이 이념적 교조성의 결정체가 바로 主體思想이다.

물론 북한 부총리겸 외교부장 김영남은 91년 9월 14일자 영국의 군사전문주간 「제인 디펜스 위클리」(JDW)와의 회견에서 북한은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지역특성에 부합되지 않는 마르크스주의를 사실상 拋棄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즉 북한의 확고한 이데올로기였던 마르크스주의를 “정부의 유용한 도구로서 사실상 포기됐다”고 말하고 “마르크스주의는 현재의 일상 현실, 특히 유럽과 근본적으로 다른 우리 나라와 그 역사에 비추어 적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마르크스주의가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한 포괄적이고 과학적인 해답을 줄 수 없다는 의미가 된다. 참으로 획기적인 발언이지만 이는 남 북한 유엔동시가입을 전제한 對外用 發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아직도 북한은 그 기본골격에 있어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틀을 벗어나지 않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북한의 경제체제, 구조, 그리고 운영은 마르크스주의 이론인 프롤레타리아 독재,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 계급투쟁 및 유물사관, 잉여가치론 등을 떠나서는 그 해석이 불가능하다. 마찬가지로

북한의 政治構造, 體制 그리고 統制는 레닌주의 이론인 집단주의원리, 제국주의론, 직업혁명론, 당의 향도적 역할론, 民主的 中央主義原理, 새 사회주의자적 생활규범 또는 행동지침 등을 벗어나서는 그 분석이 불완전한 것이다.

물론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당독재로, 일당독재가 일인 개인숭배독재로, 일인 개인숭배독재가 김일성-김정일 후계체제독재로 변형되어 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 기본 뼈대는 아직도 마르크스-레닌주의이고, 主體思想은 그 뼈대를 유지하고 있는 살이라고 비유할 수 있다.

이런 특성을 지니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북한정권의 출현과정에서 연유한다. 소련과 중국에 의해 의도된 他律的인 政權수립이었기에 권력의 정통성에 약점이 있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더 이념적으로 고조성을 고수하려고 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分斷狀況이라는 特殊性이 이를 더 강화했다고 볼 수 있다. 위기적 안보상황의 대처를 위해 이념적인 공고화를 유지하여 체제의 통합, 동원, 합리화기능을 강화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런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북한에서 김일성 주체사상의 뽕치이념화가 가능하도록 된 것이며, 그 결과가 당 규약에까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과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 것을 전주민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專制的 權威主義를 들 수 있다.

공산주의혁명론은 본질적으로 당독재이며 이는 프롤레타리아 계급독재로 시작하여 당독재로 이어지고 중국에는 일인 독재로 끝난다.

그러므로 프롤레타리아 독재론과 당이론에 따라 건설된 모든 공산국가들은 거의 예외없이 專制的 權威主義 성향을 띠게 된다.

특히 레닌주의의 영향은 북한을 전제적인 통치형태로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레닌주의는 社會主義와 專制主義의 結合體라고 할 수 있다. 프롤레타리아에 의한 혁명을 통하여 사회주의체제를 도입하고, 프롤레타리아의 독재라는 전제적 통치방식으로 이를 유지해간다는 주장이 바로 레닌주의의 핵심이다. 그런데 레닌주의는 필연적으로 엘리트주의로 변질하게 되어 있다. 비혁명적인 다수의 프롤레타리아를 동시에 참여시키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으로 혁명의식이 부철한 소수엘리트들이 지배집단을 별도로 형성하여 지배체제를 구성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지배집단이 黨이다. 따라서 레닌주의는 엘리트주의로 變質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북한의 정치체제는 이러한 레닌주의체제의 典型이다. 북한정치체제는 레닌주의에서의 일당지배체제를 더 엘리트화하여 일인지배체제로 변형시킨 것이다. 또한 그 내용도 달라졌다. 레닌은 사회주의를 위한 전제주의를 내세웠지만, 북한의 김일성은 社會主義를 버린 專制主義로 變質시켜가고 있다.

이런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영향이 북한의 정치문화를 전제적 권위주의로 만들기도 했지만, 보다 크게 작용한 것은 傳統的 政治文化라 하겠다.

전통적 정치문화의 하나인 권위주의적 요소가 오늘날 북한의 정치문화로서 뿌리를 박고 있다는 것은 북한의 정치체제가 입증하고 있다. 특히 王朝的 父子世襲이라는 권력승계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전제적 권위주의 정치문화가 토착화되어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사례인 것이다.

김일성 일인 독재, 개인숭배문제를 스탈린이나 모택동의 경험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라고 간주한다 할지라도 권력세습의 기도는 북한에 존재하는 독특한 정치행태인 것이다. 또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봉건적 신분제를 憎惡의 對象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북한에서 혈봉계승론을 내세워 김정일에 의한 權力승계의 當爲性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한 봉건적 세습논리인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북한은 “수령의 혈봉을 계승하는 후계자는 누구보다도 인민대중의 기대와 신뢰를 받으며 인민대중과 혼연일체가 된다”고 혈봉계승의 필연성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러한 입장은 김정일의 40회 생일을 기해 발표된 사로청 기관지 「로동청년」의 사설 “주체의 혈봉”(1982년 2월 16일자)에 잘 나타나 있다.

이처럼 북한에서 왕조적 부자 세습이라는 권력승계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전제적 권위주의 정치문화가 土着化되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북한의 경우 공산화과정에서 봉건성을 씻어내는 과도기로서의 혁명적 근대시민사회단계를 거치지 못하고, 이씨조선의 봉건사회가 일제식민지 통치가 중단된 이후 그대로 북한 공산주의사회로 이어졌다는 데서 그 독특성의 한 요인을 찾을 수 있다.

셋째, 民族主義的 性向을 띤다.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하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있어서는 민족주의는 원칙적으로 적대시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도 예외일 수 없는 것으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노선을 선언하

고 있으며 김일성도 民族主義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민족주의는 否定하면서도 자주성, 민족의식, 민족적 자부심, 민족적 대단결, 사대주의 반대, 자력갱생, 민족적 자주의식 등 민족주의적 성향을 주민에게 요구하면서 주체사상을 표출시키고 지도이념화하고 있다.<sup>26)</sup>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원인을 생각할 수 있으나, 그 중의 하나가 다름아닌 민족주의적 성향이 북한의 정치문화로서 사회전반에 걸쳐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즉 북한정권이 체제를 통합, 동원,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통치수단으로서 북한사회에 전통적 정치문화로 뿌리를 박고 있는 민족주의적 성향에 편승, 자극하는 방법을 선택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해 밀찌기 민족의식내에 잠재해 있던 성향, 그리고 한국동란으로 형성된 북한주민들의 반미의식을 자극하여 잠재의식의 현재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북한에서의 민족주의적 성향과 관련하여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정치문화가 순수 민족주의적 입장에서가 아니라 金日成 個人崇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민족주의적 성향이 북한 정치문화의 내용적 특성을 이루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것은 종국적으로 개인 우상화를 목적으로 북한 지도집단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

26) 김운식, 앞의 글, pp.33-35.

## 2. 機 能

이런 특성을 가진 북한의 정치문화는 북한정치체제 작동원리로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

첫째, 首領-主體體制의 正當化 機能을 하고 있다.

고조적 이념주의적 성향, 전제적 권위주의적 성향, 민족주의적 성향 등의 특성을 나타내는 북한의 정치문화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권력 구조에서 김일성 개인의 권력체제가 확고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국 이 모든 특성이 집약된 主體思想이라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항일혁명전통의 개조, 김일성 가계에 대한 미화 및 절대화작업은 主體思想의 首領論으로 귀착되었고, 여기서 절대적 권위와 무조건적 복종과 충성을 합리화하고 있다.

둘째, 權力世襲體制의 合理化 機能을 하고 있다.

북한체제는 혁명의 매 단계마다 주체사상에 근거하여 김일성 수령체제의 계승적 성격을 더욱 분명히 하였다. 이와 더불어 유일적 후계체제의 논리전개와 정당성 확보를 위해 후계자론, 수령결정론, 혁명적 수령관, 지도자론 등을 앞세워 주민들에게 꾸준히 學習시켜왔다. 이런 면에서 주체사상은 궁극적으로 북한의 세습적 권력승계를 합리화시키는 기능으로 귀결되고 있다. 공산주의 이론에 있어서 권력의 세습은 맞지 않는다. 이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뚜렷한 명분을 만들지 못하면 이의 실현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후계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을 제시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인물이 바로 김정일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권력세습의 합리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주민들은 이를 큰 저항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셋째, 大衆動員의 極大化 機能을 하고 있다.

북한 주민의 가치판단 및 태도에 있어서 준거불이 되는 정치문화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주체사상은, 사회주의의 건설과 혁명이란 명분으로 사회 각 분야에 걸친 대중동원을 극대화하는데 힘을 발휘하고 있다. 주체사상에 의하면 혁명과 건설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人民大衆이며, 혁명과 건설의 성과는 인민대중의 창조력을 어떻게 조직 동원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김일성이 제창한 주체의 령도방법, 혁명적 근중노선의 관철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상주입을 통한 근중동원의 강화는 1980년대 이후 김정일에 의해 주체사상이 체계화되고 그 절대적 권위가 강화됨으로써 더욱 촉진되고 있다. 즉 주체사상에서 제시하는 이론과 방법을 구현하는 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지름길이라고 규정하고, 인민대중에게 주체사상 교양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인민대중의 동원은 더 한층 강화되고 있다.



## VII. 結論－南北韓 文化統合에 미칠 影響

### 1. 文化傳統과 統一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공동체의 구성원간에는 공통의 가치정향, 공통의 사물인식방법 등이 전수되며 이러한 정신영역에서이 동질화된 요소들의 집합을 文化라 부른다. 문화는 세대간에 전수되고 또한 역사적 축적, 변경을 겪게 됨으로써 하나의 傳統을 형성하게 된다.

文化傳統은 사람이 환경을 인식하는 방식을 규정하며 가치정향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기초적 준거로 작용하게 된다. 이런 뜻에서 문화전통은 사람이 자기 삶을 영위해나가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이차적 환경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문화전통은 인간의 存在樣式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문화전통이 다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같은 일차환경에 대하여 다른 반응을 나타내며, 같은 사상에 대하여서도 다른 가치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는 인식의 틀과 행위선택의 틀이 모두 문화적 소산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개개의 인간공동체는 集體的 固有特性(syntality)을 나타낸다.<sup>27)</sup>

정형화된 문화가 어느 정도 유지되면 傳統이 된다. 그러나 문화는 어디까지나 인간의 창조물이다. 문화는 다름아닌 사람에 의하여 만

---

27) 이상우, “문화전통과 통일 의 과제,” 미원문화재단 창립 제20

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발표논문(1991년 6월 21일)

들어진 것이다. 어떤 계기가 생겨서 사람들이 전통과 다른 인식, 다른 태도, 다른 행위선택을 하기 시작하면 전통문화는 바뀌게 된다. 文化變形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문화인식을 전제로 統一의 課題를 문화전통과 관련지어 검토해보려고 한다.

남북한이 통일해야 한다는 생각은 서로가 서로를 '우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統一의 當爲를 논하는 과정에서 일차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역시 民族이다. 하나의 민족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야 한다는 주장에서 통일과제를 당위의 영역으로 간주한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 민족은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살아 왔으므로 분단된 국가를 하나의 국가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곁들인다.

우리 민족은 하나의 國家를 이루고 살아 온 역사가 천년이 넘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 속에는 민족과 국가가 나라라는 개념과 뒤섞여 있어 분리되지 않은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래서 보통 통일이라고 할 때는 민족통일과 국가통일을 모두 말하는 수가 많으며 정치통합, 경제통합, 사회통합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쓰고 있다. 그러나 본원적인 통일의 당위는 民族共同體의 單一性 回復으로 귀일한다. 따라서 통일의 핵심은 민족 통일이며 국가통일은 부차적인 것이 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文化同質性 維持는 민족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 동안 우리 민족은 역사적 특수성으로 인해 민족, 생활공동체, 정치공동체, 경제공동체, 사회공동체, 문화공동체 등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하나로 인식하고 살아왔었다. 그러다가 일

제 식민상태에서 해방되면서 두 개의 공동체로 분리되었다. 그 후 두 공동체는 점차로 敵對的 共存關係로 발전되어 왔으며 현실적으로 적대도가 전세계에서 가장 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남북한사회는 분단과 동시에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에 바탕을 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하고 인위적으로 서로간의 차별화에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짧은 시간내에 엄청난 異質化를 초래하였다. 특히 이데올로기의 철저한 주입을 목적으로 북한정권은 문화전용을 인위적으로 변용, 개조해 왔기 때문에 남북한 주민사이에는 문화전용의 共有부분도 축소되었다.

만일 남북한 사회간에 文化同質性이 깨어지게 된다면 두 사회 구성원을 서로 묶는 연계는 인종적 동질성만 남게 된다. 그럴 경우 통일 의 당위는 없어지게 된다. 서로가 서로를 우리라고 느끼지 않는 상태에서 민족공동체의 단일성 회복은 무의미해진다. 여기서 문화동질성에 기초한 統一의 當爲는 존재하게 된다.

## 2. 文化統合에 미칠 北韓政治文化

현재 북한은 政治統一優先論을 주장하고, 남한은 생활권통합-문화통합-사회통합을 거쳐 정부통합으로 가는 漸進論을 펴고 있다.

북한의 정치통일우선론을 펴는 논리는 간단하다. 남북한의 이질화된 사회를 일단 하나의 정치체제 속에 통합하여 함께 政治敎化를 실시해나가면 주민들의 생활양식은 같아지고 문화형식, 사상성향도 같게 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논리의 바탕에는 레닌주의적 사

회관이 진하게 깔려 있다. 즉 인간의 의식이란 인위적으로 개조할 수 있다는 생각과 인간공동체에서는 政治가 모든 것을 지배한다는 생각이 바탕이 되어 있다. 이는 인간을 類的 存在(Gattungs Wesen)로 인식하는 공산주의 세계관과 연계된다. 반면 남한의 점진통합론은 자유민주주의적 의식에 바탕을 둔 것이다.

남북한 사회는 아직 전통문화를 共有하고 있다. 전통문화에 대한 의식적, 무의식적 왜곡과 수정이 가해졌지만 그 근간에 있어서는 아직도 같은 민족이라고 부르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전통문화는 남북한을 하나로 묶고 있다. 그러나 생활문화의 異質化는 점차 진행되고 있고 이 상태가 장기간 지속된다면 문화체계가 바뀔 상황에 측정할 수 있다.

우리의 통일논리의 출발은 남북한 사회를 묶는 文化傳統의 共有라는 연계인식에서이다. 따라서 가치의 절대성을 내세우고 그 실천을 목적으로 하는 일당지배의 계급지배, 일인 개인숭배를 앞세우는 북한 정치체제와는 體制相應性(system compatibility)이 전혀 없어 지금 현재로서는 무리한 정치통합을 시도할 수 없다. 한 쪽의 체제특성을 살리려면 다른 체제의 특성은 죽어버리기 때문이다. 물론 정치통합을 이룬 후 하나의 정치체제 내에서 문화통합노력을 펴자는 주장도 타당할 수 있으나 지금으로서는 현실성과 이득이라는 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현 단계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정치통합우선론을 따르게 되면 많은 사람의 犧牲이 따르게 된다. 특히 북한이 지배권을 가지는 정치통일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 그러하다. 통일의 목적을 남반부의 프롤레타리아 계급 해방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남한의 非프롤레타

리아 계급의 이익은 희생될 것이 당연하다. 과연 이러한 희생을 감수 할만큼 정부통합의 필요성이 큰가 하는 것은 민족적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 3. 文化統合을 위한 方案

그러면 문화통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지난 반 세기 동안 서로 다른 공동체에 속하여 다른 사회화과정을 겪은 남북한 주민이 공통의 문화를 나누어 갖도록 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분단 이전의 공동문화전통요소를 정치지도자들이 인위적으로 왜곡해 온 북한사회에서 살던 주민들에게 새로운 생활양식, 생활문화, 가치정향을 갖추도록 만드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다.

문제는 어떻게 정치적으로 분단된 상태에서, 체계적 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 북한 주민들을 우리의 문화공동체의 일원으로 끌어들이 수 있는가 하는데 있다. 문화는 接觸과 交流 속에서 移入된다. 따라서 문화동질화작업에서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일은 남북한사회간의 文化接觸의 機會확대라 할 것이다. 주민간의 자유왕래가 허용되지 않은 상태에서라도 제3국에서의 회의, 공연, 행사 등을 통해서라도 가능한 모든 접촉을 시도해야 한다. 言語의 再統一, 傳統文化의 再確認, 그리고 새 시대의 생활방식의 균일화 등을 부단히 추진해야 한다. 통신이 허용되면 언론매체를 통한 문화통합을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의 발달된 영상매체의 문화동질화 위력을 감안한

다면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남북한 주민간의 문화동질성도 그렇게 비관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독일의 경우 텔레비전에 의한 40여년간의 문화통합 노력으로 큰 무리없이 뫼독에 성공했다.

뫼일을 앞당기는 전략으로 문화통합을 위한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해나가야 한다. 무슨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여야 문화통합이 쉽게 이루어질까에 대하여 지금부터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작업의 선행과제로 우리의 文化傳統의 正體性을 確立하고 체계화하는 작업을 펴나가야 한다. 문화영역에서의 이러한 노력은 군사외교적 노력 못지 않게 중요하다. 군사적 능력유지, 외교적 노력 등은 본단의 안정적 관리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통합단계에 들어서면 전혀 기여 못하는 노력들이다.

남북한 사회를 현재의 분단상태로 방치하면 궁극에 가서는 두 개의 독립된 공동체로 정착될 것이다. 그러므로 뫼일을 이루려면 의식적 노력으로 문화통합을 추진해야 한다. 문화통합이 이루어지면 정치형태에 대한 의식에서도 서로 접근하게 되어 정치뫼일로 나아갈 수 있다. 만약 정치적 뫼일이 내외의 힘에 의해 성취된다고 할지라도 문화적 상이성에 의해 생긴 문제들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남북한간의 진정한 협동적인 관계는 달성될 수 없게 된다.

소련이 변하게 됨에 따라 반역죄 기소가 취하됨으로써 망명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 솔제니친의 다음 말은 문화이질성으로 인한 뫼일의 어려움을 앞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긴다.

“공산주의는 그 나라 문화의 전통적인 것을 根絶하려 든다. 러시아 혁명이 그러했다. 이에 대한 뚜렷한 철학이 나에게서 있다. 자

국의 傳統的인 文化의 뿌리를 소중히 여기는 나라는 번영하나 그렇지 못한 나라는 쇠퇴한다. 나는 그것을 보고 그 나라의 앞날을 가늠한다" 라는.

## 【참 고 문 헌】

[김일성의 저작류]

- 「고등교육사업을 개선할 데 대하여」(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73).
- 「공산주의 교양에 대하여」(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60).
- 「김일성선집」, 초판, 전4권(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53-1954).
- 「김일성선집」, 제2판, 전6권(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60-1964).
- 「김일성저작선집」, 제3판, 전6권(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69-1973).
- 「김일성저작집」(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79).
- 「노동당의 조직적 사상적 강화는 우리 승리의 기초」(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53).
- 「당단체들의 조직사업에서의 몇가지 결함들에 대하여」(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51).
- 「보건위생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68).
-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60).
- 「사회과학의 임무에 대하여」(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69).
- 「사회주의건설의 위대한 추동력인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키자」(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68).



- 「3대혁명을 힘있게 벌여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75).  
1969).
- 「여성동맹사업에 대하여」(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67).
- 「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75).
- 「우리나라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63).
- 「우리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정권의 과업에 대하여」(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68).
- 「우리 혁명에서 문학예술의 임무」(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65).
- 「우리 혁명에서의 주체에 대하여」(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70).
- 「조선노동당 제4차 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 총화보고」(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61).
- 「조선노동당 제5차 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 총화보고」(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70).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의 당면과업에 대하여」(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62).
- 「조선혁명의 진로」(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78).
- 「주체사상에 대하여」(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77).
-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66).

## [북한 문헌]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밝혀주신 3대 혁명노선의 위대한 생활력」(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75).

「기본 건설사업 발전을 위한 우리 당의 정책」(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61).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에 대하여」(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72).

김창만, “조선노동당 역사연구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

「근로자」(1960. 1. 15), pp.10-21.

-----, 「모든 것은 조국건설에」(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74).

“당사업 방법과 작풍을 걸전적으로 개선하자,” 「당간부에게 주는 참고자료」, 제4호(1959), pp.2-11.

박금철, “마르크스-레닌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10월 혁명의 위업을 계승하자,” 「근로자」, 236호(1963. 11), pp.2-15.

박 달, 「조국은 생명보다 더 귀하다」(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60).

백 봉, 「민족의 태양 김일성 장군」, 전2권(평양: 인본과학사, 1968-69).

「붉은 해발 아래 한길 혁명 20년」, 전5권(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80).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사상」(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75).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전기」(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82).  
 운세평, “김일성 장군의 항일무장투쟁,” 「역사제문제」, 제11호  
 (1949. 9), pp.61-75.

이나영, 「조선민족해방투쟁사」(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58).  
 「인민의 자주와 해방을 위해서」, 전4권(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70).

「자력갱생의 혁명사상」(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63).

「자주성을 옹호하자」(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66).

「정치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정태식, 「우리 당에 의한 속도와 혁명문제의 창조적 해결」(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64).

「조선근대혁명운동사」(평양: 과학원출판사, 1961).

「조선역사」(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9-1982).

「조선전사」, 전33권 (평양: 사회과학연구소, 1979-1982).

「조선중앙연감」(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50-1985).

「조선통사」(평양: 과학원, 1956-1958).

「주체사상에 기초한 3대혁명 이론」(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주체사상에 기초한 세계혁명이론」(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천리마운동과 사회주의건설 대고조에 대하여」(평양: 조선노동당  
 출판사, 1961).

전세봉,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이바지하는 혁명적 문예작품을 창  
 작할 데 대한 당의 탁월한 방침,” 「근로자」, 제404호(1977.  
 6), pp.55-61.

- 최성욱,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사회주의적 애국주의』(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66).
- 『항일 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59-1969).
- 『혁명과 건설에 관한 김일성 동지의 위대한 생활력』(평양: 사회과학원출판사, 1969).
- 『혁명과 건설에 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교시』(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72).

#### <남한 문헌>

- 강정구 편, 『북한의 사회』(서울: 을유문화사, 1990).
- 고승효, 『북한사회주의 발전연구- 그 이론과 실제』(서울: 청사, 1988).
- 『김일성과 김성주』(서울: 공산권문제연구소, 1970).
- 김정원, 『분단한국사』(서울: 동녘출판사, 1985).
- 김준업, 김창순, 『한국공산주의운동사』, 전5권(서울: 아세아문제연구소, 1976, 신판 청계연구소, 1986).
- 김학준 외, 『남북의 생활상』(서울: 박영사, 1986).
- 박문갑 외, 『남·북한 비교론』(서울: 문우사, 1987).
- 박상섭, “주체사상 비판연구에 대한 비판적 내용분석,” 『북한 통치 이데올로기연구』(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pp.283-310.

방인후, 「북한 조선노동당의 형성과 발전」(서울: 아세아문제연구소, 1967).

「북괴 간부 및 당원 학습자료」(서울: 중앙정보부, 1977).

「북괴의 파벌투쟁사」(서울: 내외문제연구소, 1966).

「북한인명사전」(서울: 중앙일보사, 1981).

「북한전서」, 제3권(서울: 극동문제연구소, 1970-1974).

「북한정치론」(서울: 극동문제연구소, 1976).

「북한총람」(서울: 공산권문제연구소, 1968).

「분단국가의 문화융합」(서울: 국토통일원, 1989).

손호철, “주체사상의 연구방향에 관한 일제안-총체적 파악과 평가를 위하여-,” 「국제정치논총」, 제29집 제2호(1989), pp.323-339.

양성철, “남·북한 정치체제 분석모형,” 「한국정치학회보」, 제21집 제1호(1986).

-----, 「분단의 정치: 박정희와 김일성의 비교연구」(서울: 한울사, 1987).

양호민, 「북한의 이데올로기와 정치」(서울: 아세아문제연구소, 1967).

이상우, “남북한 통일정책의 논리구조비교,” 「동아연구」, 제18집 (1989), pp.79-111.

-----, “이기는 통일에서 함께 사는 통일로,” 「통일문제연구」, 제2권 제4호(1990 겨울), pp.131-152.

이온죽, 「북한사회연구-사회학적 접근」(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88).

이재화 편역, 「한국근대민족해방운동사」(서울: 백산서당, 1986).

이정복, “남·북한의 정치체제와 남·북한관계의 회고,” 「한국과 국제정치」, 제5권 제2호 (1989년 가을호).

이정식, 한흥구 공편, 「조선독립동맹 자료」, 제1권과 제2권(서울: 거름, 1986).

장을병 외 역, 「남·북한의 비교연구」(서울: 일월서각, 1988).

전인영 외, 「북한의 정치」(서울: 을유문화사, 1990).

최명 외, 「북한개론」(서울: 을유문화사, 1990).

최재현, “북한사회이념속의 전문적 요소,” 「동아연구」, 제14집 (1988, 7), pp.97-119.

크라체크, 안드레아스 외, 「서구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본 북한사회」 (서울: 중원문화, 1990)

하수도, 「유물론과 주체사상」(서울: 새벽, 1988).

한국사회학회 편, 「한국사회 어디로 가고 있나」(서울: 현대사회연구소, 1983).

「한국에 있어서의 공산주의」(서울: 공보부, 1968).

한배호, “남·북한 정치체제 비교연구 서설,” 「북한정치체제 연구」 (서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72).

한창수 편, 「한국공산주의운동사」(서울: 지양사, 1984).

한흥구, 「한국공산주의운동사」, 전3권 (제1권과 제2권은 1986년에, 제3권은 1987년에 돌베개에서 출간).

Almond, G.A., “Communism and Political Culture Theory,” *Comparative Politics*, Vol.15, No.2 (January 1983).

- An, Tai sung, *North Korea: A Political Handbook* (Wilmington, Del.: Scholarly Resources, 1983).
- Brown, Archie and Jack Gray (eds.), *Political Culture and Political Change in Communist States* (New York: Holmes and Meier, 1979).
- Hahn Pyong Choon, "Ideology and Criminal Law in North Korea,"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7, No.1 (1969), pp.77-93.
- Inoue Shuhachi, *Modern Korea and Kim Jung Il* (Tokyo: Yuzankaku, 1984).
- Jowitt, Kenneth, "An Organizational Approach to the Study of Political Culture in Marxist-Leninist System,"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IX VII, No.3 (September 1974).
- Kihl, Young Whan, "Comparative Study of the Political Systems of South and North Korea: A Research Note," *Korea and World Affairs*, Vol.5, No. 3 (Autumn, 1981).
- \_\_\_\_\_, "Politics and Policies in Divided Korea: Regimes in Contest" (Westview Press, 1984).
- \_\_\_\_\_, *Korea Studies*, No.2(1978), pp.139-157.
- Lee, Chong-sik, "Kim Il Sung of North Korea," *Asian Survey*, No.7 (June 1967), pp.374-382.
- \_\_\_\_\_, "Korean Communists and Yenan," *China Quarterly*, No.9 (January-March 1962), pp.184-185.

- \_\_\_ & Ki-wan Oh, "The Russian Faction in North Korea," *Asian Survey*, Vol.7, No.4 (April 1968), pp.274-276.
- Maning Nash, "Modernization: Cultural Meaning the Widening Gap between the Intellectuals and the Processes, Essays on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in honor of Bert F. Hoselitz,"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1977, 25 Supplement, pp.16-28.
- Missuri, Muhammad al, *Kimilsungism: Theory and Practice* (Pyongyang: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1982).
- Ra, Chang-Joo & Baek Byeong-Hoon (eds.), *Comparative Communist Studies: Scope and Methods* (Seoul: Dae Young Moonwhasa, 1988).
- Rhee, Sang-Woo, "From National Unification to State Unification : A Realistic design for One Korea," 1989, 8 (제4차 한미 합동 북한학술회의 발표논문)(한국공산권협의회와 캘리포니아 대학교 부설 동아연구소 공동주최)
- Rosenbaum, W.A., *Political Culture* (London: Thomas Nelson and Sons Ltd., 1975).
- Welch, S., "Issues in the Study of Political Culture: the Example of Communist Party States,"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17, Part 4 (October 1987).
- Yang, Ho-min, "North Korea, Thirty Years Between Moscow and Peking," *Chinese Affairs*, Vol.1, No.2 (July 1976), pp.105-172.



Yang, Sung Chul, *Korea and Two Regimes: Kim Il Sung and Park Chung Hee* (Shenkman Press, 1981).

Yoo, Hakjong, "The Two Koreas: A Comparative Political Analysis of a Divided Nation" (Ph.D. Dissertation, New York University, 1977).

## ◆ 主體思想에 대한 現象學的 批判

이종훈(成均館大)

### 〈 要 約 文 〉

共產主義의 歷史的 實驗은 失敗하였다. 이데올로기의 시대는 사실상 끝났다. 그리고 南·北韓 UN同時加入을 맞아 이제 統一은 곧 다가올 問題로 부각되었다.

따라서 主體思想도 이데올로기나 體制批判의 수준을 넘어서서 統一의 과정과 統一 이후의 진정한 民族 共同體로서 融合하기 위한 觀點에서 批判해야 한다. 특히 40여년 이상을 主體思想으로 철저히 주입된 北韓同胞와의 民族 統一은 體制나 制度의 統一보다도 더 힘들고 오랜 시일이 걸리는 작업이니만큼 각별한 關心과 지속적 努力이 요청된다.

主體思想은 국제적 상황변화와 국내의 권력투쟁에 대처하기 위해 그때그때 요구에 따라 정통 마르크스 레닌주의로부터 점차 이탈되었다. 이 主體思想의 體系는 思想에서의 主體, 政治에서의 自主, 經濟에서의 自立, 國防에서의 自衛로 구체화된다.

그런데 이 主體思想은 우리 나라의 歷史的 現實이나 地政學的 特性上 일정한 意義와 價値를 지닌다고 하더라도 北韓의 主體思想 고유의 주장은 아니며, 따라서 그것이 하나의 일관된 思想體系라기 보다는 김일성 개인을 偶像化하고 神格化하는 시대착오적이며 모자이크된 성격을 지닌다는 점 이외에 理論上 별로 독특하거나 새로울 것이 없다.

社會와 歷史發展에 人間 主體를 강조한 것은 世界歷史는 世界審判이며 絶對精神에 의해 결정된다는 Hegel의 思辯的인 形而上學的 歷史哲學에 반대하는 Marx의 思想에서도 이미 나타난다. 그리고 意識 主體를 강조하는 것은 Husserl 現象學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며, 이것은 實證主義의 方法論에 반대하는 모든 社會學的의 공통점이다. 또한 實證主義와 經驗論 傳統에 입각한 分析哲學 내에서도 가령 內在的 實在論은 意識 主體의 성격을 강조한다. 더구나 現代 物理學 특히 量子易學에서도 古典 物理學의 客觀主義的 態度的 한계를 분명히 밝히고 觀察과 實驗에서 意識 主體를 배제할 수 없음을 입증하였다.

더욱이 중요한 점은 北韓이 南韓의 對內·外 政策 批判의 유일한 척도는 統一인데 主體思想은 統一이나 統一 以後 統一祖國이 지향해야 할 價値觀이나 倫理 規範에 아무런 기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主體思想이 意識 主體만을 강조하면 主觀的 觀念論으로 떨어지고, 이것을 절대화할 때 劃一主義와 排他的 國粹主義에 빠진다. 歷史와 社會發展은 矛盾과 對立, 鬭爭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相互協力과 交流라는 相互 主觀的 性格을 지닌다.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哲學을 唯物論과 觀念論으로, 이에 접근하는 방법으로서 辯證法과 形而上學으로 구분하고, 이 둘에서 전자와 후자를 기계적으로 결합하여 辯證法的 唯物論과 形而上學的 觀念論으로 대립시킨다. 그리고 辯證法的 唯物論만이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며, 세계의 변화와 발전을 科學의 發見과 社會的 實踐의 새로운 성과 위에 기초하여 올바르게 설명하는 유일한 科學이요 확고한 世界觀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存在論, 認識論을 混同한 오류이며, 이러한 주장은 적어도 20세기의 어떠한 철학에도 들어맞지 않는다.

또한 史的 唯物論도 歷史的 現實에 적응되지 않았다. 그러나 Marx의 科學的 社會主義가 대두하게 된 歷史的 背景을 보거나 資本主義를 추구하는 우리 사회의 입장에서는 각별히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특히 能率과 生産力에서 資本主義가 발휘하는 장점 바로 이면에는 부패하고 타락하기 쉬운 道德心과 利己心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만 진정한 民主主義와 福祉社會가 구현될 수 있다.

외견상 唯物論으로서의 Marx의 思想과 觀念論으로 알려진 Husserl의 現象學은 전혀 異質的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단순화된 오류로서 어느 哲學도 정확히 파악한 것은 못된다. Husserl이 現代의 危機를 自然科學의 理念化作業과 그것의 意味基盤인 生活世界의 망각에서 찾았는데, 이것은 Marx가 資本主義의 構造的 矛盾과 人間性 疎外에서 資本主義의 危機를 본 것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그리고 Husserl이 人間性的의 진정한 擔持者로서 논의한 哲學者는 Marx가 革命의 主體로서 파악한 Proletariat와 성격이 동일하다. 이러한 견해를 우리는 Lukasc의 歷史와 階級意識을 분석하는 곳에서 분명히 볼 수 있다.

Marx이후 마르크스 주의가 전개된 인식론적 방향을 우리는

- 1) 主觀과 客觀이 분리되고 物的인 土臺를 강조하는 客觀主義的 경향 즉 정통성 마르크스주의(이 입장의 대표적 예로 Lenin의 經驗批判을 살펴 본다)
- 2) Husserl의 先驗的 自我가 공허하다고 비판하지만 역시 唯物論의 비판에서 意識의 역할을 강조하는 主觀主義的 경향(Sartre의 주장을 중심으로 살펴 본다)
- 3) Husserl의 유고들을 중심으로 先驗的 自我를 具體的인 知覺의 身體性(Leiblichkeit)으로 해석하여 生活世界를 강조하고 이것을 변증법적으로 實踐的인 社會問題에 적용한 主觀·客觀의 對立을 극복하려는 경향(Merleau-Ponty의 주장을 중심으로 살펴 본다)

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이러한 논지를 主體思想에 적용시켜 볼 때 主體思想은 그것이 지닌 政治 經濟的 現實은 도외시하고라도 다음과 같은 問題에 직면한다.

主體思想이 마르크스 레닌주의 특히 Marx의 思想으로부터 점차 이탈하고 唯物論의 기반을 상실할수록 하나의 思想的 理論으로서의 일관성을 상실한 우스운 모양을 띠게 된다.

그리고 主體思想이 意識 主體만을 강조할 때 主觀的 觀念論과 國際社會에서의 閉鎖와 孤立의 길을 자초할 것이다. 또한 이것은 尖端 產業社會에 적용할 수 있는 아무런 발판을 마련하지 못한다.

오히려 우리는 Husserl의 現象學이 제시하는 새로운 地平 즉 判斷中止와 態度變更을 통한 相互理解와 葛藤解消 그리고 生活世界의 중요성에 대한 환기를 통해 自然 속에서의 참된 人間의 삶 등을 제시한 것에서 더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未來像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I. 序 論

### 1. 研究目的

共產主義의 歷史的 實驗은 사실상 終結되었다. 마르크스뿐 아니라 레닌의 동상이 民主化의 물결 속에 東歐와 蘇聯에서 재거되었고, 共產黨이 解體되었다. 이제 共產主義는 지구상에 中國과 北韓 등 5 개국만 남았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도 개방화의 추세 속에 그 시기만이 문제로 등장한 것이다.

중국도 6·4 천안문 사태로 改革政策에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린 것은 사실이지만 완전히 保守回歸는 불가능하다. 그것은 지난 10년 동안 지속된 개혁의 바람은 인민들로 하여금 이미 人權, 民主, 自由의 문턱을 넘어섰고, 공산당과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대한 심한 혐오감과 이에 대한 반성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중국의 개방화도 그 완급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기정 사실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韓半島 周邊情勢에 영향을 미쳐 北韓의 開放化를 촉진시킬 것이며 南·北 頂上會談이나 高位會談 등을 미룰 명분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北韓이 봉착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러한 추세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우리는 南北韓 UN 同時加入을 맞아 정부가 꾸준히 추구해 온 統一政策을 더욱 유연하고 신속하게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이제 民族統一은 명목상의 形式이나 실향민만의 절실한 염원이 아니라 곧 다가올 구체적 現實이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東西獨 統一過程을 교훈삼아 더 확실한 준비를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 우리의 사정은 主體思想으로 무장된 北韓 體制의 전무후무한 특성상 統一된 獨逸보다 더 복잡하고 힘들 것이다. 그리고 다른 어떤 분야보다 思想이 民族 共同體를 이루는 데 오래 걸리고 어려울 것이다.

특히 北韓은 蘇聯 共產主義의 와해에 대한 최근의 반응은 인민들에 사회주의를 수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노동신문은 최근(1991.9.2.)

“主體思想이 요구하는대로 생각하고 일하자”라는 제하의 사실을 통해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데올로기적 관점과 主體思想의 요구에 따른 자주적인 사고방식을 확고히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北韓의 開放化는 필연적인 추세이지만, 그에 대한 실부른 기대나 낙관은 근거가 없는 것이며 오히려 신중하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Marx의 哲學 理論은 資本主義 社會의 문제점을 올바르게 批判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아직도 많은 敎訓을 주기 때문에, 이와 관련지어 主體思想을 면밀히 검토하는 작업은 統一 以前의 安定된 土臺를 마련하고 統一 以後의 혼란을 最少化하는 데 필수적이다. 특히 아직도 우리 사회는 극심한 勞使葛藤, 階層對立, 貿易赤字 등 비생산적인 사회문제들이 조금도 개선될 조짐이 없고, 국민 전체를 주도할 수 있는 생활의 規範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는 곧 이루어 질 統一의 時代에 야기될 사회혼란을 올바르게 극복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는 작업은 단지 정부나 특정 단체에서 이룩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사회전반, 국민 전체가 우리의 사명으로 깨닫고 철저히 그리고 세심하게 대처해야만 할 것이다.

## 2. 研究方向

主體思想에 관한 연구는 北韓에서 그것이 제기된 배경으로 인해 哲學보다는 政治분야에서 주로 연구되었고, 발표된 연구의 양이나 質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한 수준을 축적해 왔다. 그러나 이것은 體制比較나 主體思想의 理論的 虛構性을 밝히는 데 주력하였다. 이제 그러한 단계는 앞에서 언급한 國際的 狀況變化 속에서 이미 극복되었다. 다만 北韓 전체가 主體思想을 중심으로 半世紀 동안 고착되어온 현실을 감안하여, 외형적인 統一 以後에 내면적인 진정한 融合과 統一을 目標로 主體思想을 분석해야 할 것이다.

主體思想은 사회와 역사의 발전에 인간이 主體라고 강조한다. 사실 이러한 입장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별로 새로울 것이 없는 주장이다. 現代 物理學 특히 量子力學의 不確定性 原理도 觀察者의 意識을 배제

하고는 物質的 對象世界를 觀察하거나 測定할 수 없음을 강조한다. 또한 近代 獨逸 觀念論과는 전혀 성격을 달리하는 Edmund Husserl이 창시한 現象學도 主觀性的 哲學<sup>1)</sup> 혹은 主觀性的 승리<sup>2)</sup> 라고도 일컬어질 정도로 意識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Husserl의 現象學이 主觀的 觀念論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는 줄곧 意識과 對象과의 相關關係를 志向的으로 분석하기 때문이다.<sup>3)</sup> 의식은 항상 ‘~에 관한 의식’이라는 그의 의식의 지향성(Intentionalitat) 분석은 實在論과 觀念論, 經驗論과 合理論, 實證主義와 形而上學의 문제를 해소해 준다.

그러나 意識 主體만을 강조하고 그것을 절대화할 때 劃一主義와 排他的 國粹主義에 빠지게 된다. 역사와 사회의 발전은 상호의존적인 國際的 性格도 함께 지니는 것이다. 만약 어느 한 쪽만 강조하면 그것은 唯物論的 實證主義나, 主觀的 觀念論에 빠질 수밖에 없다.

필자는 본 논문에서 Husserl의 現象學과 이 現象學을 바탕으로 전개된 Lukacs, Sartre, Merleau-Ponty 등의 이론을 중심으로 主體思想을 批判해 보겠다. 그리고 現象學의 實證主義的 自然科學에 대한 비판은 Marx의 資本主義에 대한 批判과 表裏關係에 있다. 따라서 實用主義를 잘못 받아들인 결과 倫理와 規範이 空洞化된 심각한 危機 상황을 올바르게 治癒할 수 있는 現象學의 實踐的 地平도 함께 모색해 보겠다.

1) E. Husserl, *Philosophie als strenge Wissenschaft* (Vittorio Klostermann, Frankfurt am Main) 290.

2) Q. Lauer, *Phenomenology: Its Genesis and Prospect* (Harper & Row, 1965)

3) E. Husserl, *Die Krisis der europäischen Wissenschaften und die transzendente Phänomenologie* (den Haag, 1976) p. 169/70.

## II. 主體思想

### 1. 主體思想의 形成過程

김일성은 主體思想을 공산주의적 인간이 가져야 할 과학적이고 혁명적인 世界觀이요, 근로 인민 대중을 중심으로 한 革命理論이며, 근로 대중의 역할에 기초한 혁명의 전략과 진술이라 정의한다.<sup>4)</sup>

主體思想의 성립과정을 살펴 보면 국제적 상황변화와 국내의 권력투쟁에 대처하기 위해 그때그때 요구된 것으로 정통 마르크스 레닌주의로부터 점차 이탈해 가는 모습을 띠고 있다.

김일성이 主體의 확립문제를 당내에서 공적으로 처음 제시한 것은 1955년 12월 28일 당 선전 선동원 대회에서 ‘당 사상 사업에서의 主體’를 주장한 연설이었다. 이것은 1953년 Stalin사망 이후 전개된 Stalin 적하운동과 6·25전쟁의 휴전을 계기로 야기된 國內派, 延安派, 蘇聯派와의 갈등과 당권투쟁에서 김일성이 자신의 권력을 옹호, 강화하기 위한 전략상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김일성은 반대파와의 투쟁에서 스스로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상적 입장을 확립할 필요가 있었다. 즉 그는 반대파를 당의 단결과 통일을 파괴하는 반동 종파분자요,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옳게 이해하지 못하고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에서 蘇聯이나 中國을 모방하기에 급급한 주체도 창조성도 없는 분자들이라고 비난하는 부기로 사용되었다. 그 이후 이것은 구체적 내용을 담게 되었고 이론적으로 체계화되면서 이른바 主體思想으로 전개되었다. 이것이 점차 부각된 과정을 살펴 보면,<sup>5)</sup>

1966년 8월 12일 로동신문 사설 “자주성을 옹호하자”에서 최초로 主體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였고,

4) 김일성, “정치사업을 잘하여 인민 군대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자”

『김일성 저작선집』 제 7권 (조선 로동당 출판사, 1978) p. 20.

5) 이상우, “김일성 체제의 특질” 『북한 40년』 (올림문화사, 1989)

p. 20 참조.



1970년 10월 조선 노동당 제 5차 전당대회에서 개정한 당 규약 전문에 “조선 노동당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우리 현실에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한 김일성 동지의 위대한 主體思想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규정하여 主體思想을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동격으로 취급하고,

1972년 12월 27일 개정 헌법 제 4조에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은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우리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 노동당의 主體思想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규정하여 마르크스 레닌주의로부터 이탈하기 시작하고,

1980년 10월 13일 조선 노동당 제 6차 전당대회에서 개정한 당 규약 전문에서 “조선 노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主體思想, 革命思想에 의해 지도된다”고 밝힘으로써 마르크스 레닌주의에서 완전히 독립되는 과정을 밟고 있다.<sup>6)</sup>

그 결과 主體思想 속에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요소는

- 1) 사회개혁의 목표와 관련해서 근로 대중의 해방과 근로 대중이 지배하는 사회체제를 이상으로 한다는 점
- 2) 생산수단의 사유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
- 3)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파악한다는 인간에 대한 類的 本質의 입장
- 4) 혁명을 성취하는 방법에서 당을 중심으로 대중을 동원한다는 점
- 5) Lenin 식의 극단적 elite 주의만 남게 되었다.

6) 이 과정을 신일철 교수는 『북한 주체철학의 비판적 분석』 (사회발전연구소, 1987, p.23/4) 에서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 i) 소련 모방기(1945 -1957)
- i) 모택동 사상 혼입기(1957 -1959)
- i) 김일성 사상 준비기(1960 년초)
- i) 主體哲學의 체계화 시기(1966 -1970)
- i) 主體哲學의 완성기(1970 -1973)
- i) 김일성 주의의 보완 발전기(1973 -현재)

## 2. 主體思想의 體系

이러한 主體思想은 思想에서의 主體, 政治에서의 自主, 經濟에서의 自立, 國防에서의 自衛로 구체화된다.<sup>7)</sup>

1) 思想에서의 主體는 사람들의 머리 속에서 Bourgeois 사상을 제거하고 공산주의 사상 의식을 주입시켜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철저히 개조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것의 구현을 위해 ‘3대(사상·기술·문화) 혁명 소조’를 조직하였다.

1972년 12월에 개정된 ‘사회주의 헌법’은 이 3대혁명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1조 : 국가는 내외 적대분자들의 파괴 책동으로부터 사회주의 제도를 보호하며,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온 사회를 혁명화·노동 계급화 한다.

제25조 : 국가는 기술혁명을 추진하여 중노동과 경노동의 차이를 없애고 근로자들을 힘든 노동에서 해방하여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차이를 점차적으로 줄인다.

제36조 : 조선 인민 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근로자들을 자연과 사회에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 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공산주의의 건설자로 만든다.

2) 政治에서의 自主는 내부의 권력투쟁과 中·蘇 이념분쟁의 와중에서 김일성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압조된 것으로, 이것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서의 상황변화와 東西 간의 긴장완화 분위기 속에서 시의 적절하게 활용되었다. 이것은 국제적 배권주의에서 벗어나 모든 정책과 노선을 독자적으로 수립할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제3세계권의 비동맹 외교를 주도적으로 전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그 배경은 中·蘇 간의 이념과 국경분쟁 속에서 어떤 측에도 선불리 가담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의 소산이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3) 經濟에서의 自立은 北韓이 공산권 국가들로부터 경제적 원조를 얻는 데 실패하여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을 모색해야 될 시점에서 中

7) 양호민, “정치: 전체주의 1인 독재체제의 확립” 『북한 40년』 (을류문화사, 1989) p. 67/9

國 공산당의 ‘사회주의 총노선’ 과 ‘대약진 운동’ 을 중심으로 한 自力更生 운동을 모델로 삼았다. 이것은 1958년 시작한 권리마 운동에서부터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4) 國防에서의 自衛는 외부의 침략에 대처하기 위해 자체의 힘으로 국가와 인민을 보위하고 혁명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방위력을 건설하겠다는 취지에서 全軍의 幹部化, 全軍의 現代化, 全人民의 武裝化, 全國土의 要塞化로 표명되는 4대 군사노선을 의미한다. 이것은 60년대 초 Cuba 사태, 中·蘇 국경분쟁 그리고 5·16 군사혁명 등의 영향으로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에 등장하였다.

### 3. 主體思想의 意義와 限界

인간이 역사와 사회의 발전에 있어 主體라는 사실은 지극히 중요하면서도 새로울 것이 없는 자명한 주장이다.

그러나 근대 자연과학의 발달로 唯物論이나 感覺一元論, 에너지論에 이르는 철저한 자연주의(Naturalism)의 특징은 意識을 自然化, 事物化하고 規範들 즉 理念들을 自然化하는 實證主義(Positivism)로 특징지어진다.<sup>8)</sup> 이것의 역사적 기원은 근대의 여명기인 Kepler로부터 시작된다.

Kepler는 質이 있는 곳에는 量이 있지만 항상 그 逆은 이니며, 量이 없으면 어떤 것도 완전히 알려질 수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量化를 통해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the most knowable) 과 가장 실재적인 것(the most real) 을 동일시하는 형이상학의 세계관을 표명하였다.<sup>9)</sup>

이러한 바탕 위에 Galilei 는 기하학적 질서(ordine geometrico) 라는 새로운 수학의 지도이념으로 “존재하는 것은 측정할 수 있는 것”(to be is to be measurable)<sup>10)</sup> 이라는 자연에 대한 존재론적 해석과 수학적 형식으로 표현될 수 없는 種적인 감각성질들은 참된 존재가 아니라 단순히 주관적 현상일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경험을 감각주

8) E.Husserl, *Philosophie als strenge Wissenschaft* 295.

9) C.Harvey, *Husserl's Phenomenology and the Foundation of Natural Science* (Ohio Univ. 1989) p. 57.

10) C.Harvey, 같은 책 p. 124.

의적 一元論으로 파악하는 Hobbes의 자연주의적 唯物論과 唯名論으로, 심리적인 것을 自然化하는 Locke의 聯想主義的 心理學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自然의 數學化에 의해 인격적 삶을 이끌어가는 모든 정신적인 것과 문화적 성질들은 사상되고, 그 결과 그 자체로 완결된 물체세계인 “자연”(Nature)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였다. 이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로 간주되어 세계를 물질적 자연(res extensa)과 심리적 마음(res cogitans)으로 파악하는 Descartes의 二元論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Husserl은 Galilei에 의해 自然이 발견된 반면, 意識 主體는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를 “발견의 천재인 동시에 은폐의 천재”<sup>11)</sup>라고 지적한다. 그는 Galilei의 이러한 수학과 수학적 자연과학의 理念化作業은 직관적으로 직접 경험되는 세계에 이념의 옷(Ideenkleid), 상징의 옷(Kleid der Symbol)을 입힌 것으로, 이것은 단지 세계를 해석하는 하나의 方法에 불과한 것을 참된 存在로 간주한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입장에 대한 반성은 物理學의 영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고전 물리학이 자연을 관찰하고 기술하는 기본적 태도는 客觀主義이다. 관찰의 대상은 主觀과 관계없이 저기에 존재하므로 그 객관적 불변적 특성인 數量的 把握에 전념하고, 가변적이며 불확실한 결과를 초래할 수 관찰자의 주관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따라서 주관적 體驗은 물리학적 언어로 대체되었다.

그러나 Einstein, Heisenberg, Bohr 등으로 대변되는 현대 물리학 특히 量子力學에서는 認識主體를 동시에 언급하지 않고서는 自然에 관해 아무것도 언급할 수 없음을 밝혔다. Heisenberg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우리가 관찰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의 자연이 아니라, 인간의 자연에 대한 질문방식에 의해 도출된 자연이다.”<sup>12)</sup>

量子力學에 의하면 입자세계의 모든 변화는 因果率에 의해서가 아니라, 실험의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확률에 의해서만 예측될 뿐이다. 그리고 이 관계들은 언제나 본질적으로 觀察者를 포함한다. 즉 관찰과정

11) E. Husserl, *Krisis der europäischen Wissenschaft und die transzendentale Phanomenologie* p. 53.

12) W. Heisenberg, *Physics and Philosophy* (Harper Torchbook, 1958) p. 58.

의 연쇄에서 마지막 極에는 언제나 관찰자의 意識이 놓여 있으며, 어떤 원자적 대상들의 성질들도 觀察者와 對象과의 相關關係에 의해서만 관찰되고 결정되며 정의되어 이해될 수 있다. 13)

또한 自然科學의 전통에 입각한 分析哲學에서도 意識 主體를 강조하여 이러한 입장에 접근하고 있는 이론들도 있다. 14)

반면 Hegel 은 형이상학적 체계 속에서 역사의 발전은 “이성의 교지”(List der Vernunft)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歷史哲學을 주장하였다. 15) 이에 대해서는 K.Popper도 인간이 역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實踐이란 없고 단지 가계적인 맹목적 순종밖에 없는, 소박한 運命이 지배하는 一元論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16) 그러나 Marx는 Hegel 의 이러한 사변적 형이상학에 반대하고 “哲學은 세계를 解析하는 것이 아니라, 變革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역사의 발전에 인간의 主體的 實踐을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主體思想이 역사와 사회의 발전에서 人間 主體를 강조한 것은 主體思想의 근원을 고려해 볼 때, 그리고 일반적 학문의 理論上 별로 새로운 것이 없다. 다만 우리 나라의 역사적 특성상 그것이 지닌 일정한 意義는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北韓에서 主體思想이 김일성 개인을 神格化하는 즉 김일성주의라는 봉건적 전제주의적인 이데올로기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김일성주의는 가장 강화된 형태의 Stalin식 專制主義로서 본래적인 의미에서 社會主義와는 이미 상당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나갔다. 主體思想은 Stalinism 과 Maoism 그리고 19세기 초의 공상적 사회주의의 Utopia 사상 그리고 가부장적인 전통적 儒敎理念을 혼합시킨 것이다. 主體와 自主性은 人民 모두에 해당되는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위대한

13) F.Capra, *The Tao of Physics* (『현대 물리학과 동양사상』 이성범·김용정 옮김, 범양사, 1979) p.83.

14) 우리는 그 대표적 예로 내재적 실재론(internal Realism)을 주장하는 H.Putnam의 주장을 들 수 있다.(특히, 그의 *The Many Faces of Realism*, Open Court, Illinois, 1987 참조.)

15) G.W.F.Hegel, *Phanomenologie des Geistes* (Felix Meiner, Hamburg, 1952)

16) K.Popper, *The Open Society and its Enemies* (Princeton Univ. 1971) vol.2

수령 김일성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특권이며 이에 따르지 않으면 反民主인 것이다. 따라서 主體思想은 그 본인의 의미와는 역행하여 한 개인이나 그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소수 집단이 사회를 통제하는 유일한 척도로서의 신념체계(System of Belief)로 전락하고 말았다. 여기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비판, 창의성을 수용할 수 있는 개방성을 상실하고, 억압과 권위 그리고 독단이 절대시되는 배타적 폐쇄성이 지배하게 된다.

따라서 ‘방공호 속의 사회’에서 획일적 사고유형에 익숙해진 北韓 體制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自由 民主主義의 불결을 철저하게 차단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은 地球村이 되어가는 현실에 있어 이미 그 統制力을 상실하였다. 北韓 당국도 이미 이러한 Dilemma를 충분히 깨닫고 그에 대한 처방을 실시하고 있으나 (예를 들면 1984년 이후 지방으로부터 技術과 資本을 도입하려는 畝營法 制定), 社會主義 노선을 수정하고 이자나 이윤방식을 채택하는 이러한 부분적 개혁만으로는 그들이 당면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그 모순만 가중되고 개방화의 압력만 거세질 뿐이다.

### Ⅲ. 마르크스 레닌主義

#### 1. 辯證法的 唯物論

哲學에 관한 여러가지 설명이 있었지만, 그것이 人間の 世界觀에 관한 學問이라는 데는 일치한다.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自然과 社會의 모든 것을 포괄시켜 하나의 통일적 존재로 파악한 것이 世界이며, 이 세계에 관한 일반적 이해가 곧 世界觀이다. 여기에는 이론적 논리적 증명에 의하지 않는 종교적 신앙의 견해는 배제된다.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의하면 哲學의 기본문제는 物質과 意識 즉 存在와 思惟의 關係이다.<sup>17)</sup> 그리고 이것에 접근하는 측면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物質과 意識과의 關係에서 어느 것이 일차적인가에 따라 唯物論과 觀念論으로 나뉜다. 이들은 이 두가지 모두를 인정하는 二元論은 불가피하게 모순에 빠지며 결국 觀念論으로 귀착된다고 주장한다. 둘째 인간이 물질세계를 認識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唯物論과 觀念論이 대립되며, 이 둘 가운데 중간노선을 포방하는 어떠한 이론도 觀念論의 변형으로 간주한다.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이렇게 哲學이 唯物論과 觀念論의 두 진영으로 갈라져 서로 투쟁하는 根源을 階級과 認識論에서 찾는다. 즉 唯物論의 階級的 根源은 생산을 발전시키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선진계급과 계층들의 이해관계에 이바지하며, 그 認識論的 根源은 실천과정에서 자연과 세계가 인간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합법칙적으로 발전할뿐 아니라 과학의 힘에 의해 그것을 더 깊이 인식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반면 觀念論의 階級的 根源은 낡은 사회제도를 유지 보존하려는 보수적이며 반동적인 지배계급의 이해관계에 이바지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觀念論이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현실을 왜곡하며 그 발전의 합법칙성을 거부하는 것은 반동적인 지배계급이 자신들의 착취제도가 영원하고 불변하다는 주장과 일치한다. 이 觀念論의

17) 최길성, 『社會科學講義』(1965, 統一院 資料) 제 1부 참조.

認識論的 根源은 복잡한 인식과정을 전체적으로나 통일적으로 보지 못하고 어느 한 측면이나 계기를 확대하고 과장하며 더 나아가 그것을 절대화하고 신비화하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이 철학에 접근하는 방법에도 辯證法과 形而上學이 대립과 투쟁의 역사를 이루어 왔다고 주장한다. 그들에 따르면 辯證法이란 사물과 현상들을 전면적인 상호연관 속에서 그리고 발전의 견지에서 보고 이해하는 방법으로 이것만이 과학적인 인식방법이라 한다. 왜냐하면 辯證法만이 과학의 새로운 발전, 사회적 실천의 새로운 성과에 기초하여 발전해 왔으며,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고 그 변화와 발전을 옳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라 주장한다. 반면 形而上學이란 사물과 현상들을 전체와의 연관 속에서 보지 못하고 일면적으로 서로 고립된 그리고 고정 불변한 정지된 것으로 보고 이해하는 사고방식이라 규정한다. 形而上學에서 간혹 발전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사물과 현상에서 발전은 다만 양적 변화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이러한 形而上學的 認識方法이 발생한 근거를 3가지로 든다.

첫째, 形而上學은 17, 8세기에 유행하였는데 이 시기의 자연과학은 개별적 사물과 현상들을 연구하였을뿐 이들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지는 못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우리는 운동하고 있는 사물을 연구할 때 우선 정지상태에서 고찰한 다음 그것을 운동상태에서 고찰하는데 정지상태에서 개별적인 것을 고찰한 결과에 머물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전체와의 연관 속에서 보지 않고 절대화하기 때문이다.

셋째, 지배계급이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세계의 발전을 거부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이들은 辯證法的 唯物論은 유물론 중에서도 가장 과학적이며 완전한 유물론이며, 철학발전의 최고단계라고 주장한다.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이렇게 存在論에 있어 唯物論과 觀念論을 그리고 認識論에 있어 辯證法과 形而上學을 구별하고, 이들을 기계적으로 결합하여 辯證法的 唯物論과 그밖의 모든 학설들을 形而上學的 觀念論의 범주로 묶고 이들을 대립시킨다. 그리고 前者만이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며 세계의 변화와 발전을 과학의 발전과 사회적 실천의 새로운 성과에 기초하여 올바르게 설명하는 유일한 科學이요. 확고한 世界觀



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다양한 이론들을 지극히 단순화시킨 오류이다.

왜냐하면 이들이 비판하는 形而上學은 17, 8세기의 자연과학에 기초하고 있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 당시의 形而上學 에컨대 思辯的인 獨逸 觀念論에 국한되는 문제이지 일반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20세기의 자연과학 특히 量子力學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이론들 가운데 辯證法的 唯物論은 결코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것들은 분명히 形而上學的 觀念論의 범주에 들어갈 수 없는 이론들이다. 또한 20세기 哲學 전반의 특징들 가운데 두드러진 것은 反形而上學的이라는 점이다.<sup>18)</sup> 現象學이나 實存主義, 分析哲學이나 科學哲學의 이론들은 어떠한 고정되고 독립적인 形而上學的 實體도 부정하고 主觀(意識)과 對象(世界) 사이의 다양한 相關關係를 탐구하며, 따라서 체제 이데올로기와는 무관하다. 또한 形而上學을 강조하는 이론이라도 그것은 이미 과거 전통적 의미에서의 形而上學이 결코 아니다.<sup>19)</sup> 그리고 觀念論이라는 용어도 存在論보다는 認識論의 意味로 사용한다.<sup>20)</sup>

한편 文明의 질곡으로부터 意識의 전환을 통해 삶의 새로운 지평을 찾음으로써 自我를 해방시키는 東洋의 智慧나 參禪이 辯證法的 唯物論이 아니라고 해서 이것이 Bourgeois 지배계급의 이익을 대변한다든가, 觀念論이기 때문에 非科學的이라고 매도할 근거는 아무 데도 없는 것이다.

## 2. 史的 唯物論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분석에 의하면 인간 사회의 발전은 자연의 발전과 공통점을 갖는 동시에 의식을 가진 인간의 활동에 의해 진행된

18) van Peursen, *Phanomenologie und analytische Philosophie* (W. Hohlhamer, Stuttgart, 1969) 제 9장 참조.

19) E. Husserl, *Erste Philosophie I* (den Haag, Martinus Nijhof, 1956) p. 188.

20) E. Husserl, *Logische Untersuchungen II/I* (Max Niemeyer, Tübingen, 1968) p. 108.

다는 특수성을 갖는다. 그리고 동물은 자연물을 있는 그대로 이용하고 自然과의 鬪爭에서도 자기의 육체기관만 이용하지만, 인간은 노동을 통해 목적의식적으로 작용하면서 그것을 변형시켜 이용하며 자기가 창조한 생산도구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따라서 동물의 발전이란 결국 그 肉體器官의 발전을 의미하지만, 인간 사회의 발전은 무엇보다도 生産力の 發展과 이에 따른 社會制度의 發展을 수반한다는 질적인 차이를 갖는다고 주장한다.<sup>21)</sup> 그 결과 사회란 그 어떤 정신적 총체나 구성원 개인들의 종합체가 아니라, 자연에 적극적으로 작용하는 사람들의 物質的 生産關係 및 經濟的 關係에 기초한 특수한 有機體라고 파악한다.

이러한 사회의 본질과 그 발전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辯證法的 唯物論의 일반적 발전법칙에 의지하면서도 사회에만 고유한 발전의 합법칙성을 파악해야 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명하는 것이 史的 唯物論이라 주장한다. 이것은 사회생활의 각 부분이나 사회적 관계의 여러가지 형태들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개별적 사회과학들과는 달리 사회생활과 사회적 관계들을 그 부분과 측면들의 상호작용의 견지에서 총체적으로 연구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그리고 사회발전에서 나타난 각 시기 각 나라의 사회생활에서 실제로 진행된 사건들과 과정들을 연대순에 따라 연구하는 歷史學과는 달리, 史的 唯物論은 類的 存在(Gattungswesen)로서의 모든 人間의 생활과 역사에서 공통적인 사회발전의 일반적 법칙성을 해명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史的 唯物論은 사회의 물질적 생활조건들 특히 物質的 富의 生産方式과 그것이 사회의 존재와 발전에서 차지하는 규정적 역할을 연구한다. 즉 物質的 富의 生産方式은 사회의 生産力과 生産關係의 統一體이기 때문에 이것의 辯證法的 相互關係, 그 발전의 합법칙성을 연구한다.<sup>22)</sup>

역사적으로 규정된 각 사회는 서로 질적으로 구별되는 社會經濟 構成態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일정한 사회경제 구성태는 그 사회의 성

21) 최길성, 앞의 책 제11장 참조.

22) R. Tucker, 『칼 마르크스의 哲學과 神話』 (김학준·한명화 옮김, 한길사, 1982) 제 8장 참조.

격과 면모 및 발전수준에 따라 원시공동체 사회, 노예소유자 사회, 봉건 사회, 자본주의 사회,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로 발전하고 있다고 파악한다. 이 각 사회경제 구성태는 그에 고유한 경제적 토대인 하부구조와 정치법률적 및 이데올로기적 상부구조를 갖는다. 따라서 史的唯物論은 토대와 상부구조의 상호관계, 그 변화와 발전의 합법칙성을 해명하는 데 집중한다. 23)

Marx는 적대계급으로 분열된 사회경제 구성태에서 사회발전의 추동력은 階級鬭爭이라 파악한다. 그러므로 無階級社會를 건설할 勞動階級の 階級鬭爭은 社會主義 革命에서 완성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것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필연적이며 객관적인 합법칙성을 띤다고 주장한다. 24) 따라서 Marx는 사회발전이 비록 意識을 가진 인간들의 활동을 통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의사에 의존하지 않는 객관적이고도 필연적인 自然史的 過程을 거친다고 지적한다. 그는 사회발전의 이 과정을 사회적 存在가 사회적 意識을 결정하며 사회의 물질적 관계가 변화함으로써 그 이데올로기적 관계가 변화된다고 분석한다. 우선 사회의 生産力이 발전하고 그에 따라 生産關係가 변화 발전한다. 25) Marx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물질적 생활의 생산방식은 사회적, 정치적 및 정신적 생활과정 일반을 제약한다. 인간의 의식이 그들의 존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들의 사회적 존재가 그들의 의식을 규정한다. 사회의 물질적 생산력은 그 발전의 일정한 단계에 도달하면, 그 내부에서 지금까지 발전해 오던 현존 생산관계 또는 이것의 법률적 표현에 불과한 소유 형태와 모순되게 된다. 즉 생산관계는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형식으로부터 그 질곡으로 전환된다. 그 때 사회혁명의 시기가 도래한다. 경제적 기초의 변화와 함께 지대한 상부구조 전체가 서서히 또는 급격히 변혁된다..” 26)

그는 이러한 객관적 과정을 통해 인류 사회는 한 사회구성태로부터

23) K. Marx, F. Engels, *The German Ideology* (Lawrence & Wishart, London, 1970)

24) K. Marx, *A Contribution to the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London, N. Y. 1971) p. 21/3 참조.

25) K. Marx, 같은 책 p. 20.

26) K. Marx, *Grundrisse* (Macmillan, N. Y. 1971) p. 40/1.

다른 더 높은 사회구성태로 교체됨으로써 진진적으로 발전한다고 본다.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사회가 이렇게 객관적 필연성에 따라 발전한다면 무엇 때문에 사회주의 이론이 필요하고 더구나 黨을 조직하고 革命을 수행해야만 하는가 라는 반문에 대해 自然의 法則과 社會의 法則이 다르다는 점을 들어 반박한다. 즉 자연의 법칙은 가령 밤과 낮이 교체되고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인간의 활동과 참여없이 저절로 실행되지만, 사회의 법칙은 서로 근본적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적대적 계급들의 투쟁과 의식적인 능동적 활동을 통해서만 추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無階級社會를 건설할 역사적 사명만으로는 부족하고 노동계급의 이익을 대변하고, Proletariat 독재를 선도할 黨의 조직과 투쟁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우리는 여기서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최근의 歷史에 의해 부당한 事實로 판명되었다는 점 이외에 몇가지를 음미해 보자.

첫째, Marxism 은 사회 지도층과 자본가들에게 자본주의적 착취의 不道德性을 설교하고 이들을 정신적으로 교양함으로써 사회의 모순을 극복하고자 노력한 프랑스의 Saint Simon, Fourier, 영국의 R.Owen 등의 空想的 社會主義가 실패하였기 때문에 科學的 社會主義로 출발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을 고려해 볼 때 만약 정부와 사회의 지도층이 가령 不勞所得의 원천이며 勤勞意志를 말살하고 階層 간의 葛藤을 심화시키는 不動產 投機를 근절시킬 土地 公概念制같은 構造的 矛盾들을 강인한 道德的 意志로서 과감하고도 신속하게 시정하지 않는다면, 財閥이 國民經濟의 利益과 배치되는 사리사욕만 채우려 한다면, Marx의 資本主義 批判은 계속 유효할 것이다. 能率과 生産力에 있어 資本主義가 발휘하는 장점 바로 뒤에는 부패하고 타락하기 쉬운 道德心과 利己心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勤儉과 節約을 강조하는 淸教徒的 倫理로 무장해야만 한다.

둘째, 150년 전에 Marx가 진단한 資本主義의 矛盾들이 정확했음은 그 이후의 歷史로 실증되었으며, 따라서 오늘날 資本主義 國家들 가운데 어느 나라도 古典的인 完全 自由競爭 原則을 고수하고 있지는 않다. 그렇더라도 Marx가 지방하고 그 후계자들이 이룩한 共產主義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Marx 스스로 자신은 Marxist 가 아니라고 천명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주장을 理論과 實際 사이에 상존하는 괴리현상의

표명으로 간주한다. 모든 이론은 그 이론이 지닌 한계와 입장을 망각하지 않을 때 참된 의의와 가치가 유지될 수 있다. 더구나 어느 하나의 이데올로기에 절대성을 부여하고 맹신하는 것만큼 오만하고 위험스러운 일은 없다. 27) 특히 그것이 급진적이고 폭력적일 경우 궁극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절대 다수의 국민이다.

마지막으로, 民主主義는 自由와 平等을 기반으로 인간의 尊嚴性에 대한 신념을 다양성 속의 통일로서 구현하려는 普遍的 理想이다. 이 民主主義가 추구하는 가치들은 이미 완결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기 때문에 부단히 접근해가야 할 개방적인 것이다. 특히 인간의 인식능력은 항상 제한적이어서 언제나 오류를 범할 수 있으므로, 진정한 民主主義는 모든 批判과 檢證을 거쳐 漸進的으로 合理的 社會를 지향해야 한다. 28)

우리의 傳統文化는 외국의 크고 작은 영향을 독자적으로 융합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 사회에는 모든 방면에서 원산지보다 더 철저하고 과격하며 타협을 모르는 외골수의 선명성만 강조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사회 속의 삶은 矛盾과 鬪爭, 自然淘汰와 適者生存으로 파악하는 社會學的 進化論의 영향이 확대 적용되어 排他的 性格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우리 사회에 왜 漸進的 改革을 주장하는 이론이 무기력한 모습을 띠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이론을 곧 保守 反動主義와 동일시하게 되었는지 철저히 반성하는 일만이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진정으로 극복하는 길일 것이다.

### 3. Marx以後 마르크스 레닌主義의 展開

Lenin 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1902)에서 “우리에게 혁명가들의 조직을 달라. 그러면 우리는 러시아를 전복할 것이다” 라고 주장함으로써 마르크스주의로부터 레닌주의로의 전환을 시도하였다. 즉 그는 마르크스주의를 그 당시 산업 노동자의 수가 매우 적고 Bourgeois 혁명도 경험하지 못하였던 여전히 강력한 봉건제도가 지배하는 帝政 러

27) K. Mannheim, *Ideology and Utopia* (Harcourt Brace & World, N.Y.) p. 64.

28) K. R. Popper, *Conjecture and Refutations* (London, 1963) p. 136 참조.

시아에 적용하고자 시도하였다. 29)

그 결과 Marx의 ‘勞動階級’은 점차 ‘勞動者들과 農民들의 同盟’으로 대체되었고, 勞動階級の 社會革命 대신 Bourgeois 民主革命이 勞動階級과 黨의 영도 아래 연차적으로 社會主義革命으로 성장시키는 데 목적이 있으며, 革命에 있어 社會的 經濟的 要因보다는 政治的 狀況과 직업적 혁명가들의 조직인 黨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그것은 노동자들은 경제적 요구를 위한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을뿐 스스로 사회주의적 의식을 발전시키고 혁명을 수행할 역량이 없다고 파악하기 때문이다.

또한 Lenin은 제1차 세계대전을 분석하여 전쟁불가피성을 역설하고, 帝國主義와 資本主義의 다양한 경제적·정치적 발전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社會革命은 모든 산업국가에서 반드시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帝國主義의 사슬에서 가장 약한 고리인 어느 한 국가에서도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資本主義 最高段階로서의 帝國主義를 논하였다. 30)

그는 Marx의 예견대로 資本主義가 붕괴되지 않고 유지 발전되는 것은 富를 擴大 再生産하기 때문이라고 파악하고, Marx의 이론에서 착취자에 공장주 외에 富國을 그리고 피착취자에 공장노동자 외에 植民地를 첨가하였다. 그래서 “만국의 Proletariat 여 단결하라”는 구호는 “만국의 Proletariat 와 피압박 민중들이여 단결하라”로 전환되었다. 이것은 植民地 民族問題의 해결은 帝國主義의 전복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社會主義 革命과 직결된다고 파악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Marx의 사상은 그것이 실천적으로 적용되면서 Bernstein의 수정주의, 이를 극렬히 비난하는 Kautsky 등의 정통 마르크스주의, Lenin의 주장을 전체주의적 입장에서 세계 공산주의 운동에 전파한 Stalin,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中國의 특수한 역사적 상황과 사회구조에 적용시킨 모택동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 본 김일성 개인 우상화로 변모된 主體思想 등으로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그러나 이들에 있어 공통적인 점은 Marx가 資本主義 社會의 矛盾을

29) 김학준, 『러시아 革命史』(문학과 지성사, 1979) 제3, 4, 5 장 참조.

30) 이용필, 『共產主義 이데올로기』(화학사, 1984) 제 4장 참조.

적나라하게 분석한 양상 특히 分業化로 야기된 人間性 喪失과 疎外<sup>31)</sup>의 문제 그리고 역사와 사회의 발전에서 인간의 노동(Arbeit)이 지닌 중대한 의미의 분석<sup>32)</sup> 등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社會主義 革命을 진파하기에 급급한 戰術 戰略化, 體制維持를 위한 教條化 그리고 정직된 官僚主義와 劃一主義로 정착되는 과정을 밝혔다. Marx이론이 지닌 열정과 생명력의 요소는 化石으로 전락되고 말았다.

---

31) 김문길, 『疎外論 研究』(문학과 지성사, 1978) 제 2장 참조.

32) 일리인, 『인간의 역사』(동원 옮김, 연구사, 1987) vol. 1, 2, 3.

H.Schneider, 『勞動의 歷史』(한정숙 옮김, 한길사, 1982) 참조.

#### IV. 마르크스主義와 現象學

##### 1. 마르크스主義와 現象學의 關係

일반적으로 唯物論으로 알려진 마르크스 哲學과 觀念論으로 알려진 Husserl의 현상학은 서로 아무런 관련도 없는, 심지어 극단적으로 대립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파악은 극히 단순화된 표층적 이해일 뿐이다. 그리고 이 兩者擇一은 불충분하고 제한된 일면성을 지닐 뿐이다.<sup>33)</sup>

Engels는 『Ludwig Feuerbach와 독일 고전철학의 종말』에서 “유물론이란 현실적 세계에 대한 고찰 이외에 다른 아무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철학에서 觀念論 陣營과 唯物論 陣營의 優位鬭爭을 분석하고 있다. 여기서 唯物論이란 본래의 史的 唯物論의 의미에서가 아니라 Holbach의 전통에서 변증법적으로 전개된 唯物論의 의미에서 구체적인 역사적 세계에 관한 고찰이다. 이에 반해 Marx는 觀念論뿐 아니라 동속적인 唯物論의 극복을 위해, 터우기 形而上學的 傳統 전체의 극복과 이 전통에 의해 소원해진 인간 현존의 형식들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哲學의 근본문제와 自然에 관한 문제성에 있어서 Marx와 Engels는 견해를 달리한다.

Marx는 非歷史的 自然에 관한 思辯을 거부한다. 그에 있어 自然 그 자체 즉 實踐으로부터 유래된 자연에 관한 물음은 단지 Scholastic 철학적인 물음일 뿐이다.<sup>34)</sup>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우리는 유일한 科學, 歷史科學만을 알고 있다. 歷史는 自然의 歷史와 人間의 歷史로 구분되는 2 측면으로부터 고찰될 수 있다. 이 2 측면들은 人間이 存在하고 自然의 歷史와 人間의 歷史가 상호 제약하는 한

33) Ante Pazanin, “Überwindung des Gegensatz von Idealismus und Materialismus bei Husserl und Marx” in *Phänomenologie und Marxismus* (Suhrkamp Frankfurt am Main, 1977) vol. 1, p. 105/27.

34) K. Marx, “These über Feuerbach” in *Die Frühschriften* p. 339



時間上 서로 분리될 수 없다.”<sup>35)</sup>

따라서 Marx는 Feuerbach가 唯物論者인 한 歷史는 그에게 나타나지 않으며, 그가 歷史를 고찰하는 한 그는 唯物論者가 아니라고 비판한다. 즉 Feuerbach에서 唯物論과 歷史가 완전히 결별되었다고 주장한다.

Marx의 唯物論은 觀念論뿐 아니라 진동적인 唯物論과 自然主義와도 구별된다. 그는 自然으로부터 출발하지만 人間으로부터 유리된 自然이 아니라, 歷史的 自然과 人間の 삶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Marx는 客觀主義와 自然主義뿐 아니라 主觀主義와 人間中心主義를 극복하고자 시도하였다. 즉 그의 史的 唯物論은 “人間の 완성된 自然主義이자 自然의 완성된 휴머니즘”이라 주장하면서 觀念論과 唯物論을 통일하고자 노력하였다.

Husserl도 그의 조교 Heidegger와 함께 집필하여 《Encyclopaedia Britannica》에 1928년 기고한 “Phenomenology” 항목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직관적으로 주어진 것으로부터 추상적으로 높은 것으로 계속 나아가는 체계적 작업을 통해 고대로부터 진승된 철학적 관점들의 다의적인 대립적 명제들—合理論(Platon主義)과 經驗論, 相對主義와 絕對主義, 主觀主義와 客觀主義, 存在論主義와 先驗主義, 心理學主義와 反心理學主義, 實證主義와 形而上學, 目的論的 世界把握과 因果論的 世界把握—은 저절로 저절로 그리고 논증적 辯證法의 技術이나 허약한 수고나 타협없이 해소된다. ..主觀主義는 가장 보편적이고 극도로 시종일관된 先驗的 主觀主義에 의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 ..相對主義는 보편적인 相對主義에 의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 ..經驗論은 가장 보편적이고 극도로 시종일관된 經驗論에 의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 ..다른 한편 形相學으로서의 現象學은 合理論的이다. 그러나 現象學은 先驗的 主觀性, 自我, 意識과 의식된 對象性에 통일적으로 관련된 本質探求의 가장 보편적인 合理論에 의해 제한된 獨斷的 合理論을 극복한다.”

관련된 本質探求로서 客觀主義와 主觀主義 및 그밖의 다른 착종된 대립들의 兩者擇一을 극복할 것을 주장한다.

결국 現象學과 마르크스주의를 병합하거나 종합하려는 시도는 社會思想과 社會學的 思想의 특수한 부적절함에 대한 반응일뿐 아니라, 産

35) K. Marx, *Die Frühschriften* p.346

業社會, 後期 資本主義社會 또는 合理的 社會 등으로 다양하게 묘사된 社會 내에서 社會的 關係를 논의하는 정통 마르크스 주의의 한계에 대한 반응으로 간주된다. <sup>36)</sup>

## 2. 現象學的 마르크스主義

마르크스 주의와 現象學的 關係는

첫째, 마르크스 주의자의 현상학(Phenomenology of the Marxist)

둘째, 현상학자의 마르크스 주의(Marxism of the Phenomenologist)

셋째, 현상학과 마르크스 주의는 상호 보완적이라는 전체 아래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는 현상학적 마르크스 주의(phenomenological Marxism)의 3 가지 관점에서 살펴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현상학적 마르크스 주의에 국한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Piccone 은 오늘날의 마르크스 주의는 기껏해야 客觀的 科學으로 분장된 슬로건에 불과하며 社會現實을 해명하기 보다는 은폐하는 무수한 범주들을 나열할 뿐이라고 비판한다. <sup>37)</sup>

또한 Piccone 은 정통적 마르크스 주의가 Soviet의 정책적 도구로 진락한 것은 이미 오래 전의 일이며, 하나의 이론으로서는 독단적 슬로건에 의해 연결된 빈 껍데기 즉 이데올로기의 化石일 뿐이라고 비판한다. <sup>38)</sup> 그는 이 논문에서 정통적 마르크스 주의가 추상적 객관적 教條에 지나지 않으며 소수 支配官僚의 수중에 장악된 조작적 도구라고 규탄한다. 이것은 現代 科學의 危機 또는 資本主義의 危機와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서 마르크스 주의의 위기인 것이다. <sup>39)</sup> 이 마르크스 주의의 危機란 主體(勞動者)와 客體(勞動者의 客觀的 意識

36) B. Smart, *Sociology, Phenomenology and Marxism Analysis* (Routledge & Kegan Paul, 1976) 제 4장 참조.

37) P. Piccone, "Reading the Crisis" in 《Telos》 (1971, 여름)

38) P. Piccone, "Phenomenological Marxism" in 《Telos》 (1972)

40) E. Husserl, *Philosophie als strenge Wissenschaft* 295.

41) E. Husserl, *Ideen zu einer reinen Phanomenologie und phanomenologische Philosophie I* (den Haag, 1976) p. 195.

즉 마르크스 주의)가 본질적으로 분리되어 客觀的 科學의 수준으로 事物化(reification) 되었음을 뜻한다.

Piccone 은 마르크스 주의의 危機를 극복하는 길은 정통적 마르크스 주의자들의 개념들을 오늘의 구체적 경험에 비추어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적절함(adequacy)을 갖도록 재구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階級的 개념을 새로운 현상을 포착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고, 構造도 物質的 生産手段이라는 좁은 범주에서 벗어나 生活의 質 또는 인간의 生活樣式을 결정하는 社會 經濟的 狀況으로, 革命의 개념도 오늘날 분절화되고 로보트화된 勞動者들이 자신의 운명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데 의식적으로 즉 정치적으로 참여하는 主體가 되는 日常生活의 質的 變化로 정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生活世界(Lebenswelt)의 문제성을 본격적으로 제시한 Husserl 최후의 저서 『유럽 학문의 위기와 선형적 현상학』(*Die Krisis der europäischen Wissenschaften und die transzendente Phänomenologie*; 이하 *Die Krisis*로 약칭함)는 Lucacs의 『역사와 계급의식』(*Geschichte und Klassenbewusstsein*)과 함께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Husserl 이 분석한 유럽 學問의 危機는 Marx가 분석한 資本主義의 危機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즉 資本, 科學, 마르크스 주의는 資本主義 발전의 동일한 社會 歷史的 過程의 다른 產物에 불과할 뿐이다.

### 3. Husserl의 生活世界

Husserl 이 生活世界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은 첫째, 論理學에서의 心理學主義를 비판하여 純粹 論理學을 定礎하려는 시도가 認識論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전통적 形式 論理學 전반에 걸친 반성으로 확대되는 길과 둘째, 이 心理學主義 批判이 自然主義에 대한 비판과 이것이 심화되고 확장되어 近代 哲學史 전체를 目的論的- 歷史的으로 고찰하는 物理學的 客觀主義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는 길이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주제의 성격상 後者의 길만 논의하기로 한다.

Husserl 에 의하면 自然主義는 모든 존재자를 단순히 거기에(einfach da) 존재하는 物理的인 것과 이것에 단지 의존적이며 신체에 결합되어 나타나는 가변적인 제 2차적 부수물로서의 心理的인 것으로 구별하

고, 이 모두를 정밀한 自然法則에 따라 시·공적 존재의 일의적 통일성으로 규정된 心理物理的 自然으로 간주하는 實證主義이다. 이것은 意識에 지향적-내재적으로 주어진 모든 것을 포함해서 意識을 自然化하고, 모든 絶對的 理想들과 規範들 즉 理念들을 自然化한다.

Husserl은 우선 이 自然主義가 지닌 方法論的 偏見을 지적한다. 自然科學者는 自然科學의 實驗的 方法만이 哲學을 엄밀한 科學으로 항상 시킨다고 믿고 과학적으로 정밀하게 증명되지 않는 모든 것을 學問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科學의 狂信主義者(Wissenschaftsfanatiker)이다. 이러한 입장은 理論上 自家撞着이다. 왜냐하면 自然科學者는 그가 부정하는 이론 즉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할 실천적 규칙들을 형성하고 제기하는 또 하나의 客觀主義者이며 觀念論者이기 때문이다.<sup>40)</sup> 그리고 實踐上 自然主義는 價値나 意味 問題를 인간의 삶으로부터 疎外시켜 現代 學問과 人間性의 危機를 야기시켰다. 自然의 한 부분으로서의 人間과 規範의 擔持者로서의 人格의 균열은 이론을 탐구하는 자의 自己忘却이요, 이러한 방법으로 心理的인 것을 탐구하는 것은 곧 Psyche가 빠진 心理學(Psychologic) 일 뿐이다.<sup>41)</sup>

그리고 Husserl은 自然主義가 자연주의적 태도에서 주관적인 제 2성질을 배제함으로써 意識을 自然化 즉 事物化하는 것에 대해 비판한다. 그는 현실적으로 구성된 세계 안에서만 그 의미를 지니는 因果性은 自然主義에 의해 객관적 實在와 經驗 속에서 직접 나타나는 주관적 意識을 이어주는 신비한 접착체가 되고, 따라서 實在性은 그릇되게 물질적 존재로 귀속되고 자연화되어 純粹 意識 자체는 전혀 보이지도 않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또한 自然主義는 우리의 意識에 주어진 事態 그 자체(Sachen selbst)를 事實(Factum)로만 자연화하여 이해하고 理念이나 本質은 Schola 철학의 실체나 유형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事實이란 말은 語源上 Latin 어 'facio' (do, make, act, experience, perform ect.)에서 유래한 것으로

40) E. Husserl, *Philosophie als strenge Wissenschaft* 295.

41) E. Husserl, *Ideen zu einer reinen Phanomenologie und phanomenologische Philosophie* I (den Haag, 1976) p. 195.

우리가 사실이라 규정된 것이다. 42)

Husserl 에 있어 本質은 어떤 신비적이거나 형이상학적인 실체, 개별적인 시·공적 대상들의 가능조건이 결코 아니다. 그것은 의식에 주어진 경험이 가능할 수 있는 일련의 최소 필요조건이요 현상학적 배도 변경 즉 현상학적 환원(phenomenologische Reduktion) 을 통해 구체적 자아에 밝혀질 수 있는 논리적 구조들이다. 순수 의식에 주어지고 있는 것이 곧 本質이며, 이것을 그대로 받아 들이는 것이 直觀이다. 가령 우리는 ‘철판에 그려진 하나의 삼각형을 봄’ 에서 ‘삼각형 일반’ 을 파악할 수 있다. Merleau-Ponty 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Husserl 의 본질은 마치 어부의 그물이 바다 속 깊은 곳에서 움들 거리는 물고기와 해초를 끌어 올리듯이, 경험의 모든 생생한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다.” 43)

Husserl 의 이러한 自然主義 批判은 결코 現代 科學이 이룩한 성과를 파소평가하려는 것은 아니다. 44) 그것은 경험 심리학이나 실험적 방법을 경멸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로부터(von unten) 의 엄밀한 학문적 철학의 이념을 추구하는 현상학적 방법을 통해 경험 심리학을 더 높은 차원의 심리학 즉 理性的 學問的 이론에로의 참된 길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近代 哲學史는 自然科學이 이룩한 성과들에 기초를 제공하려는 시도와 서로 밀접하고도 복잡하게 얽혀져 있다. Kant 뿐 아니라 논리적 실증주의(Logical Positivism)도 과학의 해석과 성과를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여, 철학은 과학의 해명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Husserl 은 최초로 이 自然科學의 성과를 문제삼는다. 즉 그는 근대 자연과학의 형이상학적 기초를 비판하고 자연과학적 지식의 가능성을 정초하고자 시도한다.

42) H. G. Gadamer, *Wahrheit und Methode* (J. C. B. Mohr, Tübingen, 1972) p. 209, 260 참조.

43) M. Merleau-Ponty, *Phenomenology of Perception* (trans. by C. Smith, Routledge & Kegan Paul, 1962) XV.

44) E. Husserl, *Die Krisis* p. 19 참조.

Husserl은 Galilei가 自然을 數學化함으로써 科學 以前の 直觀的 世界는 기하학적 질서(ordine geometrico)라는 새로운 수학의 지도이념 아래 理念化된 自然으로 대체되고, 단지 세계를 해석하는 하나의 方法에 불과한 것을 참된 存在로 간주하게 되었다고 비판한다.<sup>45)</sup> 그에 의하면 수학과 수학적 자연과학의 이러한 이념화작업(Idealisierung)은 직관적으로 직접 경험되는 生活世界에 理念의 옷(Ideemkleid)을 입힌 것이다.

그는 전통적으로 近代哲學을 合理論과 經驗論으로 구분하는것은 극도로 단순화된 잘못이라 지적한다.<sup>46)</sup> 오히려 그는 科學的 客觀主義와 先驗的 主觀主義 사이의 첨예한 긴장의 역사로 파악한다.<sup>47)</sup> 그리고 소박한 因果率에 대한 편견, 이 인과률의 원천인 이 현상들의 배후에 있는 순수 물체적 세계에 대한 신념과 이러한 세계해석의 방식을 物理學的 客觀主義(—合理主義, —自然主義)라 부르면서 그들의 이론을 비판한다.

이에 반해 그는 先驗哲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과학 이전의 객관주의와 과학적 객관주의에 대립해서 모든 객관적 意味形成과 存在妥當性의 근원적 터진인 인식하는 主觀性으로 되돌아가는 철학이며, 존재하는 세계를 의미의 형성물과 타당성의 형성물로 이해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본질적으로 새로운 종류의 학문적 성격과 철학의 길을 개척해 나가고자 시도하는 철학이다.”<sup>48)</sup>

그런데 物理學的 客觀主義는 오직 물리적 물체적인 것만 객관적이므로 현상적 특성들을 간접적인 수학의 형식으로 변형시키고, 경험에 직접 주어진 주관적 요소들을 가능한 한 배제하고자 시도하였다. 그 결과 수학적 자연과학은 그들의 방법, 공식, 이론 자체의 본래 의미가 결코 이해할 수 없게 된 意味의 空洞化(Simentleerung), 그 근원적 기원과 직관적 상관자로부터 유리된 意味의 疎外, 外面化 현상이 나타난다.

45) E. Husserl, *Die Krisis* p.50/2 참조.

46) E. Husserl, 같은 책 p.85.

47) E. Husserl, 같은 책 p.71.

48) E. Husserl, *Die Krisis* p.102.

Husserl 은 여기서의 공허한 확실성만 얻을 뿐이며, 모든 실재를 탐구한다고 하면서 生活世界는 다루지 않고, 인과적 고찰은 관계는 밝히지 못하고 오직 죽은 사물만 파악하는 일면적 고찰이라고 비판한다. 그는 學問의 理念이 단지 지엽적 개념인 실증주의적 事實學으로 환원되어 인간 삶의 중대사가 상실된 學問의 危機는 소박한 物理學的 客觀主義가 철저한 先驗的 主觀主義에로 전회하는 革命에 의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sup>49)</sup> 이 物理學的 客觀主義가 망각한 自然科學의 意味基底가 곧 生活世界이다.

이 生活世界는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자명한 것, 그 유형 속에서 언제나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친숙한 세계이다. 이것은 모든 학문적 사고나 철학적 물음에 앞서 미리 놓여져 있는 자명성이다. 즉 세계가 존재하며 언제나 미리 존재한다는 점, 시·공간적 사물을 통해 경험하거나 어떤 의견을 정정하더라도 이 세계를 전제한다.

그러나 Husserl 은 자명하다고 이 生活世界를 익명성(Anonymitat)으로 방치한다면 철학은 궁극적으로 정초지우는 보편적 학문의 의미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궁극적이며 매우 진지하게 모든 삶의 활동이 전제하는 자명성과 그 존재의미와 타당성의미를 물으면서 모든 정신적 작업수행이 관철하는 의미연관들의 통일들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통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자신이 지닌 關心의 世界, 生活世界에서 보편타당한 진리를 발견해내고 확보하는 理論의 技術 즉 독특한 종류의 실천인 理論的 實踐(theoretische Praxis)이다.<sup>50)</sup>

Husserl 은 이 생활세계의 고유한 존재의미를 해명하는 최초의 시도는 궁극적으로 정초지우는 것이며, 따라서 그 가치상 결코 낮은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것이며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한 예비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생활세계는 원리상 실제로 상호주관적으로 경험하고 검증할 수 있는 세계이지만, 논리적 사고의 구축물인 객관적으로 참된 세계는 원리상 직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한 고찰은 자연적인 생활태도를 총체적으로 변경하는, 미리 주어졌던 세계의 타당성을 끊임없이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억제하는

49) E. Husserl, 같은 책 p.48.

50) E. Husserl, *Die Krisis* p.113, 135, 143 참조.

前代未聞의 철저한 先驗的 判斷中止(transzendentale Epoche)에 의해서만 가능하다.<sup>51)</sup> 자연적 태도 속에서는 자연적 태도 자체도 볼 수 없으며, 이것의 참 모습은 철저한 반성적 태도인 선험적 판단중지를 통해서만 볼 수 있다. 물론 이 판단중지를 통해 자신의 존재와 그 객관적 진리들 가운데 아무 것도 상실되지 않는다. 그것은 자연적 태도의 일반정립(Generalthesis)을 판단중지한다는 것은 세계에 대한 소박한 믿음을 괄호 속에 넣고 그 타당성을 일시 배제하는 것이지 그 세계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의심하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判斷中止를 통해 이 세계가 나에게 대해 진적으로 독특한 의미에서 現象(Phenomenon)으로 드러난다.<sup>52)</sup> 이 生活世界와 객관적으로 참된 세계는 기초지우교 기초지이지는 상호 의존관계에 있으며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

生活世界는 우리가 언제나 그 속에 살아가고 있으며 모든 인식작업과 학문적 규정에 토대를 부여하는 세계이다. 이 세계는 논리적 작업 수행들의 침전물이 침투된 것으로 경험의 성과를 전달하고 학습하며 傳統으로 이어받지 않고서는 결코 달리 주어질 수 없다. 즉 傳統은 이어받은 妥當性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주어진 그대로 있다고 생각하는 경험세계는 사실 처음부터 理念化作業의 도움을 받아 해석된 세계이다.<sup>53)</sup>

단순히 주관에 상대적인 직관으로서 生活世界의 경험에서 유래하는 Doxa는 客觀性을 추구하는 近代 이후의 自然科學의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참된 앎인 Episteme보다 낮은 단계의 명증성을 지니는 것으로서 정렬되어 왔다. 그러나 Husserl의 주장에 의하면 Episteme는 그 자체의 存在를 전달하는 認識의 길이 아니라 단지 하나의 方法에 불과하며, Doxa는 Episteme가 그 의미상 되돌아가야만 할 궁극적인 근원적 명증성의 영역이다. 따라서 Doxa는 참된 理性의 이전형태(Vorgestalt), 출발형태(Anfangsgestalt)이며 Episteme는 그것의 최종형태(Endgestalt)이다.<sup>54)</sup>

51) E. Husserl, 같은 책 p. 151.

52) E. Husserl, 같은 책 p. 155, 193.

53) E. Husserl, *Erfahrung und Urteil* (Felix Meiner, Hamburg, 1972) p. 41.

54) E. Husserl, *Die Krisis* p. 274.



이러한 Husserl의 분석은 정밀한 인식의 가치를 손상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認識은 보다 높은 단계의 명증성 속에서 확증되며 본질적으로 Doxa로부터 Episteme로 상승한다는 점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다. 그가 강조하는 점은 궁극적 목표를 추구하더라도 낮은 단계의 起原과 權利가 망각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55)

Husserl은 이러한 의미에서 現代 自然科學的 認識의 故郷喪失性, 意味가 空洞化된 意味의 疎外 현상을 밝힘으로써 哲學的 治療를 시도한 것이다.

Husserl은 세계에 드러진 理念化作業을 해체하고 가장 근원적인 生活世界의 경험에서 그것의 은폐된 意味基礎를 파헤치는 것은 主觀的인 것을 되돌아가 묻는 일이지만, 결코 客觀的 科學이나 心理學이 제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56) 우리의 體驗들은 主觀的 작업수행의 침전물들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침전되고 은폐된 지향적 함축들과 세계 자체의 歷史를 드러내 밝히고, 지향적 작업수행으로부터 생긴 意味의 침전물들의 起原을 심문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先驗的 主觀性으로 이해한다. 57) 여기서 先驗的이란 모든 認識形成의 궁극적 원천을 되돌아가 묻고 자기 자신에게 타당한 모든 학문적 형성물들이 목적에 합당하게 생기고 획득물로 보존되며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인식하는 삶을 인식하는 자가 자각하는 動機를 뜻한다.

Husserl은 이 미리 주어진 生活世界를 드러내 밝히는 先驗的 主觀性으로 되돌아가는 단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58)

- 1) 자신의 모든 의미의 침전물들과 학문이나 학문적 규정들을 지닌 미리 주어진 세계로부터 근원적인 生活世界로 되돌아감(Rückgang),
- 2) 이 生活世界가 발생하는 主觀性의 작업수행으로 되돌아가서 물음(Rückfragen)이다.

55) E. Husserl, *Erfahrung und Urteil* p.45.

56) E. Husserl, *Die Krisis* p.114.

57) E. Husserl, *Erfahrung und Urteil* p.48.

58) E. Husserl, 같은 책 p.49.

#### 4. Lukasc의 歷史와 階級意識

한편 Lukacs도 自然科學 批判이 20세기의 근본적 마르크스 주의를 대표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Husserl 과 Lukasc는 自然科學의 方法에 대한 批判이나, 科學이 인간의 진정한 認識을 수행할 수 없다는 데만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근대 이후 길을 잘못 들어선 合理主義 즉 啓蒙主義의 부정적 理性이 現代 科學의 실패에 있고 그 결과 전체 人間性의 危機로 나타난다는 데도 일치한다. 다만 그것이 Husserl 에서는 유럽 人間性의 危機, 진정한 目的論의 危機로 나타나는 반면에 Lukasc에서는 資本主義의 危機로 표현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sup>59)</sup> 그리고 自然科學 批判은 이들에게 있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원인과 실천적 극복가능성을 찾으려는 人間 삶의 危機의 표현이다.

한편 科學과 人間的 現存의 回復은 Husserl 에서는 진정한 인류의 담당자(Funktionare)로서 참된 철학자의 입장 즉 理性의 英雄主義에 의해 극복하고자 시도한다.<sup>60)</sup> 이것은 Lukasc에서는 Bourgeois 生産樣式의 혁명적 전복만이 새로운 개혁을 가능케 한다고 본다.

이러한 주장들은 의견상 Husserl 의 입장은 단순히 精神史的인 것으로, Lukasc의 입장은 史的 唯物論으로 간주하기 쉽다. 그러나 이것은 지나친 단순화의 오류인 것이다.

Husserl 이 哲學의 精神으로부터 유럽의 재탄생을 구현하고자 한 것이나 그가 이 새로운 삶의 具體的 物質的 樣式을 탐구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그의 입장이 觀照的이며 認識論에 머문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sup>61)</sup> 실현할 수 있고 실현해 가는 理論과 實踐의 統一은 Husserl 現象學에서도 마르크스 주의에서와 마찬가지로 자명한 것이다.

그리고 Lukasc 역시 권박한 史的 唯物論을 지지하지는 않는다.<sup>62)</sup>

59) W. Dallmayr, "Phänomenologie und Marxismus in geschichtlicher Perspektive" in *Phänomenologie und Marxismus* (Suhrkamp, Frankfurt am Main, 1977)

60) E. Husserl, *Die Krisis* p. 347/8 참조.

61) E. Fink, *Studien zur Phänomenologie 1930 - 1939* (den Haag, Martinus Nijhof, 1966) p. 198/9 참조.

62) M. Vajda, "Die Kritik der Tatsachenwissenschaften bei Lukacs und Husserl" in *Phänomenologie und Marxismus* p. 54.

그는 비록 主體와 客體의 同一性의 觀點이 인식의 진보뿐 아니라 이제까지의 교류형식이나 배도형식의 총체적 개혁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빈, 유사-자동적이고 자연법칙적인 혹은 자의적이고 합리적인 인간들 사이의 교체형식 (중국에는 생산형식) 의 혁명은 이 진정한 觀點에 도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事物化된 세계 즉 Bourgeois 資本主義 生産樣式의 革命化는 Proletariat 가 Proletariat 階級意識 (主體-客體 同一性의 觀點) 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됨을 의미한다. 1919년에 이미 Lukasc는 이러한 방법론적 觀點을 작성하였다.

“社會의 發展은 統一的 過程이다. 이것은 사회적 삶의 어떤 분야에서 발전의 일정한 국면은 그 영향이 다른 분야에서 감지되지 않는 한 실행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발전의 이러한 統一性과 關係를 통해 인간은 다른 사회적 현상의 觀點에서도 그 과정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시대의 문화를 옳게 파악한다면, 우리는 그 시대의 전체 발전의 뿌리를 그 속에서 파악한 것이며 따라서 비록 우리가 경제적 關係의 분석에서 논의를 출발하더라도 우리는 곧 거기에 도달하게 된다.”<sup>63)</sup>

그리고 Lukasc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Proletariat 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社會的 意識에 (객관적으로) 적합할 수 있는 최초의 主體이다.”<sup>64)</sup>

“Proletariat 의 등장에 의해 비로소 社會的 現實性에 대한 意識은 완성된다.”<sup>65)</sup>

Lukasc는 개인은 결코 사물의 적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의 觀點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Husserl 과 견해를 달리 한다. 그는 개인은 객관적 현실성을, 그것을 인정하거나 거부할 주관적 판단에 이를뿐인, 딱딱한 사물들의 복합체로 간주하면서 그것들과 필연적으로 대립해 서 있다고 주장한다. 즉 그는 개인에게는 事物性, 決定論은 폐기될 수 없는 것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現實性을 파악할 수 있는

63) G.Lukasc, “Alte Kultur und neue Kultur” in *Taktik und Ethik, Politisch Aufsätze I* (Luchterhand, Darmstadt und Neuwied, 1975) p. 132.

64) G.Lukasc, *Geschichte und Klassenbewusstsein* (Luchterhand, Neuwied und Berlin, 1968) p. 387.

65) G.Lukasc, 같은 책 p. 193.

主體를 Proletariat 階級에서 찾는다. 그는 “오직 觀照的 樣式化되고 神話化된 個人으로서의 類(Gattung) 로서가 아닌 階級만이 現實性의 總體性에 實踐的으로 關係할 수 있다”<sup>66)</sup> 고 주장한다.

Lukasc는 이러한 관점에서 자기의식적 당파적 elite 는 하나의 階級을 따라서 全體 人間性을 구현할 수 있고 구현해야만 한다는 믿음을 지닌 Bolschwism elite 主義의 부당성을 지적한다.

이러한 현상학적 마르크스 주의에 의하면 Husserl 이 生活世界에서 획득한 先驗的 主觀性 혹은 主體는 勞動해야 하는 필연성 때문에 항상 先驗的 主體의 역할을 강요당하는 Proletariat 의 의미로 해석된다. Proletariat 는 하나의 物건으로 취급되면서도, 따라서 세속적 경험의 세계에 애속되면서도 자기의 상황을 진정으로 의식하고 그 날레로부터 벗어나려는 목적론적 행위인 勞動을 통해 참된 意識을 획득하는 先驗的 存在이다. Proletariat 는 이러한 先驗性 때문에 質的으로 다른 生活樣式을 추구하는 革命에의 欲求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현상학적 마르크스 주의는 社會性이 부족한 現象學을 社會哲學으로, Dogma 적 마르크스 주의는 批判哲學으로 전환시켜 이들의 조화를 시도할 것이라 할 수 있다.

66) G. Lukasc, 같은 책 p. 380.

## V. 마르크스主義 批判

Marx 이후 마르크스 주의가 전개된 방향은 인식론적으로

첫째, 객관주의적 경향으로 Lenin, A.Schaff, Lukasc, L.Althusser 등으로 이어지는 정통적 마르크스 주의 또는 이를 수용하려는 입장,

둘째, 정통적 마르크스 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나타난 주관주의적 경향으로 Sartre, E.Paci, P.Piccone 등의 입장,

셋째, 마르크스 주의의 재해석과 관련하여 主體·客體의 대립을 극복하려는 M.Merleau-Ponty, J.Harbermas 등의 입장으로 구별된다.<sup>67)</sup>

우리는 여기서 각 입장의 대표적 예로 Lenin, Sartre, Merleau-Ponty의 주장을 중심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 1. 客觀主義的 傾向

정통적 마르크스 주의는 Marx 이전의 전통적인 主體·客體의 대립으로 되돌아간다. 특히 Lenin은 『유물론과 경험비판론』에서 Marx-Engels의 唯物論과 Mach, Avenarius 등의 經驗批判論을 검토하고, 이들을 서로 융합할 수 없는 2진영으로 엄격히 구분한다.

그는 물체를 감각의 복합이라고 주장하는 經驗批判論은 Berkeley가 사물을 감각과 관념의 연합이라고 주장한 主觀的 觀念論의 재탕이라고 반박하고, 意識 밖에 있는 對象 그 자체에서 출발하며 관념과 감각은 對象을 模寫 反影한다는 이론을 토대로 唯物論을 주장한다.

“세계에는 운동하는 물질 이외에 아무 것도 없으며, 또 운동하는 물질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만 운동할 수 있다.”<sup>68)</sup>

그는 이 唯物論이 정당하다는 근거를 일반 사람들의 상식 그리고 생물학과 생리학을 중심으로한 自然科學의 이론에 두고 있다.

또한 Lenin은 이 유물론을 認識의 문제에서 眞理와 實踐의 문제에

67) W.Dallmayr, 앞의 글과 “Marxism and Truth” 참조.

68) N.Lenin, *Materialism and Empirico-Criticism* 참조.

까지 확대한다. Marx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인간의 사유가 대상적 진리성을 갖는지 아닌지의 문제는 결코 理論의 문제가 아니라 實踐의 문제이다. 인간은 자기의 사유의 진리성을 ..實踐에서 증명하지 않으면 안된다.”<sup>69)</sup>

Lenin은 Marx의 이러한 주장을 사유의 객관적 진리란 사유에 의해 참으로 반영된 대상 즉 事物 자체의 존재를 의미하는데 불과하다고 해석한다. 그리고 이 事物 자체와 現象의 세계를 구별하는 것은 觀念論이나 不可知論의 입장은 事物 자체의 실재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난한다. 그에 의하면 객관적 진리란 인간의 감각기관에 의해 밝혀지는, 인간으로부터 독립하여 존재하는 진리를 뜻한다. 그리고 참된 反映에 이르기까지 상대적 접근(Approximation)의 여러 단계 즉 역사적 과정이 필요하며, 따라서 과학적 실험을 통해 상대적 진리는 절대적 진리로 변증법적 발전을 거듭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러한 과정에서 實踐은 부분적 진리를 완전한 지식으로 전환시키는 實驗의 過程이며 實踐의 成敗는 客觀的 眞理와의 一致 與否를 결정하는 유일한 基準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Lenin의 이러한 입장은 전통적인 經驗論이나 自然科學이 취해온 眞理의 對應說과 다른 것일 수 없다.

## 2. 主觀主義的 傾向

Sartre는 Husserl의 경험대상을 의식의 지향적 작용으로 환원하는 현상학적 방법을 더욱 철저히 수행한다. 그러나 그는 Husserl이 이렇게 도달한 先驗的 自我가 내용인 빈 공허한 것이라고 비판한다.<sup>70)</sup>

Sartre는 즉자(en-soi)와 대자(pour-soi), 외적 對象과 인간의 自由를 아무런 배개없이 직접 충돌시키고 있다. 이 점은 그가 現象學과 마르크스주의를 결합하고자 하는 시도에서도 분명히 나타나는데, 여기서 개인의 절대적 自由는 아무런 연결고리 없이 갑자기 Proletariat의

69) K. Marx, *These uber Feuerbach* 2 명제.

70) J.P. Sartre, *The Transcendence of the Ego* (trans. by F. Williams & R. Kirkpatrick, The Noonday Press, N. Y., 1977) 참조.

實踐으로 이행하고 있다. 71)

Sartre는 『유물론과 혁명』(Materialism and Revolution, 1946)에서 마르크스주의와 辯證法的 唯物論을 동일시하는 것은 모순일뿐 아니라 견지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Sartre에 의하면 그 자체로 정지하고 있는 사물세계를 전개하는 唯物論은 자못 신비스럽기조차한 實證主義이며, 탈을 쓴 形而上學이다. 唯物論은 처음에 因果的 契機를 가지고 모든 현상의 정체를 벗겨내고자 하는 實證主義의 전략을 취하지만, 그 뒤 모든 초월성을 부정하면서 精神을 物質로 환원하고 세계와 인간의 實存을 自然法則과 결합된 對象들의 體系로 환원함으로써 모든 主觀을 배제한다. 그러나 實證主義가 긍정적인 문제에 대해 입을 다물어버리는 반면, 唯物論은 物質이 事物의 本質이며 意識은 物質의 產物이라고 선언함으로써 思辯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Sartre는 實證主義的 唯物論은 인간의 지식을 증명가능한 경험의 영역에 국한시킴으로써 증명이 불가능한 그 자신의 形而上學의 前提를 부정하는 自己破壞的 形而上學이라고 비판한다. 그리고 이것은 主觀性和 客觀性을 혼동하고 혼용하기 때문에 唯物論의 一貫性和 科學의 合理性이 파괴되는 일종의 自己欺瞞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唯物論이 능동적 理性의 존재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 자체 내에 내적 모순을 지닌 非合理主義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Sartre는 非實踐的 形而上學인 唯物論이 무너지더라도 革命的 實踐哲學인 마르크스주의는 하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본다. 그가 보기에 Marx의 認識理論의 핵심은 反影理論에 있지 않다. 오히려 認識과 實踐의 結合, 특히 認識과 인간의 勞動과의 結合에 있다. 이 때 勞動이란 인간이 對象世界와 관계하는 방식이며, 對象世界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또한 Sartre는 Proletariat야말로 행동 즉 세계를 변경시킬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사회적 계급이라고 주장한다. Proletariat는 자본주의적 착취의 희생물로서 현존 사회에 동화될 수 없는 존재이며, 그가 처한 현재의 상황을 넘어서려는 필연성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혁명가가

71) W. Dallmayr, 앞의 글 p.27 참조.

된다. 혁명적 행동은 상황을 넘어서는 행위이며, 이것은 自由를 뜻한다. 그는 이 점을 唯物論은 설명할 수 없으며, 이런 점에서 觀望이나 觀照 또는 反影과도 구별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Sartre는 眞理의 척도는 사회를 변경하려는 혁명가의 노력 가운데서 발견된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인간이 세계를 변경하는 가운데 세계를 알기 때문이다.

이러한 Sartre의 입장은 그가 미복 구체성을 강조하고 혁명가의 自由를 강조한 점에서 唯物論의 한계를 어느정도 넘어섰다고 하더라도 意識을 지나치게 강조한 주관주의적 성향을 지니고 있음에 틀림없다.

### 3. 主觀·客觀의 對立을 克服하려는 傾向

Sartre와 마찬가지로 Merleau-Ponty도 Husserl의 현상학적 방법을 순수한 認識理論으로부터 구체적인 生活世界와 實踐的인 社會 問題의 영역으로 확장하였다. 특히 그는 Husserl의 現象學에서 觀念論的으로 이해된 先驗的 主觀性을 Husserl의 미발표된 유고들을 연구하여 具體的인 知覺의 身體性(Leiblichkeit)으로 해석하면서 辯證法的 參與라는 자신의 입장을 발전시켜 나갔다. 72)

Merleau-Ponty에 의하면 지각은 인간들 사이의 공동세계뿐 아니라 지향적 대상의 세계에도 참여하는 것이다. 意味의 體驗은 순수한 意識作用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은 단순히 의식에 초월적인 事物 자체가 아니며, 가능한 經驗 즉 認識의 地平을 나타낸다. 즉 경험대상은 언제나 그것이 직접 주어진 측면을 넘어서서 그 이상의 것(Plus Ultra)을 지시한다. 결국 지각에는 內在와 超越이라는 Paradox가 있는 것이다. 즉 경험대상은 경험하는 자가 다가설 수 없는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경험의 內在性이며, 경험대상은 언제나 그것이 직접 드러내는 것 이상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경험의 超越性을 지닌다.

이러한 Merleau-Ponty의 분석은 存在가 認識에 우선한다는 점과 이 우선에 관한 불음을 새롭게 설정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커다

72) M. Merleau-Ponty, *Phenomenology of Perception* (trans. by C. Smith, Routledge & Kegan Paul, 1962) p. 40, 49, 71, 426 참조.



란 의의가 있다. 이러한 점은 Husserl 이 형식적 A priori 이외에 대상이 지닌 질료적 A priori 를 지향적으로 분석한 것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Merleau-Ponty 는 이러한 生活世界에 입각한 주장을 實踐的이고 政治的인 問題에로까지 확장시켜 마르크스 주의의 새로운 의미를 부각시킨 점은 우리가 논의한 주제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VI. 主體思想에 대한 現象學的 批判

主體思想의 이론적 토대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이다. 그리고 이 主體思想은 김일성이 권력투쟁의 무기로 사용하는 전략적 요청에 따라 그때 그때 지속적을 변천되는 과정을 겪었다. 따라서 하나의 思想體系로서의 일관성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모자이크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그 이론의 정당성이나 깊이도 마르크스 레닌주의에서부터 이탈되어가는 정도에 따라 더욱 박약해지는 모습을 띤다.

우리는 이미 勞動의 착취와 인간의 事物化라는 資本主義 體制의 人間性 疎外現象<sup>73)</sup>에 대해해서 Proletariat의 자유로운 自己形成의 길을 열고자 한 Marx의 사상과 辯證法的 唯物論을 동일시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이론들을 살펴 보았다.

共產主義의 歷史的 實驗은 사실상 失敗로 마감하였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共產主義 國家 역시 이러한 사실을 승인하고 民主化 開放化의 길을 밟을 것이다. 이데올로기 시대는 終末을 고한 것이다.<sup>74)</sup>

中國도 1976년 모택동 사망 이후 농업·공업·과학기술 및 국방의 현대화계획이 階級鬭爭보다 더 중요한 과업이며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색깔이 문제가 아니라, 쥐잡는 게 좋은 고양이’라는 實用主義 노선을 취하였다. 이것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에서 부패하고 무사안일에 빠진 官僚制를 쇄신하고 시장기구나 개인노동을 증대시키는 資本主義的 生産增進과 經濟發展을 통해 만성화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自求策이다. 北韓도 1984년 이후 서방으로부터 資本과 技術을 도입하려는 合營法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社會主義 노선을 修正하고 利子나 利潤方式을 채택하는 이러한 部分的 改革만으로는 問題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고, 오히려 低賃金과 生活苦, 生必品の 절대부족, 破産法 시행 등 共產主義에서는 理論上 발생할 수 없는 많은 모순들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중요한 점은 人間이 歷史와 社會의 發展에 主體라는 별로 새

73) 정분길, 『疎外論 研究』 (문학과 지성사, 1978) 제 2장 참조.

74) D. Bell, 『이데올로기의 종언』 (기우식 옮김, 삼성문화문고 vol.5)

로울 것도 없고 독창적이지도 않은 主體思想의 이론에 일정한 가치를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主體思想은 資本主義 體制 아래 民主主義의 價値를 추구해온 南韓과 統一 過程에 기여하거나 統一 後 民族共同體의 積極的 價値觀으로 정착될 수 있는 요소는 거의 없다. 意識 主體만 강조하는 것은 主觀的 觀念論이고 그것을 絶對化하는 것은 劃一主義와 排他的 國粹主義에 빠질 뿐이다. 歷史와 社會의 發展은 서로 타협하고 협력하며 國家들 간에도 상호의존적인 성격을 함께 지닌다.

이에 필자는 Husserl의 現象學이 人間 意識의 主觀性을 강조하면서도 主觀的 觀念論으로 떨어지지 않는 意識의 志向性 이론에서 그 代案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더욱이 그의 現象學은 實用主義와 現代 自然科學과 技術萬能 時代에 상실된 人間性을 回復할 수 있는 積極적 倫理 規範의 새로운 地平을 열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Husserl이 강조한 主觀性은 自己閉鎖的 唯我論的 自我가 아니라 구체적인 生活世界 속에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社會的 歷史的 相互 主觀性이다.<sup>75)</sup> 이것은 道具的 計算的 理性이 아니라 理論的·實踐的·價値 設定的 理性 一般<sup>76)</sup>이며, 드러난 표층의 술어적 판단의 인식뿐 아니라 심층의 술어적 판단 이전의 경험과 지각까지도 포괄하는 意識이다. 이 理性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바탕으로 主觀에 상대적인 生活世界에 관한 학문이 결코 相對主義的 懷疑主義에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學問과 人間性의 理念 즉 理想에 부단히 接近하려는 그의 엄밀한 학문으로서의 現象學은 思辯的 形而上學이 아니라 理性의 復權이자 진정한 自我의 發見인 것이다.

이러한 Husserl의 現象學은 人間을 事物化하고 정밀한 機械로 간주하는 唯物論이나 實證主義에 올바르게 대처하고 이러한 해독을 치유할 수 있는 文明批判의 역할을 수행한다. .

또한 Husserl의 現象學은 自然科學에 물든 現代人이 망각한 日常的 生活世界의 중요성을 환기시켜 주었다. 이것은 高度 産業社會에서 제기되고 있는 심각한 生態系의 破壞, 環境汚染 등 우리가 처한 시급한 問題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하나뿐인 地球 즉 自然 속의 人間의 삶이라

75) E. Husserl, *Die Krisis* p.175 참조.

76) E. Husserl, 같은 책 p.113, 329

는 잠정 態度를 제시해 준다.

그리고 Husserl 이 맹목적인 傳統과 믿음에 대한 判斷中止(Epoché)와 우리의 視線을 달리 향할 수 있는 態度變境(Einstellungsänderung) 즉 思惟實驗(Denkexperiment) 77)의 제시는 우리 社會에 행태해 있는 集團的 利己主義, 排他的 獨善과 極端的인 黑白論理로 점철된 勞使葛藤과 階層 간의 對立을 지양하고 和合과 調和를 통한 새로운 民主社會를 創造할 轉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Husserl 은 人間性의 심층에 도달하는 이러한 判斷中止를 통해 人間性 전체를 근본적으로 변경할 가능성을 찾으며, 이것을 宗教的 改宗으로까지 비유한다. 78) 그만큼 이 작업은 중요하면서도 신중한 자세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77) 이영호, 『후설』 (고려대 출판부, 1990) p.6 참조.

78) E. Husserl, *Die Krisis* p.154.

## VII. 結 論

우리 社會에서 이제까지 主體思想에 대한 批判은 주로 김일성 개인을 偶像化하고 神格化하는 體制 이데올로기에 대한 虛構性을 지적하고 共產主義 도미노 현상에 대한 방어적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共產主義의 歷史的 實驗은 實際 歷史上 失敗하였으며, 실질적인 冷戰時代가 끝나고 南北韓 U N 同時加入으로 民族의 僥원인 統一이 곧 다가올 시대를 맞이하였다. 따라서 主體思想도 이러한 統一의 觀點에서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까지 主體思想을 다루어 온 視角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더 확장되어야만 한다. 그것은 統一된 祖國의 僥원들 가운데는 이러한 主體思想으로 오랫동안 주입된 北韓 同胞가 存在함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이들을 理解하고 이들과 融合하여 진정한 民族統一과 民主國家 發展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고도 치밀한 준비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統一 獨逸에서 볼 수 있듯이 國土와 體制, 制度의 統一 못지않게 思想과 價値觀의 統一이 필수적이며 어떤 측면에서는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다.

主體思想의 뿌리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있다. 그러나 우리는 Marx의 사상과 이데올로기로 변신한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구별해야 한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現代 哲學은 敎條化된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Marx의 이론을 다양하고도 그 나름대로의 충분한 근거를 갖고 批判하고 있다. Marx의 이론 속에는 단순히 共產主義 敎理를 선동하는 것만이 아니라 資本主義 社會制度의 構造的 矛盾을 改革함으로서 搾取받고 抑壓받는 勞動階級の 利益을 옹호하고 가난으로부터 人間을 解放시키려는 휴머니즘적 요소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의 統一된 祖國이 추구해야 할 목표는 自由 民主主義이며 이것은 尖端 技術社會와 國際競爭 및 協力時代에 능률적이고도 적극적인으로 대처하기 위해 그리고 共產主義의 失敗가 가르쳐 준 敎訓에 의해서 資本主義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러한 資本主義의 긍정적 측면 이외에 부정적 측면을 직시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보완을 마련

하는 데 Marx의 이론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主體思想은 歷史와 社會 發展에 人間의 主體的 역할을 강조한다. 이러한 주장은 우리 나라의 특수한 地政學的 歷史的 環境에서 볼 때 당연하고도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것도 독창적인 것도 아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主體思想을 전면적으로 무시할 필요는 없다. 문제는 그것이 보편타당한 思想의 理論的 性格보다는 특정한 개인의 권력유지의 장치로 전락된 사실에 있다. 더욱이 특별하게 강조하고 싶은 점은 그것이 平和的 民族統一에 기여할 수 있는 힘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편협된 孤立主義와 國粹主義를 자초할 뿐이다. 歷史의 發展은 각 文化와 社會, 國家 사이의 相互 協力과 和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Husserl의 現象學은 意識 主體를 강조하면서도 主觀的 觀念論에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生活世界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高度의 産業社會에 文明批判의 역할뿐 아니라 態度變更을 통한 人格的 關係를 드러내 밝히 統一時代에 걸맞는 倫理的 規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 參 考 文 獻

### ▲ 단행본

- Aron, R. 『마르크스 주의와 실존주의자들』 (이택휘 옮김, 한빛, 1982)
- Bell, D. 『이데올로기의 終焉』 (기우식 옮김, 삼성문화문고, Vol. 5.)
- Brand, G. *Die Lebenswelt I*, Walter de Gruyter, Berlin(1971)
- Capra, F. *The Tao Of Physics* (『현대 물리학과 동양사상』 이성범·김용정 옮김, 범양사, 1979)
- Carr, D. *Phenomenology and the Problem of History*, Northwestern Uni. (1974)
- Diemer, A. *Edmund Husserl*, Meisenheim am Glan(1965)
- Fink, E. *Studien zur Phanomenologie 1930-1939*, Martinus Nijhoff, Den Haag(1966)
- Gadamer, H.G. *Wahrheit und Methode*, J. C. B. Mohr, Tübingen(1972)
- Gier, N. *Wittgenstein and Phenomenology*, New York St. Uni. (1981)
- Harvey, C. *Husserl's Phenomenology and the Foundation of Natural Science*, Ohio Uni. (1989)
- Hegel, G. W. F. *Phanomenologie des Geist* (Felix Meiner, Hamburg, 1952)
- Heisenberg, W. *Physics and Philosophy* (Harper Torchbook, 1958)
- Held, K. *Die phanomenologische Methode*, (Philipp Reclam Jun, Stuttgart, 1985)
- *Phanomenologie der Lebenswelt*, (Philipp Reclam Jun, Stuttgart, 1986)
- Husserl, E. *Philosophie als strenge Wissenschaft* (Vittorio Klostermann, Frankfurt am Main, 1965)
- *Ideen zu einer reinen Phanomenologie und phanomenologische Philosophie I* (den Haag, 1976)
- *Die Krisis der europäischen Wissenschaft und die Transzendente Phanomenologie* (den Haag, 1976)
- *Erfahrung und Urteil* (Felix Meiner, Hamburg, 1972)
- Illin, M. 『인간의 역사』 (동 완 옮김, 연구사, 1987)
- Landgrebe, L. *Philosophie der Gegenwart*, Ulstein, Berlin(1957)
- Lauer, Q. *Phenomenology: Its Genesis and Prospect*, Harper & Row(1965)
- Lenin, N. *Materialism and Empirico-Criticism*
- Lukasc, G. *Geschichte und Klassenbewusstsein* (Luchterhand, Neuwied & Berlin, 1968)
- Manheim, K. *Ideology and Utopia* (Harcourt Brace & World, N. Y.)
- Marx, K. *Das Kapital* (Dietz Verlag, Berlin, 1957)
- *A Contribution to the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London, N. Y. 1970)
- *Grundrisse* (Macmillan, N. Y. 1971)
- Marx, K & Engels, F. *The German Ideology* (Lawrence & Wishart, London, 1970)

- Merleau-Ponty, M. *Phenomenology of Perception*, (trans. by C. Smith) Routledge & Kegan Paul (1962)  
 --- *Adventures of the Dialectic* (trans. by J. Bien, Northwestern Univ. 1973)
- Popper, K. *The Open Society and its Enemies* (Princeton Univ. Press, 1971) vol. 1.  
 --- *Conjecture and Refutation* (London, 1963)
- Putnam, H. *Many Faces of Realism* (Open Court, Illinois, 1987)
- Ricoeur, P. *Husserl: An Analysis of his Phenomenology*, Northwestern Uni. (1967)
- Sartre, J.P. *The Transcendence of the Ego*, (trans. by F. Williams and R. Kirkpatrick) The Noonday Press, New York (1977)
- Schneider, H. 『노동의 歷史』 (한정숙 옮김, 한길사, 1982)
- Schutz, A. *Collected Papers III: Studies in Phenomenological Philosophy*, Martinus Nijhoff, The Hague (1970)
- Smart, B. *Sciology, Phenomenology and Marxism Analysis* (Routledge & Kegan Paul, 1976)
- Spiegelberg, H. *The Phenomenological Movement*, vol. 1, 2. Martinus Nijhoff The Hague (1960)
- Tran Duc Thao. *Phenomenology and dialectical Materialism*, (trans. by D. J. Hermann and D. V. Morano) D. Reidel, Dordrecht (1986)
- Tucker, R. 『칼 마르크스의 哲學과 神話』 (김학준·한명화 옮김, 한길사, 1982)
- van Peursen, C. A. *Phänomenologie und analytische Philosophie*, W. Kohlhammer Stuttgart (1969)
- Waldenfels, B. *In den Netzen der Lebenswelt*, Suhrkamp, Frankfurt a. M. (1985)
- 김일성, 『김일성 저작선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78) vol. 7.
- 김학준, 『러시아 革命史』 (문학과 지성사, 1979)
- 동아일보사 편, 『原資料로 본 北韓 1945—1988』 (“신동아” 1989년 1월호 부록)
- 신일철, 『북한 주체철학의 비판적 분석』 (사회발전연구소, 1987)
- 이영호 편, 『후설』 (고려대 출판부, 1990)
- 이용필, 『共產主義 이데올로기』 (화학사, 1984)
- 정문길, 『疎外論 研究』 (문학과 지성사, 1978)
- 최길성, 『社會科學講義』 (1965, 북한, 統一院 資料)

#### ▲ 논문

- Biemel, W. “Reflexionen zur Lebenswelt-thematik” in *Phänomenologie Heute* (hrsg. W. Biemel, Martinus Nijhoff, Den Haag, 1972)
- Bossert, P. “A common Misunderstanding concerning Husserl’s *Crisis* Text” in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vol. 35 (1974)
- Dallmayr, W. “Phänomenologie und Marxismus in geschichtlicher Perspektive” in *Phänomenologie und Marxismus* (Suhrkamp, 1977)



- Funke, G. "Kritik der Vernunft und ethische Phänomenon" in *Neuere Entwicklungen des Phänomenbegriffs* (Karl Alber, Freiburg, 1980)
- Landgrebe, L. "Das Problem der Teleologie und der Leiblichkeit in der Phänomenologie und im Marxismus" in *Phänomenologie und Marxism*
- Lukasc, G. "Alte Kultur und Neue Kultur" in *Taktik und Ethik, Politische Aufsatz I* (Luchterhand, Darmstadt & Neuwied, 1975)
- Pazanin, A. "Überwindung des Gegensatzes von Idealismus und Materialismus bei Husserl und Marx" in *Phänomenologie und Marxism*
- Piccone, P. "Reading the Crisis" in *Telos* (1971)  
 -- "Phenomenological Marxism" in *Telos* (1972)
- Schutz, A. "Concept and Theory Formation in the social Science" in *Collected Papers II: The Problem of social Reality* (Martinus Nijhoff, The Hague, 1973)
- Vajda, M. "Die Kritik der Tatsachenwissenschaften bei Lucasc und Husserl" in *Phänomenologie und Marxism*
- 김홍우, "현상학적 마르크스 주의"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서울대 인문과학연구소, 제 5권 vol.2, 1983)
- 양호민, "정치: 진제주의 1인독제체제의 확립" (『북한 40년』 을류문화사, 1989)
- 이상우, "김일성체제의 특질" (『북한 40년』 을류문화사, 1989)

## ◆ 北韓의 地方行政體制에 관한 研究

김영미(韓國外大)

### 〈 要 約 文 〉

북한은 1948년 정권출범 이전부터 현재까지 김일성 一人長期執權이 계속되어 왔으며 이는 다시 김일성-김정일父子 世襲制라는 또 하나의 변형을 낳으면서 유례없는 全體主義 獨裁體制를 구축하고 있다.

북한의 통치구조를 보면 형식상 主權機關인 최고인민회의, 지방인민회의가 있고, 사법권의 管掌機關인 각급 재판소, 검찰소가 있으며 실질적인 指導執行機關인 정무원 및 각급 인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은 7次에 걸친 내각의 변천을 통해 1972년 12월 사회주의 헌법을 채택하였고 김일성은 主席·중앙인민위원회 首位로서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정무원 역시 주석의 통제하에 단순한 행정적 집행권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앙인민위원회를 통한 朝鮮勞動黨의 행정통제가 더욱 더 강화되었다. 이러한 官制 통치 이념과 초법적인 체제로 인해서 그 폐쇄성이 고도로 경직화되어 있는 북한의 행정체제의 구조와 기능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비교해 볼 때 많은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北韓의 地方行政의 범주 역시 일련의 행정과정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조작된 김일성부자의 이미지를 전파, 세뇌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하겠다.

북한의 행정체제는 중앙행정체계인 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과 지방행정체계인 지방인민위원회, 지방경제지도위원회 및 특수지방행정기관으로 구분되며 이는 노동당의 지시 통제에 의해 독자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體制論的인 관점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북한의 행정체제를 비교해 보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투입 → 전환 → 산출의 환류과정을 통한 정책의 결정 및 집행이 이루어지는 반면 북한은 투입(input)에 해당되는 요소들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지 못하다. 政黨의 경우 정당의 역할이 조직화되지 않은 일반선거민과 정부를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선거민의 이익을 정책에 투입시키는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데 북한의 정당과 관료들은 일인지도체제를 확고히 하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노동당은 헌법상의 지위를 보장받고 있어 일반주민의 투입기능은 완전히 배제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익집단의 역할 또한 정치적 의사를 대중에게 침투시키기 위한 수단적 존재로서 기능을 하고 있어 투입기능의 역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정책결정에 관하여는 기관은 당대회와 당중앙위원회 등이 형식적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주석이 실질적인 권한행사를 하고 있다.

산출(output)에 있어서도 김일성 일인독재체제유지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다양한 이익의 조직화가 미흡한 상태이다. 결국 모든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 입법기관, 언론기관은 黨의 지시에 따르게 되며 黨의 감독하에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 의한 환류과정(feedback) 또한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북한에 있어 지방행정을 위시한 북한행정의 각 분야는 비록 專門性은 지녔으며 실질적으로는 黨의 방침과 黨의 최고지도층의 의사를 전달하고 집행하는 단순한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다 할 수 있다. 즉 북한의 경우는 開放體制(open system)의 투입 → 전환 → 산출과정이 배제된 閉鎖體制(closed system)로서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의 관료조직은 중앙에 집중화된 체제로서 중앙과 지방의 권한이 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구조, 기능이 單一體系로 일원화되어 있는 폐쇄체제의 극단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지방행정의 경우도 자율성이 배제된 상태에서 중앙의 지시에 따라 지방행정의 수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할 때 체제전반에 걸친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북한의 지방행정의 효율성이나 住民福祉차원의 행정업무는 수행되기 어려울 것이다.

## I. 序 論

### 1. 研究의 目的

南北韓은 각기 정부를 세우고 두개의 정치체제를 운영해 온지 40여년이 지나도록 상호교류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상이한 두개의 政治體制를 구축해 왔다.

북한은 1948년 정권출범 이전부터 현재까지 김일성 일인장기집권이 계속되어 왔는데 이는 다시 김일성-김정일父子세습체제라는 또 하나의 변형을 낳으면서 유례없는 전체주의 독재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官制 統治理念과 초법적인 체제로 인해서 그 폐쇄성이 고도로 경직화되어 있는 북한의 행정체제의 구조와 기능은 자유민주주의의 체제와 비교해 볼 때 그 특성 면에서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복지사회 및 자유민주사회를 추구하는 국가에서의 행정이 주민에 대한 서비스공급의 증대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 비해 공산주의사회의 행정은 공산사회건설의 전술적 개념, 즉 공산당에 주민을 귀속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지방행정의 범주 역시 일련의 행정과정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조작된 김일성부자의 이미지를 전파, 세뇌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하겠다.

북한의 지방행정은 제도상으로는 지방자치제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철저한 중앙집권적인 유일적 지도체로서 중앙의 지시와 결정을 무조건적으로 실천하는 임무와 의무만이 부여되고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북한체제의 전체적인 구조속에서의 지방행정의 역할 및 그 위치를 규명하고, 지방행정기관의 구조적, 기능적 분석을 통해 그 특징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 2. 研究의 範圍 및 方法

본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행정체제 분석을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서, 체제이론(system theory)을 통치체제의 유형과 관련시켜 볼 때 자유민주주의는 개방체제이며 공산주의사회는 폐쇄체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자유민주주의체제는 권력의 多元化와 환경의 요구를 정책화시키고 이의 전환과정에 있어 정부 또한 통제와 지원을 받는 반면 공산주의 사회체제는 결정체제로서 당이 환경을 관리하고 통제한다는 점을 토대로 그 특징 및 차이점을 도출해낸다.

둘째, 이와 같은 체제상의 특성을 도출하여 북한의 정치체제 및 행정체제의 성격을 구조적, 기능적 측면에서 규명해 본다. 즉 노동당을 중심으로 권력이 집중되는 상황하에서 행정기관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게 된다.

셋째, 북한의 행정구조는 중앙행정구조와 지방행정구조로 大分하여 볼 수 있는데 중앙행정은 물론 지방행정 역시 정치성이 충만한 일당행정으로서 이들 기관이 갖는 기능 역시 자유민주주의체제와 비교해 볼 때 기능상의 차이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지방행정의 조직체제 및 구조, 기능적 측면에서의 역할을 중점으로 살펴본다.

넷째, 북한의 일인지배체제하에서의 지방행정조직이 수행하는 업무 및 다른 조직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지방행정조직의 존재가치와 역할을 살펴보고 자유민주주의체제와의 비교를 통하여 현 상황을 진단해 본다.

본 연구의 방법으로는 첫째, 북한의 지방행정체제의 이론모형은 기존의 논문, 학술지, 저술 등의 문헌을 참고하고, 둘째, 북한의 행정체제연구는 그 성격상 현지조사방법이 불가능하므로 북한의 지방행정과 관련된 문헌자료를 지방행정연구원 자료실 및 통일원 등의 관계기관에서 자료를 모집하여 분석, 검토하는 문헌적 접근방법에 의한 記述的 研究를 중심으로 한다.

## II. 行政體制分析을 위한 理論的 背景

일반적으로 행정체제와 관료제를 설명하는 Paradigm으로서 주로 베버(M. Weber)의 이론이 많이 연구 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이에 대신하여 體制理論(system theory)과 狀況條件理論(contingency theory) 등이 등장하여 政治·行政體制나 대규모조직으로서의 官僚制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지배적인 개념과 이론으로 인식되고 있다.<sup>1)</sup>

### 1. 베버의 官僚制

베버(M. Weber)의 관료제가 지니고 있는 특징을 요약해 보면, 먼저 대규모의 조직의 업무가 효과적으로 성취되려면 專門化된 職務로 분할되어야 하며, 이에 는 자격을 가진 직업적 전문가가 임명되어야 한다. 전문화를 통한 分業化는 조직내에서 조정의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는데 이때 특수한 행정계층이 의사소통과 조정을 유지하는데 필요하게 되며, 엄격한 권위를 지닌 계층제가 조직의 목표성취를 위한 다양한 업무의 조정의 역할을 하게된다. 따라서 작업활동을 표준화하고 직접적이고 세부적인 감독의 비능률성을 줄이기 위해 공식적인 규정체제가 고안되고 있다.<sup>2)</sup>

Weber의 관료제는 철저히 합리적인 조직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 급격한 변화, 조직규모의 팽창, 고도의 다양성 및 관리행태의 변화를 설명해 주기에는 적합한 조직이 아니라는 것이다.<sup>3)</sup>

따라서 관료제로서 모든 조직의 상황을 설명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측

1) 안해균, 「현대 행정학」(서울:다산출판사, 1987), pp. 298-303.

2) 백완기, 「행정학」(서울: 박영사, 1985), pp. 79-98.

3) Warreng. Bennis, "Beyond Bureaucracy," W.G. Bennis & P.E. Slater (eds.) *The Temporary Society*(Harper & Raw, 1968), pp. 55-60.

면에서 체제접근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이 이론은 體制(system)의 개념을 기초로 하는 이론바 철학, 관리방식, 분석방법을 총칭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sup>4)</sup>

## 2. 體制의 意義 및 接近方法

Herbert G. Hicks 에 의하면 “체제란 상호관련되고, 상호의존적이며, 상호작용하는 요소들의 한 집합이다. 그것도 有機的이고 복잡한 전체이며, 단일의 전체를 형성하는 사물의 한 결합이다.”<sup>5)</sup>라고 규정하고 있다.

Claude Mcmillan 과 Richard F. Gonzalez은 “체제란 대상간에 그리고 그 대상의 속성간에 함께 관계를 갖는 대상의 집합<sup>6)</sup>이라고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정의는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공동사회 (Community)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상호작용·상호의존단위(가족, 정부, 학교, 교회등)로 구성된 체제이며, 국가정책전체를 전체체제(total system)로 생각하면, 국방·외교·교육정책등은 그 하위체제(Sub-system)이며, 또한 경제개발을 체제(sysyem)로 본다면 산업개발·자원개발 등의 정책은 그 하위체제를 구성하게 된다.<sup>7)</sup>

統治現象의 과학적인 이해에 주도적 역할을 관망해 왔던 체제이론을 David Easton과 Gabriel A. Almond의 이론을 중심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David Easton 은 통치현상에 관한 과학적이고 일반적인 이해를 위해서

- 
- 4) 박완신, “북한의 지방행정체제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한국행정학회 제25권 제1호, 1991.5. p.342.
  - 5) Herbert G. Hicks, *The Management of Organization: A Systems and Human Resources Approach* (New York: McGraw-Hill, 1972), p.461.
  - 6) Claude McMillan and Richard F. Gonzalez, *Systems Analysis: A Computer Approach to Decision Making Models* (Illinois: Homewood, Richard D. Irwin, 1968); 윤재풍, “체제접근방법론과 체제분석기법”, 『사회과학논총』, 전남대 사회과학연구소, 제1집 1976, p.218에서 재인용.
  - 7) 윤재풍, 위의 논문, pp.217-2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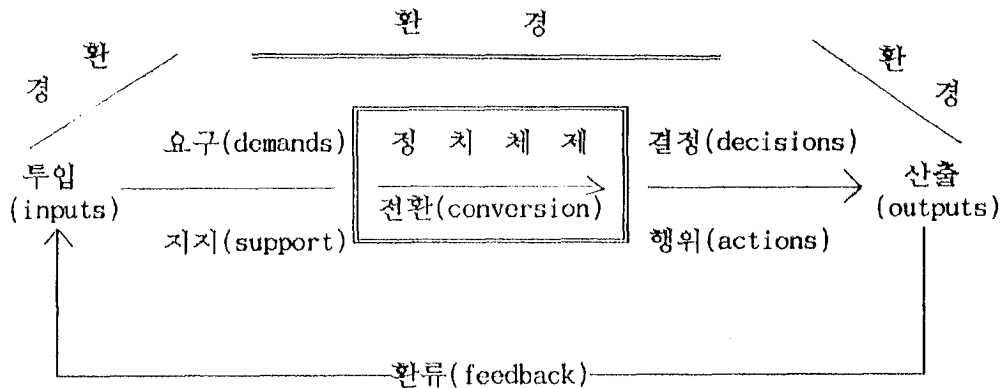
는 靜的인 法律과 制度보다는 動態的인 過程에 초점을 두어야 된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state)라는 비동태적이며 추상적인 개념을 政治行爲 (Political action)를 기본적 구성단위로 하는 정치체제(Political system)라는 동태적 개념으로 대치하였다.<sup>8)</sup>

이스튼은 정치체제란 『사회를 위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authoriative allocation of values for a society)을 둘러싸고 있는 상호 관련된 행위들의 집합으로 보고, 이를 다른 체제와 구별되고 경계(boundary)가 지워져 하나의 유기체적 독립을 이루는 것으로 개념화하였다.<sup>9)</sup>

D. Easton에 의해 제시된 체제모형을 보면 정치체제와 환경간의 관계를 잘 나타내고 있다.

아래의 표<II-1>을 보면 정치체제는 투입(inputs), 산출(outputs), 환류(feedback)를 통해 환경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표II-1> Easton의 정치체제모형



자료: David Easton, A Framework for Political Analysi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5), P.112.

8) G.A. Almond, "Introduction: A Function Approach to Comparative Politics," in Gabriel A. Almond & J.S. Coleman(eds.) *The Politics of Developing Areas*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60), p. 4.

9) D. Easton, *The Political System* (New York: Alfred A. Knopf, 1953), p. 130.



여기서 환경은 社會內的環境(intra-societal environment), 社會外的環境(extra-societal environment)으로 구성되는데, 사회내적 환경은 생태적·생물학적·심리적 하위체제들과 문화·경제·인구등의 사회적 체제들로서 정치체제가 하위체제로서 속하고 있는 사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들을 의미한다.

사회외적 환경은 정치체제가 속해 있는 사회 밖의 환경으로서 국제정치체제, 국제생태체제들과 국제적 차원에서의 경제·문화·인구등을 포함하는 국제사회적체제들로 구성되고 있다.

정치체제는 이러한 환경들간에 둘러싸여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환경으로부터 要求(demand)나 支持(support)형태의 投入(inputs)이 있게 된다. 정치체제는 환경 또는 자체내에서 이입되는 투입으로 인해 불균형과 긴장의 상태에 놓이게 되며, 그 유기체적 존속을 위해 전환과정(conversion process)을 통해 이러한 긴장과 불균형에 반응하게 된다. 따라서 결정(decision)과 행위(actions)라는 산출(outputs)로 나타나게 되며, 이는 체제 구성내 및 다른 체제를 자극하여 새로운 요구 또는 지지가 정치체제에 환류되어 투입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sup>10)</sup>

Gabriel A. Almond는 정치체제의 특성을 설명하는 기능론을 제시하고 있는데, 먼저 투입과정에서 정치사회화 및 充員(Political Socialization and recruitment), 利益의 表出(interest articulation), 이익의 결집(interest aggregation), 정치적 커뮤니케이션(political communication)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고 있다. 산출과정, 규칙제정(rule making), 규칙적용(rule application) 및 규칙심판(rule adjudication)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들 기능은 각각 입법·행정·사법의 기능을 의미한다.<sup>1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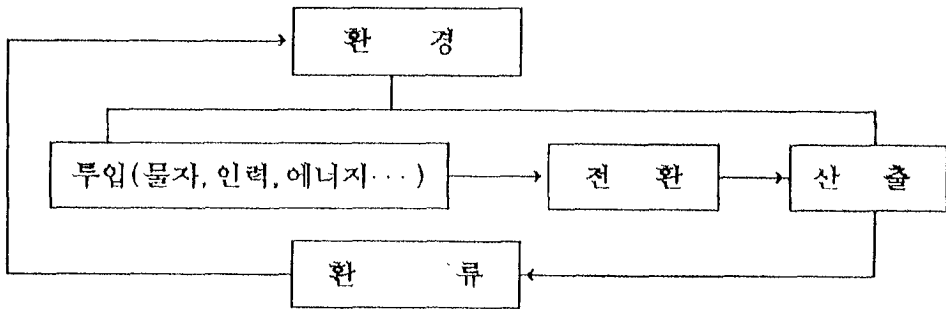
10) D. Easton, *A Framework for Political Analysis*(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5), pp112-115.

11) G. A. Almond & G. B. Powell, Jr., *Comparative Politics: system, Process Policy* (Boston, Mass.: Cittle, Brown & Company, 1978), p. 10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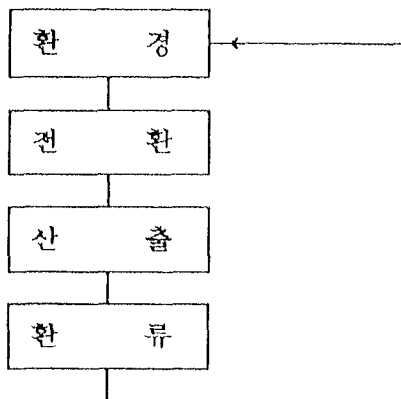
D. Easton과 Almond가 제시한 체제이론의 경우 정치체제를 하나의 유기체적 전체로 파악하고 있기때문에 분석의 단위는 전체로서의 정치체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체제는 환경과의 관계성여부에 따라서 개방체제(open system)와 폐쇄체제이론으로 유형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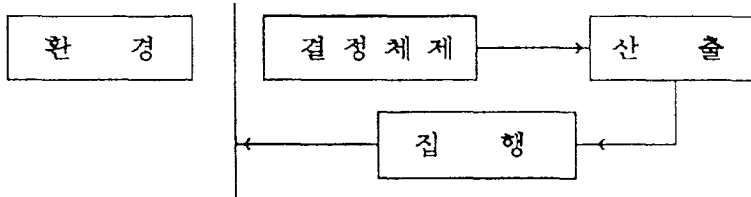
개방체제는 환경과의 관계에 있어서 개방적일뿐만 아니라, 체제내부의 구성요소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다. 즉 외부환경과의 동태적 관계를 유지하며, 환경으로부터 물자·인력·에너지 및 정보투입물을 받아들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그 투입물을 서어비스나 산물로 변형(transformation)하여 산출하는 것이다. Easton의 모형을 간략하게 도식화해보면 다음과 같다.



그러나 閉鎖體制(closed system)는 自給自足的(self-contained)이며 환경으로부터 고립된 것을 의미한다. 폐쇄체제에서는 환경변수로부터 투입변수와의 상호작용없이 전환, 산출, 환류의 과정만을 거치게 된다.



박완신은 폐쇄체제의 모형에서 전환과정을 결정체제로, 환류과정을 집행으로 대체하여 다음과 같은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환경은 결정체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결정체제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만 하는 피동적인 객체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제시하며 이것이 개방체제와 다른점이라고 보고 있다.

체제의 문제는 외적환경과 관계없이 조직 체제내부의 구조·과업 및 공식적 관계의 측면에서만 고려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결국 어떠한 체제를 막론하고 정도상의 차이는 있으나 그들이 환경과 상호작용하지 않는 것은 없다고 봄으로서 최근에는 개방체제이론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체제이론을 통치체제의 유형과 관련시켜, 자유민주주의체제는 개방체제로, 공산주의체제는 폐쇄체제로 유형화 시켜볼 수 있다. 즉 자유민주주의체제하에서는 투입과정의 합리적인 절차와 권력의 다원화 및 환경의 요구를 정책으로 수용하고 환경에 의한 전환과정에서 정부가 통제와 지원을 받는 반면 공산주의체제의 경우는 당이 환경을 관리하고 통제함으로써 투입과 산출의 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 Ⅲ. 北韓의 政治·行政體制

#### 1. 政治體制的 構造와 機能

오늘날 소련과 東歐를 中心으로 공산권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개혁·개방의 물결을 본질적으로 거부하는 북한의 정치체제는 기존의 공산주의이론만으로는 설명하기가 부적합하다.

북한의 현행 헌법(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1972년 12월 27일) 제1장 제4조에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노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정치체제를 전문가들은 김일성 「神政體制」라고도 하는데, 북한은 전통적인 사회주의이념을 기초로 하면서 특유의 主體思想을 도입한 조선노동당의 지도하에 국가의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정치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통치이념인 주체사상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사회주의 혁명과 주체철학을 중심으로 인민대중을 지도하는 노동계급의 당인 조선노동당의 지위와 역할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 (1) 統治理念과 思想體系

북한은 1945년 해방과 더불어 소련군에 의해 점령되었고, 1948년에는 공산주의 정치체제가 수립되었다. 1956년 4월 제3차 당 대회에서 “조선노동당은 맑스-레닌주의 하설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라고 규정하여 공식적인 정치지도이념은 마르크스-레닌주의였다. 그러나 오늘날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마르크스-레닌 사상보다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최소의 정치이념으로 승격시켰다.

북한의 정치체제는 다른 공산주의 체제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마르크

스-레닌주의의 이데올로기적 원칙에서 연유된 계급없는 공산주의 사회의 추구에 있지만, 전이문화로서 주체사상, 특히 유일사상과 수령론의 강조에 더 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체사상은 당과 국가의 모든 분야에서 정치과정과 정책결정의 준거의 틀이 되고 있으며 북한대중의 행동과 사고방식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김일성이 당의 이데올로기에서 처음으로 주체를 제시한 것은 스탈린 死後인 1955년 말로써, 한국동란이 종결된 후에 대내적으로는 그의 절대권력구조를 확고하게 구축함과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중·소간의 이데올로기 분쟁의 와중에서 희생되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제기되었다.

김일성의 주체사상은 북한의 주민을 사상적으로 획일화하는 동시에 정치적으로 조직화하여 사회주의 건설과 군사력강화에 총동원하는 「黨의 唯一支配體制」를 확립시켜 놓았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당의 유일지배체제에 일치하지 않는 어떤 사상적 요소도 존재할 수 없게 되었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주체사상을 독창적 이데올로기로서 북한 공산주의 혁명 사상 전략 및 전술의 토대가 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에 기초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sup>12)</sup>

“인민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의 원리를 밝히고 있는데, 인간의 사회역사적 본질적 특성을 ① 자주성 ② 창조성 ③ 의식성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역사의 주체는 인민대중으로서 이 인민대중의 자주적, 창조적운동이 사회적 역사운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혁명투쟁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 사상의

12) 『주체사상이 기초하고 있는 철학적 원리』 (동경, 사회과학출판사, 1977), p.6.; 이용필, “주체사상과 그 기능,” 『북한의 정치』 (서울:울유문화사, 1990), p.106에서 재인용.

식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보며 여기에는 반드시 인민대중과 수령의 지도가 결합되어야 한다는 수령론의 의미를 포함시키고 있다.

이어서 주체사상은 당, 국가활동,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성을 견지하여 주체를 세우기 위한 기본방향으로서 ①사상에서의 주체 ②정치에서의 자주 ③경제에서의 자립 ④국방에서의 자위를 제기하고 있다.

주체사상은 김일성에 의해서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에 이르는 기간동안에 대내외 정치세력의 변화속에서 북한 공산주의의 지배 수단으로서 활용되었으며 또한 하나의 사상체계로 주장되어 왔다. 그러나 주체사상의 주체는 유일사상과 수령론으로 일관되어, 이는 김일성 자신이 절대권력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제기되었다고 볼 수 있다.

## (2) 權力構造와 世襲體制

북한의 모든 권력의 원천은 수령인 김일성을 정점으로 하고 있다. 헌법상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최고인민회의가 입법권을 행사하고 주석을 선거하는 최고 주권기관으로 되어 있지만 이는 형식상 기구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1980년 10월 13일 개정된 ‘조선노동당’의 지도밑에, ‘조선노동당’을 김일성의 지도밑에서 활동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김일성은 ‘조선노동당’의 총비서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국가주석을 겸임함으로써 전면적인 1인독재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 ① 朝鮮勞動黨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에서 개정 채택한 당규약에 의하면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主體思想化와 共產主義社會를 건설하는 데 있다」고 밝히고 있어 김일성 주체사상이 당의 지도이념임을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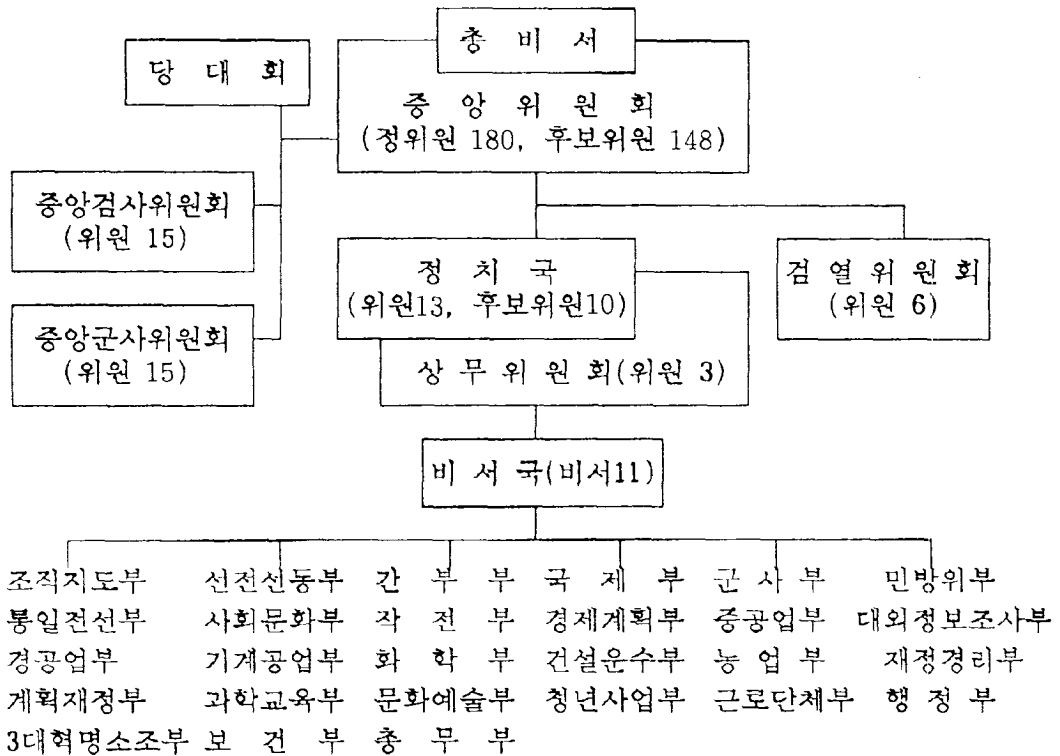
이같은 초헌법적 지배체제로서의 당의 체제내면을 보면, 당은 극히 소수의 인원에 의해 독재되고 있는데 총비서, 정치국 상무위원, 정치국 正委

員, 政治局 候補委員, 및 당 비서진이 모든 실권을 장악하고 있다.

당규약에 의하면 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를 망라하는 근로인민 가운데 선봉적투사로 '조선노동당'을 조직하며, 모든 당조직은 당중앙위원회에 절대복종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정치적 주요결정은 정치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치국안에서의 최고 실력자로 구성된 政治局 常務委員會에서 결정이 된다. 특히 1980년 6차 당대회에서 당시 김일성, 김일, 오진우, 이종욱, 김정일등 5인으로 구성된 정치국상무위원회를 보면, 김일의 사망 및 이종욱의 탈락으로 5인체제에서 김일성, 김정일, 오진우로 축소되었는데 이는 김일성, 김정일 공산세습체제가 제도적으로 구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노동당의 체제는 <표III-1>과 같다.

<표 III-1> 조선노동당 기구

(1991년 9월 현재)



## 2. 行政體制의 構造와 機能

국가의 행정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관료제는 정치체제의 하위체제라 할 수 있는데, 정치체제가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면 정부관료제도 민주주의와 양립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배버가 지적하듯이 관료제조직은 합법적인 정부를 위하여 기능을 발휘 휘하기도 하지만, 이는 성공적인 혁명의 도구가 되기도 하며, 점령군이나 독재자의 하수인이 될 수도 있다.<sup>13)</sup>

관료제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그 개념이 정의되고 있는데, Weber의 관료제에 대한 이론은 合理的인 시각에서 大規模組織을 보고 있다. 즉 계층제의 형태를 지니고 合理的·合法的 (rational-legal) 지배가 제도화되어 있는 대규모조직을 의미한다.<sup>14)</sup>

한편 리그스(F. W. Riggs)는 이를 構造的인 측면과 機能的인 측면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즉 리그스는 구조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으로 관료제를 구분하여, 구조적 측면에서는 ① 普遍性 (universality) ② 階層制 (hierarchy) 및 의사결정의 중심 (center of decision making) 을, 기능적 측면에서는 ① 合理性 ② 病態性 ③ 權力性을 지니고 있다<sup>15)</sup>고 보고 있다.

반면 Marx 와 Schumpeter 를 비롯한 많은 사회과학자들은 社會가 階級에 의해서 계층지워진 것으로 인식하였고,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경제·정

13) M. Rheinstein, *Max Weber on law in economy and Society* (New York: Simon & Schuster, 1967); recited from V. Ostrom, *The intellectual crisis in American Public Administration* (University, Alabama: University of Alabama Press, 1974), p. 31.

14) F. Heady, *Public Administration: A Comparative Perspective* (New Jersey: Prentice-hall, 1966), pp. 18-19.

15) F. W. Riggs, "Bureaucratic Politics in comparative perspective"; in F. W. Riggs (ed.), *Frontiers of Development Administration* (Durham, N. C.: Duke University Press, 1971), pp. 376-383.



치체제 및 사회변동 등을 설명하였다. Marxist들의 관점을 보면 국가는 지배계급의 도구로서, 관료제 역시 계급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보고 있기 때문에 관료제의 역할은 결국 공산주의사회로 전환이 되면 그 역할이 사라진다고 보았다. 결국 관료제는 하나의 계급적 도구로서 계급없는 사회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김일성은 이러한 Marxist들의 국가관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데, 즉 국가를 독재기능 수행의 권력기관, 지배계급의 도구로 보고 있다. 따라서 관료조직 자체가 계급적인 폭압기구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부정하고 관료주의의 배격을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체제의 관료제화 현상은 더욱 더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북한관료제화의 심화현상속에서 나타나는 북한의 행정체제를 구조적 측면에서 고찰해보면 다음과 같다.

#### (1) 行政體制的 構造的 側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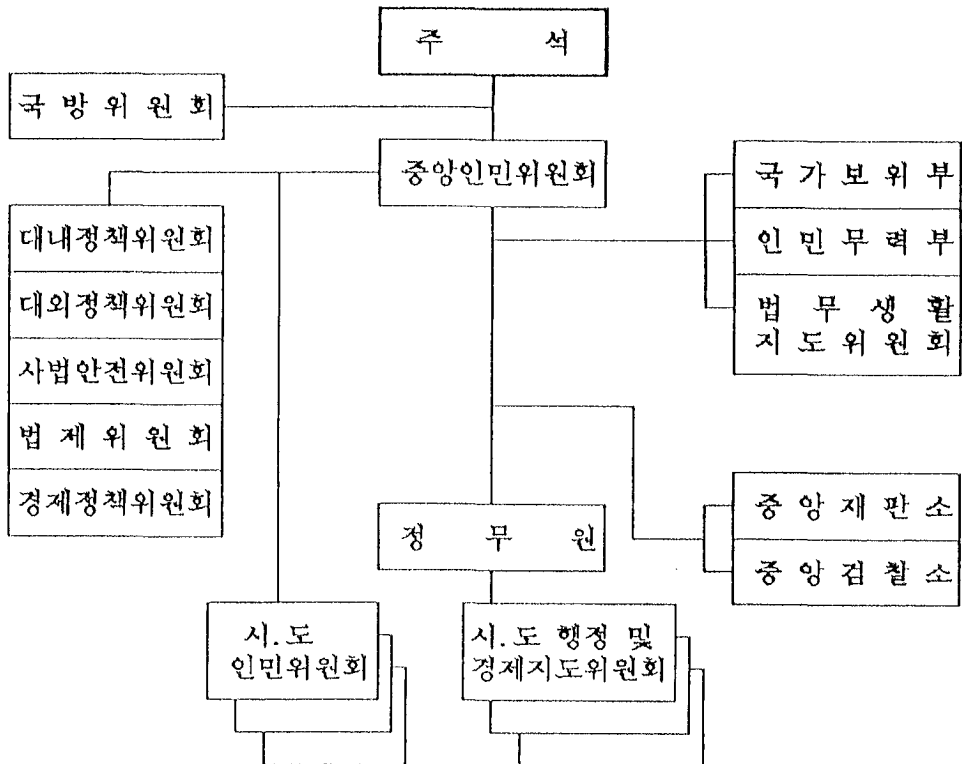
북한의 행정체제는 國家主席으로부터 地方의 하위행정기관에 이르기까지 그 체제가 중앙집권화의 성격을 띠고 있다. 上·下行政機關間的 관계는 철저한 명령복종의 수직적인 질서체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중앙과 지방의 행정체제가 다같이 政策決定機關과 政策執行機關으로 二元化 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공산국가의 행정기관을 黨에서 결정한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당에 의한 지도와 감독하에 놓여있다고 볼때, 북한의 행정기관 역시 당의 정책을 실행하는 기관으로서 엄격한 중앙집권적 명령체계가 형성되어 있는 관료주의적인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북한은 권력구조를 형성함에 있어 立法·行政·司法의 형식상 삼권분립을 표명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노동당의 일당독제체제의 권력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행정기관으로서의 중앙인민위원회와 정무원은 노동당의 통제하에 결정사항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만이 주어지고 있다.

북한의 행정체제는 1972년 헌법의 개정으로 큰 변화를 보게 되었다. 헌법개정 전에는 內閣이 행정의 최고기관으로 決定과 執行을 겸하고 있었으나 신헌법의 채택으로 국가주석을 정점으로 하는 단일지도체제로 전환 하였다. 즉 종래의 최고 인민회의 및 이것의 상임위원회, 내각의 주요 권한을 신설된 국가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에 배분하였으며, 중앙인민위원회도 국가주석이 지도 통제하는 체제로 전환이 되었다. 또한 재판기관도 최고재판소에서 중앙재판소로 바뀌면서 중앙인민위원회의 지휘·감독 아래에 놓임으로 사실상 3권 분립이 무시되었다. 1990년 1월을 기준으로 한 북한의 행정체제를 살펴보면 <표 III-2>와 같다.

<표 III-2> 북한의 정부(행정)체계도



## (2) 行政體制의 機能的 側面

### 1) 주권기관

#### ① 주석

국가주석은 국가의 수반이며 국가주권을 대표한다.(헌법 제89조) 主席制는 1972년의 사회주의 헌법에서 신설된 제도로서,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하고 임기는 4년이며(헌법 제90조) 계속 연임할 수 있다.

헌법의 제6장(제89조 이하 99조까지)에 주석의 권한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하면 주석은 중앙인민위원회를 직접 지도하며(제91조), 정부원회의를 소집하고 지도한다.(제92조), 또한 주석은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하고(제93조), 최고인민회의 법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결정을 발하는 권한을 가진다.(제94조) 또한 특사권(제95조), 조약의 비준 및 폐기(제96조)와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의 접수(제97조) 등의 권한을 가지는 주석은 최고 인민회의 앞에 책임을 진다.(제98조)

위의 규정들에 의하면 주석은 권한만 가지고 있을 뿐 의무와 같은 규정은 들어가 있지 않고 단지 제98조에서의 책임에 관한 사항만이 명시되어 있을 뿐이다.

주석제의 신설은 집단지도체제에서 1인 지도체제로 전환되었음을 뜻하는 것인데, 결국 1人 體制를 합리화 및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유래하고 있는 것으로 주석은 북한권력기관의 핵심적 존재이다.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으로 중앙인민위원회가 있으나, 이는 주석의 보조기관에 불과하며, 주석이 최고인민회의에 책임을 진다고는 명시되어 있어도, 최고인민회의는 주석에 대한 소환권이 없다. 결국 이 최고인민회의 자체가 노동당의 지휘하에 있으며, 신헌법에 의해 약화되었기 때문에 이는 주석의 영구집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주석은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인 중앙인민위원회를 직접 지도한다(제 101조). 그러나 이 「指導」는 지휘·감독 및 통제를 의미하므로 중앙인민위원

회는 主席을 수위로 하는 合議制機關으로 되어 있지만(제102조) 실질적으로는 주석의 諮問·補助機關에 지나지 않기때문에 김일성이 국가주권의 최고지도자로서 모든 국가권력의 절대적인 존재로 군림하게 되는 것이다.

주석의 권한을 보게 되면, 주석은 최고주권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인 정무원의 회의를 소집·지도하고, 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밑에서 정무원이 사업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제107조~108조) 행정집행에 있어서도 절대적 권한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같은 주석의 권한은 행정·군사·외교·입법 등 국가권력 전반에 걸쳐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절대자적 1인 체제가 확립되어 있음을 알수있다.

## ② 중앙인민위원회

중앙인민위원회는 헌법 제101조~106조에 의해 신설된 기구로 헌법상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이며(제100조), 수위는 주석이다(제101조). 중앙인민위원회의 구성은 주석, 부주석, 중앙인민위원회서기장, 위원들로 구성되며 임기는 4년이다.(제102조) 이 위원회는 주석의 지도, 즉 지휘, 감독 및 통제를 받게 되며 주석의 제의에 의해 부주석, 중앙인민위원회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및 소환토록 되어 있다. 따라서 중앙인민위원회는 주석의 보조·자문기관에 불과하다.

중앙인민위원회의 권한은 국가 대내외 정책수립, 정무원과 지방인민위원회의 및 인민위원회 사업지도, 사법·검찰기관 사업의 지도, 국방 및 국가정치보위 사업지도,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주석명령, 중앙인민위원회 결정·지시, 집행형의 감독과 그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지시의 폐지, 정무원의 부의 설치와 폐지, 정무원총리의 제의에 의한 부총리, 각 부장 그 밖에 정무원 구성원들의 임명 및 해임, 대사·공사의 임명 및 소환, 중요 군간부의 임명·해임과 장령군사청호의 제정, 대사의 실시, 행정구역의 설치와 변경 및 전시상태와 동원령의 선포(제103조) 등으로 되어 있다.

이와같이 국정전반에 걸친 강력한 권한행사가 주어져 있으므로 본질적인 권력분립의 원칙에 어긋남을 알 수 있다.

즉 중앙위원회는 국가주석과 함께 신설된 기관으로 종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가지고 있던 정령제정권 및 사법과 검찰을 지도하는 권한까지 가지는 3권 통합적인 헌법기관이다. 이 중앙인민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의 관계를 보면 전자가 후자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으나 수위인 주석은 소환의 대상이 되지 않고 다른 구성원의 소환도 주석의 제의에 의하는 만큼 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 1인체제의 확립이라고 볼 수 있다.

## 2) 행정기관

### ① 정무원

정무원은 구헌법에서의 내각을 변형·개칭한 것으로 중앙인민위원회에 권한을 대부분 넘기고 행정집행권만을 행사하므로써 과거의 내각에 비해 격하되어 있다.

정무원은 최고 주권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제107조)으로서 총리, 부총리, 부장 그밖의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제108조)

정무원은 사업진행을 위해 전원회의와 상무회의가 구성되어 있는데 '정무원 전원회의'는 정무원 성원 전원, 즉 총리·부총리·각부 위원장으로 구성하며, 국가관리사업의 중요문제를 토의하고 결정한다. 또한 '정무원 상무회의'는 총리·부총리 및 총리가 임명하는 성원들로 구성하며 정무원 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제110조, 제111조)

정무원의 권한은 각부, 정무원 직속기관, 지방행정위원회의 사업지도, 정무원 직속기관의 신설·폐지, 인민경제발전계획의 작성 및 실행대책의 수립, 국가예산의 편성·실행대책수립, 공업·농업·대내외 상업·건설·운수·체신·국토관리·도시경영·과학·교육·문화·보건 등 사업조직의 집행, 화폐 및 은행제도 강화대책 수립, 조약체결 및 대외사업실시, 인민무력 건설사업추진, 사회질서 유지, 국가의 이익 보호 및 국민의 권리보장 대책수립, 정무원 결

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관리 기관의 결정·지시·폐지(제109조) 등을 그 임무와 권한으로 하고 있다.

정무원은 소관업무에 대해 최고인민회의, 주석, 중앙인민위원회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데(제113조), 총리는 주석의 제의로 최고인민회의에 의해 소환되고 부총리, 각 부장, 그 밖에 정무원 구성원들은 총리의 제의로 중앙인민위원회에 의해 해임하도록 되어 있다. 결국 정무원은 실제로 주석에 의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어 주석 1인 체제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정무원의 조직표는 다음과 같다.

<표 III-3> 정무원 조직표  
(1990. 5.24 현재)

정 무 원			
국가계획위원회	국가건설위원회	대외경제위원회	경공업위원회
전력공업위원회	전자자동화공업위원회	농업위원회	수산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교육위원회	국가체육위원회	교통위원회
인민봉사위원회	국가검열위원회	외 교 부	사회안전부
문화예술부	보 건 부	노동행정부	재 정 부
건 설 부	건 재 공 업 부	임 업 부	대 외 경 제 사업부
무 역 부	화 학 공 업 부	지방공업부	원자력공업부
자원개발부	석 탄 공 업 부	광 업 부	금속공업부
기계 공업부	선 박 공 업 부	상 업 부	도시경영부
철 도 부	해 운 부	체 신 부	과 학 원
중 앙 은 행	중 앙 통 계 국	중 앙 자 재 총연합상사	사 무 국

북한의 행정기능은 주로 정무원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는데, 순수한 행정기능을 당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행정기능 중에서도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질서유지 및 안정기능은 당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행정기능이 정무원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다.

부서별로 담당기능을 보면 다음과 같다.

a) 國家計劃委員會: 중앙인민위원회에서 수립한 경제정책을 토대로 종합적인 경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정무원 회의에서 승인받아 각 부서로 통보한다. 또한 작성된 계획안에 대한 해당 각 부의 구체적 실행계획을 검토하며 인민경제계획 전반에 걸친 예비적 결산을 행한다. 따라서 외교, 사회안전, 인민무력부가 관장하고 있는 업무를 제외한 인민경제 전반에 걸쳐 소관별 관할권을 그 산하에 두고 있다.

b) 外交部: 외국과의 條約 및 협정체결, 수교확대, 재외공간운영 등 모든 外交業務를 수행한다. 그밖에 외국과의 통상업무교류, 친선교류 확대 등의 업무도 담당하며, 이를 위해 무역부 대외경제사업부와 협조를 유지한다.

c) 農業委員會: 1962년 10월 제3차 내각 당시 농업성에서 농업위원회로 개칭하여 현재까지 존속 되고 있는데 협동농장·국영농장 등 농업전반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

d) 電力工業委員會: 重工業計劃 수행에 따른 각급 공장의 전력공급 및 발전시설 확충과 발전량 제고를 위해 발전·송배전사업체계를 관장한다.

e) 國家建設委員會: 제5차 내각에서 건설위원회와 건설성이 통합, 건설부로 발족되었다. 일반적으로 國土, 産業, 都市, 農村 등 건설관계 분야를 일괄적으로 통합, 관할하고 있다.

f) 鐵道部: 1976년 9월 교통체신위원회를 철도부, 체신부, 육해운부로 분리함에 따라 철도부로 분리되었으며 이 분야에 대한 계획작성, 실행, 기술지도, 자재 및 설비의 보강, 대책수립, 연구기관운영 등의 책임을 지며 수립된 계획을 집행한다.

g) 水産委員會: 어업 및 어구와 수산업동조합 관계의 업무를 관장한다.

h) 建設資材工業委員會: 건설분야에 소요되는 자재의 생산 및 관리사업을 다룬다.

i) 敎育委員會: 1973년 5월 교육위원회로 바뀌어 총국도 보통교육부, 고등교육부로 가가 바뀌었는데 교육 전반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

j) 人民奉仕委員會: 주민생활에 대한 奉仕問題를 망라하고 있으며, 輕工業委員會와 함께 주민의 생활개선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k) 輕工業委員會: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소비재공업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l) 漚借部: 1976년 9월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체신부로 분리되어 漚借分野에 대한 계획작성, 실행, 기술지도, 자재 및 설비의 보강, 대책수립, 연구기관 운영 등을 책임지고 수행한다.

m) 文化藝術部: 북한사회제도의 우월성과 김일성 우상화 정책 및 정치사상교양사업을 다룬다. 1957년 8월 교육문화성으로 통합되었다가 1960년 12월 문화성으로 독립되었으나 다시 문화예술부로 개편되어 중앙당의 선전 선동부의 지도 감독을 받고 있다.

n) 財政部: 財政省을 개칭한 것으로 豫算編成, 豫算下達, 豫算執行을 담당하고 제정에 대한 감독기능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o) 貿易部: 1958년 9월 상업성에서 분리 독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국제무역촉진위원회를 산하단체에 두고 있다. 주로 외국과의 무역교류 및 확대를 위해 외교부, 대외경제사업부와 밀접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수행하고 있다.

p) 對外經濟事業部: 외국과의 경제교류, 무역상담, 시장조사 및 개척, 외국투자유도, 기술도입, 외국에 대한 경제지원 등의 업무를 전담하고 있어 실제 통상이나 교역을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는 무역부와 구분하여 독립시켜 놓고 있다.



q)保健部: 의료, 제약, 위생, 방역 등의 보건정책을 집행·감독한다.

r)勞働行政府: 제5차 내각에서 노동행정부로 개칭되었는데, 노동력의 파악, 보충, 배치와 임금, 노동조건, 노동시간 등 노동법령에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IV. 北韓의 地方行政組織體系

### 1. 地方行政體制的 構造와 機能

북한의 지방행정 기관은 각급의 행정위원회가 있는데, 이는 지방주권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으로 도(직할시)·시(구역)·군 행정위원회로 나누어진다. 지방행정위원회의 권한과 임무는 지방행정 사업의 조직과 집행, 인민회의, 인민위원회 및 상급기관의 결정, 지시를 집행하며, 지방의 인민경제발전 계획을 작성하고 그 실행대책을 수립한다. 또한 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의 수립과 지방의 사회질서 유지, 국가의 이익보호 및 공민의 권리보장 대책, 하급 행정위원회 사업의 지도 등이다. (제 130조)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면 도(직할시), 시(구역), 군 단위에는 주권기관(의회)으로 지방인민의회가 있으며, 지방행정지도기관으로 도·시·군 인민위원회(중앙인민위원회 감독 아래)와 지방행정 집행기관으로 도·시·군 행정 및 경제지도위원회(정무원 감독 아래)가 설치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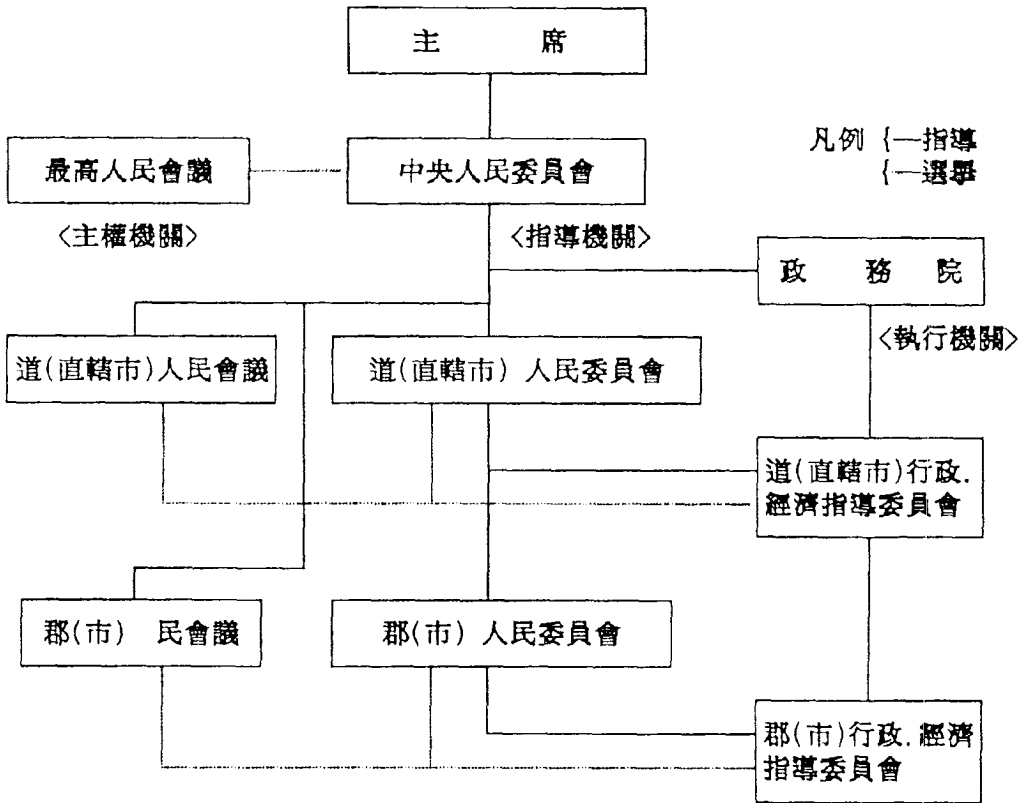
이밖에 지방행정기관과는 별도로 도 농촌경리위원회, 시·군 협동농장 경영위원회, 지구별 계획위원회, 도 통계국, 도 건설위원회 등의 특수 지방관서가 있다.

지방행정의 조직체계는 <표 IV-1>과 같다.

북한은 1952년에 기존의 행정구역의 하나인 面單位를 폐지함으로써 행정구역은 道(直轄市)·郡(市)·里(邑)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방행정 은 道와 郡에 설치되어 있는 기관들을 中心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각 행정구역에는 中央의 기관들에 대비되는 기관들이 설치되어 있고 特別行政을 처리하는 특수행정기관들이 존재하는데 지방행정의 각 기관별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V-1> 北韓의 地方行政體系



(1) 地方人民會議

지방인민회의는 중앙의 최고인민회의에 대비되는 기관으로서 지방의 모든 행정구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里단위 수준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북한은 1972년 헌법 개정을 통하여 以前의 명실상부한 주권기관이었던 지방인민회의를, 종전의 집행기관이었던 인민위원회가 인민회의의 기능을 흡수함으로써 그 기능이 축소되었다. 따라서 현행 지방인민회의는 의결권이라는 형식적인 권한만을 가지고 있다.

지방인민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결정하는 代議員 選출비용에 의거하여 選출되는 代의원들로 구성되며, 도(직할시)인민회의 임기는 2년, 시(구역)군 인민회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있다. (제 116조, 117조)

대의원은 명예직으로 보수는 받지 않으며, 공무와 관련된 비용만이 지불될 뿐이다.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분류되며, 정기회의는 1년에 1회 또는 2회 개최되며 임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게 된다.(제 119조)

지방인민회의가 가지는 임무와 권한을 보면 다음과 같다.(제 118조)

㉔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승인한다.

㉕지방예산을 승인한다.

㉖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및 소환한다.

㉗해당 행정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및 소환한다.

㉘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및 소환한다.

㉙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 인민회의 및 인민위원회의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지방인민위원회는 헌법에서 지방의 주권기관으로서 이와같이 권한을 부여받지만, 중앙인민위원회의의 지도를 받게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중앙의 수령과 당의 정치전략을 세부적으로 수행하는 일선기관의 역할에 그치고 있다.

지방인민회의는 議決機關이므로 分科委員會형식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문화·보건분과위원회·도시건설분과위원회, 상업유통분과위원회, 공업분과위원회, 농업분과위원회, 계획 및 재정분과위원회, 교통운수분과위원회의 7개 상설위원회 제도와 상설위원회로서 행사 경축위원회, 영접대책위원회 등이 필요에 따라 구성된다고 알려져 있다.

## (2) 地方人民委員會

지방인민위원회는 중앙인민위원회에 대비되는 기관으로, 主權·行政執行機關(1946.2~1954.10), 행정집행기관(1954.10~1972.12)으로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1972년 12월 헌법개정으로 지방주권기관으로 그 성격이 달라

졌다. 즉 당해 지방의회가 휴회중에는 지방주권기관이 되며 중앙인민회의 지도를 받아 해당 지역의 국가사업과 지방사업의 수행을 지도하는 기관이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지방당 간부, 지방인민회의 및 행정위원회 간부, 지방검찰소 및 재판소의 소장, 지방사회안전국 국장, 공장,기업소의 책임자 등 그 지방의 전반적인 사업을 지도하는 핵심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상설 주권지도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채택한다는 규정하에 지방인민회의에서 채택한 결정을 지방인민위원회 위원장이 공포(分布)하게 되어 있으므로(제 122조) 주권기관인 지방인민회의를 대표하는 기능까지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방인민위원회는 그 위원장을 비롯하여 모든 구성원이 해당인민위원회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해당지역의 당의 책임비서가 위원장으로 선출하게 되어 있고 위원들은 그 지역의 당간부, 재판소 및 검찰소 소장, 사회안전국국장, 공장책임자 등 실력자들로 구성되어 그 지방의 전반적 사업을 지도하는 최고지도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지방인민위원회의 권한과 임무를 보면 다음과 같다.

㉔인민회의를 소집한다.

㉕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㉖인민회의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㉗해당 인민회의와 상급 인민위원회 결정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㉘해당 행정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㉙하급 인민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㉚해당지역안의 국가기관, 기업소 및 사회협동단체들의 사업을 지도한다.

㉛해당 행정위원회와 하급 인민위원회 및 행정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하급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① 해당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임명 및 해임한다. (제 125조)

그러나 해당인민회의와 상급인민위원회의 결정집행을 위한 대책수립으로서 해당인민회의 결정을 곧 중앙인민위원회의가 지방인민위원회를 지도, 감독하고 나아가서 김일성의 교시 및 당과 政府의 政策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김일성의 의지를 정책화하고 당의 노선을 구체화하는 최고지도기관의 종속기관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 地方行政 및 地方經濟指導委員會

초기의 인민헌법에서는 道·郡·面·里에 人民委員會를 두고 그 常務委員會를 통해 행정집행기능을 수행했는데, 1972년 헌법개정 이후 별도의 행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되었다. 그후 행정위원회는 경제개발전략과 관련되어 여러차례 변화를 거쳐 道에는 도행정 및 경제지도위원회가, 시와 군 및 구역에는 市·郡행정 및 경제지도위원회가 그 집행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먼저 지방행정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및 위원들로 구성되는데(제 129조) 그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 ㉠ 해당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 집행한다.
- ㉡ 해당 인민회의, 인민위원회 및 상급기관의 결정, 지시를 집행한다.
- ㉢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 ㉣ 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 ㉤ 해당지방의 사회질서를 유지, 국가의 이익보호 및 국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 ㉥ 하급 행정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 ㉦ 하급 행정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제 130조)

한편 지방경제지도위원회는 中央의 政務院에 對比되는 기관으로 해당 인민위원회의 지도하에 실무적인 행정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경제지도 위원장은 해당 인민회의에서 선출되며 기타 구성원들은 인민위원회에서 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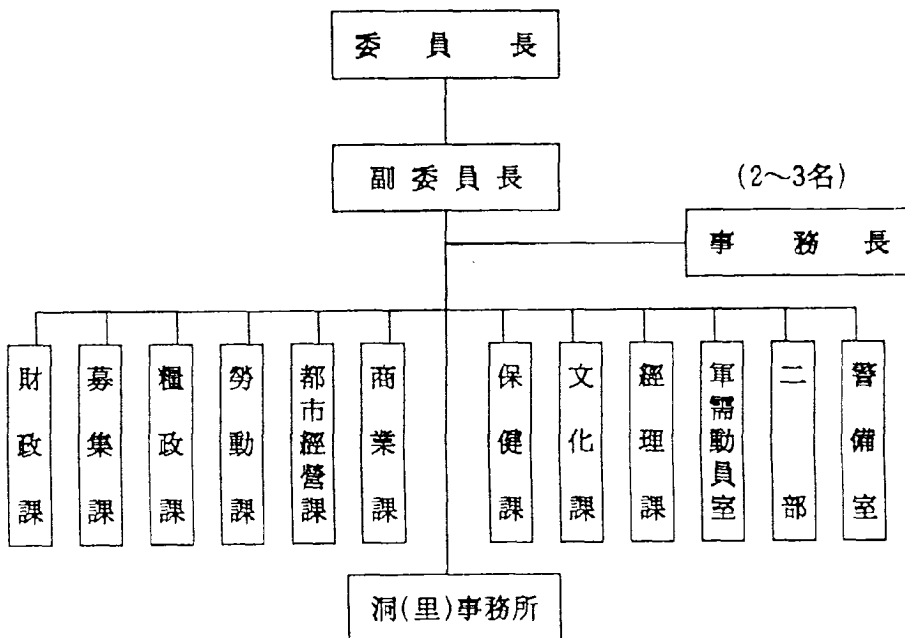
출하도록 되어 있고, 경제지도위원회는 수개의 부서로 구성되고 있으며 해당지역의 특수성 및 級別·地域別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로동신문에서 밝힌 경제지도위원회의 임무 및 권한을 보면 다음과 같다.

- ㉔ 해당 지방내의 공장, 기업소 경제계획의 세부방침 마련.
- ㉕ 지방내 공장, 기업소들에 대한 기업관리와 생산지도.
- ㉖ 지방내 공장, 기업소들에 대한 기업적 지도.
- ㉗ 지방내 공장, 기업소들에 대한 기술지도, 자재보장.
- ㉘ 지방내 공장, 기업소 실태 파악.
- ㉙ 기타 경제조직사업

따라서 행정·경제지도위원회는 공업관리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아 생산중대 및 경제건설의 효율화를 통해 낙후된 지방사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표 IV-2> 郡(市·區域)行政·經濟指導委員會 組織



#### (4) 特殊地方行政機關

북한의 특수지방행정기관은 地區計劃, 農村計劃, 建設 등 주로 경제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지방행정단위의 경제관리부문에 문제점이 심각하게 노골화되자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두게 되었다.

먼저 계획분야를 보면 국가계획위원회→지구계획위원회→市·郡국가계획부로 이어지는데, 여기서는 해당지역내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당정책에 입각한 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정확히 실행하도록 지도·통제한다. 시·군국가계획부는 해당 지역내의 경제기관, 기업소 및 협동농장들에 대한 사업계획의 작성과 이의 실행에 대한 지도, 감독 및 지역내 경제기관, 기업소들의 계획화사업을 수행하고 사업방법을 개선하게 된다.

농촌분야를 보면 중앙의 농업위원회→道農村經理委員會→市·郡協同農場經營委員會로 이어지고 있다.

道農村經理委員會는 도경제지도위원회와 동급기관으로서 농업위원회에서 하달되는 영농계획을 각 시·군별로 하달하고, 그 집행을 지도 감독하며 해당 지방의 농기계작업소, 국영농·목장을 운영, 지도한다. 동시에 농산물 생산 판매를 위한 계약체결과 농민이 필요로 하는 생활필수품을 계약 공급한다.

建設分野를 보면 中央의 國家建設委員會→道(直轄市)建設委員會로 이어진다. 道(直轄市)建設委員會는 중앙의 국가건설위원회의 지도를 받아 관할 구역내에서의 도로건설, 주택건설 등 건설부문 전반에 대한 사업을 집행하고 있다. 건설위원회는 郡單位에는 행정기관을 두지 않고 있으며, 여기서는 道路建設, 住宅建設 등 건설부문 전반에 대한 사업을 집행하고 있다.

水産委員會의 道(直轄市)地方組織으로 水産管理局과 協同水産經理委員會가 있으며, 郡 地方組織으로 水産協同經理理事會를 두고 있다. 여기서는 어업 및 어구와 수산협동조합 관계의 업무를 집행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정권수립이후 사회주의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



서 중앙을 비롯한 지방공업에 대한 國有化를 宣布하고 관리체계를 확일화하기 위한 여러 형태의 조직을 만들기도 하였다.

道輕工業委員會를 보면, 중앙에 地方工業經營局을 신설하고, 道單位에는 輕工業委員會, 市·郡單位에는 工業經營委員會로 각각 분리하여 개칭하고 해당지방의 공장, 기업소에 대한 전반적 지도 및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그 밖에 地方鐵道局과 道統計局을 보면, 地方鐵道局은 鐵道部의 地方組織으로서 철도분야에 대한 계획작성 실행, 기술지도, 자재 및 설비의 보강, 대책수립, 연구기관운영등의 수립된 계획을 집행한다. 道(直轄市)統計局은 농업, 공업 등 경제생산에 관한 통계업무를 수행한다.

북한의 지방행정은 경제일변도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체로 북한은 경제행정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지방의 수준에서는 더욱 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방행정의 내용을 보면 지방적 주권기관이라고 하는 지방인민회의는 결국은 상부의 지휘·감독을 받아 자율권이 없으므로 철저한 中央集權的 行政體制임을 알 수 있다.

## 2. 地方行政區域

1945년 8월 15일 解放當時의 行政區域現況은 13道, 21府, 218郡, 2島, 107縣, 2,243面이었다.

해방당시의 행정구역은 <표 IV-3>과 같다.

〈표 IV-3〉 해방당시의 행정구역 수

道 別	부 수	군 수	도 수	읍 수	면 수
경 기	3(京城, 仁川, 開城)	20		7	229
충 북	-	10		4	102
충 남	1 (大田)	14		9	164
전 북	2 (群山, 全州)	14		6	170
전 남	2 (木浦, 光州)	21	1(濟州)	10	242
경 북	1 (大邱)	22	1(울릉)	10	241
경 남	3(釜山, 馬山, 晉州)	19		12	230
황 해	1 (海州)	17		10	202
평 남	2 (平壤, 鎭南浦)	14		5	135
평 북	1 (新義州)	19		9	169
강 원	-	21		10	166
함 남	2 (元山, 咸興)	16		9	123
함 북	3(清津, 羅津, 城津)	11		6	70
計	13	218	2	107	2,243

※자료: 내무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사』, 1987, P.130.

1945년 해방이후 美軍政期를 거쳐 1948년 8월 15일(大韓民國政府樹立) 당시의 남한의 행정구역은 1特別市, 9道, 133郡, 1島, 14府, 73邑, 1,456면으로 조정이 되었다.

(1)북한의 행정구역의 변천내용

해방당시 북한의 행정구역은 6道, 102府 및 郡, 809개 邑 및 面이 있었다. 〈표 IV-4 참조〉

〈표 IV-4〉 8.15 당시 북한 행정구역

道 名	면 적(Km <sup>2</sup> )	府 및 郡	縣 및 面
함경북도	20,346.76	14	75
함경남도	31,978.41	17	124
평안북도	28,467.85	20	170
평안남도	14,939.25	16	139
황해도	16,744.42	19	190
강원도	13,022.00	16	111
계 : 6	125,498.69	102	809

※자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북한의 지방행정」, 1990, P.51 참조.

8.15 해방 이후 북한은 행정체계와 행정구역을 개편하여, 도(직할시)→군(시)→면(읍)→리의 행정체계중 면(面)을 폐지하여 도(특별시, 직할시)→군(시, 구역)→리(노동자구)의 3단계체제로 개편하였다. 동시에 군(郡)을 분할하여 그 수를 늘리고, 각 군 소재지는 당해 군의 명칭을 붙여 읍(邑)으로 부르고 있다. 또한 특정지역으로서 광산, 임산사업소, 수산사업소, 공장기업소 소재지 등에 상주인구가 집중되어(400명 이상) 집단주거지가 형성될 때면 이를 노동자구(區)로 설치하고 있다.

행정구역의 변천내용은 다음의 〈표 IV-5〉와 같다.

〈표 IV-5〉 행정구역의 변천내용

區 分	特別市	道	直轄市	市 (區域)	郡	邑	里洞	勞動者區	備 考
1945. 8. 15	-	5	-	9	86	-	-	-	
1946. 9. 5	1	6	-	8 (5)	94	-	-	-	평양특별시 승격, 강원도 신설
1949. 1. 13	1	7	-	8 (5)	97	-	-	-	자강도신설
1952. 12. 22	1	7	-	8 (5)	168	168	3658	4	3단계 지방행정체 제로 개편
1954. 10. 30	1	9	-	10 (5)	173	173	3658	33	양강도, 황해북도, 황해남도 신설
1958.	1	9	1	13 (5)	163	163	3994	92	개성직할시 승격 (1957)
1961. 3. 16	1	9	3	11 (33)	162	162	3971	122	함흥직할시, 청진직 할시 승격(1960)
1965. 1. 15	1	9	3	15 (35)	164	164	4143	112	
1967. 10. 2	1	9	1	17 (35)	162	162	4183	168	함흥, 청진직할시의 시로의 격하(1966)
1972. 11. 18	1	9	1	18 (34)	162	162	4142	201	
1974. 5. 31	1	9	1	18 (36)	151	151	4133	214	
1978. 3. 1	1	9	2	19 (36)	152	152	4190	232	청진직할시 승격
1980. 3. 1	1	9	3	19 (33)	152	152	4190	232	남포직할시 승격
1983. 12	1	9	3	18	150	150	4181	230	
1986. 6	1	9	2	19 (37)	150	150	4242	223	청진직할시의 시격 하

※자료: 國土統一院, 『北韓行政區域 및 山川地勢』(서울: 國土統一院, 1983),  
p. 18 참조작성.

## (2)북한의 행정구역 현황

북한은 행정조직을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아래 빈번한 구역개편을 실행하였다. 1990. 10월 현재의 행정구역 현황을 보면, 1특별시, 2직할시, 9도 21시, 150군, 37구역, 150읍, 4,242리·동, 223노동자구등으로 이루어져 있다.<표 IV-6>

&lt;표 IV-6&gt; 행정구역 현황

(\*는 도청 소재지)

행 정 구 역	시(市) 및 구역(區域)	군(郡)
평 양 특 별 시 (18구역 4군)	증 평천 보통강 모란봉 서성 선교 동대원 대동강 사동 대성 만경대 형제산 용성 삼석 승호 역포 낙랑 순안	강남 강동 중화 상원
남 포 직 할 시 (5구역 1군)	항구 천리마 대안 와우도 강서	용강
평 안 남 도 (4시 15군)	*평성시 순천시 안주시 덕천시	대동 증산 온천 평원 속천 문덕 개천 성천 회창 신앙 양덕 북창 맹산 영원 대흥
평 안 북 도 (2시 3구역 23군)	*신의주시(광명, 강안, 남 ) 구성시	비현 통천 철산 동림 선천 곽산 정주 운진 운산 박천 영변 구장 향산 태천 천마 의주 삭주 대관 창성 동창 벽동 염주 신도
자 강 도 (3시 15군)	*강계시 만포시 희천시	장강 화평 낭림 시중 자성 중강 위원 초산 우시 고평 송원 성간 전천 동신 용립
양 강 도 (1시 11군)	*혜산시	보천 운흥 백암 갑산 풍서 김형권 삼수 김정숙 김형직 삼지연 대흥단
황 해 남 도 (1시 19군)	*해주시	벽성 강경 용진 태탄 용연 장연 삼천 송화 과일 은울 은천 안악 신천 재명 연안 배천 신원 평천 청단

행정구역	시(市) 및 구역(區域)	군(郡)
황해북도 (2시 14군)	*사리원시 송림시	황주 봉산 연탄 은파 서흥 수안 연산 신평 곡산 신계 평산 인산 토산 금천
강원도 (1시 16군)	*원산시	문천 천내 안변 고산 통천 고성 금강 창도 김화 회양 세포 평강 철원 이편 판교, 법동
함경남도 (3시 6구역 15군)	*함흥시(성천, 동흥산, 희상, 사포, 용성, 흥남) 신포시 단천시	함주 낙원 정명 금야 고원 요덕 장진 부전 영광 신흥 홍원 북청 덕성 이원 허천
함경북도 (3시 7구역 14군)	*청진시(청암, 포함, 신암, 수남, 송암, 나남, 부운) 김책시 나진시	길주 화대 명천 화성 어랑 연사 회령 온성 경성 무산 새별 은덕 선봉 부령

북한의 행정구역은 초기의 정치전략적 의도의 개편에서 점차 선거관리 및 행정능률의 측면으로 그 개편의도가 바뀌고 있다.

서구민주주의국가들의 경우 지방행정은 광역화, 대규모화 및 기술화에 있고 이러한 행정기능을 담당하는 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모가 필연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통적인 지방행정구역은 새로운 국토공간규모에 맞도록 개편되어야 하며 이것은 곧 구역의 확대를 의미하게 된다<sup>1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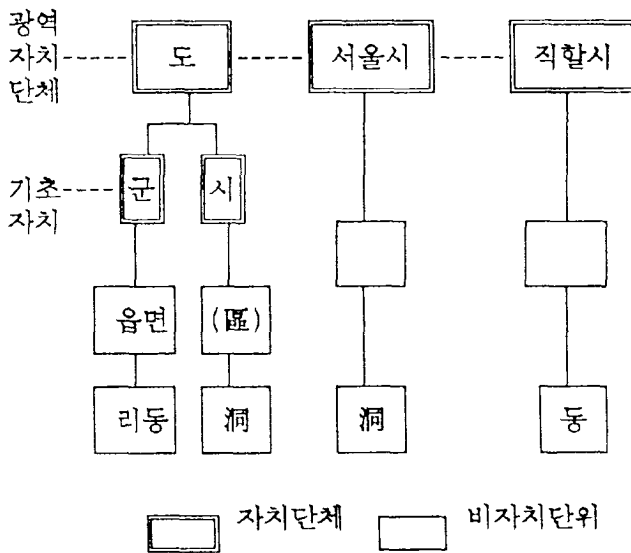
또한 구역의 개편은 財政的, 人的능력, 주민편의의 구역 및 주민통제의 기준 등이 관련되어 구역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북한의 지방행정구역의 개편을 보면 道나 直轄市는 광역적 지방자치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 이외에도 공업적인 부문에서도 직접적인 지도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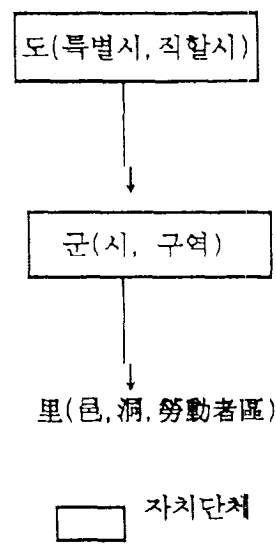
16) W.E. Jackson, *The Structure of Local Government in England Wales* (London: Longmans, 1966), pp.233-234.

관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나아가서 3層制<sup>17)</sup> 지방행정체제를 기반으로 강력한 중앙집권적 권력강화를 기함과 동시에 1人독재의 행정체제를 확립하고자 하는 의도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산업시설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경제적 목적도 개편의 한 측면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이 북한은 정치적, 행정적, 군사적 목적하에서 구역개편이 단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7) \*한국의 지방행정계층구조



\*북한의 지방행정계층구조



### V. 北韓의 地方行政의 役割 및 性格

#### 1. 地方의 行政業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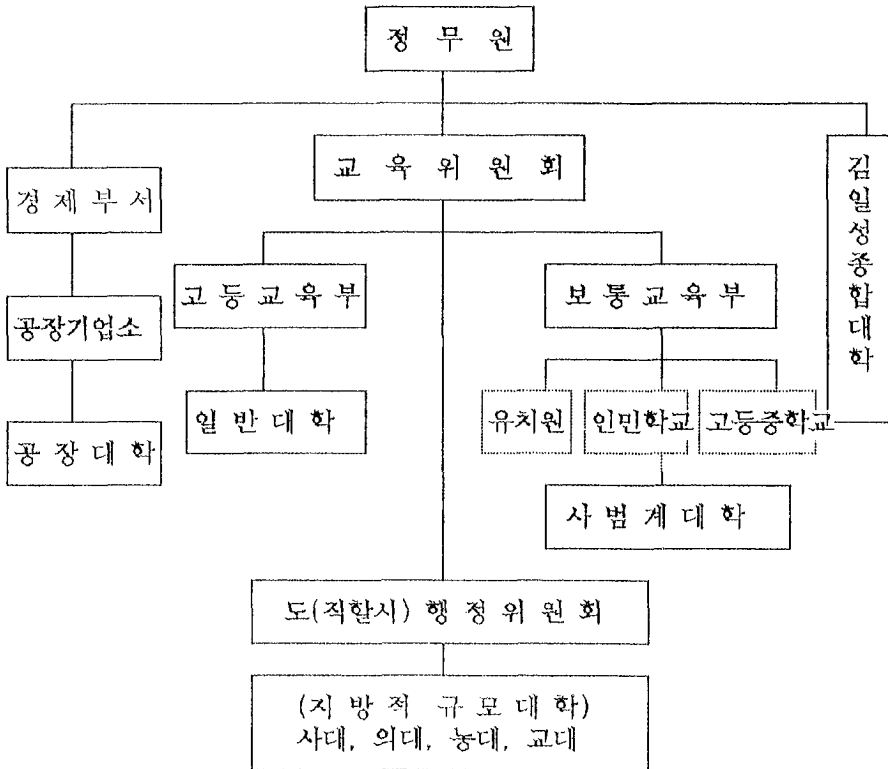
북한의 지방행정업무는 교육, 경제, 치안, 의료 및 보건, 문화, 생활환경행정 등으로 분류되어 수행되고 있다.

##### (1) 敎育行政

북한의 교육체계는 중앙집권화로서 교육행정이 중앙으로부터 지방행정 단위에 이르기까지 一元化되어 있으며, 교육의 내용에 대해서도 일원적인 지도와 감독을 받고 있다. 그러나 학교시설문제, 교원의 임용, 轉補, 학생의 모집 등은 지방행정에서 담당하고 있다.

북한의 교육행정체계는 <표 V- 1>과 같다.

<표 V-1> 북한의 교육행정체계





북한의 교육행정기관은 교육위원회, 보통교육부, 고등교육부의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교육위원회는 정무원의 한 부서로서 북한 교육부문의 최고감독기관 및 학교교육 전반에 걸친 기획과 지휘통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보통교육부는 유치원, 인민학교, 고등중학교, 고등기술전문학교의 전반적인 교육을 관장하고 있다. 보통교육부에서 행정적인 지도는 군교육부에 직속되어 있고 군인민위원장에게 횡적으로 종속되고 있어 이중적인 종속관계를 지닌다. 고등교육부의 설치배경을 보면, 1973년 6월경 교육부를 교육위원회로 개칭하고 그 산하에 고등교육부와 보통교육부를 설치하였다. 공장대학과 김일성종합대학을 제외한 일반대학은 고등교육부에서, 사범대학은 보통교육부에서 관장하게 되었으며, 김일성종합대학은 정무원직속으로 내각에서 직접 관장하게 하고 있다.

1971년부터 고등교육행정이 지방에 대폭 이양되었고, 고등교육에 있어서는 道(直轄市)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범계, 이공과계, 농과계, 의과계, 자연계 등의 대학은 지방의 道政에서 관장하도록 하고, 초등, 중등교육은 市(區域)郡政에서 지도, 감독하고 있다.

## (2) 經濟行政

공산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제경제하에서는 모든 것이 국가기관에서 추진되고 있다.

북한의 경우 경제계획은 아래로부터 계획되어 중앙의 유일한 경제계획이 수립되고 그에 기초해서 모든 경제기관들이 활동하는 체제였으나 1981년 9월 이후 道經濟指導委員會가 설치되어 道内の 공장, 기업소에 대한 직접 지도, 관리하는 체제로 바뀌었다.

市(區域)郡에서는 소규모공장에 대한 지도, 관장이 이루어지며 道(直轄市)와 市(區域)郡에는 각각 인민경제계획이 수립되고 이에 대한 승인은 인민회의에서 하게 된다. 따라서 지방행정 및 경제지도위원회에서는 인민경제계획을 수립하고 실행대책을 세우게 된다.

북한에서 경제활동의 자치기능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政治事業의 선행으로서, 기업관리는 전적으로 黨의 관장하에 놓이게 된다. 즉 당권우위에 의한 고도의 중앙집권적인 관리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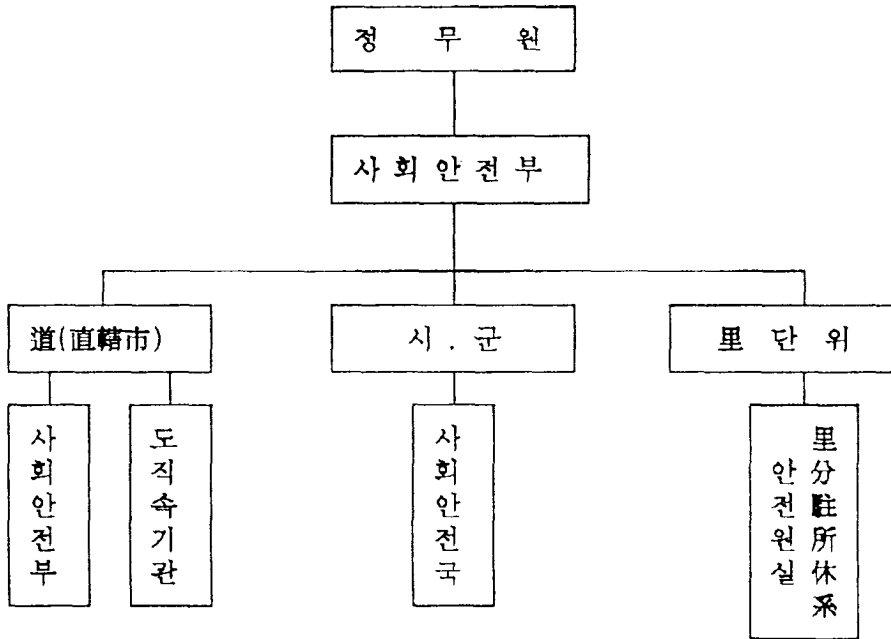
道와 郡級 행정단위에서도 해당 초급당위원회를 조직하여 해당급 행정단위를 통제하며 동일한 행정단위의 당위원회를 통해 당정책을 집행·관철시키고 있으며, 各級 黨은 해당 각 수준의 정부기관보다 많은 영향력과 권력을 지니고 있다.

### (3) 治安行政

치안행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및 국가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영미계국가 등에서는 경찰행정을 중앙정부가 관리·수행하지 않고 자치단체의 업무로 이관시키고 있다. 반면 대륙계국가들은 경찰행정을 국가사무로 관할하고 있다. 치안행정을 국가사무로서 행하는 경우 경찰의 인사문제를 비롯한 일체의 사항들을 국가에서 맡아서 집행하게되며 그들을 국가공무원으로 충원한다. 북한의 경우는 중앙집권화된 일인체제로서 막강한 독제의 하수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公安機關인 社會安全部는 지방에서는 시(구역)군단위까지 기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사회의 안전질서추구를 주임무로 하고 있다. 지방에서는 시(구역)군단위까지 기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各里協同農場에는 파견 또는 담당하는 형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해당지역의 당 조직으로부터 黨的 統制를 받도록 되어 있다.

〈표 V-2〉 북한의 치안행정체계



#### (4) 醫療.保健行政

북한의 보건행정기관으로는 정무원에 보건부가 있고 지방에는 특별시, 도 행정위원회 보건국, 시.군 행정위원회 보건부를 두고 있으며 리에는 보건지도원을 두고 있다. 특별시.도 행정위원회 보건국에서는 보건실행기관(방역소, 병원 등)을 관리.운영하고 보건사업결과와 아울러 정무원 보건부의 기술.지도를 받는다. 시.군 인민위원회 보건부는 道 보건부에서 하달된 각종 보건사업을 郡에 적합하도록 계획 및 집행하며, 도 행정위원회 보건지도원은 각 리에 배치되어 환경정리와 기타사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외에 특별시.도 방역위원 및 적십자위원회가 있다.

북한은 헌법 제48조에서 「국가는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며 예방의학적 방침을 관철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라고 하여 전반적 무상치료제의 보건정책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실질적인 '무상치료제'가 실시되지는 못하고 있다.

### (5) 文化行政

북한의 문화예술은 주민을 선동하고 계몽하는 수단으로서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아 지방행정의 중요한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문화행정의 기본노선은 모든 문학, 예술로 하여금 당 정책의 구현 및 선전, 찬양, 김일성의 우상화, 공산주의적 인간개조, 정치사상 계몽, 노동의욕제고 등에 이바지하게 하는 것으로 순수예술성을 말살하고 목적의식하에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 (6) 生活環境行政

생활환경 역시 지방행정의 한 부분으로서 도시계획, 농촌지역계획, 도로, 다리의 건설 및 관리, 배수시설, 쓰레기 수거, 오물의 수집, 처리, 상하수도시설, 공해방지, 식품위생, 공원, 운동장, 오락 및 휴식공간시설 등의 환경적인 분야를 주로 다루고 있다. 주택건설의 경우 개인이 아닌 국가에서 건설하도록 되어 있으며, 도인민위원회가 있는 市에 있어서는 건설사업부에서 공공기관, 주택건설을 하게 되어 있으며 이는 도건설위원회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는 도시계획, 도로, 다리건설 등의 일체를 계획하고 건설사업소에서 추진하게 된다. 도로의 경우 道内の 도로는 道の 건설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지만 도로율은 낮은 편이다. 이 밖에 수도시설, 오물처리 등의 행정에 있어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지방행정의 근본취지에 맞는 주민편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라 할 수 있다.

## 2. 北韓의 地方行政과 기타 組織과의 關係

북한의 地方行政組織은 자율적인 地方自治制로서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이는 북한의 지방기관이 권력의 원천체인 공산당(조선 로동당)의 政策路線을 執行하는 하부조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sup>18)</sup>.

18) 김운태, “북한정권기관(행정기관)의 조직변천에 관한 연구”, 『통일정책』, 제3권 제1호, (평화통일연구소, 1977), p. 201.

이처럼 자율적인 지방자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북한의 지방행정은 형식적인 차원에서 수행되고 있을 뿐인데, 이러한 지방행정과 중앙 및 기타 조직과의 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 (1) 勞動黨과의 關係

공산체제에서는 당에 의한 국가관료제의 통제가 철저한 것이 일반적인데, 북한의 경우도 당과 국가관료제의 관계를 보면 ①노동당중앙위원회 밑의 조직부서를 통해 정무원의 각부와 위원회를 지도·감독하며 이는 중앙수준 뿐 아니라 地方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②당계층제와 관료계층제 사이는 이중검직제도와 구성원의 중첩으로 연결되고 있다. ③당중앙위원회 정치국에서 그의 일선기관을(郡을 포함) 포함한 행정기관에 파견·상주시키고 있다.<sup>19)</sup> 이와 같은 당과 국가관료제의 융합현상을 서구민주주의이론에서 비추어 볼 때 사회의 미분화<sup>20)</sup>와 아울러 관료제의 발달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 할 수 있다.

북한에서는 당의 기구인 政治局, 秘書局, 정권기관인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 중에서 정치국과 중앙인민위원회가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성격을 띠게 되며 비서국 및 정무원은 전문성을 구비하게 된다. 따라서 전통적인 당과 관료체제의 관계가 아닌 당이 국가관료제를 형성하고 유지하며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행정관료의 전문화가 이루어 질 수 없으며 지방행정의 역할 또한 자율권이 부여될 수 없다. 또한 노동당 중앙위원회조직지도부에 의해 완전통제되는 인사정책의 기준도 관료의 전문성보다는 黨性과 사회계급성이 보다 중시되고 있다. 이는 결국 당이 지방의 농촌부락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細胞組織(cellular structure)을 형성하고 이의 운영·관리를 위해 거대한 당관료체제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나아가서 —

19) 한국지방 행정연구원, 「북한의 지방행정」, 1990. pp. 151-152

20) 자세한 내용은 F. W. Riggs, *Prismatic Society Revisited* (Morristown, N. J.: General Learning Press, 1973), pp. 2-29 참조.

인지배체제를 확고히 하고 있다 할 수 있다.

## (2) 人民軍과의 關係

북한사회는 계급적 계층구조를 근간으로 하는 관료제사회로서 金日成 개인의 정치지도력에 의거하여 노동당·인민군을 정점으로 국가기관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21)</sup> 특히 노동당과 국가기관은 핵심로 동당원에 의해 관리되는 조직형태를 이루며, 이는 결국 노동당 간부의 사회적 배경 및 경력, 권력과 전문성, 조직내의 리더십 성향과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은 조직의 성향은 김일성 1인지배체제화에서 혁명과 권력지향의 조직속성과 과업성취 및 관리위주의 속성을 지닌 지도계층으로 구별되어 나타난다. 즉 김일성과의 개인적 유대 및 가족배경을 가진 자, 노동당 정치국원, 당중앙위원회 비서, 부장 등 권력의 핵심에서 정책결정권자의 위치에 있는 자 또는 국가기관으로서 인민무력부, 사회안전부, 국가보위부 등의 핵심간부로서 공산혁명의 완수와 권력유지 그 자체에 관심이 있거나 전문적 자격을 갖춘 집단을 권력관료로 지칭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의 정권은 노동당과 인민군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데, 북한 인민군은 정권의 물리적 기반인 동시에 노동당과 함께 북한관료제의 두 핵심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북한에 있어 권력핵심에 있는 관료 다음인 권력관료로서 군사관료를 들 수 있는데, 전문적인 권력관료로서 북한군의 指揮部는 노동당 정치위원 중 20%를 차지함으로써 군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 (3) 기타 部門과의 關係

북한의 조선로동당규약에 따르면 대중조직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의 하나는 매개체의 역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에 있는 주요 대중조직으로

21) 한국지방 행정연구원, 상계서, p. 167

는 사회주의 로동청년동맹, 직업동맹, 여성동맹, 농업근로자동맹, 문학예술가동맹 등이 있는데 이들 대중조직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볼 수 있는 사회단체의 독립성이나 중립성의 특색은 찾아 볼 수 없고, 단지 로동당의 外廓團體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다.<sup>22)</sup>

이러한 대중조직에 대한 공식문서의 규정을 보면 “대중조직은 당과 지도자의 지휘아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을 위해 투쟁하는 근로대중의 자발적 단체이며, 동시에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위한 당의 외곽단체로서 당과 대중 사이를 연계시키는 매개체”라 하고 있다. 따라서 대중조직은 당과 수령에 충성하기 위해 대중을 동원하며, 당과 지도자가 지시하는 대로 맹목적인 추종만을 해야 한다.

대중조직은 당의 명령의 전달자로서 당이 결정을 내리면 대중집회를 소집하고 당의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제공함으로써 당의 결정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게 된다. 또한 당은 모든 행정단위의 당위원회에게 대중조직에 당과 국가에 의해 주어진 과업을 수행키 위해 대중조직을 인도하고 감독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당의 대중조직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 즉 모든 지방행정단위에 있어 당위원회가 같은 단위의 대중조직이나 대중조직의 당위원회를 통제함으로써 대중조직에 대한 완전한 통제를 가하고 있다.

### 3. 北韓 地方行政의 特徵

북한의 권력구조는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과는 달리 首領의 일인지도체제로 되어 있으며, 행정에 대한 정치의 외압은 관료기능의 정치화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의 모든 분야는 전문성을 지녔으며 실제로는 당의 지시와 당의 최고지도층의 의사를 전달, 집행하는 수단으로서의 역할만을 하고

22) 한국지방 행정연구원, 전게서, p. 172

있다.

### (1) 행정조직 체계상의 특징

북한의 헌법에서 주석은 국가의 수반이며 국가주권을 대표한다고 규정되어, 국정의 제일인자로서 권력집중의 유일한 구심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행정이 사회성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하나의 정책으로 설정되고, 국민의 의사가 정책으로 집행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볼 때, 북한은 일당행정으로서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기 보다는 당의 방침과 최고지도자의 의사를 전달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행정이 수행하고 있다. 또한 행정기관을 통한 勳員體制를 형성함으로써 주민을 동원하여<sup>23)</sup> 일인지도체제를 확고하게 구축하고 있어 행정의 원래 의도는 명실상부한 상태라 할 수 있다.

### (2) 행정업무상의 특징

북한의 정치권력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중앙집권화되어 있어 지방의회 또는 집행기관들은 중앙의 지시, 결정만을 수행하는 역할만을 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자율적인 업무는 전혀 허용이 되지 않는 실정이며 지방행정의 창의성은 결여된 상태라 할 수 있다. 즉 모든 행정업무는 김일성의 지시와 당과 국가의 정책만을 무조건적으로 집행하는데 그치고 있어 지방사업에 달리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없는 것이다.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관료들의 경우 합리성을 중시하는 차원보다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중시하는 당엘리트들이 정무원의 각 부서를 담당함으로써, 그들은 김일성과 당노선에 무조건 복종과 충성심을 나타내려고 하고 있다. 또한 지나친 목표성취의욕으로 인해 대중을 전략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체제내적 갈등을 유발시키기도 한다. 지방행정업무에 있어서도 명령복종의 관계로서 창의성이 결여됨과 동시에 관료들의 무사안일주의행태가 나타나는데, 이는

23) 청산리방법(농업경영의 기본지도방법)과 천리마운동을 통해 주민의 강제적인 동원을 유도하였다.



정권수립 이후 김일성의 카리스마적 권위로 인해 이에 의존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이는 관료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큰 요인 중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다.

지방행정에 있어 모든 업무가 중앙의 결정과 지시만을 집행하게 되어 있어, 실제의 지방인민회의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방행정의 집행기관은 上部의 지시와 결정의 실행을 위한 노력만을 하게되며 이를 위한 명령식 사업방식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지방의 일선기관에 이러한 명령식 관료주의가 팽배하게 되면 주민과 행정기관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며 이는 결국 내부적인 갈등을 유발시켜 체제전체에 대한 불신감을 낳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료주의의 극복은 지방인민회의가 명실상부한 자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행정업무를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실시하게 되면 극복이 가능하지만 북한의 지방인민회의는 중앙의 의지를 지방행정에 구체화시키는 실천적 기관으로서의 역할만을 할 뿐임으로 이에 대한 극복이 어렵다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산주의국가에서의 당의 행정 및 기타 공공단체에 대한 통제와 간섭은 절대적이라 할 수 있는데 북한도 예외는 아니다. 관료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하더라도 당성의 우월성은 계속되고 있으며 로동당은 중앙의 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지방의 모든 행정기관에 이르기까지 로동당 직속의 政治局(또는 政治委員會)을 설치하여 행정활동의 통제를 가하고 있다. 즉 필요한 경우에는 당이 감독의 차원을 벗어나 직접 행정기능을 장악, 집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북한의 지방행정은 형식상의 기관으로서만 존재할 뿐 자율권이나 지방주민의 참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일인지도체제의 수행기관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 VI. 結 論

북한의 政治.行政體制를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시각에서 볼 때, 북한은 당.국가 관료체제(party state bureaucracy)로 정치적 구조의 정통성이 국민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국민들의 정치적 요구 또한 자율적인 집단성을 통해 정책결정과정에서 반영되지도 않는다. 체제론적 관점에서 북한의 행정을 평가해 보면, 먼저 투입(input)에 해당되는 요소로서 정당의 경우 이는 조직화되지 않은 일반선거민과 정부를 연결하는 교량역할을 하고 선거민의 이익을 정책에 투입시키는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데 북한의 정당과 관료들은 일인지도체제를 확고히 하는 역할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북한의 노동당은 헌법상의 지위를 보장받고 있어 일반국민의 투입기능은 완전히 배제된 채 정책결정이 김일성, 김정일의 친족관계 및 당관료, 즉 정치엘리트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이익집단사회의 각 분야별 요구와 욕구를 표출하게 될 때 정당은 이 표출된 이익,요구를 수렴하여 정책결정기구에 투입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데 북한의 이익집단이라 할 수 있는 각종 대중조직들은 당의 정치적 의사를 대중에게 침투시키기 위한 수단적 존재로서 기능을 하고 있어 다원적 민주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이익집단의 투입기능은 수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투입의 수렴은 정책결정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데, 북한의 경우 정책결정에 관여하는 기관은 당대회와 당중앙위원회 등이 형식적인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정치.행정체제내에서 실질적인 정책결정권을 행사하는 기관은 主席이며 그 보조 자문기관으로서 중앙인민위원회가 있을 뿐이다. 즉 김일성이 행정의 수반으로서 중앙인민위원회를 장악하여 정책결정과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행사를 하고 있다.

산출(output)은 각종 정책 및 프로그램, 지시 등의 결정(decision)과

행위(action)로서 전환과정(conversion process)을 통해 나타난다. 북한의 산출은 김일성 일인독재체제유지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김일성에 의한 정책산출은 다양한 이익의 조직화가 미흡한 상태이다<sup>24)</sup>.

환류과정(feed-back)을 행정체제의 올바른 정책수립과 집행을 감시, 통제하는 기능이라고 볼 때 북한의 경우 환류과정기능의 원천은 당에서부터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모든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 입법기관, 언론기관은 당의 지시에 따르게 되며 당의 감독하에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행정기관에 의한 환류과정은 나타나기 어렵다.

북한에 있어 지방행정을 위시한 북한행정의 각 분야는 비록 전문성은 지녔으며 실제로는 당의 방침과 당의 최고지도층의 의사를 전달하고 집행하는 단순한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다. 행정은 당이 지시하는 勳員目標의 실현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므로 집행의 결과만을 중시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즉 개방체제(open system)의 투입→전환→산출과정이 배제된 폐쇄체제(closed system)로서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관료조직은 중앙에 집중화된 체제로서 중앙과 지방의 권한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중앙에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어 모든 구조, 기능이 단일체제로 일원화되어 있는 폐쇄체제의 극단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지방행정의 경우도 자율성이 배제된 상태에서 중앙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만을 담당하고 있어 실질적인 지방행정의 수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할 때 체제 전반에 걸친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북한의 지방행정의 효율성이나 주민복지차원의 행정업무는 수행되기 어려울 것이다.

24)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안해균, 『한국행정체제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6) 참조.

## ※참고자료

### <국내문헌>

- 김운태, “북한정권기관(행정기관)의 조직변천에 관한 연구”, 『통일정책』 (평화통일연구소, 1977).
- \_\_\_\_\_, 외, 『한국정치론』 (서울: 박영사, 1977).
- \_\_\_\_\_, “한국정치의 상황적 조건과 역사적 맥락: 문화적 조건”, 김운태 외 공저, 『한국정치행정의 체계』 (서울: 박영사, 1982).
- 김준위, 스칼라피노(공편), 『북한의 오늘과 내일』 (서울: 법문사, 1985).
- 김태서, “북한의 지방행정조직에 관한 연구”, 『통일정책』 (평화통일연구소, 1977).
- 도홍열, “북한의 사회구조와 체제변화전망”, 『통일문제연구』 (서울: 국토통일원, 1989. 봄).
- 박동서, 『한국행정론』 (서울: 법문사, 1978).
- 박완신, 『북한행정론』 (서울: 희성출판사, 1988).
- \_\_\_\_\_, “북한의 행정체제와 지방조직체계”, 『통일문제연구』 (서울: 국토통일원, 1989. 봄).
- \_\_\_\_\_, “북한의 지방행정체제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서울: 한국행정학회, 1991).
- 박창희, 『신북한정치론』 (서울: 일신사, 1988).
- 백완기, 『한국의 행정문화』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1982).
- \_\_\_\_\_, 『행정학』 (서울: 박영사, 1985).
- \_\_\_\_\_, “북한의 행정기능분석”, 『사회과학논집』 (서울: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1988).
- 안병만, 『한국정부론』 (서울: 다산출판사, 1989).
- \_\_\_\_\_, 양성철, “남북한 정치엘리트변동의 비교연구”, 1990.

- 안해균, 『현대행정학』 (서울: 다산출판사, 1987).
- \_\_\_\_\_, 『한국행정체제론』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6)
- 양성철, 『북한정치론』 (서울: 박영사, 1991).
- 양호민 외, 『북한사회의 재인식I』 (서울: 한울, 1987).
- 유세희, “북한의 인민혁명전략의 대남적용가능성 진단”, 『국토통일원』, 1976.
- 윤재풍, “체제접근방법론과 체제분석기법”, 『사회과학논총』 (광주: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76).
- 이기원, “북한의 군사력증강과 경제발전의 병진정책분석”, 『국토통일원』, 1976.
- 이상우 외, 『북한40년』 (서울: 을유문화사, 1989).
- 이용필, “주체사상과 그 기능”, 『북한의 정치』 (서울: 을유문화사, 1990).
- 이정식, “한국정치문화의 분석연구”, 『동국대논문집』 (사회과학편) (서울: 동국대학교, 1965).
- 장지호, 『지방행정론』 (서울: 진명출판사, 1981).
- 최봉수, “북한의 지방행정체제 구축과 정치전략적 특성”, 『통일문제연구』 (서울: 통일원, 1991).
- 한정일, 『한국정치행정론』 (서울: 박영사, 1972).
- 한태수, 『한국정당사』 (서울: 신태양사, 1961).
- 황성모, 『북한체제연구』 (서울: 고려원, 1987).

<자료>

- 서울신문사, 『북한인명사전』, 1990.
- 국토통일원, 『북한행정구역 및 산천지세』 (서울: 국토통일원, 1983).
- 내무부, 『한국지방행정사』, 1987.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북한의 지방행정』, 1990.

통일연수원, 『민주통일원-북한실태』, 1991.

<외국문헌>

- Almond, G.A., and Powell, G.B. Jr., *Comparative Politics: System, Process and Policy*, 2nd ed.(Boston: Little, Brown and Co., 1978).
- Almond, G.A., and Verba, S., *The Civic Culture: Political Attitudes and Democracy in Five Nation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2).
- Almond, G.A., and Coleman, J.S.(eds.), *The Politics of Developing Area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0).
- Bennis W.G., and Slater P.E.(eds.), *The Temporary Society* (Harper & Row, 1968).
- Bruce Cu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1).
- Dahl, R.A., *A Preface to Democratic Theor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6).
- Deutsch, K.W., "Social Mobilization and Political Development",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Sep.1961).
- Easton D., *The Political System* (New York: Alfred A. Knopf, 1953).
- Easton D., *A Framework for Political Analysi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5).
- Herbert G. Hicks, *The Management of Organization: A Systems Human Resources Approach* (New York: McGraw-Hill, 1972).
- Heady, F., *Public Administration: A Comparative Perspective* (New Jersey: Prentice-hall, 1966).
- Ostrom, V., *The Intellectual Crisis in American Public Administration* (Alabama: University of Alabama Press, 1974).
- Riggs, F.W.(ed.), *Frontiers of Development Administration*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1971).

- \_\_\_\_\_. *Administr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Theory of Prismatic Society* (Boston: Houghton Muffin, 1964).
- \_\_\_\_\_. *Prismatic Society Revisited* (Morristown, N.J.: General Learning Press, 1973).

## ◆ 北韓 刑事法體系에 관한 研究

白源基(仁川大)

### 〈 要 約 文 〉

1950년 3월 3일 채택된 북한 형법은 형법의 기초이념인 罪刑法定主義를 무시하고 현대 민주화시대의 예외를 다루는 법률이다. 소련과 동구라파에서의 민주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계속 예외적인 공산국가로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은 1974년에 사회주의 혁명의 완성을 위한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계급투쟁의 수단으로서 新刑法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완전히 공개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일부 밝혀진 내용을 중심으로 북한 형사법 체계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우선 북한 刑法體系에 관한 분석을 시도해 보아야 한다.

1) 북한 형법의 本質은 공산주의 완성을 위한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무기라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2) 북한형법의 法源은 주로 1926년에 제정된 “러시아 사회주의 연방 소비에트 공화국 형법전”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그 구성은 舊刑法의 경우, 제1편 총칙과 제2편 각칙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모두 23장 301개의 조문을 포함하고 있다.

新刑法은 5편 17장 215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舊刑法의 경우와 비교할 때 장의 수와 조문의 수가 대폭 줄어든 것임을 알 수 있다. 新刑法은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 刑事政策의 基本”이라는 새로운 편을 추가하여 공산주의 형사정책을 집행하는 무기로서의 형법의 사명을 규정하고, 또한 “犯罪 및 刑罰에 관한 一般原則”의 편을 새로 두고 있다. 아울러 각칙에 해당하는 조문들을 크게 反革命罪와 一般犯罪 그리고 軍事上 犯罪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3) 북한 형법의 基本原則은 다음과 같다: (1) 범죄개념의 實質性—(생략) (2) 형벌법규의 類推適用—북한 구형법 제9조와 신형법 제15조는 범죄적 행위로서 그에 직접 해당하는 규정이 형법에 없는 것에 대하여는 형법중 그 중요성과 종류에 있어서 가장 비슷한 죄에 관한 조항에 따라 그 책임의 기초와 범죄 및 형벌의 기초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형벌법규의 遡及的 適用—구형법은 원



칙적으로 중한 형벌의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는데 반하여, 신형법은 구법보다 신법의 형벌이 중하게 된 경우에 소급효를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4) 국가의 政治制度 및 經濟的 利益의 우선적 보호

4) 북한 형법의 犯罪論은 다음과 같은 特色을 가지고 있다 : (1) 범죄의 本質을 계급적 투쟁의 입장에서 파악하고 있다. (2) 범죄의 成立여부를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의 3단계로 나누어 평가하지 아니하고, 형법이 구체적인 범죄로 인정하는데 필요한 객관적 및 주관적 표징들의 총체라고 하는 범죄성립조건의 해당여부에 따라서 결정한다. (3) 類推制度를 범죄론의 일부로 취급하고 있다. (4) 범죄의 준비도 既遂와 동일하게 처벌한다. (5) 教唆者, 幫助者의 형벌을 독립적으로 결정한다.

5) 북한 형법의 刑罰論의 특색은 다음과 같다 : (1) 형벌의 계급적 본질과 사명이 강조된다. (2) 반혁명적 범죄와 일반범죄로 구분하여 형벌을 과한다. (3) 교화 노동형과 재산 몰수형이 있다. (4) 형벌의 量定이 자의적이다. (5) 선고유예제도는 없고, 집행유예제도만 있다. (6) 형법 각칙의 특색과 내용(생략)

그 다음에 북한의 刑事訴訟節次에 관해 고찰해 보기로 한다.

1) 搜查와 豫審 : 북한형사소송법은 수사사항을 상세하게 법률화하고 있으며, 수사과정에 있어서의 수사사항의 사법판단제도로써 예심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2) 公訴制度 : 형사소송법은 검사소송주의(국가소송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한편, 법률의 유보사항으로 하는 피해자가 속한 직업동맹, 농민동맹, 기타의 사회단체대표와의 공소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경미한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와 공소권을 동시에 인정하고 있다.

3) 公判制度 : 형사소송법은 공판제도에 관하여 공판적 수속과 공판으로 나누어 당사자주의적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판제도의 원칙, 피소자 출석의 원칙, 변호인 공판정 출석의 원칙,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권 또한 검사의 무죄변론의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다.

4) 證據法上 制度 : 소송법은 실체적 진실주의를 택하고 있으며, 증거채택의 자율화원칙이 적용되고, 自由心證主義를 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증거전단주의를 드러내고 규문주의적 실체주의적 진실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일당독재적 증거법이라고 할 수 있다.

5) 上訴審 節次 : 북한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단 한번의 상소만이 인정된다.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피소자 및 그의 변호인과 검사에 한한다. 항소심에 의한 재판은 그 재판에 대하여 더 이상 상소 또는 항의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최종적이며 확정력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刑事政策에 관하여 논하여야 할 것이다.

1) 형사정책의 基礎와 根據 : 북한형사정책은 마르크스 범죄학 이론을 기반으로 한 소련의 형사정책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그 근거는 잠정적인 범죄현상으로 부터의 “사회의 보호”, 즉 다시 말하면 완전한 사회주의 국가로 성숙되어 가는 발전단계의 사회를 방해요소가 되는 위험한 행위로부터 방위하고자 하는 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2) 형사정책의 基本的 特徵 : (1)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위한 限時的인 형사정책 (2) 공산주의 체제유지를 위한 영속적인 형사정책

3) 형사정책의 犯罪學的 考察 : (1) 범죄의 개념 ;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및 그의 수립된 법률질서를 침해할 사회적 위험성이 있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일체의 가벌적 행위로 규정한다. (2) 범죄원인론 ; 범죄의 원인을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에서 찾는 평면적인 분석과 고찰에 근거한 근시안적 생각을 지니고 있다. (3) 범죄현상론 ; 자본주의체제의 모순에 기인하여 자본주의 사회구조가 필연적으로 제기하는 유산자와 무산자간의 대립, 갈등에서 범죄현상의 기원을 찾는다. (4) 범죄대책론 i) 형벌 의미와 목적 ; 북한체제의 보호와 사회주의 교육의 도구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그 목적은 옹보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ii) 형법의 집행유예제도 ; 교화, 노동 또는 징역의 선고를 받은 자로서 그의 사회적 위험성의 정도에 비추어, 그를 격리하거나 교화노동을 집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인정된다. iii) 보안처분제도 ; 북한의 경우, 의료처분과 교정처분을 인정하고 있다.

4) 行刑制度 : (1) 만기전 석방제도 ; 북한의 경우는 인민민주주의제도에 충성을 나타내는 자에게만 인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2) 교화소에서의 출소-사면(생략) (3) 특별독재대상구역에서의 행형 ; 특별독재대상구역은 정치범의 집단수용소로서 이곳에서의 행형은 매우 비인간적이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

5) 북한 刑事政策의 성격 : (1) 공산주의 형사정책으로서 인민민주주의와 사회주의 형사정책이다. (2) 정치에 대한 하위개념으로서의 형사정책이다. (3) 죄형전단주의의 형사정책이다. (4) 비인도주의적 형사정책이다.

## I. 머리말

소련의 위성국가로서 共產主義의 어두운 그늘에서 헤매던 동구라파 諸國에서 개혁과 민주화의 거대한 물결이 휩쓸기 시작하면서, 결국 공산주의의 창시국으로서 동구라파에서 왕국으로 존속해온 소련이 「共產主義의 沒落」을 宣稱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현재의 상황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자칭하면서 마르크스(Marx)의 唯物論에 입각한 共產主義의 철저한 신봉자로서 世界史의 흐름에 오히려 逆行하여 例外的인 異常國家로 영속하려고 하는 北韓도 결국은 공산국가로서의 종말을 고하게 될것 이라는 소중한 希望이 우리들 마음속에 점차 커져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소중한 희망이 실현되어 빠른 시일내에 우리의 祖國이 統一될 수 있다는 생각이 타당성 있다고 인정되는 현 시점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北韓의 法體系를 고찰하는 것 또한 다른 분야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實益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우리는 본 논문을 통하여 『北韓의 刑事法體系』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북한은 1926년에 제정된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Russian Soviet Federated Socialist Republic) 刑法」을 거의 그대로 모방하여 1950년 3월 3일에 舊刑法을 제정하였다. 그런데 북한은 1972년 12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 5기 제 1차회의에서 새로운 헌법을 채택하여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 이유는 첫째로, 구헌법을 시행한 이후 24년의 기간동안에 김일성이 추구해온 사회주의 건설의 위대한 성과를 토대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새로운 사회주의 헌법의 제정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는 점과, 둘째로, 북한에 상당히 확립된 김일성유일체제와 조선노동당의 독재를 새로운 헌법에 제도적으로 확실히 인정하여 보다 강화하기 위한 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와같이 신헌법을 제정함에 따라서 북한은 1974년 12월 19일에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서 신헌법을 채택 제정하였다. 그러나, 북한 신헌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완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채택한 법령은 당기관지나 정부기관지에 발표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부세계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조차도 신헌법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게

되어 있으며, 다만 법률해설원에 의하여 주민에게 법령에 대한 선전과 교육활동이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북한 신형법에 관한 내용의 일부가 일본에서 활동하는 북한 형법학자에 의하여 공개되었다. 이에 즈음하여 북한의 형사법체계를 재조명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본 연구를 통하여 북한 신형법의 내용을 분석하여 보며, 그 내용을 구형법과 비교하면서 형사소송절차를 고찰해 보고 마지막으로 이를 토대로, 북한 형사정책의 내용을 검토하기로 한다. 또한 본 연구는 「북한의 형사법 체계」를 파악하여 북한의 형사법 제도를 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데 그 목표를 두기로 한다.

## II. 北韓 刑法의 分析

### 1. 刑法의 法源과 本質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채택에 관하여”<sup>1)</sup>라는 명칭으로 1950년 3월 3일에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 5차 대회에서 채택된 북한 구형법은 1950년 4월 1일 부터 발표되어 시행되었다.<sup>2)</sup> 그후 북한은 1974년 12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서 구형법의 체계를 다소 수정하여 새로운 형법<sup>3)</sup>을 채택하여 1975년 2월 1일 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행하고 있다. 이와같이 북한에서는 소위 최고인민회의에 의해서 제정된 「法令」과 「政令」이 형법의 법원이 되는 것이다.

북한의 경우 형법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sup>4)</sup> 즉 형법은 “조선에 세워진 노동자 농민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전복하여 혁명위업의 실현을 반대하는 반혁명범죄자들을 진압하고 社會主義制度의 공고한 발전에 지장을 주는 일반 범죄자들을 제재할 목적으로 국가가 제정한 범죄 및 형벌을 규정한 법규범의 총체”인 것이다. 따라서 북한 형법은 프로레타리아혁명을 완성하여 社會主義制度를 발전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본질은 결국 階級的 性質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계급적 성질은 우선 반혁명범죄자들에 대한 진압과 일반범죄자들에 대한 제재를 통하여 노동자 농민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보호하고자 하는 점에서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다. 북한형법은 프로레타리아 革命에 기초한 공산주의체제의 김일성에 의한 독재를 용이하게 만드는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하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법령 및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법령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임위원회, 1954.7.12. 45면 이하 참조.

2) 이 북한 구형법은 1953년 9월 18일 제정되어 1953년 10월 3일부터 시행된 대한민국 형법보다 약 3년 6개월 정도 빨리 제정·시행되었다.

3) 1950년 3월 3일 채택된 형법을 북한 구형법이라고 부르고 이후 1974년 12월 19일 채택된 이 새로운 형법을 북한신형법이라고 약칭하기로 한다.

4) 김근식, 형법학I,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평양, 1986.p6

했다.<sup>5)</sup>

## 2. 刑法典의 構成

### (1) 구형법전의 구성

북한 구형법은 제 1 편 총회와 제 2 편 각칙으로 크게 대별하여 제 1편 총회에 서는 12장으로, 제 2 편 각칙은 11개장으로 총 2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구성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 1 편 총 회

제1 장 일반적 규정(제1조 - 제6조)

제2 장 형사정책의 일반원칙(제7조 - 제17조)

제3 장 예비와 미수 (제18조 - 제21조)

제4 장 공범 (제22조 - 제26조)

제5 장 형벌(제27조 - 제45조)

제6 장 형벌의 적용절차 (제46조 - 제49조)

제7 장 범리의 병합(제50조 - 제52조)

제8 장 집행유예 (제53조 - 제55조)

제9 장 만기전 석방(제56조 - 58조)

제10장 형사소추의 시효(제59조 - 60조)

제11장 사면 (제61조)

제12장 전과의 소멸 (제62조 - 63조)

---

5) 북한 형법 제4조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형법의 임무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주석을 보위하고 공화국 정부의 노선과 정책을 옹호 관철하며, 모든 범죄적 침해로부터 노동자·농민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고, 인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하며,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 제도와 질서를 세워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역사적 위업에 기여하는데 있다.”라고 규정한다.

## 제 2 편 각 칙

- 제13장 국가주권적대에 관한 죄(제64조 - 제81조)
- 제14장 국가관리 침해에 관한 죄(제82조 - 제102조)
- 제15장 국가소유 사회 및 협동단체소유침해에 관한 죄(제103조-제111조)
- 제16장 인신침해에 관한 죄(제112조 - 146조)
- 제17장 공민의 재산침해에 관한 죄 (제147조 - 167조)
- 제18장 노동법령 위반에 관한 죄 (제168조 - 177조)
- 제19장 공무상 범죄 (제178조 - 193조)
- 제20장 경제에 관한 죄 (제194조 - 제217조)
- 제21장 관리질서 침해에 관한 죄(제218조 - 제258조)
- 제22장 사회적안전 및 인민보건 침해에 관한 죄(제259조 - 제264조)
- 제23장 군사상 범죄(제265조 - 제301조)

이와같이 북한 구형법은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규정들이 내용상 포괄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구형법은 대한민국 형법과는 달리 개인적인 법익보다 國家的·社會的 法益을 보다 더 보호하고 있음을 특기할 수 있겠다.<sup>6)</sup>

## (2) 신형법전의 구성

북한 구형법은 총 2편 23장 30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북한 신형법은 총 5편 17장 21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조문의 수가 축소되어 규정되어 있다. 신형법은 총칙의 경우에 “조선인민주의 공화국 형사정책의 기본”이라는 편과 “범죄 및 형벌에 관한 일반원칙”이라는 편을 새로이 추가하였으며, 또한 각칙에 해당하는 조문들은 반혁명죄·일반범죄·군사상범죄의 3가지로 크게

6) II.4형법의 기본원칙 (4) 국가정치제도 및 경제적이익의 우선적보호 참조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다. 신형법에 있어서 각칙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sup>7)</sup>

1) 『反革命犯罪』

- ① 국가주권과 사회주의 제도를 반대하는 반혁명범죄(제51조 - 제62조)
- ② 조선민족해방투쟁을 반대하는 반혁명범죄(제63조 - 제64조)
- ③ 반혁명범죄와의 투쟁을 방해하는 범죄(제65조 - 제66조)

2) 『一般犯罪』

- ① 사회주의경제를 침해하는 범죄(제67조 - 제110조)
  - i) 사회주의 소유를 침해하는 범죄
  - ii) 사회주의경제관리질서를 침해하는 범죄
  - iii) 국토관리질서를 침해하는 범죄
- ② 사회주의 문화를 침해하는 범죄(제111조 - 제117조)
- ③ 국가의 행정질서를 침해하는 범죄(제118조 - 제148조)
  - i) 국가의 행정질서를 침해하는 범죄
  - ii) 관리일군의 직무상 범죄
- ④ 사회주의적 공동생활질서를 침해하는 범죄 (제149조 - 제159조)
- ⑤ 국민의 생명·재산을 침해하는 범죄 (제160조 - 제180조)
  - i) 국민의 생명·건강·인격을 침해하는 범죄
  - ii) 국민의 개인소유를 침해하는 범죄

3) 『軍事上 犯罪 (제181조 - 제215조)』

---

7) 북한 신형법의 경우 총칙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도 공개되지 아니하여 설명할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또한 각칙의 경우도 제 51조 - 제180조 까지만 공개되어 있을 뿐이다.

### 3. 新·舊刑法의 比較

#### (1) 總則上 規定의 內容 比較

##### ① 刑法의 體制와 基本原理

1) 刑法의 體制 : 구형법은 제 1 편 총회와 제 2 편 각칙으로 나누고 있으나 신형법은 총 5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ii) 刑法의 指導理念 : 구형법은 제1편 제2장 “형사정책의 일반원칙”에서 범죄의 개념<sup>8)</sup>과 그 성립조건<sup>9)</sup>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나 신형법은 제 1 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및 그에 수립된 법률질서”를 보호하는 것을 형법의 주된 기능으로 보았으나 신형법은 제 1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정책의 기본”에 관한 규정에서 主體思想을 형법의 지도이념으로 명문화 하고 있다.

iii) 刑法의 社會保護的 機能<sup>10)</sup> : 구형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및 그에 수립된 법률질서를 보호하는 것을 형법의 주된 기능으로 보았으나 신형법은 “노동자·농민의 주권과 사회주의 제도와 법질서”<sup>11)</sup>를 보호하는 것을 그 주된 기능으로 규정하고 있다.

##### iv) 刑法의 適用範圍

a. 時間的 適用範圍 : 구형법은 개별적인 예외의 경우<sup>12)</sup>를 규정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중한 형벌의 소급효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신형법은 신법의 형벌이 구법의 형벌보다 중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소급효를 허용하고 있다.<sup>13)</sup>

8) 북한구형법 제 7조 참조

9) 동법 제 8조 참조

10) 동법 제17조 참조

11) 북한신형법 제 4조 참조

12) 북한 구형법 제17조 참조

13) 북한 구형법은 1945.8.15이전의 범죄행위로서 “그성질상 인민민주주의의 조선의 환경에 비추어 사회적 위험성이 없을 때에는 형사소추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신형법은 이를 삭제하였다. 그러나 신형법은 제63조에서 구형법 제 79조와 유사한 내용의 민족반역죄를 규정하기 때문에 신형법 제정 이전의 소위 반민족행위에 대하여는 신형법을 소급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b. 場所의 適用範圍 : 구형법은 “국가제도의 기초와 군사상 위력을 침해하는 죄”의 경우에만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하여 적용 가능하였으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거나 조선공민을 침해하는 죄”를 범한 모든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게 되어 형법의 적용범위가 확대 되었다.<sup>14)</sup>

## ② 犯罪論

i) 犯罪의 概念 : 구형법은 범죄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및 그에 수립된 법률질서를 침해한 사회적 위험성이 있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일체의 가벌적 행위”로 정의 하였으나<sup>15)</sup>, 신형법은 “노동자·농민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와 법률질서를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하는 행위를 줄 정도의 위험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다.

### ii) 未遂論과 共犯論

a. 未遂犯·共犯에 대한 量刑의 원칙 : 구형법은 범죄의 준비와 미수 그리고 공범의 행벌을 정하는 데 있어서 “범죄행위의 위험성 정도”와 “범죄행위의 위험성 정도”를 참작할 사유로서 규정하였으나<sup>16)</sup>, 신형법은 “범죄행위의 위험성 정도”만을 고려할 사유로 인정하여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sup>17)</sup>

b. 共犯의 形態 : 구형법은 공범의 형태를 정범자·교사자·방조자로 한정하여 규정하였으나, 신형법은 「범죄조직체」에 의한 범죄를 공범형태의 범죄로 인정하고 있다.

## ③ 刑罰論

i) 刑罰의 種類 : 신형법은 구형법상 인정된 “벌금형”과 “일정한 직업 또는 영업의 금지형”을 폐지하고, “일정한 권리의 박탈형”<sup>18)</sup>을 「선거권박탈형」으로 또한 “일부 또는 전부의 재산 몰수형”은 「전부의 재산몰수형」으로 축소하여 대체하였다.

14) 북한 신형법 제 58조, 제 64조 참조

15) 북한 구형법 제 7조 참조

16) 북한 구형법 제20조 참조

17) 형벌양정의 일반적원칙으로서 “범죄자의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은 여전히 신형법에도 남아 있으므로, 그 의미는 반감되고 있다.

18) 구형법은 권리박탈형을 기본형으로도 선고할 수 있고 부가형으로도 선고할 수 있게 하였으나, 신형법은 선거권박탈형을 부가형으로 한정시켜 놓았다.

ii) 死刑의 執行制限 : 구형법은 사형의 집행제한을 범죄행위당시 18세 미만의 자에 대해서만 인정하였으나<sup>19)</sup> 신형법은 그 집행의 제한연령을 17세 미만의 자로 낮추었다. 결국 사형의 집행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iii) 教化勞動의 刑期 : 구형법은 “1일 이상 1년까지”로 규정하였으나<sup>20)</sup> 신형법은 “6개월이상 3년까지”로 기간을 늘렸다.<sup>21)</sup>

iv) 刑罰의 量定

a. 加重條件과 減輕條件 : 구형법은 형벌의 양정의 경우 무겁게 보는 조건을 6가지로<sup>22)</sup> 또 가볍게 보는 조건을 9가지로<sup>23)</sup> 규정하고 있었으나, 신형법은 이 두가지 조건을 모두 5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b. 減輕의 경우 : 형법에 규정된 법정형보다 경한 형을 선고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구형법은 그 법정형보다 경한 같은 종류의 또는 다른 종류의 형벌을 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나<sup>24)</sup>, 신형법은 이 경우 다른 종류의 형벌을 선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c. 犯罪併合의 경우 : 이 경우에 구형법은 형벌양정의 기본원칙으로 “흡수주의”를 택하였으나<sup>25)</sup> 신형법은 “총체적 위험성 평가주의”를 원칙<sup>26)</sup>으로 하고 있다.

V) 刑事訴追의 時效 : 신형법은 공소시효기간을 구형법보다 연장하였으나, 구형법의 경우와는 달리 반혁명범죄와 고의적 살인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의 제한을 인

19) 북한 구형법 제 30조 참조

20) 동법 제 33조 참조

21) 교화노동형을 선고받은자가 국가에 납입하여야 할 노동보수부분에 대하여 구형법은 보수중 25% 이하로 규정하였으나 신형법은 30%로 높였다.

22) 북한 구형법 제 47조 참조

23) 동법 제 48조 참조

24) 동법 제 49조 참조

25) 동법 제 50조 참조

26) 총체적 위험성 평가원칙이란 「먼저 각 범죄별로 해당하는 형벌을 각각 정한 다음 다시 그 범죄들의 총체적 위험성을 평가하여 그 범죄들 가운데서 형벌을 가장 높이 정한 조항에 그만큼 형벌을 높이 정하고 최종적으로 그 조항의 형벌에 처하는 원칙」을 말한다.

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sup>27)</sup>

vi) 執行猶豫 : 구형법은 교화노동형이나 5년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집행유예를 허용하였으나<sup>28)</sup>, 신형법은 5년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에만 집행유예를 인정하여 반혁명 범죄자에 대하여는 여하한 경우이든 집행유예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vii) 保安處分

a. 醫療處分 : 구형법은 행위당시에는 정상적 상태에 있었으나 판결선고 당시에 정신병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하여 의료처분만을 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sup>29)</sup>, 신형법은 우선 의료처분을 적용한 후에 정신상태가 회복되면 반드시 형벌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b. 矯正處分 : 구형법은 교정처분의 대상을 14세 -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규정하였으나<sup>30)</sup>, 신형법은 14세 - 17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그 적용범위를 축소하였다.

## (2) 各則上 規定의 內容比較

### ① 反革命犯罪

i) 條文의 數 : 구형법에서는 “국가주권 적대에 관한죄”로서 18개의 규정이 있었으나, 신형법은 반 혁명범죄로서 16개의 규정으로 축소하였다.

ii) 構成要件 : 신형법에 있어서 반혁명범죄의 구성요건은 구형법의 경우보다 더 추상적이다.

27) 구형법상으로는 국가주권적대에 관한 죄를 지은 자가 재판소의 자유재량에 의해 형사소추시효의 적용을 받을 여지가 일부나마 허용되었으나, 신형법에 의하면 반혁명죄를 저지른 자가 형사소추시효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여지는 완전히 없게 되었다.

28) 북한 구형법 제 53조

29) 동법 제 12조 2항

30) 동법 제 14조

31) 북한신형법 제 66조 참조

iii) 特殊犯罪類型 : 신형법은 구형법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반혁명범죄방임죄를 새로운 범죄유형으로 규정하였다.<sup>32)</sup>

## ② 一般犯罪

i) 條文의 數 : 구형법의 경우 183개의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신형법은 114개의 규정으로 축소하였다.<sup>33)</sup>

11) 刑 罰 : 신형법은 구형법보다 일반범죄의 법정형을 완화시켰다.

③ 行政犯罪의 刑事犯化 : 구형법은 행정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들은 형사범으로 하여 백지형법의 형태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으나, 신형법은 이러한 경우를 다소 정리하여 규정하고 있다.

④ 尊屬에 대한 犯罪 : 구형법 125조에서는 존속살인, 존속상해등과 같은 전통 문화에 기초한 존속에 대한 범죄유형이 있었으나, 신형법은 이러한 범죄유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sup>34)</sup>

## 4. 刑法의 基本原則

### (1) 犯罪概念의 實質性

대한민국 형법은 일반적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며 위법하고 유책한 행위를 범죄로 인정하는 범죄의 형식적 개념에 그 기초를 두고 있으나, 북한 신형법은 “노동자·농민의 주권과 사회제도와 법질서를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하는 형벌을 줄 정도의 위험한 행위”를 범죄로 인정하여 「犯罪의 實質的 概念」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같이 형법해석과 죄형법정주의에 기초한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강조하는

32) 특히 일반범죄중 개인적 법익에 관련된 범죄(구형법상 인권침해에 관한죄와 공민의 재산침해에 관한 죄, 신형법상 공민의 생명·재산을 침해하는 범죄)의 조문수가 구형법의 56개 조문에서 신형법의 21개 조항으로 대폭 축소된 점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33) 아울러 종래의 악습을 타파하기 위해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축첩죄도 구형법에서는 처벌의 대상(구형법 제 256조)이었으나 신형법 채택시 폐지하였다.

범죄의 형식적 개념을 배척하는 북한 형법은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이면 예외로 인정하는 예시규정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북한 형법은 범죄의 실질적 개념을 형벌법규의 유추적용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로서 이용하고 있다.

## (2) 刑罰法規의 類推適用

북한 신형법 제 15조는 “범죄적 행위로서 그에 직접 해당하는 규정이 형법에 없는 것에 대하여는 그 중요성과 종류에 있어서 가장 비슷한 죄에 관한 조항에 따라 그 책임의 기초와 범죄 및 형벌의 기초를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형벌법규의 유추적용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신형법은 범죄의 개념을 “노동자·농민의 주권과 사회주의 제도와 법질서를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하는 형벌을 줄 정도의 위험한 행위”로 정의하고 있어서 북한의 경우 사회주의의 법질서에 위반한 행위로서 위험성이 있으면 곧 범죄로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형법에 일정한 형벌법규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다른 규정을 유추하여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의적인 처벌이 항상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며 결국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sup>34)</sup>

## (3) 刑罰法規의 適及的 適用

북한 구형법 제5조는 “죄를 범한 자는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제 6조는 “어떤 행위에 대한 형벌적용을 폐지하거나 또는 그에 대한 책임을 경하게 하는 법령은 그 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수행한 행위에 대하여서도 적용한다”라고 하여 형식적으로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구형법 제 67조와 제79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실제에 있어서 형벌불소급의

34) 북한 구형법 제 9조 참조; 원래 형벌법규의 유추적용제도는 1922년 러시아공화국 형법전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였으며, 1926년의 스탈린형법도 이 제도를 인정하였다.

35) 강구진, 북한법의 연구, 박영사, 1975. p. 182

원칙은 예외이고 원칙적으로 형벌의 소급적용이 인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형법은 다음과 같이 일반적으로 형벌법규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 신법에서 어떤 범죄에 대한 형벌의 적용을 폐지하였을 경우, 즉 구법이 어떤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신법이 범죄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소급을 적용한다. 또한 신법이 구법보다 형벌을 중하게 규정한 경우라 할지라도 구법시행중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신법의 중한 형벌을 적용한다. 또한 신법이 구법보다 형벌을 경하게 규정한 경우에 구법을 소급 적용한다.<sup>36)</sup>

#### (4) 國家政治制度 및 經濟的 利益의 優先的 保護

북한 구형법 제 1 조의 “형법은 죄를 범한 자에게 본법에 규정한 형벌을 적용함으로써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및 그에 수립된 법률질서를 범죄행위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과업으로 한다”라는 규정과 동법 제 20장 경제에 관한 죄에 관한 규정들을 살펴보면 형법이 국가정치제도와 경제적 이익을 개인적 이익보다 더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신형법 제 4조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형법의 임무는 인민공화국 주석을 보위하고 공화국 정부의 노선과 정책을 옹호 관철하며, 모든 범죄적 침해로부터 노동자·농민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고, 인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하며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 제도와 질서를 세워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역사적 위업에 기여하는 데 있다”라고 규정하여 이 점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

36) 이와같이 북한형법은 행위자에게 불이익한 형벌적용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으나, 북한 형법이 구법에서 죄로 보지 않던 행위를 신법에서 죄로 인정하는 경우까지 신법을 소급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아니다.



## 5. 犯 罪 論

### (1) 犯罪의 本質

북한 신형법은 전술한 바와 같이 범죄의 개념을 “노동자·농민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와 법질서를 침해하는 가벌성 있는 위험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경우 범죄의 본질을 “노동자·농민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와 법질서”를 침해하는 점에 있는 것이며<sup>37)</sup>, 그 본질은 계급성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북한에 확고하게 수립된 노동자·농민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침해하고, 노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인민들의 사회주의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형벌을 줄 수 있는 위험한 행위, 즉 범죄로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경우 범죄는 노동자·농민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와 법질서를 침해하는 위험한 행위인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인정되어지게 한다. 위험한 행위로 판단되어지면 예외 없이 범죄로 인정되고 반면에 그렇지 아니하면 범죄와 유사할지 모르겠으나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sup>38)</sup>

### (2) 犯罪의 成立條件

북한 형법에 있어서 범죄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범죄성립조건 또는 범죄표징이라고 한다. 범죄성립조건은 일반적으로 「북한 형법이 일정한 사회적 위험행위를 구체적인 범죄로 인정하는 데 필요한 객관적 및 주관적 표징들의 총체」를 의미한다.<sup>39)</sup>

일반적으로 북한 형법학에 있어서 범죄성립조건은 범죄에 의하여 침해되는 사회

37) 북한형법자체가 노동계급적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형법이 규정하고 있을 범죄의 개념 역시 본질적으로 계급성을 띠고 있음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38) 김규승,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형사법제, 일본, 사회평론사, 1988. p.254 ; 김근식, 형법학I, 평양, 김일성종합대학 출판사, 1986, p. 81

39) 심현상, 조선형법해설 - 총칙, 평양, 국립출판사, 1957. p. 108

관계, 범죄의 객관적 표징, 범죄의 주관적 표징 그리고 범죄라고 되는 표징의 4가지 필수적 요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로, 범죄에 의하여 침해되는 사회관계를 범죄성립의 일반적 요소로서 북한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모든 범죄는 “사회주의적 사회관계”를 침해하는 것이다.<sup>40</sup>

둘째로, 범죄의 객관적 표징은 “범죄적 행위”와 “범죄적 결과”를 포함하는 범죄성립요소이다. 그리고 범죄적 행위와 범죄적 결과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sup>41</sup>

셋째로, 범죄의 주관적 표징은 “범죄적 고의”와 “범죄적 과실”을 내용으로 한다. 범죄적 고의와 범죄적 과실은 “자기행위로 인한 위험한 결과 발생에 대한 주관적 태도의 한 형태”로 정의된다.<sup>42</sup>

넷째로, 범죄자로 되는 표징은 범죄의 주체를 의미하며 사회적 위험행위를 범한 14세 이상의 책임능력자만이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북한 형법상 책임능력은 자기가 수행하는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의 상격을 이해하고 그 행위를 분별하여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 (3) 「行爲의 社會的 危險性」의 排除 事由

북한 형법학자들은 대한민국 형법상 違法性阻却事由의 개념에 대응한 “행위의 社會的 危險性을 배제하는 사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북한 형법은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을 행위의 사회적 위험성을 배제하는 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며, 학설상으

40) 북한 형법이 예상하는 모든 범죄는 사회주의적 사회관계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가지나, 개별적인 범죄가 침해하는 구체적 사회관계는 모두 동일한 것이다.

41) 북한 형법은 대한민국 형법과는 달리 인과관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인과관계 문제를 이론과 실무에 맡기고 있다. 그런데, 범죄적 행위와 범죄적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확정하는 것은 형법상 형사책임의 기초가 되며, 또한 형사책임의 정도와 범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42) 김규승, 전계서, p. 273 ; 김근식, 전계서, p. 100

로는 피해자의 승낙, 사회적으로 유익한 직업적 기능의 수행, 의무적 명령의 집행 그리고 자기권리의 행사의 4가지 경우가 그 사유로서 논의되어지고 있다.<sup>43</sup>

북한 형법의 경우 행위의 사회적 위험성이 범죄 개념의 필수적 요소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한 행위가 사회적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범죄성립조건을 충족하고 있을지라도 범죄가 당연히 성립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이와같이 사회적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일정한 행위를 적법하게 하는 사유를 행위의 사회적 위험성을 배제하는 사유라고 하는 것이다.

첫째로, 북한 형법상 正當防衛는 국가적·사회적 이익이나 타인 또는 자기 자신의 적법한 이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인의 공격에 대하여 방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정당방위의 成立條件은 다음과 같이 공격행위에 대한 조건과 방위행위에 대한 조건으로 구성된다.;

(1) 攻擊行爲에 대한 條件 : ①공격행위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위험성이 있는 행위여야 한다. ② 공격이 현재 수행되거나 절박하고 위험한 것이야 한다. ③공격이 실제적·현실적으로 강행되어야 한다.

(2) 防衛行爲에 대한 條件: ①방위행위는 공격자의 신체나 일정한 재산에 대하여 타격을 가하거나 손해를 야기하는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방위행위는 국가적·집단적 이익 또는 타인이나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③방위행위는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로, 緊急避難은 법익에 대한 절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다 작은 법익을 침해할 수 밖에 없는 사회적으로 유익한 긴급대책적인 행위이다. 긴급피난의 성립조건은 다음과 같이 위험조건과 피난조건으로 나누어 진다.;

(1) 위험조건 : ①형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위협하는 위험이 있어야 한다. ②현재의 절박한 위험이어야 한다. ③실제적·현실적인 위험이어야 한다.

(2) 피난조건 : ①피난행위는 국가적·사회적이익 또는 타인이나 자기의 적법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②피난행위는 위험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수

43) 김규승, 전계서, pp.291 - 303; 김근식, 전계서, pp.117 - 129; 심현상, 전계서, pp.175 - 189

단이어야 하며 최소한의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③피난행위에 의한 손해는 위험에 의한 손해보다 작아야 한다.

셋째로, 被害者의 承諾은 학설상 행위의 사회적 위험성의 배제사유로 인정된다. 피해자의 승낙이 인정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승낙은 개인의 재산상 권리와 인격적 이익에 대한 침해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②승낙자가 자신의 재산상 권리 또는 인격적 이익을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승낙이 행해져야 한다. ③승낙은 사회적으로 유해한 목적으로 행해져서는 아니된다. ④승낙은 실재적이어야 한다.

넷째로, 社會적으로 有益한 職業的 機能의 /遂行도 행위의 사회적 위험성을 배제하는 사유로 인정된다. 그 성립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직업적 기능의 수행은 사회적으로 유일한 목적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②직업적 기능의 수행은 적절한 방법과 수단을 취하여 행해져야 한다. ③의료적 기능의 수행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환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로, 義務的 命命의 執行이 행위의 사회적 위험성을 배제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상부에서 그에 소속된 하부에게 명령이 하달되어야 한다. ②명령은 규정된 권한의 범위내에서 행해져야 한다. ③명령은 범죄에 대한 지시를 그 내용으로 해서는 안된다. ④명령은 법령상 요구되는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여섯째로, 自己權利의 行使가 사회적 위험성없는 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권리의 범위내에서 법령상 요구되는 일정한 형식적 절차에 대해서 행해져야만 된다.

#### (4) 未遂論<sup>44)</sup>

북한 형법에 있어서 “犯罪의 準備”는 범죄실행에 필요한 기구 또는 수단을 찾는 행위, 갖추는 행위, 설치하는 행위등의 범죄실행에 필요한 조건들을 마련하는 행위를

44) 미수론 전반에 관하여는 김규승, 전제서, pp.303 - 313; 김근식, 전제서, pp.130 - 138; 심현상, 전제서, pp.190 - 206 참조

지칭한다.<sup>45)</sup> 범죄의 준비는 형법이 보호하는 사회관계를 침해하지는 않았으나 범죄적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이며 처벌되어야 한다고 북한 형법학자들은 주장한다. 북한 형법상 범죄의 미수는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실행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를 말하여 未完了未遂와 完了未遂로 구분할 수 있다<sup>46)</sup>. 범죄의 기수는 범죄인이 시행한 행위가 범죄성립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표징들을 구비한 범죄의 완수된 형태를 의미한다.

북한 형법은 범죄의 준비와 미수를 범죄의 기수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그 형벌을 범죄행위의 위험성 정도 그리고 기수에 이르지 못한 원인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또한 북한 형법은 고의범의 경우에 범죄의 준비와 미수를 모두 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각칙에 범죄의 준비와 미수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실제로 범죄의 준비와 미수는 범죄의 기수와 동일한 형법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어진다.

아울러 북한 형법은 대한민국 형법의 中止犯에 해당하는 自發的 中止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自發的 中止制度는 범죄의 실행을 시작한 자가 범죄적 결과가 발생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범죄의 실행을 중지한 경우에 그러한 행위가 다른 犯罪成立條件을 구비하지 않는 한 刑事責任을 免除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리고, 북한형법은 不能未遂의 문제를 위임하여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형법학자들은 “不能的 未遂”를 불능적 수단에 의한 미수와 불능적 객체에 대한 미수로 구별하여 불능적 예비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 (5) 共犯論

북한형법은 공범의 한 형태로서 共同正犯에 관하여 직접명문에 규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단독정범과 구별되어야 할 공동정범의 成立要件도 엄격하게 따지지 아

45) 북한구형법 제 19조 참조

46) 동법 제 18조 참조

니하며, 다만 형벌은 양정하는데 있어서 가중조건의 하나로서 “여럿이 공모하여 죄를 범하였을 때”를 포함하여 고려할 뿐이다. 따라서 형벌의 입장과 이론적 견해는 공동정범을 공범으로 보기보다는 正犯으로 취급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sup>47)</sup>

북한형법은 間接正犯에 관하여도 직접규정을 두지 아니하며 이론상으로 그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sup>48)</sup>. 또한 教唆犯과 放助犯은 범죄의 사회적 위험성을 근거로 하여 처벌하며, 교사나 방조를 받은 정범이 실제로 범죄를 행하였는가의 여부는 형벌을 양정함에 있어서 고려할 뿐이다. 즉 공범의 성격을 철저하게 공범독립성설의 입장에서 파악하고 있다. 이어서 교사범의 경우에 교사의 미수, 즉 실패한 교사와 효과없는 교사를 “성공못한 미수”라고 하여 범죄의 준비로 처벌한다. 아울러 방조범의 경우도 방조의 미수를 “성공못한 방조”라고 하여 범죄의 준비로 처벌한다.<sup>49)</sup> 결국 북한 형법은 정범·교사범·방조범을 동일한 규정에 의하여 처벌하며, 다만 형벌을 양정할 때 범죄에 가담한 정도와 범죄의 사회적 위험정도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 형법은 구형법과는 달리 犯罪組織體라는 特殊한 共犯 形態를 총칙적 규정에서 일반화하고 있으며<sup>50)</sup>, 범죄조직체에 가담한 주모자와 추종자를 그 조직체가 기도한 범죄에 해당하는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하고 있다는 점은 특기할 수 있겠다.

47) 그러나 심현상은 “공동정범도 고의적 범죄수행에 두사람 이상의 공동적 의식적 참가이므로 공범이라고 말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심현상, 전게서, p 203 참조

48) 심현상, 전게서, pp. 209 - 210 참조

49) 심현상, 전게서, p 214 참조

50) 구형법에서는 범죄조직체에 대한 처벌규정을 각칙에서만 발견할 수 있었으며, 각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범죄조직체를 구성한 자에 대하여는 목적인 범죄의 준비로서 처벌할 수 있었을 뿐이다; 심현상, 전게서, pp. 211 - 212 참조

(6) 特殊犯罪 類型<sup>51)</sup>

북한 형법은 대한민국 형법과는 달리 은닉범·불신고범·방임범의 특수범죄유형에 관하여 “범죄 및 형벌에 관한 일반원칙”편에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 형법상 反革命犯罪에 있어서 은닉죄는 그 처벌행위가 지나치게 넓고 처벌도 매우 가혹하다. 나아가서 一般犯罪의 경우에도 불신고죄와 방임죄를 규정하여 범죄신고 의무와 범죄제지의무를 강요하고 있다.

북한 형법에 있어서 은닉범은 범죄의 실행후에 범죄자 또는 범죄의 흔적을 감추어 준 자를 의미한다. 은닉범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은닉에 대한 약속은 범죄실행전에 또는 범죄실행 도중에 있어서는 안된다. ② 은닉행위는 객관적으로 적극적인 행위로 표출되어야 한다. ③ 은닉자는 고의로 행하여야 한다.

불신고범은 범죄가 실행되거나 준비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 해당기관에 알리지 않은 범죄자를 말한다. 불신고범의 성립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신고에 대한 약속이 범죄실행전이나 그 실행중에 없어야 한다. ② 객관적으로 지득한 사실을 알리지 않는 소극적 행위이어야 한다. 이 점에서 적극적인 행위를 요하는 은닉범과 구별된다.

방임범은 범죄 또는 그 외의 긴급한 침해를 방지할 수 있었거나 그 침해로 인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책을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임한 범죄자를 지칭한다. 방임범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방임하는 자는 주관적 표징으로서 고의가 있어야 한다. ② 범죄나 긴급한 행위가 있던 당시의 환경과 조건으로 보아 방임자 자신의 능력으로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거나 방지한 대책을 취할 수 있었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은닉범·불신고범·방임범은 각각 성립조건을 구비한 경우에 모든 범죄에 대하여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상으로는 북한 형법의 각칙에 해당하는 규정에서 처벌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51) 북한형법상의 특수범죄유형에 관한 전반적인 고찰은 김규승, 전계서, pp. 325 - 330; 김근식, 전계서, pp. 151 - 154; 심현상, 전계서, pp. 226 - 229 참조

## 6. 刑罰論

### (1) 刑罰의 特徵

북한 형법에 있어서 형벌은 “주체혁명의 승리를 반대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적 권리와 이익을 유린하고 침해하는 반혁명 범죄자들과 일반범죄자들에게 가하는 社會主義國家의 폭력적인 진압수단이며 제재수단”이라고 정의되어 진다.<sup>52)</sup> 따라서 형벌은 사회주의의 완성을 목표로하는 프로레타리아 혁명의 성공을 위하여 반혁명범죄를 진압하여 일반범죄를 제재하기 위한 폭력적 수단으로서 김일성에 의한 독재를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무기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 형법상 형벌은 노동계급적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북한 형법이 인정하고 있는 형벌은 기타 國家的 制裁手段과 다음과 같이 구별될 수 있으며<sup>53)</sup> 이를 통하여 우리는 형벌의 본질을 더욱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형벌은 기타 국가적 제재수단과는 달리 강제방법에 있어서 폭력적인 징벌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즉 형벌은 자유의 구속이나 생명의 박탈을 전제로 할 수 있다.

둘째로, 형벌은 사회주의 혁명을 반대하는 반혁명범죄자의 사회주의 법률을 위반하는 일반범죄자들을 그 집행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기타 국가적 제재수단과 구별된다.

셋째로, 형벌은 기타 국가적 제재수단과는 달리 재판기관에 의하여 형사재판의 절차에 따라 적용되는 강제수단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52) 김규승, 전계서, pp.333 - 335; 김근식, 전계서, pp.155 - 157

53) 김규승, 전계서, pp.335 - 336; 김근식, 전계서, pp.157 - 158



## (2) 刑罰의 種類<sup>54)</sup>

### ① 死刑

북한 형법상 사형제도는 완전한 사회주의 국가가 성립하는 시기에 형법과 함께 소멸될 수 밖에 없는 형벌로서 과도기적이며 잠정적인 형벌수단으로서 이해되고 있는 것이 그 특징이다.<sup>55)</sup> 그러나 북한 구형법상 사형은 가장 중요한 최고의 형벌로서 형법각칙의 50여개의 범죄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고 그 중에 최고 법정형으로서 규정된 경우만 해도 9개조문이 있었음이 대한민국 형법과 비교하여 볼 때 범죄에 대한 형벌로서 잔혹하게 남용되는 면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북한 신형법에 의하면 예비와 미수는 기수와 동일하게 처벌되며 교사자와 방조자를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유추적용이 가능하게 되어 1개의 범죄에 대해서도 여러 부수적인 범죄가 상립될 수 있으므로 실제로는 사형의 범위가 넓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신형법은 반혁명범죄의 경우에 반혁명죄 개입죄, 반혁명적 은닉죄·불신고지·방임죄를 제외한 그외의 범죄에 대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형 및 전재산 몰수에 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사형제도의 존폐론이 여러가지이유로 대립되어 있으나, 북한은 소멸된 형벌로서 인정된다는 구실로 계속 존치시키고 있는 것이다. 사형의 집행방법은 대한민국의 경우 비밀교수형을 택하고 있으나 북한은 공개적으로 주로 총살 등의 비인도주의적 방법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이점이 발견된다. 결국 북한

54) 북한 구형법은 총칙에 사형, 징역, 교화노동, 벌금형 일정한 권리의 박탈, 일정한 직업 또는 영업의 중지 그리고 일부 또는 전부의 재산몰수의 형벌을 인정하였으며, 각칙에 해당하는 동법 제 70조에서 「원격지에의 추방」이라는 특수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어서 모두 8가지의 형벌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신형법이 벌금·일정한 직업 또는 영업의 금지·원격지에의 추방의 3가지 형벌을 폐지하였으며, 구형법상 일정한 권리의 박탈은 「선거권 박탈」만으로 제한하였고 재산몰수형은 「전재산몰수」만 인정하였다. 따라서 현재 북한 형법이 인정하는 형벌은 ①사형 ②징역형 ③재산몰수형 ④교화노동형 ⑤선거권박탈의 5가지이다.

55) 심현상, 전계서, p. 242

56) 대한민국 형법은 10개죄목에서 사형을 인정하여 관계된 조문수는 18개에 달할 뿐이다.

형법은 일반예방주의의 실천을 위해 응보위하적인 방법으로 사형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될 것이다.

## ② 自由刑(징역형)<sup>57)</sup>

북한형법상 징역은 1년이상 20년 이하로 하며 징역을 합산하는 경우에도 20년을 초과할 수 없고 또한 1년미만으로 경감할 수 없다. 또한 대한민국의 경우와는 달리 무기징역이 없으며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구류기간은 선고징역기간에 통산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징역은 일정한 교화소에 수용하여 집행한다.

## ③ 財産刑(재산몰수형)

북한 구형법 제43조 1항은 “재산몰수는 유죄판결을 받은자의 재산의 전부 또는 지정한 일부를 강제무상으로 국가에 넘김으로써 집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형법은 일부재산에 대한 몰수를 폐지하고 전재산몰수만을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와는 다르게 북한은 형사소송법에 ‘沒收’ 규정을 두고 있다.<sup>58)</sup> 재산몰수제도는 革命時期에 운용되는 수준이 낮은 感情的인 제도로서, 특히 북한의 경우에 사형과 전부의 재산몰수가 있는 규정이 많은 점을 본다면 반인륜적인 형법관의 극치를 드러내고 있다고 하겠다.

## ④ 自由刑과 財産刑의 중간적인 성격을 띤 教化勞動

교화노동은 범죄인의 완전한 자유박탈을 수반함이 없이 지정된 장소에서 또는 범죄인의 종전의 근무직장에서 노동을 강요함으로써 노동보수중의 일부를 국가에 납부시킴으로써 집행하는 형벌의 일종이다.

완전한 자유박탈을 수반하지 않으나 어느정도의 자유박탈을 강요하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自由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노동보수중의 일부를 국가에 납부시킨다는 점에서 ‘財産刑’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 형사정책

57) 북한 형법상 금고제도는 명문상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또한 구류에 관한 독립된 규정은 없고 구류라는 용어는 징역에 관한 규정에서 눈에 띈 뿐이다.

58) 북한 구형사소송법 제164조, 제282조 참조

상 교화노동은 教育刑主義에 기초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지만 실제로는 교화노동이 강제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용어 그대로의 교육적인 측면은 부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북한 구형법은 교화노동은 1일이상 1년까지로 하였고, 국가에 납입시키는 노동보수부분은 그의 보수중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재판소가 재량에 의하여 선고한다.<sup>59)</sup> 그러나, 신형법은 교화노동기간을 6개월 이상 4년 까지로 연장하였으며 국가에 납입하여야 할 노동보수를 월수입의 30%까지로 확대하였다. 교화노동중의 기간은 일반적 노동연한 및 법률에 의하여 연금 기타의 특전을 받게 되는 노동연한을 산입하지 않는다. 교화노동의 선고를 받은 자가 고의로 교화노동을 기피하는 경우에는 재판소 판정에 의하여 교화노동을 집행하여야 할 기간을 그에 상당한 기간의 징역으로 환형할 수 있다.

#### ⑤名譽刑(선거권 박탈형)

북한 구형법은 일정한 권리의 박탈형을 인정하여 재판소가 1년이상의 집행에 처하는 판결을 할 때에는 권리박탈문제를 심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sup>60)</sup> 그리고, 박탈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①선거권 ②일정한 국가적 지위에 취임하는 권리 ③친권 ④사회적 보장의 절차에 의하여 연금 및 보조금을 받는 권리등이었다.<sup>61)</sup> 그러나 신형법은 박탈의 대상이 되는 권리를 선거권에만 한정하여 “선거권박탈형”만을 형벌로써 인정하고 있으며, 반혁명범죄에 대하여만 부가형으로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탈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선거권 박탈기간은 그 징역형의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가산한다.

### (3) 刑罰의 量定

형벌의 양정은 구체적인 형사재판에 있어서 형벌을 선택하고 그 경중과 범위를

59) 북한구형법 제 33조 ①항

60) 동법 제33조 ②항

61) 동법 제 41조

62) 동법 제 37조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북한 형법은 범죄행위의 위험성 정도<sup>63)</sup>와 범죄자의 위험성 정도를 기준으로 형벌을 양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형벌의 양정에 있어서 무겁게 보는 조건과 가볍게 보는 조건<sup>64)</sup>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정형의 최저형기보다 형벌을 낮게 정하는 경우<sup>65)</sup>와 병합죄의 경우<sup>66)</sup> 그리고 판결확정후 형집행 종료전에 저지른 범죄의 경우<sup>67)</sup>에 형벌을 양정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북한 형법상 형벌 양정의 목적은 대한민국의 경우와 같이 범죄인에게 가장 적합한 처우를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범죄인에게 공산주의 공동생활의 법률질서를 재교육시키며 다른 주민들로 하여금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형법상 형벌의 양정시에 고려해야 할 요소는 ①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②피해자에 대한 관계 ③범행의 동기·수단 및 환경 ④범행후의 정황등이

63)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가 반혁명범죄인가 일반범죄인가, 같은 반혁명죄 또는 일반범죄중에서도 어떤 사회관계를 침해한 것인가, 그리고 범죄자가 범행에서 담당할 역할과 실행의 정도, 범죄와 수단의 방법, 범죄 실행의 조건과 환경, 범죄의 일시와 장소등 범죄행위의 위험성 정도를 고려하여 형벌이 양정된다.

64) 북한 형법상 형벌을 양정함에 있어서 무겁게 보는 조건과 가볍게 보는 조건이 마치 우리 형법상 형의 가중·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것처럼 오해될 수도 있겠으나, 우리 형법상 형의 가중·감경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반하여 북한형법은 형벌을 양정함에 있어 무겁게 보는 조건과 가볍게 보는 조건은 그런 사유가 있다고 하여 법정형을 일률적으로 가중·감경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북한형법 각칙이 정해 놓은 법정형기 범위내에서 양정을 할 때 참작할 사유 또는 정상으로서의 기능만 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65) 북한형법은 각칙에 규정된 법정형의 최저한도 보다 낮은 형을 선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판결서에 밝히고 그 최저한도 보다 낮은 같은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경우에 어느정도 낮게 할 수 있는냐 하는 제한은 없으나, 형벌의 종류를 바꿀 수는 없다.

66) 북한에서는 경합범 대신 병합죄란 개념을 사용하면서 실제적 병합과 관념적 병합을 구분하고 있으나, 이를 처벌하는 것은 총체적 위험성 평가원칙에 따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67) 북한 형법은 이 경우 새로운 범죄에 대하여 따로 형벌을 정한 후에 남은 형기에 합산하여 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sup>68)</sup> 이점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의 형벌 양정 원칙은 '범죄행위'가 지닌 사회적 위험성에 입각할 뿐이며 범죄인과 피해자와의 관계<sup>69)</sup>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오로지 범죄행위로부터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려는 데 목표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객관성을 지녀야 할 형벌의 양정이 재판소의 재량에 따라 임의성을 띠게 된다는 것이며, 형벌양정의 적정화는 사회적 위험성이라는 추상적 개념위에 양형원칙이 수립되는 한 기대 될 수 없다고 하겠다.

## 7. 刑法各則의 構成

북한 신형법상 각칙은 반혁명죄·일반범죄·군사상범죄에 관한 규정들로 크게 분류되어 구성되어 있다. 구형법에서는 이와 같은 기준없이 범죄의 분류나 배열이 일정한 순서나 체계없이 나열되어 있었던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그러면, 신형법의 체계에 따라 각칙의 내용을 알아보도록 한다.

### (1) 反革命犯罪

북한 형법에 있어서 반혁명범죄는 「노동자·농민의 주권과 사회주의 제도와 법질서를 파괴하며 자본주의 체제를 수립하고자 사회주의 혁명투쟁과 사회주의 건설사업에 반대하는 고의적인 적대행위」를 의미한다.<sup>70)</sup> 북한 형법에 있어서 반혁명범죄는 다음과 같이 분류되어 있다: ①국가주권과 사회주의 제도를 반대하는 반혁명범죄(제51조 - 제62조) ②조선민족해방투쟁을 반대하는 반혁명범죄(제63조 - 제64조) ③반혁명범죄와의 투쟁을 방해하는 범죄(제65조 - 제66조)

신형법상의 反革命犯罪에 관련된 규정<sup>71)</sup>은 대한민국의 國家保安法에 해당하는 북한에 있어서 안보에 관한 독특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신형법은 구형법이 제13

68) 대한민국 형법 제 51조 참조

69) 줄고, 범죄행위의 재결정요소에 관한 고찰, 한국형사법학회지 제 3호, 1990, pp.188 - 194 참조

70) 김근식, 형법학 II, 평양, 김일성종합대학 출판사, 1987, p.8

71) 북한신형법 제 51조 - 제 66조

장 “국가주권적대에 관한죄”<sup>72)</sup>로 규정하고 있었던 것을, 김일성 독재체제를 확고하게 수립하기 위하여 반혁명범죄의 개념을 도입하여 그 체제유지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를 반혁명범죄의 명목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제정된 것이다.

이러한 반혁명범죄는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국가 형법에서 인정되는 범죄유형이기는 하지만, 북한의 경우 다른 국가와 달리 主體思想에 입각한 독재체제를 갖추고 있어서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북한형법상의 반혁명범죄는 처벌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 반혁명범죄는 단순히 국가의 안전과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만을 처벌대상으로 하지 않고 사회주의 제도를 반대하거나 정부와 당국의 정책을 반대하는 행위와 반혁명범죄와의 투쟁을 방해하는 범죄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sup>73)</sup>

둘째로, 반혁명범죄에 대한 형벌이 매우 가혹하다. 북한 형법은 반혁명적 태업죄, 반혁명죄 은닉죄, 반혁명범죄 불신고죄 또한 그 방임죄를 제외한 그 외의 모든 범죄에 대하여 사형 및 전재산 몰수의 형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sup>74)</sup>

셋째로, 북한형법은 반혁명범죄에 대하여 형사소추시효제도와 집행유예의 적용을 배제시키고 있다.<sup>75)</sup>

넷째로, 반혁명범죄자에 대한 범죄를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sup>76)</sup>

그런데 반혁명범죄는 다음과 같은 성립조건<sup>77)</sup>을 갖추어야 범죄로 인정되나: ① 반혁명범죄에 의하여 침해되는 사회관계 ② 반혁명적인 범죄 ③ 반혁명적 목적의 범죄 ④ 반혁명범죄자로서의 표징 이러한 조건들은 모두 충족히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범죄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일반범죄는 될 수 있으나 반혁명범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72) 북한 구형법 제 64조 - 제 81조

73) 김규승, 전계서, p.182

74) 반혁명죄를 가혹하게 처벌해야 할 근거에 관하여, 김근식, 형법학 I, pp.28 - 45 참조

75) 김근식, 형법학 II, p.15

76) 김근식, 형법학 II, p.190

77) 김근식, 형법학 II, p.2, pp 9 - 14

## (2) 一般犯罪

북한 형법상 일반범죄는 “반혁명적인 목적이 없이 개인 이기주의를 비롯한 낡은 잔재로부터 국가사회질서를 문란시키며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단을 약취하여 국민의 생명재단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를 의미한다.<sup>78)</sup>

북한에서는 일반범죄를 반혁명범죄와 구별하고 일반범죄자에 대하여는 처벌을 과하기 보다는 教化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원칙에 따라서 북한형법은 일반범죄에 대하여 살인죄·강도죄를 비롯한 특히 엄중한 몇가지 범죄를 제외하고는 사형을 적용하지 않으며, 엄중한 일반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에 대해서만 징역형을 적용하여 그것도 거의 다수가 징역형이 짧게 설정되어 있다.<sup>79)</sup>

형법 각칙의 일반범죄는 침해되는 社會關係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되어 있다.

1) 사회주의 經濟를 침해하는 범죄(제67조 - 제110조): ①사회주의적 소유를 침해하는 범죄 ②사회주의 경제관리 운영질서를 침해하는 범죄 ③국토관리질서를 침해하는 범죄

2) 사회주의 文化를 침해하는 범죄(제111조 - 제117조): 문화·예술·과학·교육 그리고 보건분야를 침해하는 범죄

3) 국가의 行政秩序를 침해하는 행위(제118조 - 제148조): ①국가의 행정질서를 침해하는 행위 ② 관리일군의 직무상 범죄

4) 사회주의적 共同秩序를 침해하는 범죄 (제149조 - 제159조): 사회주의적 공동 생활준칙과 공동질서를 침해하는 행위

5) 국민의 생명·재산을 침해하는 범죄(제160조 - 제180조): ①국민의 생명·건강·인격을 침해하는 행위 ②국민의 개인소유를 침해하는 행위

78) 김근식, 형법학 II, p. 50

79) 김근식, 형법학 II, p. 52

## (3) 軍事上犯罪

대한민국 형법이 군사상의 범죄에 대하여는 형법전에 규정하지 아니하고 특별법인 군형법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반면에 북한 형법은 형법전에 직접 군사상 범죄를 규정하고 있는 특색을 보이고 있다. 신형법은 각칙에서 군사상범죄를 제181조에서 제215조에 이르기 까지 25개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형법의 경우 군사상범죄는 그 범죄가 전시 또는 전투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경우에 그 형벌이 가중되었으며, 형벌은 징역형이 보통이지만 중대한 군사상 범죄의 경우와 정상이 중한 경우에는 법정형이 거의 사형 및 전부의 재산몰수이었다.<sup>80)</sup> 현재 군사상범죄에 관하여는 신형법의 내용이 공개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상세히 논할 수는 없으나 이와같은 구형법의 입장이 유사하게 견지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80) 북한 구형법 제 265조 - 제 301조 참조



### Ⅲ. 北韓 刑事訴訟節次의 分析

북한은 1950년 3월 3일에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 5차 대회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채택에 관하여”라는 명칭의 형사소송법을 형법과 함께 제정하였다. 그러나 형법의 개정과 동시에 북한은 구형사소송법을 제정하였다. 즉 1974년 1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서 신형법과 신형사소송법을 채택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후 1976년 1월 10일에 새로운 재판소 구성법도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북한 신형법은 그 내용이 일부 공개되었으나 신형사소송법에 관한 내용은 전혀 공개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구형사소송법상의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 주요한 측면만을 순서에 따라서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 1. 搜查와 豫審

##### (1) 搜查

북한 구형사소송법은 제79조에서 수사의 권한을 행사하는 수사기관을 특별히 규정하였다. 즉 수사기관은 수사의 권한이 있는 군관·예심원·사회안전원 그리고 노동·세무·상업·소방등 재기관의 감찰원이 될 수 있다. 수사기관은 사건의 기초로 되는 범죄사실자료를 수집하며, 豫審行爲에 속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문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받는 방법으로써 그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sup>1)</sup>

또한 搜查機關은 수집한 자료에 의하여 혐의가 충분하다고 인정된다면 그 사건이 예심을 필요로 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 자료에 의견을 붙여 검사 또는 豫審院에 넘기고 예심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일한 방법으로써 재판소에 직접 넘겨야 한다.<sup>2)</sup> 구형사소송법 제 82조는 체포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sup>3)</sup> 수사기관이

1) 북한 구 형사소송법 제 80조

2) 동법 제 81조

3) 동법 제 39조는 압수·수색의 요건을 규정한다.

혐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이유불인 보고서와 함께 혐의자를 해당 관할구역의 감사 혹은 예심원에게 넘겨야 한다.<sup>4)</sup> 수사기관의 수사기간은 10일을 넘길 수 없다.<sup>5)</sup>

## (2) 豫審

북한 구형사소송법은 수사과정에 있어서 각종 處狀制度 대신에 예심제도를 채택하여 예심절차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예심의 대상은 “피의자에 관한 범죄의 유무 및 그 책임의 정도에 영향을 줄 모든 사실”<sup>6)</sup>이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는 2개월이다. 도검찰소 검사장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sup>7)</sup> 豫審院은 예심에 있어서 얻은 자료를 필요하다고 인정한 범위 내에서만 공개할 수 있다.<sup>8)</sup> 예심에 대한 감시는 검사가 하도록 되어 있다. 즉 검사는 예심기록을 검열하여 예심원에 대하여 그 예심에 필요한 일체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검사의 서면상 지시에 대하여 예심원은 반드시 복종하여야 한다.<sup>9)</sup>

## 2. 公訴制度

북한 구형사소송법은 제8조 전단에서 “공소는 검사가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檢事訴訟主義 즉 國家訴追主義를 원칙으로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에 의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소속한 직업동맹·농민동맹·기타의 사회단체의 대표자에 의한 공소를 인정하고 있다.<sup>10)</sup>

구형사소송법은 “(구)형법 제124조(경상해괴), 제127조(폭행죄), 제144조(모욕

- |        |         |
|--------|---------|
| 4) 동법  | 제 84조   |
| 5) 동법  | 제 84조   |
| 6) 동법  | 제 90조   |
| 7) 동법  | 제 94조   |
| 8) 동법  | 제 93조   |
| 9) 동법  | 제 96조   |
| 10) 동법 | 제 8조 후단 |

죄), 제145조(출판물에 의한 모욕죄) 그리고 제146조(명예훼손죄)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형사소추를 할 수 있다.”<sup>11)</sup> 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피해자에게 고소권과 공소권자를 인정하는 탄핵주의를 택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검사가 「公益上 特別한 必要」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화해하여 고소를 취소하였다 할 지라도 사건을 기각할 수 없다”라고 동법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sup>12)</sup> 피해자의 고소없이도 검사의 고소권을 인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 구형사소송법은 탄핵주의에 입각하고 있는 것처럼 외견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철저한 국가 소추주의를 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3. 公判制度

북한 구형사소송법은 公判節次를 공판전 수속(공판준비절차)과 공판으로 구분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첫째로, 공판전 수속에 관하여 알아본다면, 공판준비는 판사인 재판장 2명과 참심원 2명으로써 하며 예외적으로 참심원의 사정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참심원 대신에 다른 판사를 참가시켜 공판준비를 할 수 있다.<sup>13)</sup> 공판준비 일시는 3일전에 검사에게 통지한다.<sup>14)</sup> 공판준비에서 재판소는 예심의 조사가 충분히 되었는가, 기소사실의 근거가 있는가, 법령의 적용이 옳게 되었는가 등의 문제를 심리한다.<sup>15)</sup> 심리후에 예심이 충분하여 공판에 불일만 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유불인 판정으로써 피심자를 공판에 넘긴다.<sup>16)</sup>

둘째로, 공판절차는 다음과 같이 행하여 진다.: ①공판전체의 진행은 裁判長이 지휘하며, 공판심리 및 소송관계자의 변론을 사건의 진상발견에 가장 적합하도록

- |     |    |          |
|-----|----|----------|
| 11) | 동법 | 제 9조 전단  |
| 12) | 동법 | 제 9조 후단  |
| 13) | 동법 | 제 169조 ① |
| 14) | 동법 | 제 169조 ③ |
| 15) | 동법 | 제 168조   |
| 16) | 동법 | 제 170조 ③ |

하여야 한다.<sup>17)</sup> 재판장의 처치에 대하여 소송관계자가 그의 권리뿐 억압 또는 침해 당하였다고 신청한 때에는 그 신청을 調書에 기재하여야 한다.<sup>18)</sup> ②공판에는 반드시 被訴者가 출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소자가 명시적으로 궐석심리를 승낙하였을 때 또는 피소자가 소환장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공판을 회피한 것이 명백할 때에는 피소자 없이도 공판할 수 있다.<sup>19)</sup> ③검사가 궐석한 경우에는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변호인이 궐석한 때에는 다른 변호인으로 바꿀 것을 피소자가 정당한 이유로써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판을 할 수 없다.<sup>20)</sup> ④피소자의 유죄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는 무죄의 변론을 한다. 이 경우에도 그 이후의 수속을 계속한다.<sup>21)</sup> 이와같이 북한 구형사소송법에서는 공판제도에 있어서 당사자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처럼 외견상 보이나 예외규정이 우월한 경우 그 규정에 의하여 실제로는 철저한 職權主義를 택하고 있다고 하겠다.

#### 4. 證據法上 制度

북한 구형사소송법은 제45조에서 “재판소는 형식적 증거에 구속되지 않고 사건의 성질에 따라 자유로이 증거를 채택하여 또는 증거의 제출을 제삼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삼자는 전항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규정을 살펴볼 때 북한의 증거법상 제도는 실체적 진실주의와 자유심증주의에 입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러한 2가지 원칙이 규문주의를 대전제로 하고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일당독재적 사회주의체제의 유지를 위한 제도일 뿐인 것이다.

증거라 함은 피해자 또는 증인의 진술감정의 결과 증거물 검증의 결과, 소송서류 및 피소자의 진술을 말한다.<sup>22)</sup> 재판소는 소속기록에 나타나 있고 또 공판에서 심리

- |     |    |           |
|-----|----|-----------|
| 17) | 동법 | 제 175조 ①② |
| 18) | 동법 | 제 175조 ③  |
| 19) | 동법 | 제 183조    |
| 20) | 동법 | 제 185조    |
| 21) | 동법 | 제 213조    |
| 22) | 동법 | 제 46조     |

한 증거에 의하여서만 판결을 평의 표결한다.<sup>23)</sup> 재판원은 증거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사건의 심리에 기인한 자기의 확신에 의거한다.<sup>24)</sup>

재판소는 사건에 관한 심리순서 즉 피소자·증인 그리고 감정인의 신문순서를 결정한다.<sup>25)</sup> 또한 재판소는 피소자·피해자·증인 그리고 감정인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다.<sup>26)</sup> 그리고 심리중인 사건이 충분히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소가 새로운 증거를 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판소는 심리를 연기하고 새로운 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sup>27)</sup>

## 5. 上訴審節次

북한 구형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단 1회의 상소만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제 1심의 판결이나 판정에 대하여는 부근 상급법원에만 상소할 수 있다. 즉 인민재판소의 재판에 대하여는 도·직할시 재판소에, 그리고 도·직할시재판소의 재판에 대하여는 최고재판소인 중앙재판소에 각각 상소할 수 있는 것이다. 검사만이 판결 또는 판정에 대하여 상소(항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피소자 및 그의 변호인은 상소 또는 항고할 수 없다.<sup>28)</sup> 제 2심재판소의 판정 즉 상소심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서는 더 이상 상소 또는 항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sup>29)</sup> 최종적이며<sup>30)</sup> 확정력을 가지게 된다. 이에

- 
- |        |                 |
|--------|-----------------|
| 23) 동법 | 제 223조 ①        |
| 24) 동법 | 제 223조 ②        |
| 25) 동법 | 제 196조          |
| 26) 동법 | 제 197조 - 제 199조 |
| 27) 동법 | 제 209조          |
| 28) 동법 | 제 241조          |
| 29) 동법 | 제 263조 전단       |

30) 非常上訴는 상소라는 명칭이 붙어 있으나 보통의 의미에 있어서의 上訴는 아니다. 이것은 臨時的 審査의 의미를 지닌다. 북한 刑事訴訟法上 이른바 비상상소를 인정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2審制原則의 채택에서 결과할 수 있는 確定判決의 잘못을 바로잡고 上訴審法院이 여러개 있어서, 法令適用의 統一을 기하고자 하는 데 있다.

대하여는 다만 非常上訴만을 제기할 수 있다.<sup>31)</sup>

上訴審法院인 제 2심 재판소는 상소 또는 항의에 제시한 불복 이유만을 심리하는데 국한하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심리에 의하여 그 사건에 대하여 그 사건에 관한 모든 수속을 전부 심리하여야 한다.<sup>32)</sup> 즉 상소심법원은 법률문제 뿐만 아니라 事實問題에 관하여서도 심리할 권한이 있다. 원심재판소에 있어서 죄로 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건을 기각하지 않은 때에는 제2심재판소는 사건을 원심재판소에 반송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그 사건을 기각한다.<sup>33)</sup> 판결파기의 이유로 되는 法令上의 違反은 다음과 같은 4가지 경우이다. 즉 ①불완전 또는 부적당한 심리 ②소송수속의 형식에 관한 본질적인 위반 ③법령위반 또는 부적당한 법령의 적용 ④판결의 현저한 불공정등이다.

31) 북한 구 형사소송법 제 263조 후단

32) 동법 제 259조

33) 동법 제 256조

## IV. 北韓 刑事政策의 分析

### 1. 刑事政策의 基礎와 根據

북한 刑事政策은 마르크스(Marx)범죄학이론을 기반으로 한 소련의 刑事政策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마르크스(Marx)와 레닌(Lenin)에 의하여 완성된 소련의 공산주의 이론은 그후 스탈린(Stalin)에 의해 구체적으로 운용되었으며 법제화 되었다.

마르크스(Marx)자신은 刑事政策 자체에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가 범죄현상에 대한 특별한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그의 사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범죄현상은 자본주의 구조가 야기하는 지배자(Bourgeois)와 피지배자(Proletariat)간의 갈등의 결과라고 주장하며, 결국 범죄현상은 계급이 없는 사회주의 국가의 출현으로 자취를 감출것이라고 한다. 또한 범죄현상에 대한 처방은 범죄인 개인의 수준이 아니라 “사회의 진화”라는 전반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刑法 자체를 단번에 폐기할 수 없는 이유는 社會主義로의 여정이 길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아울러 刑罰은 범죄현상이 말소될 때까지 사용되어야 하며 형벌은 犯罪의 성질에 따라서 집단자체의 보호를 위하여 과해져야 하고 사회주의적 목표를 향한 재교육으로서 적용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sup>1)</sup>

이와같은 마르크스(Marx) 범죄학이론의 중심사상을 수용한 北韓刑事政策은 완전한 공산주의 국가의 수립을 위한 정치성을 띤 국가정책으로서 그 존재가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프로레타리아(Proletariat)혁명에 의한 사회주의 국가의 완성이라는 목표를 위해 과도기적인 犯罪現象 - 노동자·농민의 주권과 사회주의 제도와 법질서를 침해하는 형벌을 줄 정도의 위험한 행위 - 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다.

따라서 北韓 刑事政策의 근거는 잠정적인 범죄현상으로부터의 “社會의 保護” 즉

1) 참고, “프랑스 형법학의 발달과 그 동향”, 한국형사법학회지 제2호.1989.pp.135 - 136, cf) Merle et Vitu, Traité de droit criminel, T I.1984.PP.162 - 163.

다시말하자면 완전한 사회주의국가로 성숙되어가는 발전단계의 사회를 방해요소가 되는 위험한 행위로부터 방위하고자 하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 2. 刑事政策의 基本的 特徵

### (1) 프로레타리아(Proletariat)혁명을 위한 한시적인 형사정책

북한의 형사정책은 프로레타리아(Proletariat)혁명을 통해 대한민국을 적화통일 하여 완전한 사회주의 국가로 성립시키기 위한 하나의 정책으로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 형사정책은 社會主義 통일국가의 완성이라는 목표달성기까지의 한시적 정책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북한 형사정책이 기초하고있는 마르크스(Marx)범죄학이론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마르크스가 예상한 바와 같이 부르조아(Bourgeois)단계<sup>2)</sup>에서 프로레타리아(Proletariat)단계로의 과정은 멀고 길기 때문에 이 잠정적 기간 동안에 형법의 필요성이 요청되면서 그에 따른 刑事政策의 운용이 또한 필요하게 된 것이다.

마르크스(Marx)는 헤겔철학파의 유물론자인 포이에르바하(Feurbach)<sup>3)</sup>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그는 포이에르바하와 함께 청년헤겔학파(Junghegelianer) 혹은 헤겔도당(Hegelinge)이라고 불리워졌다.<sup>4)</sup> 따라서 헤겔의 변증법사상과 포이에르바하의 유물론사상이 마르크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헤겔이 프랑스혁명(La Révolution Française)<sup>5)</sup>에 커다란 관심을 표명하고 동경 하였던 것<sup>6)</sup>과 마찬가지로 마르크스도 프랑스 혁명에 관심을 가지고 프로레타리아

2) 마르크스(Marx)는 프로레타리아(Proletariat)혁명 이전의 世界史를 아시아적·고대적·봉건적·부르조아(Bourgeois)적 단계로 구분한다.

3) 철학자인 포이에르바하와 법학자인 포이에르바하는 同一人物이 아님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4) 최재희, 헤겔의 생애와 철학, 이문사, 1980. p. 229.

5) 자유(Liberté)·평등(Egalité)·박애(Fraternité)를 표명한 프랑스혁명(1789)사상은 유럽사회전체에 충격을 주고 전세계에 영향을 미쳤다.

6) 최재희, 전계서, pp. 113 - 119.



(Proletariat)혁명의 모델로서 인정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 혁명을 실패한 혁명으로 규정하면서 프로레타리아(Proletariat)혁명이론을 주장하였다. 실제로 프랑�히 혁명은 부르조아(Bourgeois)에 대한 프로레타리아(Proletariat)에 의한 혁명이었으나 그후 프로레타리아에 의하여 정권이 수립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마르크스(Marx)는 사회주의 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하여 프로레타리아(Proletariat)에 의한 정권수립을 강력히 주장하였던 것이다.

북한 형사정책은 바로 마르크스의 이러한 혁명사상에 그 기초를 두고 있으며, 푸르동(Proudon)에 의해서 주창된 프랑스 사회주의 정신<sup>7)</sup>에 영향을 받고 새로운 사회주의사상을 형성하고자 노력한 마르크스<sup>8)</sup>의 범죄관을 철저히 추종하고 있는 것이다.

## (2) 공산주의체제유지를 위한 영속적인 형사정책

완전한 사회주의국가의 프로레타리아(Proletariat)혁명을 통한 수립을 굳게 신봉하였던 마르크스(Marx)의 예상과는 달리 世界史의 조류는 프로레타리아(Proletariat)적 시대로 접어들지 않게 되었다. 오히려 공산주의를 표방해온 동구의 여러 국가들이<sup>9)</sup> 소련과 더불어 脫共產主義를 宣稱하게 되면서 마르크스(Marx)의 후예들은 마침내 그의 사상에 의문을 품게 되었다. 따라서 社會主義국가의 완성을 위해 한시적인 성격을 띠었던 刑事政策이 반대로 북한에서는 세계사의 흐름에 역행하여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영속적인 형사정책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는 점을

7) 프랑스 사회주의정신은 백과사전학파에 의한 啓蒙思想과 루소(Rousseau)의 사회계약론에 근거한 프랑�히혁명사상을 중심으로, 자코뱅(Jacobin)당의 로베스피에르(Robespierre)급진개혁사상을 통하여 프루동 등에게 내려왔다. 그 이후 장 조레스(Jean Jaurès)에 의하여 체계화되기 시작하였다.

8) 김홍명, 프랑스의 마르크스주의, 한국 공산권 연구협의회 연구논총 제3집 -“마르크스주의와 오늘의 세계- 변용의 제형태”, 이흥구편. 법문사. 1984. pp. 130 - 133. 필자에 의하면,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그들이 참여했던 사회주의운동의 파리지부의 지배권을 확보 혹은 탈환하기 위해 고심하고 분주했던 젊은 시절을 사실의 기록으로서 남기고 있다고 한다.

9) 헝거리,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슬로바키아, 동독 등.

유의해야 할 것이다.

북한 형사정책은 국가권력의 독점과 김일성 1인독재를 위한 국가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북한에서의 범죄행위는 노동자·농민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와 법질서를 침해하는 형벌을 받을 정도의 위험한 행위로서 그행위는 바로 김일성에 의한 권력의 독점과 독재에 대항하여 그체제에 반하는 행위인 것이다.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고 처벌하기 위하여 북한형법은 존재하는 것이다.<sup>10)</sup>

또한 북한 형사정책은 독단적인 형벌권 행사를 위한 국가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즉 犯罪와 刑罰을 명확하게 법에 의해 규정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인 범죄개념”과 그로인한 “형벌적용의 구체적 근거의 不在”로 특징지어지는 刑法體系위에 수립된 정책인 것이다.

### 3. 刑事政策의 犯罪學的 考察

#### (1) 犯罪의 概念

북한 구형법 7조에 의하면 범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및 그에 수립된 법률질서를 침해할 사회적 위험성이 있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일체의 가벌적 행위”이다. 이 규정은 1926년 러시아 공화국 형법 제 8조<sup>11)</sup>에 의한 범죄개념의 정의를 형법이론과 범죄학에 위임하는 데 반하여 북한의 경우는 “범죄의 개념”을 형법전에 범죄와 형벌의 일반원칙으로서 정의내리고 있는 것이 그 특색이다. 이 점은 소련을 비롯한 여러 공산주의국가의 공통된 형사정책의 방향인 것이다.

Andrejew는 이와같은 형사정책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모든 공산주의 국가의 입법내용을 살펴보면 法이 형벌의 위하성을 무기로 하여 정의내리는 사회적

10) 북한형법 제 4조 참조.

11) “범죄란 소련체제 및 사회주의 법질서에 대하여 사회적 위험성이 있는 행위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 위험성의 관념은 사회주의 형사정책상 제재대상의 중요한 요소로 등장한다.

으로 위험한 행위가 犯罪라는 원칙을 천명하는 규정을 찾아 볼 수 있다. 공산주의 형법전은 범죄가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그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인가를 자세하게 설명하려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사회주의 정치체제, 사회주의 경제체제, 사회주의적 재산 또한 인민의 정치적·재산적 권리 그리고 사회주의 법률질서 등인 것이다.<sup>12</sup>

그런데, 북한 형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북한에서의 犯罪의 개념은 범죄학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몇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첫째로, 사회적 위법성을 기초로 한 범죄의 개념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따라서 불명확한 성격을 띠고 있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범죄개념을 기초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 형사정책은 죄형법정주의라는 대원칙 위에 수립되고 있으나, 북한의 刑事政策은 이 원칙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사회적 위법성을 기초로 한 범죄의 개념은 과도하게 신축성을 지니고 있으며 광의성을 보인다. “사회적 위법성”에서 범죄성의 표준과 그 근거를 찾고있는 북한 刑事政策은 범죄개념의 한계적 영역을 의식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sup>13</sup> 셋째로, 사회적 위법성을 기초로 한 범죄의 개념은 계급투쟁사상에 기반을 둔 사회주의 정치성을 띠고 있다. 왜냐하면 사회적 위법성이라는 개념은 공산주의 체제유지와 그 법률질서에 대한 위반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결국 범죄의 개념은 바로 공산주의 체제의 유지발전이라는 미명아래 정치적으로 도용되어 지고 있는 것이다.

## (2) 犯罪原因論<sup>14</sup>

12) I. Andrejew, preface M. Le droit pénal comparé des pays socialiste, Ed pédone 1981, p. 49.

13) 사회적 위법성이 있는 反社會的 行爲로부터의 ‘社會의 保護’를 피하고 있는 북한 형사정책은 「誤導된 社會防衛論」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원래의 사회방위론을 社會主義사상에 흡수시킨 결과라고 볼 수 있다.

14) 엄격하게 말하자면 공산주의 형사정책상 범죄원인론과 범죄현상론은 있을 수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완성된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犯罪가 없게 될 것이라고 마르크스는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회 이전 단계에서 존재하는 범죄현상에 대한 논의를 비판해야 할 입장에 서서 범죄원인론과 범죄현상론을 살펴보기로 한다.

북한 刑事政策이 마르크스(Marx)범죄학이론의 기초위에 서있기 때문에 범죄원인에 관한 이론 역시 마르크스(Marx)의 사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그는 범죄원인을 다름아닌 바로 자본주의 제도의 여러 모순에서 찾았다. 즉 마르크스(Marx)범죄학자들은 사유재산제도와 시장에서의 수요 공급법칙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원리에 입각한 자유경쟁제도 또한 상품가치를 통한 이윤추구제도등을 포함한 자본주의 체제가 범죄의 원인을 제공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단적으로 말하여 범죄를 자본주의제도의 부산물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대한민국 형사정책등 민주주의 국가의 형사정책이 범죄의 원인을 비단 사회적인 요인과 경제적 요인에서 찾을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인류학적·문화적·정신위학적 요인등에서 찾는 전반적인 범죄원인론 연구자세와는 커다란 상이점을 보인다.

그러나, 이와같이 자본주의체제에서 범죄의 원인을 찾는 사회주의 형사정책은 혁명적인 분석과 고찰에 근거한 근시안적 성격을 배제 할 수 없다고 생각되며 北韓 刑事政策도 범죄가 여러가지 원인이 복잡하여 발생되며 그 원인규명을 위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 (3) 犯罪現象論<sup>15)</sup>

마르크스(Marx)에 의하면 범죄현상은 자본주의경제체제의 모순에 기인하여 자본주의 사회구조가 필연적으로 제기하는 유산자(Bourgeois)와 프로레타리아(Prolétariat)간의 대립·갈등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범죄현상은 완전한 사회주의 국가의 수립으로 사라질 수 밖에 없는 현상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社會主義체제가 완성되기 전의 과도기적인 상황에서는 범죄현상이 필연적이고 정상적인 것으로 인식된다는데<sup>16)</sup> 북한 刑事政策의 한계성이

15) 註 11)참조

16) Durkheim의 범죄정상설에 의하면 犯罪가 社會내에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고 정상적이라는 것이나, Marx에 의하면 범죄가 자본주의사회에 존재하는 것이 필연적이라는 평면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당연히 존재할 수 밖에 없는 범죄현상으로 부터 오히려 형법의 근거와 刑事政策의 사명을 찾으려고 하는 북한 刑事政策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마르크스(Marx)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범죄현상이 있기 때문에 범죄인의 존재가 오히려 형법의 개념을 설정해 주고 재판의 필요성등 여러 刑事政策적 고려의 근거가 된다”<sup>17)</sup>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범죄현상이 사회주의체제 수립으로 완전히 소멸될 것이라는 시각은 우매한 이상향(Utopie)일 뿐 현실적인 범죄현상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강구하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 刑事政策상 범죄현상은 범죄자체에 대한 현상적인 인식에서 출발하지 아니하고, 과도기적인 현상으로서 간주되어 범죄현상자체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 (4) 犯罪對策論

##### ① 刑罰의 의미

북한 刑事政策상 형벌은 노동자·농민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와 법질서를 침해하는 가법적인 위험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sup>18)</sup> 따라서 북한 刑事政策상 형벌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분석되어 질 수 있다.

첫째로, 북한 刑事政策상 형벌의 의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표방하는 북한이라는 집단의 보호에서 찾을 수 있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장보다는 집단의 유지와 그 존속에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다. 즉 범죄인 자체에 대한 처방으로서의 의미보다는 ‘공산주의 사회체제로의 완전한 전환’이라는 집단적 공동목표를 위하여 형벌은 존재하는 것이다.

둘째로, 북한 刑事政策상 형벌의 의미는 사회주의적 목표를 위한 ‘사회주의적 교육’의 도구라는 사실에서 명확하게 설명된다.<sup>19)</sup> 완전한 사회주의 국가로의 과정은

17) K.Marx, Histoire des doctrines économiques, Coste ed, paris, T II, p.162.

18) 북한 형법 제 4조 참조

19) 북한 구재판소구성법 제 3조 참조

상당한 시일을 요구하기 때문에 공동추구 목표에서 이탈하려는 범죄인에 대하여 재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일단 이 목표에 도달하면 刑法의 폐기와 아울러 형벌의 필요성이 부정될 것이라는 환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刑罰의 의미는 사회로부터의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新社會防衛論(La défense sociale nouvelle)에서 주장하는 인도주의적 刑事政策에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범죄인으로부터 '社會主義를 향한 社會體制의 防衛'라는 사회주의적 사회방위론에서 북한 형사정책은 형벌의 의미를 찾고 있는 것이다.<sup>20)</sup>

## ② 刑罰의 목적

북한 구형법 제 27조에 의하면, "형벌을 적용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죄를 범한자로 하여금 새로운 죄를 범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2)범죄의 일반적 예방을 위하여, (3)죄를 범한 자로 하여금 인민민주주의 국가의 자유로운 공동생활의 조건에 적응하게 하기 위하여 형벌의 적용은 육체적 고통을 주거나 인간적 품위를 저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보복과 징벌을 자체과업으로 삼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또한 북한 구재판소 구성법 제3조는 "재판소는 형벌을 적용함에 있어서 범죄자를 다만 처벌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교화하며 재교육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후 신형법은 범죄자에 대한 진압과 교양개조, 범죄의 일반예방과 개별예방을 형벌의 적용목적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위의 규정들을 통해 북한 刑事政策상 형벌의 목적을 살펴본다면, 첫번째 규정은 형벌의 목적을 ①범죄인의 재범화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예방주의, ②범죄의 일반적 예방을 위한 일반 예방주의 ③범죄인의 재사회화를 위한 교육형주의 등의 3가지 원칙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두번째 규정은 형벌의 목적을 범죄인의 교육·재교육에 둠으로써 특별예방주의와 교육형주의를 두고 있다.

그러나, 명문화된 위와같은 형벌의 목적은 장식적인 의미에 불과하고<sup>21)</sup>, 실제로

20) 註13) 참조

21) 북한 형사정책은 독단적인 형법권 행사를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범죄인을 인도주의적으로 처우하고 있지 않음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는 「應報刑原則」에 입각한 형벌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형법상 '死刑'은 중요한 형벌로서 규정하고 있어 주된 성격을 띠고 실제로 많이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치범에 해당하는 반체제적 범죄에 대하여는 특히 자의적 형벌권 행사를 무자비하게 남용하는 점에서 볼때도 그러한 것이다.<sup>22)</sup>

### ③ 刑罰의 執行猶豫制度

북한 형사정책상 집행유예는 5년이하의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로서 그의 위험성의 정도에 비추어 그를 교화소에 보낼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재판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될 수 있다. 즉 3년이하의 징역의 유예기간은 5년까지, 3년을 초과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의 유예기간은 3년이상 7년 까지이다. 따라서 5년을 초과하는 형이나 사형 또는 교화노동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다.

북한의 경우 宣告猶豫制度는 운용되지 않는다. 다만 선고후 집행을 유예하는 집행유예제도만 두고 있는 것이 그 특색이다. 이는 어떠한 죄목이로서든지 공산주의체제유지를 위하여 사회적 위험성있는 행위에 대하여 단죄하고자 하는 필요성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형법 제 62조에 의할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만 1년에서 5년까지의 기간을 집행유예기간으로 정할 수 있는 데 반하여, 북한의 경우는 3년 이상의 경우도 적용하고 있는 점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집행유예기간이 비례적으로 상당히 길어서 實效性이 있는지에 의문을 품을 수 있으며, 이것은 결국 범죄인의 재범화를 무리해서라도 방지하려는 사회주의적 목표를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 ④ 保安處分制度

보안처분제도는 범죄인이나 범죄적 위험성을 가진자에 대하여 그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事前 豫防措置로 과해지는 強制的인 처분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또 다

22) 후술하는 '독재특별대상구역에서의 行刑' 참조

시 행해질 수 있는 범죄행위로부터 사회의 방위를 위해 사용되는 제도로서, 사회주의 국가의 목표를 위한 사회방위를 추구하는 북한 刑事政策에 의하여 惡用될 수 있는 여지가 농후하다고 볼 수 있다.<sup>23)</sup>

북한은 1922년 러시아공화국 형법의 영향을 받아 다음과 같은 두가지 보안처분을 형법상에 규정하고 있다. 첫째로, 만성정신병 또는 일시적 정신지장 기타 병적상태에서 가법적이며 위험한 행위를 한 자로서 그 행위 당시의 자기의 행위를 분별하지 못하거나 통제하지 못한자에 대하여 醫療處分<sup>24)</sup>을 적용한다<sup>25)</sup>. 둘째로, 가법적이며 위험한 행위를 한 14세 이상 17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矯正處分<sup>26)</sup>을 적용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는 1980년에 제정한 社會保護法을 통하여 수개의 행을 받거나 수개의 죄를 범한자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의 수괴 및 간부, 또한 심신장애자 마약중독자 및 알콜중독자에 대하여<sup>27)</sup>; ①保護監護 ②治療監護 ③保護視察 등의 3가지 보안처분<sup>28)</sup>을 적용 할 수 있게 조치하고 있다.

북한 刑事政策은 소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벌처분과 보안처분의 본질적인 차이를 부인하고<sup>29)</sup> 2가지 처분이 모두 사회방위를 위한 수단으로서 동일시 되어 擇一的 適用을 하는 일원주의에 입각하고 있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경우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보안처분제도에 있어서 위험성의 판단기준은 '사회적 위험성'의 개념에 두고 있으며 결국 광의성과 신축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판단기준의 적정화가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이에 대한 판단은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23) 후술하는 북한 형사정책의 성격 중 '가시적인 형사정책' 부분 참조

24) 북한 형법 제 12조 1항 참조

25) 북한 구형법 제 12조 2항에 의하면 행위당시에는 정상적 상태에 있었으나 판결을 선고하는 당시에 정신병상태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의료처분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신형법은 우선 의료처분을 적용한 후에 정신상태가 회복되면 반드시 형벌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6) 북한 형법 제 13조 참조

27) 대한민국 사회보호법 제 2조

28) 동법 제 3 조

29) 1960년도 이후에는 소련 형사정책상 형벌처분과 보안처분을 구분하는 일원주의가 채택되었다.



따라서 위험성 판단기준의 적정화를 필수적 전제조건으로서 인식할 경우에 북한의 보안처분제도는 인도주의적인 처분이 될 수 없는 것이며 공산주의 체제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서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 4. 行刑制度<sup>30)</sup>

##### (1) 滿期前 釋放制度

북한 형법은 징역의 선고를 받은자가 그 형의 집행과정에서 작업에 성실하고 규율을 지키며 인민민주주의제도에 충성을 나타내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형기의 절반을 경과한 후 남은 懲役刑期の 執行을 免除하는 방법으로 만기전 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sup>31)</sup> 북한 구형법에서는 이 경우에도 보충적으로 선고하였던 형벌을 면제하지 않았으며 권리의 박탈기간 및 직업 또는 영업의 금지기간을 단축하거나 또는 소멸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만기전 석방의 문제와 따로 이를 해결하였다.<sup>32)</sup>

대한민국 형사정책에 의하면 무기징역·금고에서 10년, 유기징역·금고에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假釋放 시킬 수 있으나<sup>33)</sup> 북한의 경우에는 무기징역은 없고 유기징역의 경우 형기의 2분의 1을 경과하여야 하므로 요건상 까다롭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집행을 면제하는 방법을 택하여 만기전 석방을 인정하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경우와 차이가 있는 것이다. 특히 만기전 석방의 범죄인에 대한 조건에 해당하는 「인민민주주의제도에 충성을 나타내는 경우」와 같은 요건은 우리의 경우<sup>34)</sup>와

30) 북한의 경우에 대한민국에서 처럼 '行刑法'이 있는지의 여부는 현재까지 확실하게 알려지지 않았으며, 다만 형법, 형사소송법 그리고 재판소 구성법 채택에 관한 법령등이 공개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의 법령 등을 종합 고찰하면서 특별히 정치범 수용소에서 행하여지는 行刑實態를 통해 일반적인 '교화소'에서의 行刑을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예견해 볼 수 있을 뿐이다.

31) 북한형법 제 56조 2항 참조

32) 동법 제 56조 3항

33) 대한민국 형법 제 72조 1 항 참조

34) 대한민국의 경우는 "...그 行狀이 良好하여 改悛의 정이 顯著할 때에는 ..."이라는 범죄인에 대한 요건이 제시되어 있다. 대한민국 형법 제 72조1항 전단 참조.

비교해 볼 때 전체주의적인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는 이 규정을 통하여 “敎化所”<sup>35)</sup>에서 ① 작업성실도 ② 규율준수 이행여부 ③ 인민민주주의제도에의 충성도의 세가지 기준에 의한 拘禁方式의 차이가 북한에도 있으리라고 말할 수 있으며, 또한 그에 따른 受刑者分類制度가 인민민주주의 체제의 유지를 위하여 행해지고 있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sup>36)</sup> 또한 “敎化所”<sup>37)</sup>에서 행해지는 強制勞動은 대한민국의 경우처럼 矯導作業과 職業補導 정책의 수준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며 受刑者自治制度 등의 민주적 행형제도는 북한의 경우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sup>38)</sup>

## (2) 敎化所 (또는 중노동직장)에서의 出所- 赦免

북한 신형법은 유죄판결을 받은자에 대하여 그 형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면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북한 헌법상 사면은 大赦와 特赦로 구분되는 데, 대사는 중앙인민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며<sup>39)</sup>, 특사는 국가의 수반인 국가주석의 권한에 속한다.<sup>40)</sup> 대사와 특사의 효과는 형벌의 감감이나 형벌의 전적 면제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사와 특사는 상당히 예외적인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경우와는 달리 減刑과 刑의 執行停止制度 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교화소 또는 중노동직장에서의 출소방법은 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가 만기석방에 의한 출소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35) 북한형법은 “징역은 일정한 교화소에서 집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장소가 대한민국의 교도소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36) 대한민국 형사정책이 채택하고 있는 矯正累進處遇制度는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의 경우에 악용될 수 있다.

37) 북한형법상 14세 - 17세 소년에 대한 교정처분을 행하는 ‘少年院’이 있으리라고 본다.

38) 북한에서는 수형자 자치라는 명목으로 ‘受刑者自律監視制度’ 같은 제도가 운용될 수 있을 것이다.

39) 북한헌법 제103조 제11항

40) 동법 제 95조

### (3) 特別獨裁對象區域의 行刑<sup>41)</sup>

북한의 소위 '특별독재대상구역'이라고 불리는 정치사상범 집단수용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 집단 수용소의 제반업무는 국가 보위부에서 관장하고 범죄인 호송과 경비업무는 사회안전부 인민경비대에서 담당하고 있다. 현재 북한에는 최근 김일성·김정일의 세습체제에 대한 불만을 가진 주민들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지난 1982년도까지 8개있던 政治犯 集團受容所가 최근 4개소 증설되어 모두 12개소<sup>42)</sup>로 늘어났으며 수용인원도 10만 5천명에서 북한주민의 0.7%에 해당하는 15만 2천여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수용대상인물은 독재체제유지에 위해롭다고 판단되는 반당·반혁명종파분자와 세습체제 반대자, 개방정책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그 가족들이며 재판절차없이 마구잡이로 연행하여 수용소에 강제 수용하고 있다. 특별독재대상구역<sup>43)</sup>의 수감자들은 수형과 동시에 '公民證'을 빼앗겨 선거권·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것은 물론 가족·친지들의 면회가 금지되고 또한 양곡·주택등의 배정에 대한 권리가 박탈됨으로써 모든 생활을 자급자족해야 하며 보건·의료혜택이 없고 결혼·출산까지도 금지되고 있다.

이들은 생존하기 위해 자급해야 할 농사를 짓는데, 토지가 황폐하여 풀잎이나 나무껍질 등으로 연명하다가 영양실조와 질병으로 대부분 사망하며, 거처로는 한파와 비를 피하기 위해 귀틀집이나 토굴을 파고 생활한다고 한다. 이들의 일과는 주로 석탄채굴·벌목 개간등에 동원되어 노동을 하는등 12시간이상의 강제노역과 2시간 이상의 사상학습을 강요당하는 실정에 있다.

앞으로의 정치범수용소의 전망에 대해서는, 최근 세습체제에 대한 반발및 동구권

41) 이 논의에 대하여는 '북한의 인권 탄압', 북한문제연구소 1986.6 : 서울 연합통신자료, '정보당국'.82년 이후 정치범 집중분석 제하 기사' 등의 자료를 종합하여 참고서술함.

42) 함경북도 온성군·회령군·경성군 함경남도 요덕군·정평군·덕성군 평안남도 개천군·북창군 평안북도 용천군·영변군·그리고 자강도 회천시 동신군 등에 위치하고 있다.

43) <00호 관리소>라고도 불리는 정치범 집단 수용소는 해발 1천 5백미터 이상의 험준한 산악지대에 위치하고 있다고 한다.

에서 일어나고 있는 '改革'과 '民主化'의 물결 북한 주민들에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들에 대한 내부감시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하에, 앞으로 강제 수용되는 정치범들의 숫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5. 刑事政策의 性格

### (1) 共產主義 刑事政策

#### ① 人民民主主義 刑事政策

북한 형사정책은 인민민주주의에 기초한 형사정책이다. 마르크스(Marx)의 공산주의 이론에 따라 완전한 공산주의 체제가 수립되기 전까지 과도기적인 상황을 지배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행해지는 형사정책이 바로 인민민주주의의 刑事政策인 것이다.<sup>44)</sup> 북한 형사정책은 완전한 프로레타리아(Proletariat)에 의한 독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인민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민주주의를 가장한 중간 형태의 정치체제하에서의 刑事政策이다.

#### ② 社會主義 刑事政策

북한 형사정책은 인민민주주의 刑事政策을 표방하고 있으나 결국 그 정책은 사회주의 刑事政策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1959년에 사회주의혁명이 북한내에서 완성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완전한 사회주의체제가 수립될 때, 즉 사회주의 혁명이 완수될 때 형법이 소멸하여 그에따라 刑罰이 사라지리라는 마르크스(Marx)이론의 幻想은 빛나가게 되었다. 북한은 사회주의혁명을 완수하였다고 하여도 刑事政策을 계속 존속시키고 있으며 이는 결국 대한민국을 적화통일하여 완전한 사회주의혁명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운용되고 있는 것이다.

44) 전술한 북한형사정책의 기본적 특징 중 '프로레타리아(Proletariat) 혁명을 위한 한시적인 형사정책'에 관한 논의 참조.

## (2) 政治에 대한 하위개념으로서의 刑事政策

북한에서는 법은 공산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공고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sup>45)</sup> 그러므로 형법은 통치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  
인 도구로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刑事政策 역시 공산주의 체제정착을 위  
한 조선노동당의 정치정책의 일부분으로서 정치에 대한 하위개념으로서 인식되어지  
고 있는 것이다. 이는 마치 마르크스(Marx)의 공산주의 이론이 그의 법사상의 모체  
이며 따라서 법이론과 그 체계가 공산주의 정책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것과 같은 논  
리와 일맥상통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정의의 구현을 위한 법을 기초  
로 하여 사회·경제·정치제도를 수립하고 있다. 따라서 형법은 범죄인을 위한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로서 刑法政策은 犯罪人을 위한 정책으로서 범죄예방과 진압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치를 초월한 정책인 것이  
다.

## (3) 罪刑擅斷主義의 刑事政策

### ① 行爲의 社會的 危險性에 기초한 刑事政策

북한 刑事政策은 사회적으로 위험성이 있는 행위를 범죄로 인정하여 그 범죄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이 기능은 광  
의의 추상성을 가지고 있어서 '공산주의체제'라는 거울에 비추어 위험성이 있는 행  
위이면 모두 범죄로 인정하는 정치적 탄압과 위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  
점은 구체성과 명확성의 원리에서 '罪가 되는 것이 어떠한 행위인가'를 밝혀 명시  
하여야 하는 罪刑法定主義의 大原則에 반하는 처사라고 하겠다.

45) 김일성은 '법은 정치의 한개의 표현양식...정치를 떠나서는 법을 알 수도 없고  
법을 집행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법은 정치의 표현이기 때문에 정치에 복종되어  
야 하며 그것과 떨어질 수 없습니다.'라고 설명하며, '법은 우리 국가의 정책을 실  
현하기 위한 중요한 무기입니다. 우리 국가의 정책은 우리 당의 정책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김일성저작선집, 조선노동당출판사, 제2권 p.144, 제 12 권 p.219

## ② 犯罪과 刑罰의 類推適用에 기초한 刑事政策

북한 刑事政策은 범죄와 형벌의 유추적용을 인정하는 원칙에 서서 범죄와 형벌을 자의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즉 범죄적 행위로서 그에 직접 해당하는 규정이 헌법에 없는 것에 대하여서는 형법중 그 중요성과 종류에 있어서 가장 비슷한 죄에 관한 조항에 준거하여 그 책임의 기초와 범죄 및 형벌을 정하는 것이다.

## (4) 非人道主義的 刑事政策

### ① 人權蹂躪的 刑事政策

북한 刑事政策은 '실행의 개시'의 개념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에 관계없이 범죄의 예비와 미수를 기수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다. 또한 사실상 정범과 공범의 구별은 하지 아니하고 공범의 정범화를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두가지 점은 범죄행위의 단계적 구분을 명백히 거부하고 사회적 위험성이 있는 행위이면 그 행위가 어떤 형태를 지니던 간에 상관없이 처벌하려는 비인도주의적 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울러 전술한 정치범 수용소에서의 행형을 통해볼때 인권유린적 성격은 부인할 수 없게 된다.

### ② 假飾的인 刑事政策

북한 刑事政策은 공산주의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서 위장되어 있는 가식적인 형사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정책은 다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및 그 법률질서들에 위반하는 사회적 위험성이 있는 행위에 대하여 공산주의체제의 영속적인 고수를 위하여 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형법은 각각 정신장애자에 대한 의료처분<sup>46)</sup>과 소년에 대한 교정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나 반체제인사등 정치범에 대한 行刑實態를 볼때 진정한 의미의 범죄인의 개선과 보호에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목표에 적합한 인간으로 개

46) 위의 두가지 처분들은 북한 형법에서 추구하는 인민민주주의국가의 자유로운 공동생활의 조건에 적응하게 하기 위한 형벌에 대응하는 처분들일 따름이다.

조하기 위한 재사회화·재교육의 명목으로 위장된 장식적 규정에 불과한 것이다.<sup>47)</sup>

---

47) 소련의 경우는 1971년 8월 26일 법령에 의해 사회적 위험성을 가진 정신장애자에 대한 강제의료처분을 실제로 행하고 있다. D. Mayer, Les instruments juridiques des violences des droits de L'homme, R.S.C. n 3.

## V. 맺는 말

지금까지 우리는 北韓의 刑事法體系를 신형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고찰하여 보았다. 북한 신형법은 구형법과 마찬가지로 범죄의 실질적 개념의 토대위에 형벌법규를 유추적용과 소급적 적용 인정함으로써 罪刑法定主義를 정면으로 부인하며 개인의 권리와 이익보다 사회주의제도와 당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신형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의 임무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주석을 보위하고 공화국 정부의 노선과 정책을 옹호 관철하며, 모든 범죄적 침해로부터 노동자·농민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고, 인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하며,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 제도와 질서를 세워 온 사회를 主體思想으로 일색화하는 역사적 위업에 기여하는데 있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구형법의 과업보다 더욱 더 강화된 신형법의 임무가 한마디로 김일성에 의한 唯一體制를 확고하게 하기위하여 주체사상을 완성시키는 데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民主主義理念과 人權保障의 價値를 무시하는 북한 형법은 실로 대한민국 형법과는 커다란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다. 결국 공산주의 이론에 기초한 북한 형법은 실제에 있어 허구성과 극심한 비인간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 이론에서 파생한 마르크스 犯罪學理論도 북한 형사정책을 살펴볼 때 전체주의적인 독재를 용이하게 만드는 수단으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 형법은 이러한 이론들을 기반으로 하여 공산주의의 철저한 시너로서 「人間에 의한 神國」과 같이 북한의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악용되는 폭력적인 도구인 것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태풍과 같이 몰아치고 있는 「소련의 改革과 民主化」의 거센 바람이 북한의 공산주의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방관한다는 것은 무리한 일이며, 한시라도 대한민국을 적화통일하여 사회주의혁명을 완수하려는 야욕을 북한이 아직도 완전히 버리지 않는다고 있음을 잊지말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榮光된 統一祖國의 未來와 無窮한 發展을 위하여 북한 형사법과 형사정책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은 오로지 철저하게 민



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人道主義的 刑事政策을 바탕으로 하여 罪刑法定主義原則에 충실한 형사법을 운용해 나가는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인도주의적이며 인권보장적인 형사법 만이 북한 형사법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범죄인을 경계하면서도 이해하고 사회에서 人間다운 生活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범죄인을 궁극적으로 包容할 수 있는 형사정책을 가지고 機能化·集團化·科學化되고 있는 犯罪現象을 형법으로 통제해 나가야 한다. 무조건 형벌을 가중하고 강화하면 범죄를 예방하고 진압할 수 있다는 구태의연한 사고를 버리고,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일정한 형태의 制裁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범죄를 행하면 아 니되겠다는 인식이 우리들에게 깊이 박혀야 할 것이다. 결국 북한 형사법과 형사정책을 극복하여 오히려 인도할 수 있는 대한민국 형사법과 형사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統一에 대한 希望을 버리지 않고 참된 民主主義를 實踐하는 길 뿐인 것이다.

## 참고문헌

### I. 국내서적 및 일본서적

1. 고병철, 주체사상의 형성과 사상체계분석, 1990, 을유문화사.
2. 국토통일원, 북한사회주의 헌법연구, (국토통일원, 77 - 1 -1097)
3. 강구진, 북괴형사소송법, 서울대학교 법학, 제11권 제2호, pp. 93 - 143.
4. 강구진, 북한형법, 저스티스, 제 11권 제 1호(1973.12), p. 235
5. 강구진, 북한법의 연구, 박영사, 1975.
6. 김 철, 러시아 소비에트법, 민음사, 1989.
7. 김영일, 북한 형법에 관한 이론적 소고, 통일정책 제 5권 제 2호, 1979
8. 김일성, 조선사회주의헌법,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일본, 백봉문고판.
9. 내외통신, 북한의 인권실상, 1983. 6.
10. 노창희, 북한형법에 관한 연구, 동국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77.
11. 박동희, 북한형법 - 특히 인권침해규정을 중심으로, 고대법률행정연구소, 북한법률행정논총, 제 4집, 1980.
12. 법무부, 북한법연구 II, 형법, 1985.
13. 법무부, 북한법 연구 VII, 신형법, 1990.
14. 북한연구소, 북한의 인권실태 증언집, 1986. 7. 1.
15. 사회주의 법연구회, 조선사회주의법, 일본- 법률문화사, 1989.
16. 엄정철, 북한 형법의 구조와 그 문제점, 형법연구, 법전출판사, 1980.
17. 엄정철, 북한 형법에 있어서의 특색과 문제점, 법무부 -자문위원회 논설집, 제 1집, 1978.
18. 이흥구, 마르크스주의와 오늘의 세계 - 변형의 재형태, 한국공산권 연구 협의회, 연구논총 제 3집, 법문사, 1984.
19. 최종고외 13명, 북한의 법과 법이론, 북한연구 시리즈 10, 경남대 출판부, 1988.

### II. 북한서적

1. 김규승,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형사법제, 일본, 사회평론사, 1988.
2. 김근식, 형법학 I,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평양, 1986.
3. 김근식, 형법학II,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평양, 1986.
4. 김일성저작선집, 조선노동당출판사, 제2권 p. 144, 제 12 권
5. 심현상, 조선형법해설 - 총칙, 평양, 국립출판사, 1957.
6. 심형일, 주체의 법리론, 사회과학출판사, 1987.

### III. 외국서적

1. I. Andrejew. Le droit pénal comparé des pays socialiste, Ed pédone 1981.
2. K. Marx, Histoire des doctrines économiques, Coste ed, paris, T II. 1925.
3. D. Mayer, Les instruments juridiques des violences des droits de L'homme. R.S.C. n 3. 1982.
4. Merle et Vitu, Traité de droit criminel, T I. 1984. Paris.



## ◇ 집필자 소개(계재순)

### ○ 김재한 : 한림대학교 조교수(정치외교학과)

- 서울대 및 동 대학원 외교학과, 미 Rochester 대학원 정치학과(정치학 박사)
- 미 후버연구소 연구교수, 서울대 국제문제조사연구소 연구위원, 서울대·숙명여대·국민대·이화여대 강사
- 연구실적 : 유럽군축모델과 한반도, 한반도 군축에 대한 소련과 중국의 태도, 국가안보와 군축의 딜레마, Alliances and War Expansion, Choosing Sides in Wars 등

### ○ 박홍윤 : 강릉대학 강사

- 경기대 행정학과, 연세대 대학원, 서울대 대학원 행정학과(박사과정 수료)
- 강릉대 통일문제연구소, 한국방송통신대 강사 역임
- 연구실적 : 행정적 분권화에 대한 이론적 연구, 마르크스주의적 종속이론 비판, 북한의 제2차7개년계획, 남북한 군비경쟁 및 군축과제, 남북한 국방비결정요인에 대한 체계적 비교 연구등

### ○ 최병학 : 충북대학교 강사(정치외교학과)

- 空士 국방관리학과, 청주대 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 박사)
- 공군대학 교수, 청주대·한남대·대전대 강사

### ○ 안찬일 : 북한연구소 상임연구위원 역임

- 신의주 농대, 고려대 정책과학대학원, 건국대 대학원(박사과정)
- 중화민국, 중국 및 미 일리노이대 학술회의 참가 및 미 시카고대학 연수

## ○ 윤태범 : 서울대학교 강사

- 국민대 행정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및 대학원 행정학과(박사과정 수료)
- 연구실적 : 한국의 근대화 과정과 관료부패, 의회의 관료부패 통제에 관한 연구 등

## ○ 김영수 : 서강대학교 강사(정치외교학과)

- 서강대 및 동 대학원 정의과(박사과정 이수)
- 육사 전임강사, 숙명여대 강사 등 역임
- 연구실적 : 현대 좌경급진사상, 실학사상에서의 민족의식, 북한의 실학연구 실태, 북한 정치이념과 전통정치문화와의 관련성 연구 등

## ○ 이종훈 : 성균관대학교 강사(철학과)

- 성균관대 및 동 대학원 철학과(박사과정 수료)
- 성신여대, 이화여대 강사(국민윤리, 공산주의 이론 비판)
- 연구실적 : Husserl 현상학과 실천의 분제, 소크라테스의 철학, 서양의 위기와 현상학 등

## ○ 김영미 : 한국외국어대 강사(행정학과)

- 상명여대 행정학과, 외대 대학원 행정학과(박사과정)
- 상명여대 강사, 한국외국어대 한국지역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 연구실적 : 지방제체와 지방자치관계, 정보관리와 지방행정에 관한 연구

## ○ 백원기 : 인천대학교 조교수(법학과)

- 국민대, 성균관대 대학원 법학과, 프랑스 파리 제2대학교 법과대학원(법학박사)
- 파리 제2대학 교수, 한양대 법대강사 역임
- 연구실적 : 은닉죄의 범죄의사, 공범개념, 범죄행위의 제1결정요소 고찰, 간접적 공범의 제문제, 남북한 형사법 비교 연구 등

# 北韓·統一 研究 論文集(V)

— 軍事 및 行政·法制 分野 —

---

1991년 12월 10일 인쇄

1991년 12월 13일 발행

발행처 통일원

인쇄처 휘문인쇄(주)

---

